2024

법무 연감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2025

法務年鑑

법무부

2024

법무 연감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2025

국가비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정목표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법무행정비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법무부 기(旗)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 전경



법무부 간부 일동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지난 2024년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비전으로, 법무행정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고,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67년 만의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뒤 몰래 회수해가는 '먹튀공탁'·'기습공탁'을 차단하기 위해 「공탁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전사·순직 군경의 유족이 자신의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개선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은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based Test)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였으며,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마약사범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구축·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신종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딥페이크 소지·시청죄를 신설하였으며,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새로운 인권수요를 반영하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제인권기구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아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법무부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심층조사 및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부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법률지원의 대상을 중견기업·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교정시설 신·증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약사범의 재활 지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여 단계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종합상황실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수용자 계호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위기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 확대 및 교육 내실화를 통해 이민자 적응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가동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인권친화적 보호시설을 확대하여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법무연감 발간을 통해 지난 한 해 성과와 부족한 점을 살펴보면서 더 나은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믿음직한 법질서 수호자이자 든든한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법무부장관

2024 법무행정일지

1월

- 1. 1. • 차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1. 3.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개최
- 1. 10. • 차관,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참석
- 1. 18. • 제65대 법무부차관 이임식
- 1. 19. • 제66대 법무부차관 취임식
- 1. 22.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1. 2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 1. 25. • 차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참석
- 1. 29. • 2024년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개최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1. 30. • 차관, 법무부-월드뱅크-대한상의 해외진출기업 공동법률설명회 참석
- 1. 31. • 차관,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
  • 법무부 2030자문단 발대식

2월

- 2. 2. •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 2. 5. •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 2. 6. • 차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
  • 차관,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참석
- 2. 7. •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
  •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 2. 18. • 차관,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2. 20. •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식
- 2. 21. • 장·차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장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2. 26.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2. 29. • 장관,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참석
  • 차관, IOM(국제이주기구) 신임 사무총장 면담

2024 법무행정일지

3월

- 3. 1. • 장관,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 3. 5. • 정기 직제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 3. 6. • 장관, 대법원장 예방
  • 차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접견
- 3. 7. • 2024년 제1회 난민위원회 개최
- 3. 8.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및 위촉식 개최
- 3. 11.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 개최
- 3. 14. • 장관, 헌법재판소장 예방
- 3. 15. • 검찰업무 수행유공 포상식 개최
- 3. 18. • 장·차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접견
- 3. 19.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3. 20. • 장관, 인천참사랑병원·인천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 3. 21.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법무부 국민기자단 해단 및 위촉식 개최
- 3. 22. • 장관, 신임 대법관 접견
  • 장관,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 접견
  • 제48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개최
- 3. 25. •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접견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3. 26. • 장관, 안양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3. 27. •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 3. 28. • 장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 2024년 제1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4월

- 4. 1. • 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접견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개최
- 4. 2. • 장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접견
  • 법무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 4. 3. • 장관, 늘봄학교 수업 일일 재능기부
- 4. 4. • 장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4. 5. • 장·차관, 한국법학원 원장 접견
- 4. 8. •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개최
- 4. 12. • 장관, 한국법학교수회장 접견
- 4. 15. • 장·차관, 국민권익위원장 접견
- 4. 16. • 장관, 안양소년원·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책현장 방문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 4. 17.~20. • 차관, 마카오 국외출장
- 4. 17. • 2023년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유공 장관표창 수여
  • 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접견
- 4. 22. • 장관, 법령경연대회 심사위원장 접견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4. 23.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4. 25.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2024년 제2회 난민위원회 개최
- 4. 29. • 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접견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 4. 30. • 법의 날 기념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2024 법무행정일지

5월

- 5. 1.
  - 신임검사 임관식
  - 장관, 대한법무사협회장 접견
- 5. 2.
  - 장관,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 5. 3.
  - 차관, 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 5. 8.
  - 장관,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 장관 접견
  -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5. 14.
  - 장관, 서울남부구치소·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장관, 순직교도관 충혼탑 참배
- 5. 16.
  - 국립법무병원장 임명장 전수식
  - 2024년 법무부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5. 20.
  -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5. 22.
  - 장관, 제15회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참석
- 5. 27.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5. 28.
  - 차관, 한국법학원 부원장회의 참석
- 5. 29.
  - 장관, 제로캠프 이사장 접견
- 5. 30.
  -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6월

- 6. 4. • 법무시설 건축협의회 개최
- 6. 6. • 장관,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 6. 13. • 장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참석
  • 차관, 2024년 임대차분쟁조정 세미나 참석
- 6. 14. • 2024년 제3회 난민위원회 개최
- 6. 17. • 제11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개최
- 6. 19.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6. 24.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공증인징계위원회 개최
- 6. 27. • 차관,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참석
  • 2024년 제2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2024 법무행정일지

7월

- 7. 1.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 7. 5. •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 7. 9. • 장관, 채상병 특검법안 관련 브리핑
- 7. 11. • 장관,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광명CBT센터 정책현장 방문
- 7. 17. • 장관,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
  • 장관,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 7. 19.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7. 22. • 장관, 베트남 감옥관리 경찰국장 접견
  •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소식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7. 23. • 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7. 23.~27. • 장관, 싱가포르 국외출장
- 7. 24. •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
- 7. 29. •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제36기 공익법무관 임용식
- 7. 30. • 장관, 대한법무사협회장 접견
- 7. 31. • 차관, 중기부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개소식 참석

8월

- 8. 1. • 신임검사 임관식
- 8. 2. • 2024년 제4회 난민위원회 개최
- 8. 6. • 장관, 주한 일본대사 접견
- 8. 7. •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2024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 개최
- 8. 8. •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 8. 12. •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8. 13. • 장관,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
  •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개최
- 8. 15. • 장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 8. 19. • 2024년 을지연습 상황보고회의 개최
- 8. 21. • 이민정책 개선 관련 워크숍 개최
  •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 8. 26. • 장관,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참석
  • 장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강화(講話)
- 8. 29. • 장관, 신임 대법관 접견

2024 법무행정일지

9월

- 9. 2.
  -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9. 4.
  - 장관, 추석 명절맞이 정책홍보 활동
  -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현판식
- 9. 6.
  - 장관,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참석
- 9. 10.
  - 장관, 충남도지사 접견
  - 2024년 법무부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 9. 11.
  - 장관, 신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접견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 9. 13.
  - 장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접견
- 9. 19.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
- 9. 20.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9. 23.
  - 제67대 법무부차관 취임식
  - 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17주년 기념행사 참석
- 9. 25.
  - 장관, 형사법학회장 접견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 9. 26.
  - 장관,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브리핑
- 9. 30.
  - 장관, 한국경제 창간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 차관,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 참석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10월

- 10. 1. • 장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
- 10. 8. • 2024년 법무부 국정감사
- 10. 10. • 2024년 제3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 10. 14. • 제1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최
- 10. 15. •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 차관,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 접견
- 10. 17. • 장관, 신임 헌법재판관 접견
- 10. 18. • 교정의 날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10. 22. • 2024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
  • 장관, 한국법학교수회장 접견
- 10. 25. • 2024년 종합감사
- 10. 28. •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10. 29. • 차관,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회식 참석
  • 2024년 법무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10. 30. • 차관,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법무부 주최 세미나 주재
  •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최
- 10. 31.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2024 법무행정일지

11월

- 11. 1.
  - 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면담
- 11. 11.
  - 법무시설 건축협의회 개최
- 11. 13.
  -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서울구치소 정책현장 방문 및 제3차 회의 개최
- 11. 14.
  - 장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참석
- 11. 15.
  - 2024년 제5회 난민위원회 개최
- 11. 19.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11. 20.
  - 장관,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 방문
- 11. 21.
  -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 접견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개최
- 11. 25.
  - 법무부 기록관 개관식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11. 27.
  - 제17회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 11. 29.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12월

- 12. 2. • 범죄피해자 보호실무위원회 개최
- 12. 3. • 법무시설 건축협의회 개최
- 12. 5. • 2024년 출입국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 12. 11.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 12. 12. • 2024년 제4회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 12. 13. • 2024년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개최
- 12. 16. • 차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참석
  • 기독탄신일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12. 23.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12. 26. • 차관, 제9차 관광전략회의 참석
- 12. 30. •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2024년 법무부가 만든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2024년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의를 지켜온 법무부의 2024년 활동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2024. 01.



제65대 이노공 법무부차관 이임식



제66대 심우정 법무부차관 취임식



2024년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법무부 2030자문단 발대식

2024. 02.



신임검사 임관식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



제70대 박성재 법무부장관 취임식



국립현충원 참배



의료계 집단행동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



정홍식 초대 국제법무국장 임명장 전수



IOM(국제이주기구) 신임 사무총장 면담

2024. 03.



대법원장 예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임명장 수여



백기봉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면담



인천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인천참사랑병원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면담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 면담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면담



안양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2024. 04.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면담



법무부-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서울양명초 늘봄학교 수업 재능기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면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책현장 방문



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면담



박종순 대한공증인협회장 면담

2024. 05.



신임검사 임관식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장관 면담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서울남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서울남부구치소 정책현장 방문



순직교도관 충혼탑 참배



2024년 법무부 반부패·청렴교육



이영렬 국립법무병원장 임명장 전수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 면담



제17회 세계인의 날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2024. 06.



제11회 다링안심캠페인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마약사범 재활 심포지엄

2024. 07.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안산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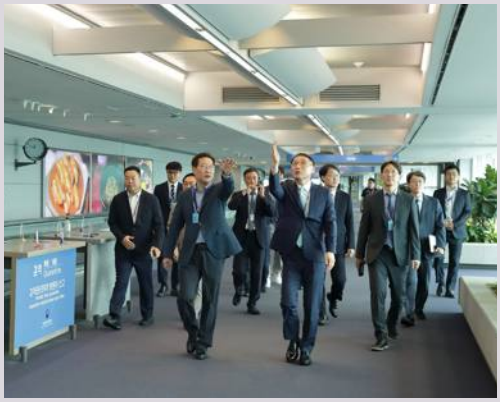
베트남
감옥관리경찰국장 면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



제36기
공익법무관 임용식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면담

2024. 08.



신임검사 임관식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면담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2024 을지연습 실제훈련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강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신임 대법관 면담

2024. 09.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설치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 홍보



2024
청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 면담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면담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면담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면담



제67대
김석우 차관 취임식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브리핑

2024. 10.



2024년
법무부 국정감사



국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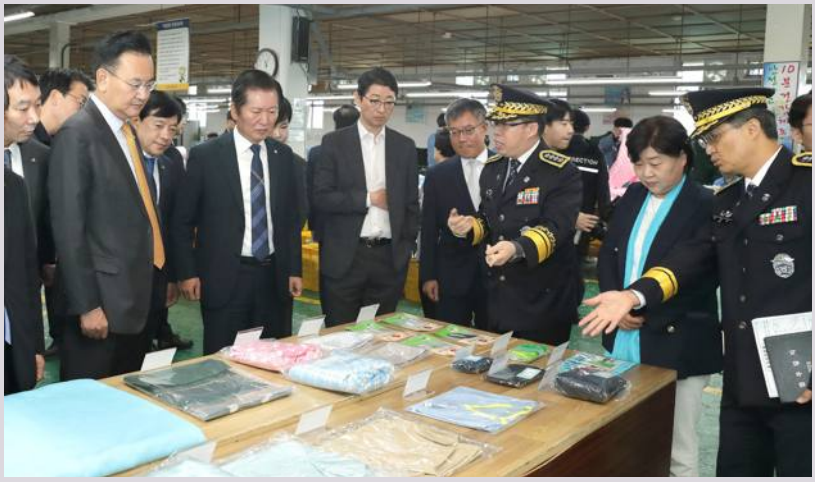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면담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면담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양교도소 현장 시찰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2024. 11.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



범정부 캠페인 '8·15 통일 독트린 챌린지' 참여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 면담



법무부 기록관 개관식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2024. 12.



범죄피해자 보호실무위원회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



2024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 개최



2024년
출입국 해외주재관 회의

2024
법무연감

CONTENTS

제1장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56
제2절 기구·인원 63
제3절 예산·시설 83

제2장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94
1.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 94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96
3. 더 나은 법무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100
4. 법무행정개선 추진 103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106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109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111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118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120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124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130
12.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133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137

제2절 정책홍보 업무 150
1. 기관장 소통활동 150
2. 언론 홍보활동 151
3. 홍보 기획 152
4. 대국민 소통활동 155
5. 법무부 국민기자단 운영 161

제3절 법무업무 162

1. 민법 전면개정 추진(계약법, 담보법) 162
2.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63
3.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및 신탁등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정비 165
4. 형사공탁 악용 방지를 위한 공탁법 개정 167
5.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연구 168
6. 전자공증시스템의 고도화 170
7.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172
8.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175
9. 공익법무관 제도 운영 177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및 국가배상 업무의 지휘·감독 179
11.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하는 국가배상법 개정 182
12. 국고손실 환수송무 적극 추진 183
13.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184
14.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186
15. 통일 대비 법적·인적 기반 구축 194
16. 북한주민 재산의 체계적 관리·감독 199
17.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200
18.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203
19. 도산법의 체계적 정비 및 절차 편의성 개선 205
20.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응 및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207
21. 중소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210
22. 경제 형벌규정 개선 212
23. 전자어음제도 운영 214
24. 전자증권제도 시행 216
25. 중재산업 활성화 218
26.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219
27.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221
28. 선진법제포럼 개최 223
29.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224
30.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30

제4절 검찰업무 232

1. 검찰 역량의 강화 232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237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246
4. 국민의 권익 보호 263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267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98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299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300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303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304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305
12. 형사공탁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312
13.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313
14.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관련 「형법」 개정 추진 314
15.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확대 관련 「형법」 개정 추진 316
16.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317

제5절 범죄예방업무 319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319
2. 전자감독 등 고위험사범 관리 328
3. 감호제도 개선 334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339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342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347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351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357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362
10.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371

제6절 감찰·감사업무 376

1. 감찰업무 376
2. 감사업무 378

제7절 인권업무 382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382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388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399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413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417

제8절 국제법무업무 421

1. 국제법무 역량 강화 421
2.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427
3.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참여 432
4.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435
5. 정부부처·지자체 등 국제소송 및 법률지원 442

제9절 교정업무 444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444
2.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452
3.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459
4. 교정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467

제10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475

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475
2.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482
3.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490
4.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495
5.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503
6.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509
7.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516
8.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520
9.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529
10.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534
11.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541

제11절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547

제3장 법령정비

제1절 개관 550

제2절 법률 551

제3절 대통령령 571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592

제4장 국회업무 616

제5장 통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624
제2절 검찰업무 통계 635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657
제4절 인권업무 통계 695
제5절 국제법무업무 통계 697
제6절 교정업무 통계 698
제7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720

자료

제1절 직제 738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774
제3절 장관 연설문 785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824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843
제6절 인사 869
제7절 국외훈련·출장 870
제8절 국제교류 현황 871
제9절 상훈 882
제10절 위원회 현황 905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912

부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法務年鑑

01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2절 기구·인원
제3절 예산·시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1. 국정방향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재륜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6대 국정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국정비전 및 6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23대 약속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전략별로 핵심 정책을 12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월 자체 점검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6대 국정목표 및 우리 부에서 추진한 2024년도 국정과제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정운영의 원칙인 '국익과 실현',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정부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실질적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다.

| 표 1-1 | 국가비전 – 6대 국정목표 –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6대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나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①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② 핵심전략 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①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②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①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②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②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②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③ 중소·벤처 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④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⑤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③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④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③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④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③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③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0대 국정과제	**15개 과제**	**26개 과제**	**32개 과제**	**19개 과제**	**18개 과제**	**10개 과제**

| 표 1-2 | 윤석열정부 법무부 국정과제 현황

국정 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과제 (주관 4개)	주관 (협조)	주요내용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② 검찰 독립 예산편성 ③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④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 하겠습니다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협조)	여가부 (법무부)	⑤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⑥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⑫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여가부 금융위 식약처)	①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②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③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④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⑥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①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②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④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2. 법무행정의 지표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환희

가. 개요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 등 법무부 3대 임무를 기본 바탕으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아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4년도 법무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본부 각 부서에서는 4대 전략목표 아래 9개 성과목표 및 50개의 관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1-3 | 2024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 표 1-4 | 2024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주요내용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Ⅰ.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1.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 수준을 향상한다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국제 기준 및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제도화와 이행 노력
		② 인권침해자체예방 및 조사구제 시스템 강화	• 구금·보호시설 실태점검·개선조치 등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③ 능동적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응 및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추진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②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여성·아동 관련 법령 지속 점검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성 제고 교육 및 진술조력인 추가양성 통한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지원 내실화
Ⅱ.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 확립으로 반듯한 사회를 구현한다	1. 중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한다	①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한 검찰의 중립성 및 공정성 제고
		②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 관계기관과 수사·조사 협력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및 경제 범죄 집중 단속
		③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부처간 협력강화를 통해 급증하는 마약범죄 집중단속, 마약중독자 재활·치료 활성화 등을 통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④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사경 송치 후 새롭게 실체가 확인된 사건 수사절차 간소화, 보완수사 효율성 제고
		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전담검사 지정·운영 통한 내실있는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유형별 세분화된 사건처리기준 마련
		⑥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	• 도박자금 이체 및 출금방지를 위한 불법도박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도입 등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
		⑦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하에 신속·엄정 수사 •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단속 대상 범죄에 수사역량 집중
		⑧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	• 특별관리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맞춤형 집중 송환 추진 및 형사사법공조망 확충 노력
		⑨ 부패대응 공백 방지	•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 국회 입법논의 지원 등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한 부패범죄대응 공백 방지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① 미래변영을 위한 「민법」 개정 추진	•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이래 65년간 전면개정 없이 유지되어 와, 변화한 사회·경제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기 위해 「민법」 전면개정 추진
		②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 기존 전자공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추진
		③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및 국고투입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환수하도록 법률적 자문 및 지원
		④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 변화된 국가송무 체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행정소송 관련 제도개선 추진
		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기반 구축 및 위기 탈북민 발굴·지원 중심의 법률안전망 강화
		⑥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상사법 개정	• 주주권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및 도산제도 개선 등을 위한 상법개정
		⑦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개선	•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3. 글로벌 스탠더드 선도를 통해 국제 분쟁 해결·예방에 기여한다	①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 국제 민·상사 규범 관련 회의 참석 및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법제정비를 지원
		② 국제투자분쟁(ISDS)대응 및 예방 강화	• 국제투자분쟁(ISDS) 담당자의 전문성·역량을 강화하여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
		③ 국제소송 대응 실질화 및 정부부처·기업 등 국제법률지원 체계 구축	• 국제소송 수행 및 국제소송지원 TF 운영 • 부처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정부부처·지자체 등 법률지원
Ⅲ.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신속수사팀 수사역량 제고, 훼손 방지 성능을 강화한 '강화형전자장치' 현장 적용, 디지털분석 확대 등 고위험자 관리·감독 강화
		②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 이해도 제고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홍보 강화를 통해 대국민 이해도 제고
		③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초기비행 청소년 개별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 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재비해 예방 강화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소년원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및 비행예방 교육 강화, 친인권적 처우 환경 조성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 도모
		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의사 처우개선을 통한 인력 확충, 병실당 병상 수(8인→6인) 축소,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준공, DUR 시스템 구축 등 치료환경 개선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⑥ 마약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	• 치료적 개입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전문 처우프로그램 확대 등 실효적 재범방지 추진
		⑦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 취업지원 수혜자 확대, 전담인력 전문화 교육 등 통한 지원 역량 강화,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추진
	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①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 교정시설 신·증축 및 수용동 증·개축으로 수용공간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수용자 인권 보장 강화
		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홍보전략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교정 행정의 이미지 제고 도모
		③ 교정 접견서비스 활성화	• 스마트접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민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도모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를 대상으로 정밀분류심사 및 재범유발 요인을 감안한 개인별 처우를 통해 재범위험성 관리체계 구축 추진
		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으로 수형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연계 취업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출소 후 경제적 자립 도모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수용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집중인성교육의 일환인 감사나눔 문화확산 및 소년수형자 교정교육강화, 다양한 사회적처우 실시로 가족관계회복·성공적인 사회복귀
		⑦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도입, 건강검진, 의료장비 현대화, 원격의료시스템 운영확대 등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추진
		⑧ 성폭력·스토킹 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성폭력, 이상동기범죄 등 재범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마약류사범에 대한 전담조직 신설 및 종합적인 치료·재활 정책 추진
		⑨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운영 및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하여 중독재활 상담 강화 • 출소 후 치료재활 지속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강화
Ⅳ.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 환승무사증 재개, 무안공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자여행허가(K-ETA) 등을 통해 국익위해 우려자의 국내 입국 차단
		②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비자정책 추진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및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로 산업현장 및 농어촌 인력부족 해소, 우수인재 확보 위한 적극적인 비자정책 추진
		③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및 자진출국 유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추진 및 개방형보호시설 확대 운영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④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신형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⑤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 국민과 외국인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여 출입국·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추진
	2.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설계 및 추진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 이민정책 추진 체계 구축, 출입국 관리법 등 소관 법령 제·개정 등 추진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특별공로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국적증서 수여,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도입 등 국적제도 개선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실시, 사회통합 정책컨설팅 등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정책 효율성 제고
		④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 난민법령·지침 개정 및 난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난민 인식개선 활동 강화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법령·지침 개정, 난민조사관 교육 실시, 기타 국제기구 협업을 통한 연구사업 및 제도 개선 시행으로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나. 국정과제 등 관리체계

법무부는 국정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주기적 이행점검 회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 등을 통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2절 기구·인원

제1항 본 부

1. 기구

본부 기구는 2024. 12. 31. 현재 2실 4국 2본부 11관 60과·팀으로 편성되어 있다.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 주요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정협의, 국회업무, 부내 행정개선 총괄·지원 및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사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시설 조성, 법무행정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법무실

법무실은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법무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업무의 감독, 공익법무관의 관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헌법재판 관련 업무, 국고손실 환수송무 업무, 남북대화·교류협력 관련 법적지원,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장, 법조인 양성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 검찰국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를 두고 있으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검찰공무원의 인사, 검찰청 정원 배정,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형 집행 및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마약류보상금 및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행사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집행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전자감독과,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소년범죄예방팀을 두고 있으며, 범죄예방 기획·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등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법질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전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이로운법' 홈페이지 운영, 법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지원, 법질서 실천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법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치료감호 정책 기획 및 집행 감독,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정 집행,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위치추적 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자 등록·관리 및 임시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원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원생에 대한 적정한 개별처우와 교과교육, 인성교육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소년범 사회 내 처우 전담, 소년 보호관찰·조사·수강·사회봉사 등 청소년 비행예방대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퇴원생에 대한 숙식제공·주거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사회복귀를 돕는 갱생보호 업무, 데이터분석 기반의 강력범죄자 재범억제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22. 8. 4.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2025. 6. 30.까지 존속)하여 소년 범죄예방정책 수립 및 소년보호관찰 제도 운영 등 소년사법정책 및 집행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벤처형 조직으로 설립된 범죄예방데이터과가 존속기한 만료(2023. 5.

31.)로 해소 된 후, 2023. 6. 8.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을 신설(2026. 5. 31.까지 존속)하여 범죄예방정책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능형서비스 등 디지털플랫폼 구축·개선, 국가연구개발 추진과 같은 범죄예방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감찰관실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감찰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바. 인권국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두고 국가인권 정책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관리·감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 교육, 검찰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평가,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아동학대 관련 법령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실시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 국제법무국

국제법무국은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를 두고 있으며,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간행 및 국제협력·교류,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부 내 국제개발협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아.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교정정책단에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특별점검팀을 두고 있으며, 보안정책단에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마약사범재활팀을 두고 있다.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기획, 조직·인사·예산·복무 감독·상훈·홍보·국제관계업무, 교정관련 법령정비, 대체복무요원 복무 및 교육, 교도작업 운영, 취업·창업 지원, 수용자 교육 기획, 출소예정자 사회 적응 지원, 수용자 수용·처우·석방·접견, 참관, 이송, 가석방, 분류처우, 수용자 보건위생, 의료 및 약제, 질병예방, 수용자 청원, 인권 및 소송, 수용자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23. 6. 8.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특별점검팀 및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2026. 5. 31.까지 존속)하여 교정시설 순회점검 계획 수립·시행, 교정시설 수시 점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및 주요 사건 조사, 마약·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과 수용자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 등의 업무를 각각 전담하고 있다.

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정책단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적·통합정책단은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관리 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소관법령의 입안 및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관리 및 제공, 출입국외국인 통계연월보 작성, 외국인 관련 빅데이터 분석,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 왕래자의 출입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심사, 출입국 규제,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출국권고·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관련 조사, 외국인 동향조사, 귀화·국적회복 등 국적취득, 국적상실 및 이탈, 국적판정, 난민인정심사

업무 및 출입국항 난민신청 회부심사 업무, 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및 국내 정착지원,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등 난민의 처우 관련 정책,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총괄,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정책, 외국 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관한 정책 총괄, 외국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담당기관과 협력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23. 6. 8.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신설(2026. 5. 31.까지 존속)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운영, 외국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빅데이터 생성·관리 및 분석을 전담하고 있다.

차. 인사정보관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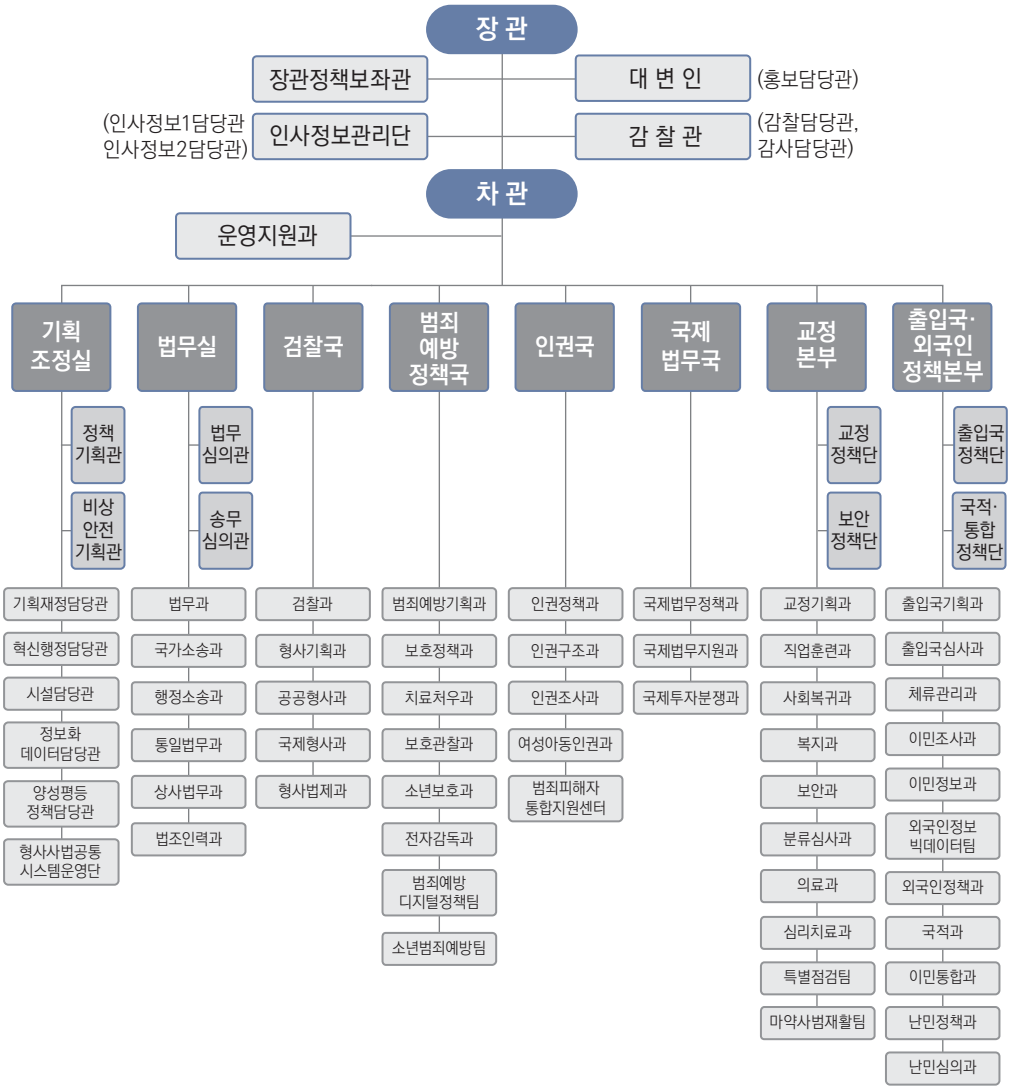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2. 6. 7.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여 인사정보1담당관실, 인사정보2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을 보좌하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카. 기 타

그밖에 대변인실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법무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지원과는 보안, 예산의 집행 및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4. 12. 31. 현재 법무부 기구는 〈표 1-5〉와 같다.

| 표 1-5 | 본부 조직도



2. 인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변호사시험 컴퓨터 방식 제도 시행 인력, 국제형사사법 공조 전담인력, 법무부 인권국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등 15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7명을 감축하여 2024. 12. 31. 현재 본부 정원 789명, 현원 772명으로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은 〈표 1-6〉과 같다.

| 표 1-6 | 본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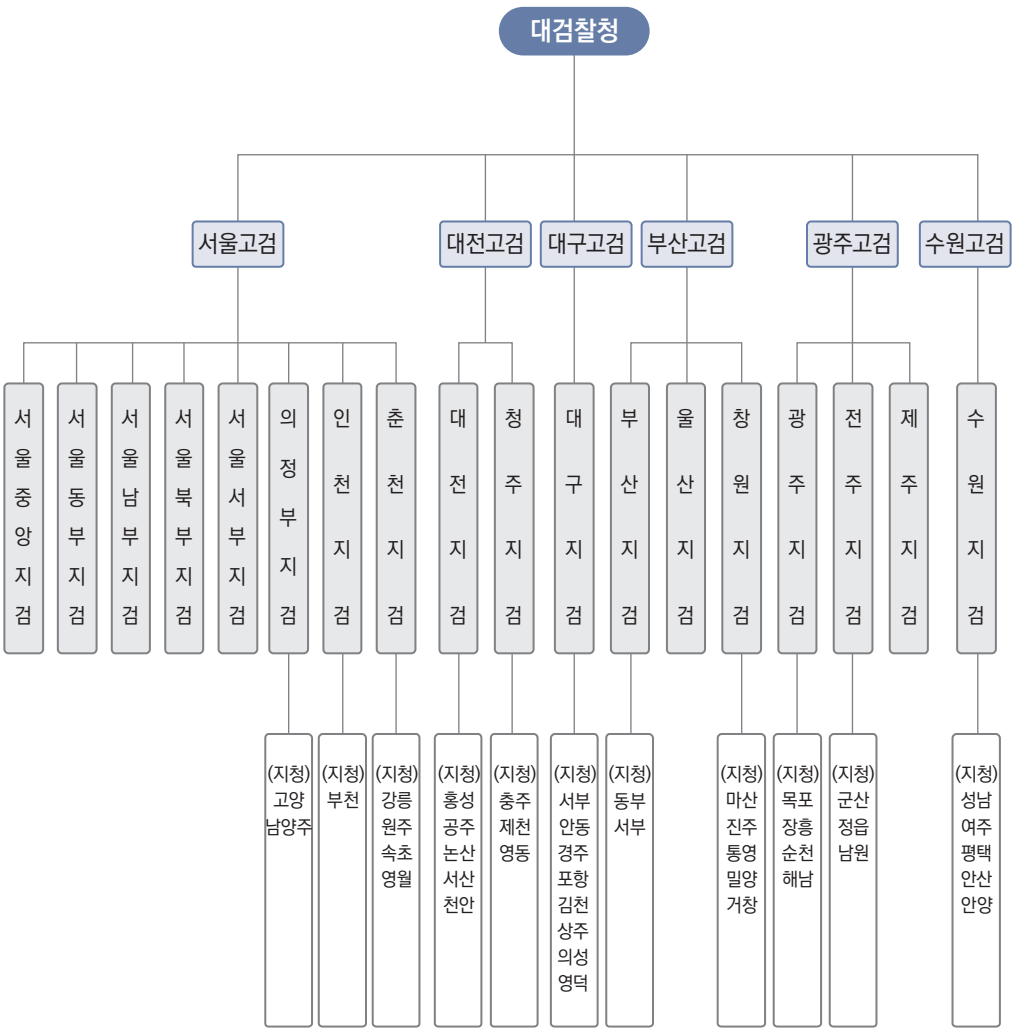
구 분	계	정무직	검사	일반직	별정직
정원	789	2	31	752	4
현원	772	2	55	714	1

제2항 소속기관

1. 검찰청

검찰기구는 2024. 12. 31. 현재 대검찰청과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청 조직 정원 및 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7 | 검찰청 조직도



| 표 1-8 |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검 사	일반직
인 원	10,650	2,292	8,358

| 표 1-9 | 검사의 직위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위	정 원	현 원
계	2,292	2,033
검찰총장	1	1
고등검사장급	7	6
대검검사급	32	30
검사	2,252	1,996

| 표 1-10 | 검사 외의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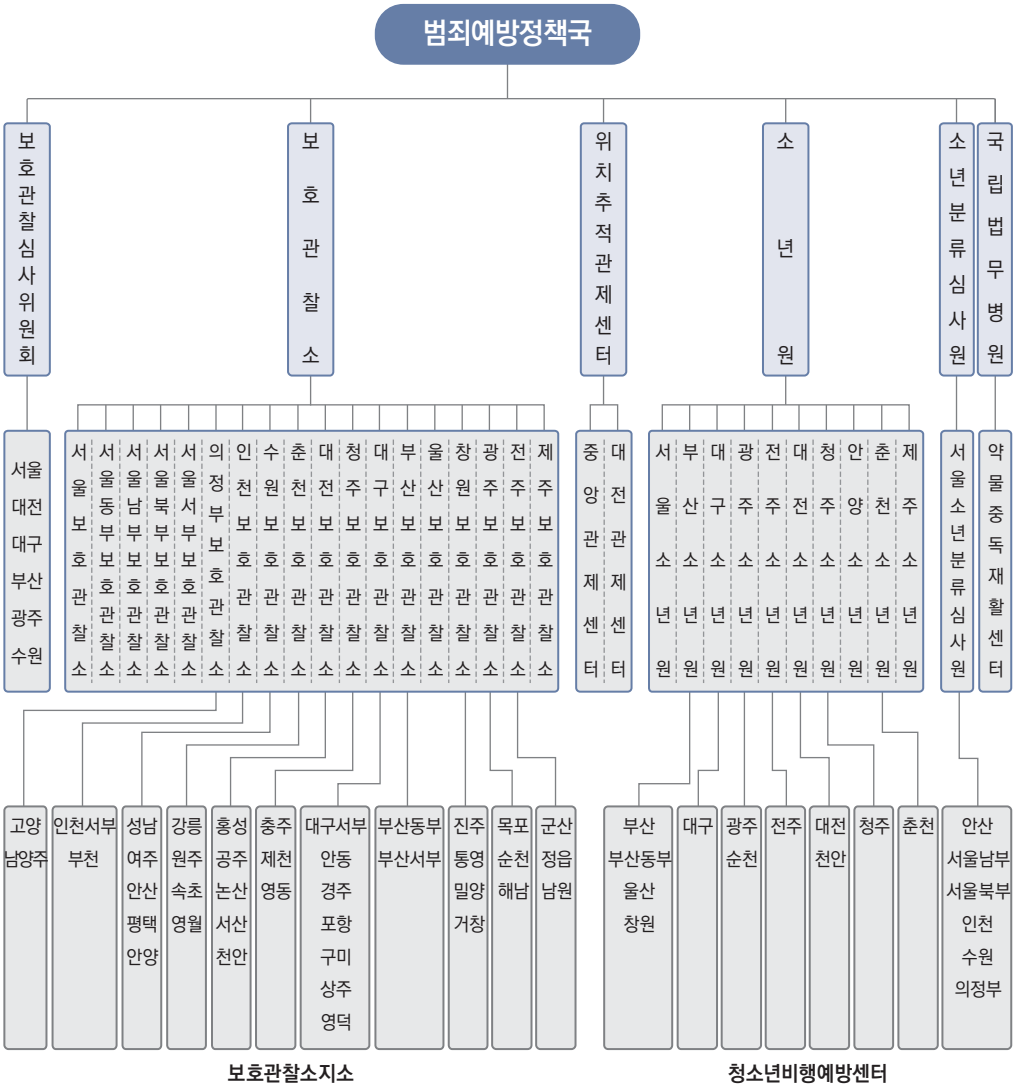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8,358	8,437
고위공무원단	26	21
검찰부이사관	17	16
검찰수사서기관	184	157
임기제서기관	1	1
서기관	5	5
검찰사무관	453	378
검찰주사	1,438	1,492
검찰주사보	1,834	1,851
검찰주사보(속기사)	28	26
검찰서기	1,082	1,082
검찰서기보	829	931
마약수사직	314	310
통계직	1	1
전산·방송통신직	229	213
시설·공업직	97	97
사서직	4	4
임업직	2	2
운전직	271	265
방호직	158	153
위생직	1	1
관리운영직	1,304	1,358
연구직	75	70
전문경력관	5	3

2. 보호기관

보호기관은 2024. 12. 31. 현재 18개 보호관찰소, 40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 관제센터,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8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개 국립법무병원, 1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표 1-11〉 내지 〈표 1-14〉와 같다.

| 표 1-11 |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조직도



| 표 1-12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2,072	2,062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임기제)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3
서기관	29	28
서기관(임기제)	4	4
서기관또는보호사무관	6	6
보호사무관	189	189
보호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1	1
보호주사	351	347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0
전산주사	2	2
보호주사보	487	488
보호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	4	4
보호서기	491	484
보호서기또는전산서기	1	1
시설서기	0	1
공업서기	4	5
운전서기	2	2
보호서기보	418	415
보호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55	52
방호서기보	14	14
관리운영직군	3	10

| 표 1-13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964	951
고위공무원단	2	2
서기관	16	16
과학기술서기관	9	8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9	8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1	1
과학기술서기관·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1
보호사무관	46	46
의무사무관	12	3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0
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1
보호주사	103	103
공업주사	1	1
시설주사	1	1
간호주사	4	2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1
보호주사보	188	185
공업주사보	4	4
의료기술주사보	1	1
간호주사보	19	17
약무주사보	1	0
보호서기	188	191
보호서기 또는 간호서기	1	1
공업서기	5	5
간호서기	4	5
시설서기	2	2
식품위생서기	7	5
보호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2	2
조리서기	1	1
의료기술서기	1	1
방호서기	1	1
보호서기보	171	173
보호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3	3
공업서기보	19	19
시설서기보	1	1
식품위생서기보	4	4
운전서기보	23	22
조리서기보	56	54
방호서기보	13	17
관리운영직군	4	8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21	19
전문경력관나군(교과교육담당)	13	13
전문경력관나군(특수교육담당)	3	3

| 표 1-14 | 국립법무병원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461	425
고위공무원단	2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1
서기관	1	1
과학기술서기관	13	9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3	1
보호사무관	2	2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1
의무사무관	2	0
약무사무관	1	1
간호사무관	2	2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	1
보호주사	3	3
보호주사 또는 행정주사	5	5
약무주사	2	1
간호주사	33	31
간호조무주사	2	2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	3
공업주사	1	1
의료기술주사	1	1
방호주사	1	1
보호주사보	5	5
보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	4
약무주사보	3	1
간호주사보	62	56
간호조무주사보	7	7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	2
의료기술주사보	2	2
시설주사보	1	1
전산주사보	1	1
공업주사보	2	1

직 급	정 원	현 원
방송통신주사보	1	1
조리주사보	1	1
기계운영주사보	1	1
보호서기	3	3
보호서기 또는 행정서기	5	5
공업서기	2	2
간호서기	60	53
의료기술서기	4	3
간호조무서기	16	17
전기운영서기	1	1
기계운영서기	2	1
보호서기보	2	2
보호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2	2
식품위생서기보	1	1
시설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2	3
운전서기보	2	1
간호조무서기보	137	131
조리서기보	17	17
방호서기보	11	11
관리운영직군(서기보)	2	3
전문경력관가군(의료시설담당)	1	0
전문경력관나군(작업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사회사업담당)	4	4
전문경력관나군(재활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5	5
전문경력관다군(작업치료담당)	2	2
전문경력관다군(사회사업담당)	1	1
전문경력관다군(직업훈련담당)	2	2

3. 교정기관

2024. 12. 31. 현재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기관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교정청과 39개의 교도소, 12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총 58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0. 12. 1. 개청한 국내 최초 민영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정원은 16,579명이며, 2024. 12. 31. 현재 16,504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4년 소속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5 | 교정기관 조직도



| 표 1-16 |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 및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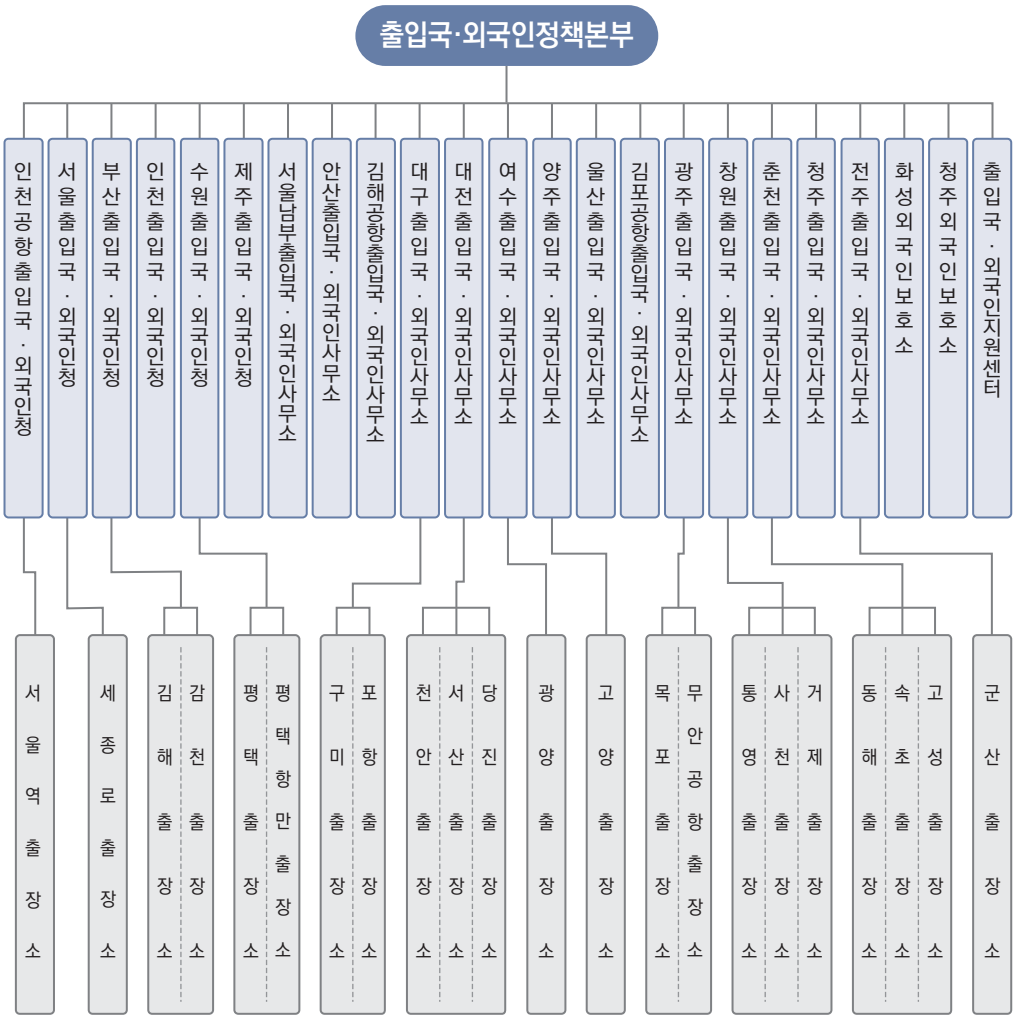
(단위 : 명)

직급별 / 직렬별	정원	현원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계	16,579	16,504	15	9	117	66	381	1,589	2,026	5,764	6,487	4	121
교정	15,373	15,338	15	5	58	34	342	1,469	1,819	5,546	6,085		
의무	115	92		4	59	30	22						
약무	16	15					13	3					
간호	186	181					1	38	62	85			
의료기술	36	36						15	14	7			
식품위생	89	86						13	35	24	17		
행정	0	0											
시설	73	72				2	2	29	24	11	5		
전산	12	11					1	2	5	4			
공업	236	231						17	59	69	91		
방송통신	4	4						3		1			
운전	271	269							5	5	261		
보건	1	1								1			
관리운영	42	44							3	11	28		
기록연구사	4	4										4	
전문경력관(가군)	10	10											10
전문경력관(나군)	111	110											111

4. 출입국기관

2024. 12. 31. 현재 법무부 소속 출입국기관은 6개 출입국·외국인청, 14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개 외국인보호소, 1개 센터 및 22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630명이며, 현원은 2,629명이고,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7 | 출입국기관 조직도



(6개청, 14개 사무소, 2개보호소, 1개센터, 22개 출장소)

| 표 1-18 | 출입국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2,630	2,629
고 위 공 무 원	3	3
부 이 사 관	3	1
서 기 관	29	29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113	107
출 입 국 관 리 주 사	434	427
출 입 국 관 리 주 사 보	709	722
출 입 국 관 리 서 기	703	706
출 입 국 관 리 서 기 보	525	526
전 산 직	44	43
의 무 직	3	2
간 호 직	4	3
관 리 운 영 직 군 등	60	60

5.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획부, 교정직 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정연수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위원, 원내 일반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 신임검사 교육, 로스쿨 지원, 국제교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국가송무수행자 등의 교육을 맡고 있는 용인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19 |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34	130
검 사	19	19
고 위 공 무 원	6	3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	7	6
행정사무관·교정관 등	21	20
행 정 주 사 · 교 감 등	26	24
행정주사보·교위 등	20	31
검 찰 서 기 · 교 사 등	24	24
행정서기보·운전서기보 등	11	3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수행하며, 2024.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20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2	1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1	0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3	3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	2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	2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2	2
전산주사	1	1
기록연구사	1	1

제3절 예산·시설

1. 예 산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 김원태

가. 개요

2024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무행정의 비전인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범죄대응역량 제고,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약자 보호,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전년보다 1.5% 감액된 1조 4,454억 5,900만 원, 세출이 2.7% 증액된 4조 4,141억 7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지출이 1,370억 5,400만 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표 1-21〉과 같다.

| 표 1-21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 총 규 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 (B)	2023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예산	세 입	1,467,313	1,467,313	1,445,459	△21,854	△1.5
	세 출	4,297,481	4,297,481	4,414,107	116,626	2.7
기금	수 입	113,347	113,347	137,054	23,707	20.9
	지 출	113,347	113,347	137,054	23,707	20.9

○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 (B)	2023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세 입	1,345,834	1,345,834	1,324,930	△20,904	△1.6
세 출	4,176,002	4,176,002	4,293,578	117,573	2.8

○ 교도작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 (B)	2023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B-A)	%
세 입	121,479	121,479	120,529	△950	△0.8
세 출	121,479	121,479	120,529	△950	△0.8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 (B)	2023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B-A)	%
수 입	113,347	113,347	137,054	23,707	20.9
지 출	113,347	113,347	137,054	23,707	20.9

나. 일반회계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전년보다 1.6% 감액된 1조 3,249억 원, 세출이 전년보다 2.8% 증액된 4조 2,936억 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 449조 5,267억 원에 대한 점유율은 세입이 0.3%, 세출이 1.0%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2,936억 원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된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이 67.4%인 2조 8,947억 원, 교정활동이 10.4%인 4,468억 원, 검찰활동이 8.2%인 3,502억 원, 범죄예방활동이 3.8%인 1,644억 원이며, 기타 법무활동·인권활동·출입국관리·법무교육훈련 등 7개 프로그램이 10.2%인 4,375억 원이다. 주요 경비별·사업비별·프로그램별 예산 내역은 〈표 1-22〉 내지 〈표 1-23〉과 같다.

| 표 1-22 |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 (B)	2023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4,176,002	4,176,002	4,293,578	117,576	2.8
인 건 비	2,535,242	2,535,242	2,621,040	85,798	3.4
기 본 경 비	155,022	155,022	159,954	4,932	3.2
사 업 비	1,391,538	1,391,538	1,426,463	34,925	2.5
기금전출금	94,200	94,200	86,121	△8,079	△8.6

| 표 1-23 |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3 예산		2024 예산 (B)	2023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391,538	1,391,539	1,426,463	30,925	2.5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4,112	4,112	4,022	△90	△2.2
• 국가배상금지급	100,000	100,000	100,000	-	-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287	287	658	371	129.3
• 기업환경지수 개선	223	223	253	30	13.5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4,341	4,341	5,162	821	18.9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3,271	3,271	3,400	129	3.9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1,274	1,274	820	△454	△35.6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773	773	744	△29	△3.8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	4,499	4,499	5,197	698	15.5
• 통일대비법률통합 실질화	692	692	766	74	10.7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39	239	278	39	16.3
• 법률구조	59,795	59,795	64,817	5,022	8.4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4,846	4,846	4,998	152	3.1
• 인권교육	214	214	204	△10	△4.7
• 아동인권 증진	265	265	245	△20	△7.5
• 국제인권역량강화	226	226	241	15	6.6
• 이민정책개발지원	390	390	386	△4	△1.0
•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2,268	2,268	2,562	294	13.0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 운영	48,462	48,462	51,419	2,957	6.1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입대체경비	4,657	4,657	5,757	1,100	23.6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5,175	25,175	24,608	△567	△2.3
• 외국인보호관리	19,736	19,736	22,287	2,551	12.9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4,026	14,026	15,427	1,401	10.0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9,812	9,812	11,132	1,320	13.5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	10,532	10,532	10,754	222	2.1
• 검찰청시설운영	81,894	81,894	82,041	147	0.2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873	7,873	7,924	51	0.6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9,336	9,336	11,021	1,685	18.1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2,509	2,509	2,701	192	7.7
•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R&D)	2,677	2,677	-	△2,677	순감

사 업 명	2023 예산		2024 예산 (B)	2023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25,743	25,743	25,457	△286	△1.1
•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기술 연구개발 (R&D)	-	-	1,800	1,800	순증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31,164	31,164	36,839	5,675	18.2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9,774	9,774	10,419	645	6.6
• 형사부 등 수사지원	85,894	85,894	86,475	581	0.7
• 공공수사	3,109	3,109	3,276	167	5.4
•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12,549	12,549	14,644	2,095	16.7
• 마약수사	4,857	4,857	8,204	3,347	68.9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4,290	4,290	3,481	△809	△18.9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6,307	6,307	6,252	△55	△0.9
• 공판활동지원	2,561	2,561	2,037	△524	△20.5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7,300	7,300	7,262	△38	△0.5
• 형사보상	40,000	40,000	40,000	-	-
• 형사법정비	350	350	349	△1	△0.3
•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 지원	-	-	381	381	순증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743	743	728	△15	△2.0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56	156	158	2	1.3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5,504	5,504	5,275	△229	△4.2
• 교도소행정지원	46,644	46,644	48,515	1,871	4.0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107,682	107,682	100,834	△6,848	△6.4
•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14,575	14,575	16,459	1,884	12.9
•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52,286	252,286	269,102	16,816	6.7
• 교정교화	10,537	10,537	11,920	1,383	13.1
•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12,313	12,313	15,568	3,255	26.4
•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기술 연구개발사업 (R&D)	-	-	877	877	순증
• 소년원생수용	25,217	25,217	26,887	1,670	6.6
• 청소년비행예방	5,820	5,820	5,447	△373	△6.4
• 갱생보호활동	44,519	44,519	48,124	3,605	8.1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11,721	11,721	12,680	959	8.2
• 보호관찰활동	14,002	14,002	16,114	2,112	15.1
• 전자감독	30,677	30,677	32,427	1,750	5.7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7,449	7,449	6,271	△1,178	△15.8
• 특별감찰활동	399	399	404	5	1.3

사 업 명	2023 예산		2024 예산 (B)	2023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 연수원시설관리 및 운영	4,705	4,705	5,032	327	7.0
•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1,745	1,745	1,605	△140	△8.0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51	151	137	△14	△9.3
• 신임검사양성 및 교육지원	1,188	1,188	1,008	△180	△15.2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613	613	608	△5	△0.8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120	120	120	-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10,086	10,086	17,993	7,907	78.4
• 정보기획지원	33	33	33	-	-
• 양성평등정책 지원	253	253	233	△20	△7.9
• 정책연구개발사업(R&D)	40	40	-	△40	순감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41,011	41,011	39,117	△1,894	△4.6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807	807	800	△7	△0.9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6,641	6,641	7,096	455	6.9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48,509	48,509	29,722	△18,787	△38.7
•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22,360	22,360	10,843	△11,517	△51.5
• 법무부 기록관 운영	4,730	4,730	7,626	2,896	61.2

| 표 1-24 | 프로그램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 예산		2024예산 (B)	2023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4,176,002	4,176,002	4,293,578	117,576	2.8
• 법무활동	119,711	119,711	121,300	1,589	1.3
• 인권활동	65,346	65,346	70,505	5,159	7.9
• 출입국관리	135,058	135,058	144,332	9,274	6.9
• 검찰활동	338,187	338,187	350,182	11,995	3.5
• 국제법무활동	6,403	6,403	6,542	139	2.2
• 교정활동	431,724	431,724	446,830	15,106	3.5
• 범죄예방활동	151,718	151,718	164,395	12,677	8.4
• 특별감찰관활동	997	997	914	△83	△8.3
• 법무교육훈련	7,789	7,789	7,782	△7	△0.1
•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2,824,869	2,824,869	2,894,675	69,806	2.5
• 기금전출금	94,200	94,200	86,121	△8,079	△8.6

다. 교도작업특별회계

2024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1,205억 2,9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작업생산품 판매수익 643억 4,300만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65억 6,000만 원, 작업부산물 판매수입 등 잡수입 3억 6,900만 원, 기금예탁원금회수 465억 원, 기금예탁이자수입 26억 5,400만 원, 국고금 환급금 1억 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5억 9,900만 원, 교도작업 586억 5,100만 원, 직업훈련 41억 6,400만 원, 시설보완 44억 7,50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526억 4,000만 원으로 〈표 1-25〉와 같다.

| 표 1-25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부내역

가. 세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 예산		2024예산 (B)	2023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21,479	121,479	120,529	△950	△0.8
기타경상이전수입	103	103	103	-	-
교 도 소 수 입	64,343	64,343	64,343	-	-
기 타 잡 수 입	369	369	369	-	-
전년도세계잉여금	9,840	9,840	6,560	△3,280	△33.3
기금예탁원금회수	45,000	45,000	46,500	1,500	3.3
기금예탁이자수입	1,824	1,824	2,654	830	45.5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3 예산		2024 예산 (B)	2023 대비		내 역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21,479	121,479	120,529	△950	△0.8		
교 도 작 업	55,455	55,455	58,651	3,196	5.8	• 작업재료비 • 기타보전금 • 일반수용비 등	25,612 24,094 8,945
직 업 훈 련	3,964	3,964	4,164	200	5.0	• 실습재료비 • 자산취득비 • 일반수용비 등	1,531 1,105 1,528
시 설 보 완	6,564	6,564	4,475	△2,089	△31.8	• 작업장 신축 등 • 작업장비구입비	3,022 1,453
기 본 경 비	579	579	599	20	3.5	• 운영비 등	599
공 공 자 금 관 리 기 금 예 탁	54,917	54,917	52,640	△2,277	△4.1	• 예탁액	52,640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4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동일하게 1,370억 5,400만 원이며, 수입은 기타재산수입 4억 1,700만 원, 변상금 17억 9,700만 원, 기타경상이전수입 27억 1,7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460억 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61억 2,100만 원이며, 지출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475억 9,700만 원,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373억 5,400만 원,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36억 200만 원, 운영비 4,800만 원, 예수원금상환 25억 원, 예수이자상환 4,900만 원, 여유자금 458억 5,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 1-26〉과 같다.

| 표 1-2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세부내역

가. 수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3 기금		2024 기금 (B)	2023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13,347	113,347	137,054	23,707	20.9
기타재산이자수입	417	417	417	-	-
변 상 금	1,552	1,552	1,797	245	15.8
기타경상이전수입	2,373	2,373	2,717	344	14.5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4,805	14,805	46,002	31,197	210.7
일반회계전입금	94,200	94,200	86,121	△8,079	△8.6

나. 지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3 기금		2024 기금 (B)	2023 대비		내 역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13,347	113,347	137,054	23,707	20.9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41,363	41,363	47,597	6,234	15.1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 구조금 등 5개 사업
여가부 범죄피해자보호	37,537	37,537	37,354	△183	△0.5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3,773	3,773	3,602	△171	△4.5	• 신변보호장치 및 임시숙소 지원 등
운 영 비	48	48	48	-	-	
예수원금상환	2,500	2,500	2,500	-	-	
예수이자상환	85	85	49	△36	△42.4	
여 유 자 금	28,041	28,041	45,851	17,810	63.5	

2. 시 설

시설담당관실 사무관 박주선

가. 개 요

법무시설이란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청사시설로 검찰청과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등을 말하며 법무부에는 검찰청사 67개, 보호관찰소 66개, 소년원 및 비행예방센터 30개, 교정시설 58개, 출입국관리사무소 45개 등 총 271개의 법무시설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5년 단위 중기사업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기관과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을 우선으로 확충하여 매년 5~6개 정도의 법무시설을 개청해 나가고 있다.

나.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시설 조성

법무시설 조성 시 지역주민 및 수요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법무시설 청사 외곽 담장 낮추기, 체육시설 주민개방, 교정시설의 청사 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주벽과 녹지 가꾸기 등으로 주민친화형 법무시설을 조성하였고, 사용자 및 외부전문가 만족도 조사, 소속기관 정책체험 등을 통한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공사관계자 간담회, 시기별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기기 적용 등 에너지 1등급의 친환경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다.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2024년 신규사업은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 울산보호관찰소 증축, 거창보호관찰소 신축 등 총 8개 사업을 착공하였다. 계속사업은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등 11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법무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비는 총 1,699억 원으로 검찰시설에 516억 원(30.3%), 보호시설에 118억 원(6.9%), 교정시설에 871억 원(51.4%), 출입국외국인시설에

194억 원(11.4%)을 집행하였다.

2024년도에 시행한 주요 법무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다.

| 표 1-27 | 2024년도 주요 법무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공 사 명	규 모(㎡)		소요예산 (총사업비)	공 사 기 간
		부 지	건 물		
신규 (8)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	23,402	16,774	576	2024. 08월 ~ 2026. 11월
	울산보호관찰소 증축	기존	2,536	70	2024. 01월 ~ 2025. 07월
	거창보호관찰소 신축	3,300	1,179	48	2024. 03월 ~ 2025. 08월
	진주교도소 수용동 증축	기존	1,800	63	2024. 01월 ~ 2025. 07월
	군산교도소 수용동 증축	기존	1,800	63	2024. 01월 ~ 2025. 07월
	제주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기존	746	25	2024. 03월 ~ 2025. 02월
	광주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기존	1,553	40	2024. 01월 ~ 2025. 03월
	순천교도소 수용동 증축	기존	1,602	60	2024. 03월 ~ 2025. 10월
계속 (11)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200,319	41,709	1,535	2022. 06월 ~ 2025. 08월
	법무부 기록관 신축	7,048	18,031	464	2020. 12월 ~ 2024. 01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증축	기존	2,843	84	2022. 10월 ~ 2024. 09월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기존	3,648	87	2022. 12월 ~ 2024. 06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9,035	17,633	1,055	2023. 12월 ~ 2026. 05월
	춘천소년원 재건축	기존	7,795	281	2023. 01월 ~ 2025. 03월
	울산구치소 수용동 증축	기존	2,000	81	2023. 11월 ~ 2025. 05월
	춘천교도소 수용동 증축	기존	2,307	78	2023. 01월 ~ 2024. 04월
	논산지소 수용동 증축	기존	2,156	85	2023. 12월 ~ 2025. 08월
	청주출입국사무소 증축	기존	720	24	2023. 02월 ~ 2024. 04월
	안산보호관찰소 재건축	기존	5,034	154	2022. 10월 ~ 2024. 10월

法務年鑑

02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제2절 정책홍보 업무
제3절 법무업무
제4절 검찰업무
제5절 범죄예방업무
제6절 감찰·감사업무
제7절 인권업무
제8절 국제법무업무
제9절 교정업무
제10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제11절 인사정보관리단

제1절 기획조정업무

1.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원경

가. 개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를 목표로 ① 부처 간 협력 강화 및 국정과제·현안 추진 지원, ② 신속·효율적인 조직 관리, ③ 자율과 책임 기반의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 ④ 신뢰받고 투명한 조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한 정기직제·수시직제 증원 및 기구 신설,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정원 감축, 자율기구 운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 조정 등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경과

1)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2024. 3월 법무부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을, 변호사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부산소년원에 신축 생활관 감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터미널 확장에 따른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에 체류관리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을 각각 증원하며, 교도소·구치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원 117명(7급 51명, 8급 6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51명, 7급 66명)하면서 정원 5명(9급 5명)을 감축하였다.(2024. 3. 26.)

다부처 협업 추진 과제로 '24. 6월 법무부 인권국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되,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1명, 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각각 충원하였다.(2024. 6. 25.)

2)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감축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통합활용정원 관리 대상으로 정원의 5%인 548명을 발굴하였고(2022년) 5년간 매년 1%씩 감축할 예정으로 2024. 12월에는 본부 7명, 소속기관 102명 등 모두 109명을 감축하였다.(2024. 12. 30.)

3) 자율기구 운영

국정과제 및 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율기구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팀」(2024. 6. 25. 신설) 및 「교정정보 빅데이터팀」(2024. 6. 3.)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팀」은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관련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중·장기 계획 수립, 원스톱 지원체계 참여기관 종사자 통합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기구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설치하여,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교정정보 빅데이터팀」은 누적 수용자 약 300만명(2024. 4월 기준)의 방대한 교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연계·활용할 목적으로, 2024. 6. 3. 신설되어, 현재 교정정보 시각화 구현 사업, 교정행정 비정형데이터 활용 정책연구용역 추진,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수용단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재범 위험성 계측 등 법무행정 분야 전반과 연계한 실효적 사회 안전 체계 조성에 기여하였다.

다. 향후 계획

부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문제해결형 정부조직관리를 목표로 ① 국정과제 성과창출 뒷받침, ② 자율·책임에 기반한 탄력적 조직 운영, ③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직 관리 ④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법무행정 수요 변화 및 필수·추가적인 인력 수요 등을 검토하여 정기직제 및 수시직제를 통해 조직·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법무행정 분야 인력 운영을 최적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지상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정부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의거, 법무부는 매년 실·국·본부와 협력하여 법무부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3대 추진전략, 8개 중점과제 분야에서 37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주축으로 실·국·본부 실무진으로 구성된 '정부혁신 실무지원단'을 운영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실국본부 주무과장 등이 참석하는 '정부혁신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에 더해 법무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결성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제시 등 혁신성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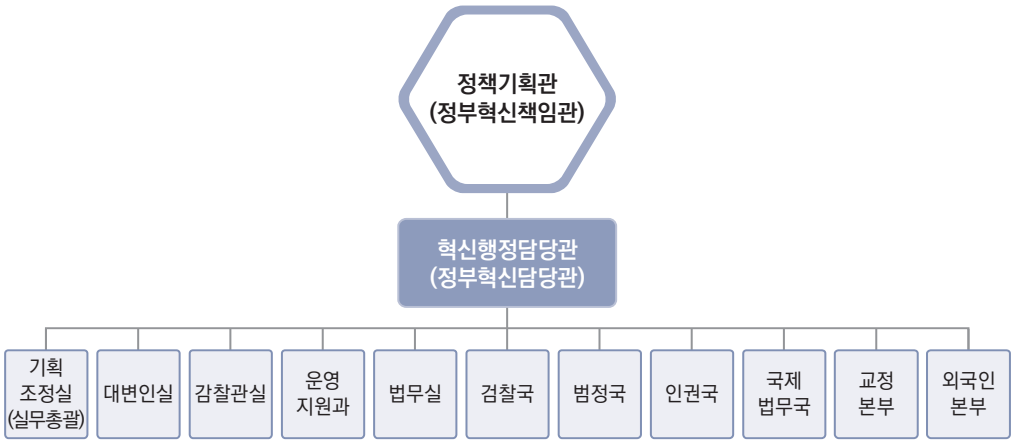
| 그림 2-1 | 정부혁신 3대 전략 및 정부혁신 어벤져스 정기회의



정부혁신 3대 전략과 중점과제

정부혁신 어벤져스 정기회의(2024. 7. 11.)

| 그림 2-2 | 정부혁신 추진 실무단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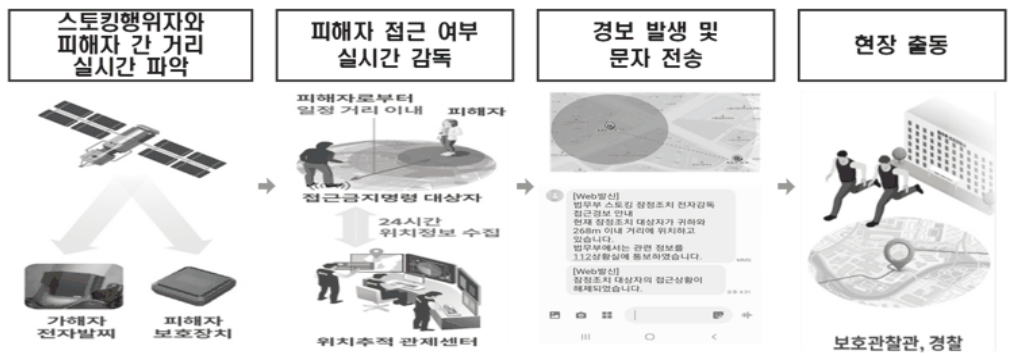
나. 주요 혁신 성과

1)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개발로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범죄의 경우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무부는 스토커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스토커 위치를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2024. 1. 12.)

이를 통해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접근에 성공한 사례가 2024. 12월 기준, 단 1건도 없는 등 강화된 보호시스템 구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 그림 2-3 |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개발



2)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축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보호제도 및 복잡한 지원조건 등으로 피해자가 온전히 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14개 기관의 복합적인 지원을 한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였다.(2024. 7. 22.)

센터 개소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만하게 일상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4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설 전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설 후

3) 'Global Fellowship', 청년·예비법조인을 국제법무 전문가로 양성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청년·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국제법무업무 실무 기회를 제공하는 Global Fellowship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예비법조인을 유럽(방산·원전 특성화), 중동(건설·인프라 특성화), 아시아(공급망·무역통상 특성화) 등 주요 권역 소재 최정상급 로펌, 국제기구 등에 파견하여 최대 1년간 실무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제분쟁 소송 대응역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 그림 2-5 | 예비법조인 Global Fellowship 과정 신설



제1회 청년법조인 Global Fellowship(2024. 7. 29.) | 한국·홍콩 법률지원 설명회 공동 개최(2024. 7. 30.)

4)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통한 변호사 시험 제도 선진화

응시자·채점위원 편익 증진, 교육현장·실무에서의 컴퓨터 활용 확대 반영, 변호사시험 제도 선진화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 Computer-Based Test)을 논술형 국가시험 최초로 구축·도입 하였다.(2024. 1. 9.)

2024.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CBT를 처음 시행한 결과, 손목 피로 및 악필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며 응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과 동시에 입법고시, 행정고시, 일본 법무성 등에서 벤치마킹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수험생 등의 이해도·만족도 제고 및 선진화된 시험 제도 정착에 기여하였다.

| 그림 2-6 |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변호사 시험에 CBT 도입 및 시행



변호사시험 CBT 도입 전후 비교



변호사시험 CBT 평가 절차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3. 더 나은 법무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지상균

가. 추진배경

그동안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무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하였다. 또한 법무부 비전인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과 민생 보호 등 법무부 내·외부 영역에서 적극행정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과감한 ‘2024년 법무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을 통해 부(部)내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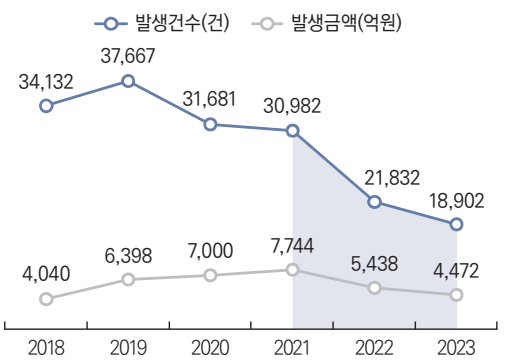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이 안전한 나라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적극행정 노력

국민의 안전한 일상 보호를 위해 민생범죄에 강력 대처하였고,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산업계 지원을 위한 비자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이민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등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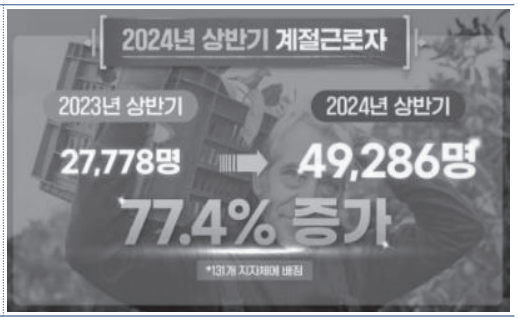
| 그림 2-7 | 국민의 안전한 일상 보호를 위해 민생범죄에 강력 대처

- 급증하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사진, 음란물 합성)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검사를 확대 배치(18→31개 청)
  * 구속 수사, 불법영상물 삭제 등 2차 피해방지, 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지원
- 스토커 접근 시 위치정보 자동알림 시스템을 운영
  * 피해자·본인, 경찰·보호관찰관에 즉시 통지, 대응
-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려 보이스피싱 범죄(검찰수사관 사칭 총책 등 645명 검거), 전세사기 범죄(악성 임대인 등 8,323명 검거)를 엄단



| 그림 2-8 |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산업계 지원 위한 비자정책을 추진

-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 국제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6,900억원대 F-35k 전투기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 승소(2024. 6월)
- 비자요건 완화를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요양보호사, 송전전기원 등)과 농·어촌(계절근로자, 전년대비 77.4% 증)에 외국인 인력 공급을 확대
- 지역·산업계 만성적 구인난 해소,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력 도입 로드맵을 마련(2024.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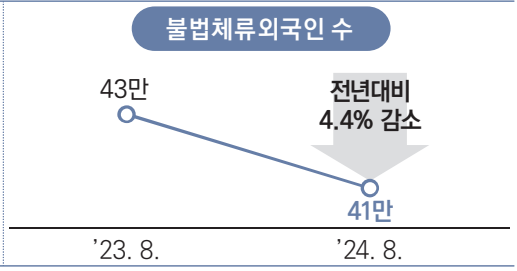
| 그림 2-9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

-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최적의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연계·지원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센 센터'를 서울에 개소(2024. 7월)
  * 14개 기관 분산 지원 → 통합 지원, 전국확대 예정
- 사망자 유족까지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
  * 국선전담변호사, 진술조력인 확충, 감형위한 기습공탁 등 형사 공탁제도 악용 방지



| 그림 2-10 | 이민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등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

-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확대(산업안전, 법질서 등)
-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 특별 자진출국제도 운영 등 불법체류자(전년대비 4.4% 감소)에 대해 엄정 대응



2) 적극행정 국민 소통창구 마련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였다. 법무행정 분야별 정책고객 및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은 적극행정 아이디어 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심사 및 개인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적극적 홍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의 국민 체감도 제고에 일조하였다.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직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직원 16명을 선발하고, 발굴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적극 추진하였다.

| 표 2-1 | 2024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16개 사례)

구분	등급	우수사례명	기관(부서)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개발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다.	전자감독과
		불필요한 서류는 Down! 편리함은 UP!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기존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상사법무과
	우수상	적극적인 비자제도 개선으로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다	체류관리과
		수형자 외부통근 작업으로 부족한 농촌 근로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다	거창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26명 응시생 전원합격, 만점자 배출에 이어 입시 준비까지	서울남부교도소
		민통선 마을 어르신을 위한 이·미용, 복약지도 등 서비스 제공으로 소외지역 국민 생활 편의 증진	의정부보호관찰소
		악질적인 불법추심, 그 마수로부터 채무자의 가족과 관계인을 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난민인정심사에 화상 면접을 도입하여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접근권 향상으로 인권 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난민정책과
	장려상	- 장맛은 업(UP), 예산은 다운(DOWN) -	공주교도소
2024년 소·확·행 직원선발	범죄예방 정책국	외국인 통·번역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외국인 조사서 내실화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자가학습 교육영상물 자체 제작·활용하여, 기소유예 교육 개별 집행 및 인권신장 도모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교정본부	외국인 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한 노력	강릉교도소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SNS 홍보를 통한 범죄예방	수원구치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친절과 공감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하는 국적 업무 전문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통역인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4)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부(部)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다각화 노력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이러닝 교육 이수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최우수 사례의 난관 극복 과정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우수공무원 특강을 진행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행정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11 |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강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나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4. 법무행정개선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지상균

가. 추진배경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실현 지원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민·안전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국민눈높이를 충족하고 조직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 '소통·조화·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가) 변화관리 교육

창의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향상을 위해 ①전화외국어, ②전자도서관, ③온라인 자기개발, ④독서증진, ⑤오디오북, ⑥워크숍 및 학습동아리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나) 직무 워크숍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청렴, 지식행정 등 직무역량강화 워크숍(6개, 48백만원)을 실시하고 심리치료 연구회, 바른급식사랑방 등 우수 학습동아리(7팀, 6백만원)를 지원하였다.

| 표 2-2 | 2024년도 교육과정 운영(2개 분야 7개 과정, 8,605명 참여)

구 분	과 정 명	대 상	인원	시기	비고
창의역량 강화	① 오디오북	전 직원	2,000	6~11월	6회
	② 전자도서관(e-book)	전 직원	-	연중	
	③ 독서증진	전 직원	2,400	6~11월	6회
	④ 온라인자기개발과정	전 직원	1,400	6~11월	3회
직무역량 강화	⑥ 전화외국어	전 직원	705	6~11월	3회
	⑦ 워크숍(6개)	전 직원	402	5~12월	
	⑧ 학습동아리지원	우수 학습동아리(7팀)	1,698	연중	
합계	7개 과정		8,605		

※ 우수학습동아리 활동회원(1,698명)

- 바른급식사랑방(370명), 전작감독(980명), 심리치료 연구회(207명), 난민연구모임(17명), 관제센터 행정발전 및 사례 연구동아리(40명), 우수사례 연구모임(69명), 청년출입국 6기(15명)

2) 국민·안전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가)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

현장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하여 자체 '행정개선 관리시스템'을 운영, 2024년 894건의 행정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총 159건을 채택하였으며, 제안자의 소속기관에 행정개선 마일리지 부여 등 우수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여 행정제도개선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었다.

나) 행정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창의적 분위기 조성

2024년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스토커 접근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개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변호사 시험에 CBT 도입 및 시행',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축' 등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행정제도 개선 추진력 확보 및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 그림 2-12 |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 표 2-3 | 자체 우수사례 내용

번호	분야	우수사례	등급	기관(부서)
1	범죄예방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개발로 피해자 보호 강화	최우수	전자감독과
2		민·관 협업을 통한 정신질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처우 개선	우수	서울북부보호관찰소
3		지자체(대한노인회 등) 협업을 통한 노인인력 확보 및 예산절감	장려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
4		보호관찰소, 환경파괴의 주범인 생태계 교란종 퇴치에 앞장서다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5	법무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변호사 시험에 CBT 도입 및 시행	우수	법조인력과
6		「Global Fellowship, 청년·예비법조인을 국제법무 전문가로 양성하다		국제법무지원과
7	인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축	우수	인권구조과
8	출입	체류민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우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9		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도입	장려	난민정책과
10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제공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11		국적 심사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 시행		국적과
12	교정	자살예방책자 활용으로 수용자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만들기	우수	부산구치소
13		지역소멸 위기 지역특화형비자가 막는다	장려	체류관리과
14		교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보안과
15		디지털 안면인식 출입통제시스템 도입		대구교도소
16		농촌일손제공형 외부통근작업 운영		거창구치소
17		동정관찰 사례 및 특이수용자 입소 보고 모음집		밀양구치소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및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문화개선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통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 조직문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 '구성원 간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 등이 있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 추진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변기선

가. 추진배경

정부는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를 추진하였으며, 법무부는 이에 부응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의 적극적 처리, 타 부처 소관 민원의 신속한 이송,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안전한 민원환경의 구축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신문고 민원 등 신속하고 내실 있는 민원 처리

법무부에 접수·처리된 민원은 총 34,680건으로, 그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83.7%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2-4 | 법무부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2024. 1. 1. ~ 2024. 12. 31. 기준)

구분	계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우편, FAX, 방문접수 접수·처리
건수	34,680	29,010	5,670

법무부는 민원의 접수·배부·이송·처리 등 전 단계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는 한편,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 민원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2)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

행정복지센터·대학교 등 민원사무와 관련된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민원 제도 및 정책 31건 발굴,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지 입증서류 면제' 등 3건을 개선 완료하였고,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민원 끝까지 챙기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3) 국민청원제도 운영 개선

법무부는 2024년에 총 2,468건의 국민청원을 접수하여, 2,355건의 청원을 처리하였다. 대부분의 청원은 2022년 개편한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접수(약 99.5%)하였으며,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한 청원은 총 12건에 불과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청원 접수·처리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총 38차례 청원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개·비공개 청원을 심의하였고, 이 중 136건은 온라인청원시스템에서 30일간의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1,692명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4) 국민제안 활성화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2024년 접수된 총 1,512건의 국민제안 중 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 「모의교도소」 운영 방식 개선' 등 11건을 채택, 5건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였고,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표 2-5 | 국민제안 주요 반영사례

연번	개선사항
1	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모의교도소」운영 방식 개선
2	법무부 홈페이지 하단 민원지원 페이지 연결기능 제공
3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인증방식 확대
4	법무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알림판 코너 개선
5	법무부 홈페이지의 국정비전 슬로건 바로가기 기능 구축

5) 민원행정 서비스 점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민원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위해 '2024년도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및 '제1·2차 민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33점으로 전년도 대비 0.34점 하락하였으며, 일반민원에서는 접근용이성(8.33점)이, 인터넷민원에서는 민원 처리 시간이(7.58점)이 가장 낮게 나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민원응대 친절도는 100점 만점 기준 88.0점으로 전년도 대비 0.3점 상승하였으며, 업무 숙지도 항목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100.0점)를 받았으나 응대 친절성(79.1점), 경청 태도(77.5점) 등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는 BSC 공동지표 평가점수로 반영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본부 및 소속기관에 결과를 공유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게 하고 미흡 사례는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민원 지도 점검은 교정시설·출입국기관·소년보호시설 등 7곳의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민원사무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 현지 지도, 시정조치하고 각 기관에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국민 개개인의 권익보호의 중요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신문고·국민제안·온라인 청원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국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윤영신

가. 추진배경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투자·일자리, 민생, 복지, 신산업, 지역발전, 탄소 등 6대 분야 추진을 통해 킬러규제 지속적 혁파,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맞추어 국민 경제 활력을 위한 현장에 맞는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 경제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전자화된 비즈니스 지원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나. 추진내용과 성과

1) 경제 활력을 위한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계와 산업현장 및 지자체 등 의견을 대폭 반영한 '新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지자체와 민간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및 과학·체계 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력의 체계적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산업계의 지속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항공기 제조업, 요양보호사, 송전선로건설 분야의 외국인 특정활동 비자(E-7)를 신설하고, 호텔사무원 등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제도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외국인 인구 유입 요청에 맞추어 지역특화형 비자 정식 시행,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숙련기능인력(E-7-4) 지침을 개정, 광역형 비자 제도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연구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기술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비자 특별비자'를 신설하였으며,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방안 마련을 위해 구직비자 기한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 경제활동 걸림돌 제거를 위한 규제 개선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여 일부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꼼수 방지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에 대응하였으며,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채무자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6월간 생계비 상한을 현행 정액 기준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3)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전자화된 비즈니스 지원

국민들의 법인 등기 등 처리에 있어 불편 해소를 위해 모바일 등기신청 등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등 4개 복합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컴퓨터 작성방식(CBT) 변호사시험 프로그램 방식 변호사시험의 첫 정식 도입으로 제13회 변호사시험을 무사히 성료하는 등, 전자화된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령, 제도 등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불편·부담해소 등 규제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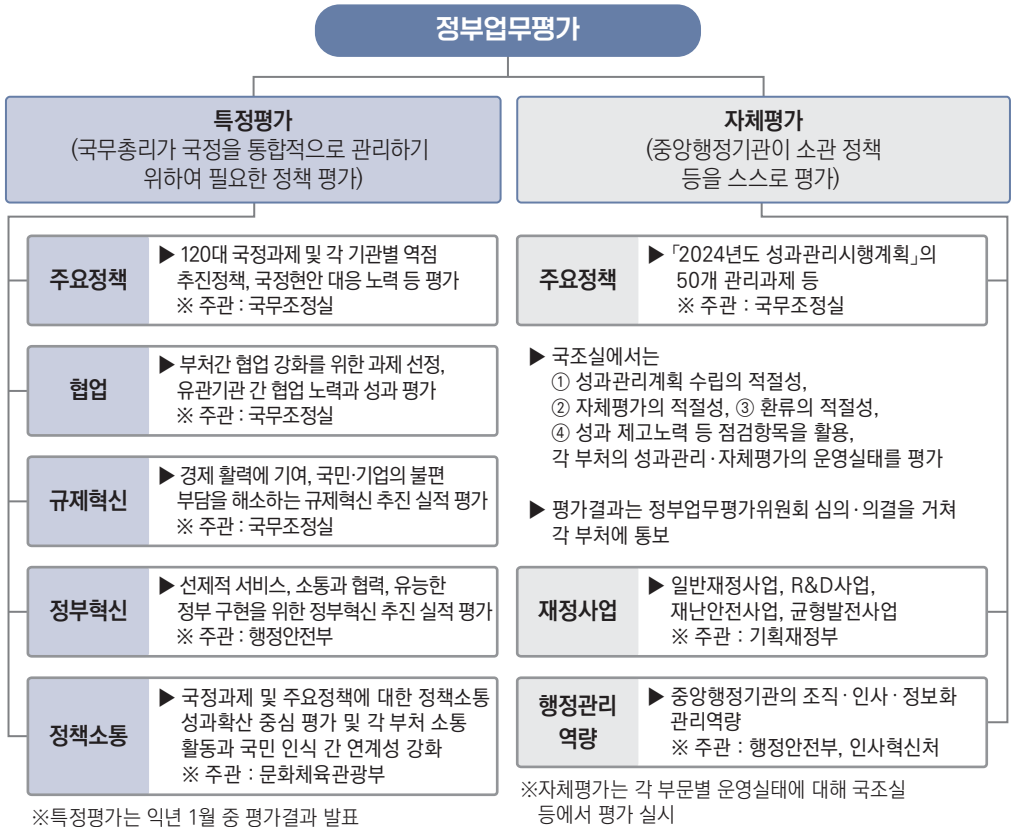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재륜

가. 정부업무평가

국무조정실에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등 주요업무 분야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기관별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부분으로 구분되며, 평가부문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2-13 |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특정평가

법무부에서는 평가방향, 부문별 평가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가) 주요정책 부문

과제명	주요성과	보완사항
1. 범죄로부터 민생 보호 및 법질서 확립	•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개선, 대검 내 '온라인 도박 수사지원팀' 신설 •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집단 의율 및 중형선고, 범정부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 무기한 연장 시행 • 보이스피싱 해외 총책 등 검거 및 합수단 운영 연장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사 강화방안 마련 • 소년원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 개편 등으로 실효적 재범방지 대책 수립 • 선거 관련 폭력행위 엄정 대처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전체 입건 3,101명 중 1,019명 기소(폭력사범 364명 입건, 184명 기소) •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전자문서 기반의 차세대KICS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개통	• 범죄수익 환수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2.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 민생토론회 법률지원팀 구성하여 법령 제·개정 관련 쟁점 검토, 법령 제·개정안 성안, 국회 논의 등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법」등 82건에 법률지원 •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분산적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마련 • 주주보호를 위한「상법」개정 추진 •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 비자 확대를 통해 우수인재 초청 활성화 • 구인난 심화 산업분야에 외국인력 도입 지원, 지역특화비자 정식 사업 실시 • 방위사업청과 협력하여 6,900억원 대 F-35k 전투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 • 법인 등기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쇄하고, 모바일을 통한 법인등기 전자신청 도입	• 국내체류 외국인을 포함, 외국인력의 종합적·체계적 활용대책 마련
3. 배려와 포용의 따뜻한 인권정책	•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의 악용 방지를 위한「형사소송법」및「공탁법」개정 •「출입국관리법」개정안 국회 제출 및 개방형 보호시설 추가 등 보호외국인 인권 침해 요인 최소화 • 체류 유형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확대,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 컨설팅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2회) •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한 수용공간 확충 및 시설 현대화(대구교도소 이전 등) • 장애인 전용 조사장비 도입 및 조사실 리모델링 • 수용자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 훈련 시행(전국 36개 기관, 5,897명)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효율적인 지역 확대 및 확산 방안 검토 필요

나) 협업 부문

과제명	주요성과	보완사항
1. 국내 체류외국인 육아·가사분야 활동 허용 시범사업	•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내체류외국인을 활용하여 육아·가사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시도 • 저출산 현상의 완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 시도 및 사회적 논의 활성화 •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결혼이민자 가족 등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방안을 검토하여 정책참여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 (법무부) 관계부처 회의 개최 및 연락체계 구축, (고용부) 가사서비스 교육 콘텐츠 제공, (여가부) 육아교육 콘텐츠 제공, (교육부) 유학생 설문조사 지원 등 • 종사자 기본요건에 범죄경력 조회를 추가하여 아동(성)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이용자와 근로자 간 상호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육아·가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처별 역할 정립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필요
2. 유관기관 간 원팀(One-team) 협력으로 마약범죄 총력 대응	• 범정부적인 합동수사 체계 강화를 통한 마약 범죄 수사·단속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활성화 •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제도 활성화 • 치료보호기관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 및 비용 부담 완화 • 대법원에 마약범죄 양형 강화 필요성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강화된 양형기준 의결·시행 • 마약류 예방 교육·홍보 확대를 통한 올바른 마약류 인식 제고 • 입영판정검사 대상 전원 마약류 검사 실시로 군 내 마약류 유입 차단	• 마약범죄 적발 비중이 증가하는 젊은층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 필요
3.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계절형 외국인력 지원 협력	• 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 * '23년 132개 지자체 40,647명 → '24년 135개 지자체 67,778명 • 3개월 이상 고용이 어려운 영세농가도 농번기에 필요 인력을 초단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재배작목에 따른 연간 월별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배정심사 협의회를 조기 개최하는 등 부처 간 협업으로 탄력적인 정책 대응 추진 • 어업 분야 계절근로제 허용 업종을 추가하여 조업성수기 일손 부족 지원	•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통합플랫폼 구축 등 필요

다) 규제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규제개혁과제 6건 중 6건 완료 • 항공기제조업, 요양보호사, 송전선로건설 분야 외국인 특정활동 비자(E-7) 신설 및 호텔사무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제도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계 지속적인 인력난 해소 기여 • 일부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꼼수 방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채무자 개인 회생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경제활동 걸림돌의 제거를 위한 규제 개선 • 법인등기 등 처리 불편 해소를 위해 모바일 등기신청 등 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등 4개 복합 법률 개정하는 등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전자화된 비즈니스 지원	•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과제 발굴 노력 필요 •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수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라) 정부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문제를 잘 해결하고, 디지털로 일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적극 발굴·시행 – 정부혁신 실행계획 : 다른 부처와 차별화되는 우리 부만의 혁신과제 발굴(3개 분야 37개 과제) – 국민체감도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개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도입,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등 국민이 향상된 삶의 질과 안전망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사업 추진	•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유연한 혁신 행정 필요 • 정책 효율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필요

마) 정책소통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주요정책 소통 우수) 법무부 주요 추진 정책인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마약사범 재범 방지 캠페인을 외교부, 문체부, 행안부와 협업·추진, 장소·연령·시기를 고려하여 신문, SNS 활용, 기관장 언론 인터뷰 및 브리핑을 적극적으로 실시 • (신속한 언론 대응) 법무부 주요 현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언론보도에 정정·설명자료를 신속히 배포하여 언론 대응력 제고 • (우수한 SNS 콘텐츠 제작) 위치추적관제센터 소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설명,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정책 안내, 보호관찰관 홍보 등을 카드뉴스, 숏츠,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콘텐츠를 다각화하고 국민기자단 등과 협업으로 배포하여 국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	• 주요 정책에 대해 기관 간·부서 간 사전협의 추진체계 강화 필요 – 주요 정책 추진 이전에 각 부처에 정책내용을 사전에 공유·협의하여 기관 간 혼란을 방지하고 홍보 효과성 제고 필요 • 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만족도 지속적 제고 노력 필요

2) 자체평가

가) 주요정책 평가

법무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종합 반영한 50개의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정책 효과성, 정책 소통의 충실성 등 1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각 관리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7개 등급으로 평가하였으며, 1등급(매우우수)인 2개 과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사건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개소(2024. 7월)하여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비용 등의 소모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잠정조치를 시행(2024. 1월)하고 가해자 접근 시 피해자에게 위치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피해사례 0건으로 전자감독 제도의 높은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나) 재정사업 자율 평가

재정사업 자율 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과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해당된다.

우리 부는 32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6개(20%), 보통 21개(65%), 미흡 5개(15%)로 3단계 등급화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대외에 공개하였고, 미흡사업은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개선대책 및 지출구조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다) 행정관리역량 평가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조직, 인사, 정보화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직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인력운영 추이 및 대·내외의 행정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책방향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과제 및 역점 추진과제의 인력을 증원하여 정책 현안의 적극적 추진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정부조직 진단·컨설팅에 참여하여 조직운영체계,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인력 효율화·재배치를 실시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사분야에서는 국정과제 교육 및 연간 상시학습 이수율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고, 필수보직기간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공직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유연근무제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공직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였다.

다만, 교정·보호·출입 기관 등 공안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 비율이 높은 조직 특성상 계획 인사교류, 개방형·공모 직위 외부인사 임용률 등 일부 지표의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분야에서는 민간채널 협업으로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 추진 등 지능형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침해예방·대응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보안점검 대상 확대 등 선제적 보안 활동으로 정보보호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

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이란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에 이르기까지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주요정책 부문(국무조정실 주관)과 행정관리역량 부문(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 BSC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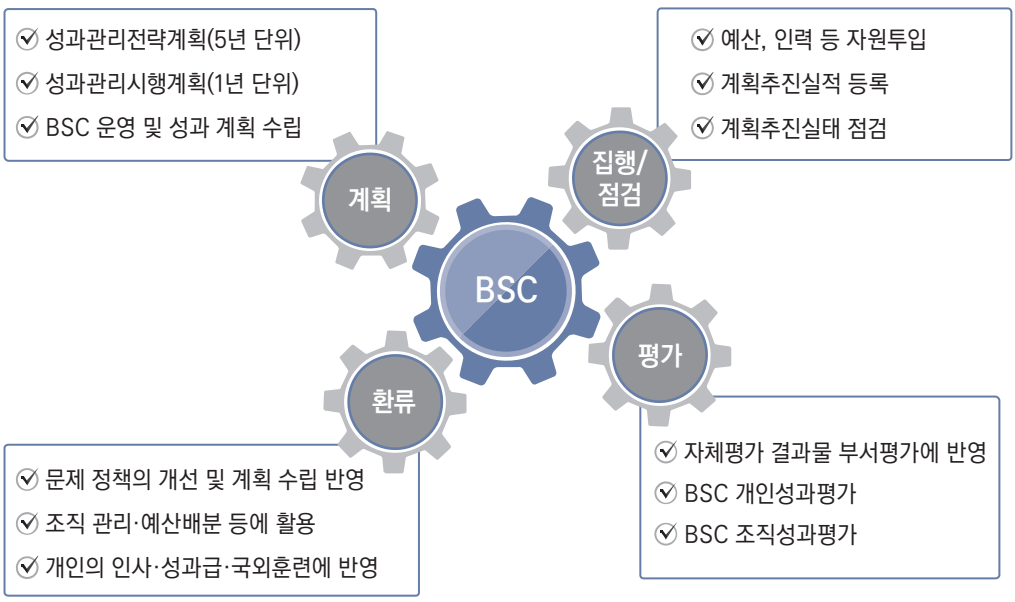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평가제도)는 조직의 임무, 비전, 전략·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고객, 정책, 행정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BSC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책 수립, 실적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법무부(본부 및 소속기관) 주요 정책 업무 추진을 위해 340개의 BSC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총 925개 부서 및 2만 4천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승진에 10%, 성과급에 20%~30%, 교육훈련에 10% 각각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14 | 성과관리와 BSC 체계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환희

가. 개 요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이 회의·행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한 지시를 정리·분류·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시와 의견이 정책과 업무추진 과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시사항 시달 시 소관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시사항별 추진계획 수립 및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기한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 시달되어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2024. 12월 말 기준, 총 35건으로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은 21건으로 2건을 이행 완료하고 13건을 이행 완료하고 8건은 추진중이며,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은 14건으로 12건을 이행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이다.

나. 지시사항 현황

1)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21건)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	이행상황
1	2022. 7월	비자정책의 유연화	종 료
2	2022. 7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추진중
3	2022. 7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추진중
4	2022. 7월	인권 보호 행정 추진	추진중
5	2022. 7월	부정부패 등에 대한 엄정 대응	종 료
6	2022. 7월	흉악범죄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추진중
7	2022. 9월	스토킹 관련 피해자 보호 강화	종 료
8	2023. 4월	마약 범죄 근절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	종 료
9	2023. 8월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종 료
10	2023. 9월	교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종 료
11	2023. 10월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및 연계범죄 근절	종 료
12	2023. 11월	불법사금융(민생약탈범죄) 척결	종 료
13	2024. 1월	게임시장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	종 료
14	2024. 2월	의료 분야 고소·고발 사건 처리 신중 등 수사절차 정비 방안 강구	종 료
15	2024. 2월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조치	종 료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	이행상황
16	2024. 2월	스타트업 법률 지원	종 료
17	2024. 4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 육아 분야 취업 확대	종 료
18	2024. 5월	노동법원 설치 방안 검토	추진중
19	2024. 8월	디지털 성범죄 실태 파악 및 수사 철저	추진중
20	2024. 10월	강정항 크루즈 출입국 심사 개선	추진중
21	2024. 10월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대책	추진중

2)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14건)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주관부처)	이행상황
1	2022. 7월	성희롱 피해자 등 보호에 만전 (여가부)	추진중
2	2022. 9월	대통령 순방(영미캐) 후속조치 만전 (외교부)	추진중
3	2022. 10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추진 (기재부)	종 료
4	2022. 12월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사업실태 점검 및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국조실)	종 료
5	2023. 1월	전세사기 대응 (국토부)	종 료
6	2023. 2월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 단속 (국토부, 경찰청)	종 료
7	2023. 3월	불법 콘텐츠 근절 위한 지원대책 마련할 것 (문체부)	종 료
8	2023. 4월	전세사기 대책, 지속 점검·보완 (국토부)	종 료
9	2023. 5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고용부)	종 료
10	2023. 6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국조실, 기재부, 권익위, 행안부)	종 료
11	2023. 6월	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마련 (국조실)	종 료
12	2024. 1월	개혁정부 (국조실)	종 료
13	2024. 5월	지출 구조조정 (기재부)	종 료
14	2024. 5월	정부정책 발표로 인한 혼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조실)	종 료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관 하헌

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

1) 비상대비 계획 수립·실시

전시 법무·검찰·보호·인권·교정 및 출입국관리 사무에 관한 계획인 『충무3600 법무부 집행계획』과 『충무6000 자체충무계획』을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와 전년도 을지연습 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또한, 소속기관 시행태세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117개 소속기관의 시행계획을 검토·승인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을지연습 실시

2024년도 국제정세는 파편화된 세계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증대하였다. 2022. 2. 24.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2023. 10. 7.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인해 중동에서의 분쟁도 격화되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법무부는 소속·공공기관과 함께 유비무환의 자세로 전시 대비 정부 총 연습인 을지연습을 2024년 8월 19일에서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 법무부는 전시 법무기능 수행의 심장부로서 전시 종합상황실의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중앙통제단 사건 등을 처리하는 도상연습과 전시 현안 과제 토의를 적극 실시하였다. 또한, 전시 우발상황 대응능력 숙달을 위해 군·경·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서울소년원에서 실시한 실제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관 내 테러, 생물학전, 화재 등 복합적 재난 상황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유관기관과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법무부는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체계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 법무행정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국가 안보태세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 그림 2-15 | 2024년 을지연습



장관 주재 일일상황보고



서울소년원 실제훈련

3) 소속 국가중요시설 지도·감독 강화

법무부 소관 53개 국가중요시설의 관리를 위해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소속기관 방호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시 종합상황실 운용태세를 점검하여 방호실태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한편 2024년에는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며 통합방위법규 개정 협의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가중요시설의 방호태세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평상시에도 소속기관은 물론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굳건한 통합방위 체제를 유지하였다.

나. 재난안전관리 효율성 강화

1) 『법무시설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2021년 법무시설 내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본부,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을 제정한 이후 2024년에는 급변하는 재난관리 환경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같은 대형재난 발생에 대한 국민의 요구사항,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에서 발굴한 보완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법무시설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최신화하였다.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법무시설 내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 및 『법무시설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점검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순으로 순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국립법무병원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기관 내 화재 발생 및 집단도주 등 복합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법무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재난발생 현장의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13개 협업기능 작동 및 매뉴얼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 그림 2-16 |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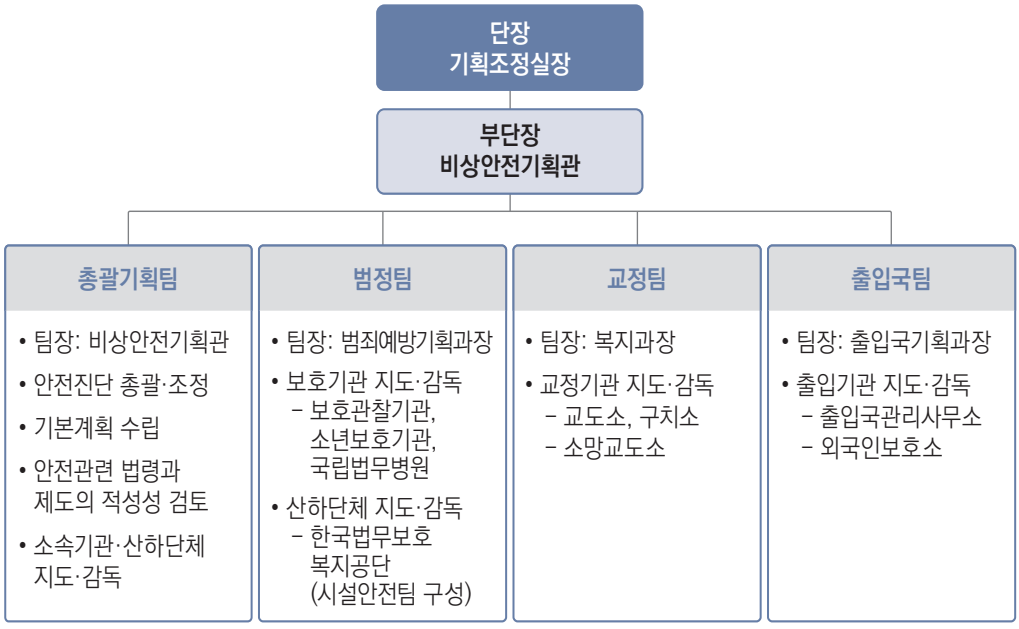


국립법무병원 현장 훈련

3)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주도로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사고발생 가능성과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 법무부는 C등급 이하 위험시설, 노후화 시설물, 사고우려시설 등 154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하였다. 민간전문가 233명, 전문업체 34곳과 협력하여 점검한 결과, 구조체 균열, 건축물 철근 노출 및 지붕 파손, 건축구조의 불안정성 및 옥상 누수 등의 결함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현장조치와 보수·보강작업을 실시하였다. 내실 있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7 | 법무부 집중안전점검 추진단 구성



4) 월간 재난안전결산 제도 운영

법무부는 재난안전 에방과 관련하여 매월 시의적절한 테마를 선정, 소속기관이 스스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월간 재난안전결산 제도를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5월 중점점검테마로 '풍수해 대비 시설물 점검'을 선정하여 점검을 완료하였는데, 그 결과 2024년 여름 대한민국을 폭격한 집중호우로부터 단순 누수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 없이 법무시설을 보호할 수 있었다. 또한, 11월에는 '폭설·한파 대비 시설물 점검'을 선정하여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설로 인한 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정된 중점테마 이외에도 일반 시설물·장비 및 매뉴얼 점검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5) 일일재난위험 징후평가 실시 및 결과 전파

법무부는 일 단위로 재난담당 전문기관 자료, 언론보도 등 재난과 관련한 각종 징후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일재난위험 징후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법무샘의 일일재난위험 신호등으로 전파함으로써 소속기관의 재난예방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 하였다. 만약, 위기징후가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위기 단계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법무시설 내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18 | 일일재난위험 신호등 법무샘 게재



법무샘 내 일일재난위험 신호등 배너



일일재난위험 신호등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가. 데이터·신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박상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행정데이터 및 연관된 데이터들을 수집·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반복 업무 프로세스를 업무자동화*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는 등 데이터·신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업무 수행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업무자동화(RPA : Robotic Process Automation) : 문서 복사, 붙여넣기, 자료검색, 파일 다운로드 등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동화 프로그램이 수행(소프트웨어 로봇)함

2) 추진내용과 성과

첫째, 법무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과제를 선정·수행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법무행정 보도자료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블로그, SNS 등 소셜미디어 반응분석', '마약사범 및 재활시설 현황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마약류 재활시설 취약 지수 산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데이터를 활용한 계절별·요일별·시간대별 상담특성 분석' 등 10종의 과제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으며, 별도로 '보도자료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 매뉴얼'을 작성·제공하여, 각 기관에서 보도자료 배포 후 소셜미디어의 반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행정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AI를 활용한 민관데이터 결합으로 보호관찰 업무 효율화' 등 10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업무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법무행정 업무 중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업무자동화기술(RPA)을 적용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재 법무부는 '사이버 위협정보를 수집하여 담당자에게 전송', '업무공통시스템 서비스 점검결과를 담당자에게 전송', '정보보안 중요 기사 수집 담당자에게 전송' 등의 5종의 업무에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업무자동화를 통해 '정보보안 중요 기사 수집·전송업무'의 경우 수행시간을 85%(연간 수작업 7,300분→RPA 수행 1,095분) 절감하는 등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셋째, 국민이 법무 공공데이터 현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시각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오픈API*방식 공공데이터 2종('수용자 자비 물품 현황'과 '홈페이지 인기 검색어 보기') 등 총 18종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였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총 257종의 법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이를 활용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플랫폼 기능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서 웹 프로토콜(HTTP)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한 프로그램

3) 발전방향

향후 법무행정 데이터, 비정형화된 자료의 데이터화, 연관 공공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신규 데이터 분석과제를 추가 발굴·수행하고, '법무정보시스템 일일점검' 등 5종 업무 자동화(RPA)를 '25년 상반기 중에 개발하여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신기술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국가 데이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공공데이터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나.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 선제 제공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이미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민이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를 쉽게 활용하고, 알고자 하는 정책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선제적·맞춤형 법무 서비스와 최신 법무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주요 법무정책, 공공데이터, 통계, 보고서 등의 정보를 개방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 투명성을 보장하고, 교정 본부장과의 대화 답변 상황을 문자와 카카오톡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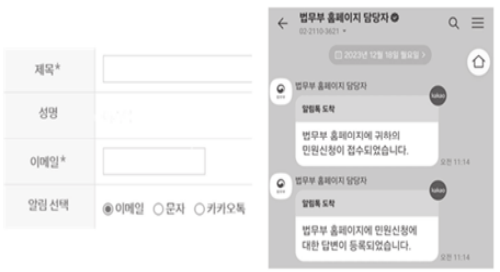
둘째, 홈페이지 방문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과 폰트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고, '출입국관리직 경력 채용 합격자 발표 서비스 도입',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소개 및 온라인 상담 게시판 오픈', '변호사 접견 예약 인증

기능 추가', '교정기관 보관금품 FAQ 게시판 신설', '모바일신분증을 통한 인증 추가'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셋째, 장애인과 노약자 등 정보 접근 소외계층도 불편 없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와 실·국·본부 7개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서비스 앱에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웹 접근성과 호환성을 지속해서 개선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2024년 온라인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작년 대비 3.9점 상승한 80.3점을 기록하여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 그림 2-19 | 교정본부장과의 대화 답변 알림



| 그림 2-20 | 출입국직 합격자 발표 서비스



3) 발전방향

2025년도에도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변호인 스마트접견 예약 서비스', '접견 예약 재시도 시 기존 입력 내용 표출 기능', '홈페이지 동시 접속자 폭주 시 부하 분산 서비스 추가 도입') 등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대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다. 법무지식 활동 문화 정착을 통한 업무역량 향상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이미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업무효율 향상 및 조직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무지식*의 축적·공유라는 목표하에 업무 개선사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보고서·연구논문 등 품질 높은 자료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법무지식 : 법무행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또는 부서의 경험, 노하우 등 유형 및 무형의 실천적 정보

2) 추진내용과 성과

2024. 2월 지식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 지식행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식등록 주간', '최초 등록 시 마일리지 점수 추가 부여' 등 지식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유지하는 한편, 업무효율 도모를 위한 '지식Q&A 질문자 마일리지 부여' 등 활성화 정책으로 전년 대비 지식Q&A 이용 건수가 17.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4. 5월 지식행정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지식인·우수 학습동아리 운영자·법무지식 콘테스트 입상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식 활용·학습동아리 사례 공유 및 분임 토의, 전문가 특강 등을 진행하여 지식행정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분기별 우수지식인 선정 시 최초 지식등록 직원을 배정하여 지식활동 신규 유입을 장려하고, 연말 지식행정 우수직원 평가지표로 외부 논문 등 인용지식 등록 건수보다 창작 지식의 질적 수준을 중시하여 수준 높은 지식 활동을 전개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고품질 지식 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2024. 7월~9월 '법무지식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개인부문 '대체복무요원 관리 파일', 단체부문 '소년원 전입직원을 위한 웰컴북' 지식 등 실무 활용도가 높은 지식을 발굴하여 포상하였고 부내 전 직원에 공람하여 지식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우수·신규 학습동아리 7개를 자체 선정하고 운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 경진대회에 '바른급식사랑방' 학습동아리가 입상하는 등 학습동아리를 통한 집단 지식 창출 및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3) 발전방향

앞으로도 업무 활용도가 높은 법무지식의 등록 및 활용을 통해 업무효율 제고와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실용적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당한 평가 및 보상,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식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법무지식 발굴 및 법무행정 활용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라.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노원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사이버 해킹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산한 재택근무, 클라우드 환경 등은 보안 위협을 더욱 심화시켰고,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공격 및 글로벌 해킹 조직의 활동이 국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그룹의 활동 증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악용 가능성 증가 등 사이버위협은 더욱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 랜섬웨어 :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 디도스 공격 : 특정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많은 데이터를 발생시켜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

이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법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보안관제 통합분석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무사이버안전센터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를 실시하여 사이버 위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고, 대민서비스 홈페이지의 위변조 및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상시 감시하여 해킹 공격과 정보 유출을 예방 및 차단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법무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조치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신규 구축 중요 시스템(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등)에 대한 선제적 취약점 점검으로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 보안성을 높였다. 특히, 긴급 취약점 점검(4개 시스템)과 최신 해킹 기법을 활용한 모의해킹을 실시하여 지속해서 보안성을 강화하였으며, 클라우드 환경 및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에서의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정보보호 역량 및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사이버보안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전 직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매일 보안 뉴스 및 최신동향 수집하여 정보보안 담당자들에게 제공하였다.

3) 발전방향

2025년에도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정보보안 관리 실태 점검을 개선하는 등 보안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사이버공격 환경에 대응하고, 법무행정의 주요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마. 법무행정서비스 보안 수준 강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유재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최근 국가안보·국익을 위협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이 급증하고, 사이버 공격기법도 나날이 치밀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한 대응 기술도 발전하고, 법무부도 이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 부분을 찾아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였음에도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공격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에, 법무부 주요 행정서비스를 운영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직원 등 사람들의 보안 의식 제고 등으로 물리적, 관리적 측면의 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첫째, 주요 법무행정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취약점 분석평가사업을 수행하여 6개 관리기관별 전년도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이행, 재해·재난 대비 백업·복구 모의훈련,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다음 연도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전산 인프라와 업무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인증 우회 취약점 조치, 랜섬웨어 대응, 인증수단 보안 강화 등 국정원 보안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국립법무병원, 서울지방교정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둘째, 물리적 측면의 보안강화 활동으로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영되는 정보통신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출입통제 및 출입기록 관리 등 여부,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도·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설비, 누수감지, UPS 등 보호설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였다. 또한, 장·차관 집무실 등 중요사무실에 실시간 도청감지 장비를 설치·감시하고, 실·국·본부장 등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동형 도청탐지 장치를 활용하여 도·감청을 통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인터넷망과 업무망 간의 보안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에서 유해정보 유입차단과 내부의 정보 불법 유출차단을 위해 활동하였다.

셋째, 관리적 측면의 보안강화 활동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변경 시 자체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 보안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서울공항,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법무부 기록관, 정보화사업

외부사업장 등 외부 정보화 용역사업장에 불시 방문 점검을 강화하여 정보화사업 단계별(착수, 중간, 종료)로 보안규정 이행 점검을 수행하였고, 소속 산하기관 정보보안 감사 등 점검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보안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출장 교육을 병행실시 하였다.

3) 발전방향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AI·클라우드·데이터 기술의 활용을 위해 다층보안체계(MLS : Multi Level security)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다층보안체계는 네트워크 경계 중심 보안에서 데이터 중심 보안으로 보안체계를 변환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국가 전산망의 업무정보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을 기밀(Classified·C), 민감(Sensitive·S), 공개(Open·O)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차등적 보안통제로 보안성을 확보하여,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공격적인 사이버위협을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격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위협을 제거·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중요시스템의 보안요구사항, 위협탐지 전략, 제로트러스트* 전략 등의 보안체계로 변경하고, 이를 수행할 실무자의 관심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다.

* 제로트러스트 :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요구가 있을 때 네트워크가 이미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주어진 권한을 정확하고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개념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활용정보 항목 확대 및 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관 윤정희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해양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6개 형사사법기관이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공통 표준의 전자업무시스템(형사사법정보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하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2024년에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확대를 위해 2024. 4월 검찰과 특허청 및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업무시스템 연계를 추가하였고, 2024. 9월 차세대KICS 오픈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개방형(실시간) 정보유통서비스 연계를 신규로 구성하여 KICS를 통해서 외교부 여권정보조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초본 조회, 국토해양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해양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계 목록은 총 2,324종에 이르며, 하루 평균 약 230만 건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으로 85억 9,000만 건에 달하는 정보를 공유하여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형사사법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편인증 방식에 우리은행, 드림시큐리티, 카카오뱅크를 확대 적용하였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갱신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형사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표 2-6 | 형사사법포털 운영 현황

구 분	'24 운영 현황	누적 건수('10. 7. ~ 24. 12.)
포털 접속	7,040만 건	5억 2,156만 건
모바일 앱 다운로드	107만 건	614만 건
사건진행 상황 조회	2,322만 건	1억 4,730만 건
벌과금 조회	253만 건	2,799만 건
민원서비스	12만 건	88만 건

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및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관 오은정

법무부는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형사사법 업무에 적용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개통한 노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을 검찰·경찰·해양경찰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은 형사사법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미래지향 IT구조 개선을 전략목표로, 종이문서로 진행되던 형사절차를 전면 전자화하여 형사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시스템 및 모바일 현장조사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개선함으로써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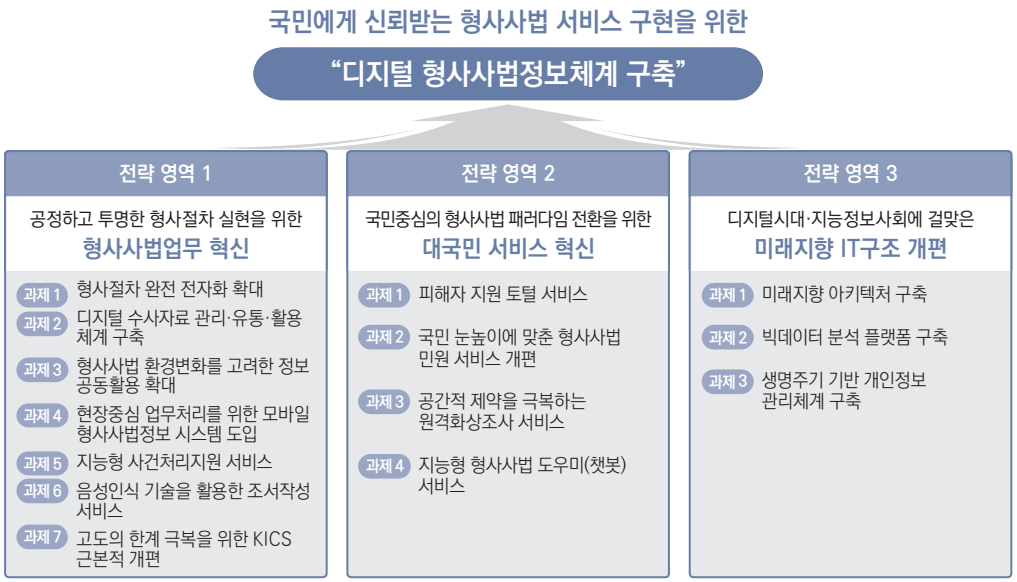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21. 12월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총 3단계에 걸쳐 구축사업을 진행하였고, 1단계 사업은 2022. 8월, 2단계 사업은 2023. 8월에 완료하였으며, 3단계 사업은 2023. 8월에 착수하여 2024. 12월에 완료하였다.

1단계 사업에서는 현행 KICS의 분석 및 기본 설계를 수행하여 2,118건의 기관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최종 2,087건을 반영하기로 확정하였고, 2·3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에서 확정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36,481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형사사법포털·범죄피해자지원 포털의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통합테스트와 시험운영을 거쳐 2024. 9. 19. 차세대 KICS를 성공적으로 개통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생성, 유통을 규율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비한 하위 법규 제정을 위해 형사사법기관 (법무부·검찰·경찰·해경·공수처)은 TF를 구성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법원과의 촘촘한 협의를 거쳐 2024. 10. 18.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차세대 KICS 구축으로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면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확대되어 민원인이 직접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각종 통지와 안내를 제공받게 되어 국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형사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지원 서비스 등이 도입되어 조사 시간이 단축되고, 조사과정이 투명해지면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21 | 사업 목표



12.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신한헌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조직 신설 이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2024년에는 '법무행정의 실질적 성주류화 실현'을 비전으로 구성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 법무행정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의 4가지 대과제와 교육대상별 양성평등교육 내실화, 행정규칙·대국민 홍보물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개선 추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정비, 가족친화인증 평가 등 수요를 반영한 14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인식 개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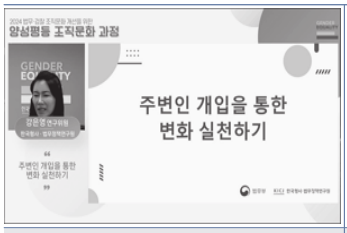
양성평등교육 실시 및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 개발·배포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양성평등교육은 집합교육, 소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구분, 실시하였다.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5급이상) 4회, 합숙교육(6급이하, 양성평등업무담당자) 5회를 운영하여 총 25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특히, 5급이상 관리자 과정은 성별간·세대간 갈등 상황시 관리자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실천적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교육만족도 '23년 89.0점→ '24년 92.4점).

2024년부터는 교육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에 실시해 온 '법무연수원 연계교육'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에 포함하였으며, 양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결과 본부, 법무연수원 및 소속기관의 양성평등교육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총 216회 실시하였으며, 5,157명이 수료하였다(고위직 대상 교육 112회 실시, 959명 수료 포함).

한편, 2024년 법무부 '양성평등의 날'은 총 4회(2월, 5월, 8월, 11월) 운영하였다. '양성평등의 날'에는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법무샘에 게시하여 구성원들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 그림 2-22 | 양성평등교육



실시간 온라인교육



합숙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2) 정책·제도 분야

우리부 소관 행정규칙 314개를 성인지 관점(△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균형참여, △성별통계)에서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2023년 1차 개선 추진(2023. 2월 「교도작업 운영지침」 별지 서식 중 특정 성별만 지칭하는 용어인 '형제'는 '형제자매'로, 아내와 아들을 의미하는 '처자'는 '배우자와 자녀'로 개정 완료)에 이어, 2024년에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개정당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이 반영되었다.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마련 등에 대한 자문기구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2기 임기(2022. 4월 ~ 2024. 4월)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2024. 12월),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 안건으로 성폭력·스토킹 예방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논의, 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신규 정책 발굴 등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주제를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양성평등 관점에서 법무시설을 개선하고자 소속기관(진주교도소)의 공용화장실을 남녀화장실로 분리하여 화장실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조직의 양성평등 수준 제고를 도모하였으며, 법무행정분야의 양성평등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세대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이 함께하는 양성평등정책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그 외에도 자녀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재인증)' 심사에 통과하여 향후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2024. 12. 1. ~ 2027. 11. 30.).

| 그림 2-23 | 정책·제도 개선 및 발굴



양성평등정책위원회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양성평등정책 소통간담회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분야

폭력예방교육의 다양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고충사건 처리의 내실화,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주변인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2023년)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인 개입을 통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조직 내 성희롱을 주제로 하는 영화 상영 및 성범죄 관련 명사 초청 강연, 그리고 고위직 대상 별도 세미나를 실시하여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최근 스토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침해행위 실태를 파악하고자 「2024년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부에 적합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성평등 관련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소속·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처리절차 모의훈련(9개 기관)을 실시하였다.

| 그림 2-24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세미나

다.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조직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교육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급별 교육, 합숙교육, 영화 등 문화융합형 교육 도입, 소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추진하였다.

또한,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실시,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현장 지도점검과 모의훈련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처리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2024년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추이분석으로 정책 제안사항을 발굴하였다.

향후 현장소통교육 등을 도입하여 교육방법을 보다 다각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홍보하고, 그간의 업무추진 과정과 실태조사 등에서 도출된 개선점 등을 양성평등 정책 수립·추진 시 반영하여 양성평등 문화가 조직 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추진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가. 교육훈련 개요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이혜린

2024년 법무연수원은 「정의, 공정, 법치를 책임질 역량 있는 법무·검찰 인재 양성」이라는 주요 교육 목표 아래,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 '전문성과 사명감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 '글로벌 선진 법치를 구현할 리더 양성'을 세부 교육 목표로 설정하여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 등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검사,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과 국내·외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714개 과정, 5,471회, 449,096명(집합교육 172개 과정, 303회, 12,140명 / 사이버교육 542개 과정, 5,168회, 436,95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법무부,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의 다양한 교육수요와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정책 환경 변화로 중요도가 상승한 업무 관련 교육을 신설하고 참여·실습형 과목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직무역량의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예술·인문학 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포함한 소양 교육을 운영하여 교육생에게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직렬별 교육을 살펴보면 검사 교육의 경우 기존 단계별·타겟형 교육을 통합한 「형사부 전문화」 과정을 신설하여 일반검사들의 교육 부담 문제 개선 및 실무 중심 교육 실현을 도모하였다. 일반직 교육의 경우 「금융·증권 등 경제범죄 수사역량 향상」, 「디지털성범죄 수사실무」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능적인 금융·증권 등 경제범죄 발생 및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대응하는 검찰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인행정 데이터 분석·활용 실무」 과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 플랫폼 활용 실습을 중점 교육하였다. 교정직 교육의 경우 「마약류 사범 치료 재활」, 「정보활동 실무, 보안장비 전문」 등 과정을 신설하여 일선 교정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무·검찰 구성원 외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사법경찰, 행정기관 국가송무 소송수행자, 군검사 등 타 부처 대상 직무역량 교육 또한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부처 간 협업을 증진하고 국가 전반의 법집행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검사 교육과정 개편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최영주

1) 단계별, 전문화 교육 개편

가) 추진배경

기존 부장검사 승진대상자인 부부장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의 교육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신임부서장」 과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고검 및 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근무 검사들을 대상으로 「평생검사」 과정을 신설하여,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맞는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와 지식·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검사 전문화 교육의 경우 기존 「공판」, 「아동학대·성폭력」, 「조세·관세」, 「특허·지재」, 「경제범죄심화」 5개 전문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명예훼손」 전문화 과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형사부 전문화」 과정으로 체계화하였다.

나) 상세내용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임부서장」 과정은 부서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중간 간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시기를 상대적으로 업무부담이 적은 상반기로 정하여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과정에서는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평생검사」 과정은 고검검사급 검사로서의 역량과 경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변화하는 형사사법제도 및 달라진 공판 환경 등에 대한 이해와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 고양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검사 전문화 교육은 최신 범죄 동향 및 수사 기법에 관심 있는 검사 전체를 대상으로 형사부 주요 전문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형사부 전문화」 과정을 진행하였고, 평검사들의 교육 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사부 전담 기준 6개 분야 교육을 상반기 2주, 하반기 2주간 압축적으로 실시하는 등으로 각 검사들이 필요한 교육을 선택·조합 후 이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형사부 각 전문분야를 분리하여 상·하반기 2주간 압축적으로 실시한 「형사부 전문화」 과정은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검사 전문화 교육을 개편한 취지에 맞게 전문화 교육을 선택·조합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사례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검사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조직 내에서 요구되는 역할 및 전문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신설,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심규식

2) 신임검사 통합 교육 실시

가) 추진배경 및 경과

정의와 인권에 대한 열정 및 실력을 겸비한 신임검사 양성을 목표로, 검찰 업무 관련 기본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원만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당해 로스쿨·법무관·경력 신임검사들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해 로스쿨 출신 검사 예비합격자들과 법무관·경력 출신 신임검사들 간 법조 경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실무경험 및 형사법·형사절차 관련 실무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 로스쿨 출신 검사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사무개론, 결정문 작성법, 공직 윤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교준비과정(3~4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신임검사 통합교육(5월~10월)을 통해 결정문, 조서, 영장 및 수사보고서 작성법과 조사·공판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선 사건·공판기록으로 지도교수의 맞춤형 1:1 지도를 병행하는 등 실무 중심의 집중 교육을 강화하여 신임검사의 직무역량을 향상함과 동시에 출신과 기수가 다양한 신임검사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상호 존중과 연대감을 높이도록 돕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24년도 신임검사 통합교육은 신임검사 총 145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3학기(기본·심화·종합 직무교육)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 중 경력 신임검사 5명은 9월까지 5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변호사시험 13회 신임검사 93명은 입교준비과정을 거쳐 5월 임관 이후, 변호사시험 10회(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20명 및 당해 추가로 임관한 경력 신임검사 27명은 8월 임관 이후, 각 10월까지 종합직무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신임검사들이 정식 발령 후 신속히 검찰 업무에 적응하여 다양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기존의 법리·판례 암기 및 결정문 작성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공판 교육(조서·영장·결정문 작성, 증인신문조서·의견서 및 보고서 작성, 공판·조사기법 1:1 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신임검사들의 실무 감각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신임검사 교수진이 발굴·조제한 기록들을 활용한 통합형 기록실습을 확대하여, 신임검사들로 하여금 사건처리 방향과 작성 필요 서류를

직접 결정하고, 작성하게 한 후 통합 기록실습 답안에 대한 지도교수 1:1 첨삭지도를 실시하는 등 지도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신임검사들이 민생범죄 사건에 대한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재산범죄 주요 판례, 민사집행법, 보전소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법 실무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민·다중 피해범죄, 기업·금융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회계지원팀을 통한 기본 회계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사이버수사과 등 소속 전문 인력을 외부 강사로 초빙해, 통신·문서감정·DNA·디지털포렌식·가상화폐추적기법 등 과학수사실무에 대한 과목을 편성 및 교육하여, 진술증거 위주의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과학적 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형벌권 집행과 인권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은 장애인·재심 전문 변호사 등 실무인력 섭외를 통한 실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양성평등·수평적 소통문화 관련 토론을 확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직장 내 성범죄, 증오범죄, 혐오표현, 정신질환과 장애 등)에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인권감수성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한편, 대검 인권정책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통해 검찰 업무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양성평등 침해 사례들을 교육함으로써 신임검사들이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무적 인권감수성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조사·공판 교육은 「롤플레잉 조사실습」, 「영상녹화 조사기법」 등 참여형·체험형 방식으로 진행하여 신임검사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롤플레잉 조사실습을 통해 피조사자 역할을 담당해 봄으로써 조사능력 제고뿐만 아니라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무역량평가 관련하여서도 과목별 1,000쪽 상당의 실제 기록을 배부하여 검찰 단계에서 추가 인지, 압수수색 및 신병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전체 서류를 작성토록 하는 등 종합적 요소가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일선에서 신속히 배당기록을 검토하여 결정 및 처분에 이를 수 있게끔 하였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균형적이며 폭넓은 시각을 갖도록 인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직무윤리 사례토론 등의 소양교육, 멘토-멘티 방식의 지도교수 '1:1 튜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직업윤리를 갖춘 신임검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법무·검찰공무원 교육과정 개편 및 제도개선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주무관 임웅진

1)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등 강화

가) 추진배경

급속도로 변화하는 업무 환경 속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직렬별로 전문화 또는 직무 관련 역량 향상이 필요한 과정들을 시의 적절하게 편성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지능적인 금융·증권 등 경제범죄 발생과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대응하는 검찰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검찰직 과정에 「금융·증권 등 경제범죄 수사역량 향상」, 「디지털성범죄 수사실무」 과정을 신설하였다.

보호직 과정에는 「보호직 신규자 보수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신규 임용 2년 이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면담기법', '소년원 생활지도', '조사', '치료감호' 등 보호직 전문분야 역량 향상을 도모하였다.

출입국관리직 과정에는 「외국인행정 데이터 분석·활용 실무」 과정을 신설하여, 새롭게 구축된 분석 플랫폼인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 플랫폼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데이터 분석·활용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직급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과는 별도로, 정책환경과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들을 신설하였다.

대검찰청 및 일선 보호·출입국 관련 소속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 수요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입직 1~2년 이내 경력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과정은 실제로 업무경력을 쌓은 후, 다시 필요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게 하여, 신규직원의 적응력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실습 교육 등을 통해 현실과 이론 사이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주무관 강인원

2) 실무 적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훈련실습 도입

가) 추진배경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는 신규 교정직 7·9급을 대상으로 수용동 근무, 긴급상황별 조치 및 구조, 포승술, 진압술 등 실무 중심의 실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일선 교정기관과 교류하며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다만 단위별로 분리된 기존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근무 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훈련실습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종합훈련실습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훈련 과정을 하나의 종합적인 시나리오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설계되었다. 훈련 과정은 수용자의 일과 시작 시각부터 종료까지의 근무 상황을 포함하며, 시간대별로 필요한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육생들에게 실제 근무 환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용동 근무, 운동·출정 근무, 중앙통제실, 기동순찰팀, 외부의료시설 근무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였고, 수용자 거실에서 발생하는 난동이나 응급환자 발생 상황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교육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교대로 수행하여 개별 훈련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교정훈련과는 기존 훈련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팀 단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정 현장에서 필요한 소통 능력과 신속한 의사 결정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종합훈련실습의 도입으로 교육생들이 개별 수업 과정에서 학습한 교정장비 사용 능력, 긴급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등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팀 단위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협력과 소통 능력이 증진되었으며, 현장 중심의 시나리오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 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육생 훈련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생들은 실제 근무 환경과 유사한 상황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실무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향후 종합훈련실습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노후화된 교육 장비를 교체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하여 더욱 현실적인 환경에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발전

방향을 통해 법무연수원은 교정직 신규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 주무관 홍재성

3)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계획 수립

가) 추진배경

최근 교정 현장에서 교정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고 시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강제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실무 중심의 교육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교정기관 내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교정특별사법경찰팀과 물질중독 수용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사범재활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 변화에 따라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신설 및 지속적인 교육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추진내용

보안 현장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교정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보안실무 전문화」과정, 「교정체포제압술 전문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특히 「보안장비(전자충격기)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팀과 정보팀을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였고, 수사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기본」과정과 「특별사법경찰 심화」과정으로 나눠 단계적 심화 교육을 진행했으며, 정보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정정보활동 실무」과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 방법 등의 전문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마약류사범치료재활」과정을 신설하여 매뉴얼 교육과 중독 상담을 위한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전문과정 운영을 통하여 직원 역량을 강화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보안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교정 현장에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특별사법경찰 수사팀과 정보팀의 전문성 향상으로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축하였다.

이를 더욱 발전하기 위해 수사팀 교육은 최신 수사 기법과 기술을 반영할 예정이고, 정보팀 교육은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육대상자의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교육은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직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교정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교정정보 빅데이터팀의 신설에 따라 「교정 빅데이터 분석 실무자 양성」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새로운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교정 현장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이정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표 2-7 | 2024년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위 원 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창진	
위 원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이만흠	
위 원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김은미	
위 원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손지혜	
위 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효원	
위 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준	
위 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철	
위 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옥	

2) 평가 및 향후계획

법무연수원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4년 『한국 현대사회의 형사법 중심 법문화 현상에 대한 역사적 원인 고찰』 등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주제 2건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2024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은 강의자료와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연수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자 선정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법무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표 2-8 | 2024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구분	용역 과제명	책임연구원
1	한국 현대사회의 형사법 중심 법문화 현상에 대한 역사적 원인 고찰	케이제이인문경영연구원 대표 임용한
2	형사절차 상 수사 밀행성 원칙의 체계적 지위와 참여권과의 조화 방안	형정원 박경규 박사

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검찰행정 구현

법무연수원 총무과 주무관 안효준

1) 추진배경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은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검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상세내용

2021년을 시작으로 충북혁신도시 및 진천군 지역주민과 진천군 소재 단체, 직장, 학교 등에 소속된 사람에게 대운동장(축구장), 테니스장 2면, 풋살장 2면, 야구장, 부대시설(주차장)을 주말·공휴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개방하고 있다. 진천 체육시설 유지·관리업무 지원협의에 따라 사용료는 100% 감면 중이며, 2024년 테니스장 77회, 풋살장 41회 개방하였다. 또한 테니스동호회, 배드민턴동호회, 풋살동호회는 인근 지역 공공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보다 많은 시설개방으로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그림 2-25 | 법무연수원 체육시설 지역사회 개방



다목적 구장



테니스 코트

바. 국제협력 강화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최동우

1) 추진배경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형사사법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법무연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ODA) 검사 등 법조인, 수사기관 및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국제연수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91개국 140개 과정, 2,235명을 대상으로 연수국의 법무·행정 제도개선 지원 및 대한민국의 선진 법무·한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실시한 국제연수과정은 아래와 같다.

| 표 2-9 | 2024년 국제연수과정 내역

국가	과정명	현지/초청	연수기간	인원
라오스	라오스의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감식 역량강화	초청	5. 19. ~ 6. 1.	20명
몽골	몽골 검찰청 사법 역량강화	초청	6. 16. ~ 6. 29.	21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익 위해자 출입국관리 역량강화	초청	6. 30. ~ 7. 11.	14명
캄보디아	캄보디아 법무부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 역량강화	초청	7. 14. ~ 7. 27.	13명
튀니지	튀니지 부패방지수사 역량강화	현지	8. 28. ~ 9. 8.	13명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초국가적 조직범죄대응 역량강화	초청	9. 23. ~ 10. 3.	17명

법무연수원은 2024. 4. 19. 독일 사법관학교(Deutsche Richterakademie)와 교육협력 증진에 대한 상호 협력분야 MoU(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고, 국제검사협회(IAP)와의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024. 12. 3. ~ 12. 5.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 센터를 중심으로 한 「제3회 국제검사협회 아·태지역 초청연수」 개최를 지원하였다.

또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및 법무교육과장은 12. 1. ~ 12. 6. UN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위치한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센터에서 개최하는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의 교토선언 이행을 위한 주제별 토론목적의 제33차 회의에 대한민국 법무부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그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의 교육과정 및 국제연수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본 법무총합연구소 총무기획부 대표단, 대만 법무부 사법관학원 원장 대표단, 미국 한인검사협회(KPA) 사무총장 대표단 등의 법무연수원 방문을 통해 상호 교류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3) 향후 계획

풍부한 국제연수 연수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 법무총합연구소와 법무·검찰분야의 공동연구 및 교육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 추진 등으로 다양한 해외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국제연수과정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예정이다.

사. 교육 몰입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법무연수원 총무과 주무관 안효준

1) 추진배경

법무연수원은 교육 몰입도 및 만족도 제고와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점진적인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러 강의실 교육기자재 교체, 건축물 방수, 노후 설비배관 교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법무연수원 본원은 2015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 후 10년이 경과하여 시설물들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어 건축물 등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교육·연구시설 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한해 제1강의동 옥상, 본관동 대강당옥상 방수공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및 건물의 내구성을 증진시켰고 냉난방기의 GHP실외기 61대에 대기배출 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하여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맞게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행복관 주방 퇴식공간 및 식당 홀 개선, 본관동 실내휴게정원 조성, 정문 소나무 보식, 강의실 교육시설물 교체 등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교육 몰입도 및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방 미끄럼방지 바닥재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직원 및 교육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 그림 2-26 | 진천본원 교육환경 개선



제1강의동 옥상방수 전경



행복관 주방 퇴식구 및 식당 홀 전경

용인 분원은 직원 및 교육생들의 편의성 및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 위하여 2024. 8월부터 10월까지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노후화된 대강당의 조명·바닥재교체 및 연결의자 458석을 교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지하공동구의 노후 배관으로 화장실에 녹물이 나오는 열악한 교육·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4. 3월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2024. 8월부터 11월까지 용인분원 지하공동구의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하여 직원 및 교육생에게 위생적인 교육·근무환경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36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육생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통연관보일러 교체 및 본관 중정 방수공사 등 재난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노후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그림 2-27 | 용인분원 교육환경 개선



대강당 전경



노후배관교체 전경

3) 향후 계획

진천 본원은 순차적으로 건축물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강의실의 노후 빔프로젝터를 점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실내체육관, 교정운동장 조명 개선공사 등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용인 분원은 생활관 주차장 포장공사, 장애인 데크 교체공사 등 36년된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교육·연구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법무연수원은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생들의 직무역량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검찰 공무원을 양성해 나갈 것이다.

제2절 정책홍보 업무

1. 기관장 소통활동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가. 법무부장관 인터뷰(총 12회)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퇴근, 정책현장 방문 및 국회 출석 시 다수 언론을 상대로 즉석 일문일답 방식의 언론 인터뷰를 수시로 진행하여 주요 법무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요 법무정책 이슈에 대한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효율적으로 소통하였다.

| 그림 2-28 | 법무부장관 인터뷰



대구고등검찰청 방문 시 인터뷰(2024. 5. 2.)



정부과천청사 등청 시 인터뷰(2024. 7. 11.)

나. 법무부장관 언론 브리핑(총 5회)

중요 현안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개최함으로써 주요 현안 및 법무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였다. 법무부장관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2024. 2. 2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2024. 3. 28.) △채상병 특검법안 관련 브리핑(2024. 7. 9.)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2024. 8. 13.) △신 출입국 이민정책 관련 브리핑(2024. 9. 26.) 등으로 이슈에 적극 대처하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였다.

| 그림 2-29 | 법무부장관 언론 브리핑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2024. 8. 13.)



신 출입국 이민정책 관련 브리핑(2024. 9. 26.)

2. 언론 홍보활동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가. 실국본부장 언론 브리핑(총 2회)

법무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언론과 국민의 이해를 돕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이외 법무부 간부 브리핑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각 실·국·본부장이 2024년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하여 법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총 2회의 브리핑을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금융부문 사후브리핑(법무실장, 2024. 1. 17.) △일반주주 보호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브리핑(법무실장, 2024. 12. 2.) 등이 있다.

나.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총 265건)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를 통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언론과의 소통을 적극 실시하였다. 연간 보도자료 213건을 배포하여 법무정책 및 장·차관 참여 행사, 실국본부의 다양한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52건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여 법무부 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또한, 법무정책 관련한 언론사의 취재 요청 1,237건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답변자료를 제공하였다.

다. 오보 대응(총 86건)

대변인실은 법무부 정책 관련 언론 보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간 86건의 오보 및 과장·왜곡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사실관계 오류에 대해 직접 해당 언론사를 접촉해 오보 내용이 신속히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6건(오마이뉴스, 노컷뉴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딴지일보, MBC 뉴스데스크)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고, 법원에 1건(MBC 뉴스데스크)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의 오보에 대한 공식적 조치를 요구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3. 홍보 기획

대변인실 사무관 박종범

가. 대·내외 홍보협의체 운영 및 대응

법무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 주제 선정 등을 위하여 매주 대변인 주재의 '주간 홍보기획 회의'(이하 '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는 대변인 주재로 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 관련 사무관, 주무관 등이 참석하여 법무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통해 △대마·마약 근절 캠페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국민 캠페인 △신(新)출입국·이민정책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외 홍보협의체인 국정홍보점검회의,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협의회, 외신대변인협의회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및 법무부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타 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입체적 홍보를 진행하였다.

| 표 2-10 | 대내·외 홍보협의체

구분	홍보협의체	참석 대상	주재
외부	국정홍보점검회의	각 부처 차관	국무조정실장
	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대변인	문체부 2차관
	온라인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온라인대변인	문체부 차관보
	외신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외신대변인	해외문화홍보원장
내부	주간 홍보기획회의	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 관련 사무관, 주무관 등	대변인

나. 정책소통평가 실적 관리

국무조정실에서는 부문별 평가를 통해 각 부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부처별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주요정책 간 협업홍보를 통한 시너지 확산과 리스크 이슈의 유기적 상황관리를 위해 부처협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변인실은 변화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평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처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업하여 마약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영문 공동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문체부와 협업을 통해 외신 프레스투어를 추진하였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활용해 SNS 댓글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튜브 쇼츠 및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콘텐츠를 확산하여 국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표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표 2-11 | 정책소통평가 지표별 주요성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주요성과
정책 소통 활동	부처협업 활동	•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 협의회, 외신대변인 협의회 참석을 통한 부처협업 강화 • 타부처 협업이 필요한 정책이나 우수 홍보사례를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함으로써 법무정책에 대한 전 부처 공감대 형성
	보유매체 활용	• 타 부처 공유협조 영상 송출을 위한 보유매체 3건 증가(40건→43건) - 매체협업 관련 솔로몬로파크 기관(대전·광주·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협조
정책 소통 성과	주요정책 소통성과	• '마약 근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출입국·이민정책' 등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실시 • 상반기 마약 근절 캠페인 및 하반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캠페인 실시 • 영문 보도자료 배포, 외신 취재지원 등 외신과의 소통 노력 지속 • 부처 내 협업 추진체계 강화를 통한 사전협의 활성화 필요
	현안대응 성과	• 온·오프라인 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한 오보대응 - 온·오프라인 오보대응 86건 - 콘텐츠 제작 대응 2건 - 신속대응률 타부처 평균 상회
	온라인 소통성과	• 기관장 현장방문, 기획 홍보 영상, 쇼츠 등 다양한 홍보영상 제작으로 법무부 SNS 채널 활성화(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최근 3년간 인스타그램 안정적인 도달수 및 유튜브 조회수 꾸준한 성장세 기록 • 보도자료 배포 당일 카드뉴스 제작·배포하고 주요정책 중 선별하여 웹툰 등 이미지 콘텐츠 제작
	기관장 소통성과	• 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 작년 대비 감소하여 기관장 소통성과 활성화 필요

평가항목	평가지표	주요성과
체감도	소통만족도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소통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온라인 확산도	• 국정현안 및 부처 정책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홍보에 활용
가감점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 보도자료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점검하여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사용

다. 외신 소통활동

2024년에는 국내 상주 외신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하여 외신 취재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였고, 출입국·외국인정책, 국제공조 사건 등 외신에서 관심 있는 법무부 주요정책을 영문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또한 외국인에게 알려야 할 출입국 주요정책을 영문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였다. 특히, 문체부와 협업을 통한 외신 프레스투어는 외신기자들의 법무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주최하는 외신대변인협의회, 외신대변인 연수에 꾸준히 참석하여 타 부처 외신대변인과 협업을 강화하고 외신기자와 직접 소통하였다.

라. 홍보 콘텐츠 광고 강화

법무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채로운 홍보 채널을 확대하여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디지털 광고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무정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다. 특히, 2024.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대마·마약 근절 캠페인'은 공항철도 아렉스와 K리무진 버스를 활용한 시각 광고를 통해 국민들의 이동 경로에 캠페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노출했으며, 2024.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국민 캠페인'은 SBS 파워 FM, CBS 음악 FM을 통한 음성 광고와 함께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 및 경전철 신림선 전 구간에 걸친 옥외광고를 병행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홍보 노력은 캠페인기간 동안 유튜브 캠페인 영상 60만 회 이상 조회, 옥외 광고 일일 노출 150회 이상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국민의 법무정책 이해도 및 공감대를 높여 법무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그림 2-30 | 홍보 콘텐츠 광고

			
공항철도 아렉스 내 광고	지하철 1~4호선 내 광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캠페인 유튜브	신림선 내 광고

4. 대국민 소통활동

대변인실 서기관 이상우

가. 대국민 캠페인 진행

캠페인 전개에 앞서,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야기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쯔양 영상 협박 사건', '화성 화재 사망 사건' 등은 국민적 불안을 심화시키며, 강력 범죄와 사회적 피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대마 합법 국가 방문 증가와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법적 보호와 예방적 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책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 대응과 수요자 중심의 소통 활동을 기반으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국민 캠페인 전개를 결정하였다.

1) 대마·마약 근절 캠페인

2024년 상반기, 법무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마·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대마·마약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특히, 대마 합법 국가 방문 증가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해외에서 가볍게 사용한 마약, 국내에서는 무겁게 처벌됩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주요 대마 합법 국가(미국, 캐나다, 태국 등 20개국) 방문 시, 국민들에게 경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39개 해외 공관에 포스터 및 배너를 배포하여 현지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공항철도 아렉스와 주요 여행 거점에 캠페인 포스터를 설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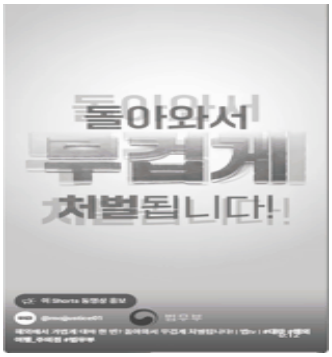
휴가철 국민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광고 집행을 통해 메시지의 도달 범위를 극대화하였다.

캠페인은 영상, 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통해 마약 사용 및 유통 시 국내 처벌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마약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하며 법무부의 마약 근절 의지를 강조하였다.

| 그림 2-31 | 대마·마약근절 캠페인 관련 콘텐츠



대마·마약 근절 카드뉴스(2024. 5. 27.)
▲도달 22.8만



대마·마약 근절 쇼츠(2024. 7. 2.)
▲조회수 44,216



대마·마약 근절 캠페인 포스터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캠페인

2024년 하반기,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소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캠페인은 '쯔양 영상 협박 사건', '화성 화재 사망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들에 대응하여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정책 홍보 활동이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배우 윤박을 성우로 기용한 라디오 광고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와 절차를 홍보하였다. 해당 광고는 SBS 파워FM, CBS 음악FM 등 청취율이 높은 라디오 채널에서 9월~10월 동안 40회 이상 송출되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과 경전철 신림선 전 구간에서 10월~11월 약 2개월간 옥외 광고를 집행하며, 캠페인 메시지를 일일 150회 이상 노출시켜 국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였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포스터 제작 및 배포를 통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주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정책의 인지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홍보 활동은 피해자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무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그림 2-32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캠페인 관련 콘텐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캠페인
(2024. 9. 13.)
▲조회수 23,284



원스톱 솔루션 센터
홍보 포스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장치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
(2024. 10. 16.)
▲조회수 301,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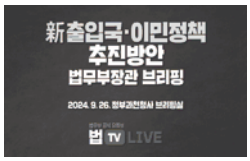
범죄피해자보호·지원
배우 윤박 내레이션
(2024. 9. 13.)
▲조회수 606,765

나. 정책 브리핑의 실시간 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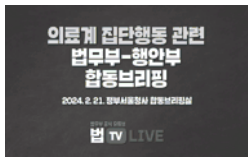
법무부는 국가적 정책 이슈에 대한 대국민 알권리와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법무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를 지속해왔다. 특히 2024년의 실시간 생중계는 기관장이 직접 진행한 정책 브리핑과 법무부 주요 행사로 나눌 수 있다.

정책 브리핑은 총 5회로 2024년 기점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브리핑' 등 중요 법무 정책 브리핑 1회,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 '특검법안 관련 브리핑',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정책 이슈 브리핑 4회를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하였으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등 법무부 주요 행사로 2회, 2024년 총 7회의 자체 실시간 생중계를 진행하였다.

| 그림 2-33 | 법TV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브리핑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



특검법안 관련 브리핑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다.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이미지 콘텐츠의 다변화

대변인실 사무관 고주현

법무부는 올해 법무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소통 콘텐츠의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올해 제작한 카드뉴스는 2023년 대비 약 15.8% 증가한 117건으로,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카드뉴스는 획일화된 이미지 콘텐츠 제작 규격과 템플릿 형식에서 벗어나 정책 내용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를 적용하였고,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한 웹툰을 제작하여 콘텐츠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카드뉴스 제작

디지털소통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고 법무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존 카드뉴스 이미지 제작에 사용하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또한, 보도자료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책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기획·구성하여 법무부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다. 주요 이미지 콘텐츠 중 △2025 법무부 예산안(조회수 7,061회, 2024. 9. 10.), △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조회수 5,537회, 2024. 10. 10.) 등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주요 정책을 시리즈로 구성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썼으며, 정책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적 효과를 가미한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 법무부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한 총 3개의 시리즈로 구성된 △마약범죄 없는 대한민국!(조회수 5,808회, 2024. 12. 16. ~ 12. 18.)을 비롯하여 7개 시리즈로 구성된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조회수 34.4만 회, 2024. 10. 10. ~ 10. 18.) 등은 법무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 밖에도 법무행정 관련 4건의 영문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 그림 2-34 | 보도자료 기반 우수 카드뉴스(법무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 정책 체감도를 강화한 웹툰 시리즈 기획

법무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친근한 일러스트, 직관적 디자인, 다채로운 색감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 기획·제작에 주력하였다. 특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조회수 4,324회, 2024. 2. 19.), △모든 지원을 한곳에서 한번에! 범죄피해자원스톱 솔루션센터(조회수 2,605회, 2024. 7. 19.) 등 다양한 웹툰 시리즈를 기획·연재하여 정책 체감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 그림 2-35 | 정책 기반의 다양한 웹툰 시리즈(법무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라. 디지털 매체(SNS)의 효율적인 운영

2024년, 법무부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극대화하고 법무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전략적 운영 방안을 도입하였다. 특히, 딱딱하고 어려운 정책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 쉽고 명확한 언어와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였으며, 시의성 높은 콘텐츠를 제작·확산하여 정책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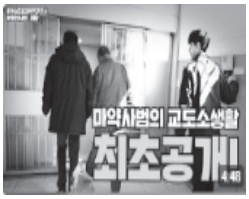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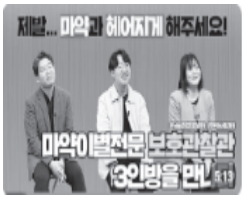
첫째,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24. 6. 17.부터 6. 30.까지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요 정책홍보 댓글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중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콘텐츠 방향 설정과 정책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

둘째, 정책홍보 콘텐츠 성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을 통해 법무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모션 그래픽을 활용한 전자감독제도 우수사례 시리즈(최대 조회수 179,340회) 등 모바일 친화적인 형식으로 콘텐츠의 흥미와 전달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법무부의 비전과 정책 방향 전달에 주력하여,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법치주의 기반 강화, 인권 보호, 부정부패 척결, 범죄예방을 목표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딱딱한 설명 대신 실제 사례와 장소를 활용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무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은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법무정책의 공감대 형성과 디지털 소통의 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그림 2-36 | 정책 수요자 중심의 이벤트 및 콘텐츠 확산

			
주요정책 홍보 이벤트 (2024. 6. 17. ~ 6. 30.)	마약 사범의 교도소 생활 최초 공개 (2024. 3. 29.) 유튜브 ▲조회수 243,300	마약이별전문 보호관찰소 3인방을 만나다 (2024. 5. 14.) 유튜브 ▲조회수 125,438	든든한 안전지킴이, 전자감독제도 우수사례 (2024. 6. 24.) 유튜브 ▲조회수 179,340

5. 법무부 국민기자단 운영

대변인실 서기관 이상우

어려운 법무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함과 동시에 국민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08.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중등부(2), 고등부(3), 대학부(15), 성인부(10) 총 30명을 선발하여 총 12개월간 활동하였다.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2024년 한 해 총 704건의 기획기사, 카드뉴스, 동영상을 제작·업로드 하였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서울보호관찰소 투어(2024. 6. 11.),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2024. 8. 12.), 서울 남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2024. 10. 22.), 법무부 기록관 개관식(2024. 11. 25.), 김천소년교도소 제로캠프 뮤지컬공연(2024. 11. 28.) 등 다양한 법무현장을 취재하여 기사화하면서 법무정책 현장을 친근하게 소개하였다.

| 그림 2-37 | 국민기자단의 다양한 법무현장 취재 모습



제3절 법무업무

1. 민법 전면개정 추진(계약법, 담보법)

법무심의관실 검사 석수민, 법무관 이선욱, 법무관 진지홍, 법무관 최우석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변화한 사회·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는 「민법」 전면개정을 위해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민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첫 번째 과제로서 「민법」 중 법률행위·채무불이행 등 사법(私法) 관계의 기본이 되는 계약법 규정들에 관한 개정시안을 마련하였고, 또한 후속 과제로서 국민 경제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제도에 관한 개정 논의에도 착수하였다.

나. 주요 추진 내용

1) 계약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절차 착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부터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핵심적인 계약법 규정을 대상으로, ①판례와 학설을 통해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고, ②기존 법리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여 현대화하며, ③변화한 거래 현실과 새롭게 등장한 법적 쟁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도입하는 등으로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는 개정안 마련 절차를 진행하였다.

2023. 11월 기초위원회의 개정초안 제출을 시작으로 2024. 4월 검토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격월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중요 쟁점 및 개정초안에 대한 토의·심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학회·연구원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의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통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수정 및 해제',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며,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법 개정안을 성안하였다. 법무부는 이후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 담보법 개정 예비초안 마련 진행

법무부는 계약법 개정 작업과 동시에 담보법 개정 예비초안 마련 작업을 병행하고자 새로운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경제활동 및 산업활동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근저당권·유치권·가등기담보·양도담보 등의 담보권 규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위 예비초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논의 상황, 규율 목적, 비교법적 상황에 대한 개관 등을 포함하여 다방면적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2025년 상반기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그 과정에서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법(私法)의 기본법이자 국민생활의 인프라인 「민법」의 현대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 법률분쟁의 합리적·효율적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영민, 법무관 배건윤

가. 추진배경

故 구○○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상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법무부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1. 6. 18.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법무부는 제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2024. 8.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나. 주요내용

1)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법 제1004조의2 제1항)

피상속인은 직계존속이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법 제1004조의2 제3, 4항)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법 제1004조의2 제5, 6항)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나,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및 신탁등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정비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김다혜, 공익법무관 양희철

가. 추진배경

그간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의 불편함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특히 2006년 등기의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생소함으로 관공서의 전자촉탁이나 일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의 설정·말소에 관한 전자신청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그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이에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어느 곳에서든 쉽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하고 등기소 관할을 완화하는 등,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임차인 등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 전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등기부에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부는 2024. 8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개정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어 2024. 9. 20. 법률 제20435호로 공포되어 2025. 1. 31.(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되었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2006년 PC를 기반으로 하는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를 전자제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개정안은 부동산 등기절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호하는 점을 반영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등기의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 전자신청 절차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 신청인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 시 처분권한 확인토록 주의사항 기재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등기부 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함으로써, 임차인 등이 신탁된 부동산 거래 시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등기소 관할 완화

개정 전 구법상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했었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 신청인이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만을 방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상속·유증 부동산의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 방향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등기사무와 관련된 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신탁부동산 거래 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4. 형사공탁 악용 방지를 위한 공탁법 개정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준석, 전문위원 신명숙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그동안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 명시적인 수령의사가 없으면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실무상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그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 등이 형사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몰래 회수해가는 악용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공탁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4. 7월 형사공탁 악용방지를 위한 「공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4. 9. 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같은 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2024. 10. 16. 법률 제20458호로 공포되어 2025. 1. 17. 시행될 예정이다.

나. 주요 개정 내용

형사공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수를 금지한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의2).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연구

법무과 검사 김유완, 법무관 박승두

가. 변호사 징계 및 변호사제도 관련 법령 검토

1) 추진배경

사회의 복잡다기화로 인하여 종래 없었던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계속 생겨나는 속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다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도 변호사법을 비롯하여 변호사제도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무부는 변호사제도의 소관 부처로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변호사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관련 행정소송에 조속히 대응하였다. 또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는 변호사제도의 본질, 소송 법제와의 정합성,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정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2) 추진내용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중 공석을 새로이 위촉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총 4회에 걸쳐 심의기일을 개최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37건을 심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확정된 변호사 징계처분에 관하여 징계대상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전부 승소(6건)함으로써, 법조윤리 확립에 일조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각종 법률에 관한 개정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의견을 회신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정비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는바, 법무부는 유관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논의 및 학계·실무계의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소관 부처로서 내실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의뢰인의 변호사비용 조달방법'과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를 주제로 정책 연구를 의뢰함으로써, 관련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3) 기대효과

비위 변호사 제재 및 변호사 관련 법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하여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법치주의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리걸테크 관련 규제 정비

1) 추진배경

최근 ChatGPT를 위시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법률서비스 기능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조계와 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의 영역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여 헌법상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며, 법률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리걸테크의 구체적인 운영 양태에 따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리걸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추진내용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과의 제도적·법적 갈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최근 수년간 리걸테크 산업의 향방을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와 리걸테크 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법적 분쟁으로까지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심의기일을 개최하여,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여, 2023. 11월 학계·실무계·리걸테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리걸테크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발한 국제교류 또한 병행하였다. 2023. 5월에는 스위스 리걸테크협회(SLTA, Swiss LegalTech Association),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방법원(Tribunale di Venezia), 독일 프랑크푸르트 변호사회(FAV, Frankfurter Anwaltsverein) 등을 방문하여 리걸테크 규제에 관한 유럽 지역의 규제·업계 동향 등을 조사하였다. 6월에는 변호사법과 리걸테크에 관한 일본 법무성 측의 문의에 답변하였으며, 8월에는 일본 법무성에서 공표한 AI 법률사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번역·분석함으로써,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과도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외에도 법무부는 '리걸테크를 활용한 사건예측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주제로 정책 연구를 발주하고, 관련 포럼·심포지엄·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지난 1년 간 리걸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충실히 모색하였다.

3) 기대효과

리걸테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함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는 변호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리걸테크 생태계를 육성하고, 법조계와 리걸테크 업계 간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양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6. 전자공증시스템의 고도화

법무과 서기관 김신우, 법무관 나정욱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2010년 IT 기술의 발달, 전자거래 활성화, 상업등기 전자신청제도 도입 등에 따라 사서증서에 대한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다. 다만,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신분확인을 위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8. 6월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문서를 인증할 수 있는 화상공증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21년에는 본인인증수단에 여권 등을 추가하면서 재외국민의 전자공증서비스 접근이 한층 용이해졌다.

한편, 2015년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이 시행되는 등 사법절차 및 행정서비스 전반의 전자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선진화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전자공증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전자공증제도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높이고자 전자공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기존의 전자공증시스템은 ① 전자공증 받은 문서를 인쇄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점(온·오프라인 호환성 문제), ② 대상이 사서증서로 한정되는 점, ③ 기타 어플리케이션 및 웹 프로그램의 이용 불편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추진내용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제1차년도 사업을 2023. 1월 블록체인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선정받아 추진하였고, 2024년 그 추진을 완료하였다. 사업에 따라 ① 전자문서 형식의 공정증서 작성 기능의 도입, ②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공증문서의 보관·유통이력 관리를 통한 보안성 강화, ③ 본인인증 수단 확대 등을 통하여 전자공정증서의 신뢰성, 안정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 제1차년도 사업에 따른 신규기능은 『제3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범운영 중에 있다.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제2차년도 사업도 2024. 2월 블록체인 지원사업으로 선정받아 추진하였다. 2차년도 사업은 ①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의 사서증서 인증 기능의 블록체인 기반 보안성 강화, ② 전자공증문서를 위·변조방지조치를 추가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 강화, ③ 전자공증문서를 행정안전부의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여 유통받을 수 있도록 기능 연계, ④ 모바일 공증시스템 재구축, ⑤ 종이 공증문서의 전자적 보관 기능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 표 2-12 |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의 비교

구 분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공증 방식	•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의 촉탁을 받아 공증인 명의 서류를 직접 작성	• 인증 대상 문서인 사서증서를 당사자가 작성하고 공증인은 그에 대한 인증을 수행 •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대상 문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함
효력	• 공문서로서 증거력 인정 • 요건을 갖춘 집행증서의 경우 집행력 인정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으로 인한 증거력 인정
전자공증 (현행)	• 전자공증 불가(법령 정비 중)	• 전자공증시스템 개발·운영(2010) • 화상대면 공증기능 도입(2018)
고도화 사업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제1차년도 사업(2023)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제2차년도 사업(2024)

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추진이 모두 완료될 경우, 국민들은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공증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다양해져 이용편의성이 증대되고, 공증인들의 종이 공증문서 보존 및 인수·인계에 따른 비용부담 등 어려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개발된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자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정공증인들을 대상으로 신규 기능을 교육하고, 지정공증인 지정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의 편익을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7.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법무과 서기관 김신우, 교위 임유성, 법무관 전세환

가. 개요

법무부는 전국의 변호사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각 편중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변촌(無辯村)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법률안전망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3. 6월 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시켰다.

다만, 제도 출범 이후 ① 마을변호사가 위촉된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많고, ②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공무원이 제도를 모르거나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법무부는 2020. 7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마을변호사가 위촉된 모든 지역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마을주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24년 제도 출범 11주년을 맞이하였다. 11년간 꾸준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며, 범정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우수등급' 평가를 받고(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범정부 협업과제'로 선정(2020년)되는 등 민·관의 모범 협력 모델 사례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나. 마을변호사 배정·상담 현황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 6월 전국 250개 읍·면에서 제1기 마을변호사 415명을 위촉하며 출범하였다. 이후 마을변호사 인원 수 및 배정 지역을 확대하고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결과, 전국 1,425개 읍·면·동에서 제7기 마을변호사 1,239명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총 1,580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마을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 표 2-13 |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구 분	제1기 ('13.6. ~ '14.6.)	제2기 ('14.6. ~ '16.6.)	제3기 ('16.6. ~ '18.6.)	제4기 ('18.6. ~ '20.6.)	제5기 ('20.7. ~ '22.7.)	제6기 ('22.8. ~ '24.8.)	제7기 ('24.8. ~ '26.8.)
배정 지역수	250개 읍·면	1,412개 읍·면	1,413개 읍·면	1,442개 읍·면·동	1,491개 읍·면·동	1,414개 읍·면·동	1,425개 읍·면·동
마을 변호사수	415명	1,455명	1,519명	1,444명	1,371명	1,228명	1,239명

| 표 2-14 |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현황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상담 건수	311	811	2,060	1,125	1,323	1,607	2,120	2,650	2,290	3,122	2,725

제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상담건수는 21,000여 건에 달한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마을변호사를 찾는 주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의 단계적 해소에 따라 마을법률담당공무원들이 마을주민들에게 마을변호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또한, 매년 상담실적을 제출하는 변호사의 수가 전체 마을변호사 수의 약 20%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실제 진행되는 상담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2019. 4월 강원도 산불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한 이래로, 국가재난, 사회범죄 등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2024년에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과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각 구성하여 틈새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였다.

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1)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제7기 마을변호사의 활동을 돕고, 읍·면·동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마을변호사 활동 가이드라인'과 '마을변호사제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에 2024년 제도 운영 현황, 우수사례 등을 수정 반영하여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다.

| 그림 2-38 |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마을변호사 활동 가이드라인



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2) 마을변호사 제도 적극적 홍보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버스음성광고를 실시하였으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나아가 마을변호사 포스터를 신규 제작하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는 한편, 지방 왕래 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용산역에 조명광고를 진행하였다.

| 그림 2-39 | 마을변호사 홍보 컨텐츠



홍보포스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조명광고

3) 마을변호사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매년 마을변호사 기념식을 개최하여 제도발전에 기여한 마을변호사·공무원·지자체를 표창하고 있다. 2024년도 제11주년 기념식에서는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11주년을 기념하고, 마을변호사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마을변호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제7기 마을변호사로 신규 위촉된 변호사들이 참석하여 제도 출범 11주년을 함께 축하하였다.

| 그림 2-40 | 마을변호사 11주년 기념식



마을변호사 11주년 기념식(2024. 12. 19.)

8.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법무과 서기관 김신우, 교위 임유성

가. 추진배경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소·법무법인·국가기관·지자체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에서 주최하는 연수를 마쳐야만 개업·사건 수임 등 변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1조의2).

법무부는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에서의 법률사무 종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 이수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의 근무를 통한 실무 역량의 함양 및 저년차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법무부는 2020. 1월경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0. 6월경 기획재정부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제도의 운영 예산을 협의하여 전 기관의 소요 예산을 배정받았다. 2023년까지 국가기관 실무수습변호사 제도 창설 이래 법무부 주로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을 통한 통일된 선발절차를 안내해왔지만 2024년부터는 법무부가 기재부와 국가기관별(검찰청 제외) 예산 협의 및 통합선발을 추진하지 않고 각 기관에서 직접 기재부와 예산 협의 업무 및 기관별 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5년도에 총 32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채용은 2024년까지 법무부가 통합선발을 담당하고, 각 국가기관이 면접, 채용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는데, 2021. 5월경 13개 국가기관, 총 72명의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2년에는 18개 국가기관, 총 130명, 2023년에는 총 20개 국가기관, 총 135명, 2024년에는 총 45개 국가기관, 총 146명의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법무부는 2025년에는 32명을 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법조인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채용 국가기관의 법률사무 수요에 맞추어 법률자문, 행정소송 수행, 법령연구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판 참관, 세미나 참석, 진로 상담 등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법률사무종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원활한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다. 기대효과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적극 선발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변호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공익법무관들의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법치행정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공익법무관 제도 운영

법무과 검사 김유완, 법무관 조재범

가. 제도 취지

공익법무관 제도는 병역미필인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일부를 군복무에 갈음하여 공익법무관으로 임용 후 법률구조·국가소송 기타 공공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제8조), 법률구조공단,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소송수행청에 배치되어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제2조, 제9조).

1995년에 공익법무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임용·배치, 복무지도·감독, 관련 법령 제·개정, 예산집행 등 공익법무관 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나. 인원 및 배치 현황

공익법무관이 최초 임용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36개 기수, 2,538명의 공익법무관이 임용되어 복무하였다(복무만료 33개 기수, 2,365명). 2024. 8. 1. 기준 총 171명의 공익법무관이 64개 기관(법률구조공단 27곳, 각급 검찰청 17곳, 소송수행청 17곳,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2곳)에 배치되어 있다.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 이래 2010년대 중반까지는 공익법무관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배치기관 및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재학생 중 병역미필자 수 감소, 변호사시험 합격률 감소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인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공익법무관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 표 2-15 | 연도별 공익법무관 총원 및 신규임용자 인원수

(단위 : 명)

연도	인원수	연도	인원수	연도	인원수
1995	27(27)	2005	204(55)	2015	582(200)
1996	100(73)	2006	188(73)	2016	622(205)
1997	103(3)	2007	202(74)	2017	583(178)
1998	95(19)	2008	240(93)	2018	469(86)
1999	75(53)	2009	233(66)	2019	324(60)
2000	140(68)	2010	231(72)	2020	200(54)
2001	190(69)	2011	212(73)	2021	142(28)
2002	195(58)	2012	294(147)	2022	122(40)
2003	216(89)	2013	387(165)	2023	131(63)
2004	207(60)	2014	530(217)	2024	171(68)

※ 괄호 밖이 해당 연도에 복무 중인 공익법무관 총원, 괄호 안이 해당 연도 신규임용자 수

다. 기대효과

구조 담당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에 배치되어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 변호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도 활동하며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 소송수행청에 배치되어 국가소송·행정소송 수행, 지휘·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 행정청의 소송총괄관 및 소송수행자의 법률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패소와 소송지연을 억제하고, 패소율 감소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 이전(1994년)에는 국가소송·행정소송 패소율이 약 35%에 달했으나, 공익법무관 제도가 정착된 2018년에는 패소율이 약 10%로 크게 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및 국가배상 업무의 지휘·감독

가. 국가소송 및 국가배상 신청사건 현황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이선민

1) 국가소송 현황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의 수행은 국가 전체의 공익을 수호하면서도 개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소송의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소가 2억 원 이상 사건의 소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등 주요 소송행위에 대하여 통일적인 승인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2024년 국가소송 사건은 12,466건으로, 총 소송가액은 약 4조 6,791억 원에 이른다. 특히,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등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조세관련 소송 등 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의 비중 확대는 국가정책의 수립·시행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소송의 승인·지휘 업무의 중요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가소송 패소율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및 공익법무관 등 법률전문가에 의한 국가소송 수행, 소송수행자 교육, 송무지도점검 등 송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4년에는 9.2%를 기록하였다.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8〉와 같다.

2) 국가배상 신청사건

국가배상법에서는 국민들이 소송보다 간이한 국가배상절차를 통하여 신속한 손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심의회를 통한 국가배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본부배상심의회를 설치하여 개산액(槪算額) 5,000만 원 이상 사건 및 전국 고·지검에 설치된 지구심의회에서 심의한 사건의 재심사건에 대하여 심의·처리하고 있다.

국가배상신청사건(「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사건 포함)은 1992년 이후 다소간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 12. 29.「국가배상법」 개정(국가배상 신청절차를 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 이후 대폭 감소한 바 있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약 16% 증가한 9,970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1,369건을 인용하고, 2,718건을 기각하는 등 전년 처리 사건 수 대비 200건을 넘는 총 4,269건을 처리하여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나. 국가소송 수행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1) 국가송무 수행자 교육 실시 및 실무서적 발간

법무부는 국가송무 수행자의 송무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도 법무연수원의 '국가송무 수행자 과정'에서 '국가송무개관', '국가·행정소송 주요 패소사례 및 공통법리', '서면작성연습 및 답변서 발표 및 강평' 강의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국가송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송무관련 법령집', '국고손실 환수소송 매뉴얼' 등 실무서적을 발간·배포하여 소송수행자들이 국가송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송무지도점검 실시

법무부는 국가송무 및 국가배상 업무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무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총 8개 검찰청(서울고검, 수원고검, 부산고검, 창원지검, 제주지검, 춘천지검, 전주지검, 의정부지검)의 국가소송·국가배상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

지도점검을 통하여 각 고·지검이 국가소송 지휘 및 국가배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법무부의 훈령·예규 및 지시·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미비점을 찾아내어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수검대상 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향후 국가송무 수행에 참고하는 기회로 삼았다. 수검대상 기관은 법무부의 지적 사항을 수용·개선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소송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3)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개최

2024. 12. 2. 전국의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77명이 모여 국가송무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고·지검 및 수행청 파견 공익법무관들이 국가·행정·헌법소송의 수행 현황, 국가송무 개선 방안과 법무부와 일선 수행청 간 원활한 소통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통일적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국가송무 전반에 걸친 송무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밖에 공익법무관의 역할증대 방안 논의 등을 통하여 공익법무관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송무업무유공자 포상

법무부는 각급 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격려하고 적극적이고 충실한 소송 수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송수행자 및 송무 담당 공무원의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송무업무유공자 101명(국가소송 55명, 행정소송 46명)에 대하여 총 3,0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

국가소송과 서기관 윤경식, 행정사무관 정유경

2008년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과 법률자문 수행을 통하여 국가재정 손실방지 및 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가로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와 공단의 홍보노력 등으로 공단의 2024년 수임사건은 송무 1,764건, 법률자문 2,323건으로 출범 초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2008년 수임사건 송무 377건, 법률자문 633건). 특히, 2024년에는 2015년~2016년 대전지방조달청 관수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 투찰수량 비율을 합의하여 수량을 배분하거나, 낙찰예정자를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한 지역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41억 원의 배상을 이끌어 내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된 舊 일본인 소유 재산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2016년부터 중점 지원한 결과, 2024. 12월 기준 총 160건이 확정되어 185,021㎡를 국가 소유로 회복하는 등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단의 전문적인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11.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하는 국가배상법 개정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행정주사 남승우

가. 추진배경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다.

그런데 헌법 제29조 제2항의 문언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 군경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그 행사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주요 개정 내용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2023. 10. 25.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제출하고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정부안 내용을 반영한 의원안 3건에 대하여 충실한 검토를 통해 입법과정을 뒷받침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 12.

1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 1. 7.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도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등 유족의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 등 자신의 책임을 다한 국민의 유족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2. 국고손실 환수송무 적극 추진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행정주사보 김혜림

가. 추진배경

국고손실 환수소송이란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범죄, 국가가 발주한 시설공사·물품구매 관련 입찰담합 등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민사소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관리된다. 국가는 국고에 손실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수단을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손실액의 완전한 환수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적 환수방안, 즉 국고손실 환수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수행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는 각 소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수소송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고손실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15. 9. 22. 법무실 국가소송과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한 바 있다.

나. 추진경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출범 이래 국가 상대 입찰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등 의결서 및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환수가능 사례를 발굴하는 등, 국고손실 환수소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법무부의 국가소송 승인권한이 확대된 이후, 중요 소송행위에 대한 적절한 승인을 통해 소 제기 및 환수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 전(全) 단계에 걸쳐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 추진성과

2024년,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환수가능 사례 발굴 및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해 조달청,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급 검찰청과 소송 수행청 등의 업무협조를 통해 부패·비리, 입찰담합 사건 관련 판결문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소송행위 총 42건을 승인하고, 총 5건의 신규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PHC파일 입찰담합 사건, 레미콘 입찰담합 사건, 어업면허 보상금편취 사건, 공탁금 횡령 사건, 우체국 보험사기 사건 등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총 52억 1,798만 원을 환수하였다.

라. 향후 계획 및 기대 성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수사례 발굴과 환수소송 수행을 위해 소관부처, 관계기관 및 각급 검찰청과 상시적 협업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환수소송의 효과가 재산적 전보(Compensation)측면에 그치지 않고 위법행위 방지기능(Deterrence role)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관한 모니터링과 면밀한 소송 수행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누출 방지와 국가기능의 정상적 작동에 기여하고,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13.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국가소송과 검찰사무관 유영걸, 행정사무관 강형광

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요

법무부는 국가송무의 규모 증대 및 전문화,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통신수단 발달 등 현대의 급변하는 송무환경에 대응하여 국가송무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을 구축하고, 2016. 9월 전체 행정기관을 수행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추진 성과

법무부는 2013.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업체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계약을 체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소송수행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소송수행 역량을 제고하여 왔고, 2020.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의 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2021년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검찰 사건번호→법무부 사건번호) 및 지역관할에서 사건유형으로 배당체계를 개편하고, 2022년에는 수행청 시스템의 Non-ActiveX 전환 등 주요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특히, 2023년에는 지휘청 시스템을 Non-ActiveX 전환하고 상소 및 불변 관련 전자 승인·지휘 기능을 추가하여 국가송무 지휘체계 전자화하였고, 2024. 11월에는 이를 전체 승인·지휘로 확대하여 국가송무 지휘·승인 관련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혁신하였다. 또한 노후 서버장비 및 최초 도입 후 교체가 없었던 데이터베이스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중화 구성하여 시스템 장애 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2024년 말까지 행정기관(수행청)은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367,944건의 소송사무 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처리 하였고, 755,445건의 소송문서를 등록하여 지휘청과 공유하였다.

| 그림 2-41 |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 승인·지휘 개요



수작업 업무 폐지,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업무처리	주요내용
	•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 사건관리, 지정서 출력 등 송무수행을 전자적으로 처리 •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체계로 소송 수행자가 소송에 빠르게 대응 가능 •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제공

다. 기대 효과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의 오류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송무행정의 질을 꾸준히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휘청은 물론 전체 수행청에 걸친 국가송무의 통일적·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국가송무 관련 판례 등 정보·지식 관리·공유를 통하여 소송 대응 및 수행 능력 향상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 등 승인·지휘청은 시스템을 통해 수행청의 국가송무 수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행정소송과 검사 이현진, 법무관 허태인, 김근호, 이준엽

가. 개요

행정소송은 공권력의 행사가 법령에 부합하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소송은 소송의 형태가 다양하고 소송유형별 독자적 법리가 적용되는 등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나아가 행정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소송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20. 12. 28. 국가 송무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송무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전국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 위임된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였으며, 변호사 자격자인 송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 조세, 노동·인사징계, 일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에서 통일적 지휘를 통해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상 과오 시정, 제도개선 권고 등 개별 사건의 지휘를 넘어 법치행정 구현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국가 송무행정 시스템의 고도화·체계화를 통해 소송수행청에 대한 보다 실질적·효율적인 소송지휘를 추진하고 전문성에 기반하여 소송수행청의 송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수행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나. 소송지휘 업무 전자화

과거 공문과 실물기록, 그리고 수기결재 기반으로 진행되던 행정소송 지휘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청과의 소통 취약성 및 비효율성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 9월 '상소 지휘'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 기반의 행정소송 전자지휘를 도입·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상소 외 다른 소송행위로 전자지휘 범위를 확장하였다. 2024. 1월에는 즉시항고 등에 대해, 6월에는 조정권고 이의 등에 대해, 그리고 11월에는 소송참가 및 기타 소송행위에 대해 전자지휘 기능이 도입·실시됨으로써 행정소송 지휘업무 전반의 전자화가 완료되었다. 또한 2024. 1월 정식 탑재된 NDSL 헌법재판 관리 기능과 관련하여서도 1년간의 실무 활용 및 피드백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운용 노하우와 자료를 축적, 송무 전자화의 한 축을 완성하였다.

다. 송무업무 수행(효율적·통일적 행정소송 지휘·감독, 직접수행)

1) 개관

국가송무체계 개선으로 전국 검찰청에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이 모두 법무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행정소송 지휘, 중요 사건 지정·관리 등 행정소송 업무 전반을 법무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행정소송 지휘 권한이 법무부로 일원화된 이후 공정거래, 조세, 노동·인사징계, 일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한 행정소송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4. 12월 말 기준 진행 중인 행정소송 사건은 46,083건으로, 전년 대비하여 약 0.99% 증가하였다. 행정소송 신건 접수 건수는 2021년에 전년 대비 약 2,121건 감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 12월 말 기준 사건 처리 건수는 20,109건이다.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10〉과 같다.

2) 주요 행정소송 직접수행·지휘 사례

가) 전국에 동일 쟁점으로 다수 재판 계속 중이던 하천편입토지보상금 사건의 공동수행으로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보상금 이중 지급 문제를 해결한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들의 선조인 망인은 1971년 하천법의 시행에 따라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1973년 경 위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1989년 경 위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임을 이유로 토지 등기부상 최종 명의자인 위 매수인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남아 있으므로 원고들이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의 수령권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선조인 망인이 위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할 당시에 이미 위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민사 법리에 따라 위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결국 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원고들의 선조 망인은 토지 매도 당시 그 대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들에게 하천편입보상금까지 지급될 경우 원고들의 일가는 동일 토지에 대해 사실상 이중의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2)소송 진행 경과'와 같이 본건의 제1,2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본건의 원고들과 동일한 취지로 지자체를 상대로 하천편입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해당 사건들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지자체들이 지급해야 할 합계 금액은 최소 1,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이었다.

(2) 소송 진행 경과

- 2021. 11. 17. 원고 소 제기
- 2022. 12. 9. **1심 판결선고 [피고 패소]**
  * (1심 판결 요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이를 매도하였더라도 무효이므로 종전 소유자인 망인의 후손들인 원고들이 정당한 손실보상금청구권자임
- 2022. 12. 26. 피고 항소 제기
- 2023. 11. 1. **2심 판결선고 [피고 패소]**
  * (2심 판결 요지) 1심 판결 인용하여 피고 항소 기각
- 2023. 11. 21. **피고 상고 제기**
- 2024. 5. 30. **3심 판결 선고 [파기환송]**
  * (3심 판결 요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❶재산상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❷토지를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수익하다가 매도한 망인은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❸망인은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 등을 당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내지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❹매매대금과 손실보상을 모두 취득하는 이중의 보상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바, 원심에는 손실보상의 요건 및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
- 2024. 9. 27.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피고 승소]**
  * (파기환송심 판결 요지) 원고들을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라고 할 수 없음

(3) 법무부 공동수행 사항

법무부는 이와 같은 사건들의 결론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선례가 확립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본건의 항소심 판결 이후 본건을 공동수행 사건으로 지정하여 본래의 소송수행청인 피고 서울특별시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피고 서울특별시를 지휘하여 대법원에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협의하여 작성한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손실을 보상'하려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청구가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한 후 2024. 5. 30. 원고들을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심 법원은 2024. 9. 27.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국 본건은 동일 쟁점의 하천편입보상금 사건에 대한 리딩케이스가 되었고, 본건 이후의 사건들에서는 지자체 승소 취지의 판결로서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

나) 조세 부과처분서가 전자 송달되었던 사안에서 전자 송달의 '송달 간주효'로 인해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지적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설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8. 12.경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때 피고는 2018. 12. 3. 원고의 사전 동의에 따라 위 처분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전자 송달하는 한편 등기우편으로도 송달하여 원고가 2018. 12. 12.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9. 3. 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후 그 청구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하여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2) 소송 진행 경과

- 2021. 11. 18. 원고 소 제기
- 2023. 8. 8. **1심 판결선고 [피고 일부패소]**
- 2023. 8. 29. 피고 항소 제기
- 2024. 5. 30. **2심 판결선고 [피고 승소]**
  * (2심 판결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전자송달 된 것으로 납부고지서가 홈택스에 등록되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원고는 처분이 송달 간주된 2018. 12. 3.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조세심판은 부적법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함
- 2024. 6. 21. 원고 상고 제기
- 2024. 10. 10. **3심 판결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3) 법무부 지휘 사항

이 사건을 수행한 소송수행청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이유로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에 따라 처분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순간 원고가 이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처분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홈택스에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의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는 위 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과 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본안 판단을 하였다. 법무부는 이를 지적하며 항소 제기할 것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2심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 취소 사건에서 1심 패소한 수행청에 대해 적극 항소 제기 지휘하여 소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와 000은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 원고는 '000이 운동장과 복도 등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 의결 결과에 따라 000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000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2. 3. 7.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소송 진행 경과

- 2022. 3. 7. 원고 소 제기
- 2023. 1. 13. **1심 판결 선고 [원고 승소]**
  * (1심 판결 요지) ❶000의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❷피고가 000의 학교폭력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 2023. 1. 30. 피고 항소 제기
- 2024. 6. 20. **2심 판결 선고 [원고 패소]**
  * (2심 판결 요지) ❶개정 법령에 의할 때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진행되던 중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소의 이익은 계속 존재함 ❷기존 증거와 함께 항소심에 이르러 보조참가한 000측의 진술, 000 측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0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
- 2024. 7. 12. 원고 상고 제기
- 2024. 10. 31. **3심 판결 선고 [심리불속행기각]**

(3) 법무부 지휘 사항

이 사건의 소송수행청은 1심 패소 이후, 이 사건 1심 진행 중 원고와 000 모두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였고, 이러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과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학교폭력 인정 유무와 관계 없이 항소 포기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지휘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소의 이익에 관한 위 판결 사례에 대한 법리적 의문이 있고, 학교폭력 사실 존부, 즉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000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항소 제기를 지휘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 000 측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적극 제출하였다.

2심 법원은 먼저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점 등을 근거로 본건과 같이 가해·피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라도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보조참가인의 주장 및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1심과 달리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상고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무부는 본건의 2심 판결 직후 전국의 관련 소송수행청을 상대로 ①소송진행 중 당사자의 상급학교 진학을 사유로 한 사건 종결을 지양하고, ②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안의 경우 가해·피해 학생의 참가 기회 제공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휘 사항을 전파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존부에 관한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동종 사안들에서 피해·가해 학생들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를 살펴 소송지휘를 하여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소송수행청에 대한 송무 지도·점검 강화

소송수행청의 송무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청을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소송업무 처리의 적법성·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주요 소송수행청을 방문하여 소송업무 수행 실태(NDSL 이용률,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소송비용 회수현황 등)를 조사·점검하고, 소송수행청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송무행정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4년도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1개 기관에 대한 송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요 소송수행청, 소송수행해태가 빈번한 기관 등을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송수행청과의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더욱 내실 있는 송무업무 관리·감독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라. 헌법재판 업무 수행

1) 개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재판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헌법소송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권한쟁의심판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다수의 탄핵심판이 청구되어 법무부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재판에서 입법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 등 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그것이 헌법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 또한 지속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법무부가 주요 헌법재판에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총 94건이다.

2) 위헌법률심판 수행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타 부처 주요 법령의 위헌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4조에 따라 심판대상 법령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2024년에는 총 28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합헌 7건, 각하 2건, 위헌 14건, 헌법불합치 5건이 선고되었으며,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등 위헌제청 (2024. 4. 25. 2020헌가4 외 47건 병합) : 위헌·헌법불합치
-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위헌제청 (2024. 5. 30. 2019헌가29) : 헌법불합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2024. 7. 18. 2022헌가6) : 헌법불합치

3) 헌법소원 수행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무부는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74조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2024년에는 총

2,692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합헌 등 547건, 각하 등 2,018건, 위헌 33건, 헌법불합치 10건이 선고되었으며,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등 위헌확인(2024. 6. 27. 2020헌마458 외 3건 병합) : 헌법불합치
-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등 위헌확인 (2024. 6. 27. 2023헌바78) : 일부 위헌
-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결격사유) 위헌소원 (2024. 7. 18. 2021헌마460) : 위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8. 29. 2020헌마389) : 헌법불합치

4) 탄핵심판 수행

탄핵심판 제도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제도이다. 법무부는 중요 탄핵사건에 있어 공개변론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헌법재판소법 심판 규칙」 제10조에 따라 필요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024년에는 총 9건의 탄핵심판청구가 새롭게 이루어졌고, 2023년에 청구되어 결정되지 못한 사건 3건을 포함하면 총 12건의 탄핵심판이 진행되어 2건이 선고되었다. 법무부는 위 2건의 탄핵사건[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탄핵,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건들은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 검사(안동완) 탄핵(2024. 5. 30. 2023헌나2) : 기각
- 검사(이정섭) 탄핵(2024. 8. 29. 2023헌나4) : 기각

15. 통일 대비 법적·인적 기반 구축

가. 통일 대비 법제연구 강화

통일법무과 검사 심재신, 서기관 한경태

1) 추진배경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준비하고 주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선제적인 법제 정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추진내용

2024년 법무자문위원회 산하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북한 형법 주석」, 「키프로스 통일방안 연구」, 「남북 행정통합방안 연구」, 「동서독 국가조약 상 법률 통합 연구」 총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위원 총 23명), 운영하였다. 각 소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통해 심층적인 통일법무 자문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2024. 12월에는 제53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각 소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그림 2-42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전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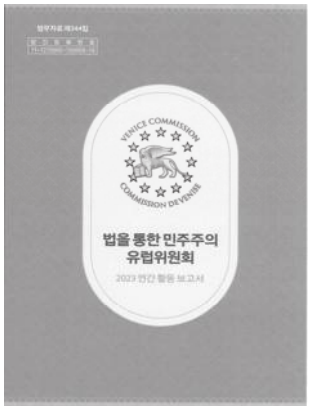


2024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전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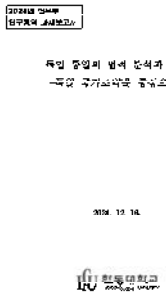
2024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관련 법령 제·개정안 100여 건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북한의 체제전환 및 통일 대비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의 2023년 활동내역을 검토하여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2023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의 법적 분석과 평가 - 독일 국가조약을 중심으로」, 「키프로스 통일협정(아난플랜 v)의 법적 분석 및 국내 시사점 도출」, 「남북한 통일 이후 행정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 「북한 개정 형법 주석」, 「북한이탈주민 대상 형사정책 개선 방안」, 「대북제재 위반 선박 대응 및 처리에 관한 법제」, 「독일 통일 후 공직통합 관련 분쟁사례」, 「통일한국 형사처벌 절차의 쟁점」 총 8건의 정책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분단 경험이 있거나 현재 분단국가인 독일, 키프로스의 사례를 연구하여 남북한 법률 통합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먼저, 독일 통일 과정에서 경제, 화폐, 사회 보장, 공공 재정 및 행정, 사법 등 분야별 법률 통합을 위한 합의 사항을 담고 있는 통일조약을 평가·분석하였고, 아울러 키프로스 통일협정의 연방헌법, 주요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당시 키프로스가 처한 상황과 우리 현황을 비교하는 등 향후 통일합의서 작성 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그림 2-43 | 연구자료 발간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2023년 연례보고서



독일 통일의 법적 분석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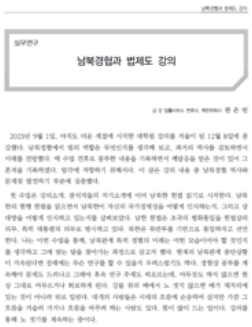
한편, 2010. 2월 창간한 통일법 전문 학술지(계간지) 「통일과 법률」 2024. 2월 제57호부터 11월 제60호까지 발행하여 통일법제 연구의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호당 연구논문 4~5편과 실무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활동 수기, 남북관계 동향 등을 게재하였으며, 제57호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은민 변호사의 '남북경협과 법제도 강의'를 실어 통일법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원고의 다양성을 제고하였다.

| 그림 2-44 | 「통일과 법률」 발간



「통일과 법률」 제57호



남북경협과 법제도 강의

3) 주요성과 및 평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남북관계 관련 법령 제·개정안 검토, 「통일과 법률」 발간 등을 통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통일법무과 행정사무관 장윤정, 검찰사무관 김도언

1) 추진배경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룰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여 통일법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일법무과는 매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진행하며 통일법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2) 추진내용

2024년에는 「제1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10. 14.~11. 18.)하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공무원 등 수강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6강으로 준비된 제14기 아카데미에서는 미래 통일법제의 주요 법적 쟁점과 방향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하였다. 강연은 '북한 인권 실상과 국제 협력 방안'(제임스 히넌 서울 UN인권사무소장), '북한 체제와 헌법의 특징'(송인호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최은주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정전협정의 법적 과제'(도경옥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제12기 이후 대면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하여 강연자와 수강생 간 소통의 통로를 다양화하였다. 온라인 교육 도입 이후 아카데미에 대한 대학생·대학원생의 관심과 참여가 많아진 점을 고려하여 제14기부터 학생 대상 수강료의 50%를 감면하여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제14기 아카데미 수료생은 총 68명이며, 강연별 수강생 만족도 조사 결과 여섯 강의 모두 90점 이상으로 만족도 평균 96.30점을 기록하였다.

※ 역대 아카데미 수료 인원 : 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8기 26명, 9기 35명, 10기 68명, 11기 72명, 12기 75명, 13기 104명

| 그림 2-45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제1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포스터



제1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법률신문 광고



제1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법무실장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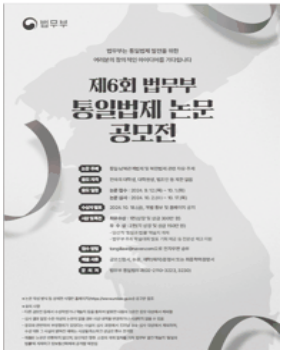


제14기 아카데미 서울 UN인권사무소장 강연

2024. 6 ~ 10월에는 '제6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1회 개최되는 논문 공모전은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로 응모가 가능하다.

약 4개월간의 공고 및 홍보를 거쳐 다수의 우수한 논문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북한주민의 보호에 관한 헌법해석론의 구체화”)과 우수상 2편(“총유 제도를 매개로 한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 방안”, “김정은 정권 시기 지방정부의 권한 변화와 재정 확충”)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수상작들은 「통일과 법률」 제61호(2025. 2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 그림 2-46 |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제5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포스터



제5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시상식

3) 주요성과 및 평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하여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고 통일법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16. 북한주민 재산의 체계적 관리·감독

검사 심재신, 서기관 김태희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2012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례법은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 등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무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생겼다.

나. 추진내용

재산관리인의 각종 신청·신고·보고사항을 법령에 따라 엄밀하게 검토하고, 재산관리인이 적법·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함으로써 탈법행위와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기·수시신고 및 처분허가 이후 금융재산 및 부동산재산의 변동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였다.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을 재정비하고, 인사이동과 무관하게 관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관련 민원접수 창구를 단일화하였다.

다. 주요성과 및 평가

재산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산관리인이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북한주민 소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제도시행의 취지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다.

17.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통일법무과 검찰사무관 김도언

가. 추진배경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각종 정보 부족 등으로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이다. 더불어 법치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고 북한사회에서 체득한 낮은 준법·인권의식으로 인해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적 측면의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위기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하며 법률지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1)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강화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률상담관'*은 유선 및 온라인(통일법제 DB 홈페이지·카카오톡)을 통한 법률상담을 제공, 2024. 1월부터 12월까지 총 323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거주지역 관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법률상담과 구조 연계를 진행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지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통일법무과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상시 법률상담 제공

| 그림 2-47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법률상담



서울남부하나센터 방문 상담 현장

2)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의 내실화

경제적 곤란, 질병, 고립 등에 더불어 법적 문제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변호사를 1:1로 매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한 법률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일법제DB, 유선·카톡·대면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024. 12월 기준, 총 71명의 지원변호인이 위촉되어 있으며 위기 북한이탈주민 26명이 매칭되어 있다(종결 건 포함 총 89명 지원).

한편,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2. 11월부터 시작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을 2024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하였다(6월, 11월). 대면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원변호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변호사, 하나센터 담당자, 남북하나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총 182명이 수료하였다.

| 그림 2-48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역량강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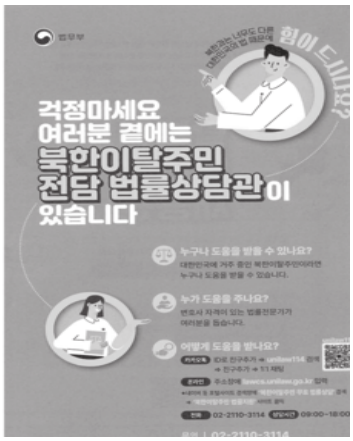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역량강화 교육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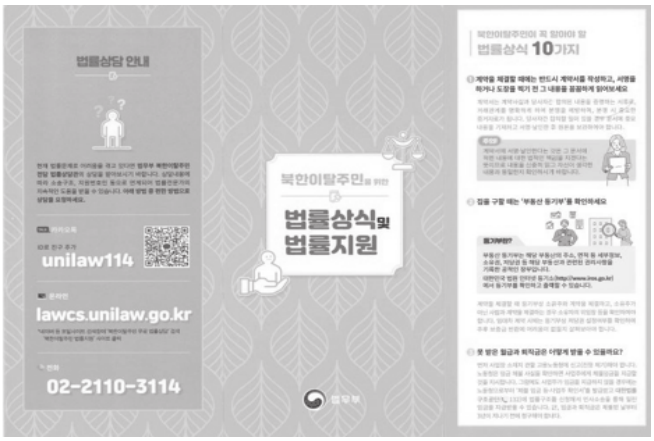
3) 적극적인 제도 홍보

제도 홍보자료와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법률지원제도를 알리도록 노력하였다. 2024. 1월, 남북하나재단이 발간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배포하는 「월간하나」(정착사례·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월간지)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를 홍보하는 자료를 게재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상식 및 법률지원」 리플렛을 제작하여 법률교육 시 배포하여 적극 활용하였다.

| 그림 2-49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 홍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 포스터



북한이탈주민 법률상식 및 법률지원 리플렛

다. 주요성과 및 평가

법률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내실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치주의 적응을 위한 법률지원 기반을 강화하였다.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빠짐없이, 그리고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18.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법무관 정종현

가. 주요 추진사항

1)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2)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화 및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근래 핵심사업부를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사 및 동시상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분할회사 주주의 주식가치 및 투자자 신뢰 훼손 논란이 발생하였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통한 주주보호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비상장회사도 동일한 주주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현행법상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주식의 매매가액에 관하여 회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 주주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지연이자도 과다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에 대학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총 11인의 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상법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에 제출하였고,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2024년 22대 국회 개회 이후 재차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2)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화 및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현행 상법상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구체적인 동의 방법과 절차가 불분명하여 실무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주주총회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현행 주주총회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23년 개정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주주총회 내실화 및 개최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주주총회의 전자적 소집통지를 활성화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하여 2023년에 '상법특별위원회' 내 '전자주주총회 자문팀'을 구성하여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에

제출하였고,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2024년 22대 국회 개회 이후 재차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1)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금번 개정안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경제 기본법인 상법에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방안을 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만큼 상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다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논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2)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화 및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주주총회의 소집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서 소집통지를 위한 각종 비용이 절감되고 주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은 '이에스지(ESG)' 경영이념 하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주가치 극대화'에서 '주주복지 극대화'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부합한다. 특히 국내기업 중 약 90%가 주식회사인 상황에서, 자유시장경제의 법질서 인프라를 선진화시키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법개정 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주주총회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상법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다.

19. 도산법의 체계적 정비 및 절차 편의성 개선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사무관 김효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1976년 개정 이후 비과세이던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동 개정안을 2023. 8. 18. ~ 9. 27. 입법예고 하였고, 2023. 11. 13.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 2. 13. 공포 및 시행되었다.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경제 형벌 정비의 일환으로 채무자회생법이 형벌로 규정하던 구인불응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경감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안을 2024. 6. 28. 국회 제출하여 2024. 12. 20. 공포 및 시행되었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을 위해 법원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금액의 상한을 정액(定額) 방식인 1,1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정률(定率) 방식으로 변경하여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경제상황에 맞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이 2024. 6. 11. 공포 및 시행되었다.

나. 주요내용

1)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협의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을 개정하여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하는 한편,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비과세 범위 명확화하였다. 그리고 2024. 1. 1. 기준 회생절차·회생계획 진행 중인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2)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3)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구인불응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경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면책불허가 사유 중 하나인 구인불응죄의 행위를 삭제하고 대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신설하였다.

4)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면제할 수 있는 금액 상한을 기존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월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정률 방식으로 개정하였다(안 제16조 제2항).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이용자들의 절차 편의를 개선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여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응 및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가. 기업환경지수 개선 목적 및 필요성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90개국의 기업환경지수를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분쟁해결, 기업도산, 금융서비스, 기업입지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지수화한 것으로 매년 10월 경 분야별 점수가 발표된다. 법무부는 10개 분야 중 4개 분야(분쟁해결, 기업도산, 금융서비스, 기업입지)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국 선택과 관련한 주요 참고 자료로 해외 자금의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2019. 10월까지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대상 190개국 중 6년 연속하여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어 세계 190개국 중 2위를 지켰다. 이는 법무부가 2011년부터 기업환경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세계은행에 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2021. 9월 기업환경 평가(EoDB)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2023년 새로운 평가체계인 신기업환경평가기준(Business Ready, B-Ready)의 개요를 새롭게 발표하였고, 2024. 10월 1차 평가 대상국 50개국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대한민국은 2차 평가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2024. 10월 ~ 12월 정부 대상 설문조사 평가가 진행되었고, 법무부는 기업입지(Business Location),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기업도산(Business Insolvency) 항목과 관련된 답변을 작성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2024. 11월 분쟁해결 영역과 기업도산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호주 및 싱가포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교류하였고, 2024. 12월 서울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국의 법률가 및 유관부처의 실무자와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와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16 | 2020년 기업환경지수 주요 국가 종합순위(전체)

국 가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	미국	호주	일본
순위	1위	2위	3위	5위	6위	14위	29위

* 2023년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 개편 전 종합평가 결과

| 표 2-17 | 2024년 기업환경지수 분쟁해결 분야 주요 1차 평가대상 국가 순위(50개국)

국 가	르완다	조지아	홍콩	싱가포르	그리스	베트남	뉴질랜드
순위	1위	2위	8위	11위	16위	19위	29위

| 표 2-18 | 2024년 기업환경지수 기업도산 분야 주요 1차 평가대상 국가 순위(50개국)

국 가	싱가포르	르완다	포르투갈	헝가리	뉴질랜드	베트남	홍콩
순위	1위	2위	3위	10위	17위	21위	27위

* 2024년은 1차 평가대상 국가 50개국에 대한 기업환경평가 결과만 발표

나. 호주, 싱가포르 현지세미나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내역 홍보

세계은행은 2024. 10월 기존 기업환경평가기준(EoDB)와 평가방식을 달리한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새로 출범한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에 의하면 법무부는 4개 분야(기업입지, 금융서비스, 분쟁해결, 기업도산)를 담당한다. 세계은행은 2023년 1차로 50개 국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에 의한 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2차 평가대상 국가로서 2024년 평가 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분쟁해결과 기업도산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호주 및 싱가포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기존 기업환경 사업내역을 공유하는 한편, 분쟁해결 및 기업도산 항목에 관한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ew South Wales) 대법원 및 현지 법무법인, 싱가포르 법무부 등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 변경된 기업환경 지수 평가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아태경제협력체 싱가포르 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업환경 개선사업(APEC EoDB) 향후 운영계획 및 우리나라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업환경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역량을 확충하였다. 이처럼 법무부는 현지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기업환경 개선 내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B-Ready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 그림 2-50 | 2024 호주·싱가포르 세미나 개최



호주 세미나 개최



싱가포르 세미나 개최

다.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방안 모색

법무부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4. 12. 3. 서울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2024년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본 회의에는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호주·싱가포르·일본·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총 40여 명이 현장 및 화상으로 참석하여 기업환경 현황과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국의 대응방안을 공유하였다.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각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51 | 2024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법무실장 축사

21. 중소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법무관 문정훈

가.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중소·벤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대응 능력이 떨어져 법률분쟁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법률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각 지역 각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현재 79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2024년 1년 간 46건 법률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70여건의 법률지원이 진행 중으로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법률지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의 법률지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법률지원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법률지원 절차의 신속·간편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문에 앞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게시하여 사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4Min 가이드, Case Study 등의 영상을 통하여 간편하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사례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강의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2022년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지원 신청절차를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법률지원 절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였다. 이에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활동 및 법률지원 신청절차를 안내하는 팜플릿을 제작하여, 2024. 11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공회의소 각 지부에 팜플릿을 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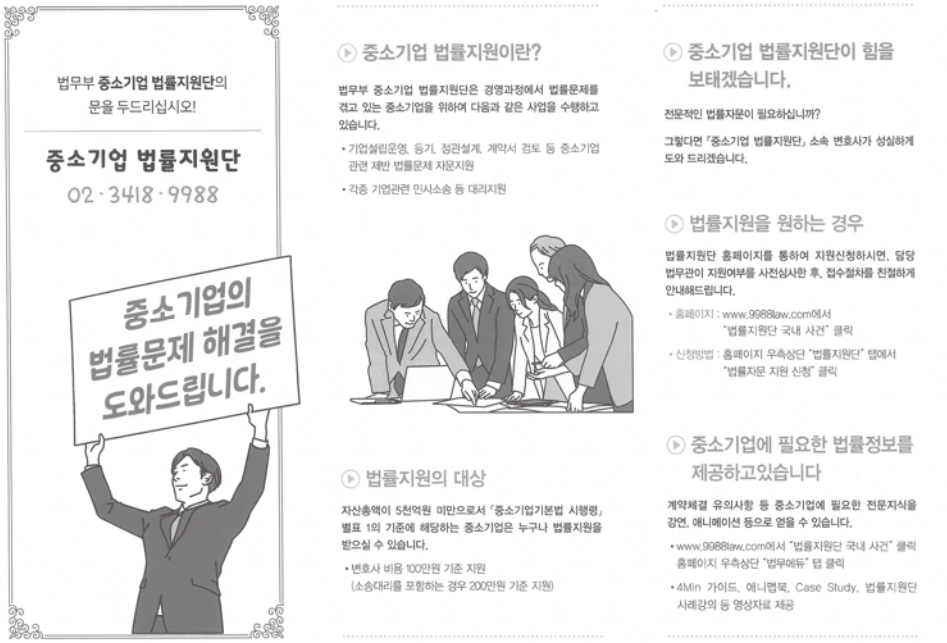
한편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네이버 해피빈 광고를 진행하여 약 3만 2천여건의 캠페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2024. 7월부터 소송대리를 포함하는 법률자문의 경우 지원금액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법률 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현실적인 법률리스크 해소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52 | 2024. 12월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네이버 해피빈 광고〉



| 그림 2-53 | 2024. 12월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홍보 팜플릿〉



22. 경제 형벌규정 개선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법무관 문정훈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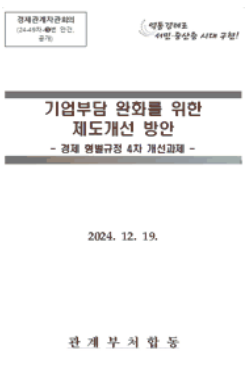
종래 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형사벌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있어 과도한 형벌규정이 마련되고 국민들, 특히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 왔다는 비판이 존재하여 온 측면이 있다. 이에 2022. 7. 13. 법무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가 출범하여 경제 형벌규정에 대하여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유사한 법률과 형평성에 맞는지, 해외사례에 비하여 과도한지 등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는 2022. 8월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1차 과제(32개 형벌규정), 2023. 3월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2차 과제(108개 형벌규정), 2023. 10월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 3차 과제(46개 형벌규정)를 발표하였다. 2024년에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 및 서민·자영업자·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포함한 4차 과제 개선방안을 발굴 및 검토하여, 2024. 12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4차 과제(19개 형벌규정)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54 |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 4차 회의 및 안건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 4차 회의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 4차 회의 안건

나. 평가 및 발전방향

경제 형벌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특히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뿐 아니라 서민·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정들을 합리화한다면 국민경제 발전과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23. 전자어음제도 운영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가. 전자어음제도 개관

전자어음제도는 약속어음의 발행·유통 및 어음상의 권리행사 등이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전자어음의 발행인은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배서, 보증, 지급제시 등이 모두 전자어음관리기관이 구축한 전자적 방식의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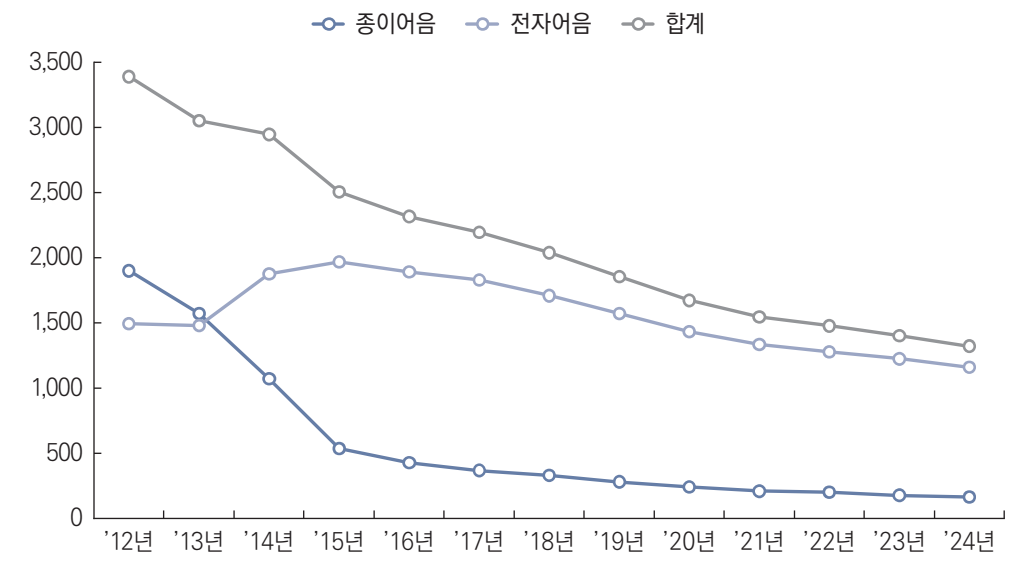
법무부는 2005년「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자어음의 정착 및 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기존의 어음은 실물종이어음으로 발행·유통되어 거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변조 위험 및 보관 문제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2009. 5월 법률 개정으로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대하여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부과하였고, 2014. 1월 및 2022. 2월 두 차례의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종이어음의 전자어음으로의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 2024년도 전자어음 관련 통계

2024년도에 전체 전자어음은 약 116만 건(전년대비 약 5% 감소), 889조 원(전년 대비 16.2% 감소) 상당액이 발행되었고, 종이어음을 포함한 전체 약속어음 중 전자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 87.6%, 금액 기준 62.6%(전년과 같은 수준)의 추이를 보였다. 종이어음은 약 16만 3,700건(전년대비 7% 감소), 531조원(전년대비 1.4% 감소)이었다. 한편 전자어음의 부도율은 최근 5년간 건수 기준 0.51%에서 0.46%로, 금액 기준 0.07%에서 0.03%로 감소하였다.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을 대체 및 보완하는 안정적인 금융 및 결제수단의 하나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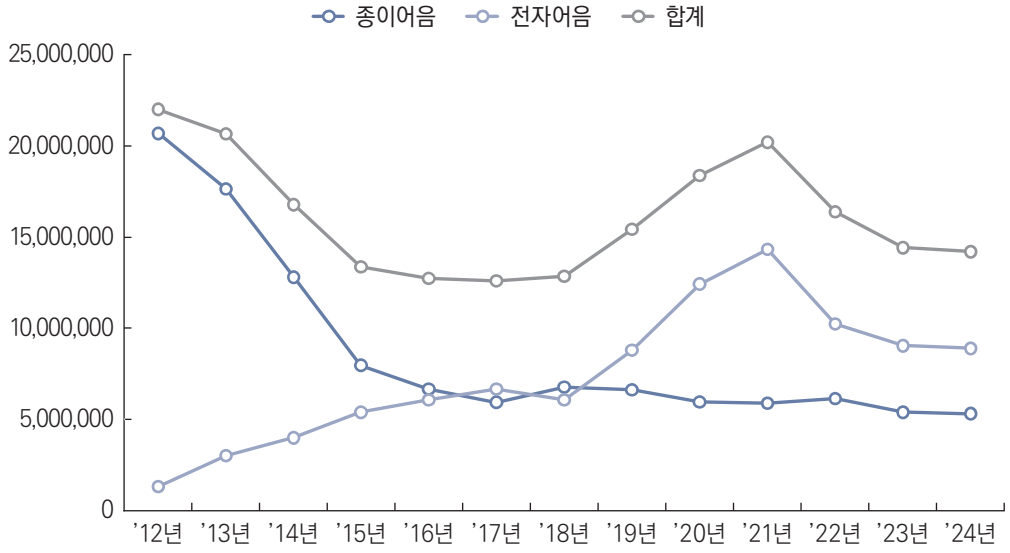
| 그림 2-55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건수 추이

(단위:천 건)



| 그림 2-56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금액 추이

(단위:억 원)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어음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전자어음은 중소기업이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하는 실물어음(종이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전자어음 의무발행사업자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전자어음제도 자체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전자어음의 유통성 및 거래의 안정성을 함께 제고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4. 전자증권제도 시행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19. 9. 16.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식·사채 등에 관하여 종이 실물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 및 거래현상을 선진화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 증권을 전자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6. 3. 22.「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였고, 2019. 6. 25.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2019. 9. 16.부터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었고 신규 발행 시에도 전자증권으로 발행할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분산원장 방식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김재섭 의원안, 민병덕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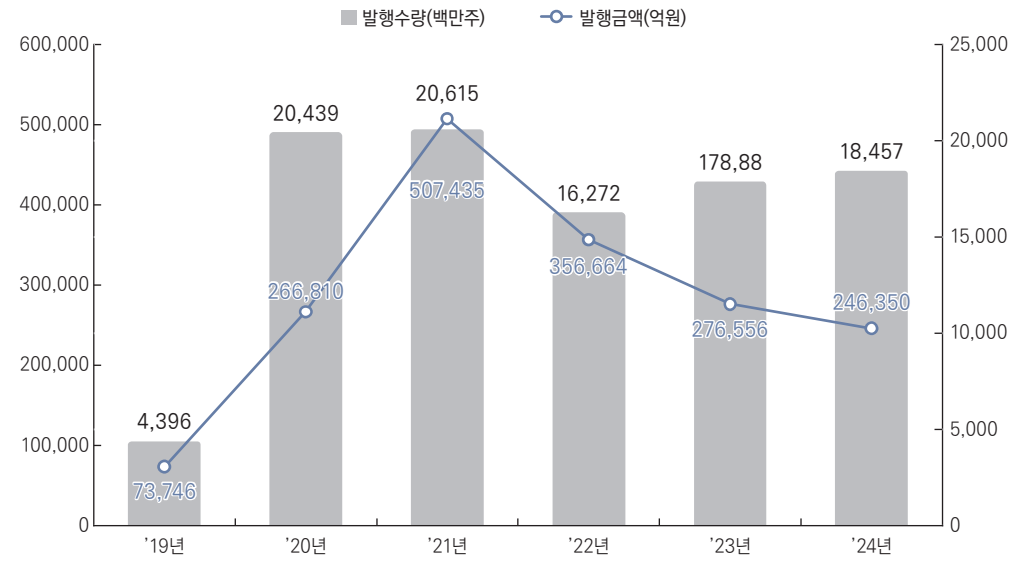
나. 2024년도 전자어음 관련 통계

2024년도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회사는 1,274개사로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고, 발행수량은 약 184.57억주로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발행금액은 약 24.6조원으로서 전년 대비 10.9% 감소하였다. 특히 코스닥 상장주식은 101.8억주로서 전년 대비 44.6% 증가하여 가장

큰 변화율을 보이며 2024년 총 주식 발행수량의 증가를 견인하였다. 한편 신규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발행회사는 총 244개사로, 전년 대비 10.6% 감소하였으며, 신규 발행되거나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주식은 26.5억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하였다.

| 그림 2-57 | 연도별 전자증권제도 신규 이용 실적

(단위:개사, 개)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 주식의 발행수량과 발행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자등록 및 유통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법적·실무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25. 중재산업 활성화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사무관 김영수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및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하고,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2016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17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재산업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여 세계적 규모의 분쟁해결시설인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중재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4. ~ '29.)」을 수립, 시행하였다.

| 표 2-19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
목표	❶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 ❷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추 진 전 략	
1. 중재 제도·인프라 강화	1. 대한상사중재원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2. 중재지원체계 수월성 제고
2. 국제중재 유치 확대	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내부역량 강화 2. 국제중재를 위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국내중재 제도 정착	1. 국내중재 저변확산 및 중재이용률 제고 2. 신규중재 수요의 개척
4. 중재산업 기반 강화	1. 전자중재를 위한 ODR시스템 구축 추진 2. 중재인 등 중재인력 발굴, 육성 및 전문화 3. 중재기관 재정건전성 확보

나.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 ADR 페스티발 및 아·태 ADR 컨퍼런스(법무부 등 공동 개최)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홍보 및 국제중재기관으로서의 인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재교육원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중재 전문인력을 양성에도 주력하였다. 국제중재분야 외에도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싱가포르 조정협약)'을 반영한 「국제조정규칙」(2024. 1. 1. 시행)을 바탕으로 총 3건의 국제조정 사건이 접수되었다. 2024년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보다 19건 감소한 349건으로 이 중 국제중재사건은 48건이다. 향후에도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중재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26.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사무관 김효선, 행정주사 김승혜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기존 기부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4. 2. 29.「공익신탁법」을 제정하여, 2015. 3. 19.부터 시행하였다. 공익신탁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부수단으로서 설립절차가 법인보다 간소하고 신탁계약을 통하여 다양한 기부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해 TV·웹툰·해피빈 공익신탁 캠페인·라디오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4년까지 밝은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지원 공익신탁, 영웅견사랑 공익신탁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총 39개의 공익신탁이 설정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전문가들로부터 공익신탁제도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 11. 14.「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3. 12. 21. 학계·실무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주요내용

1)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목적 공익신탁자문위원회 간담회 등 진행

법무부는 2024. 8. 7.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원 기타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하여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법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2)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진행

법무부는 주요 경제주간지에 지면광고, 라디오 홍보 캠페인 송출 등을 통해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기부에 관심이 많은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신탁을 홍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PB 센터 등을 통해 공익신탁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 진행하고 있다.

| 그림 2-58 | 공익신탁 홍보 관련



경제주간지 홍보



금융기관 공익신탁 홍보 영상송출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현재까지 다양한 목적의 공익신탁이 설정되었으나, 법무부는 공익신탁 제도를 통한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고령자 등의 소득과 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욱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익신탁이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기부모델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익신탁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기부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이다.

27.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상사법무과 전문위원 남민형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상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상사법 연구자와 실무가들에게 관련 원고를 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1·4·7·10월 네 번에 걸쳐 『선진상사법률연구』 학술지(KCI 등재지)를 발간하였다.

2024년의 경우 1월에 발간한 통권 제105호는 김지평(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주식회사 자기주식의 실무상 쟁점』와 이창현(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상법 제814조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 가능 여부』 등 논문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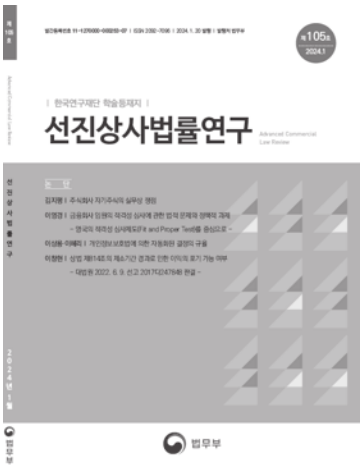
4월에 발간한 통권 제106호에는 류시원(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경쟁자 신용훼손행위의 부정경쟁행위로서의 성격과 그 규율 공백에 관한 연구』 등 6편의 논문이 수록되었고, 7월에 발간한 통권 제107호는 안태준(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식회사 임원에 대한 주식연계 보상수단으로서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총 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발간한 통권 제108호는 천경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관구성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효력과 집행』 기고를 포함하여 6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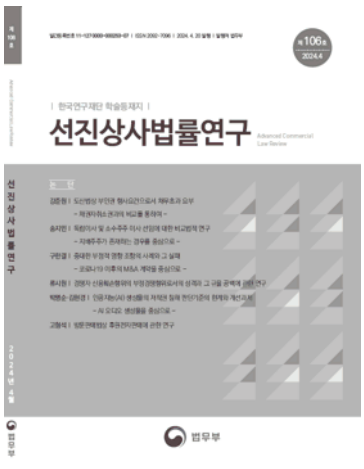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는 발간 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각 대학도서관, 경제단체·경제부처, 국회, 로펌 등에 약 600여부를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사법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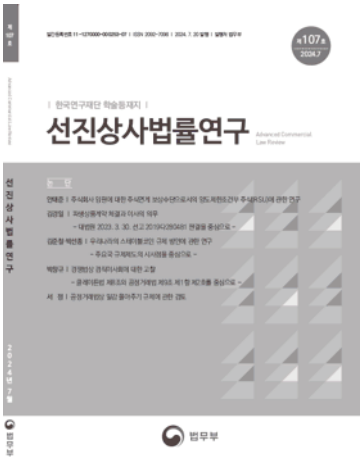
| 그림 2-59 | 선진상사법률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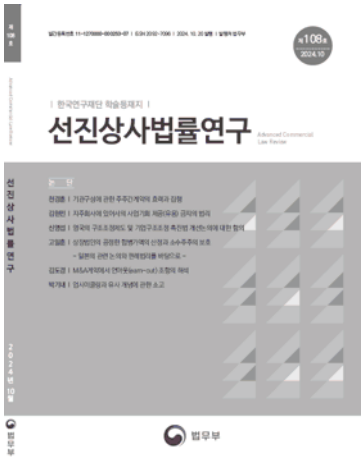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5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6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7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8호

28. 선진법제포럼 개최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행정주사 김승혜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선진법제포럼'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2007. 11. 결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학계·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2024. 11. 25.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포럼에서는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 김병연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기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우용 부회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 류윤교 부회장(한국사내변호사회)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그림 2-60 | 2024 선진법제포럼 개최



선진법제포럼 개회사



선진법제포럼 주제 발표

29.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법조인력과 사무관 홍진희

가.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

1) 시험 문제 합숙출제 및 시험 시행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출제를 위하여 2023. 12. 27.부터 2024. 1. 13.까지 18일간의 합숙출제를 실시하였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 출제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무가, 변호사 등 능력 있는 시험위원을 위촉하였다. 충실히 구축된 문제은행 및 검토 시스템 가동, 실력있는 시험위원 위촉 등을 통해 문제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출제 과정에 PPT를 도입하여 출제 문제 검증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2년 연속 정답오류 0%를 달성하는 등 문제 오류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2024. 1. 9.부터 1. 13.까지 4일간(1. 11. 휴식일 1일 제외)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하였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2022. 7월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CBT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협조 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하고, CBT 방식 전국 모의시험 실시, 네트워크 반복 점검 및 시험장 보안 강화, 전문 인력 투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하였다.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총 3,736명이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실제 3,290명이 응시하여 응시율은 88.1% 였다. 응시자는 종전의 수기(手記)와 CBT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였는데, 응시자의 99.2%(3,264명)가 CBT로 응시할 정도로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이는 전국 모의시험을 통해 시간 절약, 육체적 피로 감소, 각종 문자표를 활용한 답안 작성 편리성 등 제도의 장점에 만족한 응시생들이 CBT를 적극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024. 1. 22.부터 1. 24.까지 3일간 채점위원 전원 참석하에 각 과목별로 순위중심·세트반복형 가채점회의를 개최하여 채점편차의 최소화, 채점기준의 객관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채점 기준을 제시하였다.

시험 정답 가안(假案)에 대해 7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각 과목별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을 선정하여 전원 합의 방식의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최종 정답을 결정하는 등

문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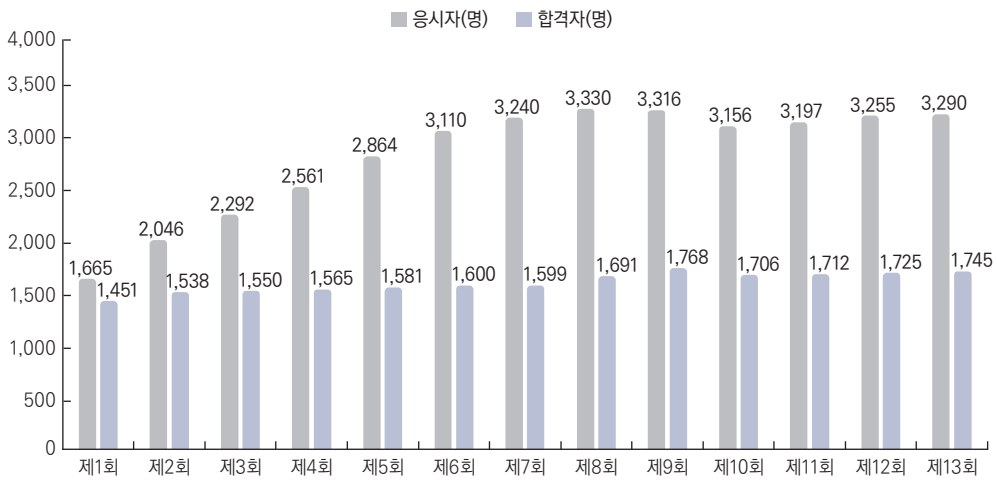
2024. 4. 16.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023. 11. 1.)에서 정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하여 1,745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 표 2-20 |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변호사시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응시자(명)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3,156	3,197	3,255	3,290
합격자(명)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1,712	1,725	1,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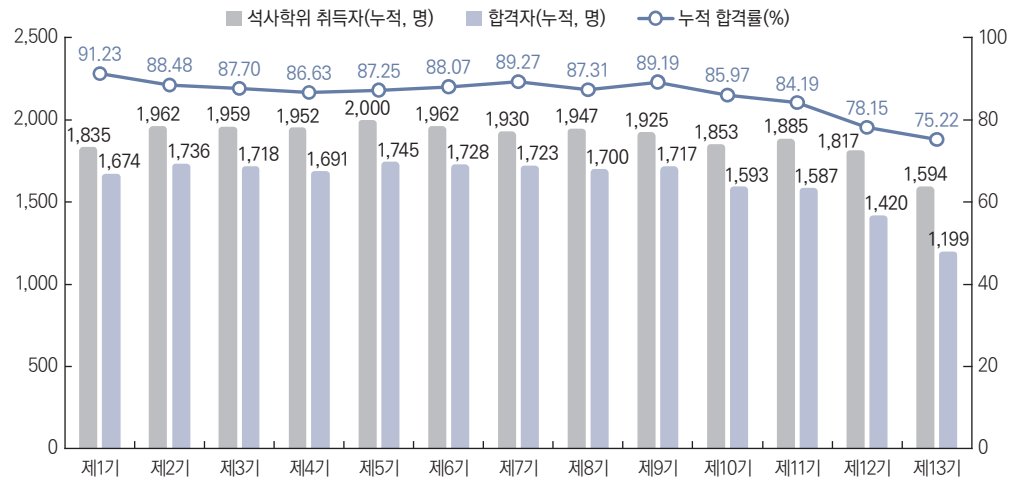
| 그림 2-61 |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 표 2-21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 합격률

입학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13기	합계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명)	1,835	1,962	1,959	1,952	2,000	1,962	1,930	1,947	1,925	1,853	1,885	1,817	1,594	24,621
합격자 (누적, 명)	1,674	1,736	1,718	1,691	1,745	1,728	1,723	1,700	1,717	1,593	1,587	1,420	1,199	21,231
누적 합격률 (%)	91.23	88.48	87.70	86.63	87.25	88.07	89.27	87.31	89.19	85.97	84.19	78.15	75.22	86.23

| 그림 2-62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 합격률



나. 제15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2024년도 제15회 법조윤리시험은 2024. 8. 3.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10개 시험장(서울 5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에서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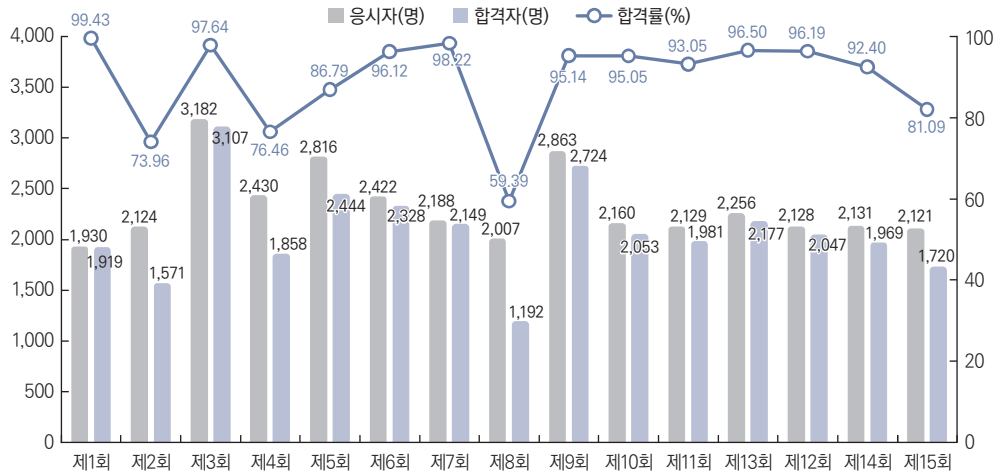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 전(全) 분야에 관한 문제를 균형 있게 출제하였다.

또한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변호사법, 법관징계법,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례 응용력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시자 2,121명 중 1,720명이 합격하였고, 합격률은 81.09%로 작년 합격률(92.40%)보다 하락하였다.

| 표 2-22 |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1회 (2010)	2회 (2011)	3회 (2012)	4회 (2013)	5회 (2014)	6회 (2015)	7회 (2016)	8회 (2017)	9회 (2018)	10회 (2019)	11회 (2020)	12회 (2021)	13회 (2022)	14회 (2023)	15회 (2024)
응시인원(명)	1,930	2,124	3,182	2,430	2,816	2,422	2,188	2,007	2,863	2,160	2,129	2,256	2,128	2,131	2,121
합격자(명)	1,919	1,571	3,107	1,858	2,444	2,328	2,149	1,192	2,724	2,053	1,981	2,177	2,047	1,969	1,720
합격률(%)	99.43	73.96	97.64	76.46	86.79	96.12	98.22	59.39	95.14	95.05	93.05	96.50	96.19	92.40	81.09

| 그림 2-63 |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다.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 최초 CBT 방식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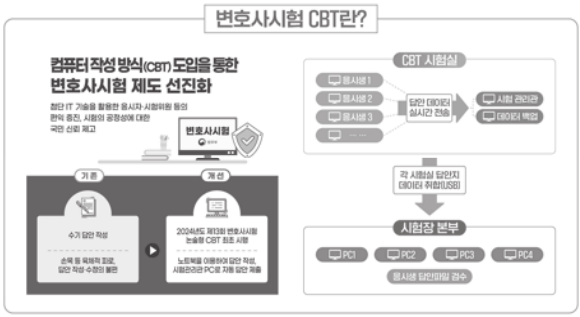
교육 현장 및 실무에서의 컴퓨터 활용도 증가, 정보통신(IT)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법조인 양성 제도 선진화,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논술형 CBT를 도입하였다.

노트북은 법무부가 일괄 임차하여 시험장에 설치하고, CBT 네트워크를 노트북 임대업체, 전산장비 운영 전문업체, CBT 프로그램 개발업체 3곳이 교차점검 하였다. 또한 시험감독관이 전반적인 CBT 시험 진행체계와 준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반복 실시하며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시험과목, 배점, 시간, 답안 분량은 기존과 동일하여 CBT와 수기(手記) 방식 간에 차이가 없으며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과목에 대한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도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및 책자 형태로 제공하였다.

응시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CBT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관리관 노트북으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 그림 2-64 |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



2) CBT 시험 적응 지원 및 체험 서비스 운영

CBT에 사용되는 노트북 사양과 키보드 타입을 사전 공지하여 응시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CBT 응시 준수사항(CBT 시험 시작 및 종료 방식, 노트북 로그인 방법 및 시기, 휴식시간 임의조작 금지, 장애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공고하여 응시자가 사전에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험생에게 CBT 방식에 대한 연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에 CBT 체험 서비스('튜토리얼')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튜토리얼에 접속하여 실제 변호사 시험과 동일한 CBT 응용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로그인부터 답안 작성까지 전 과정 실습이 가능하다.

| 그림 2-65 | 법무부 홈페이지 변호사시험 CBT 방식 체험 서비스



3)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장애인 등 소수 응시자 편익 지원 확대

장애 응시자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해 시험시간 연장을 확대하였다. 논술형 중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하여 시행하였다. 아울러 장애 응시자 25명(중증장애인 7명 포함)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하였다. CBT 시험에서 장애 응시자에게는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였고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하였다.

또한 종이 법전 대신 노트북 탑재 법전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는 추가 노트북을 제공하여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한편, 수기 방식 응시자의 기존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국 5대 광역권에 시험장을 설치하여 종전과 다름없이 수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시험 운영 협력 MOU 체결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 5. 3. 양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법무부는 2024.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한 바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30.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 이은주

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2016. 3. 3. 제정, 2016. 9. 4. 시행)에 따라 2016. 10. 11.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개소하였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7. 4월부터 2024. 12월까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총 2,388건의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3개월 마다 이관받아 분석을 완료한 후 가해자 인명카드를 포함한 사건기록을 서고 및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에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환기 정의 또는 통일 시 책임규명(가해자 처벌, 공직자 재임용 심사, 피해자 보상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북한 당국에 대한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여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행위를 간접 억제하기 위함이다.

| 표 2-23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자료 이관 현황

이관시기	2017(3회)	2018(4회)	2019(4회)	2020(4회)	2021(4회)	2022(4회)	2023(4회)	2024(4회)	합계
건 수	355	457	700	411	103	40	111	211	2,388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2023. 8. 8. 법무실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부장검사인 통일법무과장을 소장직무대리로 임명하여 체제불법 청산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통일법무과와 긴밀히 협업하게 하는 등 법무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2023. 8. 18. 기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법무행정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로 사무실을 재이전하고 정상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특정도가 높은 기록을 중심으로 인물, 죄명, 기관별 분석을 실시하는 등 책임규명을 위한 실태분석 방법을 고도화하고, 북한인권침해에 대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반인도범죄를 구성요건적 관점에서 분석 중이며, 국제형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전환기 정의 관련 국제사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상급자에 대한 책임규명 등 북한의 체제불법 청산을 준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2024.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국제회의' 참여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주요 역할과 책임규명' 주제 발제 등으로 유엔 서울사무소와 교류하고,

2024. 2월 줄리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2024. 4월 한미 북한인권 협의(미 워싱턴 DC) 및 2024. 11월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 북한 국가보고서 심의(스위스 제네바)에 각각 참석하여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였다.

| 그림 2-66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활동



북한인권침해 조사기록의 분석 및 영구 보존



줄리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법무실장 면담(2024. 2. 20.)

2) 평가 및 발전방향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 연구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가해자 인명카드 작성에 더해 반인도범죄를 중심으로 북한 고위층 책임규명을 위한 실태분석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을 기초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체제불법 자료를 '북한인권 디지털 아카이브'에 축적·활용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단체들과도 적극 협력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4절 검찰업무

1. 검찰 역량의 강화

검찰과 검사 김민수

가. 검사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개요

2024년도 검사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 본연의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였고, 각 검찰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검찰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질병·출산·육아 등 고충이 있는 검사의 경우 근무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하였다.

2) 주요내용 및 성과

2024. 2. 5. 상반기 검사 인사 시 전국 각 검찰청이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량, 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 대상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였으며, 아울러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 근속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인사 희망과 고충을 충실히 반영하여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024. 6. 3. 고검검사급 인사 시 주요 현안사건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그간의 인사 기조에 따라 업무능력과 전문성,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였다.

2024. 9. 2. 하반기 검사 인사 시 경향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고충이 있는 검사의 경우 근무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필요최소한의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하였으며, 아울러, 각 청의 인력 사정 및 업무량, 검사 전출·휴직·복직 및 경력법관 임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사 대상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였다.

나. 검찰 조직 개편

1) 추진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가정주부 등 일반인까지 마약범죄에 노출되면서 2023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18,395명) 대비 50.1% 증가하였고, 인터넷·SNS 등을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된 19세 이하 청소년 사범이 1,477명으로 전년(481명) 대비 207.1% 급증하였는바, '마약청정국' 지위의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2023년 3,153명으로 전년(2,573명) 대비 22.5%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방 중·소도시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불법 체류자 포함)이 많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산 마약류 밀수입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마약류 판매로 얻게 되는 고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인 밀수사범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마약류를 대량 유통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며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약수사 전문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었다.

한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구 공탁법에 따라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이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재판당사자인 피고인은 각종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탁서에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해자 동의 없는 일방적 공탁으로 형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공탁사실 고지가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검찰은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형사공탁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내용으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본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범죄수익환수 업무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비롯한 각종 민생침해범죄의 가장 강력한 동기인 경제적 요인 차단 및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추진업무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범죄수익환수 업무는 범죄수익의 종국적인 환수를 위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을 특정하여 피의자와 가족 등 명의의 재산을 찾아 보전하는 조치를 하는 것 외에도 판결 확정 후 추가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 활동을 전개하고,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을 다시 피의자 명의로 되돌려 몰수·추징하기 위해 채권자대위 또는 채권자취소(사행행위취소) 소송 등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법적 수단과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외에는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환수업무는 공판부·형사부·사무국 등 다른 고유 업무와 병행하여 담당하는 등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최종 국고귀속액이 추징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등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상황이므로 전담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한편, 최근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유명인 사칭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등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딥페이크 강력 대응'이 국가 주요현안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친구나 선생님 등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 관련 음성분석 업무와 첨단 분석기법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사인력이 필요하였다.

2) 추진경과

2024. 2. 27.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수사 인력,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수사 분야에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포렌식 분야와 점차 도피수법이 지능화·광역화 되어가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인력 등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245호)을 개정·시행하였고, 2024. 12. 31. 범죄수익을 체계적으로 추적·환수하여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로 개편하고, 범죄수익환수 관련 업무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45호)을 개정·시행하였다.

3) 주요내용과 성과

2024. 2. 2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 마약류 밀수입 가능성이 높은 청주지검에 마약수사인력을 증원하고, 마약수사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지청 중 마약 밀수·투약 등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전담수사관을 증원하였으며, 다양한 신종 마약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 과학수사부에 마약범죄 전담 감정관을 증원하였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추적·확보 능력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등 포렌식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장매체의 대용량화, 다변화, 암호화 등으로 포렌식 난이도도 상승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인력을 증원하고, 불구속 재판 확대, 궐석재판에 의한 실형 선고가 증가하여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하고 도피수법의 지능화·광역화로 형집행 업무와 해외 도피 미집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유형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자유형미집행자 검거 인력을 증원하였다.

2024. 12. 3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범죄수익을 체계적으로 추적·환수하여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 환수과로 개편하여 범죄수익 환수 관련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도록 하면서 범죄수익환수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고,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음성분석 인력 및 여성·아동범죄 수사인력을 증원하였다.

또한, 공판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공판제1, 2부를 공판부로 통합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의 공판부를 공판제1, 2부로 분리하여 공판부서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4) 평가 및 기대효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 마약범죄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신규 유입 신종마약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마약감정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약물검사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 등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민생까지 침범하여 심각한 사회적 마약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청주지검 관내에 마약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마약 밀수·유통범죄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까지 퍼진 마약의 근절을 위해 마약전담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마약범죄에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 환수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범죄수익환수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추적 및 몰수·추징보전 청구와 집행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증원하여 부패범죄, 금융·증권범죄, 대규모 재산범죄, 보이스피싱과 같은 각종 서민다중 피해범죄를 조장하는 강력한 경제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범죄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검찰 구성원 복지 증진 예산 지원

법무부는 검찰이 인권보호 및 법질서 수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범죄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사회적으로 사업장 내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예산을 신규, 증액 편성함으로써 검찰청 내 안전·보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점자 블록, 점자 안내판, 장애인용 화장실 등 설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등 사건관계인의 편의 증진 및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2) 검찰 구성원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검찰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진단하여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직무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아울러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검찰시설 내진보강 성능평가, 재산형 집행 담당 직원들의 업무 숙련을 돕기 위한 사이버 컨텐츠 제작 등 검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검찰 수사역량 강화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약탐지기 등 첨단 마약수사장비 도입, 마약범죄 수사용 차량 지원, 마약범죄 국제공조활동 지원, 가상자산 추적 수사지원서비스 도입, DNA 서열분석장비 고도화 등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나날이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각종 범죄에 대한 검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형사기획과 검사 한웅세

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 구현이 요구되어 수사과정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활용도 증대, 신뢰관계자의 동석 범위 확대 등을 각종 법령·지침 등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4대 지검에 녹음·녹화실, 편면경(one-way mirror) 등을 완비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 여성·아동 조사실을 설치하였고, 2013. 7월 종전의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과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지침'을 통합하여 성폭력사건 처리 관련 세부내용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사건의 성격 및 피조사자에 따라 적합한 조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친화적 조사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법무연수원에도 여성·아동관련 범죄 수사실무 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피해자 조사기법 강좌를 개설하여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한편,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 성폭력문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2. 12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3세 미만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 10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아동성폭력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3.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조회 및 법정 증언 관련 절차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폭력범죄전문가 의견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4. 4월부터 다년간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또는 치료 업무에 종사하여 온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을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선정, 위촉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및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 9월 서울중앙지검에, 2016.

1월 대구·광주지검, 2017. 2월 대전·부산지검, 2018. 2월 수원·인천·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현재 총 11곳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각 지역의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5. 11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검사 지정·운영 및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여성 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사업,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문화가족 보호지원 업무협약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이 국내 연고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폭력과 국내정착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업무상위력간음·추행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였고, 특히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8. 10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유포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개정·시행하였고, 2018. 12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사건처리 기준을 재개정하여 불법촬영·유포 사범을 엄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8. 12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 및 연구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한 이후, 이 협약에 따라 2018. 12월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19. 7월에는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각 공동포럼을 개최, 2019. 11월에는 「가정폭력 상해 사건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관련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20. 4월 대검찰청은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과 결부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SNS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범죄군에 대하여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여성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검찰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 5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20. 6월 불법동영상 유포 차단·삭제 지원 매뉴얼 배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1. 2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처리기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관련 사건처리기준」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개정·시행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였고, 2021. 7월 부터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로 2021. 12월 성폭력, 가정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수사매뉴얼을 제정, 일선 청에

배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2021. 7월 대검찰청은 사법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내 학대 아동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 청에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1년 12월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2. 6월, 9월, 10월 대검찰청은 사건처리기준 및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물론, 대검 사이버수사과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동영상, 사진을 삭제·차단하는 등 성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하였다. 또한 2022. 12월 지역 거점 검찰청인 각 지방검찰청(18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권역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2022. 12월 피해자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 QnA 및 우수사례」 자료를 제작하고,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례를 연구한 책자를 만들어 일선 청에 배포하였다.

대검찰청은 2022. 6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 제도」를 도입하고. 2022. 6월부터 2023. 12월까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장애인 전용조사실 설치 등 관련 물적 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인 친화적 수사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3. 1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22. 11월부터 2023. 6월까지 「디엔에이법」 시행 이전에 전국 검찰청 및 경찰서에 보관된 DNA가 남겨진 미제 사건들을 법 시행 이후에 확보한 DNA와 대조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른바 '진주 연쇄살인범'의 23년 전 특수강도강간 범죄 등 중대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을 다수 밝혀내기도 하였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3. 5월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23. 12월에는 전국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국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검찰청은 2024년 3월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수사관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4. 4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실무 회의 등을 통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통합매뉴얼'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급증하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 8월 18개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 검사를 전국 31개청으로 확대 지정하고,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찰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였다.

또한, 2024. 9월부터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를 운영하여 수사실무를 점검하고, 2024. 10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을 반영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여 시행하였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 7월에는 흉기 휴대 또는 상습적 가정폭력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준을 강화한 「가정폭력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15. 9월에는 친족간 성폭력·가정폭력 등 가정 내 범죄에 대해 기 시달된 사건처리기준 및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 및 경위, 재범의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9. 6월에는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관련, 보호관찰소를 통해 위탁 절차와 상담 관리를 함으로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사후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법무·검찰은 서민 다중 피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다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특정 사기범죄들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맞춰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0. 1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회복 절차 규정이 완비되었는바, 개정 취지에 따라 서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였다.

또한, 불법사금융 등 서민 다중 피해범죄의 근절을 위해 수사 노하우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담검사 세미나를 진행하고, 처벌 기준을 상향한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21. 6월 소년사건의 수사와 처분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소년사건 처리지침(대검예규)」을 개정하였고, 2021. 9월 소년원생 인권보호 및 신속·적정한 소년사건 조사 및 처분을 위해 검찰청과 소년보호기관(전국 11개) 간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시범실시 후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거쳐

2021. 11월 전국 확대 시행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2022. 1월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한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선도활동 위축화 극복방안으로 청소년 선도·범죄예방 우수사례」를 발굴, 일선청에 전파하였다.

대검찰청은 2013년경부터 소년사범 처분 충실화 및 학교폭력 대책 일환으로 학생인 소년범 사건에 대해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위 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처분을 도모하고자 지난 10년간 동결되어 있던 교사 자문료를 기존 1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일선청에 전파하였다. 그 결과 2021년 2건, 2022년 1건에 그쳤던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 건수가 2023. 9월 18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된 고소·고발 등사건 등을 적정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2023. 9월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처리시 유의사항'을 일선청에 전파하였고, 검찰 수사 중인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필요시 교육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후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등을 일선청에 배포·전파하여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있어 학생의 기본권과 교육받을 권리, 교사의 교권 및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소년 전담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4. 12월 「전국 소년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소년 선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및 소년전담검사 전문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3년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불법거래, 영아살해, 유기 등의 사례를 적극 확인하여, 2024년 아동매매 사건 접수 및 처분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바, 대검찰청은 '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을 전국청에 전파하여, 아동매매 사건을 엄정하고 충실하게 수사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법무·검찰은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법 집행의 엄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진술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기법이나 조사방법을 탈피하여 물적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 12월 경부터 총 144억 원을 투입, 2008. 10. 31.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7,844㎡ 규모)를 완공하여 그동안 분산되었던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및 감정·감식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효율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 DNA 및 법생화학 감식,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사이버범죄 대응 등 전방위적인 과학수사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2007. 4월 서울중앙지검, 2008. 6월 부산고검, 2009. 9월 대구고검, 2010. 4월 광주고검, 2010. 12월 대전고검, 2011. 5월 인천지검, 2012. 6월 수원지검(2019. 3월 수원고검으로 이전), 2014. 11월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2023. 7월 서울동부지검, 2024. 7월 제주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하여 급증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존중 수사관행을 정착하고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 12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 2006. 6월 전면적으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19. 12. 1. 위 준칙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법무부령으로 승격하여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대검찰청은 수사절차 변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 10월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을 공개예규로 전환하여 새롭게 제정하고, 변론을 포함한 모든 변호활동 내역 입력 및 관리를 전산화하였으며, 수사담당자 상호간 입력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0. 12월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상황 문자통지를 당사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KICS 기능개선을 완료하고 대한변협과 문자통지 수신용 변경된 변호인선임서 적극 활용 홍보에 관하여 협력하면서 변호인 문자통지 확대에 따른 업무매뉴얼을 일선에 전파하였다. 이로써 검찰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조력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대검찰청은 2020. 10월 KICS에 '변호활동 관리부'를 신설하여 변호활동의 전산 입력 기능을 구현한 이래 '변호활동 관리부' 입력 사건 확대, 업무담당자 및 기관장 등 간 변호활동 내역의 공유 기능 구현 등 지속적으로 변호활동 관리 투명화를 추진하여 왔고, 2022. 12월 업무시스템에 '변호활동' 메뉴를 신설하고 모든 변호활동을 전산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3. 1월 변호활동 관리 전면 전산화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검찰 수사절차에서 모든 변호활동 내역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2004. 6. 1. 4개 검찰청 12개 검사실에 영상녹화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2024. 12. 31.까지 전국 66개청에 총 903실로 확대 설치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수사 인력 및 조사시간 단축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2006. 6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위 지침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관행적·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지침화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2011. 12월 구속수사의 일반적 기준과 범죄유형별 기준을 좀 더 세분하여 위 지침 제정 이후 구속수사 실무 기준을 반영하였다.

대검찰청은 2024. 1. 19.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을 제정하여 자본시장법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2024. 5. 16.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열람·등사 주체를 기존 '피해자'에서 '대리인 또는 피해자의 사망·중대한 심신 장애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도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였고, 열람·등사 범위 또한 기존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본인제출서류 외의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 가능한 것에서 '권리구제' 또는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본인제출서류 외의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4. 11. 5.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피해아동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공소시효 배제사건'에 '성착취물제작등' 사건을 추가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대검찰청은 2008. 6월 형법범(208개 조문, 293개 범죄유형), 가중사범(4개 법률, 101개 범죄유형), 특별법범(232개 법률, 1,149개 범죄유형) 등 총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 구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규정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 12월에는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 하였다. 또한 2012. 9월에는 지역적 범죄 특성과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선 청에서 사건처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월, 포항 등 9개청에서 산지관리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9개 특별법범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자체 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2016. 9월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 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사건 및 피의자 관련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 구형 원칙을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에 반영하였으며, 3차례 개정된 형법 개정 사항 〈유사강간죄 신설, 혼인빙자간음죄 등 삭제(2013. 6월 시행), 범죄단체조직죄, 약취와 유인의 죄 등 정비(2014. 4월 시행), 특수상해·강요·공갈죄 등 신설, 간통죄 삭제 등(2016. 1월 시행)〉을 반영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하여 가중사범을 총 6개 법률로 확대함과 동시에, 총 42개 특별법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대검의 강화된 신병 및 구형

기준을 반영하였다. 2019. 6. 2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 12. 18. 시행)」,「도로교통법(2019. 6. 25. 시행)」 등의 개정에 맞추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전면 시행하였고, 2020. 4. 9.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 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시행하였다.

2021. 5월「검찰사건처리기준」3차 개정 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형법 및 특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중사범'을 6개 법률로, '특별법범'을 260개 법률로 정비하였으며 신병 및 구형과 관련된 대검의 최근 주요 지침·지시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42개 범죄군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였다.

2022. 6. 3.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에 따라「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시행하였고, 2022. 8. 19. 보이스피싱 지능화에 따라 신종수법을 이용한 사례 급증에 따른「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2022. 10. 5. 폭력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처벌강화를 위하여「폭력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방안을, 2023. 3. 8.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한「교제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방안」을 각 시행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3. 4. 27.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동물보호법(전부개정) 시행 대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2023. 6. 26. 마약류 거래 확산 추세 억제를 위해 공급사범 뿐 아니라 투약사범도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 등으로「마약류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2023. 7. 11.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개정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여 2023. 7월「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2019. 6. 25. 제정)」을 전면 개정하여「어린이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2020. 2월 시행)」,「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수정안(2023. 4월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024. 7. 1. 서민·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무등록 대부업체의 고리 사채, 성착취·스토킹 등이 수반된 채권추심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하여「불법사금융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시행하였고, 2024. 7. 11. 위증사범에 대하여, 구속기준 고려요소를 보완·개선하고, 구공판시 징역형 구형 하한기준 신설, 벌금 구형시 하한기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여「위증죄 사건처리기준」을 개정·시행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 7. 2.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하여, 2013. 5. 22. 전국 5대 고검에 추가 설치 현재 전국 66개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고·지검 및 지청 소속 위원회의 경우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상설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 배제

아울러 2004. 7월부터 항고심사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사실상 동일하여 위원회 중복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제기로, 기존의 항고심사회 기능을 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① 공소제기의 적정성, ②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③ 구속취소의 적정성, ④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이외에도 최근 심의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5년 검찰시민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은 〈표 2-24〉와 같다.

| 표 2-24 | 최근 5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실적

(단위 : 건)

구분 / 연도	개최횟수	심의건수							
		합계	기소	불기소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재청구	항고	기타
2020년	375	701	187	419	0	33	6	26	30
2021년	178	347	89	211	0	12	4	14	17
2022년	261	520	103	332	1	26	7	22	29
2023년	409	898	217	544	0	31	3	21	82
2024년	428	852	191	574	1	21	1	30	34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가. 개요

법무·검찰은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점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지역토착비리와 보조금 비리·조세포탈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를 통해 일선청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지원하여 범죄수익환수 기능을 제고하였다.

법무·검찰은 국민생활 안정의 위협요소를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분야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 국가 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공기업·공공기관 민관유착 비리,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 언론비리, 교육비리, 금융·증권범죄, 공정거래범죄, 국가재정범죄, 조세포탈, 대형 경제범죄 등의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으며, 반부패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23. 5월 대검찰청 반부패부 직제를 개편하여 반부패기획관실 신설, 반부패1과(공직비리), 반부패2과(금융·증권), 반부패3과(공정거래, 조세, 대형 경제사건)로 나누어 전담 분야에 따른 주요 현안 신속대응 및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하였다.

또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3.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및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하였으며, 2023. 7월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범시켜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밖에도 국가재정 범죄의 근절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주축으로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불법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가상통화·P2P 관련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유해화학물질 등 불특정 다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있던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팀'을 2020. 8월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3과로 제도화하여, 일선

검찰청의 서민다중피해범죄 사건 수사 및 범죄피해재산 환수·회복 업무 관련 지휘·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검찰은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범죄 수사매뉴얼 T/F를 구성하였고, 2019. 7월 환경범죄 일반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2020. 10월 대표적인 환경범죄에 대한 일선청의 우수수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작하여 전국청에 배포함으로써 환경 분야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

대검찰청은 2022. 5월 「동물학대 행위 등 처벌관련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일본 등 주요국가의 처벌사례를 중심으로」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책자를 일선청에 배포하여 동물보호법 관련 수사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나.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지속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검찰에서는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직역 숨은 비리를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2024년에는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등을 반영하여 기존 주요 수사대상이었던 부정부패 범죄와 함께 국가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 부패범죄 사범 439명을 단속(126명 구속)하였고,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 단속, 보조금 비리 수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증권·금융범죄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873명 단속하여 81명을 구속하고, 공정거래법위반 등 경쟁질서 저해사범을 33명을 단속하는 등 각종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처하였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전담팀)을 중심으로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 171억 1,200만 원을 환수 조치함으로써 부패범죄 사범에 대한 범죄유발동기 차단에 주력하였다.

| 표 2-25 | 2024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구분 / 유형	단속인원	구속인원
인사	8(3)	5(2)
건축	1(1)	0(0)
토지	3(2)	1(1)
공사	1(1)	0(0)
보건·환경	0(0)	0(0)
교통	0(0)	0(0)
소방	0(0)	0(0)
노동	0(0)	0(0)
수사	7(7)	5(5)
세무	6(1)	3(1)
교육	8(3)	0(0)
병무	0(0)	0(0)
금융	207(5)	44(2)
법조주변	37(12)	16(3)
납품	1(0)	1(0)
사이비언론	0(0)	0(0)
기타	160(33)	51(18)
합계	439(68)	126(32)

※ ( )는 공무원

| 표 2-26 | 2024년 공직자비리 단속실적

(단위 : 명)

직급별 / 죄명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타	계
3급 이상	4(3)	0(0)	0(0)	10(2)	14(5)
4급 이하	30(9)	1(0)	3(2)	19(4)	53(15)
합 계	34(12)	1(0)	3(2)	29(6)	67(20)

※ ( ) 구속인원

다. 엄정한 사회질서의 확립

1) 교통사범 엄정 대응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또는 3년 이상 구형 등」,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등 다양한 사건처리 방안을 각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8. 9월 故 윤창호 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법무부 장관은 2018. 10. 19.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엄정 대처」, 2019. 3. 18.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찰에 「음주운전사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구형 및 치료감호 적극 청구」를 지시하였고, 2019. 3. 29.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에 음주운전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구형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음주 금지 등의 특별 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의견 개진토록 하고, 알코올 습벽 있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 적극 청구 등을 지시하여 각 검찰청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시행), 도로교통법 (2019. 6. 25. 시행) 일명 '윤창호 법'에 따라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강화, 음주운전 재범방지의 실효적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각 검찰청에 전면 시행하였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의 실현을 위해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엄정한 기준으로 신병처리, 구형, 적극적 항소 등으로 대처하였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엄정하게 대처한 결과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 표 2-27 |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구공판율

통계산출 기간	음주운전 관련 사건 전체 피의자 수	구공판 피의자 수(구속)	구공판율 (구속구공판율)
2021. 10월 ~ 2022. 12월	132,144명	32,787(188)명	24.81(0.14)%
2022. 10월 ~ 2023. 12월	130,568명	28,590(239)명	21.89(0.18)%
2023. 10월 ~ 2024. 12월	126,567명	27,191(394)명	21.48(0.31)%

한편,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헌 결정함에 따라 신속히 각 검찰청에 조치사항을 시달(2021. 11. 26)하고,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2021. 12. 6)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2022. 12월 서울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2023. 4월 대전 스쿨존 내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사고 등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2023. 7. 1. 전국 검찰청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달하였다. 나아가 2024. 1월 압수 차량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압수물의 보관·관리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한 결과, 2024. 9. 30. 기준 전국에서 444대의 차량을 압수하였고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71%에 이르는 101건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와 같은 수년간의 노력으로 최근 5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검찰 송치 건수(인원)를 분석한 결과 매달 평균 300건대를 상회하였던 위 범죄 송치 건수가 근절대책 시행 후인 2023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300건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음주운전에 엄정하게 대응함에 따라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도 증가하였는데, 특히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왜곡시키려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한다는 도로교통법상 입법목적 및 무고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자의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건의하였고, 2024. 12. 3. 공포된 도로교통법(법률 제20544호, 2025. 6. 4. 시행)에 제44조 제5항이 신설되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하였다.

한편 검찰은 교통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하고자 교통사범수사실무 개정 TF를 구성하여, 개정된 지 10여 년이 경과한 교통사범수사실무를 2024. 12월 전면 개정하고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였다.

2)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2023년 '신림역 흉기난동', '분당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중대강력 범죄의 발생에 이어 살인예고 모방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자, 대검찰청은 2023. 8월 일선청에 이상동기 범죄 및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에 대하여 경찰과 신속·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한편 신병과 증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고, 2023.

9월 일선청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을 적극 적용하여 원칙적 구공판을 내용으로 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범죄 엄정 대응 지시'를 한 결과 2023. 8월~12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사범 총 3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살인 등 강력범죄의 암장 방지를 위해 변사체 검시 및 강력사건 수사 시 법의학자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2015. 1월 법의학 교수 등 26명으로 구성된 '법의학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이상동기 및 정신질환 강력범죄에 대한 일선 청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 1월 정신의학 전문가 3명을 포함한 법의학 자문위원 33명으로 구성된 제4기 법의학자문위원회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2024년 '강남 빌딩 옥상 살인 사건', '하남 교제살인 사건', '거제 교제폭력 상해치사 사건' 등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검찰청은 2024. 7월 일선청에 반복적 범행 등 중한 범죄에 대하여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및 양형의견 적극 개진 등 공소수행 철저,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제폭력·교제살인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 지시를 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1.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 대검찰청은 2023. 7월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사회적 약자 대상, 보복성 스토킹 등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하였고, 스토킹범죄 전담검사를 지정(2024. 12월말 기준 전국 60개 청, 112명)하였으며, 2024. 1월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제도 적극 활용 지시 등 스토킹처벌법 업무상 유의사항을 전파하였다.

대검찰청은 2024. 4월 경찰청과 스토킹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사항을 점검하고,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관할 경찰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라.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1) 조직범죄 엄정 대응

우리나라 조직범죄는 1980~1990년대 폭력을 이용한 업소 갈취, 주류 도매상 운영 등 전통적 방식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던 '제1세대형' 조직범죄부터, 1990년대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제2세대형' 조직범죄, 2000년대 무자본 M&A, 회사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에 진출한 '제3세대형' 조직범죄로 변모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경제 및 시대 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전통적 범죄단체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범죄가 범람하기 시작하였고, 기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단체 개념이 아닌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집단의 개념을 기초로,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코인사기,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온라인 불법도박, 성착취물 제작·유통,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의 범죄와 같이 '경제적 이익 추구를 궁극적 목적으로 폭행, 협박, 기망 등 모든 불법적 방법을 통원하는 구조화된 단체 또는 집단'이라는 개념, 즉 '제4세대형' 조직범죄의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대검찰청은 2024. 4월 미국 국무부, FBI에서 주관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국제회의(ICTOCT)에 참석하여 20여 개 국가와 국내·외 조직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2024. 9월 상품권 이용 범죄수익 세탁사건의 수사착안사항, 2024. 10월 형법상 범죄집단·단체에 관한 해설자료, 2024. 12월 보이스피싱 배후 공범 수사매뉴얼 등을 일선 청에 전파하여 조직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

2024년도 주요 조직범죄 수사 사례로 ▲폭력조직 안양 타이거파 조직원 3명이 조직을 비하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유튜버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을 송치받아 상위 조직원 1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범행 교사한 간부급 조직원과 방조범 등 4명을 추가 인지한 사례(안양지청), ▲흉기휴대 세력 대치, 타 조직원과의 연합 범행, 신고자에 대한 보복범죄, 조직 내 기강 확립을 위한 공개적인 '빳따'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자행한 폭력조직 시흥식구파, 안산원주민파의 MZ 신규조직원 등 25명을 적발하여 기소(구속 12명)한 사례(안산지청), ▲보도방 업주들간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하여 폭력조직 광주 송정역전파 원로 조직원으로서 첨단지구 일대 보도방 업주들을 통제하던 중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유동파 조직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임을 밝혀 구속기소한 사례(광주지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소재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중2 학생 등이 총판으로 활동하여 도금 5,000억원을 수령한 사건에서 총책 등 17명을 기소(8명 구속)한 사례(의정부지검), ▲미얀마로 한국인을 유인, 감금한 사건을 송치받아 범죄단체 조직 정황을 확인하여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라오스 국경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인 GK코리아에 가입, 활동한 조직원 5명을 인지 및 구속기소한 사례(대구지검), ▲㈜씨피글로벌을 인수하여 조직적 구조를 갖춘 다음 비상장 주식(팀스토리, 드림픽쳐스21)이 상장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230명으로부터 37억원을 편취한 대표, 이사 등 43명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사례(서울중앙지검), ▲조세범처벌법위반 송치사건과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사건 7건을 이송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배후 공범들을 특정하고, 조직체계 등을 명확히 밝혀 부가가치세 자료상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하고, 업체 대표 및 핵심 조직원 2명 등 총 3명을 직구속한 사례(서울북부지검) 등이 있다.

| 표 2-28 | 범죄단체 등 기소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폭력행위등 (단체등의구성·활동)	278(107)	345(91)	178(43)	226(33)	291(72)	236(44)	350(52)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등	377(179)	354(268)	515(254)	588(246)	609(256)	792(415)	931(411)

※ ( )는 구속구공판 인원

2) 전세보증금 사기 사범 엄단

2022. 7월 피해자 355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79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대검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엄정 대응」 지시를 하는 등 전세사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2019. ~ 2021. 8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 6천억 원 상당으로 미반환 사고 건수 및 액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중에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는 89%에 이르고 있었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22. 7. 11. '서민을 울리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하여, ①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②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사유 수집 및 제출, ③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항소, ④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정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또한, 검찰은 2022. 10. 14. '일상생활의 평온'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를 중점적으로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 따라 ①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며, ②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③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소액·다수 피해자 대상 전세사기를 합산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하였다.

한편, 소위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건축왕' 사건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고 추가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23. 1. 18. 검찰·경찰·국토부가 참여하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엄단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방안을 협의하였고, 검찰총장은 협의회 참석자들에게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검찰청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 및 지방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수사초기부터 범부처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국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검사(전국 60개 청, 99명)를 확대 지정('24. 2.)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세모녀 전세사기 19개월 → 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 → 구리 전세사기 4개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의 기존 전세계약에 따라 잠재되어있던 전세사기 피해가 부동산 경기하락 여파 등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 2023. 7월 특별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형사절차의 전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검찰총장은 2023. 11. 2.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서민들의 삶의 기반과 경제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 등을 통한 일망타진',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하고,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하여 계속 엄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종래 전세사기 범행은 임대인 개인이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의 전세사기 범행은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다수의 임차인을 타겟으로 삼아 범죄 전(全) 과정을 설계하고, 임대인·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감정평가사까지 가담하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①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실제 분양·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받는 소위 '깡통전세' 사기, ②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한 후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 등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③ 부동산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신탁부동산 이용' 사기, ④ 대출금, 건물의 전월세 계약 현황 등을 속여 충분히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권리관계 기망' 사기 등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한 주요 수사사례로는 ① 검찰 보완수사로 피해자 219명, 보증금 49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무자본갭투자자와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기소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총 피해자 355명, 편취금 795억 원)', ②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의 임대보증금, 분양대금 등 내집마련 자금 73억 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 직접 구속기소 사건, ③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 없이 총 17명으로부터 2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④ '무직자 대출' 등 광고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79회에 걸쳐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합계 약 73억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조직 사건' 등이 있다.

또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사례로는 ① 다수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총괄팀장, 실장팀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피해자 533명, 피해액 약 430억 원을 편취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사건', ② 전세사기 주범이 부동산임대법인, 중개사무소를 설립하고, 다수의 중개보조원 등 총 19명과 범죄집단으로서의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피해자 174명 피해액 약 436억 원을 편취한 '광주 빌라왕 사건', ③ 전세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수도권 등에 가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대표와 팀장, 주택 명의대여자 등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피해자 99명, 피해액 약 205억 원을 편취한 'OO공인중개사사무소 사건' 등이 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한 결과 법정최고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주요 사례로는 ① 무자본갭투자로 세입자 110명을 상대로 123여 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 ② LH·SH 협력업체 사칭·계약서 위조 등 수법으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억 원 편취한 사범에 대해 징역 9년 선고된 사례, ③ 원룸 9개동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후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2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66억 원을 편취한 주범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된 사례, ④ 주택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6억 원 편취한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해 징역 7~12년 선고된 사례 등이 있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한 사례로는 ①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최초 의율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서 계좌추적, 관계인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동해 망상지구 소재 토지 214필지, 시행사 주식 등 약 9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한 사례, ② 19~34세 청년층을 상대로 가짜청년 임차인을 모집하여 7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총책의 차명 재산 약 2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③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4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주범 소유의 건물 및 주식 약 40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④ 전세대출사기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면서 다수의 은행들을 상대로 약 9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주범들 소유의 외제차 3대 및 귀금속, 현금 등 약 4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등이 있다.

2022. 7월부터 2024. 12월까지 전세보증금 사기 사범 주요 단속 실적은 〈표 2-29〉와 같다.

| 표 2-29 | 전세보증금 사기 사범 단속 실적

(단위 : 명)

구분 (2022. 7월 ~ 2024. 12월)	2022. 7월 ~ 12월	2023. 1월 ~ 12월	2024. 1월 ~ 12월	합계
기소 인원	145	1,154	1,056	2,355
구속 인원	45	313	100	458

3) 불법사금융 범죄 엄정 대처

경제적 상황 변화로 사금융에까지 몰린 사회 취약층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2024. 9월경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으로 인해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질적인 추심행위로 인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지인 및 가족들까지 일상에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으로, 엄정한 대처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였다.

대검찰청은 2023. 11월부터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며 관련부처들과 함께 피해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꾸준히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4. 7월 불법사금융 범죄의 처벌 기준을 상향한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수사단계에서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의 총책 및 중요가담자, 악질적인 채권추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 구속수사, 범죄단체 및 스토킹처벌법 등 처벌 수위가 높은 특수형벌 조항 적극 의율, 단속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몰수·추징보전 조치 등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불법 추심행위가 반복·지속될 우려가 있거나 폭행·협박 등 추심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도록 하였다.

재판단계에서는 범행수법·피해정도 등 양형자료를 현출하여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하여 적극 항소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계약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등 소송 지원, 불법 추심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활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엄정 대응한 결과, 전년 대비(2023년) 불법사금융 범죄의 기소인원 (880명→1,208명)이 약 37.3%, 구속인원(58명→103명)이 약 77.6%으로 상승하였고, 조직적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최고 징역 9년이 선고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4) 불법 사행행위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검찰은 인터넷 사행행위를 대표적인 서민생활침해범죄로 간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국제화·거대화·첨단화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로 인해 도박범죄의 수사·단속 뿐 아니라 치유·재활, 교육·홍보 등 전 분야에서의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2023. 11월 법무부·여가부·과기부·방통위·경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팀에 참가하여,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조사·연구, 3개 분과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위한 '온라인 도박 처벌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절감하여 법안을 마련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4. 1월 도박중독 청소년 등에게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형식적으로 실시되던 교육(1일 8시간 집합교육)의 시간 및 횟수를 늘려 실질적인 치유·재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개정된 지침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실시하였다(2023년 354명에서 2024년 949명으로 대폭 증가).

대검찰청은 방통위·사감위 등과 도박사이트 차단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예방조치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범죄과에 '온라인 도박 수사지원팀'을 신설하여 2024년도에 총 31개 도박사이트 및 관련 계좌에 대한 차단·지급정지조치를 시행하였다.

2024년도 주요 사행행위범죄 수사사례로 ▲게임장 운영 송치사건에서 계좌 명의인들 다수의 나이와 거주지역이 유사하고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을 포착하고 360여 개 계좌를 추적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게 지속적으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 16명(구속 4명, 불구속 12명)을 기소한 사례(대구지검), ▲영화·드라마 약 40,000편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프로그래머 등 3명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하여 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6개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광고한 총책 등 5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대전지검), ▲타인 명의 체크카드 보관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전면 재수사하여 5년간 1,320억 원에 이르는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 사건임을 밝혀 총책 및 실장을 직구속하고, 법인 설립 가담자 등 총 32명을 입건하여 기소한 사례(수원지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12억 원 상당 피싱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51개 계좌 추적, 텔레그램 대화 분석 등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 및 1,000억 원대 도박자금의 조직적 세탁사실까지 밝혀 7명(구속 6명, 불구속 1명)을 기소한 사례(안양지청), ▲허위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받아낸 소송사기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하여, 유령법인 상대 허위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1조 3,000억 원대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임을 밝히고, 세탁책을 구속 기소한 사례(춘천지검), ▲2,600억 원 상당 도금을 입금받아 자금세탁 후 462억 원의 수익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한 자금세탁 조직원 16명(구속 1명, 불구속 15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기소한 사례(광주지검) 등이 있다.

| 표 2-30 | 사행행위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죄명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도박 등	26,240	28,119	20,585	17,441	18,568	19,956	13,619	12,066	13,705	30,087
게임산업법	11,771	12,403	10,233	7,837	7,580	6,428	4,618	4,908	5,087	4,761
국민체육진흥법	1,705	1,720	846	687	1,063	945	1,145	639	531	1,052
사행행위규제법	1,815	1,321	757	493	473	393	373	264	161	145
한국마사회법	130	666	721	963	1,082	763	366	575	790	856
합계	41,661	44,229	33,142	27,421	28,766	28,485	20,121	18,452	20,274	36,901

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가상세계와 가상자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식재산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식재산의 보호쟁점이 크게 부각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인 상표 도용, 서적·음반·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의 범죄는 ① 일반인이 SNS에 일상공유와 상업활동을 위한 홍보를 병행하면서 타인의 사진도용 행위에 대해 사진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 ②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불법 웹툰 사이트·유투버 등의 리뷰 콘텐츠 불법공유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 ③ '병행수입정품'을 가장한 위조품 판매 사기 사례, ④ SNS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위조품 유통 사례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와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검찰 수사역량을 전문화·집중화하기 위해 2015. 11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2017. 12월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운영하고, 2018. 2월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하였고, 2024. 11월 저작권 전문가를 전문임기제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채용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17. 10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에 기술유출·특허법위반 등 고도의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에 대하여 사건관계인 및 변호인이 직접 쟁점 기술을 시연·설명하고, 검사가 기술적 쟁점 등을 신문하며 특허수사자문관이 자문할 수 있는 '특허기술변론절차'를 도입하였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충분한 변론 및 기술적 공방 기회가 부여되는 특허범죄 수사에 특화된 원스톱(One-Stop) 특허기술변론절차를 도입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하면서도 특허범죄에 연루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① 영화 불법다운로드를 유도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부부 등 7명 기소, ② K-방송 콘텐츠를 6년간 전세계에 불법송출한 사범 구속기소, ③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한 경복궁 낙서 사건 구속기소, ④ 3년간 국내 웹툰·웹소설 불법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구속기소, ⑤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까지 제작·광고한 사범 기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며,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그 피해 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차단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의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범죄가 많고,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소 이후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2. 10월 종래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전문 과학수사지원 인력을 보유한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로 이전하고 과학수사부 내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지휘 및 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2024년에는 ① 세계 3위 한국 반도체 세정기술 중국 유출 사범 9명 기소하여 추가 유출 방지, ②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기술 중국 유출 사건 A회사 전직 연구원 등 구속기소, ③ 첨단기술인 반도체 증착장비 기술자료 중국 유출 6명 기소, ④ 불법취득한 삼성 기밀정보로 특허소송 제기한 前삼성 부사장 등 6명 기소, ⑤ 여론조사업체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 2명 기소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실적은 〈표 2-31〉과 같다.

| 표 2-31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연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화및비디오진흥법위반, 음악산업진흥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계
2015	7,398 (144)	52,196 (4)	2 (0)	23,262 (586)	1,390 (1)	84,248 (735)
2016	8,012 (104)	33,808 (2)	1 (0)	24,598 (491)	1,481 (0)	67,900 (597)
2017	6,293 (73)	24,533 (4)	1 (0)	21,817 (322)	1,513 (0)	54,157 (399)
2018	5,861 (47)	18,638 (13)	0 (0)	16,805 (259)	1,354 (0)	42,658 (319)
2019	7,941 (24)	16,285 (12)	2 (0)	16,532 (195)	1,382 (0)	42,142 (231)
2020	6,207 (26)	13,747 (7)	0 (0)	12,759 (147)	1,427 (3)	34,140 (183)
2021	4,636 (7)	5,695 (7)	0 (0)	10,992 (84)	884 (2)	22,207 (100)
2022	4,272 (4)	6,070 (8)	1 (0)	11,471 (70)	761 (0)	22,575 (82)
2023	4,229 (19)	10,133 (7)	0 (0)	11,508 (76)	669 (1)	26,539 (103)
2024	4,363 (6)	15,628 (7)	1 (0)	10,250 (43)	11,895 (1)	42,137 (57)

※ ( )는 구속 인원

6)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방안 수립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서, 범행수법이 지속적으로 조직화, 전문화, 지능화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피해자가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커다란 사회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검찰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2022. 7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으로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연장 운영하여 2024년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740명을 입건하고, 총책 18명 등 258명을 구속하는 수사 성과를 내었다.

또한, 형법상 범죄단체·집단 개념을 적극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수거책 등 단순가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였으며,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아니한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환전사범 등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였다.

한편, 금융·통신 분야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 AI기술 이용 범죄이용전화 선별 등 근본적인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요 범죄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국제화된 범죄로서 국제공조수사가 필수적이므로, 대검찰청 조직범죄과는 2022. 6월부터 보이스피싱 해외 거점국인 필리핀에 검찰수사관을 파견하여 국제협력체계를 수립 및 강화하고, 해외 도피사범을 집중 추적·검거하는 등 공조수사를 진행하여 2024년까지 총 20명을 검거하고 10명을 송환하였다.

주요 보이스피싱 범죄수사 사례로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200억원 상당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은 현금으로 환전한 상품권업체 대표 등 2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상품권 업체 직원 및 수표인출조직 조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서울서부지검),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가상계좌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 진행하여,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역대 최대 규모인 가상계좌 72,500개를 판매한 총책 등 4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기소한 사례(합수단),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콜센터 조직과 함께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계좌의 범죄 연루'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총 170명을 속여 약 54억원을 편취한 조직을 수사하여 발신번호 표시 변작을 위한 중계기 무선라우터, 대포유심 등을 공급하는 중계기 유통조직 3개를 적발하는 등 태국·러시아 등 다국적 조직원 53명을 구속 기소한 사례(합수단) 등이 있다.

| 표 2-32 |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출처 : 경찰청)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37,667	31,681	30,982	21,832	18,902	20,839
검거건수	39,278	34,051	27,647	24,522	20,991	21,179
검거인원	48,713	39,713	26,397	25,030	22,386	21,833
피해금액(억원)	6,398	7,000	7,744	5,438	4,477	8,545

마. 형집행 지휘·감독

1) 벌과금 집행

가) 집행실적

2024년 세입예산액은 1조 2,335억 6,500만 원이었고, 세입예산액의 113.21%인 1조 3,965억 573만 원을 집행하였다. 2024년 말 현재 전국의 벌과금집행 미제액은 총 34조 5,888억 4,423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보다 2.13% 증가되었다.

2024년말 현재 벌과금집행 및 집행 미제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37〉과 같다.

나) 벌과금집행 우수기관 등 포상

2024. 12. 31. 벌과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청을 선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 등 6개청을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하였고, 집행유공공무원 18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 표 2-33 | 2024년도 벌과금 집행 유공 표창기관 현황

순 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1위	수원지검	창원지검	순천지청	춘천지검	상주지청	공주지청

※ 실적산출 방법 : 현년도 집행률(40%) + 과년도 집행률(30%) + 세입예산액 달성도(20%) + 강제집행실적(10%)

2) 사형 확정자 관리

2023년 말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총 55명(군형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미집행자 제외)이며, 1997. 12. 30. 23명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3) 형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관리

형집행정지자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및 보석자 관리에 대해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2024년 한 해 동안 형집행정지자 574명 중 110명에 대하여 잔형집행 등을 하였고, 구속집행정지자 772명 중 697명에 대하여 구속집행 등을 하였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1,980명 중 347명에 대하여 보석취소를 청구하여 구속집행 하였다.

4. 국민의 권익 보호

형사기획과 검사 한웅세

가. 개요

법무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인권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국민의 변화된 인권의식에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약 2년여 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6. 6월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위 준칙에 따른 일선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 8월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청을 포상하고 있다.

나.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 1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준칙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수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준칙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이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작업에 착수,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06. 6. 2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준칙은 개정 전과 달리 준칙이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검 지침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라 장·절을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개정 전에는 총 3장 35개 조문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 3장 8절 73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준칙의 인권보호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제 및 조문내용을 수요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2018. 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권고에 따라, 2018. 4. 16. 출석요구 시 죄명 및 피의사실 사전고지, 조서 미작성시에도 변호인 참여 배제 불가, 피의자에게 메모 허용, 심야조사 시 심야조사 허가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 보고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8. 7. 23.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철저준수 등을 지시하였다.

그 이후, 법무부는 2019. 12월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중요 수사 관련 보고, 압수수색 시 준수사항, 피의자 출석조사 최소화, 장시간조사·심야조사 제한,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피해자·참고인 출석요구 및 조사시 유의사항,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전용조사실 이용,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참고로 2024년 중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34,909명 중 24.7%에 해당하는 8,630명에 대해 그 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또한, 2024년에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3,078회에 걸쳐 구속 장소 감찰(자체 구속 장소가 없는 수사관서 포함)을 실시하였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이후,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실은 점검반(인권감독담당관을 반장으로 총 4명으로 구성)을 편성하여 시행 중인 각종 인권보호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직원들의 인권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일선 청의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19년 4분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 60개 검찰청(지검 및 지청)에 대한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각 2회 완료하였고, 2024년 하반기 15개 지검 및 지청(2년 주기 점검 완료 예정)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감독 활동을 강화하였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고검 인권보호관의 역할 확대 및 보다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5개 고검(수원고검 제외, 관할 단독지청 없음) 인권보호관이 관할 단독지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역할을 분담하였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결과를 해당 청에 송부하여 인권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청에서 보완 후 조치내역을 대검찰청에 보고토록 하였다. 인권업무 이행실태 점검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심야조사 개선 방안, 인권보호수사규칙 고지 표준화 방안, 인권 관련 실태조사 표준화 방안, 수용자 출석요구 시 인권 개선방안 등을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새롭게 시행되는 지시·지침 등을 반영하고 점검사항을 확대하여 2021년에는 기존 점검사항에 더하여 '반복 출석조사 적정성, 수용자 출석 후 수사과정의 기록, 압수수색 관련 인권보호관 기록 열람 및 의견 제시' 등을 추가하여 점검하였고 2022년에는 '통역인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을 추가하여 점검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1. 9. 1.부터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전국 34개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검찰 직접수사 개시사건에 대해 영장, 출국규제, 기소의 각 단계에서 수사절차의 적법성·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검찰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공소제기의 결정 등 각 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로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보호관이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검찰청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검찰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전환하고, 인권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하여 2020. 6. 16. 검찰인권위원회 산하 연구조직으로 '인권중심 수사TF'를 발족하였다. 위 TF 발족 이후 법무부의 '인권수사 제도개선TF'와 총 7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 10. 12. '인권중심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수용자 출석요구 개선, 반복 출석조사 점검 강화, 참고인 조사방식 다양화, 일선 인권교육 강화, 압수수색 영장청구 및 절차 개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 1차 시행계획'을 일선에 전파하였다.

대검찰청은 2021. 1월 종전 지시로 시행하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사전 영장까지 확대 실시하고, 요건과 절차를 규범화하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경 인신구속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대검찰청은 2021. 6월 검찰-교정시설 KICS 개선으로, 수용자용 출석요구서를 KICS로 발송, 수용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법령상 출석의무가 없는 피의자가 아닌 수용자의 임의 출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도관을 통해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였다.

대검찰청은 2023년 피의자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피해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2023. 10월 KICS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문자 발송'(안내문구 마련) 기능을 활용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청에 지시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3. 11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사실 통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구두 외에도 문자메시지로 선정 사실을 알려주도록 일선 청에 전파하였다. 더불어 2024. 1월 경찰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에게 미리 조사일정을 통지하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하였다.

다.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구속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2024년 피고인 보상은 1,242건에 681억 1,501만 원, 무죄비용 보상은 2,207건에 75억 7,13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의자 보상은 56건에 15억 3,226만 원이 지급된 바,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은 〈표 2-34〉와 같고,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현황은 〈표 2-35〉와 같다.

| 표 2-34 | 2024년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피고인 보상			무죄비용 보상	합계
	소계	구속사건 무죄	재심사건 무죄 (양벌규정 및 과거사 등)		
건수	1,242	252	990	2,207	3,449
금액	68,115,014	8,907,935	59,207,079	7,571,306	75,686,320

※ 피고인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금에 대한 보상

※ 무죄비용 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변호사비용, 여비, 일당 등) 보상

| 표 2-35 | 2024년 피의자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접 수 (신수+구수)	처 리			처리중 (미결정)	지급
		인 용	기 각	계		
건수	56	56	-	56	-	56
금액	1,532,263	1,532,263	-	1,532,263	-	1,532,263

※ 피의자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구금에 대한 보상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형사기획과 검사 한웅세

가. 기본방향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성격도 지능화·흉포화·조직화·광역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인원 정비, 시설 확충,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등 다각적으로 과학수사 운영체제를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첨단화하는 등 검찰 수사업무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나.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 3월 중앙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이래로 1984. 7월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1991. 8월 과학수사지도과 설치, 1998. 2월 두 과를 통합한 과학수사과를 설치하여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 12. 31.「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해 기존의 과학수사과는 폐지되고, 2005. 4월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신설되어 과학수사 담당부서가 확대 개편된 후 2007. 3. 8. 과학수사제1담당관을 과학수사담당관으로, 과학수사제2담당관을 디지털수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2010. 7. 26.「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8. 4.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이 추가 신설됨으로써 과학수사기획관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3담당관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5. 2. 11. 종전 3담당관 체계로 운영되던 과학수사기획관 체제를 검사장 중심의 '과학수사부'로 승격시키면서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1과, DNA·법생물·법화학 감식 등을 담당하는 과학수사2과,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 등 1기획관, 4과로 조직 체계를 확대·개편하였으며, 2018. 2월 과학수사1과를 법과학분석과로, 과학수사2과를 디엔에이·화학분석과로 과명칭을 개정하여 담당업무가 명칭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2018. 6. 21.「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0. 2. 4.「검찰청법」,「형소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개정 법 시행(2021. 1. 1.) 등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사무분장 조정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일부 조직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2020. 9. 3.)됨에 따라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 4과 조직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법과학분석과는 총괄운영실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과학수사기획관실의 행정통합 관리·운영 업무의 공백이 없이 계속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다.

기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설치되었던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가 2022. 9. 19.자로 대검 사이버수사과로 이전되었고, 관련 업무를 과명칭에 반영하고자 2023. 12. 26.자「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사이버수사과에서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1. 4월 부산고검에 마약감식팀을 신설하여 영남지방의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원거리 압수수색 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 4월 서울중앙지검, 2008. 6월 부산고검, 2009. 9월 대구고검, 2010. 4월 광주고검, 2010. 12월 대전고검, 2011. 5월 인천지검, 2012. 6월 수원지검(2019. 3월 수원고검으로 이전), 2014. 11월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2023. 7월 서울동부지검, 2024. 7월 제주지검 포렌식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디지털증거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자체의 무결성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짐에 따라, 2021년에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 공판업무 지원을 위한 공판지원팀을 신설하였다.

전자정보 선별과정에 대한 사건관계인·변호인 등의 참여 증가, 선별 소요기간의 장기화 등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참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청 3곳에 포렌식수사관 6명을 증원하고, 참관실 3개를 증설하였으며, 2024년 정기직제 증원을 통해 총 6명을 증원하고 참관실 11개를 증설하였다. 또 2025년 추진과제로 서울북부지검 및 서울동부지검 디지털포렌식팀에 각 2명을 증원하고, 참관실 4개를 증설할 예정이다.

마약 및 DNA 감정 분야에서 2007. 10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획득한 이래로 2009. 2월 국내 최초로 문서감정 분야 인정 획득, 2020. 11월 디지털포렌식과 법화학 규제물질류 분야에서 추가로 인정을 획득하였다. 4년 주기로 진행되는 공인시험기관 재평가를 통해 인정 갱신을 받음으로써 과학수사부에서 수행되는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전문 감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2023. 10월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재평가에 통과, 2023. 12월 각 분야에 대한 인정 갱신을 받았다.

2024. 5월에는 자유형미집행자 검거시 마약류 측정 및 채증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선청에 전자저울을 배정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였고, 형집행 및 수배자 검거 등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부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검복을 배정하여 안전을 강화하였다.

또한, 2024. 12월에는 연구 시 논문 검색, SPSS(통계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활용하고, 피해자 진술분석 등에 사용하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등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등 현장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서감정 분야는 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및 문서의 각종 위·변조 식별 여부, 잠재지문 현출과 관련된 감정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지질감정, 출력기기 동일여부 감정 등 관련 감정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며, CA훈증챔버(CyanoAcrylate Fuming Chamber, 2021년), 분광비교측정장비(VSC-8000, 2022년) 등 첨단 감정장비도입 및 '필적감정의 객관화 지표 개발 연구'(2023년), '국내시판 인주 시료분석 및 DB구축에 관한 연구'(2023년)로 감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첨단화되는 문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리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 2014. 12월에는 급증하는 묻지마 범죄 및 살인, 아동학대 등의 강력사건에 대응하고자 임상심리평가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인지적·성격적 특성, 사이코패스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16. 5월부터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를 상대로 '판결 후 성범죄자 심리생리검사(Post-Conviction Sex Offender Testing, PCSOT)'를 실시하여 성범죄자 재범 방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0. 11월에는 1:1 전자감독 대상자, 2021. 11월에는 고위험 피부착자로 PCSOT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심리생리검사관 양성 교육의 국제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국 폴리그래프협회(APA)의 교육프로그램 인증 취득을 추진, 2015. 9. 7. 대검찰청 심리분석실(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Polygraph Academy)은 아시아 비영어권 최초로 APA 인증을 취득하고, 2018. 4. 2.(1차), 2021. 8. 17.(2차), 2023. 5. 인증을 갱신하였고, 최초 인증 취득 이후 검찰 뿐만 아니라 국정원, 해양경찰, 군 수사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도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48명의 심리생리검사관을 배출하는 등 국제 수준의 심리생리검사관 교육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24. 11월 한국심리학회지에 '실무 자백 사건들을 활용한 검찰 심리생리검사의 타당성 연구' 논문을 게재하고, 2년(2023년~2024년)에 걸쳐서 '딥러닝을 통한 뇌파분석 기법 개발 연구'를 실시하여 AI를 통해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뇌파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통합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 뇌파분석,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를 동시에 진행)의 정확성과 활용을 높여 일선청 강력사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였다.

2022. 3. 16.「진술분석 규정(대검 예규 1267호)」을 개정하여 진술분석 대상인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상한을 13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아동학대사건의 18세 미만 피해자를 진술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진술분석 수요 현실을 반영하여 2022. 5월 진술분석관 6명, 2023. 5. 4명 총 10명을 증원하였고, 신규 진술분석관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실무에 투입하는 등 분석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진술분석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2019년 '성폭력 사건 판결문 내용 분석 연구' 결과를 학계 등 외부기관 실무자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진술분석세미나를 개최, 발표하고 논의하는 등 국내 전문가들과 활발히 교류하였으며, 2020년 '진술분석기법 강화 및 외연 확장을 위한 연구', 2021년 '형사사법 내에서 진술분석의 활용에 관한 연구', 2022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진술분석기법 강화 연구', 2024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연구', '성인 진술분석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론적 및 실무적 검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등 진술분석 기법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심리학·공학·언어학의 융합 연구로 '진술 진위 탐지를 위한 진술분석 준거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고, 아동 발달 특성에 최적화된 진술 수집용 챗봇과 국내 최초로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한 진술분석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추후 데이터 보강 등을 통한 고도화가 필요하나, 공간·시간 등 물리적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비대면 면담 체계와 진술분석의 자동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진술분석 운영체제를 확장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음성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 2016. 11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등 증거 녹음자료에 대한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완료하였고, 2018. 11월 신원 미상 음성의 성, 연령, 지역을 추정하는 자동 화자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였다.

2019. 11월에는 '자동화자 확인 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녹음 채널별 화자 내부 음성 변이 연구'를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업무에 활용 중이며, 2020. 11월에는 AI를 이용한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자동 화자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21. 12월에는 '스마트폰 녹음파일의 위변조 여부 분석 기법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녹음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2022. 11월에는 'AI를 이용한 자동 화자 확인 기법 고도화 연구'를 완료하여, 기존 시스템에 비해 향상된 분석 능력을 확보하였다.

2023. 11월에는 '스마트폰 녹음 위변조 식별 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녹음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고, 기존 위·변조 식별 프로그램의 분석 성능을 강화하였다.

2024. 11월에는 녹음 품질이 불량한 증거 녹음의 신호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폰 녹음 음성 식별을 위한 오디오 신호처리 기술 개발'을 통해 음성신호 개선툴을 개발하였다.

영상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2017. 11월 영상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 현장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동일인 식별을 위한 얼굴 표지점 자동 추출 및 분석 기법 연구를 완료하였고, 2021. 12월 저화질의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를 이용한 차량번호 인식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차량 번호판 분석의 감정 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2. 6월 '차량의 번호판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특허출원하였고, 2023. 1월 특허등록되었다. 2024.

12월에는 '디지털 사진파일의 위·변조 탐지 기법 연구'를 통해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미지와 고해상화된 변조 이미지를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멀티미디어 복원 분야와 관련하여 차세대 표준 영상 코덱인 H.265 코덱의 보급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 11월 자체연구를 통해 H.265 영상 복원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2020. 4월에는 데이터가 손상된 증거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상된 압축 파일에서 동영상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2021. 12월에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등에서 사용하는 FAT32 파일시스템에서 삭제된 파일의 생성시간, 수정시간, 파일이름, 파일 크기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2022. 2월에는 신속한 속기업무 지원을 위해 표준 규격이 아닌 녹음파일을 일반 재생프로그램에서 재생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2023. 8월에는 사건 관련자의 인권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모자이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e-Pros를 통해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24. 7월에는 대량의 녹음파일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고 녹취록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게 하는 AI 이용 녹취록 초안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24. 8월에는 증거 동영상 중, 특정 구간의 영상을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로 추출하는 특정 구간 영상 추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24. 11월에는 2023년에 개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프로그램에 모자이크 영역 반전 기능, 재생 모드 기능, 모자이크 강도 구간별 설정 기능 등을 추가한 개선본을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24년도 감정처리실적은 법화학감정 39,822점(전년 대비 31% 감소), DNA감식 19,395점(전년 대비 6% 감소), 심리분석 1,769명(전국, 전년대비 8% 증가), 진술분석 180명(전년 대비 28% 감소), 문서감정 4,191점(전년 대비 32% 증가), 음성분석 2,764점(전년 대비 49% 증가), 영상분석 3,722점(전년 대비 9% 증가), 멀티미디어복원 5,872점(전년 대비 13% 증가)으로 전년 대비 총 19%가 감소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2010. 1월 디스크분석도구인 CFT 1.0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현재 네트워크 공유 폴더 수집 기능, 윈도우 10메일 분석 기능, Virtual Box 가상 디스크 분석 기능 등을 반영하여 국세청·관세청·해양경찰청 등 30개 법집행기관에 배포된 CFT 3.11.2.1을 운용 중이고, 2012. 11월 이메일 전용 압수도구인 라이브 e-mail 압수도구를, 2015. 2월 손상파일 복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2015. 12월 급증하는 모바일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포렌식 도구인 MFA를 전국청에 보급하였다. 또한 포렌식어카운팅 기반의 회계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6년 중소기업 대상 회계 도구 FAST를 개발하고, 2017년에 중견기업 대상으로 연구를 추가 진행하여 118개의 부정적발 시나리오 기능을 가진 통합 회계 분석도구인 FAAT을 개발, 2018. 5월 최종검증

후 배포하였고, 세계 최초로 개발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삭제 레코드 복구 도구인 MSR, MYR을 지속적으로 안정화하여 활발히 활용 중에 있다. 2019년도에는 포털사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속하게 선별압수가 가능한 eFA를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시켜 구축하고 있는 인공지능비서 서비스에 대한 저장 데이터 체계를 연구 및 분석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2020년에는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의 표준화에 의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춘 인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인정기구 (KOLAS)로부터 디스크 이미징기법, 모바일데이터 획득기법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차세대 디지털 현장 압수수색 프로그램인 DFT의 성능진단과 시험사용을 계속 진행하고, 관세청, 특허청 등 2024년 한해 동안 33개 유관기관에 1,037점을 배포하였다.

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는 2021년 검찰 등 법집행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직 설계 및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표준랩 구축 모델을 개발·공유하는 등 검찰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2022년에는 공개정보 수집 대상 확장 및 방법 다각화 연구, 스마트홈 시스템 모델링 및 획득 데이터 분류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기기 또는 획득 대상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집·획득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일선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기능 개선 개발 사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해시값 생성도구인 해시젠(HashGEN, Hash value GENerator) Ver. 2.1을 2024.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환경부, 관세청 등 27개 유관기관에 총 251점을 배포하였다.

2023년에는 PC기반 인스턴트 메신저와 협업툴에 대한 데이터 획득·분석·복호화 기법 연구, macOS 아티팩트 분석을 통한 Live Forensic 기법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수집 대상과 새로운 운영체제(신규 업데이트 버전) 기반 사용 기기로부터의 데이터 획득·분석·복호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모바일포렌식 및 일선용 디지털포렌식 기능 개선 사업을 통해 모바일포렌식 도구(MFA, Mobile Forensics Acquisition&Analysis)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WinTriage(윈도우 아티팩트 획득 도구)와 WinART(윈도우 아티팩트 분석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윈도우 아티팩트에 대한 획득·분석 기능이 특화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2024년에는 경량 및 직렬화 DB에 대한 구조 분석 및 복원기법 연구를 통해 주요 경량 DB 및 직렬화 기술의 데이터 저장구조·동작원리·삭제 데이터 복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미지 식별 및 분류를 위한 AI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 다수의 디지털증거 중 이미지 파일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 관련 용어 표준화 연구 및 교재 개발 연구를 통해 혼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용어를 식별하고 표준정의를 도출하여 전문교육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2023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종 OS기반 인스턴트 메신저 및 협업 플랫폼 분석기술 연구와 Sonoma 기반 macOS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모바일포렌식 도구의 기능을 확장하여 분석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또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시스템 등 자동차 내부의 전자장치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연구하여, 2024년 위 연구에 대한 수사활용 방안을 전파하고 압수·수색 및 분석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자동차포렌식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디지털 증거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등으로 2024년도에는 2,618건의 현장 압수수색과 11,098건의 증거분석(참관·법원감정·법정증언·기술자문 포함)등 총 13,716건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0. 7. 26.부터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 등 강력사범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감식과 DNA-DB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력미제사건 해결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6. 5월 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갑 등에서 DNA형을 검출하고 DNA-DB검색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 경찰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진범을 밝히는 성과를 이루었고, 2018. 5월 국과수 감정결과 DNA 및 혈흔이 불검출된 범행도구 바벨봉에서, 대검찰청의 재감정을 통해 피의자 혈흔 및 DNA형을 검출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강도살인사건 피의자를 구속기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8. 10월 2003년 ~ 2006년 사이에 광주 및 대전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발생한 연쇄특수강도강간 피의자와 2001년 4세, 10세의 여아를 연속적으로 성폭행한 미제사건 피의자를 DNA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특정하고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9년에는 수형인등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화성연쇄살인범의 DNA신원확인정보가 일치됨을 확인하여 국내 최장기 미제사건의 진범을 밝히는 데 일조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내었다.

2021년 9월에는 2001년 발생된 강간사건에서 정액이 묻은 수건으로부터 확보된 피의자의 DNA형이 20년 만에 대검 수형인등 DNA-DB 일치로 확인됨에 따라 공소시효를 불과 5개월가량 앞두고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였고, 2001년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별건으로 수형인등 DNA-DB에 수록되면서 2019년에 검색 일치가 통보된 사건은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 3월에 기소 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023. 1월에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검찰청에 송치된 '인적사항 불명 성폭력 미제사건' 중 DNA 감정서가 있는 사건에 대해 DB 수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22개 검찰청으로부터 총 65개의 감정서, 93개의 DNA형을 검토하였고, 그중 2건의 미수록 DNA를 확인하여 수록하도록 국과수에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수록된 DNA신원확인정보를 DNA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수형인 일치 1건을 확인하였고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을 특정하여 공소시효 2개월을 앞두고 수사 재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2024년에는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 DNA검사를 하여 수형인등 DNA DB에 수록된 수형인이 2006년 서울에서 가정집에 침입하여 미성년 여아 2명을 추행한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져 출소 직전에 구속 기소 되었다. 이는 신규로 수록된 수형인의 DNA와 2010년 DNA법 시행 이전의

미제사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범죄 현장 DNA DB와의 검색 일치 결과로 확인된 사례이다.

한편 DNA·화학분석과에서는 검찰의 식·의약품 수사 및 다양한 수사영역의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법생물 감정실 및 화학감정 파트를 신설하여 '가짜 백수오 사건'과 같은 가공식품, 한약재, 식물성 마약 원료의 진위여부 판단 및 강력사건 현장의 비인체 유래물에 대한 종판별을 통해 인간 DNA 외에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증거분석으로 관련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대검이 보유한 'DNA를 이용한 마약성 양귀비 판별방법' 특허 기술 및 마약성 대마 분석법을 관세청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법생물DNA 감식업무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2021년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성분 불상의 수입물품에 대한 성분확인 검사를 요청받아 NGS를 이용한 첨단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환각버섯 및 다양한 식물 성분의 혼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중국산 발암성 항생제 닭꼬치 사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체중감소제 등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식품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감정 지원 및 환경사건과 관련하여 폭발성 휘발물질, 산·염기성 물질에 의한 토양·수질오염, 기름유출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술품 위작 사건 등의 화학감정을 지원하고, 2016. 1월경부터는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5월경 허위 신기술 낙뢰보호기를 조달청 등에 납품하여 28억 원 상당을 편취한 내용으로 총 7회 고소·고발 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압수품에 대한 화학감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등 사건 처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21년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연구비 187억 원을 받아 진행한 차세대 CO2분리막 개발 사업의 재료비 124억 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개발된 시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어야 할 팔라듐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중금속 분석을 통해 밝혀낸 것을 포함하여, 금세공 관련 사기사건과 관련한 순금 함량 측정, 특허출원한 액정보호필름의 특허 등록 내용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점도 측정 등 다양한 감정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를 지원하였다.

2023년에는 폐수 증발 실험 등 과학수사를 통해 페놀 등이 함유된 폐수 합계 276만 톤을 수증기 등 형태로 불법 배출한 사건과 건축 단열재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올 생산업체에서 재생 폴리올이 섞인 혼합 폴리올을 공급하고 순수 폴리올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기 사건에 대한 화학감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8. 12월부터 약물치료 집행명령에 대한 확인 검사 기법개발에 착수하여, 2019. 1월 서울, 수원, 부산 지역 보호관찰소의 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약검사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9. 9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복약검사는 치료명령이 부과된 정신장애범죄자가 처방받은 약물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인 약물 검사를 통해 치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치료명령 대상자의 소변 시료에서 항정신성 약물(antipsychotic drug)을 주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치료 도중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DNA감정실은 긴급한 시일을 다투는 긴급 DNA감정이나 기존에는 DNA 확보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감정물에 대한 정밀 재감정을 통해 사건 수사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9년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에서 흉기인 과도에서 피의자와 그 가족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칼을 준비하여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다가 살인하게 되었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탄핵함으로써 구속 기소한 사건이나, 흉기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하여 48시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건의 실마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 감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을 살포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지폐 및 선거공보 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지문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DNA 정밀감정을 통해 증거물에서 피의자의 연관성 입증이 가능함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필로폰에 대한 DNA감정을 통해 제보자 진술에 의존하던 마약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필로폰 소지 범행을 규명하고 마약사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 '구리선관위 잔여투표용지 은닉 등 사건'에서는 주요 증거물인 찢어진 서류봉투의 흔적에서 피고인의 DNA를 효과적으로 검출하여 선거범죄 실체 규명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2020. 9월부터 법무부(이민통합과)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신청자들의 혈연관계 확인 업무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2011년 법무부(국적과)의 '국적 취득 신청자 등에 대한 DNA검사 협조체계' 구축 이후 혈연관계 확인 업무가 추가로 확대되었다. 2021년 '구미 3세 여아 사건' 관련 DNA 감정을 통해 피의자(할머니)와 사망한 여아(손녀)의 친모녀 관계를 규명하였고, '제주 조천읍 10대 중학생 살인 사건' 관련 피해자(15세)를 목졸라 살해한 범행도구인 허리띠에서 피의자 2명의 DNA를 검출해냄으로써 혐의 규명에 기여하였다. 2023년 택시기사 및 前 동거녀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DNA 감정을 통해 이복형제 관계임이 확인되어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청구된 건 등 다수의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다. 2024년에는 순천지청 살인미수 사건과 전주지검 호송 경찰관의 구속 피의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DNA 감정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 없이 살아온 75세 피의자가 친족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최신 친족확인 시험법을 사용하였다.

과학수사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90.4억 원의 예산으로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 기술 연구개발」이라는 명칭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검증체계 고도화' 연구를 통해 법과학 증거의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증명력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 최종 단계로서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재판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의 대량화, 스마트기기 확대에 따른 압수대상의 다양화,

암호화 등 보안기술 강화, 5G, AI기술로 인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 과학수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신 분석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과학수사부는 '법과학분야 기술수준 분석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정책연구를 통해 현재 과학수사부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동등(영상분석 분야)하거나 20 ~ 30% 이내의 기술격차로 진단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였고, 2023년도에 종료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형사사법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및 활용전략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R&D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검찰 과학수사 기술의 도약과 '객관적 증거 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보호' 달성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1. 10월 일선 검사 및 수사관의 과학수사 활용 증대와 과학수사 활성화를 통한 SMART 수사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과학수사책임관(부장검사급), 부책임관(검사), 책임수사관을 지정하여 과학수사 관련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과학수사책임관'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주기적으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대검·일선 청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과학수사 지원을 위한 전국 청 과학수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다.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영상녹화제는 기존의 조서 위주의 수사관행에서 탈피, 수사과정 전반을 영상녹화하고 이를 CD로 제작 고착화 하여 수사 및 재판 등에 활용하는 제도로, 피조사자의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진술증거 수집을 과학화하여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수사절차의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6월 구성된 수사과학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이며, 2004. 3월 수사과학화추진단의 녹음·녹화팀 구성으로 본격화되었다. 2004. 3월 ~ 4월 영상녹화장비를 선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고검 소재지 5개청, 수도권 3개청(서울서부, 인천, 수원지검), 기타 2개청(청주, 울산지검)을 시범 실시청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5월 시범 실시청 담당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지침을 시달하여 2004.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시범실시 하였다. 같은 해 12월 시범실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범실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토론·분석하여 영상녹화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하여 기존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01호, 2006. 6. 20.)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대검 예규 제425호, 2007. 12. 11. 대검 예규 제519호, 2009. 11. 3. 대검 예규 제625호, 2012. 11. 3. 대검 예규 제651호,

2013. 6. 27. 대검 예규 제682호, 2013. 12. 11. 대검 예규 제711호, 2014. 3. 31. 대검 예규 제759호, 2014. 12. 29. 대검 예규 제798호, 2015. 7. 16. 대검 예규 제982호, 2019. 3. 15. 대검 예규 제1131호, 2020. 12. 30. 대검 예규 제1220호, 2021. 8. 11.대검 예규 제1268호, 2022. 3. 16. 대검 예규 제1325호, 2023. 2. 1.)하여 전국 청에 시행하였으며,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들의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 12월에 「영상녹화조사업무 실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2014년에는 영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피조사자의 인권을 고려한 영상녹화 조사기법 등을 연구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4. 12월경 「영상녹화 실무 매뉴얼」을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19. 3월부터 2019. 4월까지 주무과장이 전국 28개 지검 및 차치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영상녹화조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영상녹화의 필요성 및 활용기법을 공유하여 영상녹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 5월에는 일선 청 영상녹화 실적 우수검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상녹화 활용 노하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논의 내용 중 실무 활용사례 중심으로 영상녹화조사 활용 TIP을 제작하여 전국 검사들에게 배포하였다. 2019. 6월에는 현장 설명회 일선 청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임검사 승인 없이 결재자가 영상녹화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물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열람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2020. 12월에는 검찰청 외 제3의 장소에서도 영상녹화조사가 가능하고 휴대와 설치가 편리한 이동형 영상녹화조사장비 18대를 도입하여 장소적 제한 없이 영상녹화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2021. 12월에는 개정 형사소송법(2022. 1. 1. 시행)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유죄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법령 및 지침 상 필요적 영상녹화조사 사건, 사건 유형별 영상녹화물 증거 활용 사례, 새로운 방식의 영상녹화조사 사례를 소개한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일선 청 영상녹화조사 활용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상녹화 조사 시 조서 작성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영상녹화 조사과정 전체를 문서화하여 수사 및 재판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고자 영상녹화제도 시행과 병행하여 2009. 2월 일반임기제 속기사 28명, 2013. 8월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54명, 2019. 5월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24명 등 총 106명의 전문 속기사를 채용하여 전국 청에 배치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기사 운영준칙」(대검 예규 639호, 2013. 3. 11.제정, 대검 예규 제791호, 2015. 7. 16. 개정, 대검 예규 제934호, 2018. 3. 2. 개정, 대검 예규 제1215호, 2021. 8. 11. 개정, 대검 예규 제1425호 2024. 5. 31. 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영상녹화조사를 위해 모든 영상녹화조사실은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한 후 즉시 CD로 제작하고, 조사실 밖에서는 조사 장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정비함으로써 민사사건과 같이 법정에 준하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였고, 여성아동조사실은 피조사자의 성별·연령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휴게실에는 부모 등이 모니터로 편면경을 통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영상녹화조사실은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4개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여 12실을 설치·운영한 이후 2024. 12. 31.까지 전국 66개청에 총 903실을 운용하고 있다.

| 표 2-36 | 조사실 설치현황(2004 ~ 2024년)

(단위 : 실)

종 류 / 연 도	계	검사 신문실	여성·아동 조사실	일반 조사실	일체형	분리형
2004	12	1	4	7	-	-
2005	42	4	9	29	-	-
2006	70	1	6	63	-	-
2007	242	9	7	226	-	-
2008	212	4	5	135	51	17
2009	77	2	2	35	26	12
2010	94	-	23	41	-	30
2011	38	-	1	24	-	13
2012	15	-	2	13	-	-
2013	10	-	2	8	-	-
2014	15	-	1	14	-	-
2015	0	-	-	-	-	-
2016	8	-	-	8	-	-
2017	73	-	3	70	-	-
2018	3	-	-	3	-	-
2019	82	-	5	77	-	-
2020	5	-	-	5	-	-
2021	-	-	-	-	-	-
2022	9	-	1	8	-	-
2023	4	-	-	-	-	4
2024	-	-	-	-	-	-
계	1,011	21	71	766	77	76

※ 전국 수사검사(904명, 2024. 12. 31. 현재) 대비 99% 설치

※ 설치 누계는 1,011실이나 신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현재 총 903실 활용

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시료를 사전에 채취하여 DNA형을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건발생시 현장검증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검찰은 2010. 1. 25. 공포되고 2010. 7. 26.부터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 7. 26.부터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DNA인적관리시스템에 2024. 12. 31. 기준 총 255,724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그 중 255,680명에 대한 DNA분석결과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다. 검찰이 관리하는 DNA검색을 통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총 2,936건의 미제사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사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강력사범에 대한 DNA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훨씬 더 축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미제사건의 현장 증거물 DNA와의 원활한 상호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9. 6월부터 2020. 6월까지 검찰은 경찰 국과수, 국방부와 함께 DNA-DB 연례운영보고서를 발간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 및 검·경등 실무부서에 배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업무 참고 및 국민들이 DNA-DB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 12월 검찰은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DNA-DB 운영성과를 담은 DNA-DB 10주년 백서를 발행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검·경 등 실무부서에 배포하였다. 2024. 6월에는 제7차 연례운영보고서를 제작·배포하였다.

한편, DNA감식과 범죄자 DNA-DB에 사용되는 고가의 외국 상용분석키트를 대체하는 국산화 기술을 연구하고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차세대 분석 기술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켜 국내 DNA감식기술의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한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이 3년 계획으로 2012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대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의 형태이며 총 15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의 학계·연구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유 특허 12건, 저작권 2권을 등록하고, 이 중 3건을 관련 업계에 기술 이전하였다. 그리고 연구논문은 42편, 학술발표는 94건이 수행되어 관련 분야에 참고·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2. 11월, 2014. 2월, 2015. 3월, 2016. 7월, 서울대, 연세대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움(ISFDL :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2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DNA-DB 및 선진 DNA감식 기술 등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6. 7월 연세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는 2017. 8월 국제법유전총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 개최를 앞두고 ISFG 부회장 메키 프린츠 박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2017. 8. 28. ~ 9. 2.까지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국제법유전총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를 통해 법과학 관련 감정관 및 연구자 771명이 참석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수사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검찰 DNA감식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감식 기술 세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2018. 4월에 개최된 제5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에는 DNA 감정관 및 경찰 과학수사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태원 살인사건의 현장분석에도 참여한 범죄 전문가 David J

Zeliff(미국)가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을 주제로 하여 증거물채취 주의사항, 증거를 기반으로 한 사건현장의 재구성 등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2020. 12월에는 COVID-19감염증 팬데믹의 영향으로 제6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발표자 6명(폴란드 1명, 네덜란드 1명, 국내 4명) 및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천향대, 중앙대, 국과수, 대검 등 국내·외 약 85명이 참석하였다. 2023. 5월 제7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과 제16회 한국법생물연구회를 공동 개최하였고, 국내·외 연구자 약 120명과 국과수, 관세청,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등 회원기관 19개 약 70여 명이 각각 참석하였다.

2019. 4월과 9월에 개최된 한국법생물연구회는 2014. 4월 대검찰청 등 11개 유관기관이 각자 전문 분야별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발족하였고, 그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원산지와 종판별을 통한 관세포탈 방지, 특정 동·식물의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2회 연구회까지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정부 기관 간 협업 모델로 발전하였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11회 연구회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현황 및 생명윤리적 관점에서의 논란'이라는 주제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국립 종자원에서 개최한 12회 연구회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검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같은 감식 기관들이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한 여러 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연구회를 제13회(2021년 하반기) 및 제14회(2022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연구회로 개최하였고, 2022. 9월에는 제15회 연구회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의 현장 개최로 진행하였으며, 생물의 종을 판별하는 DNA바코드 입력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2023. 5월에는 대검찰청 주관으로 제16회 연구회를 개최하여 「연구성과의 실용화 사례 및 성과 공유」라는 주제로 중국 의과학 아카데미 지앙 슈(Jiang Xu) 교수님을 비롯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의 노력이 깃든 참신한 실용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는 법생물연구회에서 구축된 각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사에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도 지원하고 있다.

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수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중요성이 확대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 증거취득 후 진술조사」로 검찰수사력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5. 4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5. 5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에서는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용 장비 및 시설 확충,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센터 신축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 3월 설계 발주를 거쳐 2006.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8. 10. 31. 대검찰청 부지에 지상6층 지하1층(건물연면적 7,844.88제곱미터, 공사비 143억 8,200만원)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준공되었다. 그 뒤 마약감정실을 제외한 과학수사부 산하의 모든 감정·감식·분석실이 디지털포렌식센터로 집중되어 법화학 감정·문서감정, 심리·영상·음성분석 뿐만 아니라 화재수사·DNA 감식 등 명실공히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과학수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후 2012. 11월 단순히 수사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정기법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과학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명칭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변경하였고, 2013. 8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개소하여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 등 개발에 집중하고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08. 10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준공 이후 정원 약 102%, 감정건수 약 450%, 감정장비 약 200% 등 인력 및 장비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심지어 일부 감정실은 개방된 별관 건물(예식장, 강당)을 임시 사용하고 있어 시설 보안 및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어 해결이 시급하였다.

더욱이 2020년부터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센터'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각종 R&D 사업 및 과학수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증축이 절실하였다.

이에 2020. 12. 2. 국회 심의를 거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증축 예산(총 사업비 약 325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지하 3층·지상 6층(연면적 12,455㎡) 규모의 증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여 2021. 12월 설계업체 선정 이후 최적의 센터 건립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2022.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3. 7월 물가상승 및 기본공사비 증액 사유(총사업비 약 501억 원으로 증액)가 발생하여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후 기재부에서 위임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받았고, 2024. 8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총사업비(약 501억 원)에 대해 심의 의결되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방위적인 감정·감식·분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과학수사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 증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일선 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바. 과학수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1) 과학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

일선청에서 수사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과학수사장비를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대검찰청은 2006년 과학수사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사장비관리시스템(TAMS)을 구축하여, 수사장비의 대출, 불용 결정 등 관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수사장비관리시스템(TAMS)은 대검찰청과 일선청의 수사장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당 권한(ID, PW)이 부여된 수사장비관리 담당자만 접속권한을 갖고 시스템에 접근하여 실시간으로 수사장비 보유현황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으며, 장비 대출·회수업무의 정확성, 신속성을 위해 바코드를 이용한 자동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대검찰청의 총 관리자(메인관리자)가 수사장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일선청 장비 바코드 분실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수사장비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2010. 6월 수사장비관리시스템(TAMS)의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10. 10월 성능 및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수사장비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와 매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전문업체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있다.

2)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시스템 구축

2006. 6월 디지털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요청, 디지털 관련 자료, 각종 공지사항, 통계 활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수사지원업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고, 수사질의어프로그램이 분석관의 PC에서만 구동되어 대용량 파일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는 등의 서비스 불만이 초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포함시켜 「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D-NET)」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여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청 디지털 포렌식팀을 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대검, 각 거점별 디지털포렌식팀(서울고검, 수원고검,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창원지검, 제주지검)과 일선 수사팀 간의 효율적인 수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업무관리, 연구개발관리, 디지털수사장비관리, 통계관리, 외부전문가 관리, 운용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 수사 통합 업무 관리시스템(DFIS II)」, 분석결과의 온라인 송부 및 검색, 문서파일, 이메일,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통합분석할 수 있는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대검찰청과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폐기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그리고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정보보안 체계를 설계하고,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17. 8월 「디지털증거 확보(송치)체계(KD-NET) 구축사업」을 최종 완료하여, 1차 참여기관(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차 참여기관〔(경찰청(대전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3차 참여기관〔(경찰청(서울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과 디지털증거데이터패키지 국가 표준(KS X 1220)을 활용한 디지털증거의 무결한 송치·수리 등, 처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체계를 구축하였다.

검찰·경찰 간 디지털증거 송치를 위하여 네트워크(초고속 국가망)를 연결하였고 검찰·특사경은 국가행정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디지털증거를 송치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에는 디지털증거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국가형사사법기록관'에 디지털증거 백업 센터를 구축하여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고, 2019년에는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와 긴밀하게 연동, 디지털증거물의 등록 및 폐기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디지털증거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2020년부터 빅데이터기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사업(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 3개년 수행)을 착수하여 2024. 12월 기준 23개 유관기관에 디지털증거 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NDFaaS)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참여 기관 확대를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 디지털포렌식팀은 5개 고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및 5개 지검(서울중앙, 수원, 인천, 서울남부, 창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폭발적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9. 3월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수원지검 포렌식팀이 수원고검 포렌식팀으로 이전하였고, 2023. 7월 서울동부지검, 2024. 7월 제주지검 포렌식팀을 설치하여 6개 고검 및 8개 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3)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운영

법화학, 마약, DNA, 문서 감정분야에 있어서 감정물의 접수에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발송까지의 세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는 감정정보관리 시스템은 감정절차의 연속성 및 무결성(chain of custody)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개발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다. 2018. 10. 29.에는 수사기관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하는 감정물에 대한 접수를 일반 우편물과는 별도로 NDFC에 신설된 중앙감정물 접수실에서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절차를 개편하였으며, 이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감정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을 개정(2018. 11. 1.)하여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운영 근거마련, 감정물 이동의 소급성을

관리하는 감정의뢰서 양식 개정, 감정물 채취 및 이동 중 발생한 훼손된 감정물에 대한 반려 조항을 강화하는 등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9. 10월 정확한 감정의뢰 방법 교육을 위해 '감정의뢰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검찰방송 온라인 교육자료에 게시하였다.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신설에 따른 감정의뢰 절차의 변화 및 DNA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DNA감정 의뢰 시 감정물 확보부터 포장까지의 유의사항, 감정의뢰서를 작성하는 방법, 지문-DNA-법화학 공동 감정 의뢰 방법 등을 동영상 자료와 설명 자료로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감정물의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고 감정물의 채취 단계부터 감정 완료시까지 감정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등기 및 사송으로 중앙감정물접수실을 통해 접수되는 감정물(9개 분야 : 문서, 영상, 음성, 복원, 화재, DNA, 법화학, 모바일, 컴퓨터포렌식)은 2019년 2,243건, 2020년 3,552건, 2021년 3,963건, 2022년 3,996건, 2023년 4,482건, 2024년 5,477건으로 점차 증가하여 감정물 소급성 유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검찰업무 정보화

1) 검찰업무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

검찰업무 정보화를 위하여 1980년대부터 통합사건관리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2000년 「검찰정보화 장기발전계획(ISP)」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지식관리시스템(e-Pros), 검사실 수사정보시스템 등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검찰업무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수사 자료 등 중요 문서들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대전고·지검 등 6개청, 2017년 서울고검 등 10개청, 2018년 대구고·지검 등 13개청, 2019년 광주고·지검, 전주지검, 수원고·지검 등 5개청, 2020년 포항지청 1개청, 2021년 제주지검 등 12개청, 2022년 부산고·지검 등 3개청, 2023년 울산지검 등 5개청, 2024년 고양지청 등 4개청 1기록관에 망분리를 적용하여 총 61개청 1기록관에 대한 네트워크 망분리를 완료하였고, 향후 4년 내에 전국 67개 검찰청의 망분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장비 및 전화교환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대검찰청 등 5개청, 2008년 춘천지검 등 6개청, 2009년 대구고·지검 등 5개청, 2010년 서울동부지검 등 6개청, 2011년 대전고·지검 등 9개청, 2012년 서울남부지검 등 5개청, 2013년 김천지청 등 3개청, 2014년 서울고·지검 등 2개청, 2015년 창원지검 1개청, 2017년 천안지청 등 2개청, 2019년 수원고·지검 등 5개청, 2020년 인천지검 등 2개청, 2021년

서울서부지검 등 8개청, 2022년 군산지청 등 10개청, 2024년 춘천지검 등 8개청 에 대한 정보통신 인프라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검찰 전화교환기 성능 개선 및 보안 강화를 위해 IP교환기 OS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에는 대검찰청 등 48개청에 대한 IP교환기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은 대검찰청 1개 청에 대한 IPT 고도화 및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추진하였다.

검찰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향후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 및 신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검찰 정보통신망의 대역폭을 확대하였고, 각 고검의 관내 지청 정보통신망을 이중화 구성하여 네트워크 장애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보유출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대용량 자료 임시저장소(1인 20GB)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자료저장 용량을 1인 40GB로 확대하였다.

2016년 기존 기계식 팩스의 자료 유실·훼손 방지와 팩스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대검찰청 등 21개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등 44개청을 추가하여 전국 65개 검찰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8년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팩시스템 이중화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 수원고검 개청, 2022년 남양주지청 개청에 따라 전국 67개 검찰청에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검찰 지식의 효율적인 축적과 협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차세대 검찰 지식포털을 2014년 구축하고, 검찰 지식 백과사전인 프로스피디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보다 효율적인 지식생산 및 활용을 위해 2018년 e-PROS 내 지식저장고와 프로스피디아를 일원화하였다.

2019년 검사 전문분야 개편에 따른 관련 기능을 개선하였고, '프로스피디아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로 도출된 개선방안 및 실행과제를 토대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통합검색의 정확도 향상 및 결과 화면 개선, e-PROS 메인 메뉴 정비, 사용자 화면 개선, 훈령·예규/ 지침·지시/매뉴얼 메뉴 통합 등을 통해 지식의 효율적 사용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2023년 e-PROS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고, 지원 종료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벗어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와 호환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사용자가 손쉽게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전자문서관리 및 검찰정보시스템들 간의 연계 확장을 위해 2010년 검찰 자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른 문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2023년에는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웹 표준방식의 웹기안기를 도입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재구축하였으며, 기록관리기준표 체계를 적용하였다.

실시간으로 직원간 상호 업무공유 및 각종 업무시스템과의 연계로 신속한 정보전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 신기술이 적용된 검찰 메신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검찰 소통문화를 강화하였으며, 2019년 안정적인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안이 강화된 신규 전자우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정과제에 따라 ActiveX 제거 및 호환성 확보 등으로 사용자 편의기능을 보다 향상시켰다.

검찰은 전자정부법 등에 의거, 검찰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 행정전자서명시스템 및 사용자 조직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0년 검찰 행정전자서명시스템 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 등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여 재구축하였고, 현재 검찰 업무시스템 뿐만 아니라 타기관 제공 시스템까지 연계하여 검찰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사용자 업무 활용도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검찰청 홈페이지는 1996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2002년 전국 검찰청별 홈페이지 구축, 2005년 민원증명발급 서비스 제공, 2007년에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 등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2014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사전정보공표 대상 메뉴를 추가하였다. 2019년 대검찰청 등 전국 66개청 홈페이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 역사관체험관 홈페이지의 메뉴 및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하였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검찰청 대표 1301검찰콜센터 소개와 이용안내 메뉴,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견학안내 메뉴를 추가하였다. 2022년에는 남양주지청 개청에 따른 홈페이지를 추가 구축하였고, 연간 품질관리 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웹사이트 품질개선을 통하여, 웹 호환성·접근성·개방성을 강화하고 웹 표준 등을 준수하였으며, 11년(2014년~2024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차별 없는 이용환경 조성 및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다.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형 e-형사절차 구현을 목표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사 프로세스 348종, 재판 프로세스 260종, 집행 프로세스 380종 및 압수업무 등 기타 프로세스 34종 총 1,022종의 형사사법업무 프로세스를 수작업 기반 업무환경에서 전자적 업무 프로세스로 대체하고, 형사사법 문서 총 1,361종의 서식을 표준화하여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공통 코드 25종을 표준화하여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의 약 74개 접점을 대상으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약 48종의 민원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형사사건처리 진행상황조회 서비스, 재판서·통지서 조회, 벌과금 조회·납부 서비스 등 총 11종의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 서비스를 2010. 7월부터 개시하였다.

2008. 12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사업의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고, 법무부 장비 도입을 위한 4차 사업을 발주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각 기관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운영하되, 대국민서비스시스템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운영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9. 2월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9. 12. 2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 5.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7. 12.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전자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국민 통합포털 신설 등으로 검찰 사건처리 업무 효율화와 국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2011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안정성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조회 및 영장정보 조회 권한 부여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였고, DB접근제어 도입 및 사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발맞추어 팀제 수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 사건부 기능 개선, 직접경정 및 겸방 업무 시 검사실별 시스템 접속 방식 개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미제사건부 개선, 재기·이송 시 기록목록 및 증거목록이 연계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접 기록목록 등 편집·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개선, 영장집행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전자팩스 기능 향상, 공무원연금공단 연계를 통한 공무원 신분확인 자동화 기능 구현으로 공무원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신속한 통지, KICS에 입력한 출국규제 정보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연계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및 체포·구속통지서, 노역자유치집행 및 형집행통지서, 항고사건 처분결과통지 등 매년 송달건수가 많은 통지서 선정 후 우정사업본부와 연계하여 우편송달 업무를 전자화 처리, 적용법조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향상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판결문·결정문 검색기능을 개선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등 업무에 유용한 컨텐츠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벌금납부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납부내역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한 벌과금 수납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수기 입력으로 인한 과오납 등의 민원 및 사고 발생요소를 차단, 민원인의 민원서류 신청 시 수기 작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구술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에 기여하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지휘·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기능 구현, 주요사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 등 주요정보 통합검색 기능을 구축, 형사사건 및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관리시스템' 및 '강력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범죄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해 피해자지원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직관사건부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직관사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감인 소환 또는 검사 직접청구 구속영장 발부·기각 시 변호인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기능 구현,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 관련 기능 등 신설하였고, 민원 관련 시스템 장애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민원인 통지 장애예방체계를 구축, 벌과금 수배자의 납부사실을 인지하여 불법구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산형 인치 업무 개선, 피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처분결과 통지방식 개선, 특사경 송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노동부 송치사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유통함으로써 업무 전자화 및 절차 간소화에 기여하였다.

2021. 1. 1.부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서식 및 신설 제도에 따른 기능을 검찰 KICS에 신속히 반영하였고,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전자송달기능을 추가하여 사건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개선하였다.

피해자지원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메뉴를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자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사, 수사지휘, 공소제기·유지, 재판집행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전관예우' 등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여 변호사의 변론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활동 관련 절차를 시스템화 하였으며,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 수사'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부 개정(2019. 12.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특정경제사범 관리 대상 사건 관련 보고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게 개선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하여 이첩사건, 형의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기존 적용 중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28종 외에 추가로 항고사건결정결과통지서 등 총 44종에 대하여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는 등 업무투명성 확보 및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차별 해소에 기여하였다.

2022년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 관련 서식을 KICS 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재산형집행시스템에 벌금미납자에 대한 소환장 발송 등 소환절차를 도입하였고, 입국시 통보요청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집행시스템에 벌과금 관리 및 입국시통보 해제 사유 발생 시 알림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산형집행시스템에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피해자 환부대상사건 관리 기능을 도입하였다. 압수물관리시스템에 '압수물환부통지서' 및 '압수물본환부통지서' 전자송달 기능을 구축하여 압수물환부 관련 통지업무를 개선하였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잠정조치 등 검찰·경찰·법원 간 KICS로 연계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고, 국세 등 체납자 감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치 신청 관련 업무를 KICS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토교통부 철도특사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허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연계하여 형사사법 업무를 신속·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재수사요청 미이행을 송치사유로 추가하였고, 재수사 후 기록송부요청 및 관리 기능을 도입하였다.

2021. 12월부터 약 33개월 동안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등 형사사법 업무 혁신, 대국민 서비스 혁신, 미래지향 IT구조 개편을 위한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2024. 9월 차세대 KICS를 개통하였다. 차세대 KICS 구축으로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참고인은 원격 화상조사 기능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국민편의가 증대되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에 AI 기반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도입되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현장에서 즉시 업무처리 가능한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이 도입되었다.

3)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검찰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날로 지능화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기초하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91호, 2012. 1. 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12. 12월 검찰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완료하였고, 2013. 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검찰청 및 63개 일선청에(현재 66개청) 대한 사이버위협 정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검찰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관제를 통하여 대용량의 로그정보 수집 및 다양한 상관분석으로 각종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관리 능력을 강화하였다.

검찰정보시스템의 중요 업무자료 유출 예방을 위해 각종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 유해사이트차단, 스팸메일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킹메일의 유해성 분석·대응 및 네트워크와 전자우편을 통한 APT,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악성코드 유입 탐지 및 차단을 위한 악성행위탐지시스템 등 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보보호 교육(유용한 보안상식 웹툰 제작 e-PROS 게시판 등 게시) 12회, 가상의 악성메일을 이용한 해킹메일 모의훈련 6회 실시, 보안뉴스레터·보안권고문 등 최근 보안이슈를

e-PROS 게시판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는 등으로 사용자 정보보안 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3. 7월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정보보안을 주제로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유익한 '스마트폰 보안수칙', '정보보호 실천수칙', '랜섬웨어 피해예방 5대 수칙' 및 정보보안 웹툰 16편을 함께 수록한 '알고보면 쓸데있는 유용한 보안상식'을 발간, 전국 검찰청(민원실 포함)에는 책자로 제작·배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유관기관에는 웹진(webzine) 방식으로 제작·배포하여 해당 기관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점점 정교해지는 사이버위협에 맞서 검찰 및 행정기관의 정보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 12월 정책연구용역 사업인 「인공지능형(AI) 통합정보보안 관제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여 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 자동분석대응시스템(SOAR)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24년도에 침입방지시스템의 탐지정책 개발 및 보안 이슈 제공 등 예방활동 709건, 유해 의심사이트와 유해 의심 IP 차단 등 침해분석/대응활동 12,943건, 악성코드, 바이러스 감염 PC 탐지 등 침해탐지활동 239건의 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안전한 업무 환경 마련 및 사이버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의 정보보안 업무처리 기준인 「대검찰청 정보보호 기본지침」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최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예규를 새롭게 제정·시행하였다.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PC 해킹 차단, 악성코드 감염 방지,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 안전한 검찰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격의 양상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만큼 대담해지고 국민생활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피싱, 스미싱, 파밍에서부터 랜섬웨어, 비트코인, IoT공격 등 사이버범죄 수법 역시 한층 진화하고 있으며,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이버범죄자들이 급증하며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추진·관리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 11. 1. 대검찰청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한수원 대상 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2015. 2. 11. 과학수사부 출범과 함께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직제화 되었고,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조직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수사 필요분야 증가에 따른 일선청 수사역량 확대를 위하여 서울동부지검을 사이버범죄 수사 중점청으로 지정하여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사이버범죄는 해외 서버를 통해 경유하거나 공격하는 수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므로, 국가간 신속한 공조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세계 95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인 G7 24/7 High Tech Crime Network의 한국 접촉점으로서 국내 수사기관을 대표하여 국제공조 접촉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G7 24/7 Network를 통해 회원국들은 실시간 정보교환 및 변조·소멸되기 쉬운 사이버 증거보존 요청을 진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2019. 11월 사이버수사의 국제공조 다변화를 위해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 유로폴의 사이버범죄센터(EC3) 등을 방문하여 공조 강화에 힘써 왔으며, 특히 2019. 11. 2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허브(APC-HUB) 설립을 위해 대검찰청-월드뱅크-GFCE, 3자 MOU를 체결하였다. 후속 조치로 2020. 1. 9.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센터에 허브 사무국을 개소하여 대검은 허브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21년 허브 전문인력 채용, 허브 로고 제작, 허브 홈페이지 구축, 2022년 허브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2023년 허브 홈페이지 및 온라인교육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2022. 11. 1. ~ 4. 캄보디아,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관계자를 초청하여 제1회 APC-HUB 훈련세션 및 연례총회를 개최하였고 2023. 10. 31. ~ 11. 3. 제2회 APC-HUB 훈련세션 및 연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검찰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해 글로벌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보실 및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22. 10. 11. 오랜 숙원이었던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의향서를 유럽평의회에 제출하는데 기여하였고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협약 가입 절차에 참여 중이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관련 유관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첩보 협력은 물론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분석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주한 미 FBI, HSI(미 국토안보수사국) 협력관과 주기적인 공조 회의를 실시하여 사이버범죄 및 기술범죄 정보 교류 등 해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1. 12월에는 미 FBI와 긴밀히 협력하여 리플(Ripple) 가상화폐 피싱 사기 사건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환부함으로써 범죄 척결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기여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연구·개발로 구축된 악성코드시스템 THEMIS는 악성코드에 대한 추출, 분석, 범죄자 추적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구축 이후 고도화를 거듭하며 악성코드 제작·배포 사범 단속을 위한 검찰수사에 기여하였다.

2016년에는 일반 수사관도 IP주소, 도메인 등 사이버범죄자원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버수사지원시스템(Cybercrime Investigation System)'을 개발하여 일선청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가상화폐 지갑주소 소유 거래소를 식별하는 가상화폐주소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21년부터 국내 6개 거래소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해외 거래소까지 조회 범위를 확장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2019년에 불법 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웹 자동화 분석, 동영상 콘텐츠 특정점 추출 등) 개발에 착수하여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여 2024. 12월까지 426개의 피해자 영상이 올라온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의뢰 하였으며, SNS, 다크웹 등 불법촬영물의 유입경로가 다양화되고 추적 시스템을 회피하는 기술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시스템 자체 서버구축 및 불법동영상 수집사이트 범위 확장, 2023년 영상 비교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유포 정황 탐지 시간 단축 및 일별 정상탐지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검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사전 탐지하여 채증 및 차단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2013. 1월경에 자체 개발하여 2024. 12월까지 총 12,641건을 차단하였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종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성 검토 연구',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사이버범죄수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 수사직렬 신설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시장성장과 기술적 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추진위한 가상자산 부정거래 분석 및 추적 플랫폼 구축 ISP 수립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사이버범죄 수집정보의 증거화 방안', 2021년~2023년) 사업을 통해 '공개출처정보와 스냅샷 사이의 링크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공개출처정보 포렌식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을 특허등록(2023. 11. 7.)하였고 저작권등록(3건), 기술이전(DFT 1.3.2. 탑재) 등 큰 성과를 내었다.

또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유출 범죄 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IT 서비스 기반 기술유출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사이버범죄 사건 급증에 따른 신속한 보강수사와 전문적인 증거분석 및 공소유지 지원을 위해 일선 수사관 대상 사이버범죄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 2020. 8월 제1기 사이버수사 전문가 양성과정을 시작하여 매년 1회 전문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들 대상 가상자산 추적, 데이터분석, 침해사고 조사 등 각 분야 심화 교육을 통해 최신 수사기법을 습득하여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기술유출범죄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적극 가동하여,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보 공유, 첩보 수집, 수사결과 정책반영, 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하였다.

검찰은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법집행분과(대검, 특허청, 관세청, 해경청, 경찰청, 국정원)를 주도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핫라인을 구축하여 '정보·수사기관', '수사기관 상호' 간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one team)를 구축하였다.

법집행분과 참여기관 외 기술유출 유관기관(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방사청, 방첩사, KISA)과의 협력체계 구축하여 각 기관에서 생성되는 기술탈취 정보를 일선 검찰청과 연계하여 혐의 입증부터 수사 및 기소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술유출 정보협의회를 추진하였다.

해외공조를 위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산업보안국(BIS)·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한·미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양국 수사사례 공유 및 기관별 협업 가능한 분야를 논의하여 한·미 정보 공유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내 법제·제도 개선을 통한 기술유출범죄의 대응을 위하여 미국의 수사 및 재판제도를 분석하고,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하여 美 법제를 벤치마킹한 핵심기술 유출 대응 강화방안을 작성하였다.

정책연구용역 '한·미간 기술보호 관련 법제 비교, 미 벤치마킹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주해, 국내외 기술보호 관련 정책·제도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검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한·미 기술보호 관련 협정 및 한·미 라운드 테이블 회의 협의의제 선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검찰청과 중기부는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협업하여, 중기부가 기술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신고하면 관할 검찰청에 배당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중기부의 손해액 산정 결과를 검찰 구형에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보호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관기관과 양형기준 관련 세미나·간담회 및 정책연구용역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등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하여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 2024. 3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을 상향시켰다.

위와 같이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기술유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술유출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힘쓰고 있다.

자.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최근 들어 특허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부는 특허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최신 감정·분석기법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법과학분석과는 현재까지 문서감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이용한 유사 글자 추출 방법 및 장치」(2024. 3월) 등 3건, 음질특성을 이용한 화자인식장치 및 방법」(2017. 11월) 등 4건, 영상분석 분야에서 「차량의 번호판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2023. 1월) 등 2건, 멀티미디어 복원 분야에서 「FAT32를 기반으로 하는 삭제 파일의 메타데이터 복구 장치 및 그 방법」(2022. 5월) 등 6건, 영상녹화분야에서는 영상 녹화 조사 시스템(2011. 10월)을 특허 등록하였고,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2010. 2월)와 컴팩트디스크용 라벨지(2010. 3월)를 디자인 등록하였다.

심리분석 분야에서는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 Polygraph Management System)(2015. 10월)을 저작권 등록하였고, 피검사자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뇌파분석 방법 및 그 장치(2017. 11월)를 특허 등록하였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법화학감정 분야는 2008년 이후 2024년까지 20건의 특허를 등록하였다. 최근 5년 간 법화학실은 GC-MS 주입구 유도체화를 이용한 대마 대사체 분석 방법(2020. 7월), 메트암페타민의 제조방법을 추정하는 방법(2020. 12월), 크로마토그램 이미지 유사도 분석방법 및 시스템(2023. 3월) 및 온라인 마이크로고체상추출법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이 적용된 대마 대사체 자동화 분석방법(2023. 10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또한 2021. 1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나 성범죄에 악용 빈도가 높은 약물인 졸피뎀에 대한 대사체 성분에 대해 세계 최초로 모발 분석법을 개발함으로써 감정기간을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실효성 있는 범죄수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2. 3월 알코올의존증 치료약물 소변분석법을 국제학술지 게재하였고 이어서 5월 알코올의존증 치료약물 복용 확인을 위한 측정값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2022. 6월 마약지문감정 크로마토그램 이미지 유사도 분석방법 및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였고, 2022. 9월 마약류 분석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미지물질에 대한 신종 마약류 여부를 판별하고 화학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2022. 12월 대마복용 확인을 위한 소변 중 대마 대사체 자동화 분석법을 개발하여 감정에 적용하였다. 2023. 10월 암페타민 함량분석의 측정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R프로그램으로 몬테카를로법을 구현하였고, 소변 시료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크레아티닌 농도 및 색도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2024. 1월 코카인 투약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발 분석법을 개발하여 실무 적용하였다.

대량의 마약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 마약원산지 국가의 감정기관들과 마약 포렌식 정보공유를 할 필요가 증가하여, 2024년부터 '아시아·태평양 마약포렌식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아·태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급증하는 신규 원료물질을 기반으로 밀조되는 합성마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인 '메트암페타민 시료에 함유된 불순물의 동정 및 원료-제조법 특이 불순물 확인' 연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후속 과제인 '고성능 분석장비(GC/LC-MS/MS), 계량분석 연계기반 마약지문 감정기법 고도화 및 글로벌 프로파일링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합성마약의 불순물 분석 프로파일 등 마약 포렌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외 서로 다른 지역에서 압수한 대량유통 마약범죄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DNA-DB 운영 및 DNA감정 분야에서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STR 유전자들로 구성된 콰드루플렉스 피씨알시스템(Quadruplex PCR system)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00. 10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16개의 짧은 반복 단위 유전좌위들 및 성염색체 유전좌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11. 1월), 체액식별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체액 식별방법(2012. 12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분석대상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4. 10월), miRNA를 이용한 체액 식별용 조성물·키트 및 체액 식별방법(2014. 10월), DNA메틸화 마커를 이용한 체액식별방법·체액 식별용 조성물 및 키트방법(2014. 11월), NGS기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5. 6월), 마약성 양귀비류의 판별방법(2015. 9월)을 특허등록 하였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인간객체의 확장 상염색체 STR분석방법 (2015. 10월), 인간객체 염색체 상의 STR분석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분석키트(2015. 10월)를 특허 등록하였으며, STR 유전자와의 분별 선행 증폭을 통한 유전자감식 방법(2015. 7월)을 특허 출원하였다. 또한 법과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시도된 생물종 고유의 DNA바코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생물 디엔에이 바코드 수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그램 (2014. 6월)을 저작권 등록하였고, 저명한 국제학술논문지인 Electrophoresis에 한국인에 대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를 활용한 STR분석 결과가 게재 되었다(2018. 8월).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을 위해 자체시험연구를 진행하였고 과학수사학회지에 논문 'EuroForMix를 이용한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연구'를 발표하였다(2019. 9월).

2022. 4월에는 '마약성과 비마약성 대마의 식별을 위한 칸나비노이드 생합성 유전자 유래 분자마커 및 이의 용도' 1건, 신속한 증거물 수집 및 교차 오염 방지능이 우수한 핀셋 등 2건, 신속한 증거물 수집 및 교차 오염 방지능이 우수한 핀셋 캡 탈리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핀셋 1건을 특허등록 하였다.

2022. 9월에는 '포렌식 체액식별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였으며, 2022. 11월에는 미생물 메타게놈 분석을 통한 타액흔 판별용 미생물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타액흔 판별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다.

DNA감정 관련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을 통해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3건(유전적 거리 기반 방식을 이용한 친족관계 분석 방법, 물리적 위치 기반 방식을 이용한 친족관계 분석 방법, 물리적 위치 및 기준값을 이용한 친족관계 분석 방법)을 등록하였고(2023. 8월), 과학수사학회지에 논문 '현장감정물 시료의 체액흔 확인을 위한 상용화키트의 유효성 평가'를 게재하였다(2023. 9월).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자체시험연구 관련 저작권 2건 'seq2pattern (단염기반복서열 패턴추출분류)(2023. 3월) 및 seq2pattern (식투패턴)(버전 2.2.0)(2023. 11월)'을 등록하였다. 또한, 법생물 감정 관련 특허 '미생물 메타게놈 분석을 통한 타액흔 판별용 미생물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타액흔 판별 방법(제10-2022-0160582)'을 등록하였고(2023. 6월), '체액 식별 모델 구축 장치 및 방법과 체액 식별 모델을 이용한 체액 식별 장치 및 방법(2023. 3월)'을 특허 출원하였다. 자체시험연구 관련 저작권 2건('seq2pattern(식투패턴)(버전 3.2.0, 2024. 12월), 포렌식프로(버전1.1.0, 2024. 12월)을 등록하였으며, 형사사법R&D 연구 결과물[Y염색체 DNA메틸화를 이용한 남성 나이 추정법의 개발(2024. 1월), 조직 특이적 DNA메틸화를 이용한 장기조직 식별법의 개발(2024. 1월)]에 대한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

디지털수사과는 암호분석 분야에서 다수의 암호설정 파일에 대하여 암호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는 '다수의 이기종 암호파일에 대한 자동화된 패스워드 해제시스템 및 방법' (2011. 12월), '착발신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통화 내역 추출-추적 시스템 및 그 방법'(2013. 3월), '디지털 증거 분석시스템 및 그 방법'(2013. 7월), '디지털 증거 수집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2013. 11월), 문서의 암호를 해독하는 'ASIC 칩을 이용한 암호 탐색 장치'(2016. 4월)를 발명하여 특허 등록,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문서 파일의 포렌식 분석 방법 및 시스템'(2014. 3월), 이메일, 전자결재, 회계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5. 8월)과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 및 장치'(2015. 12월)를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획득장치 및 방법'(2015. 10월)을,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Mysql MyISAM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9월), 'Mysql INNODB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10월),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부분 데이터 획득 장치 및 방법'(2017. 10월), 인공지능비서 서비스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써 '클라우드 기반의 IoT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장치 및 방법'(2020. 9월)을 발명하여 특허 등록하였다.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공공형사과 검사 박상환

가. 추진배경

2024년 법무·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테러 및 출입국 범죄 엄정 대처

국내에서는 국제 테러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테러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을 모집하거나 송금한 국내체류 외국인 2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되었고(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2024. 12월까지 구속 기소 17명, 불구속 기소 2명 등 총 19명 사법처리), 테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미국 등 2개국과 국제 형사사법공조 2건을 이행하는 등 테러위협 제거 및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무사증 입국 후 취업 등을 위해 신분증 위조하여 제주도를 이탈하려고 한 외국인 및 알선브로커 13명을 구속 기소하여 이 중 12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1명 재판 중)되는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등 수사

北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된 후 ○○노총에 침투하여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北 공작원과 해외 접선·비밀 교신 등을 통해 간첩행위를 하는 등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하여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노총 전·현직 핵심 간부 3명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北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후, 4년간 충북 지역에서 암약하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간첩행위를 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4명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北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 금융기관 해킹을 위해 알아낸 정보를 北 공작원들에게 제공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5명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게 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버스를 절취, 통일대교 남문초소의 바리케이드를 충돌하고 통제보호구역 진입 후 통일대교 북문 통과하여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 구속 기소,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군인에게 '암구호

(군사Ⅲ비밀)사진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사진을 전송 받은 불법 대부업자 3명을 구속 기소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을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응하여 내실 있는 국가안보 수사체계를 운영한 결과 2024년 총 38명의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입건하고 그 중 6명을 기소(구속기소 1명)하였다.

라. 인권보장 철저

안보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심야조사 자제, 영상녹화 활용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진술증거 확보 시에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한편 2024. 1월 개정 국가정보원법 시행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국정원에서 장기 내사 진행한 사건을 점검하여, 실질적 수사 활동이 진행된 사건은 입건 후 송치하고 법령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지휘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였다.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공공형사과 검사 박상환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17년부터 과거사 재심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인권침해 등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발굴하여 직권재심을 지속적으로 청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다.

나. 지속적 직권재심 청구

2017년 이후 직권재심 및 처분변경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심청구되지 않은 183명에 대해 추가로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183명이 무죄 선고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62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9. 5. 28. 귀환한 선박 23척의 납북귀환어부 중 78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78명 전원 무죄 선고되었고, 1972. 9. 7. 속초항으로 귀환한 선박 7척의 납북귀환어부 103명에 대한 직권재심청구 등을 검토하여 2024. 12. 31.까지 7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완료하였다.

또한 제주4·3사건 합동수행단 출범 후 2024. 12. 31.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1,70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1,660명이 무죄 선고되었고, 일반재판 수형인 26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201명이 무죄 선고되는 등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였다.

다. 진실규명 및 인권회복 노력

직권 재심 사건 외에 당사자 청구 재심 사건 또한 공소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재심개시 의견을 개진하고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불법구금 등 적법절차 미준수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구형하고, 상소권 역시 적정하게 행사하는 등으로 진실규명과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공공형사과 검사 이웅희

가. 추진배경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 67%를 기록한 선거였다. 높은 투표 참여 열기로 역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중 가장 많은 투표자 수인 92,923명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사전투표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된 이후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인 31.3%를 기록했다. 또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 간 선관위 신고, 고소·고발이 증가하여 과열 양상을 보였으며, 야당 대표를 피습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선거폭력·방해사범이 크게 늘었고, SNS 등 사이버공간 내 정치활동이 과열화되어, 선거 분위기가 혼탁 양상을 보였다.

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노력

이에 검찰은 2024. 2. 5.「제22대 총선 대비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 관련 폭력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이를 위해 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②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③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제11개정판'을 발간하여 전국청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4대 중점 단속대상을 비롯한 선거범죄 수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다. 수사성과 분석 및 선거범죄 적극 대처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입건인원은 7.9%(2,874명→ 3,101명) 증가, 구속인원은 63.9%(36명→ 13명) 감소하였고,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818명, 28.5%→ 1,107명, 35.7%)과 ▲선거폭력·방해사범(244명, 8.5%→ 364명, 11.7%)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당선자는 152명을 입건하여 그중 14명을 기소하였다. 또한 고소·고발에 의한 입건 인원은 2,374명(전체 입건자의 76.6%)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74명, 전체 입건자의 72.2%)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가 제한됨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인원은 43명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168명) 대비 급감하였다.

| 표 2-37 | 역대 국회의원선거 입건 및 처리 현황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 ( )는 차지 비율]

구분	입건(구속)	처리			수사 중
		소 계	기소(기소율)	불기소	
제22대 총선	3,101 (13)	3,087	1,019 (32.9%)	2,068	14
제21대 총선	2,874 (36)	2,852	1,154 (40.2%)	1,698	22
제20대 총선	3,176 (114)	3,176	1,430 (45.0%)	1,746	0

| 표 2-38 | 역대 국회의원선거 범죄유형별 발생(입건) 현황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 ( )는 차지 비율]

구분	합계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금품선거	선거폭력·방해	공무원·단체	기타
제22대	3,101	1,107 (35.7%)	384 (12.4%)	364 (11.7%)	90 (2.9%)	1,156 (37.3%)
제21대	2,874	818 (28.5%)	492 (17.1%)	244 (8.5%)	70 (2.4%)	1,250 (43.5%)
제20대	3,176	1,150 (36.2%)	656 (20.6%)	111 (3.5%)	139 (4.4%)	1,120 (35.3%)
제19대	2,544	655 (25.7%)	828 (32.6%)	77 (3.0%)	87 (3.4%)	897 (35.3%)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건이 증가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되어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하였다.

반면, ▲금품선거사범(492명, 17.1%→ 384명, 12.4%)의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방과 확산 방지에 주력하였고,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였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특별수사팀을 구성, 엄정하게 수사하여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고, 1심 및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하였다.

또한 검찰은 중요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서를 개정·발간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공공형사과 검사 이수영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24년에도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범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중대재해 사범을 엄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을 최초로 구속기소 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법무·검찰은 2022. 10월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시행함으로써, 재산관계 조사를 통해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2024. 1월 ~ 12월 9명 구속)하고, 소액 임금이라도 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2024. 1월 ~ 12월 2,790명)하는 등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기존 대형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에 친화적인 他 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여 570여명을 탈퇴하게 하는 등 유명 프랜차이즈 제빵 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면밀한 수사를 통해 주범인 대표이사 및 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도모하였다.

1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내 전지 연쇄폭발에 따른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노동청과 협력하여 신속한 초동수사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업체대표 및 본부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74건 160명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수사역량 강화 노력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범죄성립요건 등 기본적인 이론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제 발생한 주요사건 처분례와

법원 판결례 등을 재해 유형별로 분석하여 '중대산업재해 쟁점 및 수사사례 책자' 제작을 계획하여 중대재해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청에서 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무협의회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초동수사, 효율적 증거수집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근로감독관 교육 지원 확대 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인 안착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공공형사과 검사 이수영

가. 추진경과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집회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나. 불법폭력집회·시위 엄정대응

노동·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권리 주장과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찰병력이 출동한 주요 집회·시위 건수는 매년 1만 건 이상이며, 2024년 불법폭력 집회·시위자 4명을 구속하였다. 향후에도 불법·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집회에는 엄정히 대응하여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표 2-39 | 최근 5년간 주요 집회·시위 추이 (출처 : 경찰청)

(단위 :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주요 집회·시위	12,465	10,300	10,293	10,431	10,287

* 주요 집회·시위란 경력이 배치된 집회·시위를 말함

| 표 2-40 | 2024년 발생 주요사건 현황

구 분	주요사건	비 고
안보사범	• 안보 위협형 불법대부 범죄 사건	전주지검
	• 버스 절취 후 월북 시도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사건	고양지청
	• 무사증 입국 후 이탈하는 등 불법체류 범죄 사건	제주지검
선거사범	• 정당 대표 살인미수 사건	부산지검
	• 사전투표소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	인천지검, 울산지검
	• 지역구 공천 관련 금품수수 등 사건	창원지검
	• 차명 휴대전화 91대를 이용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응답 사건	서울북부지검
	•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축소 신고 및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원지검
노동·집단사범	• 1차 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사건	수원지검
	• SPC 그룹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중앙지검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국제형사과 검사 황익진

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국제수형자이송 관련 국제협력강화

1) 개요

오늘날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국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잠입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 범죄인인도조약, 1993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1년 유럽평의회(49개국)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대폭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2024. 7. 24.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2024. 10. 8.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범죄인인도조약은 81개국(발효 79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은 79개국(발효 78개국), 수형자이송조약은 76개국(발효 76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전 세계 주요국들과 해외도피 범죄인의 강제송환과 수사공조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국제사법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2) 범죄인인도

범죄인인도법은 1988. 8. 5.에 제정 및 발효되었다. 법무부는 주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도피국가별 업무협의 등 맞춤 대응, 인터폴 적색수배·여권무효화 제도 활용 등 실효성 있는 송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해외도피 범죄인송환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표 2-41 | 범죄인 송환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수	74	70	85	60	73	70	96	180

※ 범죄인인도, 강제추방, 자진입국 포함

3) 형사사법공조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1991. 3. 8.에 제정 및 1991. 4. 8.에 발효되었다. 법무부는 신속, 효율적인 공조를 위하여 국가별·지역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공조 대상국과는 상호 방문하여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담당자들 협의체(PC-OC)」,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등 공조 담당자들 간 다자회의를 통해 현안 협의 공조망을 구축하였다. 2024년에는 외국에 총 1,117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총 194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아 처리하였다.

※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는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에서 한국 법무부가 2020년부터 연 20억원을 지원하는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프로젝트(코리안 프로젝트)] 일환으로 설립·운영하는 동남아 지역 중심의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 공식·비공식 사법공조 교류·협력 플랫폼(2024. 12월 기준,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미국 포함 총 20개국 가입)

| 표 2-42 | 형사사법공조요청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한국 요청	240	320	375	420	741	1,043	1,065	1,117
외국 요청	160	195	235	202	285	207	206	194

4) 국제수형자이송

2005. 11월 국내에서 발효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부터 수형자이송이 실시되었고, 2024년에는 국내이송 심사대상자 8명 중 5명, 국외이송

심사대상자 16명 중 7명에 대하여 이송승인을 하였다. 한편 2021. 6. 5. 한-카자흐스탄 수형자이송조약, 2021. 9. 11. 한-키르기즈스탄 수형자이송조약, 2023. 1. 13. 한-파키스칸 수형자이송조약이 발효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총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 표 2-43 | 국제수형자 이송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도별	국내이송	국외이송
2017	1	4
2018	2	6
2019	6	3
2020	1	0
2021	1	0
2022	2	1
2023	2	3
2024	2	3

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엄정처리

1) 개요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은 1966. 7월 체결되어 1967. 2월부터 시행된 뒤, 1999. 2. 1. 및 2001. 1. 18.에 개정되었다. 2001. 1. 18.자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를 기소하는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를 받게 되었다. 또한 2012. 5. 23.에는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 개정을 통해 위 12개 중대범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미국 당국은 수사기간 중에도 대한민국의 구금인도요청 자제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2) 사건 처리 현황

SOFA 합의양해사항의 개정 이전에는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1.0% 미만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재판권 행사율이 증가하였고 2024년 재판권 행사율은 45.7%이다. 한편, 최근 SOFA 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387건, 2016년 388건, 2017년 374건, 2018년 351건,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2024년 635건이다.

| 표 2-44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통계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지위 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 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미군속 등		
				계	미측 관할	공소권 없음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15	건	387	370	265	17	138	110	122	78(70.9%)	200
	명	419	402	289	17	152	120	130	82(68.3%)	212
'16	건	388	339	293	49	170	74	95	68(91.9%)	163
	명	426	377	326	49	198	79	100	71(89.9%)	171
'17	건	374	340	265	34	153	78	109	58(74.4%)	167
	명	415	381	295	34	169	92	120	62(67.4%)	182
'18	건	351	312	296	39	186	71	55	69(97.1%)	124
	명	378	339	319	39	202	78	59	70(89.7%)	129
'19	건	444	417	395	27	212	156	49	106(67.9%)	155
	명	477	450	426	27	232	167	51	107(64.1%)	158
'20	건	541	508	392	33	231	128	149	69(54.0%)	218
	명	587	554	426	33	258	135	161	70(51.9%)	231
'21	건	457	428	313	29	161	123	144	95(77.2%)	239
	명	487	458	337	29	172	136	150	104(76.4%)	254
'22	건	521	509	355	12	153	190	166	132(69.4%)	182
	명	579	567	401	12	178	211	178	144(68.2%)	196
'23	건	599	587	432	12	143	277	167	145(52.3%)	312
	명	626	614	450	12	146	292	176	149(51.0%)	325
'24	건	635	630	453	5	142	306	182	140(45.7%)	322
	명	669	664	479	5	152	322	190	143(44.4%)	333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재판관할권 행사 실익이 없는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다. 불법수익환수를 위한 노력

부패범죄·경제범죄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 박탈로 부패행위에 대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1. 9. 27.「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 9. 27.부터 시행하였다. 종전에는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던 것을, 그 대상범죄 확대를 위해 법정형(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2021.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1. 4. 공포·시행되었다.

한편, 범죄수익환수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의 조직적 사기범행의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사단계에서 발견된 피해재산을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명령으로 보전하여 재산은닉을 막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없이도 수사기관이 동결해 놓은 재산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18. 11. 29. 국회에 제출하여 2019. 8. 2. 공포·시행되었다. 그리고, 관련 몰수·추징, 환부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환부 절차와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20. 11. 24. 공포·시행되었다.

라.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

우리나라는 2002. 11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비준함으로써, 동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의해 2003. 3월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후 2004. 5월 입법예고, 같은 해 6월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2006. 12월 국회에 이행입법안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고, 2007. 12. 21. 동법률이 공포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매년 개최되는 ICC 당사국총회에 참가하는 등 ICC와 교류하면서 I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왔다. 법무부는 2023. 11월 외교부, 대법원과 공동으로 ICC 재판소장, ICC부소추관, 동남아시아 8개 국가 대표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ICC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보편성 확대를 논의하는 등 ICC 회원국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이행

초국가적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처벌하기 위한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이 2003. 9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 12. 13. 위 협약 뿐 아니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총기류자제의정서는 2001. 10. 4. 서명하였다. 법무부는

협약 비준을 위하여 2010. 11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불법이민 관련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2.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 17. 공포, 2012. 4. 18. 시행되었다. 또한 2012. 8월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3. 4. 5.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이행입법의 시행에 따라 2013. 10월 법무부는 비준을 추진하여 2015. 5. 29.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5. 11. 5. UN에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따른 '범죄화 및 관할' 분야 이행평가 수검 절차 진행 중으로 2023년에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사무국에 서면조사 답변서 제출을 완료하는 등 충실히 수검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2024. 10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및 기조연설 등을 통해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UN부패방지협약' 이행

'UN부패방지협약'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부패방지 국제협약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 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05. 11월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국제범죄 분석기획단에 참여하였고 2006. 10월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반'을 발족하였다. 이후 동 협약 이행입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07.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8. 2월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협약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08. 4. 26. 비준·발효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2. 11. 20. 부패범죄피해자의 피해재산 복구절차를 구체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여 협약 이행의 의지를 피력하며 우리나라의 추진 제도 및 사례,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에 대한 동 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법제화 및 법집행' 분야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패예방 및 자산환수'에 대하여 이행평가 수검을 완료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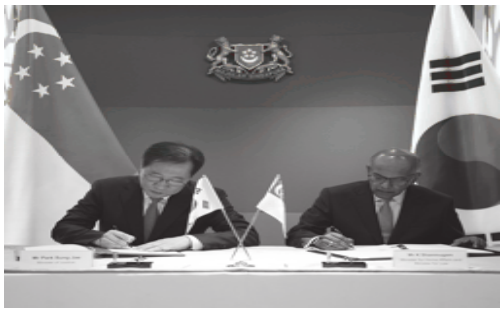
마. 국제협력성과

| 그림 2-67 | 국제협력성과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2024. 5월)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2024. 7월)



한-일 실무협의(2024. 7월)



한-미 실무협의(2024. 8월)

12. 형사공탁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법제과 검사 이정아

가. 추진배경

실무상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는 사례(소위 '기습공탁')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4. 7월 형사공탁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4. 9. 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같은 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4. 10. 16. 공포되어 2025. 1. 17. 시행될 예정이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이 감형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형사법제과 검사 이정아

가. 추진배경

최근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하여 수사·재판 지연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범죄가 조직화·국제화되는 한편, 사회 제 분야에 고도의 정보화가 진행되었음에도, 형사사법제도는 변화된 범죄환경이나 증거방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방면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2024. 7. 22.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나. 주요내용과 성과

헌법 및 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됨에 따라 수사 단계 피의자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 수사·재판 지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국민을 위한 최적의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인권보장·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그림 2-68 | 2024년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2024. 7. 22.)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촉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 기념촬영

14.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관련 「형법」 개정 추진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가. 추진배경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나 '살인예고' 등이 빈발하여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공백이 있거나 법정형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반적·구체적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4. 11. 13. 「형법」 개정안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였다. 2023. 8월 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 공중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였다.

2023. 8. 22. '묻지마식 강력범죄 대응·관리 강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하여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 당정협의회의 후속조치로 2023. 8. 28.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폭력행위 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24. 5. 30.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제21대 국회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여, 2024. 10. 2.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형법」상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의 장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같은 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제거하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공중안전 위해사범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5.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확대 관련 「형법」 개정 추진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가. 추진배경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적국을 위한 간첩죄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국가안보를 포함한 국익보호를 위하여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제21대 국회에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되어 2023. 3. 22., 6. 28., 9. 12. 법사위 1소위에서 심사되었으나 2023. 9월 이후에는 추가 논의 없이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주호영 의원이 2024. 6. 21.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비롯하여 간첩죄 대상을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8건 발의되었고, 2024. 11. 13. 법사위 1소위에 15건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며, 법원과 법무부과 협의안 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하여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형법」 제98조의2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국이나 적대 관계를 전제로 한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가 신설될 경우 국가안보를 비롯한 국익 보호를 증진할 것으로 보인다.

16.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형사법제과 검사 김동직

가. 추진배경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사회적 폐해는 실제 촬영물 등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미비하거나 법정형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 신설·법정형 상향 및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 특례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4. 9. 26.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4. 10. 16. 공포·시행되었다.

또한, 2024. 11. 14.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4. 12. 3. 공포되었다(2025. 6. 5. 시행 예정).

다. 주요내용과 성과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의 반포 등의 법정형과 같도록 상향하였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반포할 목적 없이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위장수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피의자를 용이하게 검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절 범죄예방업무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가.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개편

보호관찰과 서기관 김구회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1988. 12. 31. 제정·공포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9. 7. 1.부터 범법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작한 이래 「형법」 개정을 통해 1997. 1월에는 성인범까지 전면 확대되었다.

2009. 11. 2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법제화되어 사범별 맞춤형 보호관찰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취, 정신장애 상태에서 경미한 폭력범죄 또는 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및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실시하여 치료 여부를 형사사법 집행 과정으로 포섭하였고, 더 나아가 2018. 6월부터 치료감호 기간(3년)이 만료되어 출소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치료 중단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21. 10월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이 가능해지면서 스토킹 재범 방지 활동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 표 2-45 | 연도별 보호관찰 대상자

(단위 : 명)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 원	49,178	52,387	55,784	52,580	50,269	49,560	47,921	47,730	47,881	49,916

2) 추진내용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독립된 면담 공간 확보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천, 통영 등 총 2개 기관에서 독립면담실 13실을 추가 설치하여 2024년 기준 전국 51개 기관에서 총 279실의 독립면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범죄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월 2회 이상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재범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사례관리·공동출장 및 수사기관과 유기적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마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치료·재활 중심의 엄중한 관리를 실시하였다.

재범위험이 높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수시 또는 불시검사를 확대하여 재범억제 효과성을 제고하였으며, 재범위험 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입,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의 의사, 교수, 중독관리센터장 등 중독치료 전문가를 활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등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기소유예자에 대해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관찰관은 단약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전국 확대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마약범죄 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 투약 여부까지 검출이 가능한 23종의 진단 시약기로 검사 도구를 확대하였고, 보호직 직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등 마약범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가정폭력·마약·성폭력·스토킹·방화사범 등에 대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확인될 경우, 임상심리전문가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활용한 연계상담 및 병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등급으로 분류하여 밀착 지도감독하고,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 표 2-46 |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단위 : %)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재범률	7.6	7.9	7.8	7.2	7.2	7.3	6.4	6.0	6.7	6.4

| 그림 2-69 | 보호관찰 실시현장



출석면담



정신건강 선별검사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러한 다양한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24년에는 전년보다 0.3%p 낮은 6.4%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신질환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강화, 사범별 전담 보호관찰제 개편 및 지도감독 매뉴얼 개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활용 및 분류처우 적정성 제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면담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호관찰제도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조사 업무

보호관찰과 사무관 배현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조사제도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법원 및 검찰의 요구에 의해 보호관찰관이 범죄인의 인격, 환경에 관한 상황, 재범위험성의 양태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양형 및 처우 개별화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의 범행동기, 피해회복 여부, 직업, 가족사항,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여 통보한다.

보호관찰 조사제도는 1989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소년 판결전조사'와 석방 전 조사인 '환경조사'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 보호관찰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 범주도 넓어졌다.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성매매 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른 검사 결정전조사가 도입되었다.

2007년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청구전조사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2010년 이후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전조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 아동학대(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피해자(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전조사, 이행실태조사, 치료명령 판결전조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조사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귀주환경조사는 가출소 및 가석방 심사가 신청된 대상자 중 귀주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귀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표 2-47 | 조사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판결전조사	2,166	1,901	2,003	2,053	1,797	1,596	1,618	1,273	1,431	1,373	17,211
법원 결정전 조사	17,678	16,931	16,606	19,662	19,007	17,813	18,096	18,570	18,039	16,608	179,010
검사 결정전 조사	3,805	4,379	3,626	1,678	1,092	909	932	527	1,194	682	18,824
청구전조사	2,352	2,619	1,783	1,600	1,468	1,456	1,311	1,472	1,501	1,162	16,724
소급청구전 조사	119	79	86	39	52	37	33	18	12	20	495
환경조사	1,561	1,555	1,920	1,496	1,442	1,356	1,185	1,117	1,511	1,858	15,001

2) 평가 및 발전방향

조사업무는 제도 시행 후 근거 법령의 확대를 통해 매년 꾸준하게 업무가 증가하며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명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축적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에 따른 전자보석 결정전조사 시행, 스토킹사범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에 따른 스토킹사범 청구전조사 시행 등 조사업무 활용도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

한편, 청구전조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2013. 4월부터 운영해 온 27개 청구전조사 전담기관을 2019. 12월 21개로 조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조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대외신뢰도 제고의 일환으로 2010. 8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관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19년부터는 전문조사관 제도까지 시행함으로써 조사관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고 우수한 조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까지 989명의 조사관과 35명의 전문조사관을 선발하였으며, 전문조사관에게는 조사 담당 직원을 수퍼비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향후 조사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양질의 조사서 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보호관찰과 사무관 이상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소년법 대상자를 시작으로 1997년 성인범에게까지 확대되었다.

2009. 9월부터 생계곤란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0. 1월 부터는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010. 4월 법무부-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농촌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평균 약 10만8천 명, 총 162만여 명을 투입, 영농철 일손돕기, 영세농가 환경개선, 태풍·폭설·폭우 등 피해복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하였고, 2013. 5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집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8. 1월부터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되어 벌금형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봉사는 이처럼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 제도로서 범죄자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사회 재통합 기능을 수행하면서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표 2-48 | 사회봉사 실시사건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건 수	55,581	58,287	63,050	60,286	58,497	62,009	76,784	69,906	61,919	56,272

| 표 2-49 |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실적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연인원	103,511	106,864	97,188	76,118	65,712	78,015	188,214	185,781	145,247	122,914	1,169,564

| 표 2-50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실적

(단위 : 건, 명)

구 분 \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건수	2,992	1,974	1,667	1,626	1,113	1,330	1,367	1,191	13,260
연인원	26,338	16,591	13,855	13,849	20,304	22,283	14,685	11,529	139,434

| 표 2-51 | 사회봉사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봉사	접수	44,386	42,249	40,279	41,943	35,954	33,513	35,843	37,335
	실시	53,231	51,224	49,788	51,448	65,693	62,115	53,702	48,804
벌금 대체	접수	8,282	7,624	7,413	9,097	7,207	5,830	6,589	5,890
	실시	9,819	9,062	8,709	10,561	11,091	7,791	8,217	7,468
계	접수	52,668	49,873	47,692	51,040	43,161	39,343	42,432	43,225
	실시	63,050	60,286	58,497	62,009	76,784	69,906	61,919	56,272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봉사'는 중증장애인·고령자·저장강박증 가정의 청소·도배·장판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폭설·폭우·화재·지진 등 재해 피해지역 긴급지원,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진료·마사지·장수사진 촬영·이미용 봉사·학습봉사를 실시하는 특기집행 및 고독사 유류품 정리·민요공연·급식봉사·연탄배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연인원 283,139명, 영세·고령 농가 등 농촌일손 돕기에 연인원 122,914명 등 총 406,053명을 투입 지원하여 국민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법무부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봉사 전담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협력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집행의 내실화는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 집행 확대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고령인, 장애인, 영세 농가 등에 인력을 지원하고, 집중호우, 폭설 재난 피해복구와 농가 주거환경개선 등 농촌지원활동을 지속하면서도 공익과 배상 및 교육의 가치에 부합하고 대상자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그림 2-70 | 사회봉사 집행현장



반려해변 환경정화 사회봉사



저장강박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독거노인·노식인 무료급식 지원 사회봉사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라.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보호관찰과 사무관 배현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역할극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 7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소년에게 시행하였고 1997년 형법 개정에 따라 성인에게도 확대 실시하였다.

근거 법률의 확대에 따라 수강명령 부과의 양적 확대와 함께 폭력치료, 정신·심리치료 등 분야가 세분화되었고, 수강명령 집행의 효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9년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2011. 8월 '준법운전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교육 이수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도모하여 2010년 수강전문 직원 108명을 양성하였고,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성폭력·가정폭력·약물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등을 특별 채용해 전문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인의 재범예방에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0년 이수명령이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필요적으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성폭력·가정폭력·알코올·약물 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전문분야의 집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수원에 수강집행센터를 시범 운영한 후, 2013년 서울, 대구, 광주, 2014년 인천, 대전, 부산, 2017년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등 총 1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 판결 선고 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법률의 확대로 수강 분야와 대상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 표 2-52 | 수강명령 현황

(단위 : 건)

구 분 \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수강명령	45,459	41,884	42,408	50,357	68,422	72,805	61,040	57,127	439,502
이수명령	6,290	7,999	7,808	8,225	9,200	11,518	13,417	15,223	79,680
기소유예 등	27,564	20,897	19,173	16,139	18,471	22,919	21,522	19,059	165,744

2) 평가 및 발전방향

수강집행센터는 전문성과 강의역량을 겸비하고 제도 이해가 높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친범죄적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집행함으로써, 외부 강사의 형사절차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운영상 단점을 보완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수강·이수명령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도록 법률이 개정되는 등 수강명령의 활용범위가 확대되었고, 약물치료 수강명령의 효과성 및 집행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독전문가 등 협업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심화형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향후 수강명령 전문성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대상자의 사고와 행동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적응 지원을 도모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그림 2-71 | 수강명령 집행현장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2. 전자감독 등 고위험사범 관리

가. 전자감독 고위험사범에 대한 밀착 관리감독으로 국민 안전 강화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김현옥

전자감독제도는 법원 등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2008. 9. 1.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부착 대상이 성폭력사범으로 한정되었으나 2009년 미성년자유괴, 2010년 살인, 2014년 강도, 2023년 스토킹 사범으로 확대되었고, 2012. 12월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소급 부착 합헌 결정으로 대상자 수가 급증하였다.

2020. 8. 5.부터는 같은 해 2월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기존 4대 특정사범에 한정해 부착하였던 가석방 전자감독을 모든 가석방자로 확대하고,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전자감독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 표 2-53 | 연도말 전자감독대상자 현재원

(단위 :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재원	1,703	2,119	2,313	2,696	2,981	3,126	3,111	4,052	4,316	4,421	4,188	4,474

2019. 4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일명 조두순법)을 통해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해 일정기간 1:1 전담 보호관찰을 시행하여 고위험 사범에 대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및 매일 생활실태 점검 등 강화된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24시간 중단 없는 밀착 지도감독 및 경보상황 대응을 위해 2013년 신설된 전자감독 범죄예방팀(보호직 공무원, 무도실무관 각 1명으로 구성)은 신설 초기 26개 팀에서 현재는 58개 전 기관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및 전자장치 훼손 방지를 위해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자장치 훼손자 검거 합동 모의훈련 실시,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21. 9월부터 제한된 인력으로 전자감독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하였고,

관리역량이 우수한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였다.

성폭력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1 전자감독 확대, 주거침입형 범죄자에 대한 주택밀집구역 체류 시 선제적 대응, 자체 디지털분석센터 구축을 통한 채팅앱 등 SNS를 악용한 유인형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이 2023년 0.91%에서 2024년 0.57%로 크게 감소하였다.

| 표 2-54 |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동종 재범률

(단위 : 명,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재범자	30	48	53	58	66	83	55	41	46	24	30	18
재범률(%)	1.72	2.03	2.00	2.00	2.17	2.53	1.70	1.27	1.40	0.73	0.91	0.57

나. 수사팀 운영을 통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범죄 신속 엄정 대응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박지훈

2020.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으로 2021. 6월부터는 전자장치 훼손범죄,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수사하던 것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1. 8월 전자장치 훼손 전후 두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021. 10. 12.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수사팀을 신설, 2022. 7월 18개팀으로 수사팀을 확대 운영하여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특사경 업무가 분리되어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파악하고, 위반 시 현장출동을 통해 현행범체포 등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수사팀 도입 후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송치 기간은 1/2* 수준,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검거 시간은 1/4 수준**으로 단축되었으며 이전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무했으나 수사팀 설치 후 연평균 129건을 실시하는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 평균 34일 → 17일

** 평균 73.5시간 → 18.5시간

다. 전자장치 및 시스템 고도화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한상경

전자감독에 사용되는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 전자감독대상자의 발목에 부착하므로 '전자발찌'라고 칭하기도 한다. 전자장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개선되어야할 사항들이 나타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장치 훼손 방지 등 내구성 강화, 위치측정 기능향상, 측위방식의 다각화, 충격 및 임의분리 감지 기능 탑재 등 전자장치의 고도화가 지속 추진되고 있다.

지속적인 전자장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등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훼손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 현장검거가 가능하도록 전자장치의 훼손 방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훼손 욕구 억제를 위해 장치의 외형에 금속프레임을 적용한 '강화형 전자장치'를 개발하였다. 강화형 전자장치는 2023년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4년 460대를 현장에 보급하여 훼손 고위험대상자 130명에게 부착 중이며, 그 결과 훼손사건이 2024년 3건으로 2023년(9건)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아울러, 기존 보급형 장치보다 크기와 무게는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훼손이 어렵도록 절단 저항력을 강화하고 성능이 향상된 전자장치를 2024년 12월 개발하여 2025년 상반기 시범운영이 진행중이다.

전자감독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만 확인 가능하므로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등 긴급상황 시 현장출동 외에 현장 확인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자감독 시스템과 지자체 CCTV의 연계사업을 추진하였다. 2024년 기준 서울, 인천 등 13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활용되고 있고, 보호관찰관이 출동 차량안에서 현장상황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현장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훼손 사건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공조 시 기존에는 유선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실시간 모바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경찰에게 인상착의, 위치정보 등 대상자를 식별하여 검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전자감독대상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 1월부터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되었고,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

2024. 1. 12.부터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단 한 건도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2024. 12월에는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도 휴대전화기를 통해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라. 성충동 약물치료 안정적 집행

치료처우과 사무관 반기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호르몬 치료제)을 주사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 증가와 조두순, 김수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10.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011. 7월 시행).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전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1. 7월 제도 시행 이후 2024. 12월까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판·결정 현황은 총 115건으로, 이중 30건(검사 청구 73건, 기각 42건, 미결 1건)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고 85건은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최초 집행은 2012. 5. 30. 시행(치료감호심의위원회 2012. 5. 21. 결정)되었고, 2024. 12월까지 총 94건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63건이 집행 종료되었다. 2024년 성충동 약물치료 개시 사건은 13건이며, 집행 인원은 총 31명이다.

| 표 2-55 | 연도말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집행인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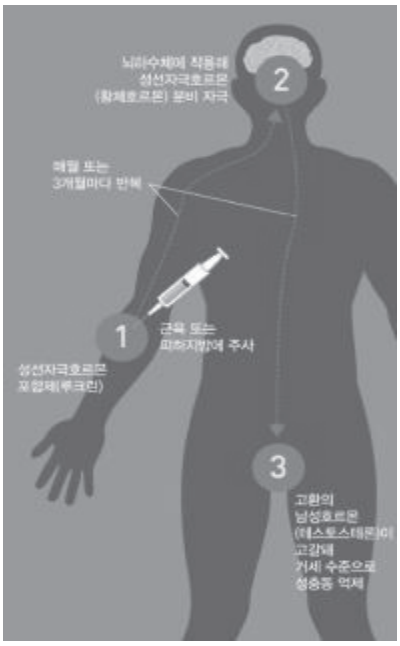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현재원	8	14	17	22	39	33	40	42	31	31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도시행 이후 총 94명을 집행하였고, 재범은 2021년 1명이 있으며,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경미한 사례 이외에 특이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기관의 의사, 심리치료 전문가,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관,

보호관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집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협의체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과 부작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치료 대상자의 안전과 치료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전문적·통합적 처우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72 |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



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체계적 관리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보호사무관 김병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등록정보 중 일부를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에 공개·고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2011. 4월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업무가 확대되면서 법무부에서 성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를 실시하였고, 2013.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업무는 법무부,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로 운영 주체가 재편되었고 등록 대상 성범죄도 확대되었다.

법무부에서 등록·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공개·고지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경찰 전산망을 통해 전달되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총 134,151건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2014년 대비 5.6배 증가) 중이고, 그 중 6,035건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5,856건이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 표 2-56 | 연도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건수

(단위 :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등록 건수	23,874	36,267	46,415	58,053	71,012	82,647	94,160	105,455	116,434	126,789	134,151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상정보 미제출자, 소재불명 대상자 또는 허위 정보 제출자 등에 대해 상시 자체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자(공개·고지)는 신상 등록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에 즉시 통보하여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게 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감독대상자는 실시간 확인 가능한 보호관찰 정보와 비교·검토하여 명백히 잘못된 거주지 정보는 법무부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히 공개정보에 반영함으로써 오(誤)정보가 공개·고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업무의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직원의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실무에 필요한 표준화된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담은 2021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일선 경찰관서 및 교정기관에 배포하였다. 2025년에는 2024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등 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업무매뉴얼을 현행화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그 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기초로 성범죄자 7만5천여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하였고, 2023년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상등록·관리사건 39,464건을 추가 분석한 「2023 성범죄백서」를 발간하였다. 성범죄백서에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함과 더불어 신상정보 제도 변천 과정, 업무절차, 외국제도 운영사례, 사회내 처우 현황 등의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의 전반적인 파악과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누적된 성범죄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형데이터를 DB화하여 종이기록물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항상 시키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2021. 10. 19.)됨에 따라 2025. 6월부터는 신상등록분야에서도

현행 '우편송달' 방식에서 '전자적 송달'로 개선될 예정으로 효율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림 2-73 | 신상정보등록제도 홍보



3. 감호제도 개선

가. 피치료감호자 처우 개선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정현

1) 추진배경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병실 당 병상 수를 축소하여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쾌적한 병동환경 제공 및 치료 효과 제고가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국립법무병원 신축병동 준공(2023. 11월)에 따라 기존 병동 일부를 신축병동으로 이전(2024. 4월), 최신 치료 환경을 제공하였고,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병동을 개설(2024. 8월)하였고 심신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감각통합치료실을 설치(2024. 9월)하였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훈련(바리스타, 정보기기 등)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미술, 캘리그라피 등)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3) 향후 추진계획

AI 기반 행동분석 시스템을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AI가 자동 인지하고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별로 적합한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발달장애인의 치료 효과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 의료 전문인력 확충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정현

1) 추진배경

국립법무병원은 살인 등 중범죄 정신질환자 관리, 격오지 근무,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2024. 12월 기준 의사 정원 20명 중 10.2명(충원율 51%)이 근무하며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118명을 담당하는 실정으로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문제이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무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한 의사 보수 인상(기준급 대비 200% ~ 400%), 보건복지부 업무 협의, 노후화된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국외연수 기회 확대, 법정신의학 연구소 운영 등 의사처우 개선 노력을 통해 의사 4명 채용, 치과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각 1명 배정, 정신과 전공의 2명을 확보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우수한 의료인력 채용을 위해 의사 연봉인상, 국외연수 기회 확대 등 의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스카웃 제도 및 채용 홍보 확대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 피보호감호자 수용시설 독립운영

치료처우과 사무관 위승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산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 특정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보호감호 선고를 통해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0. 12. 18.「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된 보호감호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 8. 4.자로「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구「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보호감호자는 원래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만 관리하였으나, 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2010년부터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간 협의로 천안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원화하여 관리하여 왔다.

보호감호 입소자 중 처우성과를 반영하여 자치 처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천안교도소로 이감하여 자치 처우를 실시하였으나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2월 천안교도소로 수용시설을 다시 일원화하여 2024. 12. 31. 현재 4명을 수용·관리 중에 있다.

| 그림 2-74 |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 생활복지관



생활관 입구 모습



생활관 내 독서실

| 표 2-57 | 피보호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집행인원	20	22	31	17	31	30	32	24	19	11

2) 평가 및 발전방향

독서실, 체력 단련실, 휴게실, 종교 집회실, 위탁 작업장 등 복지·종교·근로 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수용동에서 자치생활을 하면서 피보호감호자의 처우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 적응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력 배양

치료처우과 사무관 위승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피보호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도소 내 검정고시·학사고시 교과 과정을 설치하였고, 2016년 1명, 2018년 2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아울러 정수기 부품 조립 등 위탁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그림 2-75 | 위탁 작업장



2) 평가 및 발전방향

중단된 학업을 지속함으로서 지적 자존감을 향상시켰고, 위탁 작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위탁 작업을 발굴하여 피보호감호자의 실질적 사회정착금 마련에 기틀을 다지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치료처우과 사무관 위승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판사·검사·법무부 고위공무원·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치료감호, 보호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있다.

재범위험성이 낮아진 피치료감호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 치료감호 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의 갱생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종료자·가출소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하여 가종료·가출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보호감호를 다시 집행하게 함으로써 사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 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 치료감호 기간만료 시 보호관찰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며, 결정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62, 5-63, 5-64, 5-65〉와 같다.

치료감호 가종료의 경우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될 때 병과된 징역형 등의 형기와 상관없이 가종료를 허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22명이 가종료되었다.

장기 피치료감호자의 가종료 시 사회보호시설 연계를 확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위원들의 정신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2018. 12. 1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보호처분 전문가인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한편, 보호감호 가출소 인원은 2005. 8. 4.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호 수용자가 자연 감소되었고, 법 폐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부과 등 사회 내 통제장치 마련 후 적극적 가출소를 실시하여 2024년에는 4명이 가출소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가종료자 등의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증상악화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가종료를 취소하여 치료감호를 다시 집행하도록 하는 등 가종료자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였고, 향후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감호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보호를 위해 재범위험성, 치료경과, 사회복귀가능성 등 실질적 평가를 통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가. 범법 정신질환자 사법적 치료관리 강화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정현

1) 추진배경

정신질환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사건 발생으로 정신질환범죄자 관리강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보다 강화된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입원 등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였고, 치료명령 대상자의 치료약 복용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복약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1회 주사로 1~3개월 치료효과가 지속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적용을 확대하였다.

국립법무병원 출원자 사후관리를 위해 국립법무병원 및 전국 5개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최대 20년 동안 무상 외래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법무병원 대형병실 소규모화*사업을 통해 치료환경을 개선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 1월 병상 수 단계별 조정(8병상 → 6병상 이하)

3) 향후 추진계획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해 경찰,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실형을 선고 받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등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 치료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보호관찰과 서기관 김구회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6. 12월 개정「치료감호법」시행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사회 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더불어 경미한 범죄를 범한 정신질환자에게 검사가 정신과 상담·치료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대검예규 제873호를 제정하여 치료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6년 16명, 2017년 606명, 2018년 572명, 2019년 750명, 2020년 572명, 2021년 453명, 2022년 381명, 2023년 427명, 2024년 425명 등 총 4,202명이 치료명령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기관을 지정하여 임상치료 및 인지행동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표 2-58 | 치료명령 사건 접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3	2024
집행유예	446	584	473	338	343	350
선고유예	5	6	0	8	2	1
기소유예	121	160	99	107	82	74

2) 추진내용 및 성과

2017. 12월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주취·정신질환 이외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중독'을 치료명령 대상에 추가하였고,(2018. 6월 시행)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하는 등 치료명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대형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중독관리센터 등으로 치료기관을 확대한 결과 현재는 전국 247개의 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 내 사법적 치료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치료 및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조기 개입을 보다 확대하여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重)범죄로의 전이를 차단하는 한편 치료명령의 실효성 제고와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다. 「소년법」 상 7호 처분자 민간병원 치료 연계

소년보호과 사무관 양정훈

1) 추진배경

「소년법」상 7호 처분으로 소년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이나, 그간 민간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의료재활소년원이 7호 처분자를 전담하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2024. 4월부터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법원행정처는 수도권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법무부는 법원부터 병원까지 호송을 전담하기로 협의하였다. 2024. 7월 첫 호송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만 총 10명의 소년에 대해 민간병원의 치료를 연계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현재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는 민간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함께 신규 수탁기관 발굴·지정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의료재활소년원의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에 대한 치료 및 교정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가. 청소년 초기비행예방 강화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정경아

1) 추진배경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역사회 위기·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전문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초기비행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인구감소로 소년 비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점차 확산되는 마약범죄 등 초기비행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2022년 전국 19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에 관심을 가진 민간자원을 조직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생에 대한 멘토링 연계 등 초기비행소년에 대한 지속적 개입을 실시하여 교육생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초기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교육 참여 동기를 강화하고 저연령·성비행 등 개별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2023년 법무부 정책연구를 통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메타버스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23. 10월에는 초기비행 청소년 중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정신진단검사(K-SCL95)를 도입하여 고위험군에 대하여 맞춤형 처우방안 모색 등 초기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배양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 표 2-59 | 2024년 비행예방교육 밑 비행진단 실시 현황

(단위 : 명)

계	청소년 대안교육	보호자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법원 상담조사	심리검사
116,230	5,488	3,873	101,158	3,208	2,503

3) 평가 및 발전방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최근 청소년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도박,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박, 마약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질환·다문화 등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여 비행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개별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를 통한 비행원인 진단 기능을 강화하여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비행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 Wee센터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확대하는 등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 소년 보호관찰 지도감독 강화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이경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제도는 1989. 7. 1. 소년범을 대상으로 시작된 후 1997. 1월 성인범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성인 강력사범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7년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에 소년범죄예방팀이 신설되면서 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도감독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 이후 2022. 8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소년범죄예방팀 직제가 반영되어 소년에 특화된 전문 보호관찰 정책 수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표 2-60 | 연도별 소년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62,812	61,583	50,594	56,910	60,756
보호관찰	25,874	23,830	23,291	24,484	26,105
사회봉사	6,318	6,785	5,593	5,785	6,436
수강명령	19,605	21,404	12,184	14,489	16,316
조사	11,015	9,564	9,526	12,152	11,899

2) 추진내용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맞춤형 처우를 위해 2016. 9월 「소년대상자 정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DRAI-S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Static)」, 2018. 2월 「소년 대상자 동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DRAI-D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를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2021. 6월에는 기존 정적·동적 평가도구를 하나로 합쳐 「통합 소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DRAI-Ⅱ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Ⅱ)」를 개발하여 처우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질적인 처우에 이르기까지 소년 지도감독 전반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소년대상자 처우 및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통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정확도 및 왜곡 정도 등을 진단·평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비행원인에 맞는 '문제해결 중심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2022. 2월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소년 상담형 면담 전문교육'을 신설하고, 같은 해 11월 KICS의 지도감독 체계를 처우계획 점검 중심으로 개편하여 범죄원인별 맞춤형 처우계획 수립 및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다. 2023. 4월 "소년보호관찰 역량 강화 교육"에 이어 같은 해 11월 "소년지도감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현장경험, 지도감독 기법 등의 노하우를 직원들과 공유하였으며, 2024. 3월 소년 전담 보호관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년 보호관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소년 대상자의 학습권 및 가족의 수면권을 보호하는 등 친인권적이면서도 엄정한 집행을 위해 외출제한명령 집행감독 방식을 기존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에서 '스마트워치 형태의 재택 확인'으로 개선하였다.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 감독은 2022.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권역 5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전국 22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2023. 11월 스마트워치 장치의 소형화·경량화 등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킨 신형 감독 장치 개발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 본소 단위 보호관찰소에 우선 보급하였으며, 2025년에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하여 기존 음성감독 방식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소년사법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공감 및 관계회복의 '회복적사법' 이념을 적용하여 2018년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19년 '소년보호관찰 회복적사법 운영 매뉴얼' 개발 및 강사 양성을 통해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소년수강명령 회복적사법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27개 보호관찰소에서 회복적사법 수강명령을 집행하였다. 2021년 '소년선도위탁 회복적사법 패널회의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5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 운영하였고, 2022. 11월에는 서울보호관찰소에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2023년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전문성을 강화하여 회복적사법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2024년에는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을 기존 4회기에서 8회기로 확대하여 운영하며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과 담당교사를 1:1로 연계하는 교사멘토링 사업(2007년), 중·고졸 검정고시 학습권 지원(2009년), 농협기부금을 활용한 소년보호관찰 라포 형성 프로그램(2019년)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정신질환 치료·상담 지원, 콜코칭 상담지원, 조혼·미혼모 대상 생계비 및 양육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호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범죄 및 도박 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화대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가 연계 상담을 강화하였다. 또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실시, 눈높이 면담, 상담전문가 연계 등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표 2-61 |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단위 : %)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범률	13.5	12	12	13.2	12.6

3) 평가 및 발전방향

재범위험성에 기반한 소년 맞춤형 처우 및 지도감독을 통해 소년보호관찰 체계화, 기반확립 등 성과를 거두었다. 2024년에는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호 및 관계 회복 중심의 회복적 사법 확대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재범위험 평가체계 개편, 청소년 마약, 도박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독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 고위험군 소년대상자의 사회적응지원 확대 등의 정책 개발 및 현장 중심의 소년보호관찰 활동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박유원

1) 추진배경

법무부는 2017. 9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날로 흉포화·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 12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2018. 6월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85호)을 제정하였다.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에 따라 2018. 12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마련하고, 각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였으며, 1차 계획 만료 후 2024. 3월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였다.

* 법무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산림청

** '비행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및 '소년의 재범 방지'를 목표로, 5대 정책과제(조기개입, 교육 전문화, 재범방지, 관리시스템 구축, 비행예방 체계 개선)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립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24~2028)」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의 한계를 보완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향을 제안하고, 비행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비행예방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2차 기본계획의 목표인 '비행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및 '소년의 재범 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2024년에는 「2023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을 비롯하여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 전반의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변화된 환경에 따른 신종 비행에 대한 대책 및 전문 예방교육 확대 등의 정책과제를 설정하였고, 제7차 소년비행예방실무협의회 및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 3월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24~2028)」을 마련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제8차 소년비행예방실무협의회 및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거쳐 「2024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2024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은 5대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15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법무부는 소년비행 예방의 조기개입을 위해 마약류, 도박, 디지털범죄 등 초기개입이 필요한 비행소년에 대해 보호 및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소년 교정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소년범의 재범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상담·심리치료 연계, 직업훈련·진로체험 실시, 주거·생계지원,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외 소년비행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소년비행예방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였다.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도 「2024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확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지원, 청소년 마약사범 교육 강화 등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24~2028)」 및 「2024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효적인 소년비행예방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촉법소년 특성을 고려한 보호방안 마련', '초기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 활성화' 등 저연령 소년의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2025년에는 「2024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 부진 시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함으로써,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24~2028)」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가. 소년원생 재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소년보호과 사무관 남영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꾸준히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한식조리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및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의료재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표 2-62 |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2024년 소년원 교육과정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1942. 4. 20.	2000. 8. 30.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한식조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부산소년원 (부산오륜학교)	1947. 1. 18.	2000. 8. 31.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용접·제과제빵·헤어디자인)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대구소년원 (읍내중고등학교)	1945. 11. 21.	2000. 8. 31.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인성강화교육(커피바리스타)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분류심사
광주소년원 (광주고룡학교)	1946. 11. 7.	2000. 8. 31.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에너지설비) • 인성강화교육(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1967. 3. 25.	2000. 9. 1.	8호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남성 특수단기(8호 처분자) 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대전소년원 (대전대산학교)	1998. 7. 1.	2002. 3. 4.	7호 8호 9호 10호	• 의료·재활교육(7·9·10호) • 여성 특수단기(8호 처분자) 교육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청주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	1978. 7. 8.	2009. 7. 1.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제과제빵) • 인성강화교육(예술분장·커피바리스타)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	1963. 7. 2.	2000. 8. 30.	9호 10호	• 여성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피부미용·제과제빵)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춘천소년원 (춘천신촌학교)	1966. 4. 16.	2000. 9. 4.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 인성강화교육(그래픽디자인·디저트)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제주소년원 (제주한길학교)	1987. 11. 9.	2000. 8. 30.	8호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골프매니지먼트) • 제주지역 남성 특수단기(8호 처분자) 교육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2) 평가 및 발전방향

소년원생 개별처우 시스템을 개편하여 소년원 입원부터 출원까지의 과정에서 가정결손 분석, 정신질환자 선별, 개별처우 계획 수립 및 사회정착 지도 연계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는 등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근거로 소년원학교 재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년원학교 입원 초기부터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 정도를 파악하고, 기초학력 향상 학습지원 등 소년원학교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과 차별없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원 교정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통해 향후 소년원생 재범률 감소, 기초학력 증진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소년원생 수용환경 개선 등 인권처우 확대

소년보호과 사무관 최윤경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소년원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는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수용소년의 인권보호와 개별처우를 위해 1인실 사용 권장)에 따라 10~15인 규모의 대형 집단생활실을 4인 이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는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생활실 내 화장실·세면실 설치, 개인별 침대·책상 제공 등 수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24년까지 전국 8개 소년원(대구·광주·춘천·청주·전주·대전·안양·부산·서울)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춘천소년원 교육관 및 부대시설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림 2-76 |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



집단 생활실



4인 이하 소규모실



개방형 Hall식 생활관

이와 더불어 법원 위탁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위탁소년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여성 전용 소년분류심사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2025년 개청할 예정이다.

| 그림 2-77 | 생활실 리모델링



2) 평가 및 발전방향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과 함께 집단 생활실을 4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여 인권보호와 개별처우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소년원생의 정서적 안정과 비행학습 방지에 기여하였다. 이후에도 시설 리모델링이 미완료된 기관의 생활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비행 초기단계 위탁소년 비행원인진단 및 교육 강화

소년보호과 사무관 남영일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최근 20년 간 누범 청소년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져 왔다. 이에 따라 소년범죄자가 중대범죄자로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에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소년의 개별특성에 적합한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를 중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탁소년 전담 시설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전국에서 유일하며,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은 해당 지역 소년원이 분류심사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한편, 위탁소년에 대해 진단과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2022년에는 위기개입 중심의 위탁소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피해자 공감과 책임 있는 도덕적 인성 함양 등 초기비행단계 소년에게 적합한 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적·개인적 위기를 진단·개입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재범에 유의미한 통계적 예측력을 갖도록 하는 비행원인진단체계를 개발, 적용하여 분류심사 시 재범률 예측을 강화하였다. 2023년에는 위탁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촉법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약물남용 선별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도입 등 위탁소년 교육 및 비행예방 기능과 진단 기능을 강화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과학적인 비행원인진단과 전문적 인성교육 환경 조성, 위탁소년 전담 시설 확충을 통하여 위탁소년에 대한 위기 조기개입과 비행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진단이 가능하도록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위탁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교육과 분류심사, 생활지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보호정책과 사무관 김미경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개선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점 사항은 법무부 내부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의 회의 개최,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한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법체험 기관 '솔로몬로파크(대전, 부산, 광주)' 운영 및 전주솔로몬로파크 신설 추진 등이다.

나. 추진성과

1) 법교육 체계 구축

2005. 3월 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법교육 6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2006년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 7월 17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협력방안 등 법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2008. 6월「법교육지원법」시행 및 법교육위원회 구성을 통해 법교육 연구 및 추진 체계 구성을 마무리하였으며, 2009. 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법교육위원회를 총 28차례 개최하여 법교육 프로그램 개선사항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 표 2-63 | 법교육 6대 연구과제

법교육 6대 연구과제	① 국내·외 법교육 실태 점검 및 법교육 추진방향 ②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③ 법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방안 ④ 교사 등 법교육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⑤ 법조계, 법과대학 등 법교육 지원방안 ⑥ 평생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연계 방안

2)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2005. 9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생활과 법,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경제생활과 소비자, 범죄와 형사절차, 직장 생활과 근로자, 가정생활과 가족, 국가와 국민 생활의 영역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시작으로, 2005. 12월 대학생 및 시민 대상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06. 1월 법교육 프로그램 강사·교사용 지도서 '법은 내 친구', 2006. 4월 어린이용 법교육 교재인 '나는야 법짱'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대상을 확대하여 2012. 3월에 다문화가정 대상 'Fun Fun 대한민국의 법'과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우리법 바로알기', 2018년에는 일반 시민 대상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를 발간·배포 하였고, 2019년에는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해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수어영상도서로 개발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DREAM)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 4월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 직후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 및 전자책자(e-book)를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였고, 2021년에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개정판 '디지털 소통로(Law)Ⅱ'를 발간하였다. 2022. 10월에는 여러 아동학대 사례를 알리기 위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 안내책자 '아동행복지금바로(Law)'를 제작하였다.

| 표 2-64 | 대상별 법교육 교재

대 상	도서명(발간일)
중·고교생	청소년의 법과 생활('05.12./'07.2./'08.1./'10.3./'11.3./'13.3./'14.2./'16.3./'18.10./'19.10.),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09.7.),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회 교과서 200% 활용하기('10.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알고보니 든든한 축구비법('12.10.), 장난과 범죄사이('13.), 디지털 소통로 중·고등용('20.), 디지털소통로Ⅱ('21.10.)
대학생·시민	한국인의 법과 생활('05.12./'07.2./'08.2./'09.2./'10.2./'11.3./'13.3./'15.9./'17.9./'18.10,/'19.2./ '21.8.),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09.2.), 아뿔싸!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범죄('09.4.), 알면 힘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법률('10.6.), 축구 잘하는 법(法)('11.1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어르신을 위한 알면 알수록 좋은 법('12.8.), 희망을 만드는 법('13.9.), 보배야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줘(점자 및 음성도서)('13.9.),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18.10),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19.12./'21.6.), 아동행복지금바로('22. 10.)

대 상	도서명(발간일)
법교육 강사·교사	Law Educator Ⅰ·Ⅱ, 법은 내 친구('06.1.), 학교폭력예방 가이드북('08.3.), 학생자치법정 가이드북('08.5.), 학교폭력 OUT('09.12.),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활용한 수업지도안('12.1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안('12.6.), 강력범죄 예방 강의안('13.3.) 및 가해방지 강의안('13.10.), (한)법교육 종합 콘텐츠 DVD('13.10.), 쉽게 가르치는 우리헌법(중·고 사회용)('15.12.),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교재 및 리플릿('16.9.)
어린이	나는야 법짱(06.4.), 손오공 무법소탕기Ⅰ·Ⅱ('06.9.) 및 Ⅲ('11.6.), 함께하는 법이야기('07.11.), 법에게 물어봐('08.4.),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09.1.),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홍비홍시와 함께하는 소중한 나와 우리('12.11.), 우리 공주의 나를 사랑하는 법('13.3.), 헌법아! 놀자Ⅰ·Ⅱ('13.9.), 손오공 무법소탕기 Ⅳ('13.11.), 나는야! 법짱('13.12.), 내친구 LAWⅠ·Ⅱ('15.2.), 조선은 법치국가다('15.5.),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 및 일곱 난쟁이 집에도 규칙이 필요해('15.12.), 우리곁엔 헌법('16.7.), 생각이 자라나는 솔로몬의 학생법정('16.8), 교과서 속 법이야기('17.11.), 어린이로스쿨('19.5.), 디지털소통로 초·중등용('20.4.), 이야기로(Law)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①·②('21.9.)
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Fun Fun 대한민국의 법('12.3.), 우리법 바로알기('12.6.),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법세상 및 다문화 사회 청소년의 법과 생활('15.6.), 대한민국으로 온 청소년을 위한 우리법 이야기 초·중급('16.7.) 이민자 생활법률강연 소책자('20.6.)
장애인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 수어영상도서('19.12.)

3)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5년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006년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법교육 출장강연', '학생자치법정', 2009년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2010년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2011년 스포츠 법교육, 2014년 '헌법토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상생활 속 법교육 확대를 위해 2007년 '시민법률콘서트', 2013년 '시민로스쿨' 및 2013년 '법사랑학교', 2015. 12월부터 '유아법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 11월부터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를 도입해 법적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독서 활동을 결합한 유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블라인드 변호인 제도, 참관인 제도 등 학생인권의식 향상을 강화한 학생자치법교육 운영매뉴얼 4.0 개발·보급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그동안 실시해 왔던 각종 경연대회(생활법퀴즈, 모의재판, 헌법토론 등)가 과도한 경쟁으로 법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우려에 따라, 대회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중·고교생 법체험 캠프로 개편하였고, 2020년에는 법체험 캠프를 확장하여 법과 인권 체험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는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학생 대상 '로티즌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2023년에는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의 여름 법 체험 캠프와 월별 법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에 기여하였다.

또한,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출장강연형 프로그램 운영 등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 법교육 활성화를 도모했고, 국민들이 법교육 콘텐츠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법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법교육 누리집 '이로운 법'에 등록·개편하였다.

2022년에는 청소년의 초기 비행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대상 법교육을 강화하였고,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를 위한 법교육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23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마약 사용을 막기 위해 법교육에 마약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마약예방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실시하는 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예방 교육활동을 강화하였다.

2024년에는 마약예방 법교육 확대로 법교육 출장강연의 규모가 대폭 증가되어 전년대비 약 70% 추가 실시(2023년 3,782건 → 2024년 6,416건)하였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온라인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도박예방 법교육을 추가, 체험·활동형·모듈형 강의안 8종을 포함한 쇼츠, 포스터 등 다양한 도박예방 법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자료를 위기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법교육 및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4) 법교육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2006. 3월 법교육 수업모형 개발 등 청소년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사범대학)와 체결한 MOU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 2007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여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2009년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교육대학교, 준법풍토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MOU를 추진하였다.

또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부산 솔로몬로파크 건립 및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다.

| 표 2-65 | 연도별 MOU체결 현황

연 도	MOU체결 대상
200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 서울시립대학교(법정대학)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이화여자대학교
2009년	서울교육대학교, 대한변호사협회·동아일보, 법학전문대학원 6개교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성관관대)
2010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제주대, 경북대, 한양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2개교(충남대, 동아대)
2016년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야구위원회(KBO)

그 밖에 민간의 법교육 연구활동을 위해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법교육학회' 창립을 지원하였고, 법교육의 확산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역량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한국법교육센터, 청소년 희망재단, YES21청소년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법무법인 청파 등 민간기관 18개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였다.

5) 법 체험기관 '솔로몬로파크' 운영

2007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대전솔로몬로파크(법연수관, 법체험관)를 설립하였다.

2019년에는 노후화된 법체험관 전시 시설물 개선 및 후생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체험객의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2022년에는 법연수관 내 '해돌이 방송국'의 방송 설비 확장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법교육'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대국민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법연수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법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법체험관은 법역사관, 모의국회, 모의법정, 어린이 법짱마을 등으로 구성되어 생생한 법률 현장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증가하는 법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산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하였고, 헌법배움터, 선거체험관, 법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헌법배움터에 체험형 콘텐츠를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충청권(대전로파크), 영남권(부산로파크)과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고 호남권 법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3년 광주솔로몬로파크를 개관하여, 법과 인권을 주제로 조성한 법체험관과 최신 시설의 법연수관에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연계한 법의날 기념행사 및 인형극·연극 공연 등 각종 법문화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법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 그림 2-78 | 대전·부산·광주 솔로몬로파크 전경



대전솔로몬로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광주솔로몬로파크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24년에는 청소년의 마약사용, 도박문제 등 관련 범죄 확산방지를 위한 법교육 출장강연을 확대하였고, 도박예방 콘텐츠를 개발·배포하는 등 사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솔로몬로파크를 통해 법페스티벌 등 기획 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체험객을 발굴하였다. 또한, 법무부 전문 강사양성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고 마약·도박 예방 등 맞춤형 보수과정 운영을 통해 변화하는 법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청소년지도자 직무연수를 확대 운영하는 등 법교육 강사 및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통해 법교육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2025년에는 솔로몬로파크 관람객 만족도 및 법교육 효과 향상을 위해 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최신 경향을 적용한 체험전시물 개선과 내실 있는 법체험 강사 보수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법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해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지도 현장 직원에 대한 법교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보호정책과 사무관 홍송이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범죄는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발하는 기초 법질서 위반 사례를 찾아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생활 속에서 법질서를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던 활동들을 심화, 확대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2014년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기초 법질서 지키기', '안전법규 준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전국 지역공모를 거쳐 모두 33개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청년·대학생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형을 만들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저스티스 서포터스'를 조직하여 법질서 준수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지난 2008년 이후 2024년까지 약 3천4백 명 이상의 청년·대학생이 '저스티스 서포터스'의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14개 지역, 2015년 11개 지역에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사업 규모 확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의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법무부의 색채를 가미한 범죄예방 환경개선(법사랑타운)을 시작하였다.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더불어 주민공동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법사랑타운' 사업을 경기 안성과 전남 광양에 시범 실시하는 등 모두 12개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경기 광명 등 3개소 '법사랑타운'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 경기 남양주 등 5개소와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선정지역인 광주 남구 등 모두 13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경기 용인 등 7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협력지 경남 남해군 등 3개소,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부산

진구 등 7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협력지 전남 완도 등 3개소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경기 용인시 등 3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협력지 강원 삼척시 등 2개소에 지방자치단체 협력지 경기 안산시 등 2개소를 더한 총 7개소를 선정하여 중·장기 범죄예방 계획 및 기초설계안 등을 제공하고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경북 울진군 등 3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협력지 거제시 유교항 등 2개소, 지방자치단체 협력지 인천시 남동구 등 3개소를 더한 총 7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부산 등 3곳의 청소년시설에 비상벨·잠금장치 등 설치, 시설 관리자를 위한 긴급상황 대처 물품(호신용 경보기 등)을 제공하였으며, 위기청소년들에게는 범죄예방키트를 지원하였다.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등 3개소, 해양수산부(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협력지 전남 진도군 도명항 등 2개소, 지방자치단체 협력지 대전 서구 갈마동 등 4곳을 선정하여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환경설계 컨설팅 제공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였다.

2024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 등 4개소, 해양수산부(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협력지 강원 고성군 1개소, 지방자치단체 협력지 대구 남구 봉덕동 등 2개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2024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와 협업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등 2개소에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환경설계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코로나 등의 요인으로 2022년부터 실시하지 않은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재개하여 지역주민, 지자체 담당자 등 관계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추진성과

1)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2023년에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학생 및 청년으로 구성된 저스티스 서포터스 33개 팀, 153명이 실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캠페인 및 홍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아동학대·스토킹·사이버범죄·성범죄·학교폭력 예방 및 마약 퇴치 및 근절 등의 주제로 457회의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고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활동 1,204회를 실시하였다.

2024년에도 저스티스 서포터스 34개팀, 151명의 대학생들이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24년에는 마약예방,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디지털범죄 예방 등 총 8개의 활동주제로 오프라인 활동 395회, 온라인 활동 1,306회를 실시하였다.

| 그림 2-79 |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법질서 캠페인



범죄예방 환경개선(마을안전지도 그리기)

2) 생활 속의 범죄예방 인식 개선 활동

2023년에는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및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제목: 몸도 정신도 파괴하는 마약, 당신의 가족까지 위협합니다.)를 10개 광역자치단체 및 15개 기초 자치단체 전광판, 지하철, 버스, 국악방송, 공항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전광판 국가광고 표출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국 약 266개 전광판을 통해 공익광고를 송출하면서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유도하였다.

2024년에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제목 :청소년 도박은 모두 불법입니다.) 및 마약범죄 예방(제목: 마약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영상을 17개 광역 및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지차체 인터넷 TV 등에 송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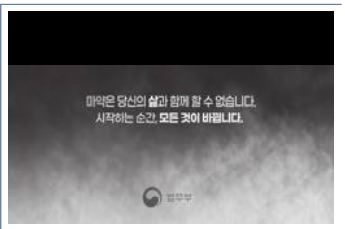
| 표 2-66 | 연도별 홍보 현황

연 도	홍보 내용
2012년	공익광고('언어순화', '강력범죄예방-돌려주세요', '학교폭력예방-거품편') 제작 TV·라디오·지하철·영화관 등에 홍보, BGF리테일(구, 훼미리마트)과 연계하여 전국 7,000여 CU점포 계산대 및 수도권 지역 대형모니터 1,060개에 공익광고를 무료 송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송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부활 김태원 작사·작곡)' 제작, EBS '폭력 없는 학교-법질서선진화과편' 방송('12.7.)
2013년	4대악 근절을 주제로 TV, 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각 1편을 제작하여, KBS, MBC, YTN, MBN, 서울·경기 전광판, 영화관 등에 홍보('13. 9. ~ 12.),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와 협력하여 4대악 근절 공익광고 2편을 제작, KBS를 통해 송출('13. 9. ~ 12.), '폭력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총 2만 부를 배포
2014년	SBS TV, 채널A, YTN, MBN, TV조선 등에 법질서 실천운동 공익광고 '행복 비법' 편을 방영, '법질서 실천송'(카라)을 제작·배포, 법질서 실천운동 로고와 슬로건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각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총 1만부를 배포

연 도	홍보 내용
2015년	KBS 특집다큐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와 KTV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이 방송, 채널A, YTN 등 TV·라디오에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가 총 332회 송출, '법의 날', '호국의 달', '광복절' 등 기념일을 주제로 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법사랑사이버랜드, 유튜브 등에 게시, LGU+ 승강기 광고보드와 미디어라이프 광고보드(3,287대, 콘텐츠 당 300여 회)에 송출, SNS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 '나부터릴레이' 개설('15.8.)
2016년	페이스북에 법사랑서포터스가 제작한 '법무정책 카드뉴스' 및 '삼국지 웹툰' 등 300여개 콘텐츠 게시
2017년	우리사회 나눔 문화 정착과 불우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집중 홍보(페이스북에 재능나눔을 주제로 웹툰과 카드뉴스 제작·배포, 팟캐스트와 'SBS 이숙영의 파워FM'에 음성 광고 실시, 스포츠동아, 매일경제에 우리사회 재능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고, 연합뉴스TV, 채널A에 공익광고를 송출)
2018년	범죄예방 및 기초법질서 준수 포스터 제작('나 이런 사람이야!', '관심이 곧 예방')하여 지하철 스크린도어·객차 및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등에 게시,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명예보호관찰관 등을 소개하는 라디오광고를 제작·송출('MBC 굿모닝 FM김재동',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9년	범죄예방 및 기초법질서 준수 포스터를 제작('당신은 부끄러운 어른이 아닌가요?' 등)하여 수도권 1~4호선 지하철 출입문, 수서역 수서평택고속선 옥외매체, 서포터스 활동, 사이버랜드 등 다양한 캠페인 콘텐츠로 활용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지 마세요)를 제작하여 수도권 지하철 2호선 행선안내기(승강장, 대합실) 및 유튜브, 전국 약 115개 전광판 국가광고 송출
2021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을 주제로 5개월간 매월 영상컨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광고,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을 버스 내부,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유트브 채널(누적조회수 127만회)에 게시
2022년	마약범죄 예방을 주제로 유튜브·버스·지하철·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동시다발적 홍보 및 스토킹범죄 예방을 주제로 유튜브 홍보(누적조회수:161만회) 실시
2023년	마약범죄 예방(몸도 정신도 파괴하는 마약, 당신의 가족까지 위협합니다) 공익광고 다양한 매체에 송출
2024년	마약 및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영상을 자치단체 옥외전광판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미디어 보드 등을 통해 송출

| 그림 2-80 | 2024년 홍보



마약범죄 예방 홍보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24년 법질서 실천운동은 확산하는 마약범죄 예방을 포함하여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아동학대·노인학대·디지털범죄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었다.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 SNS 등 온라인 활동과 활발한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법질서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타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와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협력지 및 지방자체단체 협력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범죄예방 컨설팅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였다.

2024년 법질서 홍보는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및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옥외전광판 및 미디어 보드 등의 반복 송출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유튜브,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 마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법질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하고,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보호정책과 사무관 김경환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하여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출소자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0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출소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 ~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통해 총 16,071명의 출소자를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55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이 아닌 법무부 직접사업으로 출소자 특화 취업지원사업인 「허그(HUG)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24년까지 출소자 64,668명을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켰다.

가정 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출소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2014년 경기도 오산시에 건립된 법무보호교육원 가족희망센터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가족상담, 가족캠프, 가족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부터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전국 지부(소) 단위로 확대하였고, 2024년까지 법무보호대상자 95,787명에게 165,746건의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법무보호대상자 1,941가구에 1,010회에 걸쳐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2006년부터 정계, 학계, 자원봉사자,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그(HUG) 후원의 날'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행사의 취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행사 명칭을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으로 변경했다. 전국 각 지역별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취업지원, 재정지원, 주거지원, 종교, 사전상담, 여성, 대학생 등 기능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지부(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 법무보호복지의 날: 법무보호사업 유공 자원봉사자 노고를 치하하고 출소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후원행사

| 그림 2-81 | 법무보호사업 신청 절차



나. 추진성과

1)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조기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취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및 공단·교정·기업대표의 우수사례 공유 등 2024년 취업지원사업 성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권역별(영남권)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취업지원사업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지원 업무 담당자 역량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취업지원 실무자 간담회(충청권, 영남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출소자 8,044명(전년 대비 282명 증가)이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2,555명이 수료(4,328명 진행 중), 이 중 2,081명(81.4%)이 취업에 성공하여 자립하였다.

| 표 2-67 |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실적

참여연도	참여인원(명)	수료인원(명)	수료자 취업현황	
			취업 인원(명)	취업률(%)
2019	6,117	4,904	3,144	64.1
2020	6,605	5,037	3,354	66.6
2021	7,019	5,252	3,568	67.9
2022	7,729	5,657	3,820	67.5
2023	7,762	5,614	3,708	66.0
2024	8,044	2,555	2,081	81.4
계	43,276	29,019	19,675	64.0

| 그림 2-82 |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 노력



2024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워크숍



2024년 2차 취업지원 전문화 교육

2023년 4월 출소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조직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를 출범하였다. 권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및 회원사 투어를 추진하며 안정적 취업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고용협력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정례화를 통해 2,009개 업체에 출소자 4,249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2024년까지 84개의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를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대출시 보증한도비율 10% 상향 및 보증보험료 0.2% 할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소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 'KB GreenWave_ESG' 기업에 선정 0.4% 금리 우대혜택을 도입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신규 우대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83 | 일자리 기반 활성화 노력



제80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제83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공단은 2011년부터 용접 등 취업이 용이하고 지역산업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울산(용접), 전주(영농), 창원(조선비계, 용접 / 기계가공), 서울동부(미용, 제과제빵 등), 충남 홍성(자동차정비), 경북 예천(전기) 등에 위치한 7개 기술교육원은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를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안정된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공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이 포함됨에 따라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표 2-68 | 기술교육원 운영실적

(기준 : 2012. ~ 2024.)

구 분	입교(명)	수 료		취 업		비 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동부	784	595	75.8	159	26.7	
인천	1,192	1,002	84.0	443	44.2	
충남	681	642	94.2	186	28.9	
경북	323	239	73.9	31	12.9	
울산	1,289	998	77.4	436	43.6	
경남	816	636	77.9	119	18.7	
전북	793	665	83.8	145	21.8	
계	5,878	4,777	81.2	1,519	31.7	

공단 창업지원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창업에 곤란함을 겪는 출소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최대 6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출소자 214명에게 83억 9,255만원을 지원, 출소자 자립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보호수용(공단 생활관 입소) 조건부 가석방제 시행

국정과제(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추진에 따라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 수형자에 대해 전자감독·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 조치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단 생활관 4곳을 보호수용 가석방 대상자의 생활관으로 지정하여 2023. 7월 충남지부와 울산지부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다. 2023. 12월 경기지부와 전남동부지부의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전면 시행하였다. 2024년에는 시범실시 기관이었던 충남지부와 울산지부의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5년부터 4개 생활관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은 보호수용 대상자 입소 시 심리상담을 통해 개인별 재범 유발 요인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흉악범죄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3)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류 처우를 위한 적응력 예측검사 도입

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사회적응예측, 맞춤형 보호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다.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적응력을 예측하고 공단에서 지원하는 적합한 법무보호사업을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 3년간의 시범 실시 운영을 통한 실증작업을 거쳐 2024년 '적응력 예측검사'를 정식사업으로 도입하였다.

적응력 예측검사의 사회적응예측지표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요인을 측정하여 공단에서 지원 중인 법무보호사업과 매칭, 성공적인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공단을 방문하는 보호대상자의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4)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 강화

가족지원사업은 2024년 한 해 주거지원 682세대, 심리상담 23,159건, 수형자 가족지원 1,372명 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등) 및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까지 총 2,938세대의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총 4,306세대(기존 주택 재사용 포함, 재사용 주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의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2024. 12월 현재 1,405세대가 자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다.

출소자 및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진단·치료, 대인관계 개선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26명을 각 지부, 지소에 배치하여 2024년까지 46,507명에게 170,858건의 전문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법무부와 공단은 수형자 가족 및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024년까지 학업지원 1,905건, 주거지원 45가구, 심리상담 2,685건, 긴급지원 1,664건, 접견지원 2,618건, 장학금 지원 99건 등 활발한 지원을 통해 수형자 가족해체 및 자녀의 범죄 대물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표 2-69 | 주거지원사업 관리주택현황

(기준 : 2006. ~ 2024.)

연번	기 관 명	관할지역	누적지원주택	현 관리주택	누적지원대상자
1	서울지부	서울(서울동부, 서울북부 관할 제외)	327	122	401
2	서울동부지부	서울 동부(서초, 강동, 성동, 광진)	68	39	82
3	인천지부	인천, 부천, 김포	382	148	462
4	경기지부	수원, 경기 남부(경기남부 관할 제외)	439	153	518
5	경기남부지부	경기 남부(오산, 평택, 화성, 안성)	110	58	148
6	경기북부지부	경기 북부	260	111	318
7	강원지부	강원 서부(원주, 춘천)	143	64	172
8	강원동부지부	강원 동부(강릉, 동해)	10	8	14
9	대전지부	대전(세종, 논산, 계룡 포함)	245	67	280
10	충남지부	충남(세종, 논산, 계룡 제외)	44	32	61
11	충북지부	충북	113	50	134
12	대구지부	대구, 경북(경산, 경주, 포항)	300	90	349
13	경북지부	경북(경산, 경주, 포항 제외)	35	21	44
14	부산지부	부산	190	76	248
15	울산지부	울산	150	59	176
16	경남지부	경남(창원, 김해, 통영, 거제, 밀양, 고성, 창녕, 의령, 함안)	173	65	207
17	광주전남지부	광주, 전남	238	60	256
18	전북지부	전북	142	51	170
19	제주지부	제주	53	36	70
20	서울북부지소	서울 북부(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은평, 마포, 서대문, 용산)	144	79	177
21	경남서부지소	경남(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함양, 합천)	14	16	19
합계			3,580	1,405	4,306

| 그림 2-84 |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 활동



보호대상자 가정방문 및 명절 위문 실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5) 지원 인프라 확대 및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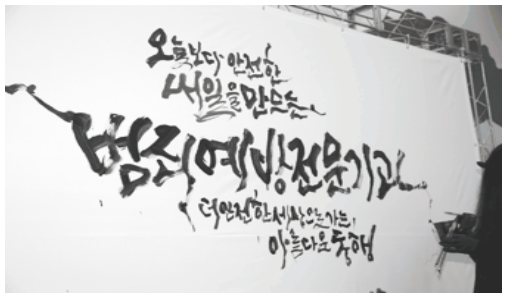
2024. 12월,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2024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표 2-70 | 법무보호복지의 날 추진경과

일 시	장 소	내 용	참석인원
2006. 10. 26.	전국거점도시	• 발대식, 헌혈운동, 가두캠페인	2,800여명
2007. 06. 14.	라비돌리조트	• 전진대회, 노란리본, 가두캠페인	3,000여명
2008. 08. 29.	백범기념관	• 전진대회, 노란리본, 청계천 가두캠페인	4,000여명
2009. 09. 02.	올림픽홀	• 바자회, 콘서트, 사회적비용 컨퍼런스	4,000여명
2010. 09. 10.	장충체육관	• 바자회, 콘서트, 취업박람회(교정기관 합동)	3,000여명
2011. 10. 31.	코엑스	• 전진대회, 바자회, 축하공연(난타, 샌드 애니메이션)	1,500여명
2012. 10. 30.	국립중앙박물관	• 전진대회, 바자회, 성과경진대회(영상물 상영 등)	1,000여명
2013. 10. 30.	안양아트센터	• 전진대회, 바자회, 노란리본기	1,000여명
2014. 10. 29.	안양아트센터	• 전진대회, 기업홍보 축하공연(타악, 대학생 & 보호청소년)	1,000여명
2015. 11. 18.	과천정부청사	• 전진대회, 사료전시, 축하공연(국악, 대학생 & 청춘합창단)	1,000여명
2016. 11. 16.	과천정부청사	• 전진대회, 사진전, 축하공연(음악축제 수상자(합창, 난타))	1,000여명
2017. 11. 16.	과천시민회관	• 자원봉사자 포상, 역사관 개관 기념 기록물 전시, 축하공연	1,000여명
2018. 11. 07.	과천시민회관	• 자원봉사자 포상, 축하공연(홍보대사 등), 공단가 제창	1,000여명
2019. 11. 08.	과천정부청사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기념공연, 손피켓 퍼포먼스	200여명
2020. 11. 04.	공단본부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손피켓 퍼포먼스	70여명
2021. 11. 03. 2021. 11. 10.	과천정부청사 공단본부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손피켓 퍼포먼스	70여명
2022. 11. 30.	공단본부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법무보호명문가 인증패 전달식	140여명
2023. 12. 05.	산학연유치지원센터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명예의전당 현액패 전달식	200여명
2024. 12. 19.	산학연유치지원센터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 비전 선포, 명예의전당 현액패 전달식	190여명

| 그림 2-85 | 2024 법무보호복지의 날





2024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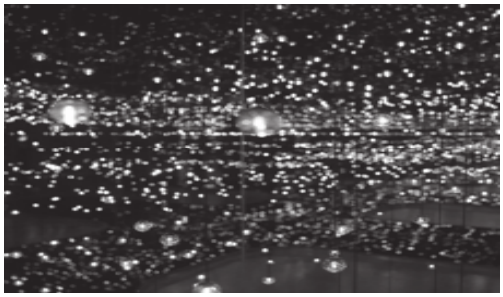
아울러, 2013년부터 법무보호사업·기술교육원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법무부 보라미 방송을 통해 각 교정기관에 송출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터나눔 허그(HUG)기업 수기집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다」를 제작·발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였다.

2016년부터는 공단의 동향과 소식을 알리는 「모바일 뉴스레터」와 자원봉사자 미담사례, 보호대상자 성공스토리 등을 담은 「아름다운 동행」 소식지를 활용하여 공단과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70여 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법무보호사업의 역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7년 법무보호교육원 내에 역사관을 설치하고 공단에서 보관 중인 시대별 사료를 정리하여 전시함으로써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2. 11월 공단 본부 청사 1층에 홍보역사관(Koreha Re-Entry Hall)을 개관하였다. 홍보역사관에서는 공단의 변천사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피니티 미러룸, 실감형 콘텐츠, 체험형 콘텐츠 등 총 3개의 다양한 테마 공간을 통해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연 1,000여 명 이상의 지역 시민들이 찾는 지역사회 내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다.

| 그림 2-86 | 홍보역사관(리엔트리홀) 사진



홍보역사관(리엔트리홀) 내부



홍보역사관(리엔트리홀) 내부

6) 전국 자원봉사 조직 개편

2019. 3월 기존 법사랑위원과 보호위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일원화하여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코레하 아너스클럽,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연합회, 가정희망복원자문위원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등으로 자원봉사자 조직을 개편하였다. 2024년 현재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조직 377개, 자원봉사자 9,388명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71 | 공단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운영위원	취업지원	재정지원	주거지원	종교교화	여성	사전상담	대학생	기타
위원회수	377	8	40	26	22	14	23	27	34	183
인원	9,388	30	950	666	564	190	519	788	1,534	4,147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일자리지원 사업은 출소자들의 구직기회 및 고용협력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출소자 고용 우수사례 등의 관련 모바일뉴스레터, 공단 소식지, SNS 등을 통해 국민 친화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출소자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향후 허그일자리프로그램 참여자 1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출소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사회 내 협력기업을 지속 발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등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3. 7월부터 2024. 12월까지 보호수용 가석방 대상자가 총 15명 입소하였으며, 입소자 중 14명(질병사망 1명)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9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특히 2명은 전문자격을 수료하는 등 보호수용 대상자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공단의 프로그램이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4. 12월 충남지부, 울산지부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보호수용 생활관 4곳(경기, 충남, 울산, 전남동부)이 운영됨에 따라 보호수용 가석방 대상자의 재범위험성 관리 및 집중처우가 더 강화될 예정이다.

2024년에 도입한 적응력 예측검사는 법무보호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응 수준 파악으로 사례관리 처우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빅데이터를 통한 출소자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류 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가족지원사업은 주거지원, 자녀학업지원,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 등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내실있는 가족지원사업 실시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수형생활로 불편해진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재적응 촉진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여 법무보호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공단 소식지와 뉴스레터,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언론사 초청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홍보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책소통 확산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기획기사 연재 등을 통해 공단과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홍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법무보호위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자원봉사조직에 대해서는 전문화교육 강화, 자원봉사활동분야 지속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대면 집합 교육 위주에서 온라인 학습시스템인 '사이버 교육원'을 도입,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학습환경 제공을 통해 교육 환경 변화와 교육 인원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작하여, 법무보호위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단의 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사례 위주의 상담을 위한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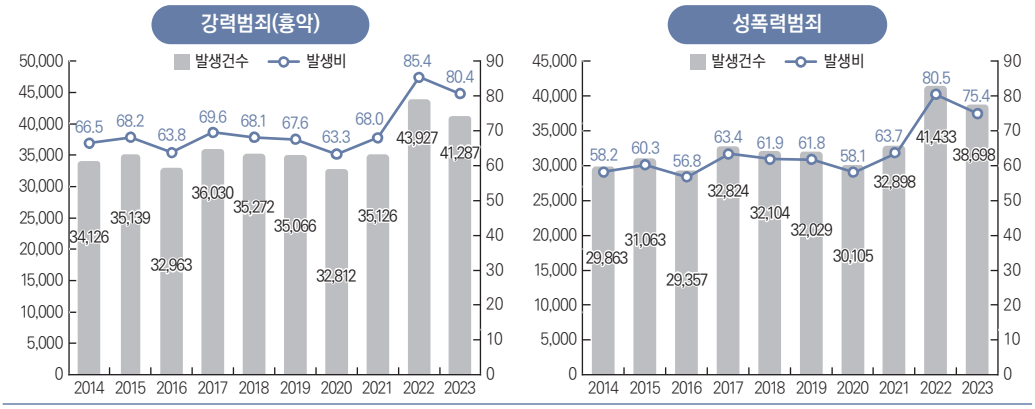
10.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보호정책과 사무관 홍송이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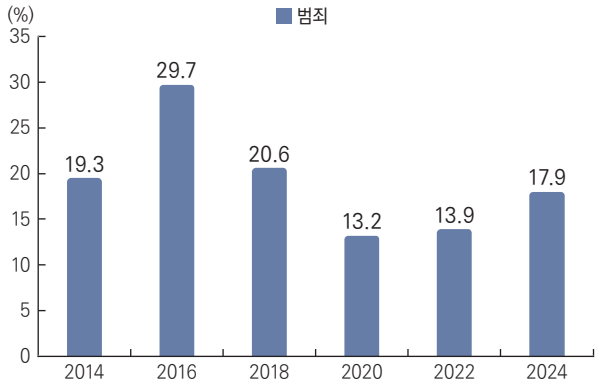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다. 대검찰청의 2024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흉악)의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2023년에 80.4건(41,287건)으로, 2022년 대비 5.8%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은 21.0%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그림 2-87 | 강력범죄(흉악)·성폭력범죄의 총 발생건수 및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추이



출처: 대검찰청(2024), 2024 범죄분석, 건축공간연구원

| 그림 2-88 | 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 &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항목	불안함(%)
범죄 발생	**17.9**
경제적 위험	16.5
국가 안보	16.2
환경 오염	10.0
도덕성 부족	9.8
인재	8.0
신종 질병	7.9
자연재해	6.8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	6.4
기타	0.4
합계	100.0

출처: 통계청(2024), "2024년 사회조사 결과"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작성

범죄로 발생하는 사후적 손실을 줄이고, 범죄 발생 요인들을 제거 및 억제하는 사전 예방 패러다임으로서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이하 셉테드라 함)은 범죄예방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여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셉테드 사업들은 행정·재정적인 문제로 연속성이 떨어지고, 관계기관 간의 소통 부재로 유사 사업이 중복 시행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바, 관계기관에서 시행중인 셉테드 사업의 조정을 통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22. 5월,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법무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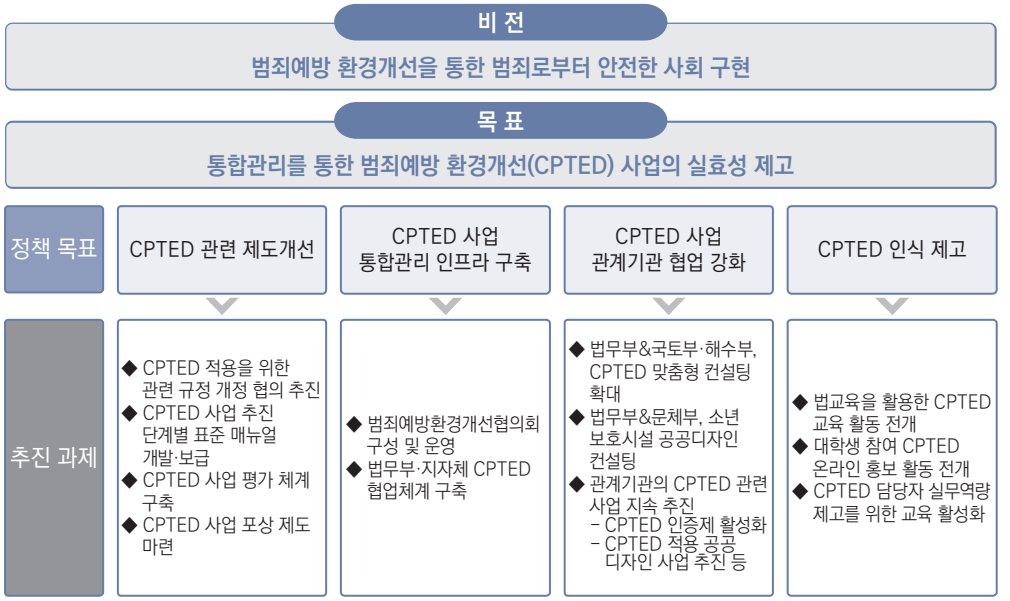
이에, 셉테드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팀(법무부 보호정책과)을 구성하여, 대통령훈령인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였다(2022. 11월). 또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셉테드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학, 범죄학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이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시행중인 셉테드 사업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5개년(2023~202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2023. 3월)

나. 추진성과

본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의 기조에 따라 '통합관리를 통한 셉테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각 관계기관의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8개 부처에서 4대 추진전략과 19개의 세부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4대 추진과제 분야 중 'CPTED 사업 관계기관의 협업강화'에 대한 세부과제가 전체 과제의 약 50%를 차지하여 CPTED 통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다양한 부처 및 지자체에서 셉테드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각 관계기관 간의 협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 그림 2-89 |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강화



출처: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법무부

본 기본계획의 내용을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1. 셉테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먼저, 셉테드 관련 규정 내용의 상당부분(건축, 개발, 사업 분야 등)이 권장사항에 그친 바, 범죄예방 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설비·시설물 중심의 규정 내용에 건축물의 공간·형태·구조·입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방범 시설물 설치에 치중하는 지자체 셉테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후 유지관리 방안까지 각 단계별 추진 방향 및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보급하였다. 세 번째로는, 그 동안 셉테드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가 전무하여 지자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셉테드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2023. ~ 2024. 셉테드 사업에 대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대통령·국무총리 정부 포상 등의 포상제도를 마련하였다.

추진전략 2. 셉테드 사업의 통합 관리 기반 구축

그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셉테드 사업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계부처의 CPTED 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이 협의회 의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차관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건축학 등 각종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 간의 협의, 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다(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2조, 제3조). 이에 따라 1차 협의회를 개최(2023. 3월)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2023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였다. 또한, CPTED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지자체와 CPTED 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보 교류 및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등을 위해 법무부와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24년에는 2차 협의회를 개최(2024. 3월)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추진전략 3. 셉테드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셉테드 사업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다. 즉, 국토부·해수부는 개발사업 추진 시, CPTED 적용 필요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법무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컨설팅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CPTED 설계 자료를 제공, 안전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낙후된 소년보호시설에 공공디자인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교육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셉테드 사업

지속적 추진을 위해 ▲CPTED 인증제 활성화,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사업 추진, ▲CPTED 실효성 제고를 위한 CPO 활동 강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주소정보시설 고도화를 통한 야간 범죄예방 환경조성, ▲국립부설학교 안전 강화사업 확대 등 다양한 고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전략 4. 셉테드 관련 인식 제고

그간 셉테드 사업 지역주민들의 경우 "범죄"라는 용어 때문에 셉테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측면이 있었다. 셉테드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법무부는 법교육을 활용한 CPTED 관련 교육 활동을 전개, 국민들의 CPTED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활동 중심의 청소년 셉테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법교육 프로그램에 셉테드 교육과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법무부의 법질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셉테드 온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셉테드 담당자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교재 및 콘텐츠를 개발했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와 실효성있는 지자체 셉테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셉테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들이 제도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폭넓게 발굴하고자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였다.

우선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정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으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장의 실질적인 셉테드 사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좌우되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셉테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셉테드의 성과는 사업지역의 범죄율 감소 및 주민들의 불안감 감소로 나타나는 만큼 성과 도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시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제6절 감찰·감사업무

1. 감찰업무

감찰담당관실 검찰사무관 조성우

가. 개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였고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조치함으로써 유사 비위를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일선 감찰 업무 담당자들의 감찰 역량 강화를 위해 다수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감찰 관련 법령을 정리하여 감찰 관련 규정집을 제작, 일선 감찰 담당자에게 배포하였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에 따라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공직윤리 관련 안내와 교육을 통하여 직장 내 인권증진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부 및 각 고등검찰청 감찰부서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내부 감찰을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감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감찰에 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전개

1) 비위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둔 선제적 감찰 활동

취약, 과오다발 분야 및 중점 점검 대상자, 다수 민원을 야기한 직원에 대한 비노출 관찰 활동을 진행하고 부장·차장검사 승진대상자 인사검증 등 선제적 감찰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단순히 비위나 과오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개선을 통해 비위 재발을 방지하는 감찰 활동을 추진하였다.

2) 비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상시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 발생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다각적으로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비위공무원을 직접 조사하는 등 비위 발생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에 기여하였다.

3)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24. 6. 1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신설(23. 12. 14.)에 따라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527호)을 제정하였다.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부서, 대상자와 가상자산 보유 관련 제한내용을 명기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업무 담당자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무부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4) 「감찰관련 규정집」 제작(24. 9월)

감찰 업무 담당자가 감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감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찰관련 규정집」을 제작하여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에 배부(371부, 본부·일선기관)하였다. 규정집은 상시 개정에 따른 규정을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바인더 형태로 제작하여 규정 현행화가 용이하도록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다. 감찰 활동을 통한 법무부 내 인권증진·공직윤리 확립

1)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現 부당처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갑질 피해자 구제, 갑질 피해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2022년 카카오톡을 이용한 법무부 오픈채팅방 「감찰톡」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익명성을 보장하여 조직 내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2)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

법무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청탁금지법에 관한 안내와 교육 시행,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절차 안내 및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공개대상자에 대해 병역 신고 안내 등을 통해 비위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및 공직윤리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공무원의 청렴한 윤리의식을 고취하였다.

라. 감찰 업무의 객관성 제고

1) 검찰의 감찰업무 효과적 지휘·감독

대검찰청 감찰부 및 각 고등검찰청의 감찰부서 업무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를 실시(24. 12월)하였고, 대검찰청 감찰부 등으로부터 감찰 착수·진행·결과 등 감찰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고받아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감독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2) 법무부 감찰위원회 인적구성 다양화 및 감찰위원회 활성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찰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이공, 심리, 경영,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감찰위원을 선별하여 경영, 심리 2명의 신규 감찰위원을 위촉(24. 11월)하였다. 또한 연간 8회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안 검토, 감찰결과에 대한 검증 및 감찰사건 처리 방안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감찰사건에 대한 권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찰사건의 처리 절차를 확립하고 감찰 절차에 관한 신뢰를 높였다.

2. 감사업무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고영석

가. 자체감사 역량 강화

1) 추진개요

법무부 소속 204개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교정공제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대상으로, 각 기관의 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특정감사',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 실태 상시 점검하는 '복무감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2024. 1. 30.부터 2024. 12. 20.까지 69개 기관과 정부법무공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특정감사로는 '교정기관 보관금품 업무', '마약류 관련 법무부 업무 실태', '재외공관 사증발급 업무'를 감사하고, '법무시설 공사현장 관리 및 시공실태', '공공기관 등 채용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연말연시, 설·추석 연휴, 하계 휴가철,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선거철 등에는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69개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복무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징계 2명, 경고 4명, 주의 73명 등 총 7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통보·주의·개선·권고·시정 등 350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37,486천 원을 회수 또는 환급 조치하였다.

2) 추진실적

| 표 2-72 | 실시현황

구 분	내 용	실시기관 수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69개
특정감사	특정업무·사업 등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마련	감사 종류별 상이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 직원의 비위, 근무실태 등 점검	전 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

| 표 2-73 | 조치내역

신분상 조치(단위: 명)				행정상 조치(단위: 건)					
징계	경고	주의	계	통보	주의	개선	권고	시정	계
2	4	73	79	201	11	2	12	124*	350

* 재정상 조치 37,486천원 회수·환급 조치 포함

나. 다각적인 반부패·청렴 정책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1) 추진개요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청렴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2017년부터 반부패·청렴 전담팀을 신설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렴릴레이 등 조직 맞춤형 청렴 교육, 청렴의 날 행사, 청렴멤버스 운영 등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 일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속기관장 및 부서장 부패위험성 진단, 청렴마일리지 등 다양한 내부청렴도 평가를 통해 부처 내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2) 주요 반부패·청렴 추진 활동

가) 반부패·청렴 교육

청렴 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와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사를 초청하여 장·차관 및 고위공직자 등 대상 '법무부 반부패·청렴 교육'(2024. 5. 16.)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은 명사 초빙 청렴소양 교육과 청렴 전문강사 규범 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청렴소양 교육 강사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를 섭외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 40여 명, 본부 직원 등 총 554명이 참석하여, 기존 '청렴라이브' 대비 교육 참석자가 약 1.5배 증가하였다.

더불어 소속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를 목표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1단계 교육은 수도권(2024. 6. 19.), 경상권(2024. 6. 24.), 충청권(2024. 6. 25.), 호남권(2024. 6. 28.) 등 4개 권역에서 소속기관별 청렴담당자 2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단계 교육 이수자가 해당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릴레이 방식(2단계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그 외 청렴멤버스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워크숍'(2024. 7. 11. ~ 7. 12.), 신규자 및 승진자 대상 부패방지교육(2024. 12. 20.)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직원 청렴 교육 이수율 95.9%(22,340명)를 달성하였다.

| 그림 2-90 | 2024년 반부패·청렴 교육



법무부 반부패·청렴 교육(2024. 5. 16.)



청렴릴레이 교육(2024. 6. 19. ~ 6. 28.)

나) 내부 청렴도 평가

부처 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양한 내부 청렴도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4. 6~7월 소속직원 설문조사(공정한 직무수행, 균형적인 조직관리 등 4개 영역 16개 항목)를 통해 기관장·부서장 등 관리자 846명의 부패 위험성을 진단하였으며, 피진단자 모두에게 개인별 진단결과를 통보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연간 반부패·청렴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평가'를 진행하였다. 2023년 개편한 정량평가 중심의 현 체계를 유지하되, 평가 항목 및 세부내용을 소폭 변경하여 통상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평가의 변별력은 제고하였다.

다) 청렴 문화·홍보 활동

2024. 5월·10월 '법무부 청렴알림e 7호·8호'를 각각 발간하였다. '법무부 청렴알림e'는 법무부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발간한 청렴 소식지이다. 특히 이번 '청렴알림e 8호'는 박성재 장관의 여는 글로 시작해서 서울동부구치소장의 부패취약분야(보관금품 접수) 제도개선 인터뷰, 소속기관 직원들이 기고한 청렴 수필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분위기 조성 및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2024. 7월에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 직원에게 국외출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 관심도를 제고하였다.

| 그림 2-91 | 2024년 청렴 문화·홍보 활동



청렴알림e 8호



청렴콘텐츠 공모전



우수직원 일본 국외출장

제7절 인권업무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가.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후속조치 추진

인권정책과 사무관 전현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 정부는 2023. 1. 4. 가입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조항별 이행 상황을 유엔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 과정에서 유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2024년 하반기 법무부는 보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그간 여러 관계부처·기관 의견 조회를 통해 초안을 작성해왔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당사국에게 강제실종의 범죄화 및 처벌을 요구하는바, 이를 이행하는 국내법 제정을 촉구하는 요구가 계속 있었다. 이에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는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동 수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024. 1. 10. 1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우리 정부가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약 14년만이다. 이를 계기로 강제실종에 대한 국내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제기구, 해외공관, 학계, 시민단체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하기 위해 2024. 10. 16.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초안을 작성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조회한 바 이를 향후 초안에 반영하여 2025년 우리 정부는 강제실종위원회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건 발의되어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인권정책과 사무관 신민철

1) 개요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년~2022년)」에 이어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하여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수립하였고 2024년 3월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법무부장관) 의결 및 3월 26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표하였다.

2) 주요 내용

제4차 기본계획은 유엔 국제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참고하여 6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등 인권 보호·증진의 기초가 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책과제를 담았고,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등 노동권,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등 건강권과 보건·환경권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③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사회 전반의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와 함께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과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폭력·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과제를 담았고, ④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보호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강화'를 위하여 인권경영의 제도화, 고충처리·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 등 기업의 활동에서의 인권 보호·존중 책임을 확인하였고, ⑥ '인권 의식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과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기본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 운영

인권정책과 사무관 신민철

1) 개요 및 추진경과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및 권고를 준수하는지를 사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이고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법무부훈령 제1351호)을 근거로 하고 있다.

2024년 인권 모니터링 실적은 4건으로, ① 교정기관에서 둘 이상의 금치 연속 집행을 총 45일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 ② 보호관찰소의 조건부 기소유예자 명단이 공개 장소에 비치되지 않도록 하고 기소유예자 서약서에 준수사항 위반 시 교육 탈락 조치를 감수한다는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강명령 등 집행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개정, ③ 교정재범예측지표에 직업, 학력 등 차별적 평가항목과 정신병력 치료경력, 이전범죄 출소연령 등 재범예측 타당도가 낮은 평가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예규) 개정, ④ 법무부 직원 내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상급자의 조치사항과 구성원의 2차 피해 금지 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법무부훈령) 개정에 대하여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4년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교정·보호 분야에서의 수용자, 수강명령 대상자 및 본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이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향후 본부 각 과에서 법령 등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라. 국제인권기구 대응 업무 강화

인권정책과 사무관 장현주, 전현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민국은 총 8개의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 중 법무부는 4개의 조약(「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소관부처이다. 2024년 주요 성과로서 법무부 소관인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수석대표로 9개 관계부처·기관 합동 정부대표단이 심의에 참여하였으며, 고문방지위원회는 정부대표단의 다양한 구성과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 그리고 위원회 측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2023년 발표된 자유권위원회 제5차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점검했고,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했으며 심의 후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서한, 개인진정 사건 등 유엔 인권기구의 다양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나아가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작성 시 자료 제공, 제6차 한-EU 인권협의회 참석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 증진에 기여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4년은 작년에 이어 다수의 국제인권협약의 국가보고절차가 연달아 진행됨으로써 국가보고서 작성, 심의 참석, 최종견해에 관한 이행계획 수립·점검 등이 활발히 진행된 해였다. 법무부는 협약의 전반적인 이행과 단순 보고의무뿐만 아니라 협약 간의 권고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내실있는 이행과 점검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2025년 하반기에는 법무부 소관인 사회권규약에 대한 쟁점목록 접수가 예상되는 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견고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사회, 학계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협약 기구 외에도 헌장기구인 특별절차 등으로부터 방한, 답변 등 다양한 요청이 접수되어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국내 인권상황을 알리면서 관련 정책·제도·법률 등의 개선 방향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 국제인권기준에 발맞춘 인권정책 발전 방안 모색

인권정책과 사무관 장현주, 전현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부처로서의 적극적 기능을 다하고,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핵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4년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 대비 관계부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2회 유엔인권메커니즘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2023년 진행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결정례 연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법무부는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인권 과제를 파악하고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 태국 인권개발국,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담당관 등 국제인권 관련 기관·단체들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및 전문 인력양성에 기여하고자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국제인권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국내 인권정책 수립 및 새로운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2024년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인권 문제인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발효 등 공급망 실사 의무화와 관련된 국제차원의 주요 규범 발전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13차 기업과 인권 포럼, 제10차 초국적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실무그룹 회의 등에 적극 참석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보다 주도적으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인권정책·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직접 마련하기 위해 워크샵,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바.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인권정책과 서기관 김진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 4. 25.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유공자 포상 및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2) 추진내용

이번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명이 포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해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하며,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그림 2-92 | 제61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장관 기념사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 이래 구조금 지급을 시작하여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그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왔다. 2025년 3월 21일부터는 피해자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 전 사망 시 유족에게 해당 구조금을 지급하고, 결혼이민자가 영주자격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 예정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55건, 79억 원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구조금 산정시 적용하는 배수 및 개월 수 상향,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지급 방법 다양화 등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범죄피해자 우선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범죄피해자 심리적 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손장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평가, 심리 치유, 집단프로그램, 사회적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범죄

발생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에게 임시거주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2010. 7월 서울동부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16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2018년에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을 설치하여 전국 센터의 심리치료 서비스 전문성 강화,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전국 스마일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표 2-74 | 연도별 설치현황

구분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설치 지역	서울 (동부)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춘천 전주	서울 (서부) 수원	의정부	청주 울산	창원	제주	목포

스마일센터의 외형 확대에 맞추어 질적 성장을 기하고자 지속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해왔고, 2024년에는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전문 상담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비대면 자가치유 프로그램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배포하였으며,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몸과 마음 챙김'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 방안을 논의하였다.

* '20. 범죄피해자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표준 평가 프로토콜 및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21. 스마일센터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 연구
'22.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23.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영상 콘텐츠화
'24.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영상 콘텐츠 배포

스마일센터에서는 2024년 말까지 28,564명의 강력범죄피해자에게 심리치료(567,149건), 임시주거 제공(58,227건), 사회적 지원(37,203건) 및 법률적 지원(47,666건) 등을 제공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 표 2-75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명, 건)

연 도	신규접수 (명)	서비스 지원					교육홍보
		계	심리지원	사회지원	법률지원	임시주거	
2022	3,251	90,945	69,989	5,040	6,452	9,464	5,912
2023	2,566	82,974	61,121	4,284	6,451	11,118	5,970
2024	2,773	80,269	59,392	4,466	6,319	10,092	5,284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의 치료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DS), 사건충격척도(IES), 한국판 벡우울척도(K-BDI), 한국판 벡불안척도(K-BAI) 평균값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하단 표 참조). 이는 범죄피해자들이 스마일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울 및 불안 증상이 크게 완화되어 심리적 회복을 이루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앞으로도 스마일센터는 상담인력 전문성 강화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국내 유일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 표 2-76 | 심리치료 효과 검증 결과

(단위 : 명, 건)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결과해석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척도 (PDS)	치료 전	319	31.40	10.545	• 10점이하 : 낮은 수준 • **11~20점 : 중간 수준** • 21점이상 : 높은 수준
	치료 후	319	14.61	10.498	
사건충격척도 (IES-R)	치료 전	317	53.96	17.215	• 기준점 22점 • 22점 초과 시 외상과 관련된 증상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치료 후	317	25.78	18.874	
벡우울척도 (K-BDI)	치료 전	315	30.87	11.904	• **13점이하 : 증상 없음** • 14~19점 : 경미한 우울증 • 20~28점 : 중간정도 우울증 • 29점이상 : 심각한 우울증
	치료 후	315	14.75	11.314	
벡불안척도 (K-BAI)	치료 전	315	26.91	13.769	• 7점이하 : 불안증상 거의없음 • **8~15점 : 경미한 불안** • 16~25점 : 중간정도 불안 • 26점이상 : 심각한 불안
	치료 후	315	10.97	11.727	

※ 출처 : 2023년 스마일센터 백서

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서 2010. 8월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2020. 5월 얼굴 공개, 보복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하고,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과실범죄가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거지원 공고문을 개정하였다.

| 표 2-77 | 주거지원 대상 확대(2020. 5.)

종 전	개 선
1. 사망, 장해, 5주 이상의 상해 2.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원 필요성 인정 시 지원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친족간 성폭력, 약취·유인, 체포·감금 피해자 3.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가능한 피해자 범위 확대 - 보복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아동학대 -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 위력 강제추행 -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1~3, 좌동 ※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 추가 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의율 대상 피해자까지 확대 -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과실범죄가 제외되는 점 명시 -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반영 및 지원규모 및 대상 주택 상세 기술

2) 평가 및 발전방향

주거지원은 범죄피해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친족 간의 범죄 등으로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4년에도 총 28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았고, 향후에도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 – 스마일공익신탁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6. 4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설립하였다.

법무부 장관과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0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모아진 기탁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24년에는 형이 살해당했음에도 사건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원 신청기간이 도과한 범죄피해자 유가족 등 총 11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2016년 출범 이후 총 178명에게 8억 6백여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모은 천사공익신탁에서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매년 재원을 출연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하여 제도적 한계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학자금 등의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동 지원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3. 9월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61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포함)가 활동 중이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총 43억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61개 센터는 피해자 상담 88,691건, 경제·의료 지원 16,452건, 신변보호 373건 등 총 120,472건의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 표 2-78 | 최근 3년간(2022 ~ 2024)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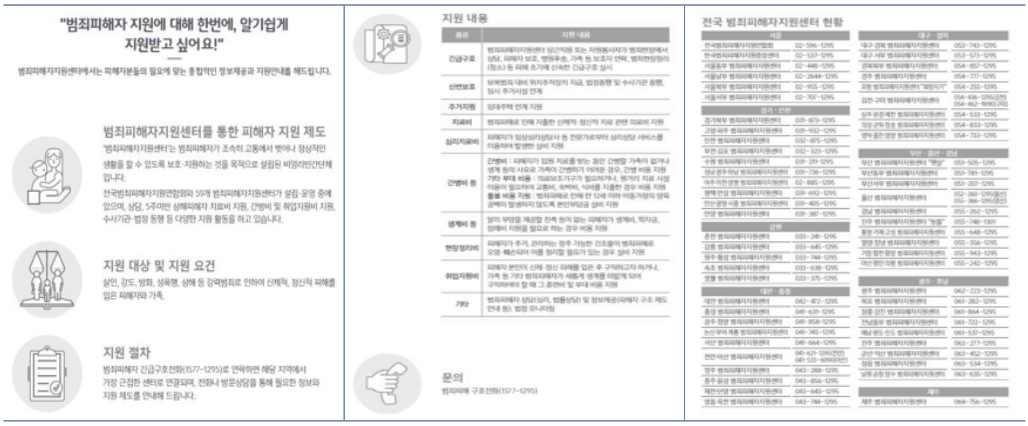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상 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22	120,791	86,922	16,467	435	16,967
2023	116,958	85,243	16,050	418	15,247
2024	120,472	88,691	16,452	373	14,956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 지역사회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경제적 지원 외에도 자조모임 및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사회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총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고, 향후에도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93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1) 제11회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보호·지원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변위협 등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2024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열한 번째 다링안심캠페인을 개최하였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본 행사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범죄피해자와 가족,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와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하는 범국민적 행사이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웹·모바일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너와 나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자'는 구호를 널리 홍보하고 전파하였다. 이와 더불어 「워크온 어플리케이션」 홍보방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4. 6. 15. 서울어린대공원에서 진행한 다링행사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및 시민 7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였다.

향후, 법무부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의 각 장점을 적극 살려 관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94 | 제11회 다링안심캠페인



2)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 및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의 사기 진작과 함께 피해자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24. 11. 27. 대구 아이엠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주로 서울·수도권에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2. 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2004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대구에서 개최하였다.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에 대한 격려가 이뤄져, 국민포장을 수상한 전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이종찬을 비롯한 6인이 정부포상을 받고, 39인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합창 공연, 범죄피해자를 위로하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의 현악 4중주 연주 공연, 범죄피해 극복을 아름답게 표현한 그림 예술 공연 등 범죄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이 마련되었다.

이날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범죄피해를 극복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발전을 위해 계속 애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그림 2-95 |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포상 전수 후 기념촬영



피해자 공연

3) 홍보 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2024년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2024년에는 범죄피해자 수요자 특성에 고려하여 전년 대비 피해자 지원실적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철도시설(KTX)전광판·지하철 스크린도어·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 및 포스터를 송출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집중 홍보하였다.

| 그림 2-96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포스터 및 영상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

인권구조과 서기관 임성훈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0. 5월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벌금의 4%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 1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3. 1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집행된 벌금의 5%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고, 2015. 1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하여 벌금의 6%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였다. 이후 2021. 1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집행된 벌금의 8%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였으며, 2022. 1월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 및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기금 사업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표 2-79 | 2024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액	총액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1,099	37,060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2,500	
	범죄피해구조금	10,015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3,446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632	51,546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354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2,560	
기금 운영비	기금 관리비	48	4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2,500	2,5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49	49
여유자금 운용	통화금융기관 예치	45,851	45,851
총 계			137,054

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사무관 김원진

1) 추진배경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에는 이러한 지원 제도가 여러 주체에 분산되어 유기적 안내·연계 부족 등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발생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맞춤형·통합 지원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2) 추진 내용 및 성과

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2024. 7. 22.)

전국 최초로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를 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 증진 및 시간·비용 등의 소모가 최소화되었으며, 입주기관간 상시적인 대면 협의·사례관리가 수월해져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설계 및 종합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나) 원스톱 전담인력 배치

피해 유형별 전담기관이 없거나 복합적인 범죄 피해를 입어 타 전담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안내·연계하고,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전담인력을 배치(19명)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 원스톱 지원 업무 전문성 강화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 및 피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합 통합교육(2회)을 실시하여 원스톱 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3) 평가 및 발전 방향

원스톱 솔루션 센터 및 기관, 단체, 관련 전문가를 연계한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죄피해자가 편리하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그림 2-97 |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2024. 7. 22.)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가. 중대재해 및 대규모 재난·재해 피해 법률지원 체계 구축 강화

인권구조과 서기관 이진선

1) 추진배경 및 경과

대규모 재난·사고로 국민 다수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빠른 구제를 위해 상시 지원체계 구축 등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홈닥터 등으로 구성된「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2022. 1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재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시적 법률구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하였고,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 대한 선제적·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무부는 2016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지원단(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을 구성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대면·유선 및 출장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사건으로 선정해 무료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상담 매뉴얼을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대재해 피해자의 경우 소득 제한 없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을 개정(2024. 7월)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6개의 법률지원단을 운영하였고, 최근 3년간 법률지원단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022년 이후 10개(63%), 2024년에만 4개(25%) 운영

| 표 2-80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내역

-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22. 9.~)
  - 법률지원단 총 59명 / 법률상담 11,117건, 소송구조 2,573건('25. 2. 13. 기준)
-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22. 11.~)
  - 법률지원단 총 106명 / 법률상담 32건, 소송구조 4건('25. 2. 13. 기준)
-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법률지원('24. 1. ~ 3.)
  - 법률지원단 총 21명 / 법률상담 5건('24. 3. 27. 기준)
-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24. 2.~)
  - 법률지원단 총 105명 / 법률상담 394건('25. 2. 13. 기준)
- 화성 화재사건 피해 법률지원('24. 6. ~ 11.)
  - 법률지원단 총 28명 / 법률상담 15건, 피해자 32명 전원 긴급 생계지원금 6,700만 원 지급('24. 11. 5. 기준)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법률지원('24. 12.~)
  - 법률지원단 총 31명 / 법률상담 72건, 소송구조 1건('25. 2. 10. 기준)

3) 평가 및 발전 방향

향후 법률지원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극적·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 법률구조사업 전자화 추진을 통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인권구조과 서기관 이진선

1) 추진배경 및 경과

법률구조 기구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국민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찾기 어렵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접근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법률구조 전자접수 시스템, 화상·채팅 상담 등 다양한 전자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64-5)인『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5개 기관과 플랫폼 참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4년 ~ 2028년까지 총 167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하여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

법무부를 비롯한 35개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참여기관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2024. 10~11월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2024. 11. 15.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제1차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참여기관 – 가나다순]** ①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②고용노동부, ③국가보훈부, ④근로복지공단, ⑤금융감독원, ⑥금융위원회, ⑦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⑧대한법률구조공단, 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⑩대한변호사협회, ⑪대한상사중재원, ⑫법무부, ⑬법원행정처, ⑭보건복지부, ⑮서민금융진흥원, ⑯서울시복지재단,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⑱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 ⑲신용회복위원회, ⑳아동권리보장원, ㉑양육비이행관리원, ㉒여성가족부, ㉓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㉔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㉕주택도시보증공사, ㉖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㉗통일부, ㉘한국가정법률상담소, ㉙한국예술인복지재단, ㉚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㉛한국인터넷진흥원, ㉜한국자산관리공사, ㉝한국저작권위원회, ㉞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㉟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35개

나)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및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사업 추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법률상담으로 유입되는 법률상담 요청 중, 비교적 간단하고 정형화된 유형의 상담과 법률정도 등을 빅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AI) 기술로 질의·응답 서비스(챗봇·콜봇)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2024년까지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2025. 1월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 2021년 : 음성인식 AI 도입 및 학습 및 녹취 시스템 구축
2022년 : 채팅상담 시스템 구축 및 간편 시나리오 기반 챗봇 시스템 구축
2023년 : AI 어드바이저 및 간편 콜봇 시스템 구축
2024년 : 대국민 법률정보 질의·응답 시스템(챗봇·콜봇) 및 디지털 셀프서비스 구축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와 더불어 비대면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 없이도 어디서든 법률구조 접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2023. 5월부터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전자접수시스템 운영 이후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1 | 전자접수시스템 추진 실적

구 분	2023년(5~12월)	2024년	합계
회원가입(명)	1,500	2,394	3,894
전자접수(건)	453	906	1,359

다) 화상·채팅 상담 등 다양한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코로나19 이후 방문 민원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의 다양한 상담수요를 해소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화상·채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화상 상담 서비스는 2020. 11월부터, 채팅 상담 서비스는 2023.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2 | 화상·채팅 상담 서비스 추진 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화상 상담(건)	3,133	16,371	10,110	4,853	2,683	37,150
채팅 상담(건)	-	-	-	9,392	12,281	21,673

또한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1. 11월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 12월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77개국 동포에게 약 2,000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3) 평가 및 발전 방향

법률정보 제공 등 상담 채널 다양화를 넘어 법률구조 신청 및 접수·처리 단계까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 기구들을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률구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시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등 금융소외자 종합 지원

인권구조과 사무관 이진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최근 금리상승세에 편승한 불법사금융의 고금리 채권 추심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가)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자 확대 등 적극적인 법률구조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 포용적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법률구조 사업에 도입하였다.

※ 2020. 1월 공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2023. 12월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위한 공단, 금융감독원 업무협약 체결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의 지원대상자를 채무자에서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하여도 채무자에 준하는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실시하였다. 또한 신종 불법대출 피해방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연락처가 없는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에도 채무자 대리인 사건으로 접수하여 능동적인 법률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제2조 제3호의 관계인

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가족, 친구 등)

② 채무자의 친족 (친인척 등)

③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직장동료 등)

나)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소송구조 지원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범정부 대응으로 검·경찰이 기소·수사 완료된 사건 가운데 반사회적 피해사례를 발굴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진행하는 등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하였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한 반사회적 불법사금융피해자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첩하여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실시하였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표 2-83 |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지원 실적

연 도	채무자대리인 선임(건)	소송구조(건)	법률지원(건)	합계(건)
2023년	530	5	0	535
2024년	2,934	162	7	3,103

3) 평가 및 발전방향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을 '채무자'에서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통한 적극적·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범위 확대

인권구조과 사무관 이진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약 570만명)가 지속되나,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감소 및 대출 증가에 따른 연체율 상승,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에 따른 법률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기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5. 9월부터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과의 협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소상공인법)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인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도·소매 50억원 이하, 숙박·음식 10억원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평균 부채액 185백만원, 평균 순이익 31백만원
2023년 기준 개인사업자 폐업자수 911,000명, 폐업률 9.5%
2024년 1분기 기준 다중채무자(3개 금융기관 이상)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 차주 약 40만명,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연체율 10.2%

2) 추진내용과 성과

소상공인의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0. 9월부터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대상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에서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자'를 추가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한 이후 매년 법률구조 건수 및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4 |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현황

연 도	건수(건)	인원(명)	구조금액(억원)
2022년	574	607	60
2023년	598	609	87
2024년	648	660	94

3) 평가 및 발전 방향

기존보다 강화된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법률분쟁에 대해 경제적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다중채무 해소 및 재기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 찾아가는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인권구조과 사무관 이진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농어촌 산간벽지 지역의 거주자나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4개 농어촌 지역에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강연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등의 수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출장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0.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 및 조사, 사건접수까지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2-98 | 이동법률상담





2) 추진내용과 성과

최근 5년간 농어촌 지역 및 수용시설 등 소외지역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5 | 소외지역 출장상담 현황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횟수	135	141	90	184	223
건수	696	684	259	1,885	2,187

이동법률 상담버스 운영 이후 총 2,100여개 지역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19,914건, 법률구조회부 안내 850건, 강연 360회를 실시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6 | 이동법률상담버스 연도별 사업실적

연 도	방문지역	법률상담(건)	구조회부 안내(건)	강연(회)	수강인원(명)
2022년	140	631	16	8	331
2023년	127	774	49	2	120
2024년	107	625	75	1	12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 신문고에 참여하여 국민의 생활 현장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였다.

※ 이동신문고 37회, 법률상담 199건 실시

3) 평가 및 발전 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수요자 편의를 위해 2014. 10월경 이동법률 상담 차량을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9. 8월경 이동법률 상담 차량 1대를 교체하여 산업단지, 농·어촌,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소송 등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바로 법률구조로 연계함으로써 법률구조 수요자의 공단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법문화교육을 통한 건전한 준법의식 확산

인권구조과 사무관 이진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언어·제도·문화의 차이 등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교육을 위해, 2011. 6월 김천시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 국적, 혼인과 상속, 기초질서 등에 관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중장년층 및 노인, 자립준비청년, 자활센터수급자, 격오지 군인, 출소예정 재소자 등 법률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근로관계, 임대차 등 생활밀착형 법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애니메이션, 청소년 법교육 주제 디지털 플랫폼용 숏폼 동영상 등

2) 추진내용과 성과

최근 5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문화교육을 실시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7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추진실적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명)	2,347	3,615	4,619	4,773	4,542

2024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나센터·노인복지관·지역자활센터·교도소 등을 적극 방문하여 학습자의 수요에 맞춘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법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진로체험학습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 학교폭력예방교육 581회, 13,501명

법교육 대상자를 다변화하여 귀농·귀촌인, 중장년층 시민, 청년·신혼부부,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에게 맞춤형 법교육을 추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및 법교육 대상자 다변화를 모색하였으며 2024년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8 | 2024년 법교육대상자 다변화 추진실적

구 분	귀농·귀촌인	중장년층 시민	청년·신혼부부	공무원 및 관련종사자
추진노력 대상	남원시 귀농·귀촌인	서초50+센터 등	김천시 청년센터 등	서울 구로구청 등
추진실적	167명	445명	95명	461명

3) 평가 및 발전 방향

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법률보호 및 법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법문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준법의식이 확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사.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등 법률구조의 공익성 및 전문성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이진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현행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모두 상속하므로, 부모 사망 시 미성년자 자녀가 관련 제도를 몰라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1. 12월부터 부모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위기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력하여 상속 관련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21. 12.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합동 법률지원 체계 발표

2024. 7. 19.「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어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으나, 개정 전의 출생신고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기반하여 등록이 되다보니, 출생신고 미비 시에는 행정복지 서비스 공백부터 아동학대에 노출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2. 5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한 출생신고 관련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출생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신고 기간 운영('22.5.9.~11.30, '23.7.17.~10.31.), 공단 연계 법률지원 실시

2) 추진내용과 성과

2024. 2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천광역시와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활성화 및 지역 법률복지 사각지대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력하여 사망신고 시부터 도움이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상속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등 상속 관련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1. 12월부터 2024. 12월까지 한정승인 사건 등 총 62건(87명) 접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진행하였다.

| 표 2-89 |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추진실적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건수(건)	12	36	10	4	62
인원(명)	17	52	14	4	87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출생신고 미비로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해 출생신고를 위한 가족관계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2. 5월부터 2024. 12월까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출생신고 관련 사건 총 27건(32명) 접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진행하였다.

| 표 2-90 | 출생 미신고 아동 법률지원 추진실적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건수(건)	13	13	1	27
인원(명)	16	14	2	32

3) 평가 및 발전 방향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부모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자 및 출생 미신고 아동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본적 인권 옹호를 함으로써, 법률구조의 공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영남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공급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체계, 소송구조에 집중된 운영 등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한계로 인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법률홈닥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12년 20명의 변호사 정식 채용을 시작으로, 2014년 40명, 2017년 60명, 2018년 65명으로 법률홈닥터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시·군·구청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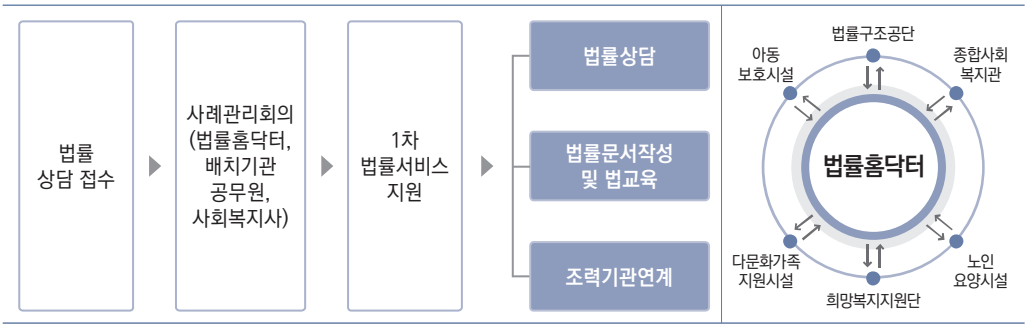
| 표 2-91 | 2024년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지역	배치기관
서울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서울협의회, 중랑구, 광진구, 원스톱 솔루션 센터, HUG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인천	인천강화군, 인천미추홀구, 인천협의회, 고양덕양구,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성남시, 하남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수원시협의회
대전·충청	충주시, 충북협의회, 대전광역시, 대전유성구, 대전동구,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광주·전라	익산시, 전주시, 광주광산구, 광주남구, 광주서구, 순천시
대구·경북	대구달서구, 대구동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중구, 경산시, 영주시, 포항시, 구미시
부산·경남	부산광역시, 부산남구, 부산사상구, 부산수영구, 부산해운대구, 울산광역시, 진주시, 창원시
강원	속초협의회, 삼척시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률홈닥터는 법률복지 전담 변호사로서 시·군·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각 지역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종합적인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99 | 법률홈닥터 업무 처리절차 및 조력기관 연계구조



법률홈닥터의 보다 전문적인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법률홈닥터 실무수습 및 직무교육', '법률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적 재난·위기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전담 법률홈닥터를 HUG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강화하였다.

2024년 법률홈닥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군·구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법률지원 유관기관(1,855개)에 포스터·리플릿을 배포하고, 법률홈닥터 탁상 달력을 제작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로스쿨 연계 홍보 프로그램에 법률홈닥터가 직접 참여하여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무실습 등을 진행하여 예비법률가를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도 추진하였다.

| 그림 2-100 | 법률홈닥터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탁상달력

2024년 법률홈닥터의 법률상담, 법교육, 유관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조력 등 법률서비스 제공 실적은 53,975건으로 최근 3년 평균(49,303건) 대비 9.5% 상회하였으며, 법률홈닥터 서비스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0.09점으로, 전년 90.00점 대비 0.09점 상승하여 2년 연속 '매우 만족' 이상 수준이었다.

| 표 2-92 | 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실적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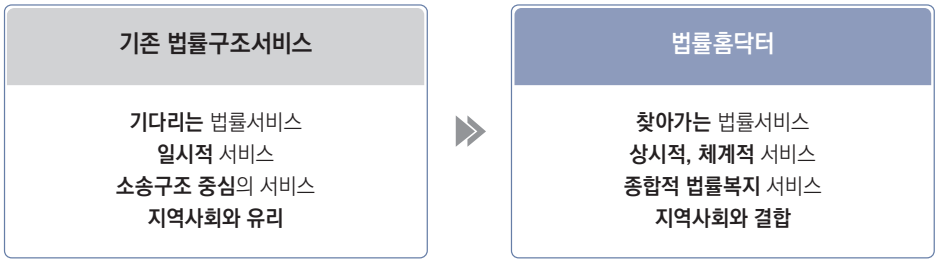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률지원 실적	37,663	39,361	55,439	59,201	56,145	47,172	41,500	47,637	46,296	53,975

* 법률지원 실적 : 법률상담, 법교육, 유관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조력

3) 평가 및 발전방향

그동안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가까이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와 함께 법률홈닥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법률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복지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2-101 | 법률홈닥터 도입 성과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권침해사건 조사를 위한 화상조사시스템 강화

인권조사과 검사 김보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0년 인권침해신고센터와 각 수용시설에 네트워크 연결망 및 화상모니터를 설치하여 조사관과 수용자 사이에 1:1 원격 화상면담이 가능하도록 한 원격조사시스템인 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전국 구금·보호시설에 관련 장비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고, 2024년에는 6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설치·교체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설치한 2대 외 전국 총 71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그림 2-102 | 화상조사시스템 활용장면



2)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담당 조사관이 화상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직접 수용자를 대면하여 진정 취지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기존에 원거리 수용자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출장조사만을 활용하여 진정 사건을 조사할 경우 상당 시간이 소요되던 점이 개선되어 수용자의 사건처리 만족도가 향상되고, 진정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에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화상조사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면전진정 제도는, 수용자가 구체적인 진정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면전진정 신청서'만 인권침해신고센터에 팩스로 제출하여도 신속한 화상조사를 통해 조사관을 대면하여 인권침해사실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되는바,

서면으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수용자나 원거리 수용자들이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법무행정에 대한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진정 등의 경우 화상조사를 통해 조사관의 구두 설명이나 안내만으로 진정 사유가 즉시 해소되는 경우도 상당해 신속한 진정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 표 2-93 | 연도별 화상조사 실적

(단위 :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적	354	462	602	567	559	918	777	899	1,169	1,233

2024년까지 법무부 소속 전국 교정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총 71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소년보호시설 1개소에 신규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설치된 화상조사시스템의 노후화를 점검하여 화상조사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계획이다.

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인권침해사건 처리

2024년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은 총 4,520건으로, 그 중 진정사건은 4,423건(전화 10건, 우편 3,094건, 인터넷 228건, 팩스 1,090건, 방문 1건), 인지사건은 97건이다. 2024년 처리한 인권침해사건은 총 4,223건(인용 및 구제 96건, 이첩 1,642건, 각하 2,080건, 기각 405건)이다.

교부허가 의약품 중 향정신성의약품 폐기 관리 절차 미흡, 바디캠 채증자료 등록대장·보호장비 사용심사부 작성 관리 미흡, 보호외국인 보관품 관리 소홀, 보호소년에 대한 징계기록 관리 부적정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금·보호시설 감독

사후적 구제 중심에서 선제적 인권침해 예방 중심으로의 변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심층 조사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개선에도 조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2006년부터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검찰청 구치감,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원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24년에는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정기 실태조사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통영구치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립법무병원 등 총 35개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하였다.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사항 파악을 위해 수용자 등(보호외국인, 보호소년 포함)을 상대로 설문조사(2024년 3,483명), 개별면담(2024년 658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점검 결과 및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기관 또는 실국본부에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중대한 인권보호조치 미흡 사례, 유사·반복되는 주요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그 이행 및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재점검하는 등 실태조사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 표 2-94 | 2024년 인권실태 점검현황

(단위 : 회)

점검기관	교정시설	검찰청 구치감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시설	합계
횟수	13	10	5	7	35

또한, 최근 수도권 소재 소년원을 중심으로 수용률이 급증하여 과밀수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원만한 수용관리를 위해 무분별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11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주제별·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여부 및 그 밖의 보호장비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 점검하였다.

특히 사전자료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장비 빈발 사용 기관 및 특이 보호장비 보유 기관을 선별해 총 5개 소년보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보호장비 사용내역 및 관리의 적정성 확인, 보호장비 사용 방법 등을 조사하는 등 소년원 내 보호소년들에 대한 친인권적인 처우를 위한 토대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라.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2024년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훈련, 검사·검찰수사관 대상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 직렬별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존에 시행해오던 인권교육 전반을 진단·분석하고, 교육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인권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 2-95 | 2024년 인권교육 현황

(단위 : 회)

교육기관	인권감수성훈련				맞춤형인권교육		외부인권강사 기관방문교육	기타	합계
	교정	검찰	보호	출입국	검사	검찰수사관			
횟수	9	3	4	3	3	10	39	17	88
인원	276명	75명	99명	66명	23명	132명	1,838명	547명	3,056명

마.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

2007. 8월부터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보호상황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년 하반기부터 인권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인권보호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에는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에 대한 인권보호상황평가를 실시하여 검찰 8개 기관, 교정 8개 기관, 범죄예방 10개 기관, 출입국 4개 기관 등 총 3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 업무 과정에서 정성과 배려를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격려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 10.)에 즈음하여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2024년에는 검찰 5명, 교정 5명, 범죄예방 2명, 출입국 2명 등 총 14명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인권침해사건 처리와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이 큰 조사관과 충실하고 성실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증진의 공이 큰 내부 강사를 격려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 2명(조사 1명, 인권교육 1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상 지원 강화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김도연, 사무관 이우람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2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도입하여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과 수사기관·법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24년 1월부터 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절차에서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게 되었고,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9명을 채용하여 배치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현실화를 위한 예산 약 9억원을 증액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진술조력 지원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고,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하고 2024. 7월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신규 배치하는 등 제도의 양적 확대에도 힘썼을 뿐만 아니라 '진술조력인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진술조력인 업무매뉴얼' 개정하고 진술조력인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등 진술조력인 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 표 2-96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피해자 국선변호사	19,336	19,903	22,755	25,487	26,007	38,446	39,161	37,150	37,605
진술조력인	1,203	1,381	1,722	2,226	2,684	4,184	3,822	4,231	4,517
합계	20,539	21,284	24,477	27,713	28,691	42,630	42,983	41,381	42,122

3) 평가 및 발전방향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이후 10년 이상 동결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가 피고인 국선전담변호인 수준으로 현실화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근·비상근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개선 T/F'를 통해 실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고, 상근 진술조력인의 배치기관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향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신규 진술조력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등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시스템 구축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강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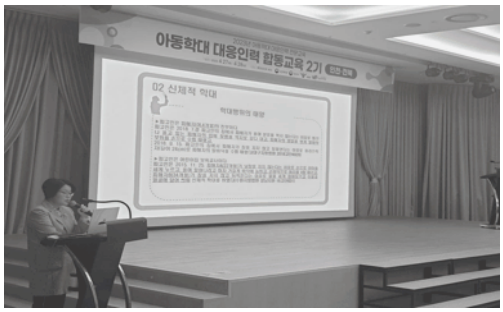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따라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보호자가 신변비관 등을 이유로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중대한 아동학대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에서 사후 대처 및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전방위적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의 공동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 표 2-9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 내용(2024. 12. 20. 공포)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 아동학대살해미수범에 대한 검사의 의무적 친권상실심판 청구 등 규정
-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규정 정비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 종사자 등 추가
-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 그림 2-103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시설위탁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감호위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4. 9월 대검찰청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간담회를, 2024. 12월에는 부산가정법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간담회를 각각 실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아동인권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하여 법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공동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교육과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유관기관, 특히 형사사법기관에 감호위탁 제도의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도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4. 12월 공포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충실히 정비함으로써,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다.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강성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장애인 차별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08. 4. 11. 법률 제정 및 시행 이후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6건의 시정명령을 발동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해소하였다.

또한 시정명령 제도의 실질화·활성화를 위하여 안건 세부사항 조사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이해당사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은 '장애'라고 하는 하나의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 수단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의 기본권과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차별행위 실태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8절 국제법무업무

1. 국제법무 역량 강화

가.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추진

국제법무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진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2019. 8월 국제상사분쟁에 있어 조정을 통해 도출된 당사자 간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에 관한 UN 협약(이하 "싱가포르조정협약")」에 서명하였다. 법무부는 국제상거래가 빈번한 우리 기업에게 효율적인 분쟁 해결 기회를 제공하고자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 이행법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상사분쟁에서 통상 중재가 분쟁 해결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나, 국가 간 중재 역량의 격차, 과다한 시간·비용의 소모 등 한계가 노정되자, 조정이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에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국제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따라 미국, 중국 등 55개국이 싱가포르조정협약에 서명하였고, 일본, 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위 협약을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조정에 의한 화해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근거 법령이 없어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행법률안 작성을 위하여 학계, 실무가 등 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법률 제정 T/F를 출범하였다. T/F는 국제조정 사례를 분석하는 등 국제상거래 종사자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이행법률안을 성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향후 업무추진 계획

월례 T/F 회의를 통해 조정상 화해에 대한 집행력 부여 방식 외에 집행 거부 사유와 직결되는 조정인의 자격, 의무 등 규정 여부, 유보선언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를 통해 입법안에 대한 학계, 실무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적의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 법률시장 개방 법제화 및 관리·감독제도 구축

국제법무정책과 주무관 백지애·실무관 김승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2016. 3. 2. 공포된 뒤, 같은 해 7. 1.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되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법 사무와 일부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3단계 개방은 2017. 3. 15. 미국, 2018. 12. 20. 베트남, 2019. 12. 12. 호주, 2020. 1. 1. 캐나다, 2021. 1. 1. 영국, 2021년 7월 콜롬비아로 확대되었다.

2024.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은 244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는 39건에 이른다(표 2-101 참고).

특히 2022. 11월에는 국내 로펌과 영국 로펌 간 최초의 합작법무법인이 설립인가를 받았고, 2023. 9월에는 한-미 합작법무법인이 설립인가를 받으며 3단계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2016년부터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이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방문, 관계인 간담회, 외국의 법률시장 개방 사례분석 등 정보를 수집하며 법률시장 개방 추세에 맞는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2023. 11월 한-영 FTA 개선 협상에서는 영국이 법률시장 추가개방과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며, 이를 계기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4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3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5월), 학계 전문가(6월)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0월에는 법률시장 개방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법률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표 2-98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현황

(단위 : 건)

구분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뉴질랜드
외국법자문사	177	41	12	10	2	1	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7	7	1	4	-	-	-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5년 한-미 FTA 개선협상 및 유사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에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

용역 진행중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제 발전의 방향성과 개선책을 모색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법률시장 개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동향을 세심히 살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심사업무에 대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법무지원과 행정사무관 김의석·공익법무관 이동건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14. 9월부터 청년법조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IAKL)와 공동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국제법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섭외해 청년법조인 대상 국제법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2020년부터 3년간(제6기-제8기)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운영되었다가 2023년(제9기)부터 다시 대면 강의로 진행되었다. 61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2024년(제10기)에는 청년법조인 국제실무능력 강화라는 프로그램 취지에 맞추어 강의 커리큘럼을 기존 16주에서 10주로 단축하였으며, 국제M&A,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등에 더해 국제조세실무, 무역구제와 같은 실무적합적인 강의들로 전면 재편성하고, 각 분야의 업계에서 유망하고 젊은 강사진들을 새롭게 섭외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2015년부터 해외진출 아카데미 수료생 중 우수자원을 해외 로펌 등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그 자리가 제한적이었고, 코로나 19 사태 전후 약 3년 간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2023. 1월부터 기존 강의 위주의 청년법조인 지원사업을 “실무 파견”을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한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신설하였고, 국제법무 실무연수 자리를 10개국 12개 도시의 엄선된 27개 자리로 대폭 확대하였다.

2024년 제1기 글로벌 펠로우십의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 면접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청년변호사 15명이 세계 각국의 기관으로 최종 파견되었고, 그 중 4명이 파견 국외 로펌으로부터 정규직 제안을, 1명이 글로벌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실무 파견자 중 약 33%). 법무부는 2025년 진행될 제2기 글로벌 펠로우십을 위해 미국, 독일, 브라질, 일본 등 신규 파견 국가를 확보하여 총 14개국 16개 도시 33개 인턴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4대 로펌 중 하나인 Mori Hamada & Matsumoto와 대형 로펌 City-Yuwa Partners가 실무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프로그램 최초로 미국, 대만, 홍콩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최종 선발된 청년변호사들은 2025. 3월부터 글로벌 로펌, 국제기구, 대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파견되어 국제실무경험을 쌓을 예정이며, 이번 기수에도 청년법조인들이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전문성을 기르고, 활동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글로벌 펠로우십은 해외진출 아카데미 및 해외 인턴 파견을 통해 국제법무 관련 전문지식을 배우고, 국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년변호사들의 파견 로펌 최초 정규직 채용이라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청년법조인의 취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법무부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법조인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 파견을 통한 실무 교육을 체계화하고, 아카데미 수료를 통해 해외로펌 또는 국제기구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이번 제1기 글로벌 펠로우십 성공 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년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국제법무지원과 검찰사무관 박다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국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기업의 법률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교수, 변호사 등 자문위원 213명)의 운영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에 영문계약서 검토, 현지 법령 해석 등의 전문적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법률자문 100선 사례집』과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글로벌 준법경영 가이드북』 등 총 27종의 자료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법률자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2,815건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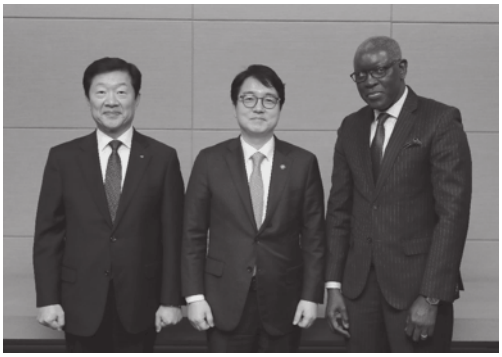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무역협회 기업현장지원실, 스타트업 글로벌성장실과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등 대상 온·오프라인 법률세미나 및 1:1 온라인 법률상담회를 진행하였는바, 총 148건의 오프라인 자문을 제공하였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해외 현지 법률설명회 및 간담회 행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였다. 2024. 5월 브라질 상파울루, 7월 베트남 하노이·홍콩,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해외진출기업대상 법률설명회와 1:1 법률상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준법경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4. 1월 세계은행 청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공동으로 『글로벌 준법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ESG를 주제로 세계은행, 대한상의, 코트라와 함께 공동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2024. 7. 1. 부터는 법률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법률지원을 더 많은 기업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 그림 2-104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세미나 및 상담회



법무부-세계은행-대한상의 공동 법률세미나
(2024. 1. 30.)



법무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동 1:1 법률상담회
(2024. 9. 30.)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 자문, 국내·외 법률설명회 및 1:1 오프라인 법률상담,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법률길라잡이 발간 등 다각화된 방식으로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향후 법률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해외진출기업이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자문과 1:1 법률상담 사례를 정리한 『법률자문 150선 사례집』 및 주요 진출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시리즈 발간을 통해 진출 기업들이 신흥 국가의 낯선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 전문학술지 및 연구자료 발간

국제법무정책과 주무관 신성빈·실무관 김승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국제통상 전문학술지인 『통상법률』을 창간하여 연 4회(2, 5, 8, 11월) 발간해오고 있으며, 권호마다 국제법 전문가의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창간호부터 2024년 현재 통권 제165호에 이르기까지 국제공법 및 국제거래법, 국제투자법 등에 대한 깊은 논의를 통해 국제통상법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 세계적 학술지로 도약하고자 영어 논문 투고가 용이하도록 발간 규정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2024년에는 두 편의 영어 논문을 포함한 총 28편의 원고가 투고되어 전년 대비 논문 투고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불어 2023년 편집위원 정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한 결과, 2024년에는 두 명의 신규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였다. 향후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법학교수회〉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추가로 게시할 예정이며, 논문 투고 가능성이 높은 학자·실무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 그림 2-105 | 통상법률 통권 제165호



또한 법무부는 2010. 7. 13. 영문 법률 계간지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을 창간한 이래로 2024. 12월 현재 통권 45호까지 발행을 이어오고 있다. 본 저널은 우리나라 법규, 정책을 영문으로 알리는 정기간행물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국내법 제·개정사항을 토대로 한국법률의 동향을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제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제도 및 판례, 새로운 정부정책 및 출입국소식 등도 다각도로 알려주고 있다. 본지를 통해 주한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자체 학술지 및 영문 저널의 발간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의 도입 및 이행에 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발행하여 실무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창간 30주년을 맞이한 통상법률은 특정 주제에 관련된 논문을 집중하여 수록하는 기획논단을 운영하는 등 학술지로서 위상을 제고하여 국제통상법 분야 연구자들에게 논문 발표의 장을

넓혀 해당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문저널은 2024년부터 구성을 전면 개편해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과 법무부의 신규 정책, 주목할 만한 판례 등을 더욱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가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내실화를 통해 독자층을 더 다양화할 예정이다.

2.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가. BIT·FTA 등 국제협정 성안 및 법률지원

국제법무지원과 행정사무관 심인혜·김의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투자·통상분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참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3. 8월 국제법무국이 신설되면서 구 국제법무과와 국제분쟁대응과에 흩어져 있던 협정 관련 업무를 신설 국제법무지원과가 통합하여 담당하면서 협정업무의 일원화와 그로 인한 국제규범 선진화의 시너지에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4년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간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 등 여러 협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 총 25회 참여하여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디지털, 분쟁해결 등 6개 유관 분야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체결 협정의 해석 등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타 부처의 자문 요청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총 32회 제공하는 등, 명실공히 정부부처의 법률자문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향후에도 법무부는 투자에서 통상에 이르는 광범위한 국제법무 분야에 걸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요 국제 회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과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관계부처의 법률지원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여 종합적 자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FTA와 BIT 등 협정의 제·개정 협상이 재개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각종 우리 정부의 국제 현안에 기체결 협정의 해석이 중요 쟁점으로 대두되는 등 국제법적 쟁점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축적된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적시에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 표 2-99 | 2024년도 법률자문 및 협상 참석 현황(총 57회)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	1. 18.	대한민국-영국 FTA 개선 1차 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2	1. 23. ~ 1. 25.	대한민국-영국 FTA 개선 1차 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3	2. 6.	대한민국-EU 디지털 통상협정(DTA) 제2차 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4	2. 19.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제2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5	2. 20. ~ 2. 22.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제2차 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6	3. 13.	대한민국-영국 FTA 개선 2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7	3. 25.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제3차 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8	3. 31.	대한민국-칠레 FTA 개선 9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9	4. 2. ~ 4. 4.	대한민국-칠레 FTA 개선 9차 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10	4. 8.	대한민국-조지아 EPA 제1차 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11	4. 11.	대한민국-조지아 BIT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12	4. 15. ~ 4. 17.	대한민국-조지아 EPA 제1차 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13	4. 18. ~ 4. 19.	대한민국-조지아 BIT 제정 협상 참석	외교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14	5. 14.	대한민국-조지아 EPA 제2차 협상 대비 관계부처 회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15	5. 20.	대한민국-모잠비크 BIT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16	5. 21.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17	5. 23.	대한민국-모잠비크 BIT 제정 협상 참석(화상)	외교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18	5. 23.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19	5. 29. ~ 5. 31.	대한민국-조지아 EPA 제2차 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20	6. 18.	대한민국-EU DTA 제4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21	6. 20.	대한민국-태국 EPA 제1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서비스)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22	6. 21.	대한민국-태국 EPA 제1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지재권)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23	6. 26.	최빈개도국(LDC) 졸업국 특혜연장 관련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24	7. 2.	대한민국-태국 EPA 제1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지재권)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25	7. 2. ~ 7. 4.	대한민국-EU DTA 제4차 공식협상 참석(화상)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26	7. 17. ~ 7. 19.	대한민국-인도 CEPA 제11차 개선협상 지원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27	7. 18.	대한민국-앙골라 양자간투자보장협정(BIT)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28	7. 22.	대한민국-조지아 EPA 회기간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29	7. 24.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양자간투자보장협정(BIT) 제7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30	7. 26.	대한민국-몽골 EPA 제3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협력)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31	8. 13.	대한민국-말레이시아 FTA 제1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디지털)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32	8. 22.	대한민국-몽골 EPA 제3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지재권)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33	8. 29.	대한민국-조지아 EPA 관련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34	8. 30.	대한민국-EU DTA 관련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35	9. 12.	대한민국-태국 EPA 제2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지재권)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36	9. 10. ~ 9. 12.	대한민국-EU DTA 제5차 협상 참석(화상)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37	9. 10. ~ 9. 13.	대한민국-몽골 EPA 제3차 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38	9. 25. ~ 9. 27.	대한민국-태국 EPA 제2차 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39	9월 중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안) 협상 지원	외교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김의석
40	10. 15. ~ 10. 17.	대한민국-EU 디지털 DTA 제6차 협상 참석(화상)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41	10. 17.	제40차 통상추진위원회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42	10. 21.	대한민국-말레이시아 FTA 협정문 검토의견 송부(디지털)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43	10. 23.	대한민국-몽골 EPA 회기간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지재권)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44	10. 22. ~ 10. 25.	대한민국-말레이시아 FTA 제5차 협상 참석(화상)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45	11. 8.	대한민국-영국 FTA 개선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디지털)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46	11. 11.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 참석	산업부	과장 신동환 검사 이성직
47	11. 14.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 안건 관련 대응방안 자료 송부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48	11. 11. ~ 11. 14.	대한민국-영국 FTA 제3차 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49	11. 15.	대한민국-몽골 EPA 제4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지재권)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50	11. 18.	대한민국-몽골 EPA 제4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협력)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51	11. 25.	대한민국-몽골 EPA 제4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지재권)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52	11. 26. ~ 11. 29.	대한민국-몽골 EPA 제4차 협상 참석(화상)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53	11. 27. ~ 11. 28.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양자간투자보장협정(BIT) 제7차 협상 참석	외교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54	12. 3.	대한민국-태국 EPA 제3차 협상 대비 검토의견 송부(지재권)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55	12. 4.	대한민국-태국 EPA 제3차 협상 대비 제안문안 송부(지재권)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56	12. 17. ~ 12. 19.	대한민국-태국 EPA 제3차 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57	12. 30.	대한민국-몽골 EPA 관련 몽골측 질의에 대한 답변 송부(지재권)	산업부	사무관 김의석

나. 국제법무교류 및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국제법무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진아·교위 정광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외국 법조인들과의 교류 및 법무협력협정, 상호 자료교환협정 체결과 같은 실무적 교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아가 주요 개발도상국에 국제거래규범 및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법제도를 소개하여 입법 작업을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정비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므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을 위한 법제정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의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은 개선이 필요한 법의 제·개정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법제 개선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격을 제고하며 우리 기업에 친숙한 해외 투자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캄보디아의 조정 관련 법제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 7월 신생기구인 캄보디아 국가분쟁해결기구(NADR : National Authority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포함한 법무부 등 관련기관 현지 실사를 통해 캄보디아의 사법체계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현황을 파악하였고, 2024. 9월에는 캄보디아 법무차관 등 고위급 초청을 통해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실시를 합의하였다, 또한 NADR 소속 조정인 및 사무국원 등을 초청하여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기관 견학을 실시하였다. 2024. 11월에는 NADR의 효과적 운영

방안 등을 주제로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초안 작성 및 해외사례 비교법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 그림 2-106 | 법무협력사업 및 법제정비지원사업



캄보디아 조정인 초청교육



캄보디아 현지 세미나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4. 3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조정인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2024. 9월에는 NADR 소속 조정인 및 사무국원을 초청하여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국 법무부는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양국 공동연구를 통해 2025년 내 조정기본법 초안을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024. 11월에는 NADR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현지 세미나를 진행하여 캄보디아 내 조정 제도 확립에 기여하였다. 법무부의 법제정비 지원 결과,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해당 국가의 법제 정비가 이루어지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편의를 더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 우수성 등을 국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국가 및 법제 분야를 확대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법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역할 수행

국제법무정책과 공익법무관 양동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2012. 12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약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다. 위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절차와 재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이행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위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중앙당국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탈취부모와 해외 중앙당국의 연결, 탈취아동의 한국 입국 사실 확인 및 소재 파악 등 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기존 가입국이 신규 가입국의 가입을 수락해야 양국 간 발효되는데, 2025. 2월 현재 기존 가입국 103개국 중 66개국이 우리나라의 가입을 수락하였고, 지속적으로 수락국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 누적된 지원 신청 접수 건수는 2025. 2월 현재 총 125건을 기록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아동을 탈취당한 부모가 국내 법원에 아동반환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재판예규로 인해 유아인도 강제집행에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2. 6월 미(美) 국무부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설명하였고, 2023. 6월부터 법무부, 외교부, 법원행정처, 아동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 T/F를 발족하여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4. 1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문구의 삭제, 집행관의 권한 범위 명확화, 집행보조자 참여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가 제정되었다. 다만, 예규의 개정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행법률 개정 등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다른 방안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

3.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참여

국제법무정책과 전문위원 이재원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 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국가적 민·상사 규범의 통합에 대한 수요 역시 병행하여 증대하고 있다. 국제거래의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국내 법제의 정비와 선진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규범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통일화하는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 민·상사 규범의 성안 과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요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ional Law), 국제해사기구(IMO :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등 다수의 주요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동시에, 논의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국내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24년 법무부는 UNCITRAL 본회의 및 5개 실무작업반 회의(7회), HCCH(2회), IMO(1회) 등 다수의 국제회의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UNCITRAL 제2실무작업반 제79차 회의(2. 12. ~ 2. 16.)에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초신속 중재' 규정 등을 논의하였고, IMO 법률위원회(4. 22. ~ 4. 26.)에서는 선원의 공정한 대우와 허위 선박 등록 등과 관련한 논의와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개진하였다. 또한, HCCH 제5차 국경 간 아동 보호 및 가족법에 관한 몰타 회의(9. 24. ~ 9. 27.)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활용 방안 등 다양한 국제 민·상사 규범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전개하였다.

2024년에 법무부는 국제조정을 통해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안을 2025년 내에 완성하고자 전담 T/F 운영을 재개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총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입법 방식, 목적·적용 범위·정의 규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10. 29. ~ 10. 30.)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 ADR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ADR 분야의 국제적 협력과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꾸준히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제사회의 규범을 정립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국제 민·상사 규범의 성안과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정비 및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더 나아가, 각종 포럼과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ADR 전문가들의 교류와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국제사회 속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2025년, 법무부는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 개선을 위하여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안의 완성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법률 개정을 위한 T/F 구성 및 논의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국제규범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제거래법 연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주요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민·상사 규범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고, 체계적으로 국내 법제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촉진, 국내법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표 2-100 | 2025년도 국제 민·상사규범 관련 국제회의 일정 및 안건

기구	회의명	주요 안건	일정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 (UNCITRAL)	본회의	실무작업반 활동보고 및 연구결과 채택, 향후 연구 주제 논의	(제57차) 6. 24. ~ 6. 26.
	WG1	창고증권 관련 모델법 및 입법지침 초안 검토	(제42차) 9. 29. ~ 10. 3.
	WG2	기술 관련 분쟁해결 및 조정에 관한 모델조항 초안 논의	(제81차) 2. 3. ~ 2. 7. (제82차) 10. 13. ~ 10. 17.
	WG4	계약에서의 AI를 활용한 자동화 논의	(제69차) 3. 24. ~ 3. 28. (제70차) 10. 20. ~ 10. 24.
	WG5	국제도산의 준거법, 민사적 자산 추적 및 회수 관련 법적 쟁점 논의	(제66차) 5. 12. ~ 5. 16. (제67차) 11. 10. ~ 11. 14.
	WG6	유통가능한 화물증권 관련 협약 초안 성안	(제46차) 3. 17. ~ 3. 21. (제47차) 12. 15. ~ 12. 19.
헤이그국제사법회의 (HCCH)	-	국제가족이주 및 2010 워싱턴 선언	4. 2. ~ 4. 5.
국제해사기구 (IMO)	법률위원회	선원의 공정한 대우, 허위선박등록 등 논의	(112차) 3. 24. ~ 3. 28.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총회	AI, 디지털 자산, 우주 관련 자산 금융 등 논의	12월 중

4.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가. '중국투자자 ISDS 사건'의 판정선고 및 후속조치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양준열·행정사무관 김영옥

1) '중국투자자 ISDS 사건'의 경과

중국 국적인 민OO(이하 '청구인')은 2020. 8. 3. 대한민국이 한-중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 2,641억 원 이상(최초 청구액 약 1조 9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에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중국 내 OO빌딩(청구인 주장 시가: 약 1조 5,000억 원)을 매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에 ㈜OO인베스트먼트(이하 'OO Korea')를 설립하여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 이익을 공여한 후, 3,80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위 대출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자 우리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하였고, 청구인은 위 담보권 실행을 막기 위하여 주주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7월 청구인에 대한 패소판결을 확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거액의 부실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대가를 공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징역 6년, 확정).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은 ISDS 절차에서 ① 본인이 설립·보유한 OO Korea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민사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고, ②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BIT상 사법거부 및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이므로, 한-중 BIT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투자의 불법성), ②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③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특히 투자의 불법성과 관련해서는, 한-중 BIT에서 보호하는 투자는 '투자유치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투자'로 제한되고, 청구인의 OO Korea 설립 및 주식 취득은 청구인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 이익을 공여하고 3,80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받아 중국 내 OO빌딩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적 계획의 일부에 불과, 따라서 이는 대한민국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 투자이므로 BIT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세히 반박하였다.

2) 중재판정 및 의의

양측은 2023. 9월까지 서면 공방을 진행하고, 같은 해 11월 구술심리를 거쳐, 국내 시간으로 2024. 5. 31.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하였다. 한-중 BIT 해석상 '투자 사용의 목적'은 국내법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청구인의 진술 등 증거관계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투자는 그 목적의 불법성이 인정되고, 정부 측 주장과 같이 OO Korea는 부실대출을 받을 위법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므로 그 주식은 한-중 BIT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다른 관할 및 본안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정부의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1,26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본 사건은 양측의 4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하여 최초로 전부 승소한 ISDS 사건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청구인과 같이 위법한 투자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외국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제투자 활성화 및 전 세계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바,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3) 청구인의 판정 취소신청 제기

2024. 9. 28. 청구인은 위 중재절차를 진행하였던 ICSID에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판정 취소절차를 개시하였다. ICSID 협약 제52조는 5가지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①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②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③ 중재인의 부패, ④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⑤ 이유불비를 그 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중재판정이 앞선 5가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정부와 청구인 측은 취소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를 진행할 예정인바,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내·외 대리인단과의 협의, 서면검토, 전략 및 대응논리 개발 등 사건 대응을 철저히 수행하여 국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나. '메이슨 ISDS 사건'의 판정 후속조치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민경원·행정사무관 김정훈

1) '메이슨 사건'의 경과 및 판정선고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하 '청구인')은 2018. 9. 13. 대한민국이 한-미 FTA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화 약 2억 달러(약 2,7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舊 삼성물산(약 300만 주) 및 삼성전자(약 8만 주)의 주주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에서 박근혜 前 대통령, 문형표 前 복지부장관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해 한-미 FTA상 최소기준대우,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청구인으로 하여금 舊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은 본건에서 문제되는 정부의 행위가 FTA 소정의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고, 청구인이 정부의 FTA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2024. 4. 11. 관할 유무와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인에게 미화 32,030,876달러(한화 약 440억 원) 및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였고, 다만 삼성전자 주식 관련 손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및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2) 정부 측 판정 취소소송 제기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관할을 부당히 인정하였고, 이는 본건의 법정중재지인 싱가포르의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4. 7. 11.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에 5가지의 취소사유를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먼저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과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데,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① 정부의 공식적인 조치에 포함되지 않고, ② 정부의 개입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FTA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손해만을 ISDS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주식 중 약 64%는 케이먼제도 국적의 케이먼펀드가 소유하고 있을 뿐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64%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③ FTA 소정의 투자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④ 실제 소유자인 케이먼펀드를 대신해 제3자의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청구적격이 없어 FTA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내 법원 민사 판결문 증거제출 신청을 기각하고 국내 법원 형사 판결문 증거제출 신청을 위한 절차종료 유보신청 역시 기각하였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⑤ 싱가포르 중재법상 '중재판정부의 자연적 정의규칙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개선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양준열·행정사무관 김영옥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이성직·행정사무관 심인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ISDS 제도개선을 위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의제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등, ISDS 제도 개선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4년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7차·제48차·제49차 공식 회의, 제7차·제8차 회기 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 국제투자분쟁 자문센터 운영회의 등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였고, 총 4회의 의제 검토 의견서 및 2회의 국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24. 3. 7. 벨기에 정부가 주최한 제7차 회기 간 회의에서 연사로 참여하여 'ISDS 절차규칙 및 범분야 이슈' 중 손해, 비용, 절차분리를 중심으로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24. 10. 30. 개최된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에서는 ISDS 절차의 투명성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경험을 발표하는 등 관련 국제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여 ISDS 제도개선 논의 및 우리 정부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법무부, UNCITRAL, 국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공동 주최

2) 평가 및 발전방향

현재 UNCITRAL 제3실무작업반에서는 상설법원, 상소체제, 절차규칙 개선 등 ISDS 제도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UNCITRAL 본회의 및 제3실무작업반 공식회의 등 ISDS 제도개선 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ISDS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표 2-101 | 2024년도 회의 참석, 검토의견 제출 및 국제세미나 발표 현황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	1. 5.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7차 회의 의제 검토의견 제출	외교부	검사 양준열 검사 이성직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박소영 사무관 김영옥 사무관 심인혜
2	1. 22. ~ 1. 26.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7차 공식회의 참석	외교부	검사 양준열 검사 이성직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박소영
3	3. 7.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7차 회기 간 회의 발표(화상)	외교부	사무관 박소영
4	3. 15.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8차 회의 의제 검토의견 제출	외교부	검사 이성직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박소영 사무관 김영옥 사무관 심인혜 법무관 신승민
5	4. 1. ~ 4. 5.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8차 공식회의 참석	외교부	교수 이재민 검사 이성직 사무관 김영옥 법무관 신승민
6	6. 10.	UNCITRAL 제57차 본회의 의제 검토의견 제출	외교부	검사 양준열 검사 이성직 사무관 김영옥 사무관 심인혜
7	8. 30.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9차 회의 의제 검토의견 제출	외교부	검사 양준열 검사 이성직 사무관 공자영 사무관 심인혜
8	9. 23. ~ 9. 27.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9차 회의 참석	외교부	검사 양준열 사무관 공자영 사무관 심인혜
9	10. 24. ~ 10. 25.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8차 회기간 회의 참석(화상)	외교부	검사 양준열 사무관 공자영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0	10. 30.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발표	법무부	검사 양준열
11	11. 7.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절차규칙 초안 관련 국가의견서 제출	외교부	검사 양준열 검사 이성직 사무관 공자영 사무관 심인혜
12	12. 2. ~ 12. 4.	제1차 국제투자분쟁해결 자문센터 운영회의 참석	외교부	사무관 박다혜
13	12. 20.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분쟁의 예방 및 완화 툴킷 초안 관련 국가의견서 제출	외교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법무관 송용진

| 그림 2-107 | ISDS 제도개선 관련 국제세미나 발표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7차 회기간회의
(2024. 3. 7.)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2024. 10. 30.)

라. 지자체·해외진출 우리기업 대상 국제투자분쟁 예방 적극 지원

국제법무지원과 행정사무관 심인혜·공익법무관 송용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해외투자 유치가 점증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ISDS 제기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ISDS 사건은 일단 제기되면 최대 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백억원의 국부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정보수집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23. 8월 국제법무국 신설 시 국제투자분쟁(ISDS)의 대응과는 별도로 '예방' 업무를 독립·분리하여 국제법무지원과가 컨트롤타워를 전담하도록 체제를 개편하였다. 국제법무지원과는 기존에 교육에 국한되었던 예방업무를 확장하여, ① 정부부처·기관 등 법률지원 ② 협정업무 실질화 ③ 대외협력 재개 ④ 훈령 실질화 등으로 다각화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정부부처·기관 법률지원의 경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국제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수요를 조사하였다.[1] 파악된 사안에 관하여는 사안의 성격 및 규모 등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여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ISDS 대응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력 및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ISDS 진단 및 예방 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 책자를 제작하였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강의자료를 제작, 2024년 하반기 4곳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KOTRA, 한국전력)을 방문하여 국제투자분쟁 진단 및 예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② 지난 10년 간의 ISDS 피소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정리하는 한편, 위의 법률지원 과정에서 파악한 주요 쟁점을 ISDS의 근거법령인 BIT, FTA 투자챕터 협상에 활용하여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ISDS 예방과 협정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옴부즈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재개 및 강화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고충 접수창구인 KOTRA 옴부즈만과의 ISDS 진단 및 예방 세미나('24. 11.)를 계기로, 법무부-산업부·옴부즈만 간 '국제분쟁 리스크 관리 TF'를 개최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료 공유 등 협력을 정례화하였다.

④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가능 사안 통보의무"[2]를 책자에 안내하고 각종 세미나에서 적극 홍보하여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인지된 외국인투자자의 고충이 분쟁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법무지원과는 최근 UN 등 국제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분쟁 예방 및 조기 완화의 중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2024년 한해 ISDS 예방협력 체계 개선, 세미나 개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25년에도 더욱 광범위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ISDS 예방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협정업무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ISDS 예방의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적인 예방업무 추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ISD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부처·기관별 주요 국제법무 및 국제분쟁(소송·중재 등) 현황 파악 협조 요청 공문 총 63곳 대상으로 발송(10. 4 ~ 10.) 및 필요부처에 다수 법률지원 제공

2)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대통령 훈령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단장(법무실장)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7조)

5. 정부부처·지자체 등 국제소송 및 법률지원

가. 정부 관련 국제소송 및 국제법무현안의 법률지원

국제법무지원과 행정사무관 황현준

1) 업무 개요

최근 우리 정부·지자체·공기업 등과 관련된 각종 국제분쟁이 증가하여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전문적 대응·관리체계 확립이 조속히 요구되었다. 이에 2023. 8월, 법무부는 부처·지자체의 국제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관련 법률자문을 전담하는 부서인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하였다.

법무부는 2024. 12월 기준 총 17건의 주요 국제소송을 직접 수행하며, 소가 합계 약 3.2억 원의 사건들을 자문·관리하고 있다. 특히 소가 1,000억 원 이상의 사회적 파급효 높은 주요 국제소송 사건의 경우, 검사·사무관(변호사)이 직접 소송수행자로 나서서 ① 국외 증거 수집·제출, ② 서면·PPT자료 작성, ③ 법정 변론 등을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추진 성과

대표적인 성과로 2024. 6월, 법무부가 방위사업청을 지원하여 약 6,900억 원 규모의 F-35 전투기 관련 방위산업 국제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이끈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소송은 영국 방산업체 블렌하임(Blenheim)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F-35 전투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중개인으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며 약 6,9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위사업청과 함께, '본건은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미국 법원의 관할권이 없어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손해배상에 관한 블렌하임의 주장 또한 부당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약 9개월간의 협력의 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블렌하임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전부 승소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법무부는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국제소송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지원하여 소송 수행, 증거수집 등을 담당, '정부의 로펌' 역할을 수행하였고, '넷플릭스', '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국내 조세당국의 과세를 거부한 사건에도 소송수행자로 투입되어 국제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외국 판결, 사례, 입법례를 분석하며 소송을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직접 소송 수행 중인 17건의 국제소송 이외에도 10여 개 정부 부처 관련 50여 건의 소송 등을 자문 및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된 법률 쟁점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매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유관기관과 화상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국제공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제소송들의 경우, 국내 및 외국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내부 전문인력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들에 맞서 법정 변론, 준비서면 작성, 증거수집 및 현출, PPT 시연 등 다양한 소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 향후 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각종 국제소송·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각 사건 관리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법무 DB를 강화하여 국제소송 대응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부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제9절 교정업무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증축

복지과 시설사무관 정민수

1) 추진배경

2016년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행위에 대해 위헌을 결정함에 따라, 교정본부는 1인당 적정 수용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교정시설 신축·이전 및 수용동 증축 등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2016. 12. 29. 결정 -	국가는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교정본부는 2024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740억 원을 편성하고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과밀 수용 해소에 기여하였다.

| 표 2-102 | 2024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 현황

구 분	기 관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24년 예산 (백만원)	비 고
이전	원주교도소	2014	2025	157,665	38,044	공사
	전주교도소	2012	2027	187,404	3,147	설계
	창원교도소	2018	2028	234,000	6,775	설계
신축	경기북부구치소	2020	2027	114,357	1,117	설계
	화성여자교도소	2020	2025	72,301	5,278	설계
	태백교도소	2022	2028	200,127	7,848	설계
	남원교도소	2022	2027	72,936	1,730	설계

구 분	기 관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24년 예산 (백만원)	비 고
수용동 증축	울산구치소	2024	2025	8,126	3,160	공사
	제주교도소	2024	2027	10,083	1,947	설계
	진주교도소	2024	2025	6,581	1,560	공사
	군산교도소	2024	2025	6,592	1,560	공사
	여주교도소	2024	2027	7,133	1,861	설계

2024년에는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 및 영월·춘천·청주여자교도소 유휴부지 내 수용동 증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351명 분의 신규 수용공간을 확대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 그림 2-108 | 교정시설 조성 현황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공정율 53.7%)



영월교도소 수용동 증축



춘천교도소 수용동 증축



청주여자교도소 수용동 리모델링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2025년 국유재산관리기금 920억 원을 편성하고 교정시설 신설·이전 및 수용동 증축 등 교정시설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신규 수용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표 2-103 | 2025년 국유재산관리기금 편성 내역

구 분	기 관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25년 예산 (백만원)	비 고
이전	원주교도소	2014	2025	157,665	51,521	공사
	전주교도소	2012	2027	187,404	2,030	설계
	창원교도소	2018	2028	234,000	2,260	설계
신축	경기북부구치소	2020	2027	114,357	953	설계
	화성여자교도소	2020	2025	72,301	100	설계
	태백교도소	2022	2028	200,127	5,417	설계
	남원교도소	2022	2027	72,936	1,300	설계
수용동 증축	울산구치소	2024	2025	8,126	3,160	공사
	제주교도소	2024	2027	10,083	1,947	공사
	진주교도소	2024	2025	6,581	1,560	공사
	군산교도소	2024	2025	6,592	1,560	공사
	여주교도소	2024	2027	7,133	1,861	공사
	순천교도소	2025	2027	8,768	2,672	공사
	인천구치소	2025	2027	19,450	5,078	공사
	서산지소	2025	2027	17,915	5,520	공사
	논산지소	2025	2027	8,231	3,815	공사

나. 장애인의 자율적인 의사표현 지원

복지과 교정관 이동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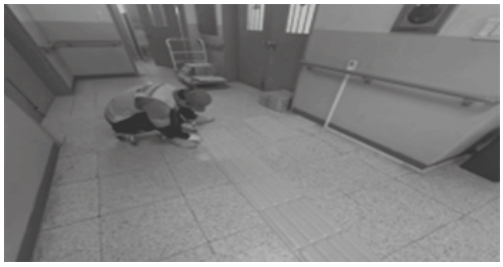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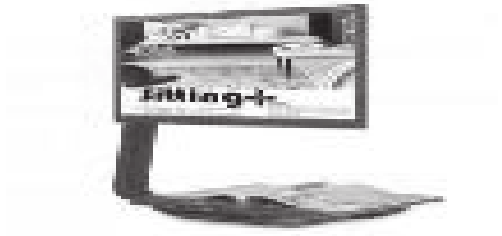
1) 추진배경

엔데믹 이후 경제활동 증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등으로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장애인 수용자 역시 증가하였다(2022. 10월 979명 → 2024. 10월 1,164명). 그러나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 같은 인적 지원에 비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물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물적 지원 강화 및 효율적인 인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자율적인 의사표현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교정본부는 장애인의 자율적인 의사표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관련 예산 약 4억 원을 확보하였다. 시·청각장애인이 다수 수용된 5개 교정기관에서 장애인의 신고·진술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핸드레일, 점자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였고, 심리적 안정감 형성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인테리어를 조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수용자의 원활한 의사표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54개 전 교정기관에 도서확대기와 음성증폭기를 구비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 그림 2-109 | 장애인 신고·진술 접근성 강화

<table>
<tr><td>  </td><td>  </td></tr>
<tr><td>핸드레일 및 점자 블럭 설치</td><td>출입문 문턱 제거</td></tr>
<tr><td>  </td><td>  </td></tr>
<tr><td>도서확대기</td><td>음성증폭기</td></tr>
</table>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다. 가석방 확대 및 심사 내실화

분류심사과 서기관 박경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교정본부는 모범수형자 및 환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는 사회의 감정, 국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제한 심사를 하였다. 또한, 수형자의 개선의지 및 심리상태, 사회복귀 준비상태,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가석방 심층면접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내실있는 가석방 심사를 통해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표 2-104 | 가석방 심사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비심사인원	55,407	63,155	71,364	72,319	80,055
신청인원	12,203	13,035	13,794	14,214	16,401
허가인원	7,911	9,390	10,310	9,525	11,177

| 표 2-105 | 가석방 심층면접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 분	추천인원	실시인원	실시율
2022년	1,153	476	41.3%
2023년	1,260	518	41.1%
2024년	1,217	541	44.5%

2) 평가 및 발전방향

가석방을 통한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전환함에 따라 구금생활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켰으며, 심화되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도 기여하였다. 교정본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안전망 확보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라. 교도작업 연계형 직업훈련과정 시행

직업훈련과 교정관 서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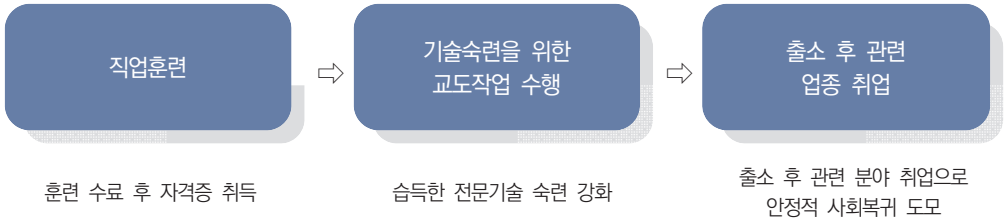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변화하는 산업전망과 취업수요에 맞춰 출소 후 수형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과정에 맞춤형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을 연계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신설 및 시행하였다.

2) 추진경과

2024년 서울남부교도소 등 5개 기관에서 냉난방기 청소·청소대행(바닥 왁싱 등) 교도작업 연계 실용직업훈련을 수형자 160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고 훈련 수료 후 해당기관 운영지원작업(시설보수)에 투입하여 자체 냉난방기 청소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목포교도소에 용접 직업훈련을 신설(양성훈련 20명, 숙련훈련 10명)하여 용접 훈련생 10명이 지역 소재 외부 조선소 통근하여 선박 부속품을 용접하는 교도작업 연계형 직업훈련과정을 시행하였다.

| 그림 2-110 | 교도작업 연계형 직업훈련 흐름도



3) 정책성과 및 향후계획

해당과정은 기술 습득만이 아닌 훈련과 연계된 교도작업 시행으로 숙련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으로서 출소 후 관련 직종 취업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훈련받은 기술을 전문화하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도작업 연계하는 과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림 2-111 | 교도작업 연계형 직업훈련과정



냉난방기 세척 작업



냉난방기 세척 작업



목포 용접과정 외부 기업체 현장



목포 조선소 외부통근 교도작업

마. 직업훈련과정 학점은행제 도입 및 시행

직업훈련과 교정관 서호성

1) 추진배경

산업수요 변화를 반영한 훈련 형태 등 직업훈련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기존 전문기술 교육(자격증 취득) 위주의 직업훈련과정에 지식기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2) 추진경과

2023년 하반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9개 기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교육기관 평가인정 심사 신청 및 14개 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상반기 수형자 168명을 대상으로 학점은행제를 최초 시행하여 훈련과정을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정책성과 및 평가

직업훈련과정 학점은행제 도입으로 학업 포기자나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게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공적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출소 후 학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직종 취업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그림 2-112 | 직업훈련과정 학점은행제 도입



서울남부교도소 패션융합과정 훈련실



서울남부교도소 패션융합과정 학과 교육
(패션비즈니스 학과)

2.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접견 제도 개선

보안과 서기관 정희동

1) 추진 배경

2023. 12. 11.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를 개선하여 시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접견수요가 대폭 증가하였고, 미결수용자 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기관을 중심으로 민원인들이 접견 예약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접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용자 접견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 추진 내용과 성과

2024. 7. 12.부터 각 기관별 자체 계획안에 따라 전국 교정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접견 예약 필수제 개선안을 시행 중이다.

【접견 횟수 증가】
- 기관별 회차 간격 조정을 통한 추가 접견회차 확보
- 접견 조기 마감 기관 접견 시간 단축 운영 시행

【접견 기회 확대】
- 민원인당 예약가능 기간 내에 예약 가능 횟수 3회 제한, 1일 1회(공통)
  - 수용자 가족은 기간 내에 예약 가능 횟수 제한 없음
- 접견예약 후 당일취소 시 패널티 적용
  - 예약을 미리 취소하지 않고, 접견을 하지 않은 경우 : 2주
  - 당일 접견 예정시간 2시간 이내에 접견을 취소한 경우 : 1주
- 동반 접견 등 접견 가능 인원 확대(3명→5명)
  - 기존 코로나19로 인하여 줄어든 동반 접견 가능 인원을 일상생활이 회복되면서 5명으로 확대

【민원인 편의 증대】
- 접견 예약 접수기간 변경(11일→7일)
- 교정민원 콜센터 회선 확대(120회선→180회선)

【변호인접견 개선】

- 변호사 신분 확인절차 도입 및 예약 편의 시스템 개선
  - 수용번호를 알지 못하여도 '0000'을 입력하여 예약 가능
- 온라인 접견 예약 마감시간 연장
  - 익일 오후 잔여분에 한하여 18시까지 예약 가능(기존 16시 마감)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팀사무실, 작업장 등에 접견실을 추가 증설하고 유·무선 태블릿 기기 활용 등을 통하여 수용자의 접견교통권 보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도입 할 예정이다.

나.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구축·운영

보안과 교정관 문준영

1) 추진배경

교정본부는 사회적 처우 확대에 따라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수용자 처우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전국 교정시설 총괄 지휘체계 구축 및 다중 감시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상황관리 업무와 관제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었고 물적 계호를 보다 강화하고 교정시설 외부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긴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력을 확보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정행정 확립에 기여하였다.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구축 개요】

- (장소)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106호
- (주요업무) 교정 통합 관제시스템 운영 및 상황관리 업무|
- (소요예산) 약 2억 5천
- (준공일시) 2024. 7월
- (근무인원) 9명(일근 및 교대)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정(법무부 훈령 제1563호)】

- 주요 교정사고와 각종 재난상황 대비 및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한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근거 마련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는 지방교정청 상황실, 소속기관 중앙통제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각종 교정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에 일원화된 지휘체계 구축으로 교정사고 예방에 앞장설 것입니다.

다. 교정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보안과 교정관 문준영

1) 추진배경

교정본부는 외부의료시설 수용자 도주 사고 등 교정사고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물적 계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실질적인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교정 전용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지방교정청 상황실, 교정시설 중앙통제실에 교정 전용망을 설치하여 수용자 계호 역량을 강화를 실현하였다.

【고성능 웹캠 도입】

- (주요내용) 자체 서버 기반으로 개선하여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영상관제 시스템 도입
- (도입일시) 2024. 1월
- (도입대수) 전국 교정기관 270대 운영

【호송 차량 위치추적 관제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전국 교정기관 이송 및 출정 차량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및 영상전송장치를 통하여 내부 현황 파악 및 교정사고 예방
- (도입일시) 2024. 10월
- (도입대수) 총 107대 운영(14개 교정기관 1차 시범 실시)

【실시간 네트워크 바디캠 도입】

- (주요내용) 교정시설 외부에 나가 있는 수용자의 실시간 영상계호 장비
- (도입일시) 2024. 10월
- (도입대수) 전국 교정기관 100대 운영

3) 향후 추진계획

교정 통합관제시스템을 점차 확대·보급하여 인적계호 중심에서 물적계호 중심으로 점차 전환하여 선진 교정행정 발전의 기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 교정정보 데이터 시각화 구현 및 활용계획

교정정보빅데이터팀 교정관 김동욱

1) 추진배경

법무부에서 교정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분석·시각화하여 교정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회의체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교정행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간의 상관성과 경향 파악을 위해 시각화를 활용함으로써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 교정정책 방향 설계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교정정보 데이터 시각화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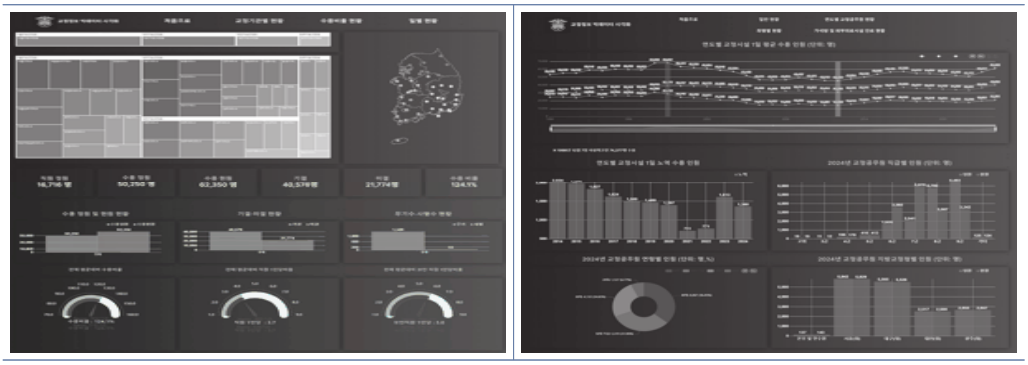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교정정보 데이터의 시각화 구현 및 활용을 위해 신규 시각화 서버를 도입하고, 주요 교정정보 데이터를 DB로 연계·구축하였다. 주요 교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시각화 필요통계 40여 종*을 개발하였으며, 시각화 자료는 기존의 막대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등 전통적인 시각화 자료뿐만 아니라, 히트맵, 트리맵, 워드클라우드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시각화 기법으로 차트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데이터 간 상관성과 경향 등을 쉽게 파악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데이터 연계를 통해 매일매일의 교정정보를 즉시 반영하여 오전 8시 이전에 직관적인 시각화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교정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용(전체/기결/미결) 현황, 특이사범 현황, 기관별 직원 및 수용 현황, 수용 비율 현황, 접견/출정 현황, 심리치료/상담 현황, 기타 통계연보 등 일일·월간·연간 통계로 구성

| 그림 2-113 | 교정정보 데이터 시각화 구현 현황



3) 향후 추진계획

교정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정정보시스템에서 연계·운영하고, 공개 가능한 시각화 자료에 대해서는 북미, 유럽 등에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수준으로 교정본부 누리집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교정정책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국민 맞춤형 통계정보서비스를 적극 발굴·제공하여 국민들이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마. 우송도서 사전등록제 시행

사회복귀과 교정관 서기동

1) 추진배경

우송도서를 통한 금지물품 반입 사례가 연간 약 2,000건에 이르고, 발송인 신분 확인 불가한 경우도 약 4,000건에 이르렀으나 신분 확인 불가 등으로 금지물품 반입에 대한 제재 및 도서 반송의 어려움이 있어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우송도서 발송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송도서 사전등록제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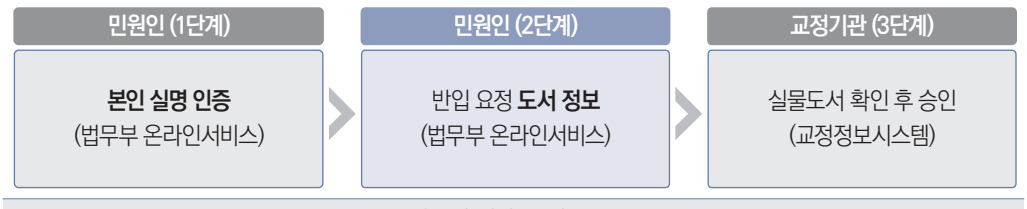
2) 추진경과

2024. 7. 15.부터 약 한 달간 기존의 우송도서 처리 절차대로 유지하되 변경된 사전등록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4. 8. 19.부터 우송도서 사전등록제를 본격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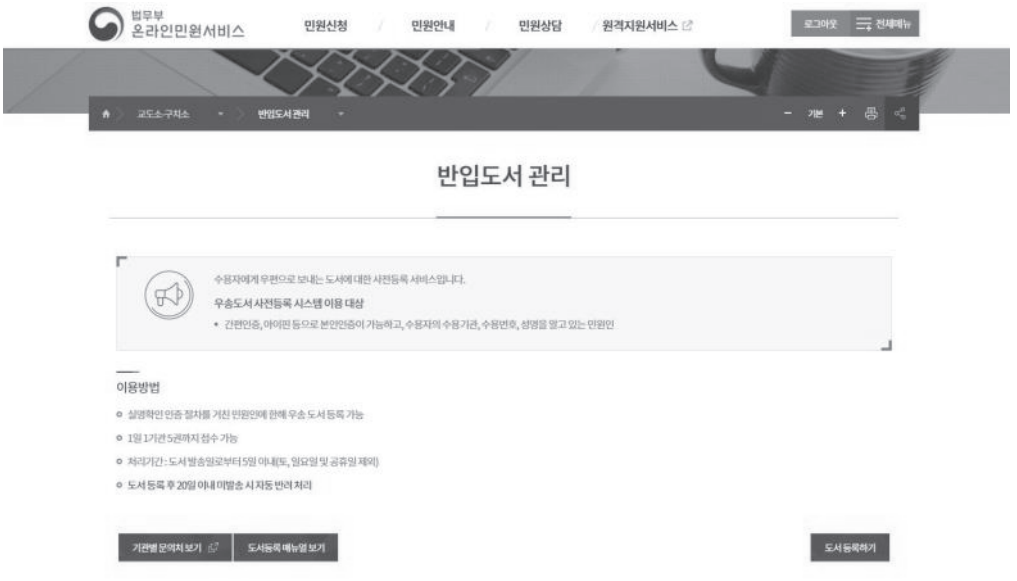
3) 주요성과

우송도서 사전등록제 시행 이전 대비 금지 물품 반입 49% 감소, 신분 확인 불가 49% 감소하였으며, 음란도서 반입량이 17% 감소하였다. 또한 민원인이 도서 반입가능 수량 및 승인·전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도서 입력 방식을 담당자에서 민원인으로 전환하여 담당자의 업무가 경감되었다.

| 그림 2-114 | 우송도서 사전등록제 관련



우송도서 사전등록제 흐름도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반입도서 관리' 화면

바. APCCA 준비기획단 신설

APCCA 준비기획단 서기관 승영근

1) 추진배경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정본부장 등 각국의 교정 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례 국제행사인 제43차 APCCA의 한국 유치가 결정되었다. 국·내외 교정관련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하며, 대한민국 교정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해 APCCA 준비기획단이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 대한민국 교정본부는 1986년 제7차 회의, 2005년 제2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 추진내용

APCCA 준비기획단은 법무부 교정기획과 기획·홍보팀에서 사무관을 역임하고 국제 행사 참여 경험이 있는 승영근 단장(서기관)과 외국어에 능통하고 각종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한 팀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대한민국 교정본부장(신용해)을 단장으로 하여 2024. 11월에 개최된 APCCA 홍콩 회의에 참석하여 성공적인 회의 개최의 노하우 등을 배웠으며, 내년 서울 회의 개최를 상징하는 공식 깃발 및 심볼을 이양 받고, APCCA 서울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 그림 2-115 | APCCA 준비기획단, 제42차 APCCA 홍콩 대회 참석 및 깃발 이양 (2024. 11. 21.)



3) 평가 및 향후계획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행사 개최 및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국방부,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한국예술종합학교, 한화비전 등 민·관·학의 다양한 유관기관 연계 및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 11월 서울에서 진행될 제43차 APCCA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가.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마약사범재활팀 교정관 김도균

1) 추진배경

마약사범 단속 인원이 2022년 18,395명에서 2023년 27,611명으로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의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법무부는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에서 마약사범의 회복단계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운영하여 마약사범의 확실한 재활을 지원하며, 출소 후에도 사회에서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였다.

회복이음 과정	① 치료공동체 개념을 적용한 마약재활거실 자조집단 운영, ② 회복동기 강화상담, ③ 12단계 촉진치료 방식의 회복단계별 개별상담, ④ 출소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사례관리) 사전등록 등 지역 재활시설 연계를 통한 출소 후 회복지원 등으로 구성

2)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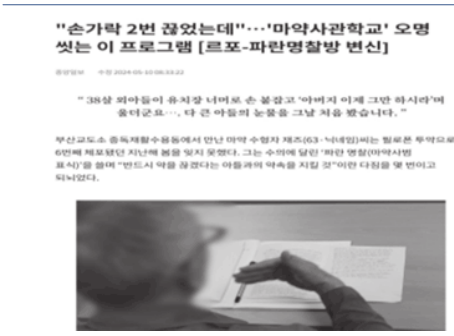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은 기존 2개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을 4개 기관(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 추가)으로 확대하였으며, 출소 후에도 마약사범이 스스로 재활할 수 있도록 재활 습관을 체화하는 자기주도적 재활프로그램 및 마약사범의 메타인지를 점검하고 사고 및 자기조절 능력을 훈련하는 개별재활상담 프로그램 '메타인지상담(metacognitive therapy)'을 개발하였다.

또한 부족한 중독재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독심리사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소 예정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상담사의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업재활 프로그램 제공에서 나아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하여 취업지원 사업 안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였다.

| 표 2-106 | 연도별 재복역률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형자 재복역률 (연도별 증감률)	25.2% (1.4% ▼)	24.6% (0.6% ▼)	23.8% (0.8% ▼)	22.5% (1.3% ▼)	22.9% (0.4% ▲)
마약류사범 재복역률 (연도별 증감률)	45.8% (3.1% ▼)	42.1% (3.7% ▼)	36.3% (5.8% ▼)	31.9% (4.4% ▼)	32.2% (0.3% ▲)

| 그림 2-116 | '회복이음과정' 관련 언론보도


"손가락 2번 끊었는데"…'마약사관학교' 오명 씻는 이 프로그램 [르포-파란명찰방 변신]

"38살 외아들이 유치장 너머로 손 붙잡고 '아버지 이제 그만 하시라'며 울더군요…, 다 큰 아들의 눈물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부산교도소 중독재활수용동에서 만난 마약 수형자 제즈(63·누더넘임)씨는 벌로본 투약으로 6번째 체포됐던 지난해 봄을 잊지 못했다. 그는 수의에 달린 '파란 명찰(마약사범 표식)'을 보며 "반드시 약을 끊겠다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란 다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시사저널

HOME > 사회 > 사회 일반

[르포-마약과의 사투] 20년 마약중독자 "이게 될까 하던 의심, 재활교육 3주 차에 사라졌다"

'국내 첫 마약전담 교정시설' 부산교도소의 중독재활수용동
마약사범 '일탁 재활'… 강사에 '감사 편지' 보내는 변화상도

마약과 사투(死鬪)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마약을 쫓는 자들과 이러한 마약중독자들을 쫓는 자들이다.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 2만7611명을 기록했다. '마약사범 2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정부는 검거 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교도소가 '국내 첫 마약전담 교정시설'로 발돋움한 배경이다. 부산교도소는 단약(斷藥) 의지가 강한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24시간 일탁 재활'을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선 마약중독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약사범들, 이들을 교육하는 교정시설 직원과 외부 강사들의 고군분투가 한창이다.

시사저널은 6월17일 오후 마약과 싸우는 부산교도소 현장에서 마약사범과 직원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용자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고려해 일부 각색했다.

중앙일보(2024. 5. 10.) | 시사저널(2024. 12. 3.)

※ 회복이음 누적 수료자 43명의 교육 효과를 측정한 결과, 단약 효능감이 59.5점에서 81.9점으로 올랐고 이는 교육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77.6점→75.5점)에 비하면 큰 폭의 상승임

3) 향후 추진계획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추가 지정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회복이음과정과 중독재활수용동을 확대하고, 마약 탐지 첨단장비(이온스캐너 등)를 도입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며, 중독재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중독심리사 및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지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4개 교정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전화상담 서비스를 모든 교정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고, 회복이음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사례관리) 사전 신청을 모든 마약사범 출소자로 확대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한걸음센터 등 중독재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나. 수용자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의료과 교정관 김재형

1) 추진배경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원격 진료, 초빙 진료, 외부 이송 진료 등 외부병원 의사에 의한 진료 시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과다 처방 등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및 성과

「수용자 규제약물 가이드라인」 발간, 교정시설 예탁금 및 오남용 방지 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교정본부와 내·외부 전문가 간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2024. 12. 31. 시행)을 개정하였다.

3) 평가 및 기대효과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시설 내 반입을 규제하기 위한 법무부 소속 의무관 및 외부 진료 의사 대상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의료비 예산 운용의 적정성 강화,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예방, 수용자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 재범고위험군수형자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분류심사과 교정관 양성필

1) 추진배경 및 경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수형자의 출소는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정본부에서는 이러한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2015년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를 시작으로 광주·대전·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를 차례로 신설,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심층 심리검사를 통한 정밀분류심사 및 집중개별처우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여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2) 추진성과

2022년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가 직제상 정식 기구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국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권역별 통일된 정밀분류심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 표 2-107 | 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현황

구 분	서울(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개 원 일	2015. 11. 23.	2021. 7. 19.	2018. 3. 2.	2017. 3. 2.

최신 범죄경향을 반영하여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등을 심사대상에 추가하여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실적이 2023년 1,647건 대비 621건 증가하였으며 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처우방안을 제시하고, 출소 예정자의 석방 전 위험관리수준 평가,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표 2-108 | 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운영실적

(단위: 건)

구 분	합계	서울(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2022년	1,172	302	452	252	166
2023년	1,647	629	531	297	190
2024년	2,094	626	667	412	389

3) 평가 및 발전방향

교정본부는 권역별 분류센터 신설을 완료하여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출소 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의 경찰 등 사회 유관기관과 공유·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우범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 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심리치료과 교정관 백학훈

1) 추진배경

오랜 시간 경미범죄로 취급받아 왔던 스토킹 범죄는 2021. 3월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확산되어,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1.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률에 따라 이수명령이 병과된 스토킹사범의 이수명령 집행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해 범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요구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수명령 병과자에 대응하여 효율적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추진내용

2023년 교정본부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스토킹사범의 특성 및 심리적 개입 방향 등을 연구하였다.

| 표 2-109 | 스토킹사범의 특성 및 심리적 개입 방향

구분	스토킹사범의 특성	심리적 개입 방향
1	• 스토킹 행동양식과 인지 왜곡 –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근 등	• 인지적 왜곡 수정 – 사건이해, 생활방식 개선 등 개입
2	• 사회정서적 기능 손상 – 정서 인식 및 조절 능력 손상 등	• 사회정서적 기능 향상 – 애착점검, 대인관계 등 개입
3	• 자기관리기술 결핍 –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폭력, 알코올 등 부적응적 방식 대처	• 자기관리기술 함양 – 자기관리, 스트레스 대처 등 개입
4	• 정신병리적 문제 –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등	• 정신병리 개선 – 우울, 불안 등 감정조절 개입

2024년 교정본부는 스토킹사범 특성 및 심리적 개입 방향에 따라 건전한 사회질서에 관한 교육 등을 포함한 자기이해, 감정이해,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인지왜곡 및 사건이해 등 5개 모듈을 설정하여 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표 2-110 | 스토킹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구성

모듈	회기	프로그램 A형	프로그램 B형
자기 이해	1	프로그램 소개 및 관계 형성	프로그램 소개 및 관계 형성
	2	관련 법령 이해하기	관련 법령 Q&A
	3	변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 왔어요
	4	좋은 삶 계획하기	나는 왜 같은 관계를 반복하는가?
	5	되고 싶은 나의 모습	내 인생을 바꾸는 갈등 대처
	6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 바라보기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영화치료)
감정 이해	7	감정의 이해	감정조절의 필요성
	8	건강한 감정 조절1	건강한 감정 조절1
	9	건강한 감정 조절2(체험적 방법)	건강한 감정 조절2(체험적 방법)
스트레스 관리	10	스트레스 이해	스트레스 이해하기
	11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대처하기 1
	12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대처하기 2
대인 관계	13	대인관계 이해	대인관계 유형
	14	대인관계 유형	나의 대인관계1
	15	나의 대인관계	나의 대인관계2
	16	이성관계 형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인지 왜곡 및 사건 이해	17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18	사건분석 및 대처	사건분석 및 대처
	19	폭력에 대한 이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20	공감하며 살아가기	다시 살아가기

3) 평가 및 향후계획

시범운영 실시 결과, 분노 표출 및 통제 능력, 충동성 영역이 완화되었고, 특히 대인반응과 관련한 영역에서 크게 호전되어 유의미한 효과성이 측정되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또한 높게 형성되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확인하였다.

교정본부는 스토킹사범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토킹사범 범죄성 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제고하고, 출소 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마.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과 교정관 백학훈

1) 추진배경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형자의 범죄성향 개선 및 재범 완화를 위해 심리치료 분야에서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적용한 실효성 있는 교화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교정본부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실제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재범 경험', '피해자 공감', '분노 대처 훈련' 등을 심리치료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수형자 심리치료 기법의 정교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추진내용

2024. 10월, 심리치료 대상 수형자의 일반(공통)적 특성인 '폭력성 개선'을 위해 심리치료 분야에서 치료모델로 검증되어 활용되는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치료 등을 적용하여 가상현실(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콘텐츠는 내·외부 전문가의 T/F 자문 등을 통해 3D VR로 제작되었으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분노 상황에서 감정탐색, 피해자 공감, 분노 대처 훈련 등을 통해 비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대화법을 연습하는 한편, 호흡과 명상을 통해 심리적 이완을 돕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주요 참여자는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가정폭력 사범 등이며,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프로그램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체계가 마련되었다.

| 표 2-111 |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모듈

구분	단 계	내 용	
1	프로그램 진행과정 안내	• 가상현실(VR) 프로그램 진행과정 안내	
2	인지치료	동기강화 및 자기이해	• 내가 변화하고 싶은 것 • 분노유발 상황 제시 등
3		분노감정관리	• 폭력 등 이해 • 분노유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등
4		대인관계 기술	• 대화를 요청하는 방법 • 건강한 대화법 : 전달, 설득, 수용 • 피해자 공감
5	정서치료	• 바다, 들판 등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풍경을 감상하고 내레이션에 따라 명상 및 호흡을 하며 심리적 이완	

3) 정책성과 및 평가

2024. 12월, 서울남부심리센터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사후 척도검사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특히 폭력 허용도와 상태불안 영역에서 상당히 호전된 양상을 보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실제 운영을 통해 품질을 개선·유지해 나가고, 이후로도 교정본부는 앞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수형자 심리치료 분야에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적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바. 외부기업 통근작업 및 희망센터 확대 시행

직업훈련과 교정관 정세락

1) 추진배경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외부기업 통근작업 및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희망센터) 확대를 통해 일반사회생활과 비슷한 환경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출소 후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 정착으로 재범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2) 추진경과

교정시설 소재 농협, 영농법인 등 지역단체와 협업으로 거창(구) 등 5개 기관 8개 법인 등에 농촌일손제공형 외부통근작업 및 용접 직업훈련과 연계한 목포(교) 조선소 외부통근작업을 시행(2024. 10월)하였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으로 작업 중심의 중간처우시설인 홍천 희망센터 신설(2024. 12월)을 추진하였다.

3)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외부통근작업 확대 및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작업 중심의 중간처우시설 희망센터 신설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수형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산업 환경과 유사한 교도작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그림 2-117 | 외부통근작업 모습


거창(구) 딸기 재배


영월(교) 벌꿀 가공장


목포(교) 조선소 외부통근작업

4. 교정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가. 교정기관 4부제 정상화 운영

보안과 교정관 김세정

1) 추진배경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 처우 향상을 위해 기존 윤번 4부제 방식의 근무 체계를 개선하여 완전 4부제 근무체계 확립을 위해 「4부제 정상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교정기관 4부제 정상화 운영」은 2023년 서울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35개 교정기관에서 시행 중이며, 시행하지 않는 기관도 자율적으로 시행을 준비 중이다.

【4부제 정상화 운영】(표 2-112 참조)
- (운영 기관) 서울동부구치소 등 35개 기관
- (지침 개정) 교정기관 4부제 정상화 추진 계획(안) 반영 등(2024. 11. 1. 시행)

【4부제 정상화 주요 내용】
- 4부제 정상화 시범 실시 여부 기관 자율 선택
- 야근부 완전 책임제(상황대기자 근무 활용 등) 시행
- 휴무자 자원 근무제 운영

- (평일) 주간 한계 인원을 설정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외적 허용
-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자 중 자원 근무자를 우선 배치하고, 자원자가 없을 시 보안 일근, 사무 부서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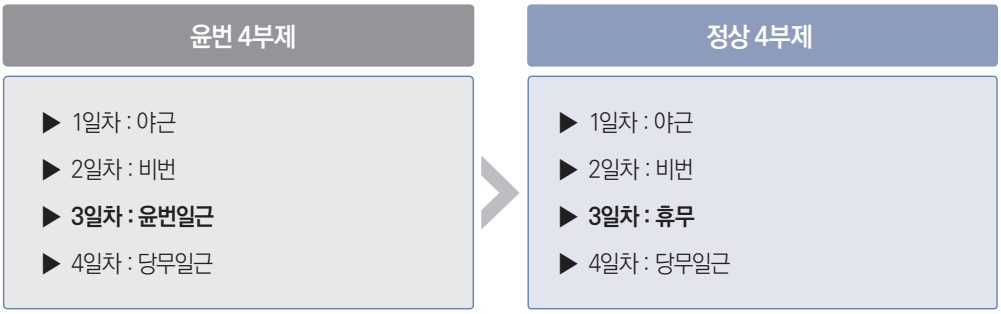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에서는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등의 인력 구조 개편과 함께 지속적인 인력 충원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국 교정기관 4부제 정상화 확대 시행'을 위해 중·장기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표 2-112 | 교정기관 4부제 정상화 추진 현황

구 분	계	기관명
시행기관(2023. 1월 ~)	35개 기관	동부(구), 원주(교), 안양(교), 수원(구), 화성직훈(교), 의정부(교), 남부(교), 여주(교), 춘천(교), 강릉(교), 강원북부(교), 안동(교), 부산(구), 경북1(교), 창원(교), 부산(교), 진주(교), 대구(구), 경북2(교), 김천소년(교), 울산(구), 통영(구), 밀양(구), 거창(구), 경북직훈(교), 대전(교), 청주(교), 청주여(교), 광주(교), 전주(교), 순천(교), 군산(교), 제주(교), 해남(교), 정읍(교)

| 그림 2-118 | 보안 야근자 근무 체계 변경



나. 교정긴급대응팀(CERT) 창설 및 국제 교류

보안과 교정관 김세정

1) 추진배경

-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비상대비 태세 확립
- 국가보안 시설인 교정시설의 대테러 및 고위험 상황 대응능력 향상
- 전술 개발, 교육훈련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전술 교류를 통한 강화된 조직 구축
-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과 임무수행의 전문역량 확대 등을 위하여 창설

2) 추진내용과 성과

- 명칭 : 교정긴급대응팀(CERT : Correctional Emergency Response Team)
- 임무 : 도주자 체포, 고위험 임무 및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자체 대응
- 2024. 11월 교정긴급대응팀 창설 및 요원 선발 계획 수립
- 2024. 12월 교정긴급대응팀 요원 선발

3) 향후 추진계획

- 2025. 2월 ~ 부대창설(비상설), 관련 지침 제정 등
- 2025. 3월 ~ 요원 양성 교육 실시(주기적, 집합 훈련 실시 : 자체 및 유관 기관 위탁 등)
- 2025. 4분기 국제 교류(표 2-113 참조)

| 표 2-113 | 2025년 교정긴급대응팀 국제 교류 일정

구분	세부 내용
제7회 APLC*	• (개최국, 대회일정) 싱가포르, 2025. 9월경 5일간 대회 예정 • (참가예정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10개국 이상 • (대회내용 및 일정) 인질, 폭동진압, 사격 등 국가별 교정전술 교류 및 장비 시연 ※ 향후 제8회(2027년) 대회 대한민국 개최 가능성 검토
제43차 APCCA⁑ 시연	• (개최국, 대회일정) 대한민국, 서울, 2025. 11. 9.(일) ~ 13.(목)(5일간) • (참가국, 행사일정)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5개국, 교정행정 논의·국제 네트워크 형성 • (시연내용) 수용자 폭동진압, 인질 구출 등

* APLC : 아시아교정긴급대응팀대회 / ⁑ APCCA :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

다. 제1회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 개최

보안과 교정관 문준영

1) 추진배경

교도관이 실제 업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긴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 최초로 개최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24. 12. 6.(금)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제1회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연대회 개요】

- (일시, 장소) 2024. 12. 6.(금) 08:30~16:00, 법무연수원 체육관
- (참석인원)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등 약 100명
- (본선출전) 서울동부(구) 등 8개 기관
  ※ 예선 : 2024. 11. 19.(화), 33개 기관 35개팀 출전
- (경연종목) 체력평가, 응급구조, 종합전술
- (시상내역) 법무부장관상, 상금·기관 격려금 지급 등

| 그림 2-119 | 「제1회 전국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 본선



대회 장면(종합전술)



시상식(종합우승팀)

【경연대회 결과】

- (종합우승) 울산구치소
- (준 우 승) 광주교도소
- (장 려 상) 서울동부구치소, 원주교도소
- (노 력 상) 대전교도소, 목포교도소, 서울남부구치소, 청주교도소

3) 향후 추진 계획

교정본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교도관의 직무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라. 수사정보교과자 선발 및 운영

특별점검팀 교정관 장규순

1) 추진배경

교정시설 내 발생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설치된 특별사법경찰팀(대)의 수사 및 정보분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정보교과자 선발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사정보교과자 선발시험을 시행하였다.

2) 추진내용

교정본부는 2023. 2월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대, 소속기관에 특별사법경찰대를 설치 이후, 2023. 6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무부에 '특별점검팀', 4개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 11개 대형기관에 '특별사법경찰팀'을 독립부서로 직제화하여 교정경찰의 정예화를 추진해 왔다.

수사정보교과자 선발시험 과목은 제1과목인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령(사법경찰직무법, 특사경 수사준칙)과 제2과목인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으로 2024년 첫 시험에서 총 40문항 중 매 과목 4할,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자 전원(30개 기관 130명)이 합격했다.

| 그림 2-120 | 수사정보교과자 선발 시험



수사정보교과자 선발시험(2024. 11. 30. 법무연수원)

3) 향후계획

교정본부는 2025년에도 교정경찰의 정예화를 위해 내·외부 수사 전문가 초빙 교육, 수사정보교과자 선발 시험 등을 시행하고, 교정시설 내 발생 범죄의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교정경찰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마. 교정기관 의무관 채용 활성화 방안 추진

의료과 교정관 박병인

1) 추진배경

수용자의 적절한 의료처우를 위해서는 의무관의 채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의무관의 열악한 근무여건, 낮은 보수 등으로 결원율이 지속되었다.

또한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과 공보의 자원도 축소가 예상되어 의무관 채용 활성화 방안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였다.

2) 추진경과 및 성과

2024. 3월 교정기관 의무관 채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각 교정기관에 시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임기제 채용 중심으로 전환, 채용절차 개선, 적정한 연봉책정 등이 있으며,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의무관 등 의료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을 통해 의무관 16명을 신규채용하였고 2023년(8명)보다 2배 증가하였다.

| 그림 2-121 | 연봉책정·조정 절차(연봉특례)



연봉책정·조정 절차(연봉특례)

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 정착

교정기획과 교정관 이호성

1) 추진배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를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2020. 1. 1.)이 제정되어 2020. 10. 26.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대체복무요원은 소집과 동시에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하여 3주간 신규교육을 받고, 교육 수료 후 복무기관(교정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2020. 10월 첫 소집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761명을 소집하여, 현재 29개 복무기관에서 1,574명이 복무하고 있다.

| 표 2-114 | 대체복무요원 소집·교육 현황(2024년 실적 기준)

(단위: 명)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761	69	70	70	93	43	43	39	73	68	69	124

교정본부는 2020년부터 대체복무 생활관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인천구치소 생활관 등 4개 기관을 리모델링, 증축하였다. 특히, 지난 2022. 9월에는 영월 대체복무교육센터를 준공하여 대체복무요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기본자세를 함양하기 위한 시설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생활관에는 휴게실,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쾌적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그림 2-122 | 대체복무제의 안정적 정착



영월 대체복무 교육센터 전경



영월 대체복무 교육센터 개관식(2022. 12. 7.)

시설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계·시민단체·병역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하여 합리적인 대체복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대체업무 순환주기 변경,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심사 체계화, 대체업무분야 확대, 분할복무제 및 복무중단제 도입 추진,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개정 등 효율적인 대체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처우 개선, 복무관리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대체복무제도 정착을 도모하였다.

3) 향후계획

2025년도에는 신규 대체복무요원 476명을 소집·교육하여 신설 예정인 2개 기관을 포함하여 31개 복무기관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향후 2026년까지 34개 복무기관(교정기관)에서 1,900여 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및 복무 적응력 향상교육 등 내실 있는 업무 수행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점검·실태조사를 통해 각 대체복무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복무 부실을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병역과 인권의 조화, 공정과 상식의 대체복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소양과 직무역량을 두루 갖춘 대원 양성을 위해 빈틈없는 복무관리와 제도 혁신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제10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가.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출입국 편의 지원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 지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2024 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가자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였다.

주요 편의 제공 사항으로는 ▲ 외국 정상 및 주요인사 등 지문·얼굴정보 제공의무 면제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증미소지자 공항만 입국허가 ▲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면제 ▲ 출입국 우대심사대 운영 ▲ 사증발급 서류 간소화 및 수수료 면제 등이 있다.

동시에 행사 참가를 빙자한 입국목적 부적합 외국인, 위변조 여권 소지 외국인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강화하여 국익 위해자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였으며, 출입국안전대책반을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나) 국제회의 등 주요 행사 참가자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운영

정부는 2024. 6. 17. 경제장관회의 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제회의 등(MICE)* 참가자 입국 시 우대심사대 이용 방안을 발표하였다.

* 회의(Meeting), 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약자로 부가가치가 큰 관광산업 분야를 의미

법무부는 「2024 아시아약학연맹(FAPA) 서울총회 및 학술대회」, 「제15회 국제감귤학회」 등 주요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행사 유치와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 이미지 제고, 경제적 이익, 기술 및 지식 교류,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2025년에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출입국 편의 제공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스템 고도화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 부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2023. 5월~8월)

전자여행허가제(K-ETA) 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 단체 일괄 신청 등 단체 관광객 전용 서비스 개발 ▲ 여권 인적 사항 OCR* 판독 전면 도입 ▲ 신청화면 개선 ▲ 다국어 확대 ▲ 결제 시스템 개선 ▲ 만족도 평가 기능 도입 ▲ 심사 시간 단축을 위한 바이오 검색 기능 개선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도입 등으로 신청자 이용성 향상과 심사 편의성 제고 모두를 고려하였다.

* OCR : 광학식 문자 판독 기능

2) 평가 및 발전방향

| 표 2-115 | K-ETA 신청 현황

구분	신청건수
2021년	86,211건
2022년	2,082,385건
2023년	2,134,136건
2024년	961,458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관계기관 등의 요청으로 일부 국가 대상 한시 면제 시행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021. 9월 정식 시행 이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심사 기법 고도화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외국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한국 도착 후 입국 거부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 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국경관리의 외연을 국내 도착 후 입국심사 단계에서 해외여행 시작 단계로 확장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전자여행허가 대상 국가 입국불허율 : (2022년) 0.9% → (2023년) 0.3% → (2024년) 0.2%
※ 전자여행허가 대상 국가 불법체류율 : (2022년) 26.7% → (2023년) 25.6% → (2024년) 22.6%

향후 전자여행허가제(K-ETA) 고도화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그간 축적된 자료를 빅데이터화하여 관광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고위험 외국인 통계·분석을 통해 더욱 정교한 선제적 국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 평택항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 전면 시행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동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코로나19로 중단된 평택항 한-중 여객선 운송이 2023. 8월부터 재개됨에 따라 2023. 12월부터 1년간 평택항에서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소무역상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률이 점차 상승하여 평택항 이용 승객들의 입출국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심사장 혼잡도가 완화된 것을 확인, 2025. 1월부터 전면 시행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등록을 한 평택항 이용 소무역상(빈번 출입국자)은 심사관과 대면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116 |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기준 : 2024. 12. 31., 단위 : 대)

구분	합계	인천 공항	김해 공항	김포 공항	제주 공항	청주 공항	대구 공항	양양 공항	무안 공항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군산항
설치 대수	271	183	26	10	10	4	8	3	4	9	5	5	4

| 그림 2-123 | 추진경과



2) 평가 및 발전방향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2008. 6월 인천공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이래 사전등록 절차 생략, 이용 대상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2024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1.32% 증가한 49,142,951명으로 외국인의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다. 특히 평택항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 전면 시행은 출입국심사 신속화 및 간소화를 항만까지 확대하여 향후 더 많은 외국인들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노후화된 자동출입국심사대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증설하는 등 더 많은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표 2-117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입국자	계	14,701,839	4,391,173	19,223,428	68,121,658	91,222,927
	국 민	9,171,423	2,326,774	12,778,752	45,423,313	57,567,576
	외국인	5,530,416	2,064,399	6,444,676	22,698,345	33,655,351
자동심사대 이용자	계	5,490,622	908,914	9,992,181	37,224,958	49,142,951
	국 민	4,729,477	800,626	8,403,293	29,850,937	37,901,544
	외국인	761,145	108,288	1,588,888	7,374,021	11,241,407
전체 대비 자동이용율(%)		37.3%	20.7%	52.0%	54.6%	53.9%
국민 자동이용율		51.6%	34.4%	65.8%	65.7%	65.9%
외국인 자동이용률		13.8%	5.2%	24.7%	32.5%	33.4%

라. 출국금지 대상 확대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상배

1) 추진 배경 및 경과

2024. 2. 29.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종전에는 양육비 미납으로 '법원의 이행명령을 불이행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금지 대상이 되었으나, 법개정으로 출국금지 대상 범위가 양육비 미납으로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은 자'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2) 평가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법원의 이행명령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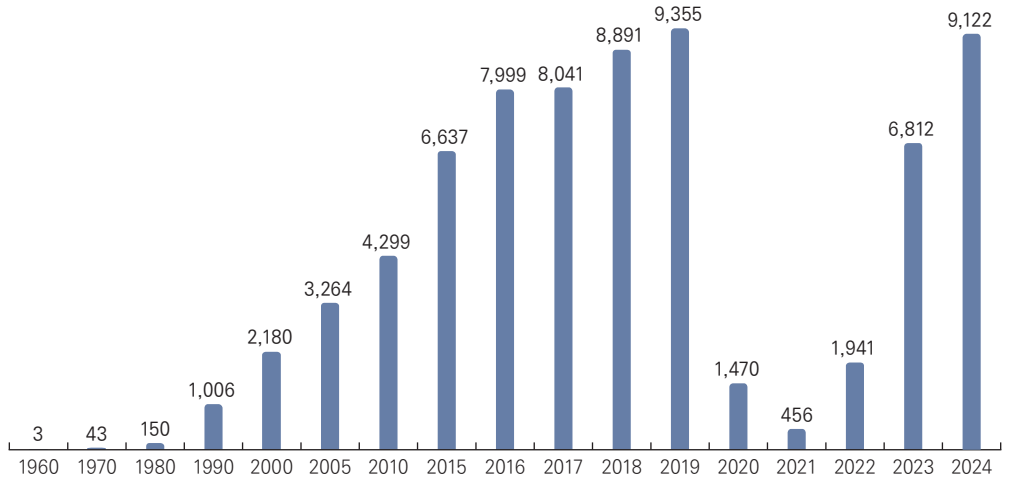
마. 출입국자 현황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2024년도 전체 출입국자는 전년도의 68,121,657명 보다 33.9% 증가한 91,222,927명을 기록하였다. 국민은 57,567,576명으로 전년도 45,423,313명에 비해 26.7% 증가하였고 외국인은 33,655,351명으로 전년도 22,698,344명에 비해 48.3% 증가하였다.

| 그림 2-124 | 출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만 명)



1) 외국인 입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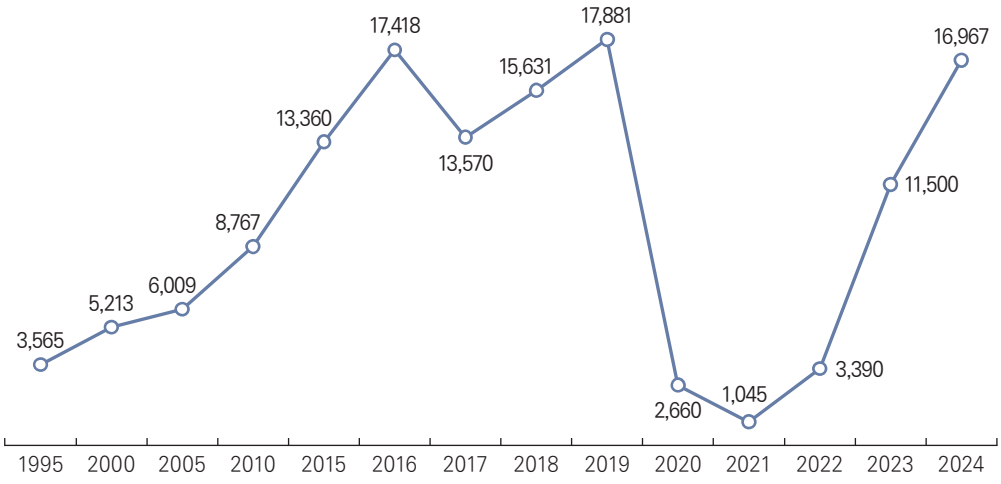
2024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16,968,203명으로 전년도 11,500,883명에 비해 47.5% 증가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중국 약 488만 명(28.8%), 일본 약 326만 명(19.2%), 대만 약 150만 명 (8.8%), 미국 약 142만 명(8.4%) 순이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약 1,282만 명(75.6%)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약 49.5만 명(2.9%), 유학 약 34.8만 명(2.1%), 영주 약 18.9만 명(1.1%)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25 |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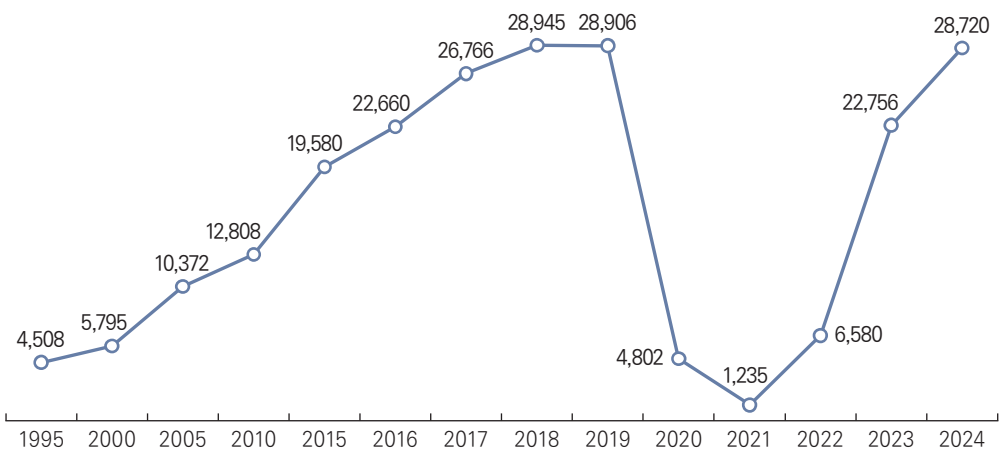


2)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28,720,773명으로 전년도 22,756,008명 대비 26.2%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2022년부터 출국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8,905,763명)의 99.4%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 그림 2-126 |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2.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가.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종승

1) 추진배경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원격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광지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근무하는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변화된 근로 형태에 대한 제도적 반영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2)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추진

법무부는 2024. 1. 1.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운영하였다.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원격 근로자는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을 증명하는 경우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하여 국내 취업은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3) 성과 및 발전방향

2024년 시범운영 결과, 229명의 고소득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그중 218명이 현재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토대로 추후 정식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계절근로자 제도개선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정석

1) 정책환경

농어촌 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인력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문기관 지정·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향후 추진과제로 남아있다.

| 표 2-118 | 연도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인원

(단위 : 명)

구 분	2015년~2016년 시범운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운영 인원	219	1,085	2,824	3,497	223 (국내 체류자)	1,850 (해외입국자 559 +국내체류자 1,291)	12,027 (해외입국자 10,630 +국내체류자 1,397)	32,837 (해외입국자 32,489 +국내체류자 348)	57,269 (해외입국자 57,247 +국내체류자 22)

2) 추진경과

2024. 4월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 협업으로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2024. 4월 ~ 2025. 12월), 농어업 외국인력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024. 11월 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로 계절근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계절근로자 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추진성과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대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증가한 고용주와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수요를 반영하여, 2024년 계절근로제도 배정인원을 전년 대비 66% 증가한 67,778명으로 결정함으로써 농·어촌에 필요 인력을 배치하였다.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강화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활용을 의무화하였고,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를 보장하는 등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기능인력(E-7) 비자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황민하

1) 추진배경

법무부는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항공기, 송전, 요양분야에 외국인력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전문·기능인력(E-7) 내 직종을 신설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였다.

2) 추진내용

가) 산업 분야 전문인력 도입

법무부는 산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능인력(E-7) 자격 내 직종을 신설하는 등 전문 외국인력 도입 지원에 나섰다.

먼저,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항공기(부품) 제조원' 과 '송전 전기원' 직종을 신설하여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전문·기능인력(E-7) 도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번 전문인력 직종으로 신설된 '항공기(부품)제조원'과 '송전 전기원'은 산업 분야의 인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보호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국민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면서도 균형잡힌 비자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나) 요양보호 분야의 전문인력 도입 확대

돌봄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요양보호 분야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적인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법무부는 전문·기능인력(E-7) 자격 내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여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전문·기능인력(E-7) 자격 취득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다.

*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2023. 12월), 2027년 부족인원 약 7.9만 명 예상

2024.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4. 7월부터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전문·기능인력(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추진성과

법무부는 앞으로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이 신속히 유입될 수 있도록 전문·기능인력(E-7) 직종을 신설하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운영을 통해 경제·산업계 및 관계부처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라.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및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은호

1) 추진배경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대학의 유학생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유학생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도 문제되고 있다. 이에 우리부는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쓰면서도, 유학생이 학업에 충실하고 한국어 구사능력을 향상하여 우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업하여 비자 제도를 개선하였다.

2) 추진내용

가)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 비자 확대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 허용해 왔으나, 그 밖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건의에 따라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 대학의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D-2-5)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석·박사학위 소지자에게 허용해 온 연구원(E-3) 비자는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가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인 경우에는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연구원(E-3)으로 초청할 수 있게 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우수 인증대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다) 제4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유사지표를 통·폐합하여 지표 개수를 감축(학위 10개, 어학연수 9개)하였고, 관리가 극히 부실한 대학은 '비자심사제한대학'에서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용어를 변경, 대학의 유학생 관리 노력 등이 소명되는 경우 유학생 유치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어 능력 충족 유학생 비율을 상향(30%→40%)하고, 어학연수과정의 수료율로 평가하던 것을 TOPIK 등 공인시험 취득율(30%이상)로 강화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유학비자가 불법취업의 우회 방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학생에 대한 입국 및 체류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국어능력을 갖추고 성실하게 학업을 마친 졸업생에 대해서는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체류관리과 사무관 황민하

1) 추진배경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하고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글로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창업인재 유입 및 발굴 제도 개선이 요구되었으나, 기존의 창업비자 제도는 정량적 요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술창업(D-8-4)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해외 우수 창업인재유치를 지원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었다.

2) 추진내용

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발표

법무부는 2024. 7. 31. 글로벌스타트업센터 개소식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계획'을 발표(중소벤처기업부 공동)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섰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는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창출해 낸 성과로서, 이를 위해 기존 비자 발급 요건과 별개로 기술창업 비자 발급 트랙(D-8-4S)을 신설하였다.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산업계·학계·이민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를 거쳐 중소 벤처기업부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

나) 특별비자 도입을 위한 지침개정

기존에는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으나,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다.

| 그림 2-127 | 기술창업 관련 행사 참석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1호 기업
(2024. 12. 11. 컴업 2024 참여)



글로벌스타트업센터 개소식 참석
(2024. 7. 31.)

다) 기술창업(D-8-4) 요건 개선 및 체류자격 외 활동 허용

교수 및 연구원 등 우수인재의 기술창업(D-8-4) 비자 취득 촉진을 위해 지침 개정을 통해 대상 체류자격 점수 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교수(E-1), 연구원(E-3) 등 우수 인재가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창업(D-8-4)으로의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상용화,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3) 주요성과

이러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2024. 11. 25. 제1회 민간평가회를 개최하여 10명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다국어 지원 AI 기반 디지털 휴먼 솔루션 기술에 기반한 1호 기업이 탄생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내 창업을 희망하는 해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민간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며, 국내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창업인재 유치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은호

1) 추진배경

법무부는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4.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주요 추진내용

가) 숙련기능인력 자격 취득 후 한국어 능력 요건 보완 허용(사회통합 요건 특례)

2023. 9월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갖추기 어려워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건설업계 현실을 반영한 허용인원 산정기준 도입

건설업의 경우 허용인원 한도가 낮으며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산정하여, 소규모 건설업체가 필요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허용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하였다.

다) 비수도권 근무 외국인력에 대한 특례 도입

지역기업들은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로 인해 숙련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법무부는 비(非)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며,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 10월 4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고, 2024. 12월 39만 명대까지 감소하였다.

2024년도에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년 ~ 2027년)」2년 차를 맞아 정부합동 단속·테마별 기획 단속·특별단속지역 지정 운영 등을 통해 연중 단속활동을 강화하였고, 이민특수조사대를 비롯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브로커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였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법무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 7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5개 관계부처 650여명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불법고용 방지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혜택을 부여하는「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 및 불법고용 억제 환경 조성,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인터넷, SNS 등 온라인 홍보, 공익광고 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정책을 적극 홍보하였다.

한편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취업 목적 불법입국 시도 수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의 적발을 통해 불법체류 유발 환경을 차단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능력이 특화된 서울 및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이민특수조사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각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마다 기획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였다. 또한, 기획조사 기법 연구 발표 및 공유 등을 통해 동향조사 역량을 강화하였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지방 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우범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 출입국사범 단속 등 업무 수행 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출입국 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2024년 한해동안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139,727명 가운데, 강제퇴거 35,124명(25.1%), 출국명령 44,151명(31.6%), 출국권고 1,931명(1.4%) 등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총 81,206명이며, 고발된 사람은 1,737명(1.2%), 그 밖에 통고처분(과태료) 후 체류허가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56,784명(40.6%)이었다.

| 표 2-119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고발	기타*
2022	98,350	10,196	28,585	2,067	1,478	56,024
2023	134,083	31,932	40,538	1,922	1,880	57,811
2024	139,727	35,124	44,151	1,931	1,737	56,784

※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이민조사과 사무관 김택균

1)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노력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등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2024년 불법체류 외국인 등 45,442명을 적발하여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24년 정부합동단속을 2차례(상·하반기) 실시하여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업종,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상습적으로 불법고용 사업장 및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19,232명, 불법고용주 3,761명 및 불법입국 및 고용 알선 브로커 38명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표 2-120 | 정부합동 불법체류 단속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8	2019	2022	2023	2024
기 간	• 2.26. ~ 5.11. • 9.3. ~ 11.16.	• 매 짝수달 각 4주	• 10.10. ~ 12.10.	• 3.2. ~ 4.30. • 6.12. ~ 7.31. • 10.10. ~ 12.9.	• 4.15. ~ 6.30. • 9.30. ~ 11.30.
참 여 인 원	830	899	830	530	650
불법체류 외국인	16,218	2,806	3,865	20,947	19,232
불법고용주	2,835	495	483	4,687	3,761

※ 2019년 실적산정 방식 변경(전 기관 실적 인정에서 광역단속팀 주관 실적만 인정)으로 실적 감소

※ 2020년 ~ 2021년은 감염병 확산으로 정부합동단속 잠정 중단 후 2022. 10월 재개

한편,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2회(2024. 1. 1. ~ 2. 29., 2024. 9. 30. ~ 2025. 1. 31.) 운영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주요 불법체류 발생 국가의 주한공관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체류 중인 자국민이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하였다.

| 표 2-121 | 자진출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3 대비 2024 실적
자진출국자	55,260	32,867	32,026	43,133	46,299	3,166↑ (7.3%↑)

※ 특별자진출국 운영기간(1. 1. ~ 2. 29., 9. 30. ~ 12. 31.)동안 23,441명 자진출국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제도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의 감소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민조사과 사무관 홍창기

2) 기획조사 및 마약·테러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 등 합동(집중) 단속

2024년도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허위 난민신청 알선 및 유흥업소 등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5,267명(794건)을 적발하여 그중 54명을 구속, 36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3,346명을 출국조치하였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특정종파를 극단적 신봉하는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6명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조치하였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 미국에서 국내로 도피한 미국인을 미국대사관, 경찰 인터폴팀과 기획 및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강제퇴거 조치하였다.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각각 68만원의 대가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인을 구속하였고, 계절근로자 79명에게 허위로 발급된 '농업종사확인서'를 행정관서에 제출하여 허위 초청을 알선한 한국인 2명을 구속하였으며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원하는 에티오피아인 6명에게 대가금을 받고 자신의 업체로 허위 초청하고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한국인 4명을

구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티모르인 유학생 29명에게 불법 허위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 입국하도록 도움을 준 대학 총장 등 3명을 구속하였다.

서민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단속하여 외국인 642명을 적발, 3명을 구속하고 588명을 강제퇴거 시켰으며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45명을 입건하였다.

베트남·태국인 등 동남아 국적 외국인들이 주말에 외국인 전용 클럽·노래방에 모여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다는 첩보가 다수 입수되어 경찰과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베트남인 등 총 49명을 적발하였다.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체류외국인 동향조사기법연구 발표회, 유관기관·단체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와 더불어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 및 외국인 밀집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단속을 통해 국민 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표 2-122 | 기획조사 추진 실적

구분 / 연도	계		허위서류 제출		허위초청		불법취업		유흥업소		기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23년	678	3,337	105	242	61	100	192	1,531	91	778	229	686
2024년	794	5,267	131	356	66	123	263	2,545	72	853	262	1,390
전년대비(%)	117.1	157.8	124.7	147.1	108.1	123.0	136.9	166.2	79.1	109.6	114.4	202.6

이민조사과 사무관 최연준

3) 개방형 보호시설 지속 확대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4. 11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보호실을 개방형 보호시설로 전환하였다. 보호시설 내 철창을 제거하여 생활 공간을 확대하였으며, 인터넷PC, 휴대폰 사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외부 소통 및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보다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2024. 11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동을 신축하였으며, 2025. 2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 그림 2-128 | 개방형 보호시설 변경 전후 사진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공용거실		
보호실		

한편, 보호외국인 처우 등과 관련 보호시설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였으며, 보호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한해 총 24,021건의 고충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발생 등 응급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과정(2급)에 파견하였으며, 보호업무 담당 직원들의 응급처치 교육을 기존 연 1~2회에서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선하였다.

4.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가.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도현

1) 추진배경 및 추진 경과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위원장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를 근거로 이민자 사회통합관련 사안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체류외국인 증가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민사회대비 사회통합정책 방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논의사항을 관련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129 | 사회통합자문위원회 개최



2024년 제1회 사회통합자문위원회(2024. 7. 25.)

나.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도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 7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공유 및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반기별 1회 양측이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2024. 5월 법무부 이민통합과 주관으로 제10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9월에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도시:김포시) 주관으로 제11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 하거나 전체 주민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3%를 초과하는 2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정책 관련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더욱이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상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130 |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제10회 외국인정책협의회(2024. 5. 30.)



제11회 외국인정책협의회(2024. 9. 25.)

다.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 컨설팅 실시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도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정책이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반대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역의 사회통합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 지원정책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등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23년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지자체 9개 지역(광역 4곳, 기초 5곳)을 대상으로 정책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확대하여 광역지자체 13곳, 기초 22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정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균형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평가 기회 및 접근성 확대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평가(CBT)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CBT 센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영주권, 국적 등을 취득할 때 이수 혜택이 부여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전평가와 종합평가에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험장이다.

교육참여 수요가 많고 교통 접근성이 높은 서울시에 평가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광명 CBT센터와 대전 CBT센터에 이어 2024. 12. 30. 서울 CBT센터를 추가 개소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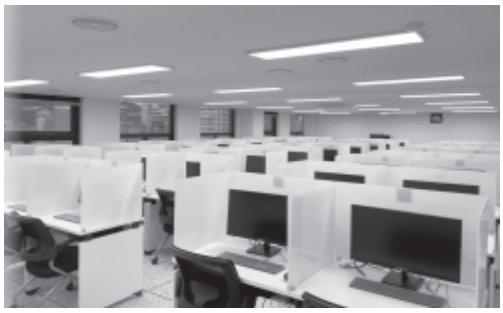
서울 CBT센터를 통해 1일 최대 220명의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12명의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서울 CBT 센터가 추가 개소됨에 따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자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참여자도 자신이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상설 운영하는 CBT 센터의 추가 개소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131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컴퓨터 기반평가(CBT) 서울센터 개소



컴퓨터 기반평가(CBT) 서울센터 개소식(2024. 12. 30.)



컴퓨터기반평가(CBT)센터 내 평가실

마. 지자체 연계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 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15년부터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커질수록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고용주에 의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시행하고 있던 계절근로자 대상 입국초기 교육을 법무부가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보다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확대하여 시행한 것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기초 법·질서와 한국사회 필수 생활정보뿐만 아니라 농작업 안전 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 정보 등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였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낙후된 교육 접근성과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을 고려하여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율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바.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신하균

1)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2007. 7. 18.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 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였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다.

2008. 5. 20.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 5. 20.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17회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주한 아일랜드 대사, IOM(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등 외교사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국회의원 및 주한 외교사절 축사, 국제이주기구(IOM) 대표 등의 축하영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성재 장관은 기념사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재의 유입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목포에서 지난 50여년 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헌신하신 ‘라이안 제라딘 수녀님’(사회복지법인 성골롬반복지재단 이사장, 복수국적)이 올해의 이민자(대통령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나니 상담팀장과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가 대통령표창을, 임정자 신길샛별작은도서관 강사, 조연화 단양여성취업지원센터 센터장, 홍임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위원, 화찬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위원 등 개인 4명과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광주국제교류센터 등 3개 단체가 국무총리표창을, 양주사무소 이민자네트워크 와타나베 아쯔꼬 회장 등 5명과 KCA선교회(단체), 여수가족플러스센터(단체)가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여성 5인조 창작국악 그룹 ‘비단’의 공연으로 기념식 시작을 알렸으며, 빛과 전통예술을 조화시킨 미디어 퍼포먼스그룹 ‘생동감’, 다국적 K-pop 그룹 ‘엑신’, 7~16세의 다문화 가정자녀로 구성된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등 공연이 기념식을 한층 더 흥겹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기념식장 입구 야외에서는 총 11개 국가의 다채로운 전통의상을 입을 수 있는 세계의상 체험 행사와 짧은 시간 안에 나만의 특징을 담아 표현한 개성 넘치는 캐리커쳐 이벤트가 열렸다. 세계인의 날 연혁, 포상자 소개, 출입국 홍보영상, 인식개선 동영상 등을 상영하는 세계인의 날 주제관을 운영하여 세계인의 날 제정 의미를 되새기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식후에는 이민자 멘토단 등이 기념품(수건)과 함께 달콤한 빵과 찰진 떡을 무료로 전달하였다.

한편, 기념식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과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홈페이지를 통해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 방향

2008년부터 17회 걸쳐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세계인 주간 행사는 국민과 재한외국인 통합에 기여한 공로자를 치하하고, 상생·공존·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의 장이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그간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이민자 간 상호이해 및 소통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 그림 2-132 |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024. 5. 20.)



법무부장관 기념사



유공자 포상

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제도·문화 등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안내,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경험담 소개,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와 가정폭력 방지 등을 교육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2010.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 및 참관을 통해 교육 과정의 효율성과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였고, 교육 참여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결혼이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결혼이민(F-6) 관련 규정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배우자 입국·체류 가이드북과 각 국가별 책자 16,000권을 발행하여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배부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결혼이민 가정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과 바람직한 국제결혼 가정의 형성·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아.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지원 확대 추진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민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외국인 배우자가 보다 신속하게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IBT 성적증명서를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입증자료로 추가하고 국내 발급 건강진단서와 재외공관 지정 신체검사 기관의 건강진단서 효력을 동일하게 인정하였으며 "2025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등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심사 기준과 관련한 요건 중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또한, 국내에 모든 생활기반이 형성된 20년 이상 장기 거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위 보장을 위해 결혼이민 영주(F-5)자격 취득요건 중 기본소양 요건 기준을 완화하였고 통일적 업무처리를 위해 영주자격 취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정비하는 등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을 개정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에 합격하지 못하는 20년 이상 장기거주 결혼이민자의 영주(F-5)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결혼 이민자에 대해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결혼이민(F-6) 사증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명확하고 통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과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가. 국적증서수여식 개최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1) 추진배경 및 경과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이 2018. 12. 20. 시행된 이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약 8만 명에 이르고 있다. 당초 행사참여형으로 개최되던 국적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2020년부터 개별수여·비대면 수여 형태를 도입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2024년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코로나 확산으로 위축되었던 행사참여형 수여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법무부는 국적 수여 방식 및 표준 절차, 감염병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도를 체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일된 업무 기준을 마련하였고, 14,616명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수여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특히 2024년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고자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누구보다 특별한 여러분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선조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한 층 더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국적취득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로 최이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4인의 후손 27명이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날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김예정(독립유공자 차도선 선생의 후손) 양은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고 설레며,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나라에 도움이 되게 노력하겠다”라고 하였고, 엥림 펜잔 안토니오(독립유공자 임천택 선생 후손)씨는 “증조할아버지의 희생과 한국 정부의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시행 후 6년을 맞이하였고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은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귀화자 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국익에 부합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국적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133 |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2024. 8. 12.)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기념촬영



법무부장관 축사

나. 복수국적 등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확인

국적과 사무관 강성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결혼이민자·해외입양자·고령동포 등 소수자를 포용하기 위해 「국적법」(2010. 5. 4. 개정)은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완화하여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동포(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의 연금수급권을 유지하며 고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행 65세인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주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 표 2-123 |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65세 이상 고령동포)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전체	2019년 이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7,045	14,680	1,419	1,973	2,376	3,434	3,163

복수국적 등 국적제도의 변경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는바, 법무부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복수국적 적정연령을 포함한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이해당사자(국내외 복수국적자, 재외동포 등) 등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 (수행자) 이민정책연구원, (대상) 국민 3,000명, 이해당사자 555명, (기간, 용역비) '24. 6. 7. ~ 10. 4, 약 5,800만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해 국민의 65.5%와 이해당사자의 50.5%는 현행 복수국적 연령인 65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은 노동력 확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았고(동의 비율 각 35.6%, 34.8%), 장노년층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부담과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 증가에 대한 우려(동의 비율 각 57.9%, 59.7%)가 확인되었다. 또한 국민의 76.5%는 국적회복을 허가하기 위한 조건 추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건 추가가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들은 국적회복 신청 전 한국 거주(80.3%), 한국에 주로 거주할 의사(79.4%), 충분한 자산·소득 보유(59.31%) 순으로 각 조건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 일반 국민의 70.0%는 현행대로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이해당사자 중 이에 찬성하는 비율은 37.5%였다. 다만, 국민과 이해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시키지 않고, 국적선택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국민 73.9%, 75.0%).

2) 평가 및 발전방향

복수국적을 포함한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관련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참고하여 국적제도에 대해 국민 우려 사항을 보완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공·사익 조화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강성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확보하기 위해 2011. 1. 1.(2010. 5. 4. 「국적법」 개정)부터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국적심의위원회는 2022. 10. 1.(2022. 9. 15. 「국적법」 개정)부터 관련 부처와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되었고, 종전의 우수인재 특별귀화 이외에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등도 추가 심의하도록 하였다.

2024년 법무부는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총 4회(분과위원회 8회) 개최하여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98건, 예외적 국적이탈 144건,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204건 등 총 446건을 심의하였다. 이를 통해 학술,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등의 우수인재에 대해 연구실적 및 국익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귀화(회복)를 허가하였으며,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대한민국과 실질적 유대관계가 없는 복수국적자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적이탈을 허가하였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와 관련, 2024. 4. 12.「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법무부 고시)」를 개정하여 국익 기여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2024. 7. 20.「국적심의위원회 운영 지침(법무부 예규)」을 개정하여 기존의 과학,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외에 법률, 출입국, 병역, 재외동포 분야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와 관련, 2024. 4. 29.「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신청인이 이해하기 쉽게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고, 필수항목 위주로 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였다. 그리고 직업상 불이익이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심사제'를 2024. 8. 19. 시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국적심의위원회가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된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년은 그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가 국익에 부합하고, 공·사익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 해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적심의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며,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국적제도 안내·홍보 강화

국적과 사무관 강성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해외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외국에 정착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병역의무와 출생경위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 제한되기도 한다.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기간 내에 신고 등을 마치지 못해 불이익을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바, 국적법령 및 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적은 업무 특성상 동포, 병역, 가족관계등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 2024년 법무부는 병무청, 재외동포청,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국적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법무부는 기존의 「국적 및 병역 안내서」를 알기 쉽게 재구성하고 Q&A를 보완하여 재외공관에 배포,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2024. 7월). 또한, 주일본대사관, 주나고야총영사관, 주오사카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내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국적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일동포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였다(2024. 10. 28. ~ 10. 31.).

| 그림 2-134 | 재일동포 대상 국적설명회(2024. 10. 28. ~ 10. 31.)



주일본대사관



주나고야총영사관

재외동포청의 '찾아가는 통합민원 서비스 화상 상담회(2024. 4월 일본, 2024. 5월 호주, 2024. 6월 칠레, 2024. 9월 남아공 등)'와 병무청의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병역·국적 설명회(2024. 9월 이탈리아 등)'에 참여하여 재외공관 직원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 국적이탈 및 상실·회복 등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였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한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여 한인회장 및 대륙별 연합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의 주요 관심사인 국적회복·복수국적 등의 제도취지 및 실무례를 설명하였다(2024. 10월).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적은 개인과 국가의 법적 유대이자,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는 시발점이므로, 국민과 재외동포 모두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상실 등 국적법령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국적법령 및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및 재외동포들이 국적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마. 귀화 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고

국적과 사무관 김용국

1) 추진배경 및 경과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법상의 법률행위로, 최근 5년간 귀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매년 평균 10,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국적 취득을 위해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화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법무부는 2024. 7월 귀화 또는 국적회복 신청자가 자신의 국적 심사 진행 상황을 온라인(하이코리아 웹사이트)상에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국적심사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개시하였다. 하이코리아에 회원 가입한 귀화 또는 국적 회복 신청자가 동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번호,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귀화 심사 단계(6단계) 또는 국적회복 심사 단계(4단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동안 '국적심사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에 접속한 횟수가 102,100번에 달하는 등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들의 동 시스템에 대한 이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적심사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에 대한 접속 횟수 등으로 볼 때 조회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는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자에 대해서만 '심사 진행 상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다른 유형의 국적 신청자 등으로 동 서비스

제공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등 귀화 심사 환경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방식의 귀화 신청 접수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 온라인 방식의 접수 제도는 귀화 신청자가 출입국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귀화 신청이 가능하여 귀화 신청자 등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124 | 유형별 국적취득(귀화,회복) 현황

(단위 : 명)

종류별 / 연도별	총 계		귀화		국적회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20	18,899	15,649	16,529	13,885	2,370	1,764
2021	21,160	13,637	18,091	10,895	3,069	2,742
2022	22,789	13,291	18,079	10,248	4,710	3,043
2023	23,745	14,549	18,736	10,346	5,009	4,203
2024	24,955	14,616	19,470	11,009	5,485	3,607

6.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균형있는 난민정책 추진

가. 추진배경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분쟁 등으로 인해 난민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994년 난민제도를 시행한 이래 2024년 한해에만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건수는 18,336건으로 역대 두 번째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경제악화 및 안보 등의 사유로 해외 주요국의 난민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난민인정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난민전담공무원 심사역량 강화 교육 및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운영하였고, 2023. 12월부터 시범운영하던 화상면접시스템을 2024. 5월 정식운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난민신청자를 위해 다국어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난민 현안 공유 및 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재정착실무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한 처우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난민법」 개정을 위해 국민 여론조사 및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구제를 위해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표 2-125 | 난민신청 및 심사 대기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0	2020	2021	2022	2024
난민신청		6,684	2,341	11,539	18,837	18,336
대기	1차	14,983	7,649	11,066	20,249	27,704
	이의신청	5,115	4,526	4,887	6,489	8,137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나. 추진내용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1) 2024년 난민 신청 및 심사 현황

1994년 난민 업무를 최초 시행한 이후 2024년까지 총 122,095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철회된 29,164건을 제외한 총 57,090건에 대하여 난민심사를 완료하였다. 심사 결과 1,544명에게 난민인정 지위를 부여하고 2,696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하여, 총 4,240명에게 「난민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였다.

2024년 난민신청 건수는 18,336건으로 전년(18,837건) 대비 3% 감소하였으나,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총 27,704건으로 전년(20,249건) 대비 37% 증가하였다.

2024년 난민심사결정 건수(1차 심사 후 이의신청까지 완료한 건수)는 총 5,610건으로 전년도 5,949건 대비 5.7% 감소하였고, 난민인정은 105건으로 전년도 101건 대비 4% 증가하였으나 인도적 체류허가는 101건으로 전년 125건 대비 19% 감소하였다.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2) 「난민법」 개정 추진 및 하위법령 개정

해외 주요국과 달리 2023. 12월 현행 「난민법」에는 국내에서 테러에 가담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24. 5월 개정안에 대해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다수가 난민법 개정에 찬성하고 난민법 개정 시 난민인식이 개선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입법예고 이후 시민단체, 규제심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난민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한 것이다. 2024. 11월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기도 하였다.

2024. 12월 현행 난민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난민법 시행령」에는 난민심사 화상면접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난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또한 「난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난민인정신청서 및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에 난민신청자의 대한민국 법질서 준수의식 제고를 위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였다.

* (난민법 개정) 찬성 63.8%, 반대 18.1%, 모르겠다 18.1%
(난민법 개정 시 난민인식 개선 여부) 동의 57.5%, 동의안함 34.6%, 모르겠다 7.9%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3)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심사

적극적인 난민심사를 위해 난민면접 과정에서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된 박해 사유 이외의 다른 박해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난민인정 여부 결정 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및 박해 가능성 유무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진술과 출신국의 정황 정보, 기타 사실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법무부는 전문적인 난민심사를 위해 매년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난민심사보고서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난민면접 기법 및 심사보고서 작성, 진술분석 방법 등 교육과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지원 교육,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전문가를 초빙한 전문교육(총 6회), 법무연수원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국내외 난민심사이론과 실무 심사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있다.

| 표 2-126 | 2024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회차	참석인원	주요 내용	주최
1차 (2.22. ~ 2.23.)	31명	• 인식개선 및 인권감수성 교육 • 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협약 • 일본난민인정실 법무전문가 강연- 일본 난민심사제도	법무부
2차 (5.9. ~ 5.10.)	25명	• 난민면접 유의사항 및 심사보고서 작성법 • 난민소송 수행 기법 • 전문가 초청 강연 – 국제이주 시대와 난민문제 •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 심리지원 교육	법무부
3차 (상반기 거점자체교육)	57명	• 난민면접 및 심사보고서 작성법 • 국가정황 정보 분석 •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 심리지원 교육	법무부
4차 (8.29 ~ 8.30.)	44명	• 난민심사 노하우 공유 • 인지면담 및 진술 분석 방법 등	법무부
5차 (12.5. ~ 12.6.)	43명	• 난민소송 사례 분석 • 전문가 초청 강연 – 아시아 난민 국제이주 동향 • 난민지위심사(젠더)	법무부
6차 (하반기 거점자체교육)	69명	• 난민면접 및 진술 분석 • 난민소송 수행 절차 • 전문가 초청 강연 – 국가정황 분석, 심리지원 교육	법무부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4) 난민통역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2024. 12. 31. 기준 난민신청자의 국적은 139개국으로 국적과 구사 언어가 다양해지며 소수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언어권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난민전문 통역인 풀(Pool)을 구축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통과하여 최종 인증받은 사람을 위촉하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함)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22. 1월 제1회 인증제를 통과한 30개 언어 160명의 통역인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한 바 있고, 이후 매년 시행하여 2023년 25개 언어 148명, 2024년 25개 언어 106명을 위촉하였으며, 2024년 제4회 인증제를 시행하여 2025년도에 위촉할 29개 언어 147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통·번역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난민(전문)통역인 통역능력평가를 2024년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난민(전문)통역인에게 난민통역 윤리, 난민통역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난민(전문)통역인의 역량강화 및 통역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그림 2-135 | 2024년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개최(2024. 1. 29.)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윤리선서식)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참가자 기념촬영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5)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지원 지속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는 기본적으로 난민인정 등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기간 동안 난민인정 신청자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적국의 박해로부터 긴급히 피난해오는 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허가 등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난민신청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4년 한 해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된 생계비는 총 5억 7천만 원으로, 가구당 1회 생계비 지원 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127 | 2024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非) 입주자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	291,700	489,000	629,200	768,150	903,650

2024년 한 해 전체 난민신청자 18,336명 중 521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283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6) 재정착난민 개선

2015년 최초 도입 이후 2023년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본계획에 따라 정규 사업으로 전환된 재정착난민 제도는 「난민법」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난민 중 우리나라로의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착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국내에 정착시키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태국 내 임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 86명,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말레이시아 도시 난민 116명 등 총 250명의 재정착난민을 선발하여 재정착시켰다.

2024. 6월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 및 처우 개선 관련 현안 공유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착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재정착난민 멘토링 가이드북」, 「재정착난민 수용업무 매뉴얼」 등 업무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국정 기조(마약범죄 강력 대응)와 재정착난민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 12월 기초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최초로 추가하여 시행하는 등 재정착난민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재정착난민 대상자를 추천하는 유엔난민기구(UNHCR)측이 말레이시아 거주 난민 선발의 어려움으로 출발지 국가 변경을 요청해 옴에 따라 2024년 출발지 국가를 태국으로 변경하는 등 국제기구와 원활한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였다.

| 표 2-128 | 재정착난민 수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3	2024
인원 (가구수)	22(4)	34(7)	30(5)	26(8)	37(15)	17(5)*	67(24)	12(6)	7(3)
사업수행국	태국	태국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 2019년 수용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입국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7)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의 주거·교육·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2024년 신규 입소자는 총 48명이다.

지원센터는 수준별 한국어 및 한국 사회적응 교육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한국사회 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재정착난민 대상 기초 법·질서, 필수 생활정보(교통, 의료, 교육 등) 등의 맞춤형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최초 실시하여 한국문화 이해도 제고를 통해 국내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8) 글로벌 난민문제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강화

2024.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난민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라우프 마조우(Raouf Mazou) 최고대표보와의 면담을 통해 양측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2024. 7월 UN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하여 위원 질의 사항에 충실히 답변하는 등 그간의 난민인정 절차 개선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도출하였다. 또한, 2024. 10월 제75차 UNHCR 집행이사회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림 2-136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보 면담(2024. 4. 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보 면담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9) 난민인식에 대한 이해 증진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차별의식을 완화하고,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정책 고객별로 난민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4. 7월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정착난민 정착지원 협업방안을 마련하였고, 인천광역시 소재 교육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4. 8월 난민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난민정책 홍보를 통한 난민 인식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해 '난민소식지(RPM)'를 분기별로 총 4회 발간·배포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2025년에는 화상면접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국제기구·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협업하여 난민심사·통역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수언어 등 난민전문통역인 인력풀 확충을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계속 시행하는 등 난민심사 인프라를 강화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보호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인정자 대상 사회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기 난민인정자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처우 지원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난민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철회할 수 있는 「난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7.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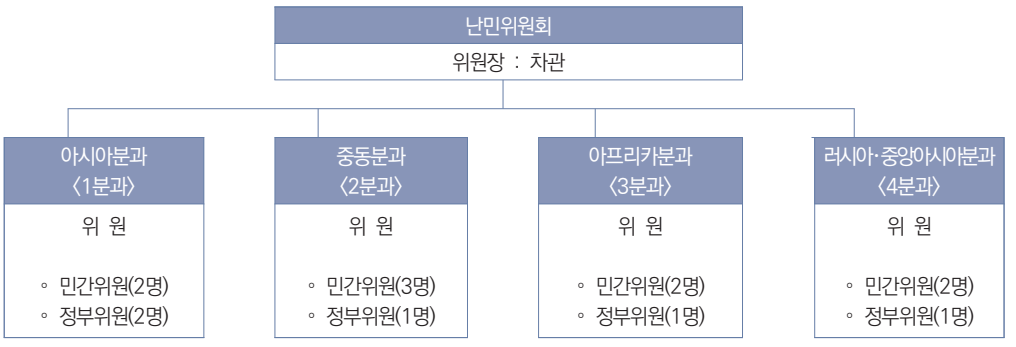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2020. 2. 25.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난민심의과는 그간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실적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지표를 충족하여 2024. 9월 정규 직제화되었다.

세계 각지에서의 전쟁 및 쿠데타 발발, 불안한 사회·경제 상황 등으로 2024년 난민신청 건수는 18,336건,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5,153건에 달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하였으며, 난민신청자의 출신국도 약 140개국으로 다양화되었다.

2024년 난민심의과는 난민위원회 총 5회, 난민분과위원회 총 48회(대면 분과위원회 2회 포함)를 개최하여 약 3,00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의신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 표 2-129 | 난민위원회 조직도(분과위원회별)



| 표 2-130 | 난민 이의신청 및 심사 결정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의신청	3,723	3,110	4,067	5,954	4,718	3,748	5,247	5,153
심사결정	4,415	2,584	3,431	3,792	4,997	3,080	3,143	3,002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나. 추진내용

난민심의과 사무관 배창준

1)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 강화

지속적으로 변화·고도화되고 있는 국제적 난민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의 범주별 개념, 국내·외 사례 분석, 실무 적용 방식 등을 다룬 난민지위심사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발간에 앞서 국제기구(UNHCR 한국대표부), 국제법 교수 및 다문화 관련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1차 심사기관 난민 전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안내서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난민심사 관련 특이사례 공유, 국내·외 판례분석 등 난민신청 사례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심층분석을 위한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해외 연수·출장 등을 통해 습득한 선진국의 난민심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난민조사관의 전문성 향상에 힘썼다.

난민심의과 사무관 박병건

2) 난민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2021. 7월 난민 이의신청서 서식을 개정한 이래 이의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2024년도에는 △의견진술 청취 대상자 선정 기준 구체화, △대상자 선정회의 및 대면 분과위원회 정례 개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에 6개 언어로 배포해왔던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서」를 16개 특수언어 (카자흐어, 힌디어, 튀르키예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몽골어 등)로 추가 발간·배포하여 난민신청자가 난민 이의신청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인이 직접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진행 경과를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의신청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3) 국가정황정보 수집·관리 체계 고도화

국제정세 불안 및 난민신청 사유 다변화로 인해 국가정황정보(County of Origin Information, COI)*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문인력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국가정황정보 조사팀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정황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국가정황정보 지식 및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1차 심사기관 난민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신력 있는 외국기관 등에서 발간한 국가정황정보 보고서를 번역·감수하는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사업」 추진, 주제별 국가정황보고서 발간 등 교육·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국가 간 난민 문제 공동 대응 필요성 증가에 부응하며 호주, 일본, 오스트리아 등 해외 국가정황정보 전담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난민인정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인권, 사회환경, 정치 상황 및 법체계, 주요 사건 등에 관한 정보로, 난민심사 결정 시 활용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 자료

4) 유엔난민기구(UNHCR)와 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2022년부터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정례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2024년에는 난민면접 기법, 난민 요건 해당 여부 분석 기법 등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난민조사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아울러, 2024년에는 국가정황정보 조사관을 대상으로 동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였고, 유엔난민기구 본부 소속 국가정황정보 전문가도 참석(온라인)하여 상호 소통·교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국가정황정보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참여자들의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측과 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실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발간(2023. 7월)한 「이민·난민용어사전」 개정판 발간을 추진하여 이민·난민 정책 용어 표준화·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제도개선을 위해 국제기구 및 학계 등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국가정황정보 공동 조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 및 MOU 체결 등을 추진하여 향후 역내 난민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에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후 예산 확보를 마친 국가정황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가정황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난민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주요 선진국 국가정황정보 DB와 연계· 활용함으로써 아시아 단일 난민법 제정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난민 이의신청인의 권리보장 강화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실조사 및 의견진술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난민지위심사 안내서를 비롯한 각종 연구자료 등을 지속 발간하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정례화하여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다.

8.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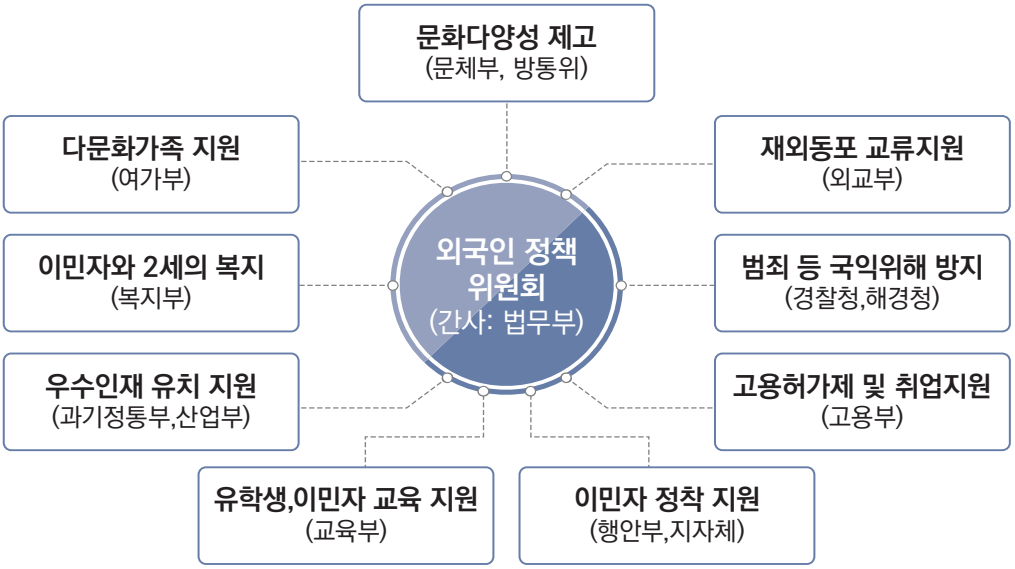
가. 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정책[3]은 그 특성상 관련 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의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4. 5. 10. 제28차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조정을 거쳐 「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그림 2-137 | 외국인정책위원회



3)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를 의미하며,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정책'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구성원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상 한계가 있고,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민정책'으로 정책 명칭을 전환함

2) 주요 내용

「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른 5개 정책목표(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를 중심으로 21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438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6,857억여 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수급 전망과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 등을 고려한 과학적 총량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취업비자 분야별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 시범운영
-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인력 지원을 위한 숙련기능인력(E-7-4) 공급 확대
-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교육의 질 관리 강화, 지자체 주도 대학지원체계(RISE) 내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전략 마련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 실시
- K-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 및 크루즈 상품개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크루즈 관광 활성화

나)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 불법체류 외국인 상시 단속체계 가동 및 특별 자진출국제도 운영, 서민 일자리 잠식·국민안전 위협 분야 집중단속 실시 등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 외국인 밀집지역 중점관리,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등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관리 체계 구축
-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자격요건(최소 거주기간 6개월 추가) 강화
- 단체 관광객 신청 편의를 위한 전용 시스템 구축, 여권 판독 기능 개선, 공용어 중심의 다국어 확대 등 전가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

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하여 사회통합지수 측정(3년 주기) 및 정책컨설팅 실시
- 조선업종 등 지역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대 실시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 자립 지원 등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지원
- 재외동포 자격 단계적 통합 추진, 동포 취업활동 범위 확대 및 동포체류지원센터 활성화

라) 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확대,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등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 보호외국인 이동권과 소통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확대
- 난민 심사 절차 개선 및 난민 이의신청인 의견진술 청취 확대 등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 제고, 출입국항 난민 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 지원

마)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 국가 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중앙부처·지자체·민간 협력 강화
- 실물 신분증의 신뢰성·보안성·정보 취약성 등 보완, 외국인의 디지털 불평등 해소 및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
- ICAO, UNHCR, IOM 등 이민 관련 다자 국제회의 및 지역 안보 워크숍 참여로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 체제 구축, 해외 이민정책 담당자 교류 확대

| 표 2-131 |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2024년 / 정책목표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계	1,438	685,709	167	374,764	1,271	310,946
1. 개방	222	249,808	56	195,622	166	54,186
2. 통합	52	12,239	31	10,022	21	2,217
3. 안전	981	356,961	37	141,267	944	215,694
4. 인권	124	52,886	20	17,712	104	35,175
5. 협력/인프라	59	13,815	23	10,141	36	3,674

나.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외국인을 직접 마주하는 지자체(기초포함) 공무원들은 출입국·고용·이민 등 외국인정책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 부족으로 관련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외국인정책이 부상하고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국인정책 추진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2) 추진경과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대한 광역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수렴 목적으로 최초 실시하였고, 2022년부터는 기초지자체까지 참석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횟수를 늘렸으며(연 1회에서 연 5회), 2023년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 바, 2024년 총 6회 개최하며 609명의 지자체공무원 등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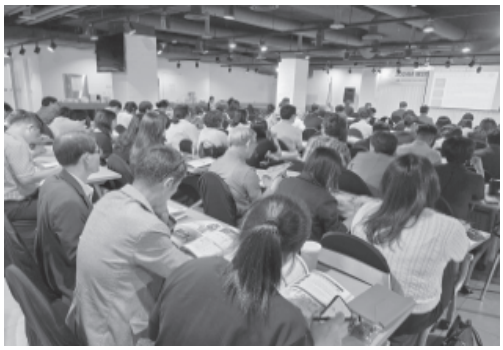
* 2020. 7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전라남도 도지사가 "기초지자체 공무원 대상 권역별 외국인정책 교육 확대 실시"를 국무총리님께 구두로 건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에서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실시

3)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재한외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상호 협조 의무가 있어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책 업무 역량 강화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외국인·이민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부처(법무부, 행안부 등) 외국인정책 주요 추진과제 및 지자체 우수 외국인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내용(과제)들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안건 등으로 상정하여 중앙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138 |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워크숍



2024년 제2회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워크숍



2024년 제4회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워크숍

다. 2024년 정책발표회 개최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이한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4. 11. 15. 출입국·외국인 정책 환경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입국관리 직원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 발굴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실무 중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현안 과제 대응에 활용하고, 미래지향적인 외국인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원이 참여하는 제27회 정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이래 매년 출입국·외국인행정 실무와 관련된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출입국·외국인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4년 정책발표회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총 59개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2024. 11. 15. 개최된 제27회 정책발표회 본선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민행정 혁신 방안'이 최우수상을, '난민인정자의 국적국 여권 사용 규제'와 '생체정보 확인 기술을 활용한 출입국심사 혁신 방안'이 우수상을, '난민(신청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입국 허가제도 활용'과 '체류 외국인 취업·영리활동 관리 강화 방안' 및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정책발표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본부 현안 또는 중점 추진사항

중 지정과제에 대한 발표과제 선정 방식'을 추가하여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창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39 | 제27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2024. 11. 15.)





라. 2024년 이민정책포럼 개최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이한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7. 8. 29.부터 수요정책포럼이 시작되었다. 2016. 3. 24. 이민정책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제 및 발표방식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2017. 9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e-나라 도움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일선 기관 직원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강의 집중도 저하 및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여 2022. 5월부터는 운영방식을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 운영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포럼 운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안 주제에 대한 집중토론 방식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2024년 이민정책포럼은 총 8회 개최되었다. IOM 등 해외 전문가와 국제기구 파견 경험 내부직원, 대학교수, 현안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채민석,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지역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권채리, 동아대학교 교수), 이주 글로벌 콤팩트의 이해(이재호, IOM 한국대표부 정책 담당관), 난민과 이민자의 경계선(차용호,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자, 연구원, 정책담당자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외국인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였다.

이민정책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이민정책 환경과 세계적 이민정책 동향을 듣고 서로의 생각 등을 공유함으로써 정책추진 역량 및 이해도를 향상시켰고, 외국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그림 2-140 | 2024년도 이민정책포럼




마. 국제협력 강화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임연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4년은 우리나라가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장하고,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 중요한 시기였다.

다양한 국제회의와 고위급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외 이민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국경관리 및 불법 이주,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新 출입국 이민정책 등 우리 정부의 우수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향후 해외 우수 인재와 노동력 유치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IOM 사무총장, UNHCR 최고대표보 등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글로벌 이민환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가) 국내외 주요 인사 면담 및 교류 협력 강화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불법 이민 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및 국제기구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전략적 대화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각국·지역의 이민 당국 및 국제기구와 상호 교류를 깊게 하면서 제휴·협력을 강화하였다.

2024. 2월 법무차관이 에이미 포프(AMY POPE) 국제이주기구(IOM) 신임 사무총장을 만나 데이터에 기반한 이주 정책과 이민자에 대한 통합지원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고, 2024. 4월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라우프 마조우(RAOUF MAZOU)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보를 만나 두 기관의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 주요 인력 송출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치열해지고 있는 해외 인력 도입 경쟁에서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024. 4월 캄보디아 이민청의 초청으로 2023.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1차 한·캄보디아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에 이어 제2차 고위급 회의가 캄보디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인적 교류 활성화를 대비한 긴밀한 협력관계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다.

또한 2024. 5월에는 9년 만에 베트남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이민당국 간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 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 장관, 필리핀 이주노동자부 차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다.

| 그림 2-141 | 국내외 주요 인사 면담 및 교류 협력 강화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 장관 회담



IOM 사무총장 회담



필리핀 이주노동자부 차관 회담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 회담



한-캄보디아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한-베트남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나) 국제이민협력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 참여

제14차 국제이주개발포럼(GFMD), 제3차 아세안+한·중·일 이민청장회의, 제4차 도쿄 출입국 포럼, 제19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TRIP 심포지엄,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BMG) 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세계적·지역적 이주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참석 국가 및 국제기구에 홍보하고 정책 방향과 성과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8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3차 아세안+한중일 이민청장 회의에서 일본, 중국, 태국과 양자 회의를 별도로 진행하여 출입국 절차 부분 이슈와 이민정책을 논의하는 대화 창구로 활용하였다.

'기후 변화가 인간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이주개발포럼에서는 주요 국가들과 노마드 비자 도입 사례 공유 등 인재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2024. 11월 제115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여(녹화 영상 송출)하여, 2024. 9월 발표된 '신 출입국 이민정책' 등 공정하고 합법적인 이민 경로 마련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그림 2-142 | 국제회의 참석



제3차 APT 이민청장 회의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BMG) 회의



제19차 ICAO TRIP 심포지엄



제4차 도쿄 출입국 포럼(TIF)

9.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시스템 구축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개인정보의 보호가 점차 강화되는데다, 실물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의 신뢰성 및 보안성 문제 등 한계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과학적 국정운영,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등 목적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국가신분증 도입(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사업 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 주요 추진내용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을 개정(2023. 12월 시행)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4년도에 완료하여, 2025. 1. 10. 부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하였다.

| 그림 2-143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견본 이미지



기본 화면(민감정보 미 표출) | 상세 화면(민감정보 표출)

* 기본화면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민감정보를 표출한 상세화면으로 전환

3) 평가 및 발전방향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정책 대상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외국인을 포함함으로써, 외국인의 디지털 생활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활 밀접 정보의 전달을 강화하여 외국인의 소외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뢰성 있는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수립, 신원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능동적인 전자민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등 이민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나. 전자칩(IC) 내장 외국인등록증 발급 추진

◉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식별번호(PIN*)를 전자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전자칩(IC)을 내장하고 관련 법령 개정, 외국인등록증 디자인 및 발급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사용자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통상 4자리 숫자

2) 주요 추진내용 및 추진경과

2024.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등록증에 전자칩(IC)을 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자칩(IC) 내장 외국인등록증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함을 알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에 국가 모바일 신분증 로고( )를 추가하였다.

| 그림 2-144 | 전자칩(IC)내장 견본 이미지



전자칩 내장 외국인등록증 (일반) 외국인등록증

3)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칩(IC) 내장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모바일 신분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생활 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다. 출입국 사실증명 등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유공자 등 유족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면제되나 출입국·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아 수수료 면제에 대한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였다.

2024.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출입국 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주요 추진내용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까지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등도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출입국 관련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와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구현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라.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및 인프라 보강

이민정보과 사무관 윤영봉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구역 확장으로 여객수용능력이 기존 대비 1.5배 이상 증대함에 따라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총 24대의 신규 증설이 필요했다. 이에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의 심사 속도를 개선하고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신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 그림 2-145 | 2024년도 자동출입국심사대(6세대) 설치



출국장 17대 설치(9. 30. ~ 10. 8.)



입국장 7대 설치(10. 11. ~ 10. 14.)

2) 주요 추진내용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심사속도 개선

금번 도입된 총 24대의 자동출입국심사대에는 메인보드 성능 개선을 통해 다중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심사대 제어PC의 OS를 최신 버전으로 변경하여 백그라운드 작업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심사속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알고리즘 업그레이드를 통해 데이터 처리 속도 및 실시간 객체 탐지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1인당 평균 심사속도를 기존보다 약 1초가량 단축할 수 있었다.

| 그림 2-146 | 2024년도 자동출입국심사대(6세대) 성능 개선

개선사항	세부내용
메인보드 및 플래시 메모리 성능 개선	• 기존 메인보드 대비, MCU와 Flash Memory의 사양을 높여 다중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향후 데이터 처리 확장성 확보 • 별도의 전원 On/Off 스위치를 적용하여 메인보드 탈부착 시 전기적 충격 방지
다중감지 알고리즘 개선	• 다중감지 알고리즘 버전 업그레이드: V1.14 → 2.01 • 데이터 처리 속도 및 객체탐지 정확성 개선

나) 자동심사대 운영 안정성 제고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운영 서버를 이중화함으로써 기존 서버의 운영이 중단되어도 예비 서버로의 운영 전환이 즉시 가능해져 심사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방화벽 및 네트워크 장비를 이중화하여 각종 장애 및 비상상황 발생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성능 개선과 인프라 이중화를 통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객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첨단 정보화기술이 반영된 자동출입국심사대의 도입을 통해 내·외국인 여행객들의 이용 편의성 증대와 심사대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10.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통일된 성명 표기,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 체계가 확립된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부처마다 인적정보를 다르게 표기하여 정확한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입국 시 사용한 여권상 영문 성명 등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 (한국 1952년 가입)

| 그림 2-147 |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2023. 4. 17. ~ 5. 30.)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3. 8. 22.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법무부는 정부안의 내용을 반영한 의원 발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 지원 노력을 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4. 12. 20. 공포되어 2025. 6. 21.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개정안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정의(제2조의17),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사용권고(제78조의2), ▲정보시스템 운영의 근거(제78조의3) 마련을 골자로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를 비롯한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하였다.

행정기관 등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법무부에 기본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의 정보시스템과 각 행정기관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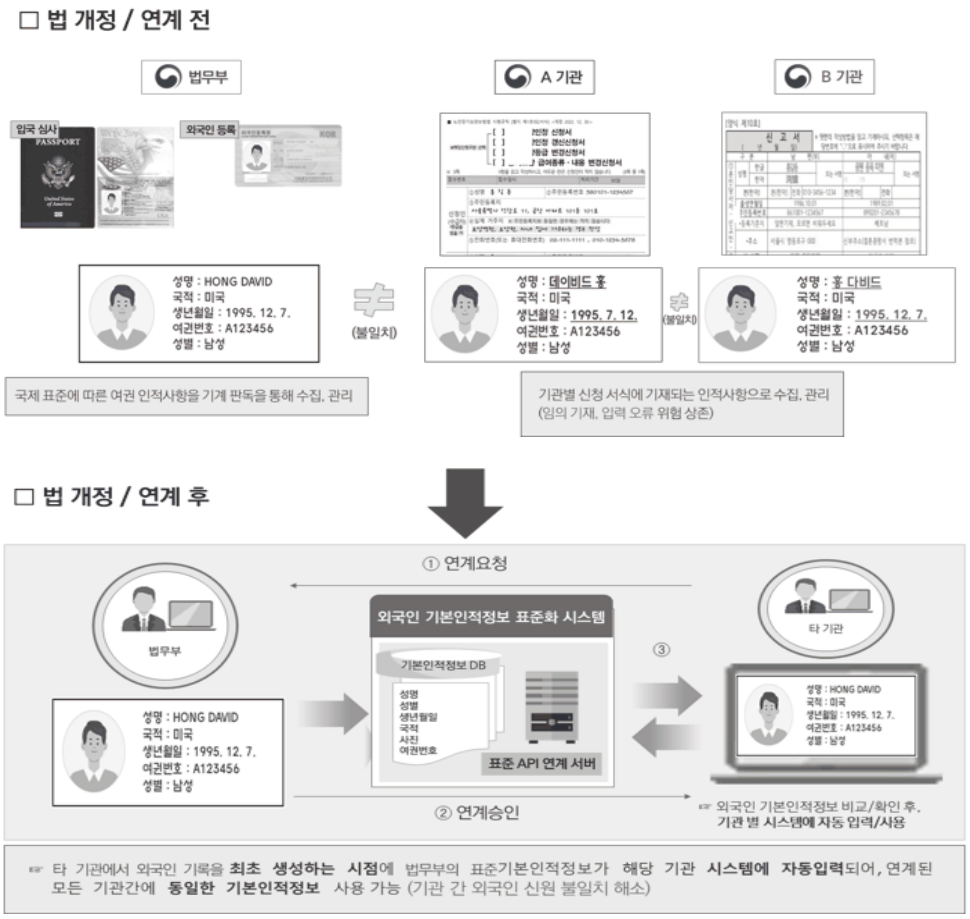
3) 평가 및 발전방향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자체 서식을 통해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수집·관리하여 임의기재 또는 입력오류의 위험이 상존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이 연계된 행정기관 등에서 외국인 기록을 최초 생성하는 시점에 법무부 기본인적정보가 해당 기관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하여, 연계된 모든 기관 간에 동일한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불일치에 따라 발생했던 범법 외국인 동일인 확인, 조세 체납자 확인 등 행정업무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신설된 「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제78조의3(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운영을 위한 세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위 법령에서는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신청 서식, 정보시스템의 운영 범위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규정된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사용의 확대를 위해서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 및 형사사법기관 등과 정보시스템의 실질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그림 2-148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에 따른 개선 효과



나.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운영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창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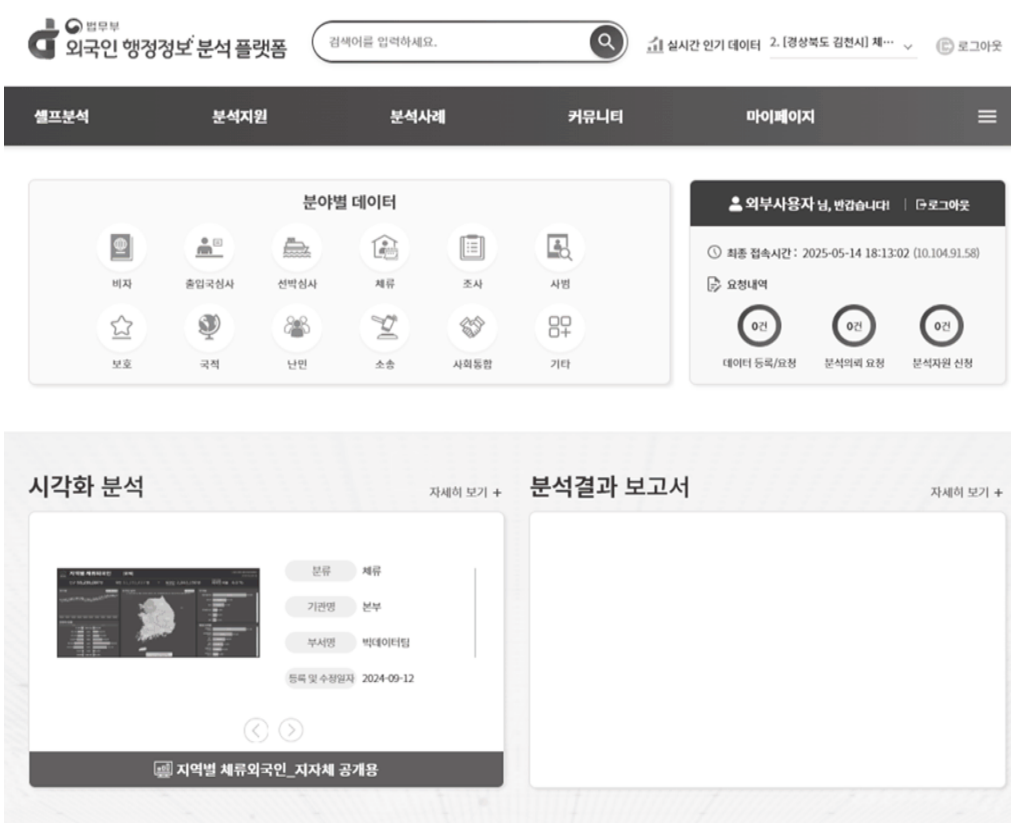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데이터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해 법무부 보유자료, 관계기관 간 공유데이터 등 외국인 관련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자유롭게 분석·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였다.

2023. 11월 구축 완료된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을 2024. 1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운영하였고, 2024. 10월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총

26개 기초지자체) 소속 지자체 중 플랫폼 이용을 희망한 2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플랫폼 접근 권한을 부여하였다. 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동 단위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연령별 외국인 시각화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맞춤형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림 2-149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화면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으로 분산된 외국인 행정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데이터 기반 이민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각 사용자는 스스로 외국인 행정 데이터 조회, 가공, 결합, 시각화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에 분석 의뢰를 할 수 있다. 2024년 데이터 분석요청 처리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132 | 2024년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분석 지원 현황

(단위 : 건)

합계	체류	출입국심사	조사·사범·보호	난민	국적	기타
269	134	53	41	13	4	24

추후 본 플랫폼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지자체, 광역지자체(17개) 등에 확대 개방함으로써,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지자체의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간 이민정책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자료 공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창규

법무부는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5종*의 데이터 자료를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 '정보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하여 2024. 3. 11.부터 공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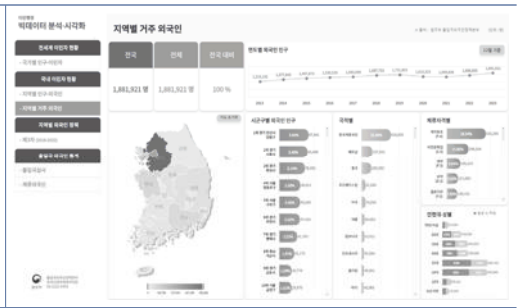
* ①전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②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③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④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 현황, 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 자료

해당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용자는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및 관련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림 2-150 |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공개된 이민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화면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이중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자료는 시각화하여 매월 15-20일 경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현황,' '외국인 고용 현황' 등 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추가 개발하여, 관련 부처, 지자체 및 국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외국인 관련 데이터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창규

지역 상황을 반영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부서와 지자체의 다양한 외국인행정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자체와 맞춤형 외국인 빅데이터 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법무부는「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기간 동안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동포·유학생·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지역별 외국인 고용 현황 및 산업별 현황 등을 분석·시각화하여 제공하였다. 향후에도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행정 데이터 분석자료를 정책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표 2-133 |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분석 요청·처리 실적

연도	분석 대상 지자체
2022년	• 전라남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 전남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충남 논산시, 예산군, 보령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상북도 영천시, 영주시, 고령군, 의성군,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경북 군위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대구광역시 남구 등
2023년	•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 경북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안동시, 충북 제천시
2024년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 전라남도 영암군, 영광군,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총계	45개 지자체

마. 소속 직원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강화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창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직원들이 신규 구축한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출·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4. 2. 15.부터 2. 16.까지 2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활용 실무」 과정을 운영하였다.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소속 직원 총 5명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외국인 행정정보 분석플랫폼의 분석·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셋 만들기' 등의 실습 과정을 진행하였다. 총 20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직접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등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2024. 8. 5.부터 5일 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의뢰하여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과정에 총 15명의 직원이 참여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외국인정책 추진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2-134 | 2024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분석 교육훈련 과정 프로그램

일자	교육주제	교육내용
1일차	빅데이터 분석 개론 데이터 활용 교육	• 빅데이터 개요 • 빅데이터 분석 계획, 수집 및 저장
2일차	빅데이터 분석 이해 및 Tableau 활용 방법	• 빅데이터 분석 이해 • Tableau 활용 방법 이해 및 실습
3일차	데이터 분석도구 이해	• R 소개와 활용 사례 소개 • R 및 R Studio 설치 및 활용 실습
4일차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 빅데이터 가시화 실습 • 빅데이터 분석 실습 • 빅데이터 활용법 실습
5일차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전처리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변환 및 검색처리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통계 분석 및 가시화 실습

11.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고도화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사무관 김명훈

1) 추진배경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하였다.

2024년에는 추가 정책 연구를 통해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농업과 제조업 등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및 범죄 등 이민 유입의 사회적 비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등, 제도의 정식 운영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분석 연구(2023, 서울대 산학협력단 주관)"

| 표 2-135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흐름

자료수집/실태조사	실태 분석	분야별 규모 결정	사전 공표	평가·조정
▸ 법무부 외국인정보, 산업 주무부처 및 통계청 자료 등	▸ 민간 연구진 분석 (국민 고용에의 영향, 업·직종별 부족규모, 불법체류·정주화 등)	▸ 전문가 자문 ▸ 산업별 주무부처 협의 ▸ 연간 도입규모 산정	▸ 연간 외국인력 비자규모 공표	▸ 유입 모니터링 (비자 발급규모 산정 관련 조사·연구에 반영)

2) 주요내용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외국인력 유입이 국민 고용과 임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농업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E-8) 수요, 상용·임시·일용근로자 부족 수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 및 계절근로(E-8) 비자 발급규모 산정에 반영하였으며, 제조업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고용 시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였다. 또한 각 산업별-비자종류별 인력부족 수준을 각 권역별(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구분·산출하여 지역별로 예상되는 상이한 노동부족 패턴을

이민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분야별 노동부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시범적으로 고안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각 부처에 공유하고, 2025년 비자 발급규모, 전문·기능인력 도입 필요 분야, 외국인력 도입 조정 필요 분야 등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어 각 산업 주무 부처와의 논의, 비자별 협의체 논의 결과, 2024년 비자 발급 현황,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를 산정하였다.

우선, 전문·기능인력 비자(교수(E-1)~특정활동(E-7))의 경우 그간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도입규모를 제한하지 않되, 신규 도입 대상 분야(2024년 시범 도입 분야 포함) 및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에는 기존과 같이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에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인력부족 규모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련 관계부처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한 상한을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 표 2-136 | 20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

구 분			업종	2024년 발급량 (비자 발급 상한)	2025년 비자 발급 상한	비 고
전문·기능인력	신규 도입 (기능인력)	판금·도장 정비원 (E-7-3)	자동차 종합수리업	해당 없음	추후 확정	• "비자 제안제"를 통해 비자 발급규모, 발급 요건 등 확정 예정 • 2024년 시범 도입 3개 분야* 비자 발급규모 상한은 동일 수준(300~400명) 유지 * 요양보호사(E-7-2), 항공기(부품)제조원(E-7-3) 송전전기원(E-7-3)
		건설기계제조 용접·도장원 (E-7-3)	건설기계 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 성형·용접·금형원 (E-7-3)	자동차 부품 제조업			
		도축원 (기능직군 한정) (E-7-3)	도축업			
	숙련기능인력 (E-7-4)		제조업, 건설업 등	**13,474** (35,000)	**35,000** (2024년과 동일)	• 제조업 인력 부족 규모, 전환 시뮬레이션 결과, 최근 제도 개선사항 및 관계부처 의견 고려
비전문인력	계절근로(E-8)		농·어업	**56,802** (67,778)	**74,689**[1]	•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결정 (2024. 11. 26.)
	고용허가제(E-9)		제조업, 건설업 등	**81,470** (165,000)	**130,000**	• 제45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공고(2024. 12. 27.)
	선원(E-10)		어업 등	**21,644**[2] (23,300)	**23,300** (2024년과 동일)	• 총 체류인원 한도 내 발급 (2024년과 동일)

1) 2025년 계절근로(E-8) 비자 발급규모는 상반기 배정 인원 기준

2) 21,644명은 현재 기준 총 체류 인원을 의미하며, 비자 발급 건수를 의미하지 않음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정식 운영함으로써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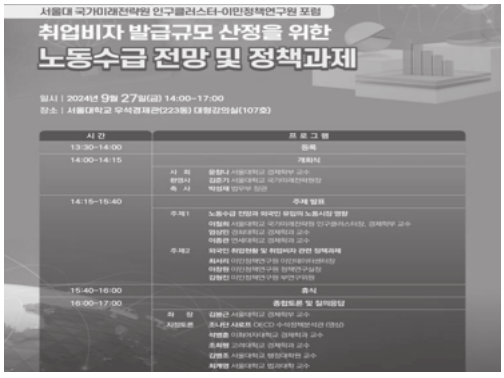
3) 향후계획

법무부는 2025년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본격 운영과 더불어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범부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 및 불법체류·범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비자 정책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대상 분야 및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 그림 2-151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관련 서울대학교 - 이민정책연구원 학술포럼





서울대학교 - 이민정책연구원 학술포럼(2024. 9. 27.)

나.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확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사무관 이재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2. 10월부터 실시한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에 이어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정식사업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참여도 및 호응도가 높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있었던 대상지역 확대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환요건 및 체류관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대상지역 확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유치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였다.

2) 주요내용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지자체에서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총 107개 기초지자체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으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신설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도 지역특화형비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계하여 E-9 → E-7-4R → F-2-R 전환 경로를 마련하였다.

3) 향후계획

2025년 지역특화형비자 지자체별 인원 배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통하여 지자체별 수요인원 신청의 적절성, 인구감소 위험도, 기존 지역특화형비자의 성과 등을 반영하여 인원을 배정하고, 2025년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표 2-137 |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추천 현황

(단위 : 명)

구 분	배정	추천	허가
지역특화 우수인재	3,291	1,734	1,332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	235	124

| 표 2-138 | 지역별 지역특화형비자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F-2-R	2,762	186	63	97	53	290	371	640	228	559	275
F-4-R	230	10	4	1	0	48	57	14	36	59	1

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사무관 이재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현재 저출생 기조 장기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인력난과 인프라 부족 등 지역 간 불균형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주인구 및 활동인구 확보,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도입 및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외국인이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2024. 8. 13.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기반 이민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역의 상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민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2024. 9. 26.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과제로 광역형 비자를 반영함으로써 광역형 비자의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24. 12.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함으로써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2) 주요내용

법무부가 광역형 비자의 요건을 마련하면, 광역형 비자 사업에 공모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 및 인력수요,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 계획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법무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광역형 비자 심의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광역형 비자 사업 시행이 확정된 지자체는 지역에 유치 및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선발하여 추천하고, 법무부는 지자체의 추천서 및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 등을 확인하여 비자를 발급한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입 증가와 더불어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외국인 비중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 등도 세심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광역형 비자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도별 평가를 실시하여 각 지자체가 실시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인원 충원율, 불법체류율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3) 향후계획

2025. 4월 광역형 비자 대상 지자체 선정 및 사업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고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과 동시에 2027년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과 동시에 지역사회가 외국인을 포용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림 2-152 |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관련 간담회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간담회(2024. 8. 13.)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설명회(2024. 12. 13.)

제11절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

가. 개요

과거 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검증 기능을 분산하여 권한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인사검증 담당기관을 다원화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복잡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검토가 중요한 검증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2. 6. 7.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운영하였다.

나. 운영 현황

1) 구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 인사정보관리단장 및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하고, 다양한 검증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였다.

2) 인사검증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등 공직 적격 여부 판단에 필요한 공적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해 확인·검토하는 객관적 1차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증 업무의 독립성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검증 내용은 보고받지 않고 있고,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했으며, 인사정보관리단과 여타 부서 간의 정보교류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다. 향후 계획

공직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성을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토대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法務年鑑

03



법령정비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

제3절 대통령령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제1절 개관

구분 / 연도	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부령
2012	58	7	2	3	2	51	10	24	17	-	-
2013	59	3	1	1	1	56	14	14	28	-	-
2014	83	8	1	4	3	75	27	26	22	-	-
2015	59	4	1	2	1	55	10	19	26	-	-
2016	80	5	3	1	1	75	24	26	25	-	-
2017	70	3	-	2	1	67	23	20	24	-	-
2018	58	1	-	1	-	57	19	23	15	-	-
2019	51	2	-	1	1	48	9	24	15	1	-
2020	71	2	-	1	1	69	27	25	17	-	-
2021	86	9	2	3	4	76	27	24	25	1	1
2022	60	1	-	-	1	58	18	18	22	1	1
2023	54	-	-	-	-	54	17	15	22	-	-
2024	56	2	0	2	0	54	17	16	21	-	-

제2절 법률

Ⅰ. 개정법률

1. 민사소송법

가. 추진배경

◦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 내지 제출기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항소인이 항소제기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사건이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사건이 부당하게 장기화되고 피항소인의 조속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항소인으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9. 26. 장동혁·소병철 의원 제안
2023. 12. 20. 국회 의결(대안 가결)
2024. 1. 16. 법률 제20003호로 공포
2025. 3. 1. 시행

다. 주요내용

- ○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 현행법은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은행 등의 대여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고, 코로나 긴급대출 원리금의 상환시점 도래로 인해 지급명령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6. 27. 한무경 의원 제안
2023. 12. 20. 국회 의결(수정 가결)
2024. 1. 16. 법률 제20006호로 공포
2024. 4. 17. 시행

다. 주요내용

○ 금융기관 등이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한 기관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가함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산림청·특허청·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각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추가되거나 수사상 연계가 필요한 범죄 등이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상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 이에 현행법상 산림청·특허청·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음

나. 추진경과

2020. 11. 6. 이철규 국회의원, 2020. 11. 15. 이채익 국회의원,
2021. 5. 3. 민홍철 국회의원, 2021. 12. 20. 정태호 국회의원,
2022. 4. 6. 이원택 국회의원, 2023. 4. 11. 김병주 국회의원,
2023. 9. 4. 한기호 국회의원, 2023. 9. 15. 김영배 국회의원 제안
2023. 12. 19.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4. 1. 16. 법률 제20004호로 공포
2024. 7. 17. 시행

다. 주요내용

- 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함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범위에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중 영업주체 오인혼동 및 식별력 손상행위,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관련으로 한정되었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전반 및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미수죄, 예비·음모죄, 양벌규정까지 확대함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에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병역판정검사 등 불이행, 병역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징·소집 불응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범위에 해당 범죄를 규정함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3. 11. 14. 정점식 의원 제안
2023. 12. 20. 국회의결
2024. 1. 16. 법률 제20005호로 공포
2024. 1. 16. 시행

다. 주요내용

○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 추가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대상자의 수도 급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2023. 11. 14. 정점식 의원 제안
2023. 12. 20. 국회의결
2024. 1. 16. 법률 제20007호로 공포
2024. 7. 17. 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이 전자감독 제도를 활용한 범죄예방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

가. 추진배경

- 회생절차 진행 중 자본금 변동 촉탁등기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비과세)과 지방세법(과세) 사이 과세 여부 규정 충돌이 존재하여 해소할 필요
-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 채무자들이 곤란을 겪고 그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 지속되어 채무자들이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간소화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3. 11. 13. 정부안 국회 제출
2024. 1. 25. 국회 의결
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공포·시행
(단, 일부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다. 주요내용

-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
-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
-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7. 형사소송법(1)

가. 추진배경

- 재판 중인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어 개선할 필요성 있음
- 이에 '재판 중 국외 도피'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형집행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

나. 추진경과

2023. 2. 23. 정부안 국회 제출
2024. 1. 24. 국회 의결(대안 가결)
2024. 2. 13. 법률 제2026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

8. 민법

가. 추진배경

- 故 구○○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상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 법무부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6월 18일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 법무부는 제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나. 추진경과

2021.	6.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24.	5.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후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024.	8.	28.	제22대 국회에서 마련된 대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공포
2026.	1.	1.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피상속인의 유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③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함

9. 범죄피해자 보호법

가. 추진배경

○ 범죄피해자가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없으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있음

○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예외 없이 일시금으로 지급해야만 하고, 국가가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등 구조금 지급방법 및 구상권 추심절차를 개선할 필요 있음

나. 추진경과

2020. 11. 20. 정부안 국회 제출
2024. 5. 29. 국회 법사위 1소위 의결(대안) 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2024. 6. 17. 의원입법으로 재발의
2024. 8. 28. 국회 본회의 의결(대안)
2024. 9. 20. 법률 제20433호로 공포
2025. 3. 21. 시행

다.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

○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청구 또는 지구심의회의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일정한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함
-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토지 및 건물의 등기정보자료 등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0. 민법, 상법, 상업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지점(주·분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의 등기를 복수의 관할 등기소가 각각 별도로 처리함에 따라 등기의 비효율 및 부실등기 위험 상존
-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본·지점에 별도로 등기를 신청함에 따른 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및 부실등기 위험 상존
- ○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추세에 따른 전자신청의 활성화 필요

나. 추진경과

2023. 11. 16. 상법 등 4개 법률 정부안 국회 제출(21대 국회)
2024. 5. 29. 임기만료 폐기
2024. 8. 12. 상법 등 4개 법률 정부안 국회 재제출(22대 국회)
2024. 8. 28. 국회 의결
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20436호, 제20437호, 제20434호로 공포
2025. 1. 31. 시행

다. 주요내용

-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여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개정
- ○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
- ○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11. 부동산등기법

가. 추진배경

-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은 PC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어, 등기의 전자신청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기 어려움
-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부동산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하여야 하거나,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상속인의 생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상속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야 하는 등 부동산등기소 관할에 따른 절차상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신탁부동산 관련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부동산의 진정한 처분권한자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자와 신탁부동산을 거래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함

나. 추진경과

2024. 8. 12. 정부안 국회 제출
2024. 8. 28. 국회 의결
2024. 9. 20. 법률 제20435호로 공포
2025. 1. 31. 시행 (단, 일부 개정 규정은 2024. 12. 21.부터 시행)

다. 주요내용

-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12. 공탁법

가. 추진배경

-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 명시적인 수령의사가 없으면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실무상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그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음
- 그로 인해 피고인 등이 형사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몰래 회수해가는 악용사례도 발생함
-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공탁법」 개정 추진

나. 추진경과

2024. 7. 26. 정부안 국회 제출
2024. 9. 26. 국회 의결
2024. 10. 16. 법률 제20458호로 공포
2025. 1. 17. 시행

다. 주요내용

- 형사공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수를 금지하되, ①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② 공탁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제9조의2)

13. 형사소송법(2)

가. 추진배경

○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7. 26. 정부안 국회 제출
2024. 9. 26. 국회 의결(수정 가결)
2024. 10. 16. 법률 제20460호로 공포
2025. 1. 17. 시행

다. 주요내용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의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사회적 폐해는 실제 촬영물 등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미비하거나 법정형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음
- ○ 또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 이에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 신설·법정형 상향 및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 특례 도입을 추진하게 됨

나. 추진경과

2024. 9. 26. 국회의결(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 신설 등)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공포·시행
2024. 11. 14. 국회의결(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례 신설)
2024. 12. 3. 법률 제20535호로 공포
2025. 6. 4.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의 반포 등의 법정형과 같도록 상향
- ○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
- ○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
-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함

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기존의 학교·학원의 장과 그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나. 추진경과

2024. 8. 21. 서일준 의원 제안
2024. 9. 20. 장동혁 의원 제안
2024. 11. 28. 국회 의결(대안 가결)
2024. 12. 20. 법률 제20576호로 공포
2025. 6. 21.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 아동학대살해미수범에 대한 검사의 의무적 친권상실심판 등 청구 규정
○ 약식명령 고지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등 추가
○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

가. 추진배경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경제 형벌 정비의 일환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구인불응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경감할 필요
-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를 전담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생법원의 설치 확대 및 관할 조정 필요

나. 추진경과

2024. 6.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4. 7. 8.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4. 6. 28. 정부안 국회 제출
2024. 11. 28. 국회 의결
2024. 12. 20. 법률 제20577호로 공포
2025. 6. 21.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여 면책불허가 사유 중 하나인 구인불응죄의 행위를 삭제하고 대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신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의 경우 대전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충청북도에 대하여, 광주회생법원의 경우 광주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중복관할을 허용하여 원칙적인 토지관할 법원 외에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함

17. 출입국관리법

가. 추진배경

-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행정기관마다 달리 표기하여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 행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 법무부장관이 표준화된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행정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수사·과세·복지 등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4. 7. 11. 유상범 의원 제안
2024. 11. 28. 국회 의결(수정 가결)
2024. 12. 20. 법률 제20578호로 공포
2025. 6. 21.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3절 대통령령

Ⅰ. 대통령령[제정]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제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법률 제19743호, 2024. 1. 25. 시행)」은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1. 23. 대통령령 제34158호로 공포
2024. 1. 25. 시행

다. 주요내용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 촬영 방법 등(시행령 제2조)
  - 신상공개를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함

- ○ 피의자의 의견진술 절차(시행령 제3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및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 ○ 공개 결정의 통지 등(시행령 제4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집행하도록 함
- ○ 신상정보의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시행령 제5조)
  -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경과되거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등 신상정보 공개를 종료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한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시행령 제7조)
  -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이 갖추어 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방법 등을 준용하도록 함
-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시행령 제8조)
  - 각급 검찰청 및 경찰관서에 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나 학계 등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의 심의, 위원의 명부 및 심의내용에 관한 위원의 의견서 등 위원회의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
-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시행령 제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피해자·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업무 수행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10. 18. 대통령령 제34946호로 공포
2024. 10. 20. 시행 (단, 형사사법 기관의 전자문서 작성·유통 시스템 구축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일부 규정은 2025. 6. 9. 이후 시행)

다. 주요내용

○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시행령 제3조)
- 피의자·피고인·피해자·고소인·고발인의 법정대리인과 개별 법률에 따라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의 전자서명 등(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거나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등을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도록 함

○ 전자문서의 제출 및 동일성 확인(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 전자문서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고,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전자문서의 보완(시행령 제13조)
-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 작성의 예외(시행령 제15조)
- 영장집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현장에서 관계 서류를 긴급히 작성하거나 교부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시행령 제16조)
-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영상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저장하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함

○ 전자화문서로의 변환·등재의 예외(시행령 제18조)
-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등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의 유통(시행령 제22조)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전자적 송달 및 통지(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 개별 사건에 대해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은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하는 경우 그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도록 함

○ 전자문서의 열람(시행령 제27조)
- 등록사용자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 저장매체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열람·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이용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방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활용 등(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 검사는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 문서나 전자기록을 출력해서 제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공판정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

Ⅱ. 대통령령[개정]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5호, 2023. 7. 6.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이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 유예기간을 도과한 집행·선고유예 전력을 회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음

나. 추진경과

2024. 4. 2. 대통령령 제3437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유예기간을 도과한 집행유예·선고유예 범죄경력을 회보 대상에서 제외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상 인용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오래된 표현 등을 수정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범위를 민원 안내·상담뿐만 아니라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 지원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742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3호로 공포
2024. 4. 25. 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인력, 시설과 장비 및 민원 안내·상담과 통역·번역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 선정기준을 정하고,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 및 위탁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시행령 제17조)

3.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의 1000분의 25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2.5% 인상·조정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려는 것임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경비교도였던 사람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으로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어, 법무부장관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사변 등으로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청구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비교도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신설

○ 전시, 사변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급여금 청구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조항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을 위해 법원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금액의 상한을 정액(定額) 방식인 1,1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앞으로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정률(定率) 방식으로 변경하여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경제상황에 맞게 보장

나. 추진경과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59호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월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률로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 1,110만 원 정액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6월분(=2024년 기준 1,375만원)

** 2019. 3월 경 시행령 개정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였던 점을 고려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검사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

나. 추진경과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사는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논의와 의견 청취를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음

- 검사가 범죄피해자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지원공백 해소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추진경과

2024. 6. 18. 대통령령 제34570호로 공포
2024. 7. 17. 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 규모, 착수 시기 및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해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법」 규정을 적용함

8.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9563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범죄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20054호, 2024. 1. 16. 공포, 10. 17. 시행)에 따라 같은 법을 위반한 범죄 중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를 각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근거 조문이 추가된 것에 맞추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7. 16. 대통령령 제34704호로 공포
2024. 10. 19. 시행

다. 주요내용

○ [별표 1]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제88조의2 신설) 반영(안 [별표 1] 제3호마목)
○ [별표 1]에 「약사법」 개정 사항(제94조제1항제5호의2가 같은 항 제5호의4로 이동) 반영(안 [별표 1] 제5호다목)
○ [별표 2]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처벌 근거 조문(제19조 신설) 추가 반영(안 [별표 2] 제4호가목)
○ [별표 2]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근거 조문(제48조 신설) 추가 반영(안 [별표 2] 제4호나목)
○ [별표 2]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제73조제3호가 제72조제1항제1호의2로 이동) 반영(안 [별표 2] 제8호나목)
○ [별표 2]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제58조의2 신설) 반영(안 [별표 2] 제10호가목)

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입국신고서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가 없고,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 일부에 대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나. 추진경과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3호로 공포
2025.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입국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시행령 제15조의2)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임업용 종묘 생산업 등의 업체에 임업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이나 항공기하역업을 하는 업체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별표1의2)

10. 난민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의 면담이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심사관의 면접을 원격영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난민조사관,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의 요건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4. 12. 3. 대통령령 제3502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심사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면담(면접) 방식으로 출입국항 회부결정 면담 또는 난민인정 심사 면접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난민조사관 및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의 요건을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7급)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라급)으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

○ 난민면접 시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면접 또는 사실조사를 위해 발급한 출석요구서는「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송달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주택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중개계약 과정에서 중개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판 과정에 장기간 소요
-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손해배상(공제) 절차 단축 추진

나. 추진경과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61호로 공포
2025. 3. 1. 시행

다. 주요내용

-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추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5호)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중개계약 과정에서 중개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판 과정에 장기간 소요
-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손해배상(공제) 절차 단축 추진

나. 추진경과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62호로 공포
2025. 3. 1. 시행

다. 주요내용

-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에 추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5호)

1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1)

가. 추진배경

○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인력 10명(5급 3명, 6급 6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수사 지원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명(7급 1명)을,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영상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지방검찰청에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4명) 및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5명)을 각각 증원하며, 대검찰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1명(검찰사무관 1명)을 복수직렬 정원(검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4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마약전담수사관 및 인터넷 마약범죄 수사인력 증원(5급 3명, 6급 6명, 7급 1명)
○ 대검찰청 마약감정인력 증원(연구사 2명)
○ 디지털 증거물 관련 멀티미디어 복원 인력 증원(연구사 1명)
○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에 따라 추가된 형사공탁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증원(6급 1명, 7급 5명)
○ 자유형 집행률 제고를 위한 자유형미집행자 검거인력 증원(7급 1명, 8급 4명)
○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인력 증원(6급 3명, 7급 3명)
○ 디지털수사시스템 운영 인력(검찰5급)을 복수직(검찰 또는 전산5급)으로 전환

14.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의 1000분의 25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2.5% 인상·조정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려는 것임

1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

가. 추진배경

○ 공판부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편으로 공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는 공판부로 통합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의 공판부는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로 분리하며, 범죄수익을 체계적으로 추적·환수하여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로 개편하여 범죄수익환수 관련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도록 하면서 범죄수익환수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대검찰청에 1명(7급 1명), 지방검찰청에 11명(7급 4명, 8급 7명)을 각각 증원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범죄 음성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지방검찰청에 수사인력 5명(7급 5명)을 각각 증원하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검찰청에 첨단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76명(5급 3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14명, 사무운영 9급 13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4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딥페이크 음성 분석 인력 증원(연구사 1명) 및 여성·아동범죄 수사인력 증원(7급 5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조직범죄수사과를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 환수과로 확대 개편하면서 범죄수익환수 인력 증원(7급 5명, 8급 7명)

- 대구지방검찰청 공판제1, 2부를 통합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를 공판제1, 2부로 분리
-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 수사자문인력 한시정원(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

16. 검사정원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판부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편으로 공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지방 검찰청의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는 공판부로 통합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의 공판부는 공판제1부와 공판제2부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부장검사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12. 31. 개정
2025. 2. 3. 대통령령 제3513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공판부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편으로 공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지검 공판제1, 2부를 공판부로 통합하고, 수원지검 공판부를 공판제1, 2부로 분리함으로써 대구지검 검사정원(부장검사 1명)을 수원지검으로 이체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Ⅰ. 규칙[개정]

1.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가. 추진배경

○ 교정모 중 팔각기동모를 베레모로 변경하고 교정복의 종류에 호송 근무복과 방한 점퍼를 추가하는 등 교정공무원 복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교정공무원이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 교정공무원 복제의 활동성 및 기능성 등을 높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24. 1. 3. 법무부령 제106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팔각기동모를 베레모로 변경하고 호송 근무복, 방한 점퍼 등 교정복 종류를 신설
○ 교정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교정공무원의 업무 장소(‘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삭제하여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교정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그 부착을 위한 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9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09호, 2024. 1. 9. 공포, 1.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보호관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1. 9. 법무부령 제1070호로 공포
2024. 1. 12. 시행

다. 주요내용

○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신고서(스토킹행위자)' 및 '전자장치 부착 사실 통지서' 등 집행에 필요한 서식 마련

3. 검찰사건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8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와 관련된 서식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공포, 2024. 1. 25. 시행)됨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범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집행방법 및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1. 12. 법무부령 제107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9743호, 2024. 1. 25. 시행)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결정 및 집행 절차 관련 규정과 서식 마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518호, 2024. 1. 12. 시행)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추가되어, 관련 서식 정비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8헌마6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변호사 접견신청서의 첨부자료 중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소년수용자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의류의 품목과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2. 8. 법무부령 제107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

○ 법무부장관은 소년수용자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류의 품목과 품목별 착용 시기 및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의 장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조정하기 위해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경정 1명, 경감 1명)을 증원하되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송무의 안정적인 총괄과 선진화된 송무 체계의 구축·유지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만 보하던 송무심의관을 검사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소년원에 신축 생활관 감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터미널 확장에 따른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에 체류관리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원 117명(7급 51명, 8급 6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51명, 7급 66명)하면서 정원 5명(9급 5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331호, 2024. 3.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3. 26. 법무부령 제107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2024년도 정기직제 반영
- 인력 증원 : 22명(본부 6명, 소속기관 16명)

○ 2024년도 수시직제 반영 : 송무심의관 보임범위 확대
- 송무심의관의 보임 범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

6.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참여 범위에 관한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을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4. 1. 법무부령 제107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격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규정 신설(제11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13→19세) 반영(제17조)

○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규정 신설(제22조)

7.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송치하는 경우 등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24. 4. 3. 법무부령 제107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내용 반영(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제8조)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필요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 법률 지원 요청 기관의 확대(제11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인신매매등범죄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추가함

○ 사법경찰관 등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 사유 확대(제12조의2)
-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 그 결과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8. 국적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해 「국적법」상 특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고,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4. 29. 법무부령 제107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국적이탈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일체를 시행규칙에 명시
- 시행령 및 '별표'를 확인하지 않고도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제출서류를 직접 규정

○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제출 불요

○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서식 간소화(별지 제8호의2 서식)

9.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된 것에 맞추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압수물건이나 압수금을 환부받으려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5. 14. 법무부령 제107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압수물 등 환부신청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어렵고 권위적인 법률 용어를 개선

1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식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구서식에 대한 정비 필요
- ◦ 관계 법령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상이한 서식 정비 및 유치허가 신청 등 근거 조문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필요

나. 추진경과

2024. 5. 21. 법무부령 제107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식의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구서식 정비
- ◦ 진술조서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상이한 서식 통일
- ◦ 근거 조문 추가 및 상향, 사건번호 현행화 등 서식 항목 정비

1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가. 추진배경

○ 법무부 인권국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증원하되,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 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2명(경위 1명, 경사 1명)으로 각각 충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593호, 2024. 6.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마약류 관련 부처 간 협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및 법무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 및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9급 6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3명(9급 3명)과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6. 25. 법무부령 제107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수시직제 반영

- 범죄피해자 원스톱서비스센터 개소에 따른 기구신설·증원
  - 기구 신설 : 인권국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인력 증원 : 9명

※ 다부처 협업조직 : 법무부 4명(운영인력), 검찰청 2명, 경찰청 2명, 고용부 1명

- 2024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반영
  - 기구 사무분장 조정 :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등 3건
  - 직급 상향조정 : 마약사범재활팀 부처간 협업 인력 1명(5급→4·5급)
- 관리운영직 자연감소에 따른 일반직 전환 : 6명(본부 2명, 소속기관 4명)
- 일반임기제 임용 가능 공무원 정원 확대 : 국립법무병원 약무직 3명
-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렬 조정 : 복수직렬 확대 2명, 직렬전환 1명

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성매매 범죄 신고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기한을 보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안내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7. 30. 법무부령 제108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성매매 범죄 신고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의 안내사항에 신청인이 보상금 신청기한을 알 수 있도록 그 신청기간을 명시

1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구조금 지급청구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서류에 포함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7. 30. 법무부령 제108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을 지급청구한 자가 그 구조금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령하려는 경우 피구조자의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14. 검찰보존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불허가 통지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함께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9. 11. 법무부령 제108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별표와 서식 조문이 이동하여 관련 조문 정비

○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 사유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를 병기

1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3)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918호, 2024. 9.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9. 26. 법무부령 제108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

○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렬 조정
-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시행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관리 등을 위해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1명'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변경

16. 난민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난민조사관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난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23호, 2024. 12. 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난민인정신청서의 안내사항에 난민신청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4. 12. 3. 법무부령 제108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별지 제2호서식), 난민인정신청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에 난민신청자에게 대한민국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추가

◦ 난민심사 면접 또는 사실조사를 위해 난민신청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하고, 그 내용을 출석요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

◦ 난민인정신청서의 영문 용어 개선 및 오역 정정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가. 추진배경

○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법령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법무부 또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수행의 충실성 제고

나. 추진경과

2024. 12. 16. 법무부령 제108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지급대상자당 100만 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제4조 제2항)

1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입국신고서 서식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는 경우와 그 외의 지역에 입국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하여 입국신고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의 발급 수수료에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 내장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고, 산업현장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D-10) 및 계절근로(E-8) 자격의 국내 체류기간 상한을 각각 1년 및 8개월로 연장하며,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D-8) 자격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4. 10. 29. 법무부령 제1083호로 공포
2024. 12. 24. 법무부령 제1086호로 공포
2025.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변경(시행규칙 제78조)
- 전자입국신고 제도 도입에 따라 입력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신고서 서식 새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에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내장함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종전 3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변경(시행규칙 제72조)

- 구직(D-10) 및 계절근로(E-8) 자격의 국내 체류기간 상한을 종전 각각 6개월, 5개월에서 1년, 8개월로 연장(시행규칙 별표1)
- 벤처투자 및 기술창업(D-8) 자격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용(시행규칙 별표5)

1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수수료에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 내장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고,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4. 12. 24. 법무부령 제1087호로 공포
2025. 2. 1. 시행

다.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증에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내장함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종전 3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변경(시행규칙 제12조)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시행규칙 제12조)

2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4)

가. 추진배경

○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과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및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정원 1명(7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의 정원 54명(5급 1명, 6급 8명, 7급 9명, 8급 16명, 9급 20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정원 3명(8급 2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정원 15명(6급 2명, 7급 1명, 8급 5명, 9급 7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정원 11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9급 2명) 및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정원 18명(6급 4명, 7급 5명, 8급 5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114호, 2024. 12. 30.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1명(식품위생주사 1명)을 복수직렬 정원 1명(교감 또는 식품위생주사 1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정원 1명(공업주사 1명)을 복수직렬 정원 1명(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으로,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보건직렬(보건주사보 1명)을 식품위생직렬 (식품위생주사보 1명)로 각각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대전소년원의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대전소년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1명(약무주사보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12. 30. 법무부령 제108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신설기구·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및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등 5개 분야 182명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등 7개 분야 538명 평가기간 연장
- ○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감축
  - 본부 7명, 소속기관 102명
- ○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렬 조정
  - 복수직렬 확대 2명, 관리운영직군 전환 1명, 직렬 전환 1명
- ○ 일반임기제 임용 가능 공무원 정원 확대(대전소년원 약무직 1명)
- ○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소속기관 분장사무를 용례에 맞게 수정·명확화 등)

21.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가.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인대장에 관인을 새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4. 12. 31. 법무부령 제108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개인정보의 수집 최소화를 위해 관련 용어 개선

- 별지 제1호 서식 관인대장 '새긴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法務年鑑

04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가. 정기회 및 임시회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 이자희

2024년도에는 총 9회(412회 ~ 420회)에 걸쳐 정기회 및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정책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부동산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의 법안들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 법사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 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과 현안 과제의 추진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표 4-1 | 회차별 국회활동 개관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412회	'24. 1. 15. ~ '24. 2. 8. (25일간)	【본회의】 • 총 2차례 개의 • 통과법안('24. 1. 25.)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제사법위원회】 •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3)
제413회	'24. 2. 19. ~ '24. 2. 29. (11일간)	【본회의】 • 총 6차례 개의 • 개회식('24. 2. 19.)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4. 2. 20.)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4. 2. 21.) •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24. 2. 22.)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4. 2. 23.)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4. 2. 29.)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4. 2. 29.) 【법제사법위원회】 •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3)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414회	'24. 4. 30. ~ '24. 5. 29. (30일간)	【본회의】 • 총 2차례 개의 • 통과법안('24. 5. 2.)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4. 5. 28.) 【법제사법위원회】 • 총 5차례 개회(전체회의 4, 제1소위 1)
제415회	'24. 6. 5. ~ '24. 7. 4. (30일간)	【본회의】 • 총 5차례 개의 •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4. 7. 2.)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4. 7. 3.) • 통과법안('24. 7. 3.)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6차례 개회(전체회의 4, 제1소위 2)
제416회	'24. 7. 5. ~ '24. 8. 3. (30일간)	【본회의】 • 총 2차례 개의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4. 7. 25.) 【법제사법위원회】 • 총 6차례 개회(전체회의 6)
제417회	'24. 8. 5. ~ '24. 9. 1. (28일간)	【본회의】 • 총 2차례 개의 • 통과법안('24. 8. 28.)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5차례 개회(전체회의 4, 제1소위 1)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418회	'24. 9. 2. ~ '24. 12. 10. (100일간)	【본회의】 • 총 18차례 개의 •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24. 9. 2.)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4. 9. 4.)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4. 9. 5.)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24. 9. 9.) •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4. 9. 10.)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4. 9. 11.) •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24. 9. 12.)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4. 10. 4.)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4. 10. 4.)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4. 11. 4.) • 2023회계연도 결산('24. 12. 2.)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24. 12. 2.)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4. 12. 7.) • 통과법안('24. 9. 19.)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통과법안('24. 9. 26.)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통과법안('24. 11. 1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 • 통과법안('24. 11. 28.)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과법안('24. 12. 10.)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27차례 개회(전체회의 20, 제1소위 7) • 국정감사('24. 10. 7. ~ 10. 25.) – 법무부('24. 10. 8.), 대검찰청('24. 10. 21.), 종합감사('24. 10. 25.) 실시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419회	'24. 12. 11. ~ '24. 12. 17. (7일간)	【본회의】 • 총 4차례 개의 • 긴급현안질문('24. 12. 11.) • 긴급현안질문('24. 12. 13.) • 통과법안('24. 12. 12.)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2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420회	'24. 12. 18. ~ '25. 1. 16. (30일간)	【본회의】 • 총 5차례 개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25. 1. 8.)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5. 1. 8.)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25. 1. 8.) • 긴급현안질문('25. 1. 9.) • 통과법안('24. 12. 31.)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통과법안('24. 1. 8.)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8차례 개회(전체회의 4, 제1소위 4)

나. 당정협의 및 간담회

당정 협의·간담회에서는 낙태죄 입법공백, 딥페이크 성범죄, 난민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하여 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처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 표 4-2 | 당정협의 및 간담회

구 분	일시	논의 안건	참석자
고위 당정 정책 협의	'24. 7. 23.	• 낙태죄 입법공백 대응	• **〈당 측〉** – 정책위의장 등 • **〈대통령실 측〉** – 정책실장, 정무1비서관 • **〈정부 측〉** – 국무조정실장, 기재부1차관, 법무부차관 등
당정 협의	'24. 8. 29.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황 및 대응상황	• **〈당 측〉** –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 **〈정부 측〉** – 교육부·법무부·여가부·방통위 등(차관급 이상)
당정 협의	'24. 8. 29.	• 정기국회 대비 국민의힘 연찬회(정기국회 중점추진법안 및 주요현안)	• **〈당 측〉** –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등 • **〈정부 측〉** – 법무부장관 등
고위 당정 정책 협의	'24. 9. 11.	• 난민법 개정 관련 고위당정 정책협의회	• **〈당 측〉** – 정책위의장 등 • **〈대통령실 측〉** – 정책실장, 정무1비서관 • **〈정부 측〉** – 국무조정실장, 기재부1차관, 법무부 출입본부장 등
당정 협의	'24. 10. 29.	• 민생 입법과제 점검	• **〈당 측〉** –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 **〈정부 측〉** – 기재부장관, 법무부장관, 과기부장관, 행안부장관 등

法務年鑑

05



통 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제2절 검찰업무 통계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제5절 국제법무업무 통계
제6절 교정업무 통계
제7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1. 법무업무

| 표 5-1 | 법령자문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4,993	4,946	6,085	6,671	7,328	6,857	7,497	5,675	7,482	7,720
기획재정부	171	169	174	314	285	150	106	127	187	183
교육부	217	287	303	234	262	389	401	397	254	413
미래창조과학부	192	78	92	-	-	-	-	-	-	-
교육과학기술부	-	-	99	-	-	-	-	-	-	-
과학기술부	-	-	-	-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348	228	231	218	165	251	133
외교부	23	32	33	18	40	42	28	28	30	22
통일부	28	44	41	57	65	68	67	43	42	-
법무부	438	272	570	710	1,008	896	892	754	1,136	1,147
국방부	138	101	142	118	130	126	180	112	154	186
행정자치부	313	418	247	-	-	-	-	-	-	-
안전행정부	-	-	187	-	-	-	-	-	-	-
행정안전부	-	-	187	509	605	672	842	576	487	717
문화체육관광부	225	210	240	249	345	332	364	288	245	241
농림축산식품부	287	310	279	309	308	319	352	358	355	402
산업통상자원부	324	370	248	314	379	246	225	140	367	419
보건복지부	430	469	609	530	567	541	795	499	586	554
환경부	196	220	250	310	344	316	349	290	327	379
고용노동부	172	200	261	229	273	170	318	214	251	222
여성가족부	121	77	108	122	114	146	151	104	116	114
국토교통부	578	559	687	706	720	744	897	498	809	737
해양수산부	196	179	176	203	293	212	269	228	244	198
중소벤처기업부	-	-	-	156	190	157	140	132	191	169
국민안전처	150	139	103	-	-	-	-	-	-	-
방송통신위원회	47	70	67	91	82	75	107	69	89	81
국무조정실	10	25	31	28	29	32	50	25	30	14
공정거래위원회	34	74	132	88	141	76	62	33	110	126
금융위원회	94	198	186	231	274	188	151	99	210	241
국민권익위원회	9	11	25	26	23	50	59	29	29	3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3	25	20	17	25
국가보훈처	60	66	86	81	72	108	122	69	73	116
인사혁신처	50	57	65	91	85	99	109	76	111	94
법제처	5	8	11	12	9	18	16	16	32	44
식품의약품안전처	103	103	106	131	119	131	137	172	128	130
기타	382	200	340	456	338	320	65	114	621	578

| 표 5-2 | 법령해석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85	188	171	178	204	171	251	224	167	142
기획재정부	-	2	-	1	2	2	5	-	6	2
교육부	6	1	2	-	-	-	2	11	1	1
미래창조과학부	1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2	3	4	1	3	1	
외교부	-	2	4	1	1	4	3	2	-	-
통일부	-	-	-	-	-	-	-	-	3	
법무부	8	17	12	10	13	11	15	8	9	10
국방부	1	2	1	3	-	2	-	-	1	1
행정자치부	6	6	2	-	-	-	-	-	-	-
안전행정부	-	-	-	-	-	-	-	-	-	-
행정안전부	-	-	-	9	6	12	27	4	4	2
문화체육관광부	-	-	-	1	3	-	1	2	-	3
농림축산식품부	-	-	1	-	-	-	2	1	-	-
산업통상자원부	-	1	1	-	1	1	3	2	-	1
보건복지부	5	2	2	2	1	1	6	3	4	1
환경부	-	-	1	-	3	1	2	-	-	-
고용노동부	-	-	1	2	3	3	1	2	8	1
여성가족부	3	1	-	-	1	2	1	1	-	1
국토교통부	5	7	4	5	9	5	9	5	2	5
해양수산부	-	-	1	4	-	-	1	-	3	
중소벤처기업부	-	-	-	-	-	-	1	-	1	
국민안전처	1	1	4	-	-	-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1	-	1	1	-	1	1
국무조정실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1	1	-	-	-	-	1
금융위원회	1	1	1	3	1	-	1	1	-	-
국민권익위원회	-	3	-	-	1	-	1	2	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	-	2	-	-
국가보훈처	-	4	-	-	-	-	-	-	-	-
인사혁신처	-	-	1	-	1	-	-	-	-	-
법제처	-	-	-	-	-	1	3	2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3	-	-	1	1	-	-
기타	148	138	133	130	154	121	164	172	121	112

| 표 5-3 | 법령 제정·개정(정부발의안 기준)

(단위 : 건)

분류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55	67	66	55	48	73	52	52	44	46
제 정	소 계	3	5	2	1	2	8	7	2	-	2
	법 률	-	3	-	-	-	-	2	-	-	-
	대통령령	2	1	2	1	1	5	2	-	-	2
	총리·부령	1	1	-	-	1	3	3	2	-	-
개 정	소 계	52	62	64	52	45	65	44	49	44	44
	법 률	7	18	15	5	5	15	3	9	10	10
	대통령령	19	20	20	18	21	27	17	15	11	13
	총리·부령	26	24	29	29	19	23	24	25	23	21
폐 지	법 령	-	-	-	2	1	-	1	1	-	-

| 표 5-4 | 법무자료 발간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3	2024
발간횟수	18	17	18	11	8	16	16	3	1

2. 변호사·공증

| 표 5-5 | 변호사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등록인원	20,531	22,318	24,015	25,838	27,695	29,584	31,281	32,981	34,672	36,821
개 업	17,424	18,849	20,182	21,575	23,144	24,782	26,181	27,741	29,247	30,525
비 개 업	3,107	3,469	3,833	4,263	4,551	4,802	5,100	5,292	5,425	6,296

| 표 5-6 | 공증인 인원

(단위 : 명, 개)

구 분 \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임명공증인		73	77	75	78	81	83	82	83	83	84
법 무 법 인	사무소	245	241	239	238	234	227	225	225	225	227
	구성원	1,029	1,000	981	946	918	882	865	874	879	919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소	27	25	23	20	20	19	17	16	15	14
	구성원	109	93	86	85	60	55	57	45	47	40
대행청		12	12	13	13	13	13	13	13	13	13

| 표 5-7 | 공증사무 처리 건수

(단위 : 건)

연도 \ 구분	사건처리건수
2015	3,758,294
2016	3,745,816
2017	3,415,840
2018	3,074,532
2019	2,777,661
2020	2,425,221
2021	2,529,558
2022	2,368,621
2023	2,105,575
2024	2,004,956

3. 국가소송

| 표 5-8 | 전체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12,683	10,108	9,644	9,859	10,150	10,695	11,176	11,049	9,598	12,466
	신 규	7,349	5,595	4,968	5,038	5,226	5,822	6,236	6,154	4,583	5,079
	이 월	5,334	4,513	4,676	4,821	4,924	4,873	4,940	4,895	5,015	7,387
확정	계	7,378	5,265	4,515	4,515	4,267	4,396	4,390	4,600	4,958	4,570
	승 소	3,351	1,810	1,744	1,799	1,586	1,664	1,736	1,750	1,919	1,798
	패 소	751	565	545	488	473	508	465	450	459	419
	취하 등	3,276	2,890	2,226	2,228	2,208	2,224	2,189	2,400	2,580	2,353
계속중		5,305	4,843	5,129	5,344	5,883	6,299	6,786	6,449	4,640	7,896

| 표 5-9 |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12,683	10,108	9,644	9,859	10,150	10,695	11,176	11,049	9,598	12,466
국가원고	계	3,763	2,268	2,127	2,105	1,973	2,356	2,698	2,721	2,575	3,617
	부동산	305	331	400	350	376	434	618	693	644	668
	손해배상	16	17	15	14	7	6	5	6	2	4
	기 타	3,442	1,920	1,712	1,741	1,590	1,916	2,075	2,022	1,929	2,945
국가피고	계	8,906	7,828	7,502	7,736	8,164	8,328	8,463	8,317	7,001	8,833
	부동산	2,743	2,607	2,591	2,594	2,738	2,662	2,621	2,545	1,998	1,858
	손해배상	2,677	1,943	1,701	1,682	1,905	1,995	2,274	2,238	2,146	4,069
	기 타	3,486	3,278	3,210	3,460	3,521	3,671	3,568	3,534	2,857	2,906
국가참가	계	14	12	15	18	13	11	15	11	22	16
	부동산	1	0	2	3	3	3	6	0	0	0
	손해배상	4	3	3	2	0	1	1	0	0	1
	기 타	9	9	10	13	10	7	8	11	22	15

4. 행정소송

| 표 5-10 | 전체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33,253	35,922	36,088	36,233	36,944	38,479	40,978	42,736	46,021	46,083
	이 월	19,453	20,784	19,145	19,871	20,088	21,677	20,768	24,635	27,202	27,175
	신 규	13,800	15,138	16,943	16,362	16,856	16,802	20,222	18,101	18,819	18,908
확정	계	13,931	18,250	17,662	17,606	15,839	18,260	16,387	15,561	18,922	20,109
	승 소	6,231	9,731	10,124	9,826	9,018	10,431	9,302	8,478	11,223	13,348
	패 소	1,676	2,043	1,726	1,719	1,649	1,769	1,719	1,752	1,692	1,887
	취 하 등	6,024	6,476	5,812	6,061	5,172	6,060	5,366	5,331	6,007	5,874
계속중		19,322	17,672	18,426	18,627	21,105	20,219	24,591	27,175	27,099	25,974

| 표 5-11 |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3,253	35,922	36,088	36,233	36,944	38,479	40,978	42,736	46,021	46,083
조세관계	6,574	6,142	5,136	4,910	5,433	5,188	4,831	5,402	6,101	6,179
공무원신분	1,429	1,547	1,642	1,606	1,779	1,957	1,978	2,018	2,027	2,079
국토도시계획	1,824	1,594	1,505	1,708	1,890	2,025	2,978	3,781	4,545	4,071
영업허가취소·정지	2,526	2,242	2,329	2,411	2,194	1,773	1,358	1,174	741	616
자격·면허·등록·인가	2,078	1,877	2,029	2,776	2,794	3,245	2,921	2,968	3,327	2,959
기타	18,822	22,520	23,447	22,822	22,854	24,291	26,912	27,393	29,280	30,179

5.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사건

| 표 5-12 | 전체 국가배상 신청사건(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4,149	4,738	4,558	6,064	5,860	7,371	7,394	7,132	8,590	9,970
	구수	1,057	1,059	1,140	1,629	2,001	2,408	3,603	4,166	4,232	4,542
	신수	3,092	3,679	3,418	4,435	3,859	4,963	3,791	2,966	4,358	5,428
처리	계	3,047	3,598	2,921	4,054	3,452	3,768	3,228	2,899	4,048	4,269
	인용	1,057	1,154	801	1,129	895	1,109	779	691	1,079	1,369
	기각	1,896	2,249	2,008	2,777	2,357	2,456	2,253	2,126	2,876	2,718
	기타	94	195	112	148	200	203	196	82	93	182
미제		1,102	1,140	1,637	2.010	2,408	3,603	4,166	4,233	4,542	5,701

| 표 5-13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174	196	175	185	204	150	145	141	162	146
	구 수	58	50	70	58	97	63	63	92	63	80
	신 수	116	146	105	127	107	87	82	49	99	66
처리	계	124	126	109	88	141	87	53	78	82	83
	인 용	110	112	101	78	119	74	43	65	72	73
	기 각	12	14	7	9	14	11	9	8	9	9
	기 타	2	-	1	1	8	2	1	5	1	1
미 제		50	70	66	97	63	63	92	63	80	63

6.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 표 5-14 |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 원)

연도 \ 구분	지급총액	배상결정	판결	소송비용확정액
2015	1,005 / 300,722	122 / 438	461 / 293,615	422 / 6,669
2016	960 / 236,223	91 / 275	371 / 228,695	498 / 7,253
2017	861 / 354,386	121 / 599	369 / 349,084	371 / 4,703
2018	821 / 770,075	107 / 793	319 / 762,218	395 / 7,064
2019	780 / 154,637	99 / 169	267 / 146,600	414 / 7,868
2020	763 / 72,781	94 / 210	258 / 62,530	411 / 10,041
2021	765 / 223,742	60 / 83	275 / 215,908	430 / 7,751
2022	882 / 148,368	57 / 87	293 / 140,810	532 / 7,471
2023	767 / 99,398	75 / 170	316 / 93,217	376 / 6,011
2024	1,279 / 106,700	81 / 246	444 / 96,285	754 / 10,169

7. 헌법재판 현황

| 표 5-15 | 헌법재판 현황

연도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15	계	1,859	1,983	133	68	-	16	49	196	196	-	-	1,654	799
	위헌법률	37	44	22	21	-	1	-	20	20	-	-	2	43
	정당해산	1	-	-	-	-	-	-	-	-	-	-	-	1
	권한쟁의	8	2	1	-	-	-	1	-	-	-	-	1	9
	헌법소원	1,813	1,937	110	47	-	15	48	176	176	-	-	1,651	746
2016	계	1,951	1,976	101	33	1	9	58	393	179	-	214	1,482	721
	위헌법률	20	27	14	12	-	2	-	4	4	-	-	9	36
	탄핵	1	-	-	-	-	-	-	-	-	-	-	-	1
	정당해산	-	1	-	-	-	-	-	-	-	-	-	1	-
	권한쟁의	9	5	-	-	-	-	-	-	-	-	-	5	13
	헌법소원	1,921	1,943	87	21	1	7	58	389	175	-	214	1,467	671
2017	계	2,626	2,425	43	4	-	1	38	293	116	-	177	2,089	922
	위헌법률	35	11	1	1	-	-	-	10	10	-	-	-	60
	탄핵	-	1	1	-	-	-	1	-	-	-	-	-	-
	권한쟁의	2	2	-	-	-	-	-	-	-	-	-	2	13
	헌법소원	2,589	2,411	41	3		1	37	283	106	-	177	2,087	849
2018	계	2,427	2,447	119	8	-	59	52	379	108	-	271	2,171	902
	위헌법률	17	39	26	8	-	18	-	10	10	-	-	3	38
	권한쟁의	2	5	-	-	-	-	-	-	-	-	-	5	10
	헌법소원	2,408	2,403	93	-	-	41	52	369	98	-	271	2,163	854
2019	계	2,730	2,519	49	8	-	7	34	218	11	-	207	2,121	1,113
	위헌법률	31	18	6	5	-	1	-	12	11	-	1	-	51
	권한쟁의	6	5	2	-	-	-	2	2	-	-	2	1	11
	헌법소원	2,693	2,496	41	3	-	6	32	204	-	-	204	2,120	1,051

연도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20	계	3,241	3,042	81	10	–	7	64	392	162	–	230	2,569	1,312
	위헌법률	20	20	11	7	–	4	–	8	8	–	–	1	51
	권한쟁의	5	11	–	–	–	–	–	5	–	–	5	6	5
	헌법소원	3,216	3,011	70	3	–	3	64	379	154	–	225	2,562	1,256
2021	계	2,827	2,621	65	15	–	4	46	343	126	–	217	2,213	1,518
	위헌법률	38	19	8	6	–	2	–	9	9	–	–	2	70
	정당해산	1	1	–	–	–	–	–	–	–	–	–	1	–
	권한쟁의	2	1	–	–	–	–	–	1	–	–	1	–	6
	헌법소원	2,786	2,600	57	9	–	2	46	333	117	–	216	2,210	1,442
2022	계	2,829	2,675	86	26	–	30	30	309	113	–	196	2,280	1,672
	위헌법률	43	37	25	17	–	8	–	7	7	–	–	5	76
	권한쟁의	5	4	1	–	–	–	1	1	–	–	1	2	7
	헌법소원	2,781	2,634	60	9	–	22	29	301	106	–	195	2,273	1,589
2023	계	2,591	2,659	102	38	–	14	50	473	220	–	253	2,084	1,604
	위헌법률	25	48	32	25	–	7	–	11	11	–	–	5	53
	탄핵	4	1	–	–	–	–	–	1	–	–	1	–	3
	권한쟁의	10	8	2	–	–	–	2	2	–	–	2	4	9
	헌법소원	2,552	2,602	68	13	–	7	48	459	209	–	250	2,075	1,539
2024	계	2,522	2,725	106	47	–	15	44	556	217	–	339	2,063	1,401
	위헌법률	18	28	19	14	–	5	–	7	7	–	–	2	43
	탄핵	9	2	–	–	–	–	–	2	–	–	2	–	10
	권한쟁의	9	3	1	–	–	–	1	–	–	–	–	2	15
	헌법소원	2,486	2,692	86	33	–	10	43	547	210	–	337	2,059	1,333

8. 제13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가. 원서 접수 현황

| 표 5-16 |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 도	총 계	남 자	여 자
2015	2,704	1,567	1,137
2016	3,115	1,816	1,299
2017	3,306	1,839	1,467
2018	3,490	1,985	1,505
2019	3,617	2,038	1,579
2020	3,592	1,986	1,606
2021	3,497	1,966	1,531
2022	3,528	1,967	1,561
2023	3,644	1,968	1,676
2024	3,736	2,036	1,700

| 표 5-17 | 연령별 응시원서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령 / 시험구분	25세 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35세 미만	35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45세 미만	45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변호사시험 (비율, %)	57 (1.53)	1,736 (46.47)	1,321 (35.36)	433 (11.59)	136 (3.64)	44 (1.18)	9 (0.24)

나. 합격자 현황

| 표 5-18 | 연도별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총 계			남 자			여 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5	2,561	1,565	61.10	1,471	893	60.70	1,090	672	61.65
2016	2,864	1,581	55.20	1,668	939	56.29	1,196	642	53.68
2017	3,110	1,593(가준)	51.22	1,720	870	50.58	1,390	723	52.01
		1,600(가준)	51.45	1,720	876	50.93	1,390	724	52.09
2018	3,240	1,599	49.35	1,843	906	49.16	1,397	693	49.61
2019	3,330	1,691	50.78	1,873	935	49.92	1,457	756	51.89
2020	3,316	1,768	53.31	1,809	972	53.73	1,507	796	52.82
2021	3,156	1,706	54.06	1,766	985	55.77	1,390	721	51.87
2022	3,197	1,712	53.55	1,766	951	53.85	1,431	761	53.18
2023	3,255	1,725	53.00	1,731	921	53.21	1,524	804	52.76
2024	3,290	1,745	53.04	1,771	984	55.56	1,519	761	50.10

제2절 검찰업무 통계

1. 검사 수사 사건

가. 전체 사건

| 표 5-19 | 전체 사건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2,580,756	2,672,784	2,506,404	2,401,898	2,503,478	2,397,832	2,154,158	2,164,845	2,280,314	2,592,375
	구수				88,432	83,473	90,535	99,297	111,949	142,279	181,786	61,141	88,009	100,405
	신수				2,492,324	2,589,311	2,415,869	2,302,601	2,391,529	2,255,553	1,972,372	2,103,704	2,192,305	2,491,970
처리	계				2,495,255	2,581,748	2,407,061	2,290,052	2,361,611	2,215,577	2,084,164	2,074,336	2,177,050	2,473,924
	직수 및 송치사건	기소	소계		852,314	894,616	809,882	719,980	699,111	662,077	576,547	608,836	640,075	653,916
			구공판		187,402	209,734	202,649	196,821	205,418	219,062	193,457	190,586	206,498	207,157
			구약식		664,912	684,882	607,233	523,159	493,693	443,015	383,090	418,250	433,577	446,759
		불기소	소계		1,460,294	1,458,816	1,367,742	1,320,937	1,381,922	1,291,658	477,541	498,582	507,028	539,701
			무혐의		361,070	371,611	333,716	314,565	324,017	317,251	85,493	79,957	86,707	91,972
			기소유예		378,723	376,137	338,971	274,936	242,471	217,206	197,405	220,235	203,312	190,777
			기소중지		218,047	213,833	209,989	237,460	295,726	264,868	77,564	83,471	80,866	79,294
			참고인중지		12,542	10,008	8,411	7,150	6,836	7,153	1,016	700	630	547
			각하		112,931	104,710	116,518	138,712	162,762	171,110	40,109	39,543	52,654	71,623
			기타		376,981	382,517	360,137	348,114	350,110	314,070	75,954	74,676	82,859	105,488
		보완수사요구			-	-	-	-	-	-	199,901	157,801	149,025	160,194
		이송	소년보호		25,027	25,192	24,948	23,478	24,396	25,919	20,998	24,342	28,204	26,998
			가정보호		20,036	22,264	18,829	19,539	23,424	19,868	22,852	22,208	21,195	17,737
			타관		137,197	179,522	182,140	202,896	228,636	211,165	177,082	143,701	148,978	191,357
			성매매보호		387	1,338	956	465	249	212	170	142	158	123
			아동보호		-	-	2,564	2,757	3,873	4,678	8,261	7,865	8,261	7,633
	불제사건	기록반환			-	-	-	-	-	-	477,186	491,696	555,347	729,845
		재수사요청			-	-	-	-	-	-	21,030	21,863	18,355	21,147
	중제사건	기록반환			-	-	-	-	-	-	98,861	94,514	98,034	122,954
		시정조치요구			-	-	-	-	-	-	3,735	2,786	2,390	2,319
미제					85,501	91,036	99,343	111,846	141,867	182,255	69,994	90,509	103,264	118,451

나. 청별 사건

| 표 5-20 | 청별 사건

(단위 : 명)

검찰청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492,321	2,589,311	2,415,869	2,302,596	2,391,529	2,255,553	1,972,372	2,103,704	2,192,305	2,491,970
서울중앙	175,798	181,844	171,076	165,305	172,967	172,404	150,857	163,017	170,714	187,272
서울동부	76,287	73,148	71,256	73,250	76,612	68,797	57,559	63,472	64,879	72,539
서울남부	103,045	100,839	97,922	96,437	100,253	88,444	80,725	84,956	86,293	96,881
서울북부	91,109	94,269	88,617	84,968	85,674	77,905	67,668	74,777	74,151	78,740
서울서부	67,255	70,706	65,081	64,015	64,409	56,189	51,086	57,401	59,988	62,491
의정부	93,587	98,927	92,808	91,082	90,519	84,813	72,933	50,739	45,683	53,915
고양	62,921	67,051	63,366	58,324	61,366	56,262	49,303	52,696	57,363	61,752
남양주	-	-	-	-	-	-	-	27,377	32,446	38,206
인천	143,257	155,534	144,821	139,518	145,386	135,824	113,911	123,911	129,435	155,510
부천	60,109	64,154	58,583	58,422	58,402	56,628	48,897	52,664	54,294	65,679
수원	136,617	152,098	142,413	131,605	139,803	136,060	116,510	124,405	128,755	148,045
성남	64,293	74,402	65,256	62,303	63,293	61,240	55,355	55,442	63,060	73,101
여주	20,627	22,661	22,466	21,753	22,826	21,628	18,553	19,825	19,737	22,243
평택	38,080	43,750	41,843	39,415	42,389	44,077	37,191	39,102	43,309	50,999
안산	82,751	94,682	81,275	73,865	75,641	72,090	62,129	62,782	65,865	74,639
안양	43,780	48,460	42,634	40,669	42,096	36,288	31,245	32,113	34,192	37,275
춘천	20,663	21,007	19,579	17,631	19,230	18,802	15,227	16,643	17,793	18,797
강릉	17,941	18,893	18,226	15,779	16,365	14,251	12,525	14,365	15,966	25,758
원주	19,907	21,182	20,387	17,241	18,276	16,524	15,184	17,418	16,963	18,491
속초	7,472	7,362	7,423	6,798	7,132	6,670	6,384	6,635	6,732	7,846
영월	8,403	8,745	7,315	6,916	7,488	6,740	6,214	6,542	7,174	8,412
대전	71,061	77,084	77,375	75,308	78,099	77,509	63,022	69,321	74,618	78,628
홍성	15,991	16,407	14,722	14,584	15,264	15,348	11,810	13,607	13,371	13,878
공주	5,788	5,806	5,473	5,994	5,926	5,920	5,212	5,279	5,473	5,876
논산	8,707	8,193	8,146	7,770	7,702	7,895	6,465	6,859	7,442	8,657
서산	17,529	18,782	17,920	18,197	17,915	17,246	16,192	16,505	19,317	19,938
천안	46,263	48,295	43,913	44,222	44,056	41,842	35,269	37,667	43,547	49,041
청주	44,964	51,021	46,298	45,767	46,182	43,818	39,726	42,830	42,291	46,512

검찰청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충주	15,577	17,104	14,260	13,905	14,119	14,270	12,214	13,352	12,393	13,758
제천	7,086	6,787	6,390	5,986	5,903	5,649	5,577	5,440	5,695	6,499
영동	3,623	3,259	3,020	2,673	3,323	3,249	2,930	2,799	3,069	3,192
대구	98,787	98,506	89,621	85,753	89,907	83,411	72,927	74,028	83,642	93,946
안동	13,244	12,416	11,806	10,944	11,702	11,493	10,161	9,916	9,390	12,165
경주	13,362	12,974	12,393	10,855	11,707	10,500	9,325	9,390	9,777	10,528
포항	23,637	22,937	22,055	21,277	21,857	19,398	16,882	17,130	18,666	20,207
김천	26,971	27,520	25,274	22,493	23,189	21,835	19,046	20,030	19,852	24,141
상주	7,496	7,277	7,139	7,576	7,807	7,417	6,773	7,472	6,901	8,738
의성	3,846	4,415	3,944	4,058	4,492	4,065	4,240	3,956	4,172	5,248
영덕	4,239	4,244	4,376	4,313	4,062	4,319	3,902	3,929	4,705	4,267
대구서부	50,597	47,113	43,776	40,931	43,275	41,894	38,438	37,554	38,314	43,758
부산	138,971	134,094	90,312	78,056	84,222	74,932	63,992	66,505	72,650	77,387
부산동부	46,398	44,792	42,596	40,629	42,566	39,187	35,074	37,882	40,895	45,762
부산서부	-	-	37,240	42,841	45,057	42,435	36,954	38,161	39,908	48,841
울산	69,837	69,618	63,190	59,769	62,922	56,258	54,598	54,181	55,949	60,800
창원	52,880	54,616	51,915	48,384	52,698	49,897	41,694	42,759	43,230	50,153
진주	23,244	23,191	21,133	19,591	21,876	25,006	23,584	37,792	21,279	22,467
통영	24,614	26,793	24,519	20,754	20,871	20,408	16,665	18,161	23,160	19,214
밀양	7,009	6,918	6,836	6,478	8,029	6,975	6,733	6,114	6,679	7,613
거창	5,422	5,610	4,901	4,432	4,811	4,560	4,287	4,389	4,625	4,889
마산	22,187	21,268	18,875	17,839	19,253	17,355	14,717	15,336	16,358	18,624
광주	93,188	89,002	83,088	78,863	81,976	77,858	66,839	70,508	75,938	91,344
목포	25,137	25,152	22,224	21,125	21,387	20,939	19,985	21,034	21,726	32,113
장흥	3,264	3,502	3,264	3,179	3,245	3,154	2,947	2,964	3,451	3,063
순천	42,618	42,724	37,967	35,909	38,359	34,803	31,781	33,249	34,056	37,567
해남	7,106	7,081	6,992	6,490	6,483	6,218	5,945	7,234	7,118	8,412
전주	38,139	39,814	36,768	36,669	37,815	35,442	31,567	35,255	35,821	43,697
군산	26,145	26,631	26,545	24,709	24,975	23,236	20,603	21,077	21,662	28,534
정읍	8,902	8,865	9,267	8,242	8,646	8,227	8,243	8,432	8,155	8,413
남원	5,053	4,737	4,893	4,027	4,261	4,112	4,075	4,105	4,394	5,139
제주	39,537	45,049	43,096	36,708	35,463	35,837	32,522	35,220	37,824	50,370

※ 2021년부터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 접수 건수 포함

다. 고소·고발 사건

| 표 5-21 | 고소·고발 사건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768,579	744,960	729,229	782,251	850,551	843,712	522,368	494,753	524,600	617,527
	구수			62,890	59,659	60,869	68,140	78,511	100,422	116,196	30,816	43,369	49,550
	신수			705,689	685,301	668,360	714,111	772,040	743,290	406,172	463,937	481,231	567,977
처리	계			708,905	683,655	661,220	704,080	750,668	727,137	491,624	451,462	474,989	562,853
	기소	소계		147,111	144,331	135,601	135,340	140,519	135,290	110,220	115,851	130,809	143,081
		구공판		43,221	45,478	43,122	44,932	48,323	51,815	40,001	39,411	49,675	54,781
		구약식		103,890	98,853	92,479	90,408	92,196	83,475	70,219	76,440	81,134	88,300
	불기소	소계		497,561	464,421	452,450	488,050	524,399	505,758	165,338	173,066	185,046	216,055
		무혐의		175,930	174,599	166,589	179,861	187,842	186,589	54,534	53,597	58,567	63,464
		기소유예		46,201	36,880	33,939	31,958	30,678	26,436	29,287	39,240	32,255	31,713
		기소중지		87,672	84,139	80,201	82,678	88,105	72,143	21,090	20,604	19,883	20,079
		기타		187,758	168,803	171,721	193,553	217,774	220,590	60,427	59,625	74,341	100,799
	보완수사요구			–	–	–	–	–	–	99,634	79,307	75,876	83,080
	이송	소년보호		1,241	1,614	2,040	2,354	2,705	2,706	2,554	2,910	3,008	3,432
		가정보호		973	909	895	995	839	712	812	755	716	737
		타관		62,018	72,378	69,855	76,961	81,704	82,088	112,526	79,138	79,060	115,976
		성매매보호		1	2	3	1	–	5	2	1	–	4
		아동보호		–	–	376	379	502	578	538	434	474	488
미제				59,674	61,305	68,009	78,171	99,883	116,575	30,744	43,291	49,611	54,674

라. 주요범죄유형별 사범

| 표 5-22 | 병역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23,301	19,397	11,352	8,392	7,605	5,343	2,609	4,902	8,583	10,079
	구수			99	76	80	78	114	135	124	49	232	155
	신수			23,202	19,321	11,272	8,314	7,491	5,208	2,485	4,853	8,351	9,924
처리	계			23,229	19,318	11,272	8,274	7,516	5,221	2,565	4,691	8,439	9,923
	기소	소계		16,359	13,852	7,680	5,201	4,469	2,676	1,130	2,603	5,247	6,337
		구공판		1,786	1,623	1,293	963	801	816	655	739	1,287	1,080
		구약식		14,573	12,229	6,387	4,238	3,668	1,860	475	1,864	3,960	5,257
	불기소	소계		6,443	5,091	3,348	2,785	2,783	2,275	598	1,248	2,319	2,619
		무혐의		432	407	242	277	251	205	86	66	63	73
		기소유예		1,207	1,026	969	1,190	1,343	464	280	977	2,026	1,952
		기소중지		3,903	2,591	1,240	828	752	1,189	15	8	15	13
		기타		901	1,067	897	490	437	417	217	197	215	581
	보완수사요구			–	–	–	–	–	–	645	595	572	507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타관		427	375	244	288	264	270	192	245	301	460
		성매매보호		–	–	–	–	–	–	–	–	–	–
미제				72	79	80	118	89	122	44	211	144	156

| 표 5-23 | 경제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134,123	118,507	115,754	103,541	107,950	118,138	83,911	76,933	92,496	115,203
	구수			10,138	9,562	10,451	11,593	12,145	16,630	21,063	8,338	11,601	14,096
	신수			123,985	108,945	105,303	91,948	95,805	101,508	62,848	68,595	80,895	101,107
처리	계			125,059	108,785	104,756	92,204	93,090	96,994	75,724	65,566	78,938	100,405
	기소	소계		26,878	27,418	27,639	23,072	22,718	22,605	17,954	17,794	22,921	24,740
		구공판		9,208	9,114	8,897	8,667	8,492	8,519	7,028	7,091	9,604	10,723
		구약식		17,670	18,304	18,742	14,405	14,226	14,086	10,926	10,703	13,317	14,017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불기소	소계	86,499	66,829	60,151	53,329	54,188	57,787	23,302	22,451	25,747	35,644
		무혐의	17,335	17,295	17,419	17,045	18,389	22,573	7,582	6,270	7,234	8,427
		기소유예	19,042	12,547	11,420	9,204	8,134	8,555	7,346	7,423	9,208	13,636
		기소중지	8,201	6,835	6,570	7,270	8,300	7,638	2,400	2,441	2,872	2,734
		기타	41,921	30,152	24,742	19,810	19,365	19,021	5,974	6,317	6,433	10,847
	보완수사요구		–	–	–	–	–	–	14,108	11,948	13,377	14,770
	이송	소년보호	700	664	534	454	488	616	664	998	1,289	1,086
		가정보호	–	–	1	–	–	–	–	–	1	1
		타관	10,982	13,874	16,431	15,349	15,696	15,986	19,696	12,375	15,603	24,164
		성매매	–	–	–	–	–	–	–	–	–	–
미제			9,064	9,722	10,998	11,337	14,860	21,144	8,187	11,367	13,558	14,798

| 표 5-24 | 폭력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431,618	450,413	437,983	419,272	419,596	376,618	245,030	258,900	258,864	241,904
	구수		6,863	6,754	7,481	8,272	9,469	10,762	16,312	6,388	9,842	10,924
	신수		424,755	443,659	430,502	411,000	410,127	365,856	228,718	252,512	249,022	230,980
처리	계		424,816	443,141	429,923	410,157	407,715	360,619	238,674	249,414	248,365	231,403
	기소	소계	98,166	98,581	93,055	91,871	93,464	97,101	82,432	90,316	92,264	87,691
		구공판	28,631	32,339	30,206	28,878	28,315	27,986	24,324	25,818	26,659	24,226
		구약식	69,535	66,242	62,849	62,993	65,149	69,115	58,108	64,498	65,605	63,465
	불기소	소계	293,812	308,410	302,149	284,118	276,000	230,289	94,898	103,055	98,687	93,933
		무혐의	33,511	32,274	31,211	32,250	33,867	33,745	9,003	8,357	9,483	10,242
		기소유예	58,882	51,859	47,175	40,459	34,857	28,649	23,864	23,672	21,254	17,183
		기소중지	45,534	53,443	57,892	55,328	56,412	37,900	25,252	31,521	29,066	27,693
		기타	155,885	170,834	165,871	156,081	150,864	129,995	36,779	39,505	38,884	38,815
	보완수사요구		–	–	–	–	–	–	22,098	19,050	18,693	15,079
	이송	소년보호	6,072	6,329	7,291	6,914	6,807	5,930	5,247	6,562	6,940	7,304
		가정보호	19,127	20,989	17,701	18,247	21,712	18,206	21,008	20,422	19,421	16,216
		타관	7,638	8,832	9,471	8,756	9,385	8,780	12,724	9,752	12,057	10,848
		성매매	1	–	–	–	–	–	–	–	–	–
		아동보호	–	–	256	251	347	313	267	257	303	332
미제			6,802	7,272	8,060	9,115	11,881	15,999	6,356	9,486	10,499	10,501

| 표 5-25 | 강력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17,655	16,041	17,713	17,271	17,849	8,804	6,091	8,618	9,198	8,133
	구수			1,196	838	1,299	1,213	1,277	1,551	868	346	451	465
	신수			16,459	15,203	16,414	16,058	16,572	7,253	5,223	8,272	8,747	7,668
처리	계			16,763	14,726	16,449	15,965	15,224	8,061	5,782	8,150	8,750	7,683
	기소	소계		5,912	5,260	4,671	4,787	4,665	2,173	1,812	2,070	2,147	2,047
		구공판		5,158	4,810	4,382	4,514	4,504	2,135	1,790	2,042	2,105	2,016
		구약식		754	450	289	273	161	38	22	28	42	31
	불기소	소계		9,099	7,694	10,335	9,630	8,892	5,264	1,842	3,528	2,622	1,741
		무혐의		3,869	3,866	3,964	4,094	4,362	1,073	379	506	455	421
		기소유예		1,196	978	785	682	667	376	290	278	378	274
		기소중지		1,042	1,234	1,246	1,116	1,093	143	96	79	68	83
		기타		2,992	1,616	4,340	3,738	2,770	3,672	1,077	2,665	1,721	963
	보완수사요구			–	–	–	–	–	–	550	413	413	389
	이송	소년보호		379	384	347	284	312	167	117	110	133	101
		가정보호		49	29	26	33	19	5	4	4	3	1
		타관		1,324	1,359	1,066	1,224	1,331	451	1,451	2,021	3,432	3,398
		성매매		–	–	–	–	–	–	–	–	–	–
		아동보호		–	–	4	7	5	1	6	4	–	6
미제				892	1,315	1,264	1,306	2,625	743	309	468	448	450

※ 검찰통계사무규정 개정(2020. 5. 8.)에 따라 흉악사범에서 강력사범으로 변경

| 표 5-26 | 교통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663,726	688,128	581,769	471,945	442,188	424,448	258,499	271,877	268,075	264,376
	구수			2,528	2,456	2,941	3,317	3,234	3,630	8,108	2,862	4,461	4,652
	신수			661,198	685,672	578,828	468,628	438,954	420,818	250,391	269,015	263,614	259,724
처리	계			661,340	685,327	578,550	468,775	438,643	416,395	255,697	267,571	263,600	259,775
	기소	소계		351,980	358,119	310,143	249,514	213,543	198,716	183,680	198,247	197,181	195,792
		구공판		36,105	42,152	42,485	38,084	43,579	55,864	49,717	47,183	43,169	40,604
		구약식		315,875	315,967	267,658	211,430	169,964	142,852	133,963	151,064	154,012	155,188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불기소	소계	299,463	314,563	255,695	208,095	213,993	205,785	45,514	42,945	40,995	40,909
		무혐의	67,463	76,786	50,160	24,020	22,971	22,992	5,486	4,898	4,579	4,322
		기소유예	70,892	75,315	51,319	25,329	19,752	22,055	22,612	21,580	20,576	18,610
		기소중지	14,575	15,120	14,454	16,565	19,964	17,186	8,026	9,162	8,623	8,512
		기타	146,533	147,342	139,762	142,181	151,306	143,552	9,390	7,305	7,217	9,465
	보완수사요구		-	-	-	-	-	-	16,117	14,816	13,052	11,586
	이송	소년보호	4,731	4,901	5,073	4,231	4,535	5,496	4,702	5,338	6,359	5,544
		가정보호	1	1	1	-	-	1	-	0	1	0
		타관	5,165	7,743	7,638	6,935	6,572	6,397	5,684	6,225	6,012	5,944
		성매매	-	-	-	-	-	-	-	0	0	0
미제			2,386	2,801	3,219	3,170	3,545	8,053	2,802	4,306	4,475	4,601

마. 주요신분별 사건

| 표 5-27 | 소년사범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91,723	88,226	85,178	76,642	76,874	74,430	57,247	63,380	69,348	65,110
	구수		921	823	1,062	1,276	1,690	1,817	3,101	1,393	1,837	2,118
	신수		90,802	87,403	84,116	75,366	75,184	72,613	54,146	61,987	67,511	62,992
처리	계		90,890	87,277	84,026	75,150	75,197	72,344	55,854	61,542	67,201	62,885
	기소	소계	6,618	6,238	5,648	5,945	6,155	6,847	5,224	5,563	5,660	5,002
		구공판	4,437	4,010	3,531	3,944	4,255	4,949	3,692	3,945	4,110	3,466
		구약식	2,181	2,228	2,117	2,001	1,900	1,898	1,532	1,618	1,550	1,536
	불기소	소계	51,086	47,718	46,166	37,873	36,499	30,331	18,365	21,223	22,250	20,871
		무혐의	6,201	5,964	5,532	5,280	5,522	5,395	724	800	921	854
		기소유예	30,371	26,558	25,416	20,237	19,157	15,952	13,420	15,439	15,895	14,791
		기소중지	5,322	6,707	6,566	5,031	4,889	3,081	2,948	3,598	4,074	3,773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 타	9,192	8,489	8,652	7,325	6,931	5,903	1,273	1,386	1,360	1,453
	보완수사요구		-	-	-	-	-	-	4,709	3,780	3,680	3,406
	이송	소년보호	24,999	25,159	24,935	23,478	24,393	25,869	20,998	24,342	28,204	26,998
		가정보호	156	180	183	169	212	233	405	348	373	355
		아동보호	0	0	0	9	6	9	5	5	1	6
		타 관	8,023	7,972	7,067	7,666	7,926	9,054	6,148	6,281	7,033	6,247
		성매매	8	10	27	10	6	1	0	0	0	0
미제			833	949	1,152	1,492	1,677	2,086	1,393	1,838	2,147	2,225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2008. 6. 22.시행 개정소년법 나이〈19세 미만〉 미반영)

| 표 5-28 | 학생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4,947	2,972	2,264	1,061	1,360	3,082	4,731	6,067	8,060	8,865
	구수		76	35	17	27	39	35	153	117	180	181
	신수		4,871	2,937	2,247	1,034	1,321	3,047	4,578	5,950	7,880	8,684
처리	계		4,912	2,957	2,242	1,024	1,329	2,954	4,583	5,853	7,825	8,451
	기소	소 계	274	244	148	40	27	147	298	302	397	621
		구공판	95	85	86	16	9	84	102	123	193	295
		구약식	179	159	62	24	18	63	196	179	204	326
	불기소	소 계	3,046	1,809	1,417	534	676	1,358	1,719	2,385	3,039	3,118
		무혐의	463	247	163	55	95	257	75	87	136	149
		기소유예	1,829	1,007	863	288	343	716	1,231	1,759	2,120	2,172
		기소중지	245	211	210	90	103	138	353	442	667	664
		기 타	509	344	181	101	135	247	60	97	116	133
	보완수사요구		-	-	-	-	-	-	335	447	511	645
	이송	소년보호	1,089	670	495	336	448	1,121	1,628	2,219	3,141	3,283
		가정보호	4	4	2	3	5	10	41	32	37	40
		아동보호	0	0	0	0	0	0	0	1	0	1
		타 관	496	229	180	111	173	318	562	467	700	743
		성매매	3	1	0	0	0	0	0	0	0	0
미제			35	15	22	37	31	128	148	214	235	414

| 표 5-29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7,942	9,480	13,466	18,458	19,483	21,622	17,707	27,263	20,349	23,557
	구수		1,085	960	1,233	1,634	1,677	2,057	2,850	1,049	891	896
	신수		6,857	8,520	12,233	16,824	17,806	19,565	14,857	26,214	19,458	22,661
처리	계		7,314	8,553	12,041	17,083	17,697	18,870	16,850	26,354	19,451	22,711
	기소	소계	293	303	345	190	180	128	104	76	86	141
		구공판	256	274	301	147	148	111	97	61	75	125
		구약식	37	29	44	43	32	17	7	15	11	16
	불기소	소계	6,755	7,831	11,157	16,227	17,029	18,210	11,482	11,681	12,800	12,760
		무혐의	2,443	2,481	2,894	2,920	2,988	3,102	1,601	1,533	1,490	1,143
		기소유예	99	104	171	95	80	60	68	24	20	38
		기소중지	71	45	79	74	65	78	26	22	14	3
		기타	4,142	5,201	8,013	13,138	13,896	14,970	9,787	10,102	11,276	11,576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가정보호	-	-	-	-	-	-	-	-	-	-
		타관	266	419	539	666	488	532	4,794	14,143	6,019	9,484
		성매매	-	-	-	-	-	-	-	-	-	-
	보완수사		-	-	-	-	-	-	470	454	546	326
미제			628	927	1,425	1,375	1,786	2,752	857	909	898	846

| 표 5-30 | 외국인 사건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48,277	54,200	46,928	45,068	50,867	49,504	36,375	38,718	41,437	43,928
	구수		1,283	1,049	1,257	1,145	1,486	1,785	2,581	1,253	1,850	1,849
	신수		46,994	53,151	45,671	43,923	49,381	47,719	33,794	37,465	39,587	42,079
처리	계		47,280	53,001	45,867	43,671	48,927	48,182	35,128	36,873	39,577	41,727
	기소	소계	16,535	18,332	14,944	13,789	14,811	14,921	13,753	14,975	16,042	17,381
		구공판	3,979	3,985	3,974	4,162	4,927	5,221	5,028	5,353	5,605	5,990
		구약식	12,556	14,347	10,970	9,627	9,884	9,700	8,725	9,622	10,437	11,391
	불기소	소계	28,377	31,609	28,173	27,097	30,174	29,157	13,312	14,147	15,888	16,374
		무혐의	5,981	6,832	5,840	5,175	5,649	5,930	1,414	1,275	1,520	1,706
		기소유예	10,246	11,788	9,960	9,130	10,599	9,169	7,406	8,384	9,355	9,148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소중지	5,642	5,863	5,325	5,385	5,851	6,204	2,141	2,405	2,586	2,549
		기 타	6,508	7,126	7,048	7,407	8,075	7,854	2,351	2,083	2,427	2,971
	보완수사요구		–	–	–	–	–	–	4,350	3,851	3,671	3,594
	이송	소년보호	45	48	57	61	86	164	125	179	272	303
		가정보호	314	350	303	365	480	388	478	524	465	390
		타 관	2,004	2,649	2,386	2,353	3,373	3,550	3,105	3,195	3,235	3,680
		성 매 매	5	13	4	6	3	2	5	2	4	5
미 제			997	1,199	1,061	1,397	1,940	1,322	1,247	1,845	1,860	2,201

2. 구속영장 발부 등

| 표 5-31 | 구속영장 발부 및 처리

(단위 : 명)

연도	구분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속인원 처리 현황										
		청구 및 신청	기각		발부	미집행	계	기소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검사	판사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15	계	44,110	5,695	6,831	31,153	-	33,946	33,731	33,655	76	67	148	21	37	47	43	-
	검사	7,013	-	1,528	5,142	-	6,181	6,147	6,115	32	-	34	3	27	1	3	-
	사경	37,097	5,695	5,303	26,011	-	27,765	27,584	27,540	44	67	114	18	10	46	40	-
'16	계	46,198	6,088	7,187	32,369	-	35,154	35,010	34,948	62	25	119	6	36	34	43	-
	검사	8,165	-	1,812	5,889	-	7,015	6,995	6,974	21	-	20	-	19	-	1	-
	사경	38,033	6,088	5,375	26,480	-	28,139	28,015	27,974	41	25	99	6	17	34	42	-
'17	계	41,701	6,574	6,682	28,340	-	31,355	31,185	31,126	59	19	151	6	39	40	66	-
	검사	5,919	-	1,485	4,414	-	5,706	5,670	5,658	12	-	36	-	30	3	3	-
	사경	35,782	6,574	5,197	23,926	-	25,649	25,515	25,468	47	19	115	6	9	37	63	-
'18	계	35,946	5,871	5,585	24,438	-	27,525	27,388	27,332	56	20	117	6	20	32	59	-
	검사	4,225	-	1,118	3,095	-	4,584	4,559	4,534	25	1	24	2	18	1	3	-
	사경	31,721	5,871	4,467	21,343	-	22,941	22,829	22,798	31	19	93	4	2	31	56	-
'19	계	35,345	5,683	5,587	24,018	-	26,860	26,756	26,704	52	8	96	5	16	34	41	-
	검사	3,167	-	922	2,235	-	3,645	3,628	3,604	24	-	17	1	14	1	1	-
	사경	32,178	5,683	4,665	21,783	-	23,215	23,128	23,100	28	8	79	4	2	33	40	-
'20	계	31,033	5,260	4,656	21,098	-	24,467	24,373	24,335	38	6	88	4	8	30	46	-
	검사	1,807	-	513	1,289	-	3,126	3,116	3,094	22	-	10	-	5	1	4	-
	사경	29,226	5,260	4,143	19,809	-	21,341	21,257	21,241	16	6	78	4	3	29	42	-
'21	계	28,201	6,174	3,895	18,064	-	20,973	20,897	20,861	36	3	45	-	4	21	20	28
	검사	1,217	-	330	886	-	2,323	2,320	2,302	18	-	3	-	2	1	-	-
	사경	26,984	6,174	3,565	17,178	-	18,650	18,577	18,559	18	3	42	-	2	20	20	28
'22	계	29,000	6,389	4,187	18,352	-	21,555	21,463	21,445	18	4	64	2	7	16	39	24
	검사	1,434	-	385	1,038	-	2,286	2,279	2,270	9	-	6	-	3	1	2	1
	사경	27,566	6,389	3,802	17,314	-	19,269	19,184	19,175	9	4	58	2	4	15	37	23
'23	계	34,434	8,140	5,346	20,882	-	25,467	25,365	25,328	37	6	71	3	6	17	45	25
	검사	1,906	-	517	1,388	-	3,068	3,065	3,051	14	-	3	1	1	-	1	-
	사경	32,528	8,140	4,829	19,494	-	22,399	22,300	22,277	23	6	68	2	5	17	44	25
'24	계	36,626	8,630	6,401	21,469	-	26,093	25,982	25,946	36	3	78	1	6	20	51	30
	검사	1,717	-	515	1,195	-	2,664	2,657	2,641	16	-	7	-	3	-	4	-
	사경	34,909	8,630	5,886	20,274	-	23,429	23,325	23,305	20	3	71	1	3	20	47	30

3. 구속적부심사

| 표 5-32 |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2,117	2,353	2,125	1,994	1,929	1,815	1,542	1,956	2,006	1,961
	구수	-	-	-	-	1	-	-	-	-	-
	신수	2,117	2,353	2,125	1,994	1,928	1,815	1,542	1,956	2,006	1,961
처리	계	2,117	2,353	2,125	1,993	1,929	1,813	1,542	1,956	2,006	1,961
	석방	344	355	301	240	197	118	92	131	157	157
	기각	1,748	1,972	1,795	1,730	1,691	1,667	1,428	1,785	1,830	1,776
	취하	25	26	29	23	41	28	22	40	19	28
심사중		-	-	-	1	-	-	-	-	-	-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표 5-33 | 항고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55,140	53,168	57,306	65,456	80,195	80,627	44,057	33,589	51,563	69,736
	구수	4,386	4,505	4,825	5,435	7,936	7,651	7,738	3,231	3,421	4,008
	신수	50,754	48,663	52,481	60,021	72,259	72,976	36,319	30,358	48,142	65,728
처리	계	50,632	48,341	51,866	57,524	72,539	72,879	40,826	30,171	47,552	65,992
	기소명령	121	117	85	50	60	28	17	13	25	50
	재기수사명령	3,436	3,067	3,646	4,402	4,695	4,706	3,017	1,925	2,244	2,103
	주문변경명령	90	255	240	140	135	44	39	39	77	33
	항고기각	42,984	40,305	42,247	43,628	52,451	57,580	35,484	27,099	40,477	50,830
	각하	4,001	4,597	5,648	9,304	15,198	10,521	2,269	1,095	4,729	12,976
미제		4,508	4,827	5,440	7,932	7,656	7,748	3,231	3,418	4,011	3,744

| 표 5-34 | 재항고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수	계	3,110	2,669	3,754	4,300	7,312	6,447	4,616	4,408	4,255	4,479
	구수	461	348	465	523	908	1,479	1,184	692	1,491	1,320
	신수	2,649	2,321	3,289	3,777	6,404	4,968	3,432	3,716	2,764	3,159
처리	계	2,762	2,204	3,231	3,392	5,833	5,263	3,924	2,917	2,935	2,900
	기소명령	-	-	-	-	-	-	-	-	1	-
	재기수사명령	72	59	61	56	104	142	74	54	52	28
	주문변경명령	1	-	-	-	-	-	-	-	-	-
	항고기각	1,722	1,655	2,170	2,247	3,717	4,550	3,059	2,084	1,887	1,519
	각하	967	490	1,000	1,089	2,012	571	791	779	995	1,353
미제		348	465	523	908	1,479	1,184	692	1,491	1,320	1,579

| 표 5-35 | 재정신청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심사중		19,377	22,165	25,061	29,406	36,793	42,005	41,370	44,074	48,101	46,937
접수	계	21,043	19,393	21,285	24,212	34,758	29,744	17,156	13,825	19,889	24,520
	공소제기명령	-	-	-	-	-	1	-	-	2	-
	고법송부	21,043	19,393	21,285	24,209	34,756	29,742	17,155	13,822	19,887	24,520
	신청취소	-	-	-	3	2	1	1	3	-	-
처리	계	19,461	16,605	18,389	19,864	27,369	24,530	17,790	11,118	15,860	25,684
	신청기각	19,184	16,392	18,014	19,586	27,085	24,209	17,571	10,939	15,602	25,486
	공소제기결정	160	86	171	106	97	161	111	77	117	119
	신청취소	117	127	204	172	187	160	108	102	141	79

5. 형의 집행

| 표 5-36 | 사형집행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2007	2008	2009 ~ 2024
집 행 인 원	23	23	-	-	-	-	-	-	-	-
기 타 (사면·감형 등)	19	-	2	5	2	-	4	-	6	-

| 표 5-37 | 벌과금 집행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조정금액	처분금액				집행미제액
		현금집행	유치집행	기타처분 금액	계	
2015	30,427,117,765	1,485,721,253	2,172,718,742	285,497,041	3,943,937,036	26,483,180,729
2016	30,973,951,033	1,477,985,331	2,702,019,260	180,568,827	4,360,573,419	26,613,377,614
2017	31,479,966,569	1,440,018,684	2,920,347,012	148,669,665	4,509,035,361	26,970,931,208
2018	32,367,440,507	1,302,533,747	3,123,518,750	652,849,501	5,078,901,998	27,288,538,509
2019	32,616,527,504	1,223,258,449	3,000,576,228	494,089,002	4,717,923,679	27,898,603,825
2020	37,922,664,770	1,277,513,057	4,242,205,364	321,135,450	5,840,853,871	32,081,810,899
2021	37,716,213,301	1,194,457,327	3,941,826,907	157,795,659	5,294,079,893	32,422,133,408
2022	38,197,346,186	1,193,344,535	3,856,611,451	97,944,158	5,147,900,144	33,049,446,042
2023	39,124,329,114	1,368,269,581	3,767,269,629	119,999,207	5,255,538,417	33,868,790,697
2024	39,856,221,527	1,396,505,733	3,725,365,129	145,506,434	5,267,377,296	34,588,844,231

※ 조정금액은 당해 연도 벌과금 조정총액에서 촉탁금액을 감액한 실조정금액
※ 기타 처분금액은 사회봉사집행, 집행불능 결정, 공제(미결구금일수 통산)금액의 합계액
※ 집행미제액은 사회봉사집행 중, 집행정지, 순미제 금액의 합계액

6. 사 면

| 표 5-38 | 사면

(단위 : 명)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1982. 1. 1.	-	11	-	-	-	-	-	징계변호사
1982. 3. 3.	-	1,419 (488)	-	545 (248)	-	238 (233)	-	12대 대통령취임 1주년
1983. 3. 15.	-		-	2	-	-	-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3. 8. 12.	-	77 (1)	-	10	-	551 (257)	-	광복절
1983. 12. 23.	-	36	-	-	-	142 (66)	-	성탄절
1984. 8. 14.	-	43	-	2	-	307 (71)	364 (50)	광복절
1984. 10. 2.	-	-	-	177 (40)	-	-	-	개천절
1985. 3. 2.	-	1,615 (393)	-	512 (186)	-	-	-	대통령취임 4주년
1985. 8. 15.	-	-	-	4	-	-	-	40주년 광복절 (국가유공자등)
1987. 7. 10.	-	1,819 (7)	-	-	-	401 (21)	115 (43)	7·1대통령담화관련
1988. 2. 27.	-	4,214 (788)	-	835 (185)	-	992 (665)	334 (19)	제13대 대통령취임
1988. 12. 21.	-	1,113 (20)	-	96 (5)	-	365 (31)	155 (6)	11·26 대통령특별 담화관련
1990. 4. 12.	-	1	-	-	-	-	-	김현희
1991. 2. 25.	-	914 (187)	-	565 (187)	-	-	-	대통령취임 3주년
1991. 5. 25.	-	-	-	30 (9)	-	-	-	-
1991. 12. 24.	-	1	-	-	-	1	-	-
1992. 12. 24.	-	9	-	1	-	12	2	-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1993. 3. 6.	–	34,147 (590)	–	1,076 (167)	–	2,987 (81)	2,703 (66)	제14대 대통령취임
1993. 5. 28.	–	81 (75)	–	–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1993. 12. 24.	–	137	–	–	–	24	26	전교조 관련
1995. 8. 15.	–	1,269 (103)	–	426 (46)	–	528 (29)	318 (23)	8·15 광복절
1995. 12. 2.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4818호)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자 및 징계공무원
1996. 2. 25.	–	1	–	–	–	–	22	대통령취임 3주년
1996. 8. 15.	–	–	–	–	–	5	6	광복 51주년 경축
1997. 10. 3.	–	1	–	–	–	8	14	개천절기념
1997. 12. 22.	–	17	–	–	–	–	8	전직대통령 등
1998. 3. 13.	–	2,058 (231)	–	1,258 (61)	–	806	30,681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
1998. 8. 15.	–	18 (3)	–	13	–	1,402 (5)	3,406 (12)	건국 50주년 경축
1999. 2. 25.	–	2,707 (2)	–	12	–	1,088 (28)	3,501 (50)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1999. 8. 15.	–	40 (1)	–	7	–	256 (9)	788 (16)	광복 54주년 경축
2000. 8. 15.	–	3,881 (58)	–	810 (8)	–	525 (3)	23,148 (163)	광복 55주년 경축
2002. 7. 10.	월드컵 경축	–	–	–	–	–	–	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4,810,000명
2002. 12. 31.	–	54	–	4	–	25	39	복역중인 외국인 51명 잔형집행 면제포함
2003. 4. 30.	–	38 (1)	–	–	–	431	955 (5)	제16대 대통령 취임 (공안사범 사면)
2003. 8. 15.	–	2,363 (502)	–	675 (10)	–	170	21,417	광복 58주년 경축
2004. 5. 26.	–	1	–	–	–	6	62	부처님 오신 날 경축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2005. 8. 15.	-	2,528 (62)	-	567 (20)	-	1,483 (1)	9,515 (19)	광복 60주년 경축 (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4,207,152명)
2006. 8. 15.	-	46	-	19	-	27	50	광복 61주년 경축 (건설업체 벌점삭제 등 4,390명)
2007. 2. 12.	-	28	-	12	-	276	118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2008. 1. 1.	-	8	-	14	-	18	35	-
2008. 6. 4.	-	119	-	31	-	-	-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2,828,917명)
2008. 8. 15.	-	1,401 (8)	-	178	-	1,951	8,797 (16)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 (징계사면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500명)
2009. 8. 15.	-	1,947 (6)	-	375	-	-	7,145 (2)	제64주년 광복절, 건국 61주년 경축
2009. 12. 31.	-	1	-	-	-	-	-	-
2010. 8. 15.	-	25	-	15	-	2,406	47	제65주년 광복절 기념 (징계사면 5,685)
2012. 1. 12.	-	595	-	185	-	-	165	-
2013. 1. 31.	-	16	-	3	-	18	18	-
2014. 1. 29.	-	516 (1)	-	113	-	-	5,296 (1)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7,601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896,499명
2015. 8. 15.	-	877 (5)	-	246	-	1	5,403 (5)	제70주년 광복절 기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200,92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206,924명)
2016. 8. 15.	-	858 (6)	-	261	-	3	3,754 (6)	제71주년 광복절 기념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420,049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422,493명)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2017. 12. 30.	-	852 (2)	-	245	-	17	5,330 (2)	2018년 신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650,97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652,691명)
2019. 2. 28.	-	819 (1)	-	243 (1)	-	89	3,227 (2)	제100주년 3·1절
2019. 12. 31.	-	569 (1)	-	153	-	2,159	2,293 (2)	2020년 신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709,822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712,422명)
2020. 12. 31.	-	556	-	153	-	8	2,307 (1)	2021년 신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118,923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119,608명)
2021. 12. 31.	-	642	-	131	-	369	1952	2022년신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980,780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983,051명, 전직 대통령 포함)
2022. 1. 26.	-	-	-	-	-	2	-	2022년 신년 후속조치
2022. 8. 15.	-	495	-	87	-	7	1104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592,037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593,509명)
2022. 12. 28.	-	9	-	2	-	1342 (4)	20 (1)	2023년 신년
2023. 8. 15.	-	2,062	-	82	-	26 (4)	- (2)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808,016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811,978명)
2024. 2. 7.	-	147	-	26	-	20 (2)	787 (1)	2024년 설 명절 (징계사면 75,086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363,681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380,312명)
2024. 8. 15.	-	199	-	57	-	53	910 (1)	2024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416,847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417,260명)

※ ( )는 국방부 소관

7. 형사보상금 지급

| 표 5-39 |

(단위 : 천원,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20,000,000	24,000,000	27,500,000	33,213,000	33,213,000	37,313,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보상인원	14,546	8,713	7,374	5,073	4,257	4,380	3,414	2,983	2,956	3,505
지급금액	52,974,617	31,768,637	36,038,809	36,736,416	40,138,487	41,906,948	44,386,945	42,323,047	56,851,494	77,218,583

※ 형사보상금 = 피고인 보상금 + 피의자 보상금 + 무죄비용 보상금 + 기타

8. 마약보상금 지급

| 표 5-40 |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도	마약보상금
2022	120,000 (8)
2023	110,000 (12)
2024	110,000 (16)

※ ( )는 인원

9. 해외연수

가. 검사 장기 해외연수

| 표 5-41 |

(단위 : 명)

연도 \ 지역	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이집트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칠레	이탈리아	인도	터키	스웨덴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2005	28	14	1	2	1	2	2	1	–	1	1	–	1	1	1	–	–	–	–	–	–	–	–	–
2006	50	25	2	5	2	3	3	1	–	2	1	–	1	1	1	1	1	1	–	–	–	–	–	–
2007	53	26	3	4	2	3	3	1	–	3	2	–	1	–	1	1	–	1	1	1	–	–	–	–
2008	55	21	4	5	2	3	4	2	1	4	2	–	1	–	2	1	–	1	1	1	–	–	–	–
2009	53	21	4	5	3	3	4	2	–	3	1	–	1	–	2	1	–	1	2	–	–	–	–	–
2010	54	24	4	5	2	3	3	3	–	3	2	–	1	1	1	1	–	–	1	–	–	–	–	–
2011	54	20	2	5	2	5	6	3	–	6	2	–	1	–	1	–	–	–	–	–	1	–	–	–
2012	54	23	3	5	3	3	5	2	–	4	3	–	1	–	1	–	–	–	1	–	–	–	–	–
2013	54	25	3	4	3	2	3	4	–	4	3	–	1	–	1	–	–	–	1	–	–	–	–	–
2014	52	23	2	5	3	2	5	3	–	5	2	–	1	–	1	–	–	–	–	–	–	–	–	–
2015	52	24	3	5	3	2	3	4	–	4	2	–	1	–	1	–	–	–	–	–	–	–	–	–
2016	52	20	3	5	3	4	3	2	–	4	2	–	1	–	1	1	1	–	–	–	–	1	1	–
2017	57	26	3	2	3	2	5	2	–	4	1	–	1	–	2	1	1	1	–	–	–	2	–	1
2018	57	37	1	6	1	2	2	1	–	3	1	–	1	–	1	–	1	–	–	–	–	–	–	–
2019	57	45	3	2	3	2	–	–	–	1	–	–	–	–	1	–	–	–	–	–	–	–	–	–
2020	56	41	2	2	1	2	1	–	–	1	–	1	–	–	3	–	1	–	–	–	–	1	–	–
2021	58	41	4	2	1	2	–	3	–	4	–	–	–	–	1	–	–	–	–	–	–	–	–	–
2022	57	42	3	1	2	2	–	1	–	1	–	–	–	–	1	2	1	–	–	–	–	1	–	–
2023	56	41	3	1	1	1	–	1	–	3	1	1	–	–	2	–	–	–	–	–	–	1	–	–
2024	52	31	4	2	1	2	–	1	–	3	1	1	–	–	4	–	1	–	–	–	–	1	–	–

※ 타부처 주관 포함

나. 검사 외 검찰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 표 5-42 |

(단위 : 명)

연도 \ 지역	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스페인	체코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2005	4	1	1	–	–	–	–	–	–	1	1	–	–	–
2006	4	1	–	–	–	–	1	2	–	–	–	–	–	–
2007	8	2	–	–	–	2	1	1	1	1	–	–	–	–
2008	7	3	–	–	–	1	1	1	–	1	–	–	–	–
2009	5	2	1	–	–	–	1	1	–	–	–	–	–	–
2010	6	3	–	–	–	1	1	1	–	–	–	–	–	–
2011	6	3	1	–	–	–	1	–	–	–	–	1	–	–
2012	5	3	–	–	–	–	1	1	–	–	–	–	–	–
2013	7	3	–	1	–	1	1	–	–	–	–	–	1	–
2014	7	3	–	–	1	–	2	1	–	–	–	–	–	–
2015	6	3	–	–	–	–	2	1	–	–	–	–	–	–
2016	4	3	–	–	–	–	–	1	–	–	–	–	–	–
2017	6	3	–	–	–	1	1	1	–	–	–	–	–	–
2018	7	3	1	–	–	–	2	–	–	–	–	–	–	1
2019	3	2	1	–	–	–	–	–	–	–	–	–	–	–
2020	4	2	–	–	1	–	–	1	–	–	–	–	–	–
2021	3	1	1	–	1	–	–	–	–	–	–	–	–	–
2022	4	1	1	–	–	1	–	–	–	1	–	–	–	–
2023	5	2	2	–	–	–	–	–	1	–	–	–	–	–
2024	3	2	–	–	–	–	–	1	–	–	–	–	–	–

※ 타부처 주관 포함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1. 감호처분

가. 피보호감호자 수용

| 표 5-43 | 죄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죄명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0	62	31	17	31	30	32	24	19	11
강도	32	18	8	5	12	13	9	10	8	7
절도	16	10	3	3	9	9	8	3	4	2
폭력	2	-	-	1	2	-	1	1	-	-
성폭력	47	32	20	8	8	8	14	9	6	2
기타	3	2	-	-	-	-	-	1	1	-

| 표 5-44 | 전과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전과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0	62	31	17	31	30	32	24	19	11
초범	7	3	3	-	1	3	2	-	-	-
2 ~ 3범	18	11	5	4	7	3	3	3	2	3
4 ~ 5범	32	20	10	4	8	10	5	3	3	2
6 ~ 7범	29	20	7	6	8	3	10	10	5	4
8 ~ 9범	7	4	3	2	5	8	8	5	5	1
10범 이상	7	4	3	1	2	3	4	3	4	1

| 표 5-45 | 동기별 수용인원

(단위 : 명)

동기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0	62	31	17	31	30	32	24	19	11
이욕(利慾)(생활비, 유흥비, 허영)	98	62	31	17	31	30	32	24	19	11
원한·분노	-	-	-	-	-	-	-	-	-	-
취중	2	-	-	-	-	-	-	-	-	-
우연	-	-	-	-	-	-	-	-	-	-
기타	-	-	-	-	-	-	-	-	-	-

| 표 5-46 | 학력별 수용인원

(단위 : 명)

학력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0	62	31	17	31	30	32	24	19	11
무학	11	14	-	-	3	2	3	3	1	-
초졸	36	14	7	8	11	6	6	1	3	3
중졸	17	12	11	2	8	15	11	6	3	3
고졸	35	22	13	7	9	7	12	13	11	5
대졸	1	-	-	-	-	-	-	1	1	-

| 표 5-47 | 직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직업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0	62	31	17	31	30	32	24	19	11
노동	30	12	1	3	5	3	1	2	3	2
종업원	14	6	1	1	2	1	2	2	3	1
농업	1	-	-	-	-	-	-	-	1	-
상업	9	8	3	1	2	2	1	1	3	1
기타	46	36	26	12	22	24	28	19	9	7

| 표 5-48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연 도 / 집행기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0	62	31	17	31	30	32	24	19	11
1년 미만	4	7	3	3	2	-	3	1	-	1
1년 이상~2년 미만	11	7	4	7	5	3	2	2	2	1
2년 이상~3년 미만	12	10	7	1	4	3	1	3	1	1
3년 이상~4년 미만	24	22	7	1	2	6	5	1	2	-
4년 이상	49	16	10	5	18	18	21	17	14	8

나. 피치료감호자 수용

| 표 5-49 | 죄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죄 명 /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810	808
살 인	372	343	338	328	336	321	310	290	250	286
상해(폭행)치사	36	34	38	30	30	28	22	22	22	20
폭 력	161	137	156	149	140	171	141	139	148	157
절 도	68	60	59	58	62	58	51	43	40	45
방 화	80	75	80	76	74	64	49	45	44	45
강 도	57	52	48	48	44	44	31	25	26	21
성 폭 력	279	272	242	208	184	184	144	138	118	109
기 타	127	120	135	141	142	146	115	113	162	125

| 표 5-50 | 전과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전과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810	808
초범	769	728	721	671	657	663	577	537	537	544
2범	132	133	129	126	132	135	97	84	74	74
3범	77	61	65	57	60	61	57	51	56	51
4범	40	45	35	38	37	35	31	26	22	21
5범 이상	162	126	146	146	126	122	101	117	121	118

| 표 5-51 | 병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병명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810	808
조현병	533	507	519	528	543	575	509	471	467	477
정신지체	102	97	93	84	77	84	62	56	50	51
조울증	81	85	84	71	76	79	68	63	76	79
성격(인격)장애	35	27	27	23	13	10	5	5	9	9
간질	14	12	10	10	9	10	6	4	4	3
약물중독	175	130	35	46	35	19	26	26	37	25
기타	240	235	328	276	259	239	187	190	167	164

| 표 5-52 | 학력별 수용인원

(단위 : 명)

학력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810	808
무학	48	44	73	70	54	53	47	39	36	35
초졸	141	139	189	163	153	153	125	109	98	92
중졸	227	202	186	173	156	161	141	131	143	132
고졸	512	475	478	475	499	378	321	301	303	295
대졸	252	233	170	157	150	271	229	235	230	254

| 표 5-53 | 직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직업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810	808
노동	102	85	94	93	81	89	73	63	53	43
종업원	67	53	46	40	30	33	26	25	21	17
농업	28	27	27	31	28	25	21	19	17	17
상업	7	40	22	17	4	3	2	1	17	13
무직	745	695	693	658	664	691	599	551	555	573
기타	231	193	214	199	205	175	142	156	147	145

| 표 5-54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집행기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810	808
1년 미만	279	283	220	195	210	193	115	138	176	152
1년 이상~2년 미만	199	181	230	167	136	153	140	85	86	117
2년 이상~3년 미만	173	133	156	178	123	112	126	116	76	78
3년 이상~4년 미만	126	115	103	116	144	103	81	102	96	65
4년 이상	403	381	387	382	399	455	401	374	376	396

| 표 5-55 | 교육훈련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7	7	-	2	-	-	1	-	-	
학과교육	소 계	7	6	-	2	-	-	-	-	-	9
	초 등 반	-	-	-	-	-	-	-	-	-	-
	중 등 반	-	-	-	-	-	-	-	-	-	5
	고 등 반	-	-	-	-	-	-	-	-	-	4
	학사고시반	7	6	-	2	-	-	-	-	-	-
직업훈련	소 계	-	1	-	-	-	-	1	-	-	-
	목 공	-	-	-	-	-	-	-	-	-	-
	미 (도) 장	-	-	-	-	-	-	-	-	-	-
	조 적	-	-	-	-	-	-	-	-	-	-
	타 일	-	-	-	-	-	-	-	-	-	-
	배 관	-	-	-	-	-	-	1	-	-	-
	전 기	-	-	-	-	-	-	-	-	-	-
	보일러시공	-	-	-	-	-	-	-	-	-	-
	이·미 용	-	-	-	-	-	-	-	-	-	-
	원 예	-	-	-	-	-	-	-	-	-	-
	양 재	-	-	-	-	-	-	-	-	-	-
	정 비	-	-	-	-	-	-	-	-	-	-
	정보기기	-	-	-	-	-	-	-	-	-	-
	기 타	-	1	-	-	-	-	-	-	-	-

| 표 5-56 | 기능자격취득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	1	-	1	-	-	-	-	-	-
천안교도소	소 계	-	-	-	-	-	-	-	-	-	-
	1·2기능사	-	-	-	1	-	-	-	-	-	-
	기능사보	-	-	-	-	-	-	-	-	-	-
	면 허	-	-	-	-	-	-	-	-	-	-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 계	-	1	-	-						
	1·2기능사	-	1	-	-						
	기능사보	-	-	-	-						
	면 허	-	-	-	-						

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표 5-57 | 피보호감호자 결정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9	59	53	31	22	34	16	8	9	6
가 출 소	23	53	43	23	11	15	15	7	8	4
가출소취소	16	6	10	8	11	19	1	1	1	2
집 행 면 제	-	-	-	-	-	-	-	-	-	-

| 표 5-58 | 피치료감호자 결정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54	456	320	326	269	243	299	215	150	145
종 료	4	2	3	-	-	-	3	-	3	5
가 종 료	266	394	226	246	208	186	270	186	132	120
가종료취소	84	60	91	80	61	57	26	29	15	20

라. 보호감호 가출소

| 표 5-59 | 감호집행 기간별 가출소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3	53	43	26	11	15	15	7	8	4
3년 미만	-	3	1	8	6	3	3	3	2	1
3년이상 ~ 4년 미만	5	6	6	6	-	3	4	-	3	1
4년이상 ~ 5년 미만	5	12	23	6	2	2	1	-	2	-
5년 이상	13	32	13	6	3	7	7	4	1	2

| 표 5-60 | 죄명별 가출소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3	53	43	26	11	15	15	7	8	4
절 도	9	10	12	3	2	5	7	-	2	-
강 도	5	20	11	10	4	8	4	3	4	3
폭력행위등	-	4	1	-	1	-	-	-	-	-
성 폭 력	9	19	17	13	4	2	4	4	1	1
기 타	-	-	2	-	-	-	-	-	1	-

| 표 5-61 | 전과별 가출소 인원

(단위 : 명)

전과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3	53	43	26	11	15	15	7	8	4
초 범	-	4	2	-	-	1	2	-	-	-
2 ~ 3 범	6	9	8	-	4	2	-	1	-	1
4 ~ 5 범	5	14	13	6	1	6	3	-	2	-
6 ~ 7 범	7	17	14	10	5	3	3	4	1	1
8 ~ 9 범	4	5	3	4	-	2	5	2	3	1
10범 이상	1	4	3	6	1	1	2	-	2	1

마.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 표 5-62 |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인원

(단위 : 명)

기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3	137	3	122
1년 미만	2	59	1	68	-	11	-	40	-	55	-	53	1	8	-	22	3	18	1	23
1년 이상 2년 미만	2	72	-	80	2	51	-	39	-	30	-	11	1	40	-	24	-	13	2	19
2년 이상 3년 미만	-	41	-	62	1	26	-	41	-	33	-	19	-	28	-	26	-	12	-	10
3년 이상	-	94	1	183	-	138	-	132	-	117	-	105	-	187	-	118	-	94	-	70

| 표 5-63 | 죄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단위 : 명)

죄명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3	137	3	122
살인	-	27	-	77	-	48	-	35	-	23	-	48	-	43	-	47	-	22	-	22
상해(폭행)치사	-	6	-	10	-	2	-	8	-	3	-	4	-	6	-	3	-	3	-	1
폭력행위등	2	81	-	78	2	26	-	38	-	45	-	17	-	55	-	26	3	26	-	27
강간	1	16	1	50	-	56	-	54	-	50	-	23	-	46	-	26	-	24	1	28
강도	-	13	1	17	-	12	-	7	-	9	-	6	-	15	-	7	-	3	1	2
절도	1	13	-	26	-	16	-	19	-	17	-	15	-	17	-	16	-	12	-	8
방화, 실화	-	10	-	32	-	11	-	19	-	16	-	17	-	16	-	11	-	7	-	8
기타	-	100	-	103	1	55	-	72	-	72	-	58	2	65	-	54	-	40	1	26

| 표 5-64 | 전과별 종료·가종료 인원

(단위 : 명)

연도 / 죄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3	137	3	122
초범	1	119	–	209	–	124	–	131	–	116	–	87	–	138	–	99	1	65	1	63
2범	2	33	1	43	3	25	–	29	–	25	–	26	–	48	–	17	2	17	–	15
3범	–	17	1	31	–	13	–	20	–	17	–	13	–	18	–	14	–	9	–	14
4범	1	9	–	10	–	15	–	12	–	9	–	14	1	10	–	16	–	6	–	7
5범 이상	–	88	–	100	–	49	–	60	–	68	–	48	1	49	–	44	–	40	2	23

| 표 5-65 | 병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단위 : 명)

연도 / 죄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3	137	3	122
조현병	2	83	1	139	2	80	–	84	–	63	–	64	1	121	–	90	2	61	–	47
정신지체	–	16	–	27	–	19	–	16	–	16	–	17	–	23	–	13	–	8	–	9
조울증	–	15	–	24	–	14	–	23	–	16	–	10	–	21	–	20	1	8	–	10
성격(인격)장애	–	9	1	8	1	1	–	5	–	8	–	5	–	5	–	3	–	5	–	1
간질	–	7	–	4	–	2	–	–	–	1	–	1	–	4	–	2	–	1	–	2
약물중독	–	105	–	138	–	37	–	35	–	41	–	41	–	20	–	38	–	20	–	19
기타	2	31	–	53	–	73	–	89	–	90	–	50	1	69	–	24	–	34	3	34

2. 보호관찰

| 표 5-66 | 2024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단위 : 명)

구분 \ 심사위원회	계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수 원
계	12,964	3,476	1,827	1,543	2,080	1,899	2,139
가 석 방 (보 호 관 찰)	10,522	2,882	1,500	1,277	1,567	1,589	1,707
임 시 퇴 원	1,253	187	79	164	341	130	352
기 타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임시해제)	1,189	407	248	102	172	180	80

| 표 5-67 | 2024년 처분종류별 실시사건 현황

(단위 : 명)

대상 \ 구분	총 실 시 인 원			종 료	현 원
	계	구 수	접 수		
계	236,642	82,919	153,723	154,868	81,774
선 고 유 예	30	11	19	12	18
집 행 유 예	125,242	47,179	78,063	80,049	45,193
보 호 처 분	38,020	14,508	23,512	23,456	14,564
가 석 방	15,097	3,479	11,618	10,688	4,409
임 시 퇴 원	1,996	631	1,365	1,198	798
가 출 소	37	29	8	19	18
가 종 료	708	529	179	307	401
치 료 명 령	1,019	620	399	373	646
치료감호기간만료	30	22	8	13	17
가 정 보 호	10,383	3,004	7,379	7,774	2,609
성 매 매	171	39	132	123	48
아 동 학 대	3,743	1,086	2,657	2,626	1,117
기 소 유 예	10,508	3,099	7,409	7,652	2,856
성구매자 교육	2,336	613	1,723	1,606	730
전 자 장 치 부 착	4,631	3,319	1,312	1,126	3,505
벌 금 미 납	7,468	1,578	5,890	6,108	1,360
이 수 명 령	15,223	3,173	12,050	11,738	3,485

| 표 5-68 | 근거법률별 접수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34,364	159,636	162,360	149,282	148,054	153,310	142,538	148,261	148,378	153,723
형법	소계	63,746	76,366	81,808	76,817	78,079	85,589	79,301	75,611	71,926	72,686
	선고유예	22	23	16	22	11	17	23	8	11	13
	집행유예	59,568	70,670	74,996	69,647	69,627	77,744	69,625	64,498	61,893	61,055
	가석방	4,156	5,673	6,796	7,148	8,441	7,828	9,653	11,105	10,022	11,618
소년법	소계	26,517	24,718	25,511	24,972	21,912	22,621	19,435	19,729	22,756	24,877
	단기보호관찰	12,974	11,240	11,815	11,319	9,281	9,419	7,870	8,494	9,415	9,349
	장기보호관찰	9,570	9,538	9,594	9,224	8,619	8,437	7,381	7,646	8,550	9,537
	단독명령	2,889	2,707	2,910	3,133	2,954	3,803	3,240	2,666	3,797	4,626
	임시퇴원	1,084	1,233	1,192	1,296	1,058	962	944	923	994	1,365
치료감호법	소계	481	690	986	1,097	1,118	885	882	690	627	611
	가출소	40	87	78	64	34	24	24	17	17	8
	가종료	441	603	434	435	308	227	372	282	214	179
	치료명령	-	-	474	581	745	620	468	379	391	416
	치료감호기간만료	-	-	-	17	31	14	18	12	5	8
성폭력처벌법	소계	4,389	5,533	10,957	12,230	11,962	12,414	12,810	14,328	14,318	14,153
	선고유예	5	11	16	6	4	2	1	2	1	6
	이수명령	-	-	5,074	6,303	6,044	6,231	6,361	7,279	7,185	6,901
	집행유예	4,384	5,522	5,867	5,921	5,914	6,181	6,448	7,047	7,132	7,246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7,823	8,608	9,126	7,854	9,384	7,940	6,782	8,529	7,942	8,053
	보호처분	7,823	8,608	9,126	7,854	9,384	7,940	6,771	8,363	7,621	7,379
	이수명령	-	-	-	-	-	-	-	106	249	301
	집행유예	-	-	-	-	-	-	11	60	72	373
성매매처벌법	소계	1,619	2,274	2,835	1,274	879	840	561	463	361	343
	보호처분	390	1,050	1,443	521	243	204	133	137	137	132
	집행유예	1,229	1,224	1,392	753	636	636	428	326	224	211
기소유예	소계	11,425	14,859	13,126	10,292	11,082	8,378	7,849	10,323	8,969	7,409
	1급	190	103	96	148	106	52	49	48	54	61
	2급	4,096	3,810	3,553	2,165	1,835	1,123	908	847	923	881
	선도교육	7,139	10,946	9,477	7,979	9,141	7,203	6,892	9,428	7,992	6,467
성구매자교육	소계	2,847	11,763	5,817	3,239	2,457	1,430	1,468	2,160	1,736	1,723
전자장치부착법	소계	833	870	795	891	793	822	822	841	832	783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	-	-	-	-	-	444	414	458	529
벌금미납사회봉사	소계	8,554	8,530	8,282	7,624	7,413	9,097	7,207	5,830	6,589	5,890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5,608	4,444	1,609	1,491	1,270	1,242	2,214	2,312	2,497	2,974
	선고유예	-	1	1	-	-	-	-	-	-	-
	이수명령	4,356	3,219	257	272	251	258	390	274	248	292
	집행유예	1,252	1,224	1,351	1,219	1,019	984	1,824	2,038	2,249	2,682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522	981	1508	1,501	1,705	2,052	2,657	3,876	3,465	3,799
	이수명령	149	20	31	-	103	158	-	337	462	564
	보호처분	301	839	1235	1,256	1,364	1,591	2,174	2,958	2,408	2,657
	집행유예	72	122	242	245	238	303	483	581	595	578
산업안전보건법	소계	-	-	-	-	-	-	1	26	51	48
마약류관리법	소계	-	-	-	-	-	-	105	1,947	2,828	4,268
스토킹처벌법	소계	-	-	-	-	-	-	-	1,182	3,018	5,571
동물보호법	소계	-	-	-	-	-	-	-	-	5	6

※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사건을 제외한 당해연도 순수접수건

| 표 5-69 | 기관별 보호관찰 등 대상자 접수현황

(단위 : 명)

기관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34,364	159,636	162,360	149,282	148,054	153,310	142,538	148,261	148,378	153,723
서울	7,875	8,645	8,438	7,153	7,113	6,959	6,597	6,750	6,525	6,840
서울동부	3,626	3,964	3,718	3,397	3,579	3,732	3,526	3,697	3,755	3,790
서울남부	4,758	5,436	5,880	5,361	5,455	5,170	5,012	5,115	4,977	5,113
서울북부	2,898	3,152	3,014	3,328	4,076	4,019	3,570	3,457	3,672	3,387
서울서부	2,988	3,330	3,247	3,132	3,195	3,235	2,963	2,895	2,970	2,767
의정부	4,670	6,561	6,175	6,050	5,850	6,531	5,825	4,915	3,730	3,779
인천	6,092	7,633	7,895	6,856	6,295	5,975	6,093	6,064	7,112	6,800
수원	6,687	8,784	8,857	7,992	7,992	8,589	8,009	8,509	8,071	9,047
춘천	1,340	1,478	1,717	1,596	1,447	1,374	1,291	1,401	1,272	1,210
대전	4,541	4,895	5,753	5,804	5,541	6,251	5,608	5,353	5,000	5,957
청주	2,631	2,654	3,155	3,346	3,270	2,897	3,258	3,517	3,386	3,299
대구	5,975	6,351	5,843	5,204	5,637	5,700	5,488	5,695	5,332	5,775
부산	5,413	7,460	6,634	4,479	3,424	3,478	3,219	3,384	3,448	3,601
울산	3,552	3,178	4,964	4,097	4,738	5,508	4,224	4,305	4,598	4,346
창원	3,818	4,843	4,961	3,976	4,650	5,825	5,375	5,895	5,586	5,165
광주	5,577	5,355	7,899	6,872	5,608	5,982	4,692	4,871	5,399	6,207
전주	2,104	2,888	3,191	3,005	2,667	3,153	2,731	2,371	2,779	2,903
제주	1,699	2,493	3,103	2,839	2,851	2,722	2,040	2,771	2,577	2,655
고양	4,070	4,401	4,155	3,539	3,522	4,247	3,834	4,241	4,268	4,290
남양주	-	-	-	-	-	-	-	2,878	2,692	2,655
인천서부	2,577	3,057	3,417	2,850	2,689	2,510	2,639	2,725	3,129	3,070
성남	3,344	4,440	4,676	4,026	3,710	3,672	3,887	3,889	3,659	3,799
부천	2,991	3,548	4,351	4,172	4,117	3,656	3,470	3,596	3,884	3,551
여주	1,172	1,422	1,588	1,321	1,255	1,414	1,412	1,428	1,327	1,266
안산	5,301	6,515	5,177	4,856	4,493	4,203	4,336	5,112	4,437	4,802
평택	2,286	3,063	2,580	2,128	2,664	2,897	2,782	3,088	2,986	3,281
안양	2,156	2,606	2,378	2,305	2,308	2,121	2,143	1,914	1,819	2,471
강릉	1,192	1,366	1,355	1,209	1,401	1,192	1,307	1,204	833	910
원주	1,562	1,780	1,561	1,499	1,530	1,432	1,207	1,607	1,370	1,328

기관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속초	474	630	396	497	505	560	625	476	780	557
영월	501	487	489	433	597	620	433	522	426	521
홍성	1,128	992	900	943	754	959	792	947	985	1,026
공주	429	547	505	478	387	466	531	433	371	445
논산	778	891	890	657	805	717	548	539	535	785
서산	1,205	1,079	988	926	1,082	1,443	1,449	1,408	1,603	1,710
천안	2,283	3,304	3,059	2,784	3,173	3,153	2,824	2,801	3,393	3,935
충주	1,048	1,182	1,130	915	886	962	744	883	1,081	1,236
제천	746	629	623	506	547	519	493	466	456	494
영동	240	251	218	243	283	294	308	304	242	178
대구서부	3,147	3,790	3,011	3,023	3,044	2,868	3,260	3,399	3,126	3,252
안동	948	1,296	958	1031	839	773	737	875	997	819
경주	685	789	724	621	587	786	837	734	735	882
포항	1,584	2,178	2,317	1,754	1,706	2,000	1,535	1,655	1,742	1,875
구미	1,533	1,974	1,978	1,913	2,199	2,550	1,903	1,798	1,691	1,997
상주	608	612	657	470	643	579	517	501	448	441
영덕	308	388	336	298	332	521	400	399	363	378
부산동부	2,918	4,196	3,708	3,436	3,359	3,269	3,073	3,535	3,423	3,311
부산서부	-	-	-	3,580	2,883	3,160	2,470	2,739	2,851	2,949
진주	1,170	1,478	1,659	1,595	1,562	2,309	1,964	1,837	1,981	1,639
통영	1,499	2,015	2,025	1,627	1,720	1,305	1,541	1,502	2,035	2,232
밀양	482	544	464	473	470	592	503	462	420	481
거창	361	503	448	440	472	509	361	327	375	481
목포	1,755	1,932	2,366	1,772	1,311	1,294	1,868	1,537	1,530	1,398
순천	2,431	2,955	3,319	2,848	2,831	3,014	2,645	2,173	2,505	2,869
해남	783	788	866	851	692	581	711	672	622	735
군산	1,482	1,778	1,469	1,612	2,016	1,864	1,642	1,604	1,979	1,978
정읍	608	782	851	839	893	772	776	753	715	658
남원	335	348	324	325	399	427	510	333	375	397

※ 부산서부지소 : '18. 4. 9, 남양주지소 : '22. 7. 25. 개청

| 표 5-70 | 소년·성인별 실시사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227,020	260,933	265,792	244,451	236,642
소년	계			39,291	38,546	36,338	38,856	42,129
	형법	소계		814	746	761	711	656
		선고유예		1	1	-	1	4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742	671	669	460	557
			단독명령	54	64	74	228	56
		가석방		17	10	18	22	39
	소년법	소계		36,281	36,027	33,639	36,395	40,016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5,003	14,508	13,855	15,193	15,686
			장기보호관찰	15,293	14,756	14,338	14,969	16,204
			단독명령	4,403	5,272	4,003	4,729	6,130
		임시퇴원		1,582	1,491	1,443	1,504	1,996
	치료감호법	소계		3	4	1	1	2
	성폭력처벌법	소계		114	126	142	137	125
		선고유예		1	-	1	1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81	76	79	81	74
			단독명령	32	50	62	55	51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48	62	99	86	74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31	35	63	16	53
			단독명령	17	27	36	70	21
	성매매처벌법	소계		4	2	2	-	-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4	2	2	-	-
			단독명령	-	-	-	-	-
		소계		3	6	3	1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3	6	3	1	-
			단독명령	-	-	-	-	-
	기소유예	소계		1,821	1,294	1,384	1,264	979
	성구매자교육	소계		3	3	3	2	5
	벌금미납	소계		26	22	23	31	23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172	252	279	219	231
		선고유예		-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21	148	-	117	121
			단독명령	50	100	153	102	108
		이수명령		1	4	126	1	2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1	1	-	-	1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	-	-	-	1
			단독명령	1	1	-	-	-
		소계		1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	-	-
			단독명령	1	-	-	-	-
		이수명령		-	-	-	-	-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	1	2	3	-
	마약류관리법	소계		-	-	-	3	14
	스토킹법	소계		-	-	-	2	3
성인	계			187,729	222,387	229,454	205,595	194,513
	형법	소계		126,227	152,800	150,134	125,305	113,734
		선고유예		23	38	24	16	19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2,042	65,154	60,049	43,275	47,963
			단독명령	54,007	76,082	76,028	68,448	50,694
		가석방		10,155	11,526	14,033	13,566	15,058
	치료감호법	소계		2,575	2,555	2,213	1,918	1,818
		가출소		90	64	56	51	37
		가종료		840	934	893	779	708
		치료명령		1,596	1,496	1,212	1,053	1,043
		치료감호기간만료		49	61	52	35	30
	성폭력처벌법	소계		16,763	20,126	22,648	11,926	20,245
		선고유예		4	2	1	1	7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3,547	3,761	4,007	3,869	3,951
			단독명령	5,489	7,974	9,187	8,056	7,301
		이수명령		7,723	8,389	9,453	9,527	8,986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11,151	10,091	11,366	11,258	10,309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7,083	5,859	6,835	2,771	6,228
			단독명령	4,068	4,232	4,531	8,487	4,081
		소계		-	11	70	130	399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11	70	101	279
			단독명령	-	-	-	29	120
		이수명령		-	8	110	300	437
	성매매처벌법	소계		271	241	212	196	171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133	138	82	26	86
			단독명령	138	103	130	170	85
		소계		1,084	1,032	841	557	395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703	597	497	276	216
		단독명령	381	435	344	281	179
기소유예	소계		9,330	10,932	13,918	11,901	9,529
성구매자 교육	소계		1,885	2,371	3,384	3,006	2,331
전자장치 부착법	소계		3,321	3,467	3,635	3,728	3,788
형사소송법 (보석)	소계		-	537	637	706	843
벌금미납	소계		10,535	11,069	7,768	8,186	7,445
청소년 성보호법	소계		1,728	3,037	3,706	3,427	4,055
	선고유예		-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17	704	869	998	1,262
		단독명령	812	1,830	2,439	2,429	2,415
	이수명령		299	503	398	346	378
아동학대 처벌법	소계		2,221	2,996	4,183	3,819	3,742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1,468	1,937	2,617	692	2,352
		단독명령	753	1,059	1,566	3,127	1,390
	소계		436	712	955	982	98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215	349	487	509	516
		단독명령	221	363	468	473	465
	이수명령		202	296	429	574	701
산업안전 보건법	소계		-	1	27	63	74
마약류관리법	소계		-	105	2,036	4,178	6,591
스토킹 처벌법	소계		-	-	1,182	3,557	6,917
동물보호법	소계		-	-	-	5	8

| 표 5-71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227,020	260,933	265,792	244,451	236,642
보호관찰	계		95,861	93,654	94,375	93,366	96,668
	형법	소계	53,472	53,340	52,415	48,743	48,743
		선고유예	24	39	24	17	23
		집행유예	43,276	41,765	38,340	35,138	33,623
		가석방	10,172	11,536	14,051	13,588	15,097
	소년법	소계	24,098	22,505	22,114	23,361	25,174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0,658	9,960	9,718	10,479	10,735
		보호처분 장기보호관찰	11,858	11,054	10,953	11,378	12,443
		임시퇴원	1,582	1,491	1,443	1,504	1,996
	치료감호법	소계	2,492	2,490	2,173	1,890	1,794
		가출소	90	64	56	51	37
		가종료	840	934	893	779	708
		치료명령	1,513	1,431	1,172	1,025	1,019
		치료감호기간만료	49	61	52	35	30
	성폭력처벌법	소계	2,311	2,254	2,263	2,342	2,474
		선고유예	5	2	2	2	7
		집행유예	2,306	2,252	2,261	2,340	2,467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5,673	4,663	5,594	5,919	5,198
		보호처분	5,673	4,652	5,524	5,789	5,007
		집행유예	-	11	70	130	191
	성매매처벌법	소계	634	524	403	278	235
		보호처분	102	105	64	37	55
		집행유예	532	419	339	241	180
	기소유예	소계	2,023	1,502	1,357	1,400	1,428
	전자장치부착법	소계	3,321	3,467	3,635	3,728	3,788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	538	639	709	843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481	498	571	663	809
		선고유예	-	-	-	-	-
		집행유예	481	498	571	663	809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1,356	1,835	2,497	2,389	2,351
		보호처분	1,212	1,623	2,221	2,064	2,014
		집행유예	144	212	276	325	337
	마약류관리법	소계	-	38	597	1,408	2,614
	스토킹	소계	-	-	117	535	1,214
	동물보호법	소계	-	-	-	1	3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회봉사명령	계		51,448	65,693	62,115	53,702	48,804
	형법	소계	42,031	54,778	51,798	43,272	37,858
		보호관찰부	11,517	14,079	13,158	10,820	9,003
		단독명령	30,514	40,699	38,640	32,452	28,855
	소년법	소계	5,655	6,301	5,137	5,441	6,109
		단기보호관찰	1,817	1,914	1,565	1,684	1,872
		장기보호관찰	1,924	2,117	1,898	1,947	2,042
		단독명령	1,914	2,270	1,674	1,810	2,195
	치료감호법		86	69	41	29	26
	성폭력처벌법	소계	1,761	2,442	2,795	2,404	2,088
		보호관찰부	411	468	541	527	422
		단독명령	1,350	1,974	2,254	1,877	1,666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612	626	571	620	596
		보호관찰부	245	222	177	185	197
		단독명령	367	404	394	435	399
	성매매처벌법	소계	424	492	414	302	181
		보호관찰부	138	164	149	84	38
		단독명령	286	328	265	218	143
	기소유예		448	225	141	64	64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290	532	732	759	778
		보호관찰부	77	98	126	141	158
		단독명령	213	434	606	618	620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141	217	254	263	216
		보호관찰부	36	59	60	70	52
		단독명령	105	158	194	193	164
	마약류관리법	소계	-	11	213	402	609
	스토킹	소계	-	-	19	143	276
	동물보호법	소계	-	-	-	3	3
수강명령	계		50,357	68,422	72,805	61,040	57,127
	형법	소계	31,538	45,428	46,685	34,001	27,789
		보호관찰부	7,991	9,981	9,223	7,087	5,894
		단독명령	23,547	35,447	37,462	26,914	21,895
	소년법	소계	6,528	7,221	6,388	7,593	8,733
		단기보호관찰	2,528	2,634	2,572	3,030	3,079
		장기보호관찰	1,511	1,585	1,487	1,644	1,719
		단독명령	2,489	3,002	2,329	2,919	3,935
	성폭력처벌법	소계	5,082	7,167	8,278	7,317	6,822
		보호관찰부	911	1,117	1,284	1,171	1,136
		단독명령	4,171	6,050	6,994	6,146	5,686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가정폭력처벌법	소 계	4,914	4,875	5,370	4,934	4,988
		보호관찰부	1,196	1,020	1,197	1,088	1,165
		단독명령	3,718	3,855	4,173	3,846	3,823
	성매매처벌법	소 계	304	265	241	174	150
		보호관찰부	71	55	32	23	29
		단독명령	233	210	209	151	121
	기소유예		-	-	-	-	-
	청소년성보호법	소 계	829	1,752	2,284	2,224	2,319
		보호관찰부	180	256	325	332	416
		단독명령	649	1,496	1,959	1,892	1,903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1,162	1,657	2,387	2,149	2,157
		보호관찰부	291	392	547	421	466
		단독명령	871	1,265	1,840	1,728	1,691
	산업안전보건법	소 계	-	1	23	47	66
	마약류관리법	소 계	-	56	992	1,852	2,769
	스토킹	소 계	-	-	157	748	1,332
	동물보호법	소 계	-	-	-	1	2
성구매자교육			1,888	2,374	3,384	3,008	2,336
벌금미납사회봉사			10,561	11,091	7,791	8,217	7,468
이수명령			8,225	9,200	11,518	13,417	15,223
기소유예			8,680	10,499	13,804	11,701	9,016

| 표 5-72 |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총 계	임시해제	부정기형종료	가출소 집행면제	가종료 집행종료	가정보호 처분종료
2020	492	454	-	-	3	35
2021	527	497	-	-	3	27
2022	603	515	-	-	4	84
2023	447	420	-	-	-	27
2024	859	846	-	1	3	9

| 표 5-73 |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구인	긴급 구인	유치	제재조치							
				경고	집행 유예 취소	보호 처분 변경	임시 퇴원 취소	가석방 취 소	기간 연장	보호 관찰 정지	가정 보호 등 취소
2020	961	9	824	26,412	506	965	85	16	25	56	184
2021	807	7	705	27,472	541	909	77	20	34	36	123
2022	752	8	668	28,427	510	885	64	64	260	39	147
2023	901	10	852	30,590	560	1,217	84	44	116	26	169
2024	1,134	7	1,087	29,259	573	1,395	155	78	81	37	178

| 표 5-74 | 구인·유치대상자의 단계별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긴급구인	구인장 신청				구인장 집행	구인장 반환	구인후 석방	유치허가신청			유치	취소·변경신청				
		검찰		법원					검찰	법원			검찰	법원		심사위원회	
		기각	청구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인용
2020	9	37	1,526	12	1,514	961	564	113	8	17	804	824	4	129	579	-	88
2021	7	90	1,296	12	1,284	805	572	79	14	9	708	705	3	129	465	-	80
2022	8	53	1,246	8	1,238	737	494	65	12	7	658	656	4	126	401	1	80
2023	10	82	1,359	21	1,338	901	453	43	20	7	852	852	3	148	551	3	91
2024	7	76	1,602	21	1,581	1,132	432	27	10	10	1.088	1,087	3	144	686	1	169

| 표 5-75 |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20	51,448	21,609	17,821	629	2,484	675
2021	65,693	36,995	31,831	830	3,283	1,051
2022	62,115	44,152	38,720	918	3,358	1,156
2023	53,702	42,258	38,303	760	2,330	865
2024	48,804	39,879	36,681	707	1,882	609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 표 5-76 |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20	51,448	41,946	42,031	34,175	5,655	4,746	86	60	1,761	1,420	612	521
2021	65,693	35,954	54,778	29,349	6,301	3,774	69	16	2,442	1,406	626	453
2022	62,115	33,513	51,798	26,924	5,137	3,496	41	14	2,795	1,498	571	419
2023	53,702	35,843	43,272	28,264	5,441	4,219	29	15	2,404	1,487	620	508
2024	48,804	37,335	37,858	28,795	6,109	4,795	26	17	2,088	1,558	596	517

구분 / 연도	성매매처벌법		기소유예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20	424	341	448	339	290	226	141	118	-	-	-	-	-	-
2021	492	245	225	187	532	360	217	153	11	11	-	-	-	-
2022	414	199	141	106	732	435	254	198	213	205	19	19	-	-
2023	302	184	64	49	759	501	263	203	402	281	143	129	3	3
2024	181	143	64	56	778	591	216	178	609	453	276	229	3	3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 표 5-77 | 사회봉사명령 부과 형태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2020	51,448	16,324	35,124	6,292	4,004	2,288	45,156	12,320	32,836
2021	65,693	19,210	46,483	6,763	4,220	2,543	58,930	14,990	43,940
2022	62,115	17,730	44,385	5,570	3,675	1,895	56,545	14,055	42,490
2023	53,702	15,497	38,205	5,754	3,820	1,934	47,948	11,677	36,271
2024	48,804	14,714	34,090	6,413	4,077	2,336	42,391	10,637	31,754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 표 5-78 | 사회봉사명령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분야별 성격)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20	18,450	6,501	11,949	7	10,057	991	678	216
2021	32,661	10,690	21,971	135	10,031	2,906	7,444	1,455
2022	39,638	10,453	29,185	19	14,095	3,566	9,996	1,509
2023	39,060	7,606	31,454	4	18,260	1,256	11,917	17
2024	37,386	4,850	32,536	8	21,095	1,141	10,248	44

| 표 5-79 | 수강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 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20	50,357	22,359	19,045	328	2,012	974
2021	68,422	37,351	33,012	326	2,578	1,435
2022	72,805	51,927	46,649	318	3,231	1,729
2023	61,040	45,394	41,340	431	2,158	1,465
2024	57,127	42,145	38,381	472	2,003	1,289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 표 5-80 |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20	50,357	41,672	31,538	26,643	6,528	5,305	5,082	3,978	4,914	3,922
2021	68,422	40,453	45,428	25,836	7,221	4,412	7,167	4,311	4,875	3,152
2022	72,805	41,857	46,685	24,570	6,388	4,334	8,278	4,699	5,370	3,871
2023	61,040	40,305	34,001	21,234	7,593	5,665	7,317	4,805	4,934	3,493
2024	57,127	41,537	27,789	20,251	8,733	6,048	6,822	4,798	4,988	3,851

구분 / 연도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마약류관리법		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20	304	237	829	621	1,162	966	-	-	-	-	-	-	-	-
2021	265	125	1,752	1,283	1,657	1,277	1	1	56	56	-	-	-	-
2022	241	128	2,284	1,374	2,387	1,761	23	22	992	941	157	157	-	-
2023	174	90	2,224	1,483	2,149	1,552	47	37	1,852	1,276	748	669	1	1
2024	150	111	2,319	1,737	2,157	1,670	66	43	2,769	1,956	1.332	1,071	2	1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 표 5-81 | 수강명령 부과 형태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2020	50,357	14,679	35,678	6,724	4,143	2,581	43,633	10,536	33,097
2021	68,422	17,097	51,325	7,488	4,333	3,155	60,934	12,764	48,170
2022	72,805	16,667	56,138	6,705	4,185	2,520	66,100	12,482	53,618
2023	61,040	14,796	46,244	7,840	4,774	3,066	53,200	10,022	43,178
2024	57,127	18,073	39,054	8,980	4.905	4,075	48,147	13,168	34,979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 표 5-82 | 수강명령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력 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20	19,373	18,811	562	1	3	56	109	57	336
2021	33,338	31,483	1,855	4	1,035	50	125	201	440
2022	46,967	41,232	5,735	17	4,258	20	175	790	475
2023	41,771	41,115	656	13	13	1	154	207	268
2024	38,853	37,952	901	85	45	11	131	404	225

| 표 5-83 |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환경조사	소 계	1,561	1,555	1,920	1,496	1,442	1,365	1,185	1,117	1,511	1,858
	소년원	1,432	1,419	1,693	1,373	1,343	1,297	1,084	1,032	1,397	1,764
	교도소	59	60	167	104	93	62	100	84	113	94
	법무병원	70	76	60	19	6	6	1	1	1	-
환경개선		-	-	-	1	6	1	4	9	3	8

| 표 5-84 | 조사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판결전조사	2,166	1,901	2,003	2,053	1,797	1,596	1,442	1,075	1,209	1,147
결정전조사	17,678	16,931	16,606	19,662	19,007	17,813	18,096	18,574	18,039	16,608
검사결정전조사	3,805	4,379	3,626	1,678	1,092	909	932	527	1,194	682
청구전조사	2,352	2,619	1,783	1,600	1,468	1,456	1,311	1,472	1,513	1,162
소급청구전조사	119	79	86	39	52	37	33	18	12	20
사실조회	-	-	-	-	-	-	176	198	221	226

| 표 5-85 |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계				소 년				성 인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2020	1,968	1,369	959	410	860	666	550	116	1,108	703	409	294
2021	1,743	1,273	829	444	707	539	442	97	1,036	734	387	347
2022	1,606	1,155	748	407	618	485	398	87	988	670	350	320
2023	2,646	1,892	1,315	577	1,671	1,264	914	350	975	628	401	227
2024	1,800	1,402	1,043	359	833	740	651	89	967	662	392	270

※ 수배해제 사유 중 기타는 기간만료, 사망 등의 사유가 포함됨

| 표 5-86 | 보호관찰 사안조사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 수	6,252	7,895	8,821	9,434	11,571	11,973	13,077	13,872	14,182	15,011

| 표 5-87 | 보호관찰 불요결정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접 수	5,716	7,221	8,248	8,575	8,268	8,271	9,395	10,292	9,515	10,977
필 요	3,816	5,127	6,205	6,394	7,962	7,169	8,783	9,762	9,056	10,457
불 요	1,900	2,094	2,043	2,181	593	743	609	530	456	520
허 가	1,900	2,094	2,043	2,181	593	743	609	530	456	520

3. 갱생 보호

| 표 5-88 | 갱생보호 실적

(단위 : 명)

구분	총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68,132	1,581	4,667	8,148	5	684	10,433	28,854	36,059	7,505	18,878	51,318

| 표 5-89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59,184	1,150	4,547	8,044	2	682	10,229	28,383	33,143	4,780	18,047	50,177

| 표 5-90 |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8,948	431	120	104	3	2	204	471	2,916	2,725	831	1,141

4.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가. 보호소년 수용

| 표 5-91 | 입·출원 인원

(단위 : 명)

입·출원	성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입원	계	남	2,884	2,763	2,974	2,770	2,392	2,036	1,777	1,766	2,190	2,567
		여	504	476	510	539	565	504	451	449	556	813
	전년도 이월	남	945	928	858	924	695	693	707	533	519	705
		여	155	215	176	186	185	210	160	161	135	245
	송치	남	1,858	1,754	2,022	1,729	1,607	1,279	1,017	1,191	1,614	1,755
		여	321	241	308	333	349	272	264	263	391	509
	임시퇴원 취소	남	81	81	94	117	90	64	53	42	57	107
		여	28	20	26	20	31	22	27	25	30	59
	이탈학생 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1,961	1,900	2,029	2,064	1,700	1,330	1,244	1,272	1,516	1,831
		여	281	316	320	352	358	345	280	316	356	542
	퇴원	남	1,119	1,045	1,135	1,049	877	555	462	540	698	771
		여	164	147	194	210	183	134	99	110	144	195
	임시퇴원	남	786	788	832	946	747	687	692	632	713	946
		여	103	158	114	123	137	170	143	178	178	311
	처분변경 처분취소	남	43	41	36	50	58	56	64	47	72	90
		여	13	10	8	18	35	37	37	28	27	34
	사망	남	-	-	-	-	-	1	-	-	-	-
		여	-	-	-	-	-	-	-	-	-	-
	이탈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기타	남	13	26	26	19	18	31	26	53	33	24
		여	1	1	4	1	3	4	1	0	7	2

※ 1. 송치 :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인원)
2. 이탈 : 이탈 후 당해연도에 재수용 되지 않은 인원
3. 기타 : 유죄판결 등
4. 입원인원 중 "송치+임시퇴원 취소=신수용인원"

| 표 5-92 |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기관	성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남	921	932	981	869	738	737	627	552	635	766
	여	192	199	185	209	208	190	155	148	171	250
서 울	남	236	234	246	204	172	206	170	135	99	140
	여	-	-	-	-	-	-	-	-	-	-
부 산	남	118	138	124	111	86	86	14	9	74	108
	여	1	1	1	-	-	-	-	-	-	-
대 구	남	130	141	137	114	94	86	89	87	91	109
	여	-	-	-	-	-	-	-	-	-	-
광 주	남	94	104	134	107	95	104	99	82	97	113
	여	-	-	-	-	-	-	-	-	-	-
전 주	남	108	92	81	91	102	103	97	97	117	129
	여	-	-	-	-	-	-	-	-	-	-
대 전	남	111	92	109	106	64	48	47	43	46	47
	여	5	6	12	15	20	21	19	18	17	17
청 주	남	-	-	-	-	-	-	-	-	-	-
	여	45	45	45	85	85	66	58	59	71	97
안 양	남	-	-	-	-	-	-	-	-	-	-
	여	141	147	127	109	103	103	78	71	83	136
춘 천	남	93	89	107	103	92	79	86	74	87	96
	여	-	-	-	-	-	-	-	-	-	-
제 주	남	31	42	43	33	33	25	25	25	24	24
	여	-	-	-	-	-	-	-	-	-	-

| 표 5-93 | 기관별 신수용 인원

(단위 : 명)

기관	성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남	1,939	1,835	2,116	1,846	1,697	1,343	1,070	1,232	1,671	1,862
	여	349	261	334	353	380	294	291	288	421	568
서 울	남	474	442	524	482	474	453	297	281	436	608
	여	-	-	-	-	-	-	-	-	-	-
부 산	남	281	213	265	208	198	158	79	95	191	211
	여	44	54	48	38	43	51	39	41	60	74
대 구	남	143	176	162	78	73	75	142	137	91	107
	여	25	16	13	5	6	1	-	1	1	4
광 주	남	122	90	137	139	147	131	114	137	167	137
	여	36	9	28	20	39	29	22	29	37	50
전 주	남	5	-	5	3	385	350	284	401	571	585
	여	-	-	-	-	-	-	-	-	-	-
대 전	남	828	849	943	876	362	152	118	104	151	161
	여	3	15	21	8	30	11	26	13	9	38
청 주	남	-	-	-	-	-	-	-	-	-	-
	여	110	71	102	31	105	82	77	103	132	151
안 양	남	-	-	-	-	-	-	-	-	-	-
	여	122	87	114	233	150	116	123	85	174	249
춘 천	남	66	38	39	30	41	4	12	44	34	35
	여	1	3	1	9	3	-	1	10	3	-
제 주	남	20	27	41	30	17	20	24	33	30	18
	여	8	6	7	9	4	4	3	6	5	2

| 표 5-94 | 수용기간별 인원

(단위 : 명)

기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171	2,138	2,275	2,328	1,943	1,546	1,396	1,494	1,733	2,224
1월 미만	883	773	902	830	710	405	332	498	660	695
3월 미만	62	62	47	64	47	29	30	26	32	87
6월 미만	670	676	777	773	499	465	424	515	617	913
6월 이상	91	126	115	131	240	203	163	128	130	167
7월 이상	15	13	8	12	5	4	2	6	4	1
8월 이상	28	13	20	8	11	7	7	5	0	4
9월 이상	16	14	16	25	18	11	10	2	5	5
10월 이상	16	11	12	18	9	10	9	7	3	11
11월 이상	15	12	8	20	17	18	17	12	15	44
12월 이상	30	47	19	49	64	70	48	54	68	118
13월 이상	43	71	46	85	94	81	60	46	40	64
14월 이상	86	83	90	99	78	75	108	70	48	43
15월 이상	84	75	71	87	51	73	60	48	38	28
16월 이상	58	73	59	53	32	33	56	32	21	19
17월 이상	30	37	49	37	21	18	32	13	26	12
18월 이상	26	21	23	24	15	12	11	6	11	9
19월 이상	11	11	10	7	13	7	9	14	8	3
20월 이상	7	20	3	6	19	25	18	12	7	1
평균수용기간(월)	5.9	6.56	5.8	6.36	5.63	6.73	7.2	5.7	4.96	4.93

※ 대상 : 퇴원 및 임시퇴원

나. 보호소년 분류처우

| 표 5-95 | 처우과정 분류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288	2,096	2,450	2,199	2,077	1,637	1,361	1,520	2,092	2,430
7호	소계	109	83	132	141	116	139	123	114	120	114
	기타	109	83	132	141	116	139	123	114	120	114
8호	소계	802	762	880	801	707	405	326	464	648	691
	기타	802	762	880	801	707	405	326	464	648	691
9호	소계	766	713	857	741	716	622	584	619	902	1,125
	교과	168	161	95	87	97	127	123	113	189	334
	직업	102	72	243	219	236	180	106	99	36	25
	특성화	178	136	132	74	78	64	133	135	126	129
	기타	318	344	387	361	305	251	222	272	551	637
10호	소계	611	538	581	516	538	471	328	323	422	500
	교과	53	31	45	34	64	69	56	62	88	135
	직업	408	332	374	314	349	288	147	150	139	110
	특성화	13	12	8	1	-	-	-	-	-	-
	기타	137	163	154	167	125	114	125	111	195	255

※ 대상 : 신수용인원

다. 보호소년 교육

| 표 5-96 | 교과교육 수료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35	154	187	208	253	300	329	367	417	719
초등학교	-	-	-	-	-	-	-	1	1	5
중 학 교	32	25	26	18	95	90	79	91	128	292
고등학교	103	129	161	190	158	210	250	276	288	422

| 표 5-97 | 검정고시 합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600	676	617	447	420	409	303	253	285	310
초졸	1	-	-	-	-	-	-	2	2	-
중졸	190	152	141	76	65	45	39	22	38	45
고졸	409	524	476	371	355	364	264	231	245	265

| 표 5-98 | 직업훈련 수료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직 업 훈 련	500	640	552	633	532	458	354	245	232	268

| 표 5-99 | 기능자격 취득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106	3,681	4,710	4,762	4,188	3,025	2,741	2,937	3,352	3,842
일 반 기 능	992	1,238	1,524	1,634	1,478	838	723	830	852	1,108
컴퓨터관련	1,288	1,415	1,524	1,341	1,181	793	608	821	1,218	1,361
외국어관련	-	-	-	-	-	-	-	-	-	-
기 타	826	1,028	1,662	1,787	1,529	1,394	1,410	1,286	1,282	1,373

| 표 5-100 |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소 계	PC등 수리	복지시설 방문	농촌 일손돕기	지역행사 지원 등	소 계	지역 주민	장애인
계	6,098	-	1,666	108	4,324	2	-	2
2015	1,035	-	356	56	623	-	-	-
2016	1,399	-	345	9	1,045	-	-	-
2017	1,050	-	294	18	738	-	-	-
2018	1,011	-	348	6	657	-	-	-

구분 / 연도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소 계	PC등 수리	복지시설 방문	농촌 일손돕기	지역행사 지원 등	소 계	지역 주민	장애인
2019	1,011	-	242	5	764	-	-	-
2020	158	-	10	-	148	-	-	-
2021	-	-	-	-	-	-	-	-
2022	32	-	-	14	18	-	-	-
2023	176	-	18	-	158	-	-	-
2024	226	-	53	-	173	-	-	-

| 표 5-101 | 취업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취 업 인 원	234	423	417	352	303	187	208	134	69	76

| 표 5-102 |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54	159	167	165	104	130	148	121	114	151
대 학 교	91	93	88	86	55	64	71	68	66	41
고등학교	63	66	79	79	49	66	77	53	48	110

라. 위탁소년 수용·분류심사

| 표 5-103 | 입·출원 인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입원	계	남	5,508	4,778	4,931	4,745	4,055	3,534	3,028	3,315	3,651	3,807
		여	1,104	1,051	1,372	1,398	1,305	1,122	1,069	1,097	1,356	1,558
	이월인원	남	364	348	333	338	307	276	176	173	264	299
		여	68	73	61	102	98	83	45	70	78	91
	신수용인원	남	5,144	4,430	4,598	4,407	3,748	3,258	2,852	3,142	3,387	3,508
		여	1,036	978	1,311	1,296	1,207	1,039	1,024	1,027	1,278	1,467
	이탈자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5,159	4,446	4,593	4,439	3,778	3,358	2,855	3,051	3,352	3,582
		여	1,030	992	1,270	1,300	1,223	1,077	999	1,019	1,265	1,502
	보호자위탁	남	29	16	14	19	11	9	3	8	21	10
		여	8	-	6	10	5	10	3	8	17	10
	보호시설위탁	남	474	430	456	438	454	481	467	417	463	483
		여	163	201	241	281	249	262	259	247	259	275
	소년원송치	남	1,709	1,507	1,689	1,455	1,227	1,128	806	869	1,101	1,244
		여	319	243	288	305	285	229	232	196	316	432
	보호관찰부보호자위탁	남	2,472	2,121	2,138	2,139	1,789	1,408	1,303	1,530	1,586	1,599
		여	418	461	630	591	589	462	417	484	572	648
	위탁변경	남	112	92	72	65	38	101	156	102	55	73
		여	21	18	17	14	12	43	53	36	40	58
	심리불개시	남	-	-	-	-	-	2	1	-	-	-
		여	-	-	-	-	-	1	-	-	-	-
	불처분	남	9	8	5	8	11	3	12	11	6	6
		여	2	2	1	-	2	2	1	2	1	2
	이탈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기타	남	354	272	219	315	248	226	107	114	120	167
		여	99	67	87	99	81	68	34	54	60	77
연말현재인원		남	348	333	338	307	276	176	173	264	299	304
		여	73	61	101	98	83	45	70	78	91	140

| 표 5-104 |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기관	성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남	364	327	348	334	300	254	209	248	282	305
	여	72	71	95	97	96	79	75	81	104	125
부 산	남	78	70	70	66	63	45	44	57	61	51
	여	16	17	18	16	19	17	17	20	24	23
대 구	남	28	32	30	25	25	16	15	18	21	23
	여	5	6	6	6	6	5	6	6	9	12
광 주	남	37	35	43	36	27	25	20	19	29	25
	여	8	6	10	9	6	4	5	5	9	10
전 주	남	-	-	-	-	-	-	-	-	-	-
	여	-	-	-	-	-	-	-	-	-	-
대 전	남	26	35	28	33	28	28	18	24	27	26
	여	5	7	11	11	9	7	6	8	8	12
춘 천	남	9	9	15	11	12	8	8	8	7	7
	여	1	1	2	2	4	3	3	3	2	4
제 주	남	3	2	2	3	4	3	4	3	4	4
	여	1	1	1	-	1	1	1	-	1	1
서울심	남	183	144	160	160	141	129	100	119	133	169
	여	36	34	47	53	51	42	37	39	51	63

| 표 5-105 | 기관별 위탁 인원

(단위 : 명)

기관 \ 연도 / 성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남	5,142	4,430	4,598	4,407	3,748	3,258	2,852	3,142	3,387	3,587
	여	1,036	979	1,311	1,296	1,207	1,039	1,024	1,027	1,278	1,551
부 산	남	1,055	893	901	771	670	567	562	624	664	601
	여	213	211	249	186	205	218	216	228	275	267
대 구	남	368	395	344	297	278	198	195	235	258	268
	여	68	73	75	71	66	59	72	81	108	139
광 주	남	463	413	513	452	348	322	237	244	372	311
	여	110	73	110	120	73	55	60	53	120	134
전 주	남	-	-	-	-	-	-	-	-	-	-
	여	-	-	-	-	-	-	-	-	-	-
대 전	남	387	450	363	422	356	328	232	314	324	305
	여	81	102	150	140	107	93	80	102	96	146
춘 천	남	139	144	215	182	169	88	94	92	78	92
	여	18	19	34	31	51	37	40	32	24	50
제 주	남	44	27	26	36	40	48	49	37	47	49
	여	16	8	11	7	16	12	10	7	15	12
서울심	남	2,686	2,108	2,236	2,247	1,887	1,707	1,483	1,596	1,644	1,961
	여	530	493	682	741	689	565	546	524	640	803

| 표 5-106 | 위탁기간별 인원

(단위 : 명)

기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출원 인원	6,187	5,438	5,863	5,739	5,000	4,435	3,854	4,070	4,617	5,083
10일 미만	166	106	124	144	70	67	151	155	95	146
10 ~ 20일	950	679	562	616	371	393	444	306	318	444
21 ~ 30일	3,850	3,326	3,851	3,573	3,134	2,862	2,413	2,347	2,508	2,438
31 ~ 40일	1,014	1,018	1,032	1,001	907	812	622	810	1,116	1,309
41 ~ 50일	160	250	238	291	400	242	199	370	488	627
51 일 이상	47	58	56	114	118	59	25	82	92	119

※ ( )는 위탁변경,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 인원

| 표 5-107 | 비행원인진단 실시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분 류 심 사	5,804	5,116	5,614	5,385	4,755	4,266	3,620	3,661	4,210	4,744
상 담 조 사	4,119	3,993	4,179	3,224	2,421	2,589	2,968	3,512	3,761	3,208
검사결정전조사	-	25	-	-	-	-	-	-	-	-

| 표 5-108 |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

(단위 : 명)

판정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6,189	5,438	5,863	5,739	5,000	4,435	3,854	4,070	4,617	5,084
1호	37	16	20	29	16	19	6	16	38	20
2호	42	46	47	80	73	42	52	28	27	29
3호	55	33	29	88	56	41	36	20	30	28
4호	1,464	1,118	1,169	1,323	1,049	786	704	815	838	796
5호	1,426	1,464	1,599	1,407	1,285	1,134	1,013	1,143	1,263	1,394
6호	637	631	697	719	703	743	726	664	722	758
7호	74	63	99	116	95	98	93	94	92	95
8호(1개월)	672	525	593	531	372	321	231	291	328	374
9호(단기)	714	670	774	658	607	526	453	482	672	828
10호(장기)	568	492	511	455	479	412	261	255	325	379
기타	500	380	325	333	265	313	279	262	282	383

※ 소년법 개정(2007. 12. 21. 2008. 6. 22. 시행)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호처분 : 수강명령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기 타 : 불처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 표 5-109 |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구분 / 연도	민·가사 법률구조(건)			형사구조(건)	법률상담(건)
	계	소송전구조	소송구조		
2015	148,161	112	148,049	21,759	1,486,795
2016	150,088	64	150,024	21,468	1,481,186
2017	149,446	104	149,342	17,791	1,373,195
2018	154,585	187	154,398	16,770	1,320,476
2019	168,039	169	167,870	15,480	1,399,103
2020	138,998	217	138,781	11,046	1,277,453
2021	131,602	208	131,394	11,253	1,184,692
2022	101,887	92	101,795	13,095	1,107,880
2023	107,696	65	107,631	14,133	1,015,122
2024	117,182	65	117,117	16,031	958,659

| 표 5-110 | 범죄피해자 지원활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실적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상담	경제·의료 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15	89,699	66,876	11,773	512	10,538
2016	109,484	80,763	12,247	407	16,067
2017	159,728	121,223	14,655	503	23,347
2018	184,412	139,294	15,817	538	28,763
2019	192,266	156,939	17,313	485	17,529
2020	199,406	141,123	18,416	526	39,341
2021	195,747	144,416	18,476	604	32,251
2022	215,902	156,309	16,403	435	42,755
2023	205,062	146,364	16,050	418	42,230
2024	201,894	147,966	16,252	531	37,145

| 표 5-111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단위 : 천 원, 명)

구분 \ 예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9,773,000	9,712,000	9,870,000	9,870,000	9,870,000	10,578,000	11,520,000	10,423,000	9,870,000	9,870,000
보상인원	382	279	264	248	305	206	191	189	148	155
지급금액	9,770,720	9,257,269	9,289,429	10,175,047	11,516,297	9,567,057	9,792,147	9,502,935	8,989,710	7,910,382

| 표 5-112 |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연도 \ 구분	합 계	수 사	교 정	출입국	범죄예방	기타
2015	1,809	26	1,545	30	125	83
2016	2,620	62	2,252	26	124	156
2017	2,782	73	2,355	26	129	199
2018	2,935	50	2,520	30	150	185
2019	3,435	78	2,942	49	111	255
2020	3,967	107	3,370	89	110	291
2021	4,062	26	3,748	101	80	107
2022	4,002	53	3,525	69	120	235
2023	4,395	39	3,934	62	129	231
2024	4,520	29	4,133	79	185	94

| 표 5-113 |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구수포함)

연도 \ 구분	합 계	각 하	이 첩	기 각	인용·구제 (인용·구제율)
2015	1,820	958	543	234	85(4.7%)
2016	2,543	1,300	847	311	85(3.3%)
2017	2,641	1,380	900	281	80(3.0%)
2018	2,872	1,628	898	275	71(2,5%)
2019	3,321	1,670	1,229	360	62(1.9%)
2020	4,005	1,968	1,501	447	89(2.2%)
2021	4,030	1,973	1,557	416	84(2.1%)
2022	3,783	1,916	1,461	320	86(2.3%)
2023	3,953	2,327	1,271	264	91(2.1%)
2024	4,223	2,080	1,642	405	96(2.3%)

제5절 국제법무업무 통계

1. 국제법무활동

| 표 5-114 | 통상관계 법률자문 및 조약 등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횟 수	28	14	9	14	16	13	31	30	28	32

| 표 5-115 | 법률관련 인사 국제 교류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횟 수	7	12	7	9	4	1	2	-	8	18

| 표 5-116 |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단위 : 건, 명)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횟 수	27	29	11	18	27	53	37	39	28	44
인 원	82	55	42	20	38	47	117	104	44	72

제6절 교정업무 통계

1. 수용자 수용 현황

가. 수용현황

| 표 5-117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용정원			46,600	46,600	47,820	47,820	47,990	48,600	48,980	48,990	49,922	50,250
1일평균수용인원			53,892	56,495	57,298	54,744	54,624	53,873	52,368	51,117	56,577	61,366
수용내용	기결구금자	소 계	34,625	35,618	37,006	35,877	35,281	34,789	34,259	33,381	36,620	40,035
		수형자	32,649	33,791	35,382	34,377	33,813	33,392	33,548	32,610	35,007	38,473
		노역수	1,976	1,827	1,624	1,500	1,468	1,397	711	771	1,613	1,562
	미결구금자	소 계	19,267	20,877	20,292	18,867	19,343	19,084	18,109	17,736	19,957	21,331
		피의자	847	864	753	640	632	558	496	526	627	658
		피고인	18,420	20,013	19,539	18,227	18,711	18,526	17,613	17,210	19,330	20,673

| 표 5-118 | 인구대비 수용인원

(단위 : 명)

연도 \ 구분	인 구	1일 평균 수용인원	인구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인원
2015	51,529,338	53,892	0.105	15,887	3.4
2016	51,696,216	56,495	0.109	15,892	3.6
2017	51,779,148	57,298	0.111	15,871	3.6
2018	51,824,477	54,744	0.106	15,999	3.4
2019	51,849,861	54,624	0.105	16,101	3.4
2020	51,829,023	53,873	0.103	16,482	3.3
2021	51,638,809	52,368	0.101	16,652	3.1
2022	51,439,038	51,117	0.099	16,668	3.1
2023	51,325,329	56,577	0.110	16,776	3.4
2024	51,217,221	61,366	0.120	16,579	3.7

| 표 5-119 | 수용자 성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54,667	57,675	55,198	54,169	54,099	53,956	52,130	52,940	59,088	62,981
수형자	소 계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40,954
	남	33,122	34,281	33,905	32,932	32,384	32,404	31,651	31,870	35,054	37,536
	여	1,976	2,198	2,262	2,339	2,313	2,345	2,436	2,605	2,991	3,418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5.6	6.0	6.3	6.6	6.7	6.7	7.1	7.6	7.9	8.3
미결수용자	소 계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19,207	18,043	18,465	21,043	22,027
	남	18,026	19,488	17,520	17,340	17,863	17,580	16,436	16,798	19,088	19,959
	여	1,543	1,708	1,511	1,558	1,539	1,627	1,607	1,667	1,955	2,068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7.9	8.1	7.9	8.2	7.9	8.5	8.9	9.0	9.3	10.4

| 표 5-120 | 수형자 연령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40,954
16세 미만	-	2	4	1	4	1	3	1	6	6
18세 미만	47	46	45	35	41	45	63	56	56	74
20세 미만	262	290	244	248	231	233	224	200	264	252
25세 미만	2,609	2,642	2,484	2,335	2,255	2,378	2,441	2,504	2,678	2,631
25세 이상	2,244	2,450	2,562	2,779	2,860	3,058	3,264	3,479	4,078	4,506
30세 이상	7,678	7,678	7,543	7,059	6,834	6,488	6,166	6,245	7,057	8,031
40세 이상	10,310	10,275	9,712	9,307	8,637	8,427	7,962	7,807	8,400	8,956
50세 이상	8,624	9,255	9,330	9,067	9,033	8,941	8,673	8,413	9,002	9,350
60세 이상	3,324	3,841	4,243	4,440	4,802	5,178	5,291	5,770	6,504	7,148

| 표 5-121 | 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884	1,997	2,096	2,079	2,315	2,451	2,377	2,644	3,035	3,427
소계	기 결	1,123	1,232	1,320	1,338	1,416	1,445	1,386	1,657	1,871	2,039
	미 결	761	765	776	741	899	1,006	991	987	1,164	1,388
중국	기 결	800	852	903	805	730	700	628	747	835	883
	미 결	500	477	431	343	426	432	464	421	533	621
일본	기 결	6	8	8	7	7	6	6	5	4	5
	미 결	1	1	4	4	2	1	-	1	-	5
미국	기 결	35	37	35	37	40	34	28	31	33	34
	미 결	29	28	26	28	17	15	16	20	17	20
기타	기 결	282	335	374	489	639	705	724	874	999	1,117
	미 결	231	259	315	366	454	558	511	545	614	742

| 표 5-122 | 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40,954
절 도		4,420	4,061	3,858	3,681	3,549	3,254	2,744	2,667	2,767	2,792
폭력행위등 처벌법		2,863	2,815	2,624	2,544	2,509	2,330	2,325	2,373	2,720	2,653
사기 및 횡령		6,834	7,699	7,630	8,028	8,024	8,330	8,323	8,272	9,338	10,051
성 폭 력		6,272	5,953	5,480	5,713	5,717	5,652	5,572	5,720	5,862	6,076
마 약 류		1,553	1,890	2,133	1,329	1,996	1,595	1,849	2,169	2,492	3,477
과 실 범		1,423	1,691	1,722	1,894	1,851	2,474	2,590	2,448	3,167	3,445
강 도		2,821	2,552	2,333	2,036	1,919	1,803	1,683	1,519	1,522	1,486
살 인		3,728	3,584	3,484	3,291	3,228	3,170	3,063	3,028	3,002	3,083
기 타		5,184	6,234	6,903	6,755	5,904	6,141	5,938	6,279	7,175	7,891

| 표 5-123 |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40,954
징역	소 계	33,637	34,991	34,679	33,790	33,232	33,287	32,643	33,026	36,597	39,484
	1년 미만	5,724	6,362	6,050	6,173	5,599	4,401	3,978	4,574	5,633	5,375
	1년 이상	12,001	13,010	13,208	12,587	12,819	14,053	13,826	13,376	15,093	16,251
	3년 이상	6,870	6,747	6,727	6,587	6,340	6,428	6,532	6,651	7,078	8,072
	5년 이상	5,216	5,195	5,029	4,888	4,902	4,902	4,894	5,023	5,329	6,099
	10년 이상	3,283	3,127	3,071	2,927	2,903	2,784	2,643	2,580	2,532	2,593
	20년 이상	543	550	594	628	669	719	770	822	878	936
금고	소 계	67	86	73	81	66	86	67	81	85	97
	1년 미만	42	47	32	30	32	27	27	27	39	39
	1년 이상	17	28	28	41	25	45	30	46	40	51
	3년이상	8	11	13	10	9	14	10	8	6	7
무기징역		1,337	1,345	1,358	1,343	1,343	1,320	1,322	1,313	1,308	1,320
사 형		57	57	57	57	56	56	55	55	55	53

※ 수형자 입소일과 형기 등 데이터 반영일 간 시차에 따라 각 항목과 총합 사이에 불일치 발생 가능

| 표 5-124 | 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단위 : 명)

사유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40,954
무경험자		19,794	20,649	20,055	19,558	18,955	19,379	18,988	19,482	21,899	23,245
유경력자	소 계	15,304	15,830	16,112	15,713	15,742	15,370	15,099	14,993	16,146	17,709
	1 회	5,987	6,437	6,979	6,741	6,474	6,265	6,329	5,974	6,532	7,529
	2 회	2,506	2,665	2,728	2,668	2,847	2,822	2,802	2,832	3,019	3,183
	3 회	1,742	1,685	1,615	1,623	1,638	1,654	1,609	1,668	1,782	1,911
	4회이상	5,069	5,043	4,790	4,681	4,783	4,629	4,359	4,519	4,813	5,086

| 표 5-125 | 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입소자	계	62,395	64,541	62,624	57,742	56,420	51,874	35,342	36,970	52,120	54,502
	직입소	29,357	28,330	24,851	22,429	21,827	18,609	4,243	5,609	18,227	17,991
	형확정	27,206	30,269	31,500	29,638	29,225	28,204	26,590	26,381	28,330	31,080
	기타	5,832	5,942	6,273	5,675	5,368	5,061	4,509	4,980	5,563	5,431
출소자	계	60,414	62,979	62,819	58,450	56,900	51,817	35,844	36,547	48,576	51,610
	형기종료	19,187	21,357	23,324	21,821	21,092	19,737	17,910	16,479	16,928	17,881
	가석방	5,507	7,157	8,275	8,693	8,174	7,911	9,390	10,310	9,525	11,177
	사면	559	479	309	-	561	206	110	65	24	41
	기타	15,927	14,184	12,559	11,089	10,177	8,588	3,695	4,637	9,169	8,739
	노역종료	19,234	19,802	18,352	16,847	16,896	15,375	4,739	5,056	12,930	13,772
연도말 인원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40,954

나. 미결구금자

| 표 5-126 | 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52,129	55,240	51,863	47,986	47,581	43,820	40,057	41,058	47,063	48,761
신입소		46,585	49,405	45,976	42,461	42,120	38,516	34,571	35,128	40,690	40,561
기타 (보석취소 등)		5,544	5,835	5,887	5,525	5,461	5,304	5,486	5,930	6,373	8,200

| 표 5-127 |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50,654	53,470	53,890	47,913	47,061	43,929	41,315	40,606	44,235	47,671
구속취소		2,056	2,452	2,761	2,538	2,474	2,200	1,775	1,618	1,666	1,809
벌금		1,306	1,310	1,218	976	775	684	541	507	571	587
집행유예		12,914	12,447	11,227	8,985	8,831	7,536	6,823	6,604	8,043	7,960
보석		3,069	2,678	2,555	2,127	2,105	2,165	2,015	1,650	1,869	1,926
형확정		25,985	29,019	30,173	28,216	28,040	27,043	25,770	25,648	27,399	30,117
기타		5,324	5,564	5,956	5,071	4,836	4,301	4,391	4,579	4,687	5,272
연도말인원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19,207	18,043	18,465	21,043	22,027

※ 2011년 통계부터 교정기관 간 이송·이입 인원은 제외함

다. 소년수형자

| 표 5-128 |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30	150	130	105	116	115	142	133	160	165
절도	26	23	27	17	10	21	26	23	41	34
사기·횡령	10	2	9	12	9	8	6	6	3	4
폭력·상해	10	27	5	3	11	13	7	10	8	16
강간 등	27	35	44	24	26	21	31	36	29	25
강도 등	14	19	11	5	14	13	11	9	26	16
살인	5	5	5	4	3	1	1	1	1	5
과실범	2	2	-	1	4	1	2	-	2	1
기타	36	37	29	39	39	37	58	48	50	64

| 표 5-129 |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30	150	130	105	116	115	142	133	160	165
징역형	무기	-	-	-	-	-	-	-	-	-	-
	20년 이상	-	-	-	1	-	-	-	-	-	1
	10년 이상	2	2	1	-	1	-	2	1	2	6
	5년 이상	12	13	9	13	21	15	22	25	27	43
	3년 이상	48	56	46	33	45	41	47	62	59	50
	1년 이상	56	69	67	55	45	55	65	40	63	56
	1년 미만	11	8	7	2	4	2	4	3	5	6
	6월 미만	1	1	-	1	-	2	2	2	3	3
금고형	3년 미만	-	-	-	-	-	-	-	-	1	-
	1년 미만	-	1	-	-	-	-	-	-	-	-

| 표 5-130 |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18	97	113	99	97	81	42	33	52	53
가석방	27	31	28	26	35	35	11	7	12	17
부정기형집행 종료결정	-	-	-	-	-	-	-	-	-	-
형기종료	78	53	64	38	43	37	27	24	34	31
기타	13	13	21	35	19	9	4	2	6	5

라. 외부교통권

| 표 5-131 |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 수	246,045	263,353	288,953	294,150	316,462	392,735	331,625	585,958	742,084	877,996

| 표 5-132 | 수용자 전화사용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 수	569,562	576,357	555,883	594,835	588,130	784,751	523,183	1,039,125	4,670,826	3,301,665

| 표 5-133 | 수용자 접견예약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 수	579,852	657,241	751,207	969,264	903,667	929,250	1,111,366	1,411,367	1,815,581	2,189,406

| 표 5-134 | 수용자 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 수	2,576,186	2,807,596	2,737,767	2,504,718	2,471,940	1,251,240	779,681	822,051	1,067,401	1,304,638

마. 재복역률 및 가석방

| 표 5-135 | 2020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재복역 기간	2020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출소자 26,764명)	
	재복역 인원	비 율
3월 이내	71	0.3
6월 이내	421	1.6
1년 이내	1,587	5.9
2년 이내	4,164	15.6
3년 이내	6,037	22.6

※ 조사대상인원 : 26,764명

※ 출소자 재복역률 개념 :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형기종료, 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 표 5-136 | 출소사유별·재복역기간별·성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총출소인원		재복역인원		재복역기간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총 계	26,764	2,127	6,037	225	71	2	350	14	1,166	33	2,577	97	1,873	79
형기종료	18,624	1,051	5,519	199	59	2	341	14	1,114	31	2,371	86	1,634	66
가석방	7,910	1,029	489	24	12	-	8	-	49	2	195	10	225	12
감호기간종료	-	-	-	-	-	-	-	-	-	-	-	-	-	-
가출소	14	-	8	-	-	-	1	-	3	-	2	-	2	-
사 면	216	47	21	2	-	-	-	-	-	-	9	1	12	1

※ 출소사유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29.6%, 가석방 6.2%, 감호기간 종료 0.0%, 가출소 57.1%, 사면 9.7%

※ 재복역기간별 누적 재복역률 : 3월 이내 0.3%, 6월 이내 1.6%, 1년 이내 5.9%, 2년 이내 15.6%, 3년 이내 22.6%

※ 재복역기간별 인원 : 3월이내 71명(0.3%), 3월이상 6월이내 350명(1.3%), 6월이상 1년이내 1,166명(4.4%), 1년이상 2년이내 2,577명(9.6%), 2년이상 3년이내 1,873명(7.0%)

※ 성별 재복역률 : 남자 23.6%, 여자 10.6%

| 표 5-137 | 출소자 범수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범수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총계	출소인원	26,764	14,913	4,998	2,222	1,208	3,423
	재복역인원	6,037	1,522	1,174	836	546	1,959
	재복역률	22.6	10.2	23.5	37.6	45.2	57.2
형기종료	출소인원	18,624	8,253	3,675	2,096	1,195	3,405
	재복역인원	5,519	1,196	1,006	821	544	1,952
	재복역률	29.6	14.5	27.4	39.2	45.5	57.3
가석방	출소인원	7,910	6,466	1,308	123	10	3
	재복역인원	489	309	167	13	-	-
	재복역률	6.2	4.8	12.8	10.6	-	-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재복역인원	-	-	-	-	-	-
	재복역률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14	1	-	2	2	9
	재복역인원	8	-	-	2	1	5
	재복역률	57.1	-	-	100.0	50.0	55.6
사면	출소인원	216	193	15	1	1	6
	재복역인원	21	17	1	-	1	2
	재복역률	9.7	8.8	6.7	-	100.0	33.3

※ 범수별 재복역률 : 초범 10.2%, 2범 23.5%, 3범 37.6%, 4범 45.2%, 5범 이상 57.2%

※ 출소사유별 범수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5범(57.3%), 가석방 2범(12.8%), 가출소 3범(100%), 사면 4범(100%)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38 | 출소자 연령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연령					
			20세 미만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계	출소인원	26,764	158	4,223	5,324	6,422	6,866	3,771
	재복역인원	6,037	57	1,159	1,072	1,431	1,638	680
	재복역률	22.6	36.1	27.4	20.1	22.3	23.9	18.0
형기종료	출소인원	18,624	116	2,803	3,521	4,570	4,983	2,631
	재복역인원	5,519	51	971	956	1,341	1,552	648
	재복역률	29.6	44.0	34.6	27.2	29.3	31.1	24.6
가석방	출소인원	7,910	38	1,390	1,752	1,783	1,841	1,106
	재복역인원	489	6	179	109	84	79	32
	재복역률	6.2	15.8	12.9	6.2	4.7	4.3	2.9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재복역률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14	-	-	-	3	6	5
	재복역인원	8	-	-	-	3	5	-
	재복역률	57.1	-	-	-	100.0	83.3	-
사면	출소인원	216	4	30	51	66	36	29
	재복역인원	21	-	9	7	3	2	-
	재복역률	9.7	-	30.0	13.7	4.5	5.6	-

※ 연령별 재복역률 : 20세 이내 36.1%, 20대 27.4%, 30대 20.1%, 40대 22.3%, 50대 23.9%, 60대 이상 18.0%

※ 출소사유별 연령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44.0%), 가석방(15.8%)은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39 |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죄명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행위	절도	사기·횡령	마약류	과실범	기타
계	출소인원	26,764	541	313	2,352	3,795	2,977	9,054	1,602	2,835	3,295
	재복역인원	6,037	36	64	374	986	1,394	1,361	515	597	710
	재복역률	22.6	6.7	20.4	15.9	26.0	46.8	15.0	32.1	21.1	21.5
형기종료	출소인원	18,624	184	185	2,346	2,917	2,595	4,557	1,601	1,776	2,463
	재복역인원	5,519	23	50	373	905	1,326	1,130	514	532	666
	재복역률	29.6	12.5	27.0	15.9	31.0	51.1	24.8	32.1	30.0	27.0
가석방	출소인원	7,910	355	120	3	868	352	4,342	1	1,050	819
	재복역인원	489	13	9	-	79	59	221	1	64	43
	재복역률	6.2	3.7	7.5	-	9.1	16.8	5.1	100.0	6.1	5.3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14	-	8	3	-	3	-	-	-	-
	재복역인원	8	-	5	1	-	2	-	-	-	-
	재복역률	57.1	-	62.5	33.3	-	66.7	-	-	-	-
사면	출소인원	216	2	-	-	10	27	155	-	9	13
	재복역인원	21	-	-	-	2	7	10	-	1	1
	재복역률	9.7	-	-	-	20.0	25.9	6.5	-	11.1	7.7

※ 죄명별 재복역률 : 살인(6.7%), 강도(20.4%), 성폭력(15.9%), 폭력(26.0%), 절도(46.8%), 사기·횡령(15.0%), 마약류(32.1%), 과실범(21.1%)

※ 출소사유별 죄명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46.8%), 가출소(66.7%), 사면(25.9%) 출소사유에서 절도가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40 |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형기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출소인원	26,764	715	7,073	14,644	2,794	763	375	270	99	31
	재복역인원	6,037	165	1,538	3,695	465	78	51	35	8	2
	재복역률	22.6	23.1	21.7	25.2	16.6	10.2	13.6	13.0	8.1	6.5
형기종료	출소인원	18,624	643	5,421	9,620	1,836	562	297	191	45	9
	재복역인원	5,519	162	1,437	3,335	427	75	49	27	7	-
	재복역률	29.6	25.2	26.5	34.7	23.3	13.3	16.5	14.1	15.6	-
가석방	출소인원	7,910	70	1,599	4,868	954	200	75	74	49	21
	재복역인원	489	3	95	345	38	3	-	4	-	1
	재복역률	6.2	4.3	5.9	7.1	4.0	1.5	-	5.4	-	4.8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14	-	-	-	-	-	3	5	5	1
	재복역인원	8	-	-	-	-	-	2	4	1	1
	재복역률	57.1	-	-	-	-	-	66.7	80.0	20.0	100.0
사면	출소인원	216	2	53	156	4	1	-	-	-	-
	재복역인원	21	-	6	15	-	-	-	-	-	-
	재복역률	9.7	-	11.3	9.6	-	-	-	-	-	-

※ 형기별 재복역률 : 6월미만(23.1%), 6월이상 1년미만(21.7%), 1년이상 3년미만(25.2%), 3년이상 5년미만(16.6%), 5년이상 7년미만(10.2%), 7년이상 10년미만(13.6%), 10년이상 15년미만(13.0%), 15년이상 20년미만(8.1%), 20년이상(6.5%)

※ 출소사유별 형기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34.7%), 가석방(7.1%)은 1년이상 3년미만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41 | 수형자 가석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5,507	7,157	8,275	8,693	8,174	7,911	9,390	10,310	9,525	11,177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가. 학과교육, 프로그램, 입상 등

| 표 5-142 | 검정고시 교육인원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609	556	616	639	655	650	647	573	621	559
고졸 검정	428	411	444	473	498	517	523	462	523	457
중졸 검정	147	126	150	155	144	123	114	101	90	88
초졸 검정	34	19	22	11	13	10	10	10	8	14

| 표 5-143 | 검정고시 합격인원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575	533	508	492	502	508	542	441	467	493
고졸 검정	394	383	371	364	379	425	461	359	404	416
중졸 검정	147	133	125	120	113	76	75	76	59	64
초졸 검정	34	17	12	8	10	7	6	6	4	13

| 표 5-144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단위 : 명)

소 별 \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교육인원	30	30	21	22	17	20	8	4	4	6
	졸업인원	7	6	5	7	6	8	2	-	2	-
김천	교육인원	30	30	21	22	17	20	8	4	4	6
	졸업인원	7	6	5	7	6	8	2	-	2	-

| 표 5-145 |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

연 도	기 관	횟 수	인 원(명)	비 고
2015	52	846	55,468	
2016	52	1,285	61,110	
2017	52	1,428	63,671	
2018	38	1,322	50,873	
2019	52	917	43,018	
2020	46	361	8,983	
2021	53	425	3,836	
2022	41	729	14,464	
2023	42	678	20,619	
2024	41	766	28,712	

| 표 5-146 | 일반수형자 정신교육 및 인성교육 실적

(단위 : 명)

연 도	2015 (집중인성)	2016 (집중인성)	2017 (집중인성)	2018 (집중인성)	2019 (집중인성)	2020 (집중인성)	2021 (집중인성)	2022 (집중인성)	2023	2024
실 시 인 원	8,604	10,066	10,525	9,909	11,566	4,917	7,187	5,720	6,955	7,426

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 표 5-147 | 귀휴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 원	999	1,084	1,142	1,198	1,193	75	52	1,097	1,057	1,397

| 표 5-148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 원	4,322	4,991	5,080	4,850	4,859	134	-	11	305	896

| 표 5-149 |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 원	1,361	1,431	1,583	1,913	1,908	27	-	5	895	1,662

다. 교정위원 활동

| 표 5-150 | 교정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4,706	4,765	4,830	4,777	4,592	4,495	4,410	4,368	4,982	5,222
교화위원	1,804	1,790	1,845	1,812	1,702	1,647	1,651	1,628	2,000	2,142
종교위원	1,895	1,931	1,910	1,891	1,864	1,835	1,775	1,778	1,926	1,975
교육위원	275	315	329	328	333	335	316	319	360	402
의료위원	102	98	97	91	84	77	72	68	74	74
취업위원	630	631	649	655	609	601	596	575	622	629

| 표 5-151 | 교화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육	법 조	사회사업	실 업	공무원	기 타
인 원	2,142	89	42	99	1,458	38	416

| 표 5-152 | 종교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기 독 교	불 교	천 주 교	기 타
인 원	1,975	901	685	356	33

| 표 5-153 | 교육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수	교 사	학원강사	직업훈련 강사	기 타
인 원	402	70	17	36	14	265

| 표 5-154 | 의료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의 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	기 타
인 원	74	63	1	1	2	7

| 표 5-155 | 취업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실 업	사회사업	교 육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기 타
인 원	629	437	17	65	34	76

| 표 5-156 | 교화위원 활동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상 담 (명)	1,629	1,734	1,704	1,334	2,371	219	4	112	545	719
교화강연(회)	11	15	5	3	14	-	-	-	130	269
자매결연(명)	519	341	204	306	1,101	10	33	21	42	677
수 용 생 활 지 원 (명)	5,867	6,726	4,434	5,363	6,068	8,491	5,130	4,446	4,112	3.322

| 표 5-157 | 종교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교리지도(명)	29,560	36,876	33,215	37,085	35,670	99	4	7,496	21,403	25,650
자매결연(명)	3,828	3,333	7,158	11,641	12,360	356	161	3,041	6,732	8,273
수 용 생 활 지 원 (명)	22,170	23,962	24,725	28,224	37,336	13,466	13,350	18,739	30,147	32,971
교 화 도 서 기 증 (권)	346	3,441	164	3,809	1,013	151	8	4,642	105	750

| 표 5-158 | 교육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훈련지도(명)	11,401	14,162	18,003	20,428	18.520	2,988	890	4,110	4,921	6,418
자매결연(명)	18	13	44	-	-	-	6	10	-	90
수용생활지원(명)	36	187	67	93	20	103	94	341	96	604
교화도서기증(권)	100	43	249	-	230	400	-	189	10,050	50

| 표 5-159 | 의료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의료지원(명)	10,716	12,310	11,566	13,295	12,410	10,288	9,752	9,741	9,665	7,964
자매결연(명)	9	3	-	-	-	-	-	-	-	-
수용생활지원(명)	45	115	68	120	380	676	884	592	467	480
교화도서기증(권)	-	-	-	100	-	-	-	-	-	-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가. 교도작업

| 표 5-160 | 취업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형자 총인원		34,425	36,082	35,990	34,633	34,604	34,621	33,892	33,809	37,145	40,486
취업불가능인원		10,458	12,154	11,613	11,510	11,662	12,612	12,924	13,436	16,742	19,768
취업가능인원	계	23,967	23,928	24,377	23,123	22,942	22,009	20,968	20,373	20,403	20,718
	취업인원	22,090	22,100	22,265	21,351	21,562	20,577	19,534	19,165	19,135	19,463
	비율(%)	92	92	91	92	94	93	93	94	94	94
	불취업인원	1,877	1,828	2,112	1,772	1,380	1,432	1,434	1,208	1,268	1,255

※ 감호작업은 제외

| 표 5-161 |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획	42,082	55,541	57,033	60,056	60,893	61,374	61,603	61,564	62,480	63,006
실적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65,555	63,366	69,869	71,398
실적/계획(%)	132.6	112.1	115.9	109.5	103.0	102.4	106.4	102.9	111.8	113.3
실적 증가율(%)	18.1	11.6	6.2	△0.6	△0.5	△0.6	4.3	△3.3	10.3	2.2

| 표 5-162 |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실 적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49	65,555	63,366	69,869	71,398
직영작업	실 적	30,228	34,998	38,141	37,905	34,326	37,089	38,413	38,946	41,393	43,967
	구성비 (%)	54.2	56.2	57.7	57.7	54.7	59.0	58.6	61.5	59.2	61.6
위탁작업	실 적	17,448	18,763	19,312	19,886	20,158	18,271	16,996	17,284	18,364	18,941
	구성비 (%)	31.3	30.1	29.2	30.2	32.2	29.1	25.9	27.3	26.3	26.5
외통·개방	실 적	7,914	8,330	8,456	7,807	8,114	7,357	7,489	6,815	7,800	8,373
	구성비 (%)	14.2	13.4	12.8	11.9	12.9	11.7	11.4	10.8	11.2	11.7
기타	실 적	202	148	218	134	106	132	2,657	321	2,312	117
	구성비 (%)	0.4	0.2	0.3	0.2	0.2	0.2	4.1	0.5	3.3	0.2

| 표 5-163 | 연도별 관수용품 등 공급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생산총액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65,555	63,366	69,869	71,398
관수용품	계	28,503	31,723	35,343	28,617	26,595	31,603	33,912	38,946	41,394	43,967
	교정기관	25,971	27,479	31,060	24,949	23,570	29,885	31,257	35,303	36,250	38,474
	법무부산하	205	994	74	99	1,162	211	123	155	138	117
	부 외 처	2,327	3,250	4,209	3,569	1,863	1,507	2,532	3,488	5,006	5,377

| 표 5-164 | 작업장려금 지급실적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급액 (천 원)	20,231,129	20,853,628	22,641,637	22,074,502	23,129,488	20,621,076	22,659,230	22,600,238	24,725,915	26,779,775
지 급 연인원 (명)	5,634,098	5,615,637	5,874,204	4,967,883	5,187,748	5,139,172	4,870,453	3,738,721	3,901,691	4,994,150
1인당 1일평균 (원)	3,591	3,713	3,854	4,443	4,458	4,013	4,652	6,045	6,337	5,362

| 표 5-165 |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급인원	5	5 (2)	2	5 (2)	2	4 (1)	3	1	2	-
지 급 액	98,729	96,308 (90,034)	20,040	145,466 (103,986)	10,287	57,328 (44,668)	41,820	19,588	13,924	-

※ ( )는 조위금

| 표 5-166 |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 급 액	687,043	449,740	405,258	167,154	151,133	105,409	52,594	53,078	39,205	37,484
지급인원	92	64	32	16	21	18	13	13	7	4
1인당 평균 지 급 액	7,468	7,027	36,241	36,520	38,348	31,306	18,558	19,127	26,688	28,397

| 표 5-167 | 최근 5년간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 구분	총세입액	총세출액	세계잉여금	비 고
2020	118,424	107,406	11,018	-
2021	114,370	106,756	7,614	-
2022	118,026	109,684	8,342	-
2023	124,207	113,046	11,161	-
2024	131,264	118,297	12,967	

※ 총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 표 5-168 | 국유재산 및 주요장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	국유재산	공작물 등
7,223	7,170	53

| 표 5-169 |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생 산 작 업									비 생 산 작 업						
작업 종목	직영 개방지역작업			직영 집중근로 (위탁 집중근로)			직영 일반생산작업 (위탁 일반생산작업)			운영지원작업						직업훈련
										일반작업			시설보수, 구매 (취사)			
등 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지급액	17,000	14,000	12,000	9,500 (60%)	8,500 (60%)	7,500 (60%)	4,500 (60%)	4,000 (55%)	3,500 (50%)	1,600	1,500	1,400	3,700 (4,500)	3,200 (4,000)	2,700 (3,500)	1,000

| 표 5-170 | 연도별 취업 지원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취업	1,503	1,663	1,670	1,542	1.557	1,625	1,725	1,832	1,773	1,896

나. 직업훈련

| 표 5-171 | 직업훈련 실시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6,484	6,644	6,727	6,939	6,433	5,942	5,417	5,635	5,624	5,897
양성·향상 훈 련	3,758	3,913	3,719	4,313	4,276	4,397	4,200	4,865	5,030	4,532
숙련훈련	360	364	457	608	637	777	720	521	382	168
일반훈련	2,366	2,367	2,551	2,018	1,520	768	497	249	212	1,197

| 표 5-172 | 기술자격 취득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264	3,316	3,443	3,424	3,338	3,128	3,070	2,740	3,237	3515
기 술 사	-	-	-	-	-	-	-	-	-	-
기 능 장	5	4	-	-	2	-	-	2	-	1
기 사	-	1	-	1	-	5	7	4	-	-
산업기사	50	56	92	87	60	100	85	91	68	141
기 능 사	3,209	3,255	3,351	3,336	3,276	3,023	2,978	2,643	3,169	3,373

| 표 5-173 |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87	76	77	98	99	94	78	81	70	81
지방대회	77	64	63	76	76	73	58	56	50	58
전국대회	10	12	14	22	23	21	20	25	20	23

제7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 표 5-174 |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계	66,372,908	79,987,974	80,407,702	88,908,420	93,548,093
	승 객	60,054,078	73,916,823	75,134,915	83,558,252	87,822,137
	승무원	6,318,830	6,071,151	5,272,787	5,350,168	5,725,956
국민	소 계	39,111,816	45,313,898	53,445,030	57,859,670	57,795,389
	승 객	36,228,736	42,197,580	50,130,062	54,321,526	54,198,298
	승무원	2,883,080	3,116,318	3,314,968	3,538,144	3,597,091
외국인	소 계	27,261,092	34,674,076	26,962,672	31,048,750	35,752,704
	승 객	23,825,342	31,719,243	25,004,853	29,236,726	33,623,839
	승무원	3,435,750	2,954,833	1,957,819	1,812,024	2,128,865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계	14,701,831	4,559,693	19,414,228	68,121,657	91,222,927
	승 객	12,777,578	2,859,950	17,108,919	63,741,554	85,493,051
	승무원	1,924,253	1,699,743	2,305,309	4,380,103	5,729,876
국민	소 계	9,171,481	2,432,517	12,889,166	45,423,313	57,567,576
	승 객	7,957,472	1,593,633	11,586,942	42,468,079	53,958,806
	승무원	1,214,009	838,884	1,302,224	2,955,234	3,608,770
외국인	소 계	5,530,350	2,127,176	6,525,062	22,698,344	33,655,351
	승 객	4,820,106	1,266,317	5,521,977	21,273,475	31,534,245
	승무원	710,244	860,859	1,003,085	1,424,869	2,121,106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75 |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중 국	6,154,730	8,268,262	4,393,936	5,032,906	6,284,486
일 본	1,859,190	2,321,842	2,337,588	2,976,444	3,303,088
미 국	859,361	960,683	969,277	1,068,173	1,139,150
타 이 완	551,362	865,948	957,836	1,146,215	1,290,683
홍 콩	524,116	651,639	659,182	679,942	685,569
필 리 핀	412,197	566,693	459,588	471,532	516,503
태 국	375,021	474,262	503,777	565,784	580,191
말 레 이 시 아	223,782	311,686	308,152	383,467	409,254
베 트 남	199,323	299,084	380,929	519,448	624,640
인 도 네 시 아	194,472	296,377	231,908	250,249	280,146
러 시 아	191,214	238,171	275,779	308,665	350,093
싱 가 포 르	160,402	221,844	216,574	232,359	246,736
인 도	154,294	196,773	124,458	120,975	144,758
캐 나 다	147,715	178,023	178,761	196,859	208,280
오스트레일리아	134,357	153,125	151,583	154,390	174,681
영 국	124,833	136,900	128,046	133,149	146,132
독 일	101,251	111,413	111,077	117,173	121,989
프 랑 스	85,093	93,039	94,013	101,854	112,588
몽 골	81,201	82,780	108,139	118,783	118,977
우 즈 베 키 스 탄	59,453	71,299	81,711	89,391	95,634
뉴 질 랜 드	28,806	32,038	33,526	34,652	39,504
기 타	737,528	886,426	863,669	928,112	1,007,421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16,968,203
중 국	740,039	187,908	250,876	2,212,966	4,883,269
일 본	438,708	18,025	309,460	2,345,679	3,258,742
미 국	265,134	251,203	610,103	1,172,266	1,416,233
타 이 완	171,943	5,779	77,707	978,311	1,496,000
홍 콩	87,118	1,381	60,220	400,305	567,638
필 리 핀	120,171	117,316	206,529	356,046	531,099
태 국	78,878	9,351	185,409	391,285	338,713
말 레 이 시 아	48,741	4,596	70,988	261,103	302,409
베 트 남	112,938	25,359	239,269	504,347	596,462
인 도 네 시 아	67,301	46,998	108,178	252,473	339,037
러 시 아	75,117	35,235	63,810	165,217	204,581
싱 가 포 르	18,136	7,625	165,713	348,736	376,489
인 도	34,299	31,633	66,018	124,736	179,119
캐 나 다	35,437	30,201	94,589	205,369	258,571
오스트레일리아	23,559	3,717	66,404	200,619	246,479
영 국	21,124	9,337	46,414	124,415	150,966
독 일	24,543	20,381	66,002	134,506	159,263
프 랑 스	19,891	16,195	63,984	135,850	167,430
몽 골	22,535	6,511	67,146	141,638	150,201
우 즈 베 키 스 탄	17,570	16,177	42,314	60,170	67,259
뉴 질 랜 드	6,772	1,732	15,997	40,641	42,941
기 타	229,891	197,885	512,879	944,205	1,235,302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76 |

항구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인천공항	7,778,178	10,010,952	9,288,559	10,789,900	11,983,837
제주공항	958,601	1,327,513	555,387	839,775	1,220,957
김해공항	789,992	1,059,397	1,062,683	1,279,277	1,375,031
김포공항	943,451	1,029,912	922,837	1,084,115	1,165,403
부산항	460,625	850,990	412,465	380,537	450,491
인천항	543,334	621,693	332,305	410,667	510,530
청주공항	194,255	237,282	61,021	68,166	89,695
평택항	170,805	179,051	211,138	210,495	296,933
대구공항	51,145	103,339	68,730	107,407	204,324
군산항	47,844	65,265	76,979	109,649	169,779
감천항	56,558	57,818	57,964	56,697	60,005
울산항	48,852	48,071	46,328	43,955	43,266
광양항	29,080	44,614	38,986	35,377	34,642
오산공항	36,431	34,994	32,599	32,306	28,809
무안공항	37,727	34,295	4,074	7,717	20,770
양양공항	47,005	34,202	2,446	13,699	12,113
동해항	21,234	27,978	31,066	28,465	28,423
여수항	20,337	26,904	26,031	31,798	59,960
창원항	13,526	13,191	13,034	13,071	13,389
서산항	6,433	6,590	7,782	8,527	8,425
속초항	1,386	1,101	11,858	4,969	5,938
기타	1,102,902	1,603,155	305,237	73,953	97,783

항구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16,968,203
인천공항	1,899,649	721,864	2,807,636	8,464,171	11,496,187
제주공항	117,997	23	35,660	522,730	1,127,658
김해공항	154,778	4,429	109,871	793,108	1,222,275
김포공항	148,795	539	73,398	811,996	1,070,897
부산항	82,576	94,296	101,116	351,402	389,311
인천항	34,139	14,216	17,254	50,832	197,355
청주공항	5,756	12	40	12,218	63,528
평택항	26,151	13,771	14,934	29,820	100,026
대구공항	19,520	4	7,155	93,521	121,583
군산항	13,632	8,034	9,900	12,285	40,866
감천항	26,365	20,529	21,692	42,123	47,007
울산항	26,247	38,141	37,361	19,754	30,391
광양항	18,956	34,385	32,519	14,960	23,089
오산공항	27,188	22,331	27,072	26,719	26,474
무안공항	1,275	-	216	5,104	2,883
양양공항	4,724	3	5,670	8,842	1,975
동해항	6,757	6,141	11,646	31,460	26,831
여수항	18,417	37,312	43,297	18,921	19,317
창원항	7,715	9,507	10,792	8,588	12,046
서산항	2,904	3,497	4,868	3,711	6,975
속초항	516	-	127	8,035	8,167
기타	15,788	15,511	17,785	170,583	933,362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 오산공항은 2016년부터 평택으로 명칭 변경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77 |

체류자격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사증면제(B-1)	1,249,506	1,556,536	1,634,095	1,908,616	2,053,173
관광통과(B-2)	4,632,593	5,833,225	5,269,825	6,378,362	7,158,538
단기방문(C-3)	3,635,898	5,026,435	3,319,579	4,127,283	5,184,417
유 학(D-2)	140,160	169,715	212,295	248,472	291,007
기술연수(D-3)	1,934	1,678	1,723	1,449	1,103
일반연수(D-4)	62,550	81,033	90,357	83,538	84,653
종 교(D-6)	2,292	2,348	2,428	2,313	2,398
주 재(D-7)	8,991	9,160	8,548	8,460	9,072
기업투자(D-8)	40,795	42,007	41,984	41,886	42,442
무역경영(D-9)	33,958	26,302	18,288	9,705	8,669
교 수(E-1)	7,555	7,550	7,491	7,160	6,904
회화지도(E-2)	32,299	32,158	30,922	27,291	29,115
연 구(E-3)	9,810	9,494	9,618	9,508	9,212
예술흥행(E-6)	4,596	3,996	3,765	4,570	5,436
특정활동(E-7)	43,300	46,324	47,528	46,661	46,475
비전문취업(E-9)	123,433	134,764	140,072	145,174	151,116
선원취업(E-10)	9,431	9,877	10,720	11,737	11,634
방문동거(F-1)	49,310	69,742	82,857	88,747	97,159
거 주(F-2)	35,728	43,041	48,924	53,672	58,425
동 반(F-3)	43,222	43,684	40,048	38,402	40,284
재외동포(F-4)	405,948	468,336	515,587	565,636	579,522
영 주(F-5)	118,553	134,138	151,115	162,760	177,531
기 타	2,667,839	3,666,764	1,881,740	1,659,120	1,832,218

체류자격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16,968,203
사증면제(B-1)	222,306	19,938	663,699	1,689,221	1,936,862
관광통과(B-2)	939,748	115,029	945,123	5,121,560	7,546,051
단기방문(C-3)	503,028	89,288	439,865	1,919,908	3,340,109
유 학(D-2)	89,414	53,366	111,101	247,596	348,096
기술연수(D-3)	321	389	397	636	719
일반연수(D-4)	29,048	26,718	41,094	66,384	87,033
종 교(D-6)	647	625	1,239	1,883	2,252
주 재(D-7)	2,045	1,044	2,539	5,145	5,847
기업투자(D-8)	9,252	4,574	13,009	28,760	36,010
무역경영(D-9)	3,169	2,562	3,418	5,792	6,920
교 수(E-1)	2,061	964	2,460	4,114	4,544
회화지도(E-2)	11,326	5,376	11,868	20,998	21,031
연 구(E-3)	2,569	1,618	4,346	6,945	7,282
예술흥행(E-6)	1,790	1,934	3,816	7,807	9,169
특정활동(E-7)	12,398	5,827	20,099	49,101	68,829
비전문취업(E-9)	41,992	16,732	135,167	168,755	178,173
선원취업(E-10)	6,325	4,895	9,329	11,344	10,556
방문동거(F-1)	32,329	11,306	46,485	84,677	93,663
거 주(F-2)	13,330	3,637	12,238	45,436	66,941
동 반(F-3)	13,651	9,254	21,388	34,935	41,731
재외동포(F-4)	112,752	64,246	123,610	389,703	495,456
영 주(F-5)	34,140	11,644	24,322	136,492	189,786
기 타	576,204	593,579	753,397	1,453,691	2,471,143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78 |

국가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2,036,075	1,956,781	2,245,912	2,507,584	2,650,783
중 국	894,906	840,193	849,804	942,395	958,959
베 트 남	211,243	208,740	235,007	271,712	305,936
미 국	145,580	140,672	156,562	161,895	170,251
태 국	181,386	171,800	201,681	202,121	188,770
필 리 핀	49,800	46,871	57,452	64,055	70,392
우즈베키스탄	65,205	66,677	79,136	87,698	94,893
일 본	26,515	28,093	46,741	58,438	65,216
인도네시아	36,858	34,188	50,841	63,226	73,180
캄 보 디 아	41,405	41,525	49,240	57,018	63,681
몽 골	42,511	37,012	53,038	54,846	57,093
네 팔	39,743	36,903	47,865	63,369	74,641
타 이 완	19,444	18,554	25,417	33,225	35,838
러 시 아	50,410	48,680	56,995	68,075	69,252
스 리 랑 카	22,466	20,291	24,912	30,370	35,792
캐 나 다	21,794	22,830	27,705	27,607	28,604
미 얀 마	26,412	26,096	33,275	42,438	53,914
방글라데시	16,823	16,426	21,928	26,636	31,220
오스트레일리아	7,913	7,591	17,819	18,326	19,430
파 키 스 탄	12,842	12,410	14,460	16,295	18,355
인 도	10,892	11,542	14,419	15,789	16,851
영 국	5,871	6,435	8,149	8,499	8,697
기 타	106,056	113,252	173,466	193,551	209,818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79 |

체류자격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2,036,075	1,956,781	2,245,912	2,507,584	2,650,783
사증면제(B-1)	179,332	165,869	224,817	223,851	206,546
관광통과(B-2)	51,977	43,673	100,793	137,116	153,101
단기방문(C-3)	114,261	97,225	137,642	176,235	162,719
단기취업(C-4)	2,356	1,691	1,985	2,196	2,848
유 학(D-2)	101,810	111,178	134,062	152,094	178,519
기술연수(D-3)	1,634	1,654	1,719	1,828	1,808
일반연수(D-4)	52,952	53,870	65,204	76,644	87,887
종 교(D-6)	1,254	1,378	1,471	1,530	1,773
상사주재(D-7)	1,057	1,028	1,148	1,128	1,053
기업투자(D-8)	5,587	5,955	6,822	7,565	8,376
무역경영(D-9)	2,136	2,053	2,148	2,512	2,526
교 수(E-1)	2,053	2,017	2,012	1,897	1,802
회화지도(E-2)	12,621	13,403	14,251	14,005	13,443
연 구(E-3)	3,110	3,638	4,009	3,916	3,426
예술흥행(E-6)	3,011	3,285	3,989	4,711	4,406
특정활동(E-7)	19,534	20,675	24,083	44,993	63,580
비전문취업(E-9)	236,950	217,729	268,413	310,825	337,279
선원취업(E-10)	17,552	17,921	19,874	21,476	21,922
방문동거(F-1)	105,382	96,015	105,293	112,260	99,051
거 주(F-2)	43,666	42,367	44,561	53,325	61,292
동 반(F-3)	20,050	21,237	24,917	30,613	52,651
재외동포(F-4)	466,682	478,442	502,451	536,374	555,968
영 주(F-5)	160,947	168,118	176,107	185,441	202,968
방문취업(H-2)	154,537	125,493	105,567	103,981	93,302
기 타	275,624	260,867	272,574	301,068	332,537

7. 청·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80 |

사무소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1,145,540	1,093,891	1,189,585	1,348,626	1,488,353
서 울	102,859	96,888	95,824	102,630	108,389
서울남부	106,526	95,393	91,451	94,731	97,551
부 산	46,147	45,022	48,978	56,035	63,989
인 천	110,849	107,902	115,876	130,029	144,041
수 원	121,265	113,145	114,327	129,229	143,652
제 주	22,943	20,717	21,592	25,456	27,990
대 구	49,605	48,331	53,518	62,278	70,616
대 전	37,511	37,309	43,699	50,954	57,678
여 수	6,673	7,349	8,197	9,211	10,362
양 주	37,291	35,822	40,382	44,893	50,486
광 주	31,372	30,501	34,394	39,175	42,657
창 원	27,472	25,985	28,986	35,065	38,564
춘 천	10,924	11,045	13,044	14,463	16,076
청 주	35,610	34,564	39,543	46,873	53,996
전 주	25,496	24,509	28,138	31,772	34,448
울 산	28,081	26,427	28,326	34,665	40,461
안 산	83,680	78,935	97,165	104,590	110,521
세종로(출)	61,768	60,393	69,019	74,343	79,679
구 미(출)	12,111	12,127	13,942	16,592	18,916
포 항(출)	8,349	8,268	9,216	10,415	11,127
천 안(출)	37,188	36,321	40,448	47,675	53,698
서 산(출)	7,843	7,513	8,862	10,440	11,957
고 양(출)	22,177	21,244	23,751	26,477	29,366
목 포(출)	14,621	14,245	17,603	23,968	28,497
거 제(출)	6,641	5,404	5,861	11,773	14,969
군 산(출)	5,792	5,822	6,803	8,443	9,347
평 택(출)	43,623	43,229	45,911	52,141	58,005
김 해(출)	19,492	18,524	20,930	25,651	29,645
기 타	21,631	20,957	23,799	28,659	31,670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81 |

지역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1,145,540	1,093,891	1,189,585	1,348,626	1,488,353
경 기	380,144	360,412	382,865	425,629	467,398
서 울	242,623	226,569	239,297	252,765	265,544
경 남	67,239	63,148	70,390	89,312	102,333
충 남	69,622	67,462	76,495	91,001	102,869
인 천	67,648	66,364	71,849	81,016	89,129
경 북	52,469	51,100	57,055	67,025	76,768
부 산	40,366	39,420	42,863	49,090	55,805
충 북	37,060	36,045	41,270	48,866	56,301
전 남	32,906	32,656	38,988	49,110	57,189
전 북	31,288	30,331	34,941	40,215	43,795
대 구	27,798	27,230	29,568	33,305	36,710
울 산	17,884	16,827	18,379	23,620	27,642
광 주	21,323	20,934	22,967	25,348	26,557
제 주	22,943	20,717	21,592	25,456	27,990
대 전	16,895	17,292	20,594	23,384	26,249
강 원	17,332	17,384	20,472	23,484	26,074

※ 충남은 세종시(6,182명) 포함

9.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 표 5-182 |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811,211	778,670	804,976	848,724	864,245
중 국	662,845	628,491	626,729	656,142	668,126
미 국	44,039	43,212	45,752	48,837	52,303
캐 나 다	15,975	16,731	17,899	17,923	18,183
우즈베키스탄	31,962	32,216	40,706	43,320	42,543
러 시 아	26,871	27,488	34,220	38,369	38,135
오스트레일리아	4,430	4,232	4,925	5,465	5,750
뉴 질 랜 드	2,393	2,279	2,512	2,661	2,781
카 자 흐 스 탄	13,033	13,993	19,614	22,426	22,552
독 일	787	812	874	889	941
일 본	768	706	755	873	939
기 타	8,108	8,510	10,990	11,819	11,992

10.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 표 5-183 |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153,361	163,699	197,234	226,507	263,775
유 학(D-2)	101,810	111,178	134,062	152,094	178,519
한국어연수(D-41)	51,545	52,506	63,146	74,361	85,173
외국어연수(D-47)	6	15	26	52	83
증 감 률 (전년대비, %)	(-14.9%)	(6.7%)	(20.5%)	(14.9%)	(16.5%)

국가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153,361	163,699	197,234	226,507	263,775
중 국	52,102	49,033	59,905	70,888	75,149
베 트 남	57,945	63,492	71,038	80,343	96,957
몽 골	8,240	8,838	11,431	13,802	16,655
우즈베키스탄	9,077	9,504	11,555	12,530	15,352
일 본	2,193	3,876	5,105	4,544	4,203
인도네시아	1,342	1,561	2,339	2,511	2,680
파 키 스 탄	1,531	1,392	1,603	1,690	1,934
인 도	1,289	1,412	1,802	1,916	2,025
말레이시아	724	897	1,124	1,139	1,183
미 국	861	1,285	1,676	1,633	2,012
(타 이 완)	859	960	1,383	1,538	1,497
방글라데시	1,160	1,278	1,569	2,058	2,977
러 시 아	918	1,303	1,740	2,142	2,403
네 팔	2,796	2,772	2,746	4,543	9,229
필 리 핀	452	475	694	806	789
기 타	11,872	15,621	21,524	24,424	28,730

11.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 표 5-184 |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 원	168,594	168,611	169,633	174,895	181,436
증감률 (전년대비, %)	(1.5%)	(0.01%)	(0.6%)	(3.1%)	(3.7%)

국가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168,594	168,611	169,633	174,895	181,436
중 국	60,072	59,770	59,499	60,048	60,681
베 트 남	44,058	41,447	39,136	39,956	41,779
일 본	14,595	15,074	15,366	15,662	16,214
필 리 핀	12,002	12,041	12,253	12,557	12,794
캄 보 디 아	4,638	4,565	4,641	4,794	4,897
미 국	4,312	4,538	4,801	5,093	5,308
태 국	5,929	6,558	7,506	8,669	9,751
몽 골	2,486	2,502	2,528	2,583	2,706
우즈베키스탄	2,625	2,709	2,738	2,792	2,868
캐 나 다	1,397	1,426	1,470	1,491	1,518
러 시 아	1,800	2,041	2,224	2,408	2,609
네 팔	841	834	852	871	866
파 키 스 탄	979	989	1,003	1,015	1,039
타 이 완	1,472	1,596	1,730	1,806	1,857
영 국	1,120	1,200	1,280	1,344	1,431
인 도 네 시 아	998	1,073	1,205	1,331	1,474
방 글 라 데 시	361	376	385	396	404
기 타	8,909	9,872	11,016	12,079	13,240

12.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 표 5-185 |

국가 \ 연도	허가 유형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귀화	13,885	10,895	10,248	10,346	11,008
	회복	1,764	2,742	3,043	4,203	3,607
중 국	귀화	7,932	5,145	4,480	4,904	6,249
	회복	120	185	114	98	92
베 트 남	귀화	4,076	4,225	4,431	3,807	2,951
	회복	29	14	18	23	20
필 리 핀	귀화	375	241	203	243	284
	회복	7	25	11	14	9
몽 골	귀화	145	103	60	126	81
	회복	10	3	6	8	7
우즈베키스탄	귀화	138	97	119	113	107
	회복	8	12	10	13	8
일 본	귀화	15	20	30	29	24
	회복	54	86	94	120	113
태 국	귀화	68	78	89	110	148
	회복	7	6	7	9	4
파 키 스 탄	귀화	26	34	26	13	21
	회복	-	-	-	-	-
기 타	귀화	1,110	952	810	1,001	1,143
	회복	1,529	2,411	2,783	3,918	3,354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 표 5-186 |

구 분 \ 연 도		총계	'94~'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청	1차	122,095	22,791	9,942	16,173	15,452	6,684	2,341	11,539	18,837	18,336
	이의 신청	48,563	12,843	3,723	3,110	4,067	5,954	4,718	3,748	5,247	5,153
심사 결정	소계	103,172	25,958	9,634	6,879	9,306	11,894	10,979	8,543	10,230	9,749
	1차	65,227	16,457	5,219	4,295	5,875	8,102	5,982	5,463	7,087	6,747
	이의 신청	37,945	9,501	4,415	2,584	3,431	3,792	4,997	3,080	3,143	3,002
철회*	소계	31,645	2,819	1,245	2,412	4,264	6,230	4,003	2,966	3,069	4,637
	1차	29,164	2,542	1,197	2,305	4,138	5,929	3,693	2,659	2,567	4,134
	이의 신청	2,481	277	48	107	126	301	310	307	502	503

* 1차 심사의 경우 직권종료 처리 건 포함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14. 난민신청 심사결과

| 표 5-187 |

구 분 \ 연 도		총계	'94~'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심사완료		57,090	13,163	5,874	3,954	5,060	6,237	6,842	4,892	5,458	5,610
난민 인정 (보호)	소계 (보호율, %)	4,240 (7.4)	1,838 (26)	437 (7.4)	651 (16.5)	308 (6.1)	223 (3.6)	121 (1.8)	230 (4.7)	226 (4.1)	206 (3.7)
	인정 (인정률, %)	1,544 (2.7)	678 (9.4)	121 (2.1)	144 (3.6)	79 (1.6)	69 (1.1)	72 (1.1)	175 (3.6)	101 (1.8)	105 (1.9)
	인도적 체류	2,696	1,160	316	507	229	154	49	55	125	101
불인정		52,850	11,325	5,437	3,303	4,752	6,014	6,721	4,662	5,232	5,404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 인정취소 8건 및 철회 4건 포함

法務年鑑



자 료

제1절 직제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제3절 장관 연설문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제6절 인사
제7절 국외훈련·출장
제8절 국제교류 현황
제9절 상훈
제10절 위원회 현황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제1절 직제

1. 직제 연혁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	1948. 7.17.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 법무부 설치
2	1948. 9.13.	대통령령 제3호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 과도정부 사법부(법률기초국과 법률조사국 제외)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
3	1948.11. 4.	대통령령 제21호	법무부직제 제정 공포	• 1실 4국 21과 설치
4	1950. 3.31.	대통령령 제307호	법무부직제 개정	• 3국 10과로 개편
5	1954. 9. 1.	대통령령 제936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국 조사과 폐지, 소년과 신설
6	1955. 2. 7.	법률 제354호	정부조직법 개정	•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고 법무부에 소속시킴
7	1955. 2.17.	대통령령 제1008호	법제실직제 제정 공포	• 법제실에 제1·2국을 두고 제1국에 운영지원과를 둠
8	1960. 7. 1.	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 개정	• 정무차관·사무차관 신설, 법제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9	1961. 8.25.	법률 제698호	정부조직법 개정	• 정무차관·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10	1961.10. 2.	각령 제177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김포·인천·부산에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11	1962. 5.21.	각령 제770호	법무부직제 개정	•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각 개칭, 출입국관리과를 법무국으로,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각 이관
12	1962. 7. 4.	각령 제885호	공보사무담당공무원의배치및직무에관한건 제정 공포	• 공보담당 일반직 3급갑류 1인 신설
13	1963.12.14.	법률 제1506호	정부조직법 개정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14	1966.10.26.	대통령령 제279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일본국 해외주재관 2명 주재
15	1967. 4.10.	대통령령 제2986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16	1967. 7. 7.	대통령령 제313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에 시설과 설치
17	1969. 3.24.	대통령령 제382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8	1970. 2.20.	대통령령 제3900호	법무부직제 개정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관으로 하고 그 밑에 비상계획보좌관을 둠
19	1970. 2.27.	대통령령 제4678호	법무부직제 개정	• 본부 각과의 계제도 폐지, 출입국관리담당관 신설. 경제기획원에 주재관(3갑) 신설
20	1970. 8.20.	대통령령 제527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출입국관리담당관을 출입국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밑에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설치
21	1973. 3.14.	대통령령 제6570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신설, 비상계획관은 차관직속으로 개편
22	1973. 3.28.	대통령령 제6594호	법무부직제 개정	• 공보담당관(3갑)을 공보관(2갑, 2을 또는 별정직)으로 조정
23	1975. 7.16.	대통령령 제7697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찰과를 검찰 제1·2·3·4과로 하고 인권옹호과를 인권과로 개편하여 법무실 이관, 출입국관리국에 기록관리과 신설
24	1976.12. 9.	대통령령 제8293호	법무부직제 개정	• 출입국관리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신설
25	1977. 9.20.	대통령령 제869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26	1978. 5. 2.	대통령령 제9000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에 조사과를 신설하고 송무과를 송무제1·2과로 하며, 교정국에 보안과·직업훈련과를 신설하고 계획과를 작업지도과로 개칭
27	1981. 1. 9.	대통령령 제10160호	법무부직제 개정	• 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호과·조정과·심사과를 설치
28	1981.11. 2.	대통령령 제10526호	법무부직제 개정	• 송무담당관 2인을 1인으로 감축하고, 법무실의 송무제1·2과를 송무과로 통합. 검찰국장 밑에 연구검사 신설. 교정국의 교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관리과를 재정과로, 직업훈련과를 교육과로 개칭.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관리심의관을 폐지함
29	1982. 8.11.	대통령령 제10891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던 실·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송무담당관을 검사장으로 함
30	1983. 7.22.	대통령령 제1117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사장으로 보하게 되어 있던 실·국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출입국관리국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법무실·검찰국·보호국 소속과장 직급을 고등검찰관에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조정. 송무담당관과 조사과를 폐지하고 법무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과 교화심의관을 신설하며, 비서관 직급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3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92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 소속으로 하고, 조정과를 조사과로, 심사과를 관찰과로 하며, 교정국에 경비과를 신설함. 법무심의관의 기능 일부 조정
32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9호	법무부직제 개정	• 보호국장을 고등검찰관에서 검사장으로 직급 조정하고, 별정직 전산처리사 4인(6급상당 2인, 7급상당 2인)을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으로 직렬 조정
33	1986.10.11.	대통령령 제11978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에 섭외법무심의관, 교정국에 보안제2과를 신설하고, 보안과를 보안제1과로 개편
34	1988.12. 2.	대통령령 제12553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 시설과를 기획관리실 시설관리담당관으로 개편
35	1990.10.29.	대통령령 제13149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 송무과를 송무심의관으로 개편, 섭외법무심의관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36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법무부·법무연수원·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 조정
37	1991. 9.30.	대통령령 제1348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교화심의관, 경비과 폐지(4개 지방교정청 신설에 따름), 출입국기획과 신설,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 폐지 및 입국심사과를 출입국심사과로 변경 • 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교정청 신설 • 영등포·수원·부산·마산교도소와 인천구치소에 분류심사과 신설 • 광주소년감별소 신설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실 설치
38	1992. 2.15.	대통령령 제1358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관계법령 정비를 위하여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신설
39	1992. 8.31.	대통령령 제137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시설 공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기획담당관과 건설관리담당관으로 확대개편 • 청송제2교도소 신설 • 서울남부·의정부·울산보호관찰지소 신설 • 서울외국인수용소와 의정부·대산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국에 조사2과, 김포·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40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5항)	•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명칭변경
41	1993. 6.28.	대통령령 제139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보호국장·교정국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법무실·검찰국·보호국(소년과 제외) 각 과장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법무실의 법무·송무·국제법무심의관을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보함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기획과장 및 교관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연구위원 중 3인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 또는 검사"로 보함
42	1994. 1.17.	대통령령 제141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요계장의 직위를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게 함(운영지원과 1, 기획예산담당관실 1, 교정과 1, 출입국기획과 1)
43	1994. 2. 5.	대통령령 제1415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공보관을 이사관·부이사관 2·3급 별정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 • 보호국의 검찰사무직중 조사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도직), 관찰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호관찰직)을 복수직화 • 울산구치소 신설
44	1994. 4.30.	대통령령 제142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의 송무심의관을 송무과로 개편 •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중 검사연구위원(3인)을 폐지하고 그 중 검사장 1인을 감축하며, 나머지 검사 2인은 교관으로 활용함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설치
45	1994. 9.17.	대통령령 제1438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법령정비의 지원 및 통상법률 관계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제법무심의관실에 검사 2인을 증원
46	1995. 3.23.	대통령령 제14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소년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	•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47	1995. 4.12.	대통령령 제145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요 과장 및 과장급 담당관의 직위를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정원 중 3인(운영지원과장·교정과장·출입국기획과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주요 기획사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을 확대하여 5급 정원 중 11인(공보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시설기획담당관실·건설관리담당관실·법무과·검찰제1과·검찰제2과·보호과·소년과·보안제1과·출입국심사과)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48	1995. 7. 8.	대통령령 제147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출입국심사과를 입국심사과로 개편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구·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직급 하향조정(별정직 3급상당→별정직 4급상당)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 3과 신설
4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정국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복수직화
50	1996. 6.29.	대통령령 제150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보호국의 소년과를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로 개편 •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 및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를 각각 신설 • 대전보호관찰소에 홍성지소를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본부의 4급정원 3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0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하고 소속기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2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정원 11인을 감축하여 그중 9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
51	1997. 3.20.	대통령령 제153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기능직공무원 25인 감축
52	1997. 8.13.	대통령령 제1545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소년제1과장 직급을 3·4급 복수직급화 • 대전교도소강경구치지소를 신설하고, 인천구치소 부소장을 신설 • 대구보호관찰소에 김천지소, 대전·수원보호관찰소에 사무과·관호과 신설 •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장소로 축소개편하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며, 대구·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과를 두고,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보호관찰, 계호, 출입국심사인력 등 222인 증원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53	1997. 8.13.	대통령령 제15462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실무·기획인력조정 및 복수직급화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 (6·7급 26인 감, 5급 9인 증)
54	1997. 8.23.	대통령령 제15467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 4인(1급 2, 2급 2) 신설
55	1998. 2.28.	대통령령 제15711호 법무부령 제4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 각부처의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기존 직제의 전문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법무부령)을 제정 • 시설기획담당관실과 건설관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시설관리담당관실로 개편(정원 34인 → 26인) •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정원 7인) 신설 • 국제법무심의관실을 국제법무과로 명칭변경하고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변경 • 본부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13인 감축 • 법무연수원 자료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를 기획과로 이관(정원 7인 감축)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의 관리국·교화국 폐지
56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5호 법무부령 제4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에 상임연구위원 1인 증원(2급)
57	1998. 7. 1.	법무부령 제46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58	1998.12. 7.	법무부령 제4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보안제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 출입국관리국 기록관리과를 출국심사과로 명칭변경
59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6호 법무부령 제4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 대구구치소 신설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조정
60	1999. 5.24.	대통령령 제16337호 법무부령 제4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 소년분류심사원의 관호과를 교무과로 명칭변경
61	1999.12. 2.	법무부령 제48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 출장소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62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	•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하여 교정심의관·교정연수부장·천안개방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63	2000. 3. 7.	대통령령 제16748호 법무부령 제49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및 보호국 조사과 폐지 • 보호관찰소 서울서부·수원성남·부산서부지소 신설 • 대덕지원을 대덕소년원으로 승격
64	2000.11.20.	대통령령 제17003호 법무부령 제49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으로 이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 변경 • 기획검사 설치 근거규정 신설
65	2001. 3.29.	대통령령 제17163호 법무부령 제50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로 명칭 변경
66	2001. 4.23. 2001. 4.24.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령 제5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실에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 대구·대전·안양·광주·전주·마산·의정부·춘천교도소에출정과 신설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67	2001. 9.29. 2001.10.10.	대통령령 제17370호 법무부령 제5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신설 •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이전하고, 여주교도소로 명칭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신설
68	2002. 3.25. 2002. 3.30.	대통령령 제17549호 법무부령 제5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 •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에 따른 45인 증원 및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본부 공보관실 소속 촬영기사의 직급을 7급상당에서 6급상당으로 상향조정
69	2002. 5.27. 2002. 6. 8.	대통령령 제17610호 법무부령 제5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서울소년원에 창업지원과 신설 •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실무인력 50인 증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인력 16인 증원 • 광주 및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 4급)
70	2002. 7.10. 2002. 8. 9.	대통령령 제17664호 법무부령 제5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안산의료소년원 신설(2002. 10. 1.부) • 청주여자교도소를 확장함에 따라 계호인력 6인 증원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71	2002. 8.16.	대통령령 제17715호 법무부령 제5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 • 본부 교화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로 정함
72	2002.11. 9.	법무부령 제52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설
73	2003. 5.15.	법무부령 제53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장관정책보좌관 신설 -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인 -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74	2003. 7.25. 2003. 8.22.	대통령령 제18054호 법무부령 제5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신설 및 이에 따른 소요인력 6인 증원
75	2003. 9.29.	대통령령 제1810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 개방형직위 중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를 출입국관리국장 직위로 대체 지정하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직업훈련교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76	2003.12. 3.	대통령령 제181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2004. 1. 1.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신설 • 출입국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원 43인 증원
77	2003.12.30. 2003.12.31.	대통령령 제18195호 법무부령 제5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충주구치소와 포항구치소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20인 증원 • 창원소년원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5인 증원
78	2004. 1.29. 2004. 2. 9.	대통령령 제18252호 법무부령 제54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 신설 및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4인 증원 • 보호관찰전담인력 45인 및 구치소·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100인 증원
79	2004. 2. 9. 2004. 2.28.	대통령령 제18275호 법무부령 제5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법무부 본부의 정책·기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의 6·7급 정원 중 13명을 5급으로 조정 • 법무부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7급 정원 중 58명을 6급으로 조정
80	2004. 3.22.	대통령령 제18328호 법무부령 제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밑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인사·조직 및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의 분장업무를 정함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81	2004. 5.24. 2004. 6.12.	대통령령 제18399호 법무부령 제5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59인 증원 • 계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원된 실무인력 92인 증원
82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감찰관을 신설하고, 일부보호감호소 및 소년교도소의 명칭을 변경 • 상사실무인력 및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하여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보강
83	2005. 3. 2. 2005. 3.24.	대통령령 제18729호 법무부령 제5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록연구사 6급 1인 증원 •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범위 안에서 직급조정 - 본부 : 5급 8명 증원, 6급 6명, 7급 2명 감축 - 소속기관 : 6급 49명 증원, 7급 49명 감축
84	2005. 4.15. 2005. 5. 2.	대통령령 제18876호 법무부령 제5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신설하며, 홍보관리관(구 공보관) 설치 및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실로 명칭변경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인(4급 1인, 5급 2인)을 증원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2005. 7. 4.부)
85	2005. 7. 4.	법무부령 제5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150인)(2005. 8. 15.)
86	2005. 8.12.	대통령령 제18997호 법무부령 제57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05년도 소요정원 3인(건축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보 1) 및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인(검사 1, 전산주사 1) 증원하고 공무원임용령중 일부개정(2005. 5. 6.)으로 "부이사관", "기술서기관"으로 직군·직렬 통합(검찰사무직 제외) •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 기관 폐지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87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6호 법무부령 제5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 밑에 국적난민과와 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의 분장사무에 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중 27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5급 13, 6급 38, 7급 50, 8급 83, 9급 74, 기능직 18)과 외국국적 동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인력 6인(4급 1, 5급 2, 6급 2, 7급 1)을 증원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88	2006. 5. 3.	대통령령 제19465호 법무부령 제58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과 법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무실의 인권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권국에 인권정책과등 3개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 13인(2·3급 1, 3·4급 1, 3·4급 또는 검사 1, 4·5급 2, 4·5급 또는 검사 1, 5급 3, 6급 2, 7급 1, 기능10급 1)을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폭주로 야기되는 외국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로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민원처리 실무인력 30인(5급 1, 6급 5, 7급 8, 8급 9, 9급 6, 기능10급 1)을 증원
89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8호 법무부령 제58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경비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교정공무원 821인(4급 4, 5급 4, 6급 85, 7급 127, 8급 303, 9급 298)을 증원하고, 7급 정원 42인을 6급으로, 8급 정원 42인을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담당 인력 6인(5급 4, 7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에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교정국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 하는 등 4개 구치지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90	2006. 6.30.	대통령령 제1959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91	2006. 8. 3.	법무부령 제59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공포, 2006. 7. 1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의 개방형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92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3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보화담당부서의 기능 강화 및 필요인력 증원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94	2007. 5. 4. 2007. 5.10.	대통령령 제20048호 법무부령 제6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5인(고위공무원단 2, 3·4급 1, 4급 3, 4·5급 2, 5급 8, 6급 11, 7급 5, 기능직 3)을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 전담인력 28인(5급 2, 6급 6, 7급 7, 8급 8, 9급 5)을 증원하고 감사관을 폐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감찰·감사조직을 통합하여, 감찰관 밑에 감찰기획관 및 감사기획관을 두며,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성과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성과기획조정관 밑에 고객만족팀을 신설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소속과 명칭을 인권국 및 여성정책과로 바꾸며,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교정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인력 400인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관리인력 등 33인을 직제에 반영하며 교정기관의 수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송교도소와 광주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95	2007. 7.23.	대통령령 제20180호 법무부령 제61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국의 업무조정과 기관폐지 및 신설 및 인력재배치(광주소년분류심사원 등 7개 소년보호기관을 폐지하고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남는 인력 213명 중 212명은 교정, 보호관찰 등에 재배정하고 1명은 감축) 등을 반영하는 한편, '07년도 3/4분기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176명(보호 127, 교정 25, 출입국 16, 감사 8명)을 반영
96	2007. 8.22. 2007. 9.13.	대통령령 제20236호 법무부령 제61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변인제 도입에 따라 홍보관리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대변인의 기능 규정
97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0호 법무부령 제6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수용자의 인권신장, 새로운 교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 교정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사무에 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고 필요 인력을 소속기관 정원에서 법무부로 재배치(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6, 6급 9, 7급 6, 기능10급 3) 하는 한편, 「상법」의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
98	2008. 2.29. 2008. 3. 3.	대통령령 제20674호 법무부령 제6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책홍보관리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하고,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 • 정책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장관 직속 대변인 밑으로 재편하고, 재정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혁신인사기획관은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창의혁신담당관실로 이관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질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총괄·추진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4급·검사 1, 5급 2, 6급 2, 기능직 1)을 신설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각 과를 팀으로 변경하고,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한편, 법무실·보호국·인권국·교정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아래의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의 수를 7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장)에서 4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치료감호소장)로 조정 •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도록 일반직(3·4급)으로 되어 있는 인권정책과장의 직급을 일반직(3·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기획관(3·4급)을 폐지한 후 정책기획평가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4급 정원 1명은 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하여 신설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정원으로 활용하되, 서기관 또는 교정관 정원 1명을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변경함 •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
99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4호 법무부령 제6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도소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투경찰·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규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교정공무원 118명(7급 24, 8급 47, 9급 47)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본부장의 분장사무 중 수형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교화팀장의 분장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된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관련 사무를 사회복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교정본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100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직 5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5급으로, 기술직 6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6급으로 각각 복수직화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9호 법무부령 제65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재배정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인권국의 구조지원과의 명칭을 인권지원과로 변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기능을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인권국 인권지원과로 이관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 설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에 따른 결정전조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인권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직범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인권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교정기획팀장 수행기능 중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기능을 수용기획팀장에게 이관 • 서울지방교정청에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관리과를 신설 • 서울소년원의 하부조직 중 기능10관 등에 따라 업무가 축소된 창업지원과를 폐지한 후 소년보호교육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정보관리과 신설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해소를 위해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 지역에 7개의 보호관찰지소를 신설 • 감찰기능 수행강화를 위해 정원 4명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감찰담당관실로 이체, 치료감호소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원 1명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
102	2009. 1.29.	법무부령 제65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인권국장의 보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 직위를 자율 직위로 변경,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대체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03	2009. 3.18. 2009. 3.19.	대통령령 제21350호 법무부령 제6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한 경우를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보호관찰 가해제의 취소결정 등으로 구체화
104	2009. 5.25.	대통령령 제21502호 법무부령 제66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을 법질서담당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담당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법조인력정책과를 법조인력과로 명칭 변경 • 공공형사과를 공안기획과로 명칭 변경 • 사회보호정책과를 보호법제과로, 소년보호과를 소년과로, 법문화진흥팀을 법교육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여성아동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권정책과, 인권지원과를 인권구조과로, 인권옹호과를 인권조사과로 변경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팀을 과로 변경, 교육교화팀 폐지, 기능을 사회복귀과로 이관, 경비정책팀 폐지, 보안과로 기능 이관, 외국적 동포팀 폐지, 기능을 사회통합과로 이관, 국제이민협력팀 폐지, 기능을 출입국심사과로 이관, 급증하는 국적민원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실무인력 5명(5급 1, 6급 2, 7급 2) 증원 •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설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등 8개과를 설치, 운영인력 110명(3·4급 1, 5급 8, 6급 16, 7급 18, 8급 45, 9급 15, 기능 7) 증원 • 8호 처분 여자 소년원생의 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10명(6급 4, 7급 2, 8급 4) 증원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 및 현장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영덕·밀양·남원보호관찰지소를 신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전담 수행인력 61명(6급 19, 7급 21, 8급 21)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7명(5급 1, 6급 2, 7급 2, 8급 2) 증원, 출입국관리기관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동향조사인력 40명(6급 7, 7급 20, 8급 13)과 출입국심사인력 37명(7급 14, 8급 16, 9급 7) 증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게 변경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05	2009. 7. 6.	법무부령 제67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부서명칭을 핵심업무가 부각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 지방교정청의 5급 과장 직위와 소속기관의 3·4급 또는 4·5급 과장 직위를 상호 이체 •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1통역지원을 위해 천안소년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폐지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 중복인력을 전환·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현장 밀착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106	2009. 7.17.	법무부령 제6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삭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107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6호 법무부령 제68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영월·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134명과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국가송무시스템 전담인력 3명 등 총 372명을 증원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45명을 일반직공무원 45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108	2010. 8. 2.	대통령령 제22313호 법무부령 제71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등 기구 신설과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집행인력 55명 등 총 109명 증원
109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3호 법무부령 제7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인력 18명,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정상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 78명, 출입국 안산출장소 및 천안출장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8명 등 총 339명 증원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10	2011. 5. 4. 2011. 5.11.	대통령령 제22917호 법무부령 제74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질서담당관실(기획조정실)과 법교육팀(범죄예방정책국) 통폐합, 법질서선진화과(범죄예방정책국) 신설(9. 1. 시행) •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고객업무 분장, 성과고객팀 신설(9. 1. 시행) • 영등포구치소·영등포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로 명칭변경 •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1. 4. 16.)에 따른 본부 보호관찰과 성폭력범 신상공개 인력 2명,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16명,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21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강명령 집행인력 7명, 구미·고양 등 2개 신설 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4명 등 총 40명 증원 ※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 감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개방형직위에서 공모형직위로 변경,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총액인건비제 시행(2014. 4. 30.까지)
111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7호 법무부령 제74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인력 3명 증원
112	2011. 8.23.	법무부령 제7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4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4, 기능10급 44 → 9급 10, 8급 37, 7급 1)
113	2011.10.10. 2011.10.13.	대통령령 제23211호 법무부령 제7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신설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를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명칭 변경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 분류심사과를 대구구치소 및 청주여자교도소 분류심사과로 이관(2012. 1. 1. 시행) •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시행인력 4명, 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 관리인력 2명, 보호관찰과 성충동약물치료 집행 등 중간관리 인력 1명, 경비교도대 대체 계호 인력 235명, 교정기관 의료처우 개선인력 16명, 성폭력 범죄자 치료·재활 인력 6명, 신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운영인력 9명,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담인력 4명, 신설 서울역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1명, 김포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에 따른 운영 및 심사인력 5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심사인력 3명 등 총 286명 증원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천안개방교도소장 : 고위공무원 → 4급,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3·4급 → 고위공무원, 창원교도소장 : 4급 → 3·4급으로 직급 조정(2012. 1. 1. 시행) • 본부 대변인실 "온라인대변인" 지정 근거 신설
114	2012. 3.26. 2012. 3.30.	대통령령 제23675호 법무부령 제7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서부·북부보호관찰지소 보호관찰소 승격, 울산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 신설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신설 • 재정업무 담당인력 2명, 전문 감사인력 1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및 관리인력 1명, 교화방송센터 운영 인력 1명, 남북법률통합 실질화사업 추진인력 2명 등 7명 증원 • 조사인력 10명, 전자감독 확대 시행인력 11명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 인력 24명 등 45명 증원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인력 17명, 4부제 개편 소요 인력 28명, 교정직 직급구조 개선 인력 2명 등 47명 증원 • 지문관리점담 운영인력 6명, 울산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따른 필요 인력 3명, 복수국적 허용 심사인력 2명,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심사인력 2명,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심사인력 21명 등 34명 증원 • 급여인력 감축 30명 감원 • 체류조사과 → 이민조사과로 명칭변경 • 사회통합과 → 이민통합과로 명칭변경
115	2012. 6.10. 2012. 7.12.	대통령령 제23857호 법무부령 제7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공항 심사인력 10명 증원
116	2012. 9.10. 2012.10.22.	대통령령 제24116호 법무부령 제7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발찌 비상출동 전담인력 43명,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인력 19명, 재범방지를 위한 밀착 보호관찰 인력 75명,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 증원
117	2013. 1. 8.	법무부령 제78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28 → 7급 4, 8급 17, 9급 7)
118	2013. 3.23.	대통령령 제24115호 법무부령 제78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성과고객팀 폐지 • 정보팀 → 이민정보과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 폐지 및 총무과 신설 • 공통지원부서 정원 6명 감축(5급 1, 6급 2, 7급 1, 8급 1, 기능9급 1)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19	2013. 5.22. 2013. 6.12.	대통령령 제24537호 법무부령 제79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과천시로 변경 •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등 본부 정원 15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5명 증원
120	2013. 9.17. 2013.10. 1.	대통령령 제24732호 법무부령 제80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여성아동인권과 신설 •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하부조직 중 '서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춘천·전주·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신설 • 정부3.0 전담 및 협업과제 추진 인력 등 본부 정원 11명, 소속기관 정원 26명 증원 • 사무기능직렬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16 → 7급 6, 8급 7, 9급 3) • 안전행정부(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정원 이체(기능8급 △1)
121	2013.11. 5. 2013.11.13.	대통령령 제24829호 법무부령 제8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신설 • 정읍·상주교도소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정원 257명 증원
122	2013.12.12.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령 제8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능직공무원 폐지 및 일반직 전환 : 1,098명(7급 25, 8급 56, 9급 1,017) •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별정직 전환 : 2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 160명 • 통합정원 감축 95명(5급 3, 6급 15, 7급 19, 8급 24, 9급 34) • 홍보 담당 인력 1명(4·5급) 증원
123	2014. 4. 1.	법무부령 제81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 →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 –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 총액인건비제 운영 출입국관리사무관(12명) 존속기한 연장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9급 9명 →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24	2014. 8.27. 2014. 9. 4.	대통령령 제25565호 법무부령 제8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부산·광주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동부·울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등 본부 7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49명 정원 증원 및 직급 상향 55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임기제) 전환 : 5명(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에 '청원군'을 삭제
125	2015. 1. 6.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령 제8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신설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신설 • 출입국관리인력 22명,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37명 증원 • 소속기관 정원 본부 이체(6급 1, 7급 1)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2, 6급 11, 7급 14,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119명 → 행정직군 1명, 기술직군 118명 • 개방형직위 규정 정비(국장급 2개 직위 → 실·국장급 7개 직위 범위내)
126	2015. 2.26. 2015. 2.27.	대통령령 제26117호 법무부령 제83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설 : 대외연수과, 운영지원과 신설, 과명칭 변경(교정연수부 운영과 → 교정훈련과) 및 기구폐지(연구위원△1, 연구개발팀△1)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관리인력 6명, 용인분원 신설 인력 13명 등 소속기관 정원 19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 → 4·5급 2명, 소속기관 5 → 4·5급 1명, 7 → 6급 31명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 → 사범과로 변경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신설
127	2015. 5.26. 2015. 5.28.	대통령령 제26263호 법무부령 제8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 조사대 신설 •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특정범죄자관리과 인력 6명 등 본부 정원 7명 및 교정기관 의료인력 4명, 소년보호기관 호송인력 9명, 특정범죄자관리 인력 23명 등 소속기관 정원 57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 → 4·5급 2명, 소속기관 4 → 3·4급 1명, 5 → 4·5급 4명, 6 → 5급 13명, 7 → 6급 31명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25명 → 행정직군 4명, 기술직군 21명 • 교정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8명 → 13명)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28	2015.11.30. 2015.12. 1.	대통령령 제26675호 법무부령 제85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본부 정원 1명 증원(4·5급) • 소년보호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6명 → 7명) • 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난민과장, 치료감호소 신경과장·특수치료과장 → 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129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2호 법무부령 제8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신설 • 국고손실 환수송무 인력 2명 등 본부 정원 2명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인력 2명,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심사 인력 66명,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77명 증원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3, 6급 15, 7급 9,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32명 →행정직군 2명, 기술직군 30명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 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 → 평택출장소로 변경
130	2016. 2.29. 2016. 3. 2.	대통령령 제27001호 법무부령 제8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대전·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아동인권보호 전담 본부 정원 1명 및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 인력 12명,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신설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21명 증원 • 기구 신설,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16명
131	2016. 5.10.	대통령령 제27134호 법무부령 제86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 김해·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김해공항·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각각 명칭변경 • 감찰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교정기관 수용자 의료 개선 인력 4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인력 4명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 증원
132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3호 법무부령 제8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 • 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직업훈련과→보안과·사회복귀과로 통폐합 • 교정본부 및 교정기관 인력재배치 337명 • 직급상향 20명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33	2016.10.11.	대통령령 제27540호 법무부령 제87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인력 12명,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인력 20명, 크루즈 심사 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69명 증원
134	2016.12.27. 2016.12.30.	대통령령 제27685호 법무부령 제8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통합정원 감축 85명 • 관리운영직군 28명 일반직 전환 •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 직렬 조정 8명
135	2017. 2.28.	대통령령 제27876호 법무부령 제88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민원 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보호관찰소 치료명령제도 운영 인력 37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30명 등 소속기관 정원 96명 증원 •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28명 • 한시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존속기한 연장(2017. 2. 28. → 2019. 2. 28., 2년) 및 정원 1명 감축
136	2017. 4.28.	법무부령 제90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 존속기한 연장(2017. 4. 30. → 2020. 4. 30., 3년)
137	2017. 5. 8. 2017. 5.24.	대통령령 제28021호 법무부령 제9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한시조직(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존속기한 연장(2017. 5. 31. → 2019. 5. 31., 2년)
138	2017. 6.20.	대통령령 제28118호 법무부령 제90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성동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26명, 소년원 정신질환 소년원생 교육 인력 15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 인력 14명 등 소속기관 정원 79명 증원 •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1명
139	2017. 8. 1.	대통령령 제28225호 법무부령 제9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3개 실국장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창조행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40	2017.10.20.	대통령령 제28396호 법무부령 제9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장급 이하 39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
141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2호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 심사14, 심사15과 신설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기구 신설(1국 4과) 인력 198명 증원
142	2017.11.16.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임기제 보임범위 확대(23명 → 45명)
143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0호 법무부령 제9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존속기한 연장(2017. 12. 31. → 2019. 12. 31., 2년)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기제 정원 1명 신설
144	2018. 2.20.	대통령령 제28664호 법무부령 제91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및 존속기한(2개 부서) 연장 – 정규화 : 대전 및 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 관리과 – 존속기한 연장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2018. 2. 28. → 2020. 2. 28., 2년)
145	2018. 3.30.	대통령령 제28736호 법무부령 제92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관찰과 신설 • 상사분야 법령 정비 등 본부 정원 11명 및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107명,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98명, 소년원생 교육·관리 인력 50명 등 소속기관 정원 263명 증원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법질서선진화과 → 보호정책과) • 소속기관 하부조직 개편 – 신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호송과 – 폐지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구개발과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존속기한 연장(2018. 4. 30. → 2020. 4. 30., 2년) 등
146	2018. 4. 9.	법무부령 제92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감찰관 직위를 추가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47	2018. 5. 8. 2018. 5.10.	대통령령 제28870호 법무부령 제9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 -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8	2018. 5.31.	법무부령 제92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법무심의관 직위를 추가
149	2018. 6.26.	대통령령 제28994호 법무부령 제9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 - 보호법제과 → 치료처우과 - 소년과 → 소년보호과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 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50	2018.10. 2. 2018.10. 4.	대통령령 제29207호 법무부령 제93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인력 30명 증원 • 신설기구 정규화(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관리과)
151	2018.12. 4.	대통령령 제29326호 법무부령 제94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기관 출입국 체류센터 관리 인력 5명 증원
152	2018.12.31.	대통령령 제29442호 법무부령 제9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인력 30명,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난민심사 인력 21명 등 소속기관 정원 51명 증원 • 검찰국 과장 2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일반직 또는 검사) • 평가대상 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평가기간 연장(2019. 2. 28. → 2020. 2. 28., 1년) 등
153	2019. 2.26.	대통령령 제29569호 법무부령 제94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청주소년원 의무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신설 • 수용자 경계강화, 야간근무교대 개선 등을 위한 인력 375명 증원 • 평가대상 정원 320명 추가
154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3호 법무부령 제95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및 신설기구 평가대상에 추가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기구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방형직위 변경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 → 신경과장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55	2019. 7.29.	법무부령 제9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를 법무교육과로 명칭변경
156	2019. 8.13.	대통령령 제30040호 법무부령 제95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 공안기획과를 공공형사과로 명칭변경 • 법무부 검찰국 내 공안사건 관련 업무내용 수정 • 소속기관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전자감독과로 명칭변경 •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 폐지, 호송과 신설
157	2019.12.24. 2019.12.31.	대통령령 제30275호 법무부령 제9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를 신설기구평가대상에서 제외 • 교정기관 의무직 4급 공무원 정원축소 및 4·5급 공무원 정원 확대
158	2020. 2.25.	대통령령 제30451호 법무부령 제96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권침해 조사인력, 국제분쟁 대응인력 등 본부 인력 9명, 야간교대근무 인력 등 소속기관인력 519명 증원 • 강원북부교도소,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의정부·천안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신설, 소속기관 하부조직 14과 신설 등
159	2020. 4.28.	대통령령 제30634호 법무부령 제97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 출입국 소속기관 총액인건비활용 관련 존속기한 3년 연장
160	2020. 6.30.	법무부령 제9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신설
161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1호 법무부령 제9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송무심의관 신설, 행정소송과 이체 신설 •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 직제에 규정되어 있던 실·국장 보좌기관 관련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으로 이관
162	2020.10. 7.	대통령령 제31093호 법무부령 제98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제도 운영인력 8명 증원 • 20년 3분기 소요정원으로 야간교대근무 인력 등 80명 증원
163	2020.12.29. 2020.12.30.	대통령령 제31302호 법무부령 제99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년수용자 관리, 전자감독 관련 평가대상 정원 68명을 대상에서 제외 • 체류외국인 관련 평가대상 정원 90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 •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에 따라 '특정 범죄자 전자감독' 용어 삭제 • 부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하부조직 명칭 변경 교육지원과 → 법체험연수과 교육운영과 → 비행예방교육과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64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 사무 기타 → 사무와 그 밖의 - 수발 → 접수·발송 - 피복 및 급양 → 의복 및 음식 - 제증명 → 각종 증명 - 기타 형사정책 → 그 밖에 형사정책 - 수용관리·교정·교화·교화 기타 → 수용관리·교정·교화나 그 밖의
165	2021. 2.25 2021. 3. 2.	대통령령 제31476호 법무부령 제10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력 등 본부 인력 5명 증원 • 전자감독 전담인력 등 196명 증원, 대전소년원 직급상향(5급2→4.5급2) • 치료감호소 하부 조직 명칭 변경 특수치료과 → 정신재활치료과 • 전자감독 대응 인력 101명 등 평가대상 정원 201명 추가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조사과 신설 •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연수과 평가대상에서 제외
166	2021. 7. 1.	법무부령 제101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사항 신설 • 벤처형조직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신설 • 벤처형조직 소관 이관 및 부서명칭 변경 기획조정실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데이터과 • 공업직 정원 조정 및 전환 배치
167	2021.11.23.	대통령령 제32139호 법무부령 제101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체복무요원 교육시설 운영·관리 인력 등 본부 정원 4명 증원 •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야간교대인력 135명 등 소속기관 정원 137명 증원 • 검찰공무원 정원 4명 법무연수원으로 이체 • 교도소 등 교대근무인력 관련 평가대상 정원 156명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정규직화 • 대전소년원 하부 조직 명칭 변경 교무과 → 의료재활과
168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법무부령 제101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데이터분석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실장 분장사무 조정 • 데이터 관련 업무 전담 본부 인력 2명 증원 • 법무부 본부 평가대상 조직(양성평등정책담당관) 평가기간 연장(2021. 12. 31. → 2023. 12. 31.) 등 • 소년수용자 관리 평가대상 정원 47명을 대상에서 제외 • 전자감독, 소년보호관찰 관련 평가대상 정원 99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 • 공업직 전환 배치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69	2022. 2.22.	대통령령 제31476호 법무부령 제10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 인력 등 3명 증원 • 수용자 처우개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 인력 등 168명 증원 • 법무부 정원 8명을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정원 이체 • 일부 보호관찰소 및 출입국·외국인관성의 구역과 위치를 현행화 등 반영
170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신설조직의 성과평가결과의 평가기간란 삭제
171	2022. 5.31.	법무부령 제102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예방데이터과 및 직급상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 5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등 반영
172	2022. 6. 7.	대통령령 제32668호 법무부령 제102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사정보관리단장, 인사정보1담당관, 인사정보2담당관 신설 및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 증원
173	2022. 6.27.	대통령령 제32718호 법무부령 제103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검사 5명) 증원 •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
174	2022. 8. 4.	법무부령 제103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직급을 조정하여 배정 등 반영 • 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조사과 미설치 기관 업무분장 기준 조정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구역 조정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기관 확대(6개→18개)
175	2022. 9.30.	법무부령 제103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난민심의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9월 30까지 2년 연장 반영
176	2022.11. 1.	대통령령 제32969호 법무부령 제103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거창구치소 신설 및 제주교도소 증축에 따른 필요인력 103명 증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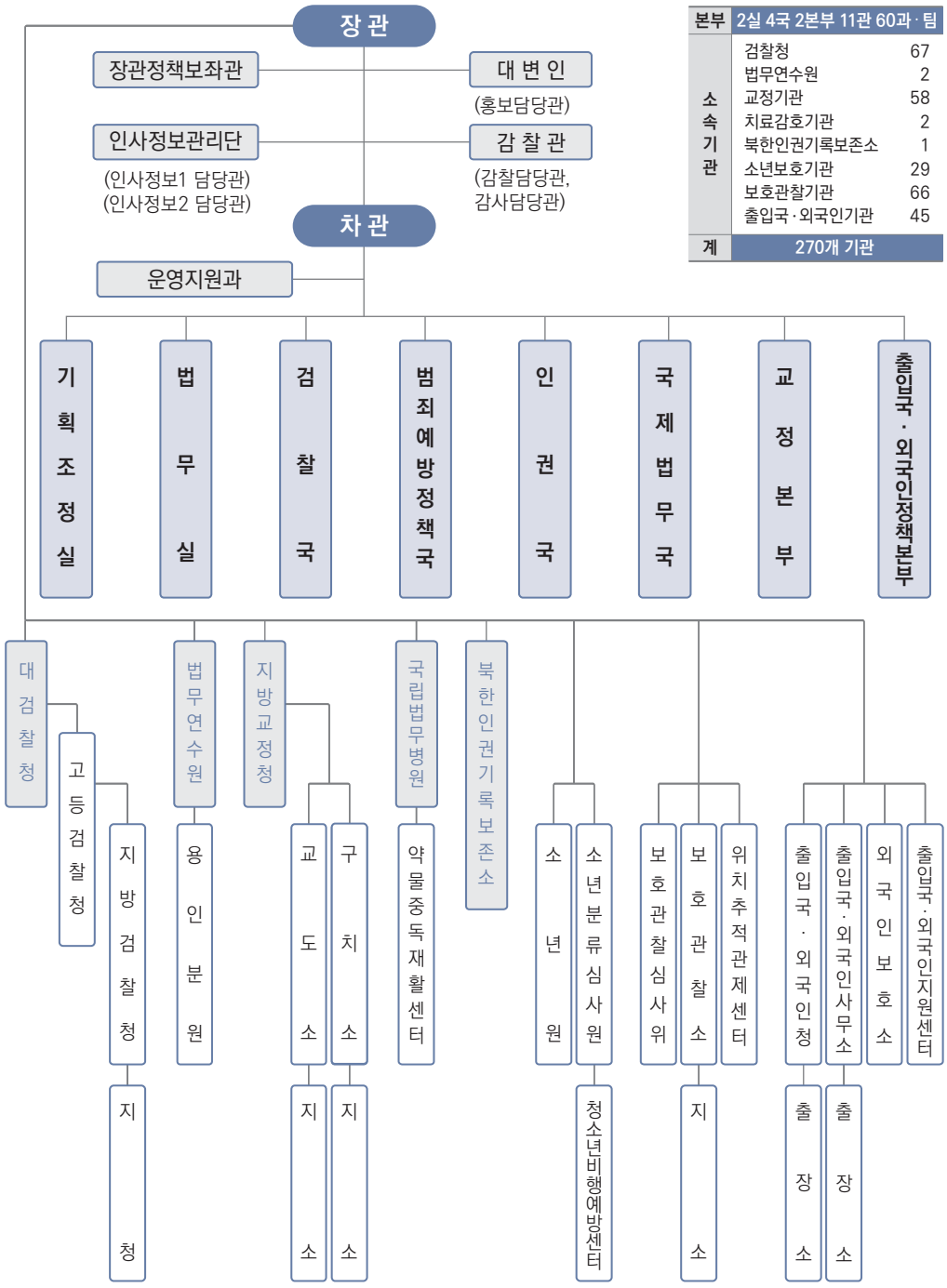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77	2022.12.29.	대통령령 제33165호 법무부령 제10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법률구조기구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법무부 소속기관에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동의 교대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 131명 증원과 법무부의 정원 7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 등 각각 감축 반영 • 평가대상 정원 평가기간 연장 체류외국인 관리 등 154명→1년 연장 성인보호관찰 52명→1년 연장 소년수용자 관리 42명→2년 연장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50명→1년 연장 항만 국경관리 33명→2년 연장
178	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5호 법무부령 제10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 필요 인력 1명, 사할린동포 국적 판정 심사 업무 수행 필요 인력(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1명 증원 •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 필요한 인력 1명, 서울구치소를 증축하면서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운영 인력 4명 증원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증원 • 평가대상 조직인 법무실 송무심의관·국제분쟁대응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 폐지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
179	2023. 6. 8.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기구 신설 - 법무부(4팀) : 존속기한 2026년 5월 31일인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마약사범재활팀·특별점검팀,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인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소속기관(17팀) : 존속기한 2026년 5월 31일인 각 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4개, 주요 교도소·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11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 2개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 상향조정 - 법무부 : 16명 - 교정기관 : 11명 - 출입기관 : 11명 • 관리운영직군 전환 - 교정기관 관리운영직군 4명 → 기술직군 - 소년보호기관 관리운영직군 2명 → 기술직군 - 출입기관 : 관리운영직군 1명 → 행정직군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80	2023. 8. 8.	대통령령 제33661호 법무부령 제105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기록관 운영 인력 5명, 국립법무병원에 신축 병동 간호인력 12명 증원 • 국제법무국 신설 – 기구 신설 : 국제법무국장, 국제법무지원과 – 인력 증원 : 8명 – 명칭 변경 : 국제법무과→국제법무정책과, 국제분쟁대응과→국제투자분쟁과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지원 사무 분장 조정 – 인권정책과장 → 통일법무과장
181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7호 법무부령 제10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 특례규정 삭제하고, 훈령등으로 정하도록 함 • 과장급 개방형직위 개수 15개를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에 추가 • 의무직렬 정원 전체를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확대 •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 • 본문 직급 순서를 행정직군-과학기술직군에서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변경
182	2023.12.26.	대통령령 제34025호 법무부령 제106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증원 • 보호관찰기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제 및 관리·감독 필요 인력 20명, 교정기관에 증축 수용동 교대근무 인력 23명, 출입기관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필요 인력 55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 증원 및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4명 증원 • 인천·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 통합활용정원에 따른 감축 – 본부 7명, 소속기관 103명 • 법무연수원 정원 2명을 대검찰청으로 이체 • 법무부 총액인건비제 기구인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정원 2명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 • 평가대상 기구·인력 평가대상 연장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평가기간 1년 연장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등 8개 분야 514명 평가기간 1년 연장 – 체류외국인 관리 90명 평가대상에서 제외(정규화)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지방자치단체 명칭, 관할구역 변경 – 명칭 변경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할구역 변경 :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특별자치도 편입 • 분장사무 용어 정비 : 영치금품 → 보관금품 등
183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31호 법무부령 제10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 변호사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증원 • 국가 송무의 안정적인 총괄과 선진화된 송무체계의 구축·유지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만 보하던 송무심의관을 검사로도 보할 수 있도록 보임범위 확대 • 부산소년원에 신축 생활관 감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터미널 확장에 따른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에 체류관리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 증원 • 교도소·구치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원 117명(7급 51명, 8급 6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51명, 7급 66명)하면서 정원 5명(9급 5명)을 감축
184	2024. 6. 25.	대통령령 제34593호 법무부령 제10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 인권국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 증원 • 마약류 관련 부처 간 협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 국립법무병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확대 •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9급 6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3명(9급 3명)과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
185	2024. 9. 26.	대통령령 제34918호 법무부령 제108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난민심의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시행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관리 등을 위해 직렬 조정 1명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86	2024.12.30.	대통령령 제35114호 법무부령 제108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를 신설기구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 정원 평가결과 반영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등 5개 분야 182명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등 7개 분야 538명 평가기간 연장 • 통합활용정원에 따른 감축 – 본부 7명, 소속기관 102명 • 대전소년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1명(약무주사보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확대

2. 조직도



본부	2실 4국 2본부 11관 60과·팀	
소속기관	검찰청	67
	법무연수원	2
	교정기관	58
	치료감호기관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소년보호기관	29
	보호관찰기관	66
	출입국·외국인기관	45
계	270개 기관	

3. 정원 변동표

구분 \ 연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총 계	4,473	4,621 (+148)	4,569 (−52)	4569	4,569	4,504 (−65)	4,504	4,474 (−30)	4,556 (+82)	4,083 (−473)	3,862 (−221)	3,862	3,952 (+90)	4,403 (+451)	4,438 (+35)	4,872 (+434)	4,976 (+104)	5,197 (+221)	5,354 (+157)	6,440 (+1,086)	6,677 (+237)	6,905 (+228)
본 부		148	148	148	148	83 (−65)	83	53 (−30)	53	68 (+15)	68	68	68	170 (+102)	177 (+7)	199 (+22)	189 (−10)	189	232 (+43)	269 (+37)	314 (+45)	318 (+4)
검찰청 — 검 사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90 (+27)	190	190	190	190	190	220 (+30)	220	243 (+23)	243	300 (+57)	300	300	300
검찰청 — 일반직등	586	586	534 (−52)	534	534	534	534	534	589 (+55)	589	589	589	589	904 (+315)	903 (−1)	996 (+93)	1,089 (+93)	1,089	1,089	1,273 (+184)	1,338 (+65)	1,388 (+50)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3,372	3,372	3,372	3,372	3,372	형무소 3,372	3,372	3,372	3,372	2,914 (−458)	2,790 (−124)	2,790	2,840 (+50)	2,837 (−3)	2,836 (−1)	3,089 (+253)	3,089	3,229 (+140)	3,229	3,979 (+750)	4,066 (+87)	4,216 (+150)
소 년 원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96 (−30)	96	96	136 (+40)	164 (+28)	164	181 (+17)	181	250 (+69)	250	363 (+113)	397 (+34)	397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49 (+49)	47 (−2)	59 (+12)	116 (+57)	118 (+2)	124 (+6)	148 (+24)
법무연수원	조선형무관학교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형무관학교 129 (−97)	129	129	138 (+9)	138	138	교도관학교 138	138	138	138	138	138

구분 \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총 계	7,035 (+130)	7,568 (+533)	7,526 (−42)	8,024 (+498)	8,257 (+233)	8,556 (+299)	9,589 (+1,033)	9,938 (+349)	10,664 (+726)	10,995 (+331)	11,538 (+543)	13,210 (+1,672)	13,431 (+221)	13,561 (+130)	13,820 (+259)	13,967 (+147)	14,255 (+288)	15,216 (+961)	15,708 (+492)	18,847 (+3,139)
본 부	332 (+14)	256 (−76)	245 (−11)	248 (+3)	210 (−38)	291 (+81)	295 (+4)	295	350 (+55)	355 (+5)	360 (+5)	426 (+66)	420 (−6)	430 (+10)	429 (−1)	429	444 (+15)	444	444	444
검찰청 검 사	300	343 (+43)	343	360 (+17)	377 (+17)	377	417 (+40)	417	473 (+56)	473	473	467 (−6)	497 (+30)	527 (+30)	557 (+30)	587 (+30)	587	667 (+80)	707 (+40)	747 (+40)
검찰청 일반직등	1,388	1,457 (+69)	1,457	1,473 (+16)	1,539 (+66)	1,565 (+26)	1,565	1,866 (+301)	2,024 (+158)	2,161 (+137)	2,309 (+148)	2,996 (+687)	3,165 (+169)	3,266 (+101)	3,372 (+106)	3,489 (+117)	3,647 (+158)	3,904 (+257)	4,067 (+163)	4,886 (+819)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4,312 (+96)	4,772 (+460)	4,753 (−19)	5,179 (+426)	5,292 (+113)	5,554 (+262)	6,474 (+920)	6,474	6,776 (+302)	6,921 (+145)	7,185 (+264)	8,076 (+891)	8,076	8,074 (−2)	8,092 (+18)	8,092	8,092	8,447 (+355)	8,574 (+127)	10,780 (+2,206)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397	427 (+30)	425 (−2)	425	484 (+59)	484	484	532 (+48)	625 (+93)	652 (+27)	676 (+24)	684 (+8)	695 (+11)	695	749 (+54)	749	769 (+20)	998 (+229) 치료감호소 195포함	998	1,047 (+49)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168 (+20)	175 (+7)	166 (−9)	202 (+36)	218 (+16)	218	279 (+61)	279	340 (+61)	357 (+17)	455 (+98)	475 (+20)	492 (+17)	479 (−13)	531 (+52)	531	581 (+50)	621 (+40)	783 (+162)	795 (+12)
법무연수원	138	138	137 (−1)	137	137	67 (−70)	75 (+8)	75	76 (+1)	76	80 (+4)	86 (+6)	86	90 (+4)	90	90	135 (+45)	135	135	148 (+13)

구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20,270 (+1,423)	21,211 (+941)	21,795 (+584)	21,931 (+136)	22,213 (+282)	22,603 (+390)	23,161 (+558)	23,427 (+266)	23,436 (+9)	23,360 (−76)	23,736 (+376)	23,981 (+245)	24,376 (+395)	24,788 (+412)	25,334 (+546)	25,809 (+475)	27,137 (+1,328)	28,067 (+930)	28,262 (+195)	29,091 (+829)
본 부	459 (+15)	467 (+8)	498 (+31)	491 (−7)	479 (−12)	479	488 (+9)	473 (−15)	455 (−18)	446 (−9)	436 (−10)	453 (+17)	453	455 (+2)	455	479 (+24)	507 (+28)	594 (+87)	590 (−4)	605 (+15)
검찰청 검 사	787 (+40)	827 (+40)	867 (+40)	907 (+40)	947 (+40)	987 (+40)	1,037 (+50)	1,087 (+50)	1,137 (+50)	1,207 (+70)	1,287 (+80)	1,287	1,357 (+70)	1,427 (+70)	1,507 (+80)	1,587 (+80)	1,627 (+40)	1667 (+40)	1,752 (+85)	1,847 (+95)
검찰청 일반직등	5,288 (+402)	5,823 (+535)	5,984 (+161)	6,095 (+111)	6,222 (+127)	6,424 (+202)	6,575 (+151)	6,607 (+32)	6,612 (+5)	6,520 (−92)	6,689 (+169)	6,715 (+26)	6,873 (+158)	7,029 (+156)	7,175 (+146)	7,336 (+161)	7,468 (+132)	7,685 (+217)	7,681 (−4)	7,769 (+88)
교 도 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1,254 (+474)	11,515 (+261)	11,784 (+269)	11,778 (−6)	11,898 (+120)	11,901 (+3)	12,165 (+264)	12,216 (+51)	12,287 (+71)	12,245 (−42)	12,245	12,308 (+63)	12,388 (+80)	12,508 (+120)	12,700 (+192)	12,751 (+51)	13,748 (+997)	14,162 (+414)	14,280 (+118)	14,757 (+477)
소 년 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185 (+138)	1,278 (+93)	1,293 (+15)	1,293	1,293	1,354 (+61)	1,354	1,396 (+42)	1,380 (−16)	1,368 (−12)	1,371 (+3)	1,371	1,392 (+21)	1,407 (+15)	1,431 (+24)	1,299 (−132)	1,298 (−1)	1,092 (−206)	1,092	1,102 (+10)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870 (+75)	870	930 (+60)	929 (−1)	937 (+8)	1,006 (+69)	1,062 (+56)	1,099 (+37)	1,060 (−39)	1,068 (+8)	1,154 (+86)	1,266 (+112)	1,282 (+16)	1,331 (+49)	1,390 (+59)	1,476 (+86)	1,551 (+75)	1,619 (+68)	1,619	1,702 (+83)
법 무 연 수 원	148	148	150 (+2)	149 (−1)	147 (−2)	147	156 (+9)	156	99 (−57)	99	99	99	99	99	99	99	105 (+6)	105	105	105
보 호 관 찰 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279 (+279)	283 (+4)	289 (+6)	289	290 (+1)	305 (+15)	324 (+19)	393 (+69)	406 (+13)	407 (+1)	455 (+48)	482 (+27)	532 (+50)	532	577 (+45)	782 (+205)	833 (+51)	1,143 (+310)	1,143	1,204 (+61)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계	29,738 (+647)	30,077 (+339)	30,620 (+543)	30,883 (+263)	30,968 (+85)	31,099 (+131)	31,513 (+414)	32,070 (+557)	32,607 (+537)	33,076 (+469)	33,741 (+665)	34,133 (+392)	34,427 (+294)	34,402 (−25)	34,291 (−111)
본 부	611 (+6)	623 (+12)	630 (+7)	647 (+17)	654 (+7)	656 (+2)	666 (+10)	668 (+2)	679 (+11)	697 (+18)	752 (+55)	763 (+11)	772 (+9)	781 (+9)	789 (+8)
검찰청 검 사	1,942 (+95)	1,942	1,942	1,942	1,942	2,032 (+90)	2,112 (+80)	2,182 (+70)	2,252 (+70)	2,292 (+40)	2,292	2,292	2,292	2,292	2,292
검찰청 일반직등	7,873 (+104)	7,883 (+10)	7,941 (+58)	7,870 (−71)	7,899 (+29)	7,910 (+11)	8,224 (+314)	8,337 (+113)	8,444 (+107)	8,493 (+49)	8,482 (−11)	8,480 (−2)	8,453 (−27)	8,391 (−62)	8,358 (−33)
교 도 소 (구치소 포함)	15,088 (+331)	15,345 (+257)	15,623 (+278)	15,839 (+216)	15,850 (+11)	15,756 (−94)	15,701 (−55)	15,732 (+31)	15,860 (+128)	15,963 (+103)	16,338 (+375)	16,504 (+166)	16,668 (+164)	16,638 (−30)	16,579 (−59)
소 년 원 (분류심사원, 국립법무병원 포함)	1,122 (+20)	1,128 (+6)	1,148 (+20)	1,146 (−2)	1,169 (+23)	1,181 (+12)	1,196 (+15)	1,238 (+42)	1,291 (+53)	1,339 (+48)	1,417 (+78)	1,425 (+8)	1,437 (+12)	1,438 (+1)	1,425 (−13)
출입국·외국인 기 관 (외국인보호소 포함)	1,738 (+36)	1,751 (+13)	1,789 (+38)	1,800 (+11)	1,809 (+9)	1,903 (+94)	1,946 (+43)	2,197 (+251)	2,330 (+133)	2,439 (+109)	2,551 (+112)	2,568 (+17)	2,576 (+8)	2,632 (+56)	2,630 (−2)
법 무 연 수 원	105	105	105	105	107 (+2)	124 (+17)	131 (+7)	130 (−1)	130	130	130	134 (+4)	138 (+4)	135 (−3)	134 (−1)
보 호 관 찰 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1,259 (+55)	1,300 (+41)	1,442 (+142)	1,534 (+92)	1,538 (+4)	1,537 (−1)	1,525 (−12)	1,574 (+49)	1,609 (+35)	1,711 (+102)	1,767 (+56)	1,955 (+188)	2,079 (+124)	2,083 (+4)	2,072 (−11)
북 한 인 권 기 록 보 존 소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1. 훈 령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512	1. 2.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 교과제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한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 역량평가 관련 규정 신설 • 교정공무원 전보 규정 미비점 개선 • 5급 공무원 전보 관련 미비점 보완 • 고난도 근무개소 운영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 • 교정기관 남녀 수용구분에 따른 직원 보직기간 특례 규정 신설 • 법무부 본부 등 응모요건 명시 및 문책전보 미비점 보완	교 정 기 획 과
1513	1. 8.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 국제법무국,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거창구치소 등 신설, 국제법무과, 국제분쟁대응과 폐지 등 조직 변동사항 반영	혁신행정 담당관실
1514	1. 9.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 위원정수 확대를 통해 학식·경험 풍부한 외부위원 추가 위촉하여 취업승인 등 심의·자문 업무의 구체적 타당성·공정성 제고 (10인 이내→12인 이내)	형 사 기 획 과
1515	1. 23.	보호소년 처우지침	• 대구소년원 교육과정을 중·고등학교 교과교육으로 변경 • 근신 징계 기준, 상·벌점, 교육성과 가점기준 등 수용관리 사항 정비	소 년 보 호 과
1516	1. 23.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 사용에 관한 지침	•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및 기관 신설을 반영한 기관 명칭 변경 (읍내고등학교→읍내중고등학교, 광주솔로몬로파크)	소 년 보 호 과
1517	1. 30.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 사업자 선정기준,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내용을 반영	기획재정 담당관실
1519	3. 7.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훈령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위원수를 범위로 변경 및 위원의 자격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며, 연구결과 평가위원의 정족수를 늘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결과보고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반영	기획재정 담당관실
1520	3. 18.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 특별사법경찰팀(대) 창설 반영 •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정장비 휴대 기준 표준화 • 긴급 교정사고 발생 시 지방교정청장의 조치 근거 신설 • 윤번일근 인원을 야근부 인원의 1/2로 제한해 휴무일 확대	보 안 과
1521	3. 21.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일부 개정	정보화 데이터 담당관실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522	3. 22.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 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규모가 직전 2년간 5급 이하 육아휴직 평균인력의 범위에서 최근 3개년 5급 이하 육아휴직 인력의 최대치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 • 운영기간 변경 : 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 • 국립법무병원 별도정원 9명 증원(11명→20명)	혁신행정담당관실
1523	4. 3.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 소년 등에 대한 선도·상담·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구체적 직무내용 및 임기, 위촉절차 등을 규정 •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형사기획과
1524	5. 3.	교정직 공무원의 강사 등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심사의 원활한 시행과 합리적인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항목별 점수와 비율을 개선하고 자격기준 조정	사회복귀과
1525	5. 22.	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성폭력처벌법」,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항목을 정하고,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 관리·감독을 위한 내용 규정	여성아동인권과
1526	6. 3.	교정정보빅데이터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교정정보빅데이터팀 설치를 위한 전반적인 근거 마련 및 운영 필요사항 규정	교정정보빅데이터팀
1527	6. 11.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에 따라 법무부 실정에 맞는 지침을 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비위 발생 사전 예방	감찰담당관실
1528	6. 25.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정과제(64-1)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일환으로 개소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국정과제의 신속·체계적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1529	6. 26.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 피보호감호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 개정 등	분류심사과
1530	7. 1.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법률지원(소송·자문 등) 제공 관련 훈령	국제법무지원과
1531	7. 16.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 형사사법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신설 • 위원 자격 및 위촉, 회의 절차 등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	형사법제과
1532	7. 22.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 유학휴직 및 동반휴직 신설, 질병휴직 및 병가에 대해 '업무상 사유'와 '업무외 사유'를 구분하여 회복 기간 보장 등 근로자 처우 개선	혁신행정담당관실
1533	7. 24.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 법무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을 '인권정책과' 산하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산하로 변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535	8. 12.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 본부와 소속기관간 임용권 조정(교정기관 소속 전산직 6·7급 임용권 본부 환원) • 직군 명칭 변경(기술직군 → 과학기술직군)	혁신행정담당관실
1536	8. 28.	변호사 보수규정	• 현행 변호사 보수규정의 존속기한 3년 연장하여 개정	국가소송과

번호	일자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1537	9. 11.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신설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일부 부서의 위임전결사항 조정	혁신행정담당관실
1538	9. 23.	법무부 기록관 청사관리규정	• 법무부 기록관을 독립 청사로 건립함에 따라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 사항의 규정 등 변동사항 반영	운영지원과
1539	10. 8.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 '23. 7.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24. 1. 여성가족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등 반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1540	10. 28.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 법무부 기록관을 독립 청사로 건립함에 따라 기록관 운영체계 정비, 주요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 등 변동사항 반영	운영지원과
1541	10. 31.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 「귀화 민간면접관의 '직무윤리 서약서' 제출 의무화 • 타 훈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서식 정비	국적과
1542	11. 1.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 수사정보교과제 선발 관련 규정 신설 • 정보활동 관련 규정 신설 • 성폭력 범죄의 수사 관련 규정 신설 • 장애인에 대한 수사 관련 규정 신설	특별점검팀
1544	11. 1.	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라 규정 제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위원에 "국제법무정책과장" 추가	기획재정담당관실
1545	11. 5.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 여성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 전담기관을 청주소년원에서 대전소년원으로 변경	소년보호과
1546	11. 4.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 입회케 → 입회하게, 수불 → 출납, 반출케 → 반출하게 등 어려운 용어 정비사항 반영	시설담당관실
1547	11. 4.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 수불 → 출납, 반출케 → 반출하게 등 어려운 용어 정비사항 반영	시설담당관실
1548	11. 13.	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공익신고 이송 시 보호·보상제도 안내 의무화 및 안내사항 보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감사담당관실
1549	11. 25.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	• 이민정책 현안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자문 기능과 전문성 강화 •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일부 수정("경제·사회·문화·과학 등의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법학·경제학·정치학·행정학·사회학·통계학 등을 전공하고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변경) • 위원회 간사를 기존 "이민정책기획단장에서 외국인정책과장"으로 변경	외국인정책과
1550	12. 16.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 대체복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휴가 등 처우, 복제, 대체업무 지정 주기 개선 및 부대표직위 신설 등 대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 도모	교정기획과
1551	12. 3.	교정정보빅데이터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교정행정 관련 빅데이터 수집·관리·연구·분석·활용 과제 발굴, 수행 및 업무 절차 개선 등을 위한 설치 근거	교정정보빅데이터팀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552	12. 2.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 설치 목적, 명칭, 선발, 운영 일반에 관한 규정 • 임무, 편성 및 복제, 장비 등에 관한 규정 • 행사참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	교정기획과
1553	12. 3.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 위원 임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원 결원시 30일내 위촉 조항을 삭제(제7조제2항)하고, 결원이 된 민간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제7조제3항) • 협의회 운영 체계화를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시 개최 7일 전까지 장소·일시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통보(제9조제2항)	체류관리과
1554	12. 9.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위탁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 훈령에 위탁 근거 및 세부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	체류관리과
1555	12. 9.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 보호(일시)해제된 난민신청자의 지원센터 이용기간 연장허가 사유 세분화 및 명확화	난민정책과
1557	12. 13.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우리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기구의 명칭 및 기능 개정	비상안전기획관실
1558	12. 25.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팀'의 존속기한('24.12.24.) 도래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2. 예 규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33	1. 3.	교도관 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	• 제명 변경(행정규칙 속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에 따른 변경) •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수 강화 • 급식시설 위생관리 점검 강화 • 보존식의 보관 근거 명시 및 급식담당자 개인 위생관리 강화 • 채식급식 등 지급근거 마련 및 재검토 기한 수정	복 지 과
1334	1. 3.	수용자 급식관리 지침	• 제명 변경(행정규칙 속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에 따른 변경) •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수 강화 • 급식시설 위생관리 점검 강화 • 보존식의 보관 근거 명시 • 교정시설 내 채식급식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재검토 기한 수정	복 지 과
1335	1. 15.	국적업무처리지침	• 혼인관계가 단절된 사람도 장애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심사 면제대상에 추가 • 국적선택신고 반려 시 반려통지서 서식 마련 • 국적이탈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절차 마련 • 국적취소 당사자의 절차적 권익보장을 위한 소명의 기회 부여의 구체적 절차 마련	국 적 과
1336	2. 1.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 효과적인 중간처우 시설 운영을 위해 희망센터 정원 증원 • 용어 혼동 문제로 인해 '가족접견'을 '가족만남의 시간'으로 명칭 변경 • 귀휴 사전(예비) 회의 근거 규정 신설 • 지방교정청 수용자 자녀지원팀에 관한 근거 신설	사 회 복 귀 과
1337	2. 14.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 고장자산 내용연수 기준 변경 • 편인 작업등급 명확화 및 직영작업 기술숙련자 우대 • 승급제도 효과 제고를 위한 취업기간 단축 • 특별작업장려금 지급기준 상향 • 피보호감호자 근로등급 폐지 등	직 업 훈 련 과
1338	2. 26.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 컴퓨터기반평가(CBT, Computer Based Test)시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고, 효율적인 평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평가 배점 및 난이도를 조정하는 등 현행 평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이 민 통 합 과
1339	3. 26.	법무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송무심의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 명시	혁신행정담 당 관 실
1340	6. 26.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 모범수형자 대상 자치생활 규정 정비 •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정기준 완화 등	분 류 심 사 과
1341	6. 26.	분류처우 업무지침	• 수형자 운영지원작업장의 종류 명시 •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개선 • 수형자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개선 •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 개정 등	분 류 심 사 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42	6. 26.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 소년수형자의 폭행피해 등 설문조사 시기 개정 • 소년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 개정 등	분 류 심 사 과
1343	7.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에 관한 세부 기준 신설	이 민 조 사 과
1344	7. 20.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재외동포청 국장을 정부위원으로 지정 • 민간위원 위촉 대상 분야를 확대하여 명시	국 적 과
1345	8. 12.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개설에 따른 정보목록 현행화 • 국제법무국', '난민과', '법무부 기록관' 신설로 인한 사무 분장 반영	운 영 지 원 과
1346	9. 13.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문서 시스템 운영, 비밀번호 관리, 전자우편 운영, 게시판 관리, 토론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현재 상황에 맞게 현실화 및 보완 • 다른 규정의 준용과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현행화하는 등 내·외부 정보화 업무환경 변화 반영	정 보 화 데 이 터 담 당 관 실
1347	11. 4.	교정관련 영화·방송드라마 제작 지원 지침	• 제작 지원 대상 개념 확대 등 제작 지원 기준 완화 • 심의기구 구성원 변경	교 정 기 획 과
1352	12. 23.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 실무상 운영 중인 가석방 심사 검토의견 유형(적격,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 명문화 및 보류로 의결된 안건을 다음 회의 심사대상자에 포함하는 근거 마련 •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작성 대상자 및 위원 명단·경력사항, 심의서, 회의록 공개방법을 명확히 규정	분 류 심 사 과

3. 주요지시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 5.	교정기관 4부제 정상화 추진 계획(안) 시달	• 4부제 정상화 시범 실시 여부 기관 자율 선택 • 현원 내 인력확보 및 운영 • 야근부 완전 책임제 및 휴무자 자원 근무제 운영	무	보 안 과
1. 9.	제17회「세계인의 날」기본계획 알림 및 관서별 자체 행사계획 수립 지시	• 제17회 세계인의 날(2024. 5.20.) 기본계획 시달 및 관서별 자체 행사 계획 보고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 외국인기관	이 민 통 합 과
1. 16.	근무지 내 음주 화식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	•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 자체 점검 강화 등 직원 관리·감독에 만전 수행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1. 15.	사회복귀과 업무추진 유의사항 시달	• 2024년도 사회복귀과 업무추진 유의사항 시달	무	사 회 복 귀 과
1. 29.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 추진 계획 시달	• 권역별 교정위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 개요·일정·행정 사항 시달	무	사 회 복 귀 과
1. 31.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조치 변경(안) 시달	• 신입 수용자 격리 폐지 및 정상 처우 (접견, 운동, 목욕 등) • 유증상 신입 수용자 입소 시 의무관 판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여부 결정 • 코로나19 일일현황 폐지(확진자 정보보고 폐지) • 의무관 판단에 따라 확진자 격리 여부, 격리 방법 등 결정	무	의 료 과
2. 6.	2024년 설 연휴 기간 복무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시달	• 설 연휴 기간 복무기강 확립, 근무 철저 시달 및 연휴 기간 중 현장 점검 시행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2. 14.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 내 중독재활센터 운영 계획(안) 시달	• 부산(교) 시범운영(2024. 3 .~ 2024. 12.) • 지방교정청 내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선별, 산하 전담교정시설에 집합수용하여 형확정부터 출소까지 연속적인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 전문상담, 자조모임 활성화, 자기주도형 개인치료 프로그램, 영상교육,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 등	무	마 약 사 범 재 활 팀
2. 16.	「국적증서 수여식 운영 지침」 제정 알림	• 구체적이고 통일된 업무 기준을 통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도 체계화·활성화	기	국 적 과
2. 23	수용자 전화사용에 관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유의사항 시달	• 수용자 전화 시범운행 종료 • 모든 수용자 수신자 가족 원칙 적용	무	보 안 과
2. 23.	보안배치(직원이발, 보안청소 등) 개선(안) 시달	• 단위 업무별 일근 고정근무자 배치 지양 • 운영지원 작업 등 소규모 작업장 통합 운영 • 직원이발 작업장 운영 폐지	무	보 안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2. 26.	한러가정 자녀의 국적회복 등 지원방안 알림	• 명확한 체류·사범심사 기준 마련, 국적회복신청 시 신속 심사	기	국 적 과
2. 27.	규제자 사증심사 철저 지시	• 입국규제 중인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사례 전파 및 사증발급 심사 철저 지시	전 재외공관	체 류 관 리 과
2. 29.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 계획(안) 시달	• 전담교정시설 추가 지정 • 전담교정시설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무	마 약 사 범 재 활 팀
2. 29.	다목적 신속 기동장비 도입 및 적극 활용 지시	• 이동 빈도가 높고 업무 동선이 장거리인 근무지에 최적화된 다목적 신속 기동장비 도입 필요 • 근무 방법 개선을 통한 업무 능률 개선 및 효율화 도모	무	보 안 과
2. 29.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 추진 계획 시달	• 권역별 교정위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 개요·일정·행정 사항 시달	무	사 회 복 귀 과
3. 8.	「교정시설 마약류 반입 방지 특별 지시」 시달	•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방지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책 지시	무	보 안 과
3. 8.	교정기관 의무관 채용 활성화 방안 시달	• 일반임기제 정원 확대 • 의무관 공모직위 폐지 • 연봉특례 제도 신설	무	의 료 과
3. 11.	교정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복무관리 및 업무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3. 20.	상반기 교정위원 위촉 등 승인 결과 시달	• 2024년도 상반기 교정위원 신규위촉, ·재위촉 등 교정위원 명단 알림	무	사 회 복 귀 과
4. 9.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시행 알림	• 국익 기여 가능성에 대한 입증 요구 강화, 추천서 제출 등 유의사항 고지, 국적회복 신청자 사전 동의항목 신설 등	기, 관계부처	국 적 과
4. 25.	금품비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	• 자체 점검 강화, 청렴 교육 실시 등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근무 자세 강조	무	교 정 기 획 과
4. 29.	교정본부 의약품 선정 심의위원회 개편(안) 시달	• 국가지급·혈액투석·자비구매 의약품 선정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 심의위원의 위촉 기한 설정 •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확대	무	의 료 과
5. 2.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구분 조정(안) 시달	• 수도권 소재 교정시설 수용구분 조정을통한 과밀 완화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수용자 처우 향상	무	보 안 과
5. 3.	사회복귀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 과제 검토 결과 시달	•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파악·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능률성 증진	무	사 회 복 귀 과
5. 17.	다목적 신속 기동장비(전동휠) 사용 매뉴얼 및 교육 동영상 배포 알림	• 전동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많은 직원이 장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 주의 사항 등 제시 • 약품 지급, 문서송달, 야간 순찰 등 다양한 업무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	무	보 안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5. 20.	음주(숙취)운전 근절을 위한 복무관리 철저 지시	• 음주운전 근절,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복무관리 철저 강조	무	교 정 기 획 과
6. 14.	「교정시설 하절기 수용관리 특별대책(안)」 시달	• 기상청 전망(여름철, 장기간 이상고온) 등을 반영한 수용자 처우 계획 시달	무	보 안 과
6. 28.	교정기관 야간·공휴일 의료체계 개편(안) 시달	• 의료지도 의무관으로 명칭 변경 • 의료지도 의무관의 업무 범위 • 의료과 당직 근무자의 업무 범위	무	의 료 과
7. 3.	교정시설 우송도서 사전등록제 도입 시달	• 우송도서 발송시 본인인증 절차 도입하여 금지물품 반입 예방 및 민원인 편의성 증진	무	사 회 복 귀 과
7. 5.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안내 및 협조 지시	• 고용노동부-서울특별시 주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세부사항 안내 및 협조 필요사항 전파	기	체 류 관 리 과
7. 10.	화성 화재사고 유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등 지시	• 화성 화재사고 유가족의 장례 및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체류허가 지시사항 전파	기	체 류 관 리 과
7. 12.	수용자 접견 제도 개선(안) 시달	• 접견 예약 가능 횟수 제한 및 당일 취소 시 패널티 적용 • 동반 접견 인원 확대, 예약 접수기간 변경	무	보 안 과
7. 15.	국적이탈허가 신속심사제 시행 알림	• 직업상 불이익이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한 심사를 위한 별도 절차 마련	기,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장	국 적 과
7. 26.	전자민원 적체 해소를 위한 집중심사기간 운영 지시	• 전자민원 적체 해소를 위해 민원종류에 따라 신속심사팀과 일반 심사팀으로 구분 운영하고, 처리기간 목표 설정 및 일일 업무처리량 관리	기	체 류 관 리 과
7. 29.	인사이동에 따른 엄정한 근무자세 확립 지시	• 정기 인사이동 관련 음주 회식 자제 당부 및 업무담당자 변경에 따른 지연·누락 대비 업무 수행 만전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8. 7.	수용자 오인 석방 사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안) 시달	•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 • 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특수교과 신설 • 석방사무 담당자간 긴밀한 교차확인 체계 • 석방사무 감독 및 점검 기능 강화 • 석방사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무	보 안 과
8. 20.	교정시설 코로나19 관련 의료처우 등 지시사항 시달	• 코로나19 업무분장(안) 마련 및 담당자별 업무 사항 숙지 • 환기 및 시설·개인 소독 준수 • 직원 및 수용자 대상 증상 모니터링 • 고위험군 수용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권장 및 이상반응 확인 관리	무	의 료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9. 4.	가스총 탄약 등 수령 방법 개선(안) 시달	• 가스총 탄약 수령 시 관할 경찰서에 양수 허가를 신청 • 청별 대표수령기관이 관할 경찰서에 양수허가를 받아 탄약 수령 후 나머지 기관은 대표수령기관에서 탄약을 수령	무	보 안 과
9. 10.	추석 연휴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 추석 연휴 기간 복무기강 확립, 직원 교육, 연휴 기간 중 현장 점검 등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9. 20.	하반기 교정위원 위촉 등 승인 결과 시달	• 2024년도 하반기 교정위원 신규위촉,·재위촉 등 교정위원 명단 알림	무	사 회 복 귀 과
9. 20.	교정시설 과밀 수용 원인과 개선 대책(안) 알림	• 교정시설 조성을 통한 수용정원 확대 • 가석방 확대를 통한 수용인원 감소 • 수용구분 조정을 통한 수용불균형 완화 •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모델 수립 연구 용역 추진 등	본부 각 과	보 안 과
9. 30.	「수용거실 환경 개선 계획(안)」 시달	• 바닥형 사물함을 벽면형으로 교체, 구매 물품의 보관방식 개선 등 수용자 생활공간 확보를 통한 환경 개선 지시	무	보 안 과
10. 2.	2024년 중독재활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직원 청별 교육 계획(안) 시달	• 마약류, 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담당자에 대한 청 내 정기적 교육 및 직원들 간 논의 과정 필요 • 각 지방교정청의 중독재활교육 담당자에 대한 자체 전문 교육훈련 기능 개발 및 강화	무	마약사범 재 활 팀
10. 8.	특허 사항이 포함된 교정 장비 구매 방법 개선(안) 시달	• 특허사항이 포함된 교정장비(벨트형 포승, 조끼형 포승)는 신청한 기관이 각각 수의계약으로 장비 구매	무	보 안 과
10. 14.	공무원 '병가 운영 실태' 자체 점검 지시	• 병가 부적정 사례 여부 자체 점검 및 직원 복무 관리 철저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10. 17.	개량형 수갑·U자형 방패 도입 및 시범운용 계획(안) 시달	• 피사용자의 손목부상 방지 등 인권침해 최소화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 편의성 증대 • 수용 거실 등 좁은 공간에서 소란, 손괴 등 행위에 대한 효율적 제압하고 직원 폭행 피해 최소화	무	보 안 과
10. 24.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장관 지시 사항 시달	• 각 기관장에게 추진 실적 점검 및 계호근무 실태 직접 확인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10. 31.	교정기관 체포·체압술 등 교도관 훈련 실시 철저 지시	• 모든 교도관이 연 1회 이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시행 • 기초훈련(체포·체압술) 정기적 실시 및 훈련 강화	무	보 안 과
11. 20.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봉함 관련 지시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도 법원·권익위 등 국가기관에 발송하는 편지에 대해서는 봉함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무	사 회 복 귀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1. 21.	「국방부 방산장비(방독면·정화통)」 대표 수령기관 지정 및 관리전환 지시	• 「국방부 방산장비(방독면·정화통)」 수령을 위해 대표 수령기관 지정 및 관리전환 지시	무	보 안 과
11. 22.	교정긴급대응팀(CERT) 창설 및 요원 선발 계획 시달	• 도주·폭동·테러 등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훈련된 팀 창단 • 고위험 상황(사형수·국제테러범·대규모 이송 등) 발생 시 정예요원에 의한 계호 보강 • 교정관련 전술 개발, 소속기관 기동순찰팀 직원에 대한 전술·장비·인권교육	무	보 안 과
11. 25.	심리치료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및 활용 방안 시달	• 교정시설 의료인력 부족 등 열악한 처우 여건 보완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 수용관리팀 등 심리치료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보직하여 수용관리 역량 제고	무	심 리 치 료 과
11. 28.	「동절기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재난 안전 대책(안)」 시달	• 폭설 등 각종 동절기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지시	본부 각 과, 무	보 안 과
12. 3.	수용자 심리상담 운영체계 개편 계획(안) 시달	• 자살수용자 지속 발생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체계 강화 • 정신건강 고위험군 수용자 선별 및 집중 개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상담 체계 확립	무	심 리 치 료 과
12. 5.	의약품 반납 및 폐기절차 개선(안) 시달	• 의약품 반납 및 폐기절차 관련 소속기관 제출 의견 검토 • 의료용 마약류 반납자 명부 전산화 방안 논의	무	의 료 과
12. 24.	2025년 마약사범재활팀 중독재활 운영 계획 시달	• 2025년 마약류, 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형자 특성에 적합한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형자의 치료재활 및 재범 방지	무	마약사범 재활팀
12. 24.	연말연시 교정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지시	•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 이석 금지 등 복무규정 준수 철저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12. 30.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귀휴 운영 개선 방안 시달	• 2025년 귀휴 계획 인원 상향 조정 • 석방 전 귀휴 필요적 심사 확대 등	무	사 회 복 귀 과

제3절 장관 연설문

▣ 2024년도 법무부 장관의 주요연설 현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설현황 |

일 자	주요 행사명	비 고
1. 2.	• 신년사	장관직무대행
2. 5.	• 신임검사 임관식	장관직무대행
2. 20.	•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사	
4. 25.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기념사	
5. 1.	• 신임검사 임관식	
5. 2.	•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5. 20.	•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5. 30.	•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6. 15.	• 제11회 다링안심캠페인	
7. 22.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	
7. 29.	• 제36기 공익법무관 임용식	
8. 1.	• 신임검사 임관식	
8. 12.	•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10. 28.	•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11. 25.	• 2024년도 선진법제포럼	
11. 25.	• 법무부 기록관 개관식	
11. 27.	•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차관 대참

• 신년사

I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한 해 동안 풍성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II

그 동안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국민들께 힘이 되고 위로를 드릴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까지 파고든 마약범죄에 대응하여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치료·재활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에 맞춰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맞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중범죄자의 '머그샷'을 촬영·공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에 대하여는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처벌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과 법률지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만연했던 금품갈취 등 불법행위,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엄단하는 등 공정한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위헌 논란을 일으키며 개정되었던 형사법령의 시행에 따른 수사지연, 부실수사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게 국제적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숙련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비자발급 기간 단축, 업체별 고용인원 확대로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국익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비자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구치소 개청, 대구교도소 이전 등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고,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여 대국민 교정서비스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2023년에 이뤄낸 이와 같은 성과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Ⅲ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전쟁, 글로벌 경기침체, 안보와 기술·경제의 융합,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AI 등 첨단기술의 획기적 발전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마약·스토킹·전세사기·이상동기 강력범죄와 같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들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고, 민생과 경제, 미래번영에 힘이 되는 법무정책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Ⅳ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역량을 집중합시다.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합시다.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마약 밀수입 등 유통범죄를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 범죄정보 역량 강화, 수사장비 첨단화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갑시다. 또한, '마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확충을 통해 치료·재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반복되어 온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립시다.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이 확산되어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 빚에 허덕이기도 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도 손을 대는 등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한 만큼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에 이르기까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 공공의료원에 법무부 입원병상을 설치하는 등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 수용시설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2024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획기적 진전을 이뤄나갑시다.

범죄피해자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과정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갑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판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7월, 서울에 처음으로 설치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러 기관의 전문인력들이 피해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가장 손쉬운 절차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범죄 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셋째, 공정한 법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중요 경제범죄, 사법방해 등 법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도록 합시다. 아울러, 법을 집행하는 우리 법무부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시스템 정비에 노력합시다.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CBT 변호사시험이 차질 없이 치뤄지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형사사법절차와 기록을 전자화하기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등록이나 신청을 컴퓨터, 모바일기기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하는 서류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갑시다.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정부부처, 해외진출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AI·우주항공 등 다양한 국제규범 성안에 적극 참여하면서 각종 국제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인구감소라는 정해진 미래에 정교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완수합시다.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하는 외국인에게는 비자 승급을 통한 단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의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비자 혜택을 제공하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불법체류 단속도 엄정하게 실시하여,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균형감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펼쳐 나갑시다.

V

존경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들께 제대로 봉사하고, 역량 있는 법무부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 노 공

• 신임검사 임관식

I

신임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임관하는 신임검사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가족, 친지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분의 검사님들 모두 법조인으로서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훌륭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견뎌온 만큼, 앞으로 굳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춘 검사로서 활약하기를 기대하며, 짧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I

첫째, 대한민국 검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 질서를 수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검사실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한 건 한 건에 치열한 고민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고, 당연히 업무도 매우 과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기에 이 자리에 선발되어 오셨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의 안위가 여러분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는 긍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매 순간 당당하고 명예롭게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마주하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남의 일' 정도로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일생에 몇 안 되는 큰일을 마주친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사건관계인들의 주장과 의견을 꼼꼼히 살피고,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검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검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 한 명의 잘못된 언행 하나가 검찰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긋남이 없어야 타인의 잘못을 가리는 검찰 업무를 당당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다짐한 검사 선서에는 오랫동안 검찰 선배들이 추구해 온 가치와 덕목이 녹아 있습니다.

선서 내용을 가슴 깊이 새기고, 멋진 검사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다가올 명절에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5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심 우 정

•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사

Ⅰ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고 있는 이곳 법무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아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법무 가족 여러분을 직접 마주하니 감회가 새롭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이 부여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를 역동적으로 이끌어주셨던 전임 한동훈 장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앞으로 우리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 본연의 임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가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심히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Ⅲ

친애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법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즉,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업무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멀리 갈 것 없이,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선서한 대로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저도 검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범 방지 정책을 추진해 나갑시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범죄 그리고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촘촘한 범죄안전망 구축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주기 바랍니다.

마약이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하여는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치료·재활, 보호관찰 등 재범 방지 대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중독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은 왜 찾기 어려운 것인지, 반복적인 처벌과 재범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의 재범률은 왜 높은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문제들입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합시다.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올 7월 서울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사법 절차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엄정하면서도 절제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법무부가 든든한 인권의 보루라는

인식이 국민들께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평소 저는,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법질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Ⅳ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바른 자세를 가다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엄격한 자세를 유지하되, 국민의 목소리에는 겸손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늘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믿음직한 법질서 수호자로서, 든든한 인권의 보루로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갑시다.

몇 해 전 언론 칼럼에서, 일상의 업무에 헌신하는 공직자들이 시민과 공동체의 생명과 영속을 지탱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상의 업무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과 자신의 업무를 '복 짓는 기회'로 여겨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시다.

다시 한번 법무 가족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기념사

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법의 존엄성을 재확인하고 준법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날」 제6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아 그동안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헌신해 오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분쟁, 경제 위기, 기후 변화 등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으로 인해법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은 “법의 지배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비전은 법치주의가 평화의 기초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시대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세계는 바로 법치주의에서 그 해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입니다.

나아가, 법의 정의로움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춥고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따뜻함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명정대하면서도 세심한 배려를 통해 법치주의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Ⅲ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 협력으로 집중 대응하고,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한편, 마약이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하여는 처벌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복귀도 중요하므로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실시에 있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형사사법의 효율화와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7월,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여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아동, 외국인,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Ⅳ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법무부는 본연의 임무인 법질서 확립의 토대 위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입법·사법·행정, 법조계, 학계,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의 날을 맞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그 가정에 따사로운 봄날 같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박성재

• 신임검사 임관식

I

신임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신임검사님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가족, 친지분들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검사님들도 그동안 이분들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주변의 배려와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온 분들입니다.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그동안 받은 것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가 앞으로 어떤 검사로 살아갈지를 차분하게 생각해 보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II

저도 33년 전에 오늘의 여러분과 같이 검사로 임관했고, 26년여간 검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검사 생활을 돌아보면서, "만약 다시 한번 검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검사로서 첫발을 딛는 여러분에게 선배검사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깊이 자각하고 사명감을 갖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제도가 탄생할 때부터 검사에게는 형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통제해야 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임무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저 검사라는 지위나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라, '형사 정의 실현'과 '인권옹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검찰권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검찰에 맡긴 임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완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깊은 사명감을 갖기 바랍니다.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검사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실력'입니다.

검사가 실력이 부족해서 맡은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신임검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검찰에는 지난 70년간 축적해온 역량과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여러분 각자의 절실함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 지식과 전문역량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검사에게 필요한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통찰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로서 맡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 숨겨진 사정까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하기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쌓이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검사의 통찰력도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용기'와 '배려'입니다.

검사에게 요구되는 '용기'는 자신만 옳다는 독선이나 스스로 돋보이려는 영웅심이 결코 아닙니다. 검사로서 맡은 일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당당한 자세와, 옳은 일을 한 대가로 주어지는 불이익은 감내하겠다는 담담한 마음가짐이 바로 검사의 용기입니다. 이런 진짜 용기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주변을 살피며 '배려'하고 '경청'하는 데서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맡게 될 사건마다 범죄 때문에 평온한 일상을 빼앗긴 피해자가 있고, 수사 대상이 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마음 졸이는 피의자가 있고, 이들과 함께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야말로 검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바른 검사'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검사에게는 더욱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한순간의 경솔한 언행이 검사 개인에게 큰 불명예를 가져올 뿐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검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검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서도, 소중한 인격체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긍심과 자부심이 충만하다면, 결코 눈앞의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명 한명이 하찮은 잘못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스스로를 살피며 '바른 검사'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Ⅲ

신임검사 여러분!

검사로 근무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니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검찰에는 선배가 후배를 도와주고 이끌면서 지도해온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선후배 검사들과 수사관, 실무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힘들 때는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고, 동료들에게 의지도 하면서 이겨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층 성장한 검사가 되어, 여러분이 후배들을 이끌고 동료들에게 의지가 되어 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검사 선서'에는 앞으로 어떤 검사가 되어야 할지, 검사로서 지켜야 할 자세와 덕목이 무엇인지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검사 선서문을 수첩에 적어두고 가끔 읽어보곤 합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만 하면 훌륭한 검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건을 맡게 되든지 한건 한건 정확하게, 그리고 사건관계인이 감동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이것이 바로 검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보람이자 최고의 가치라 생각하며 생활한다면, 여러분 모두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검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나아가는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Ⅰ

존경하는 대구시민과 내빈 여러분! 대구교도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입니다.

대구 달성군은, 예부터 빼어난 자연경관은 물론 달구벌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전국 출산율 1위로 알 수 있듯 살기 좋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서 깊은 곳에서,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과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님, 최재훈 달성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Ⅱ

존경하는 대구시민과 내빈 여러분! 대구교도소는 화원읍에서 52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곳 하빈면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의 변화와 발전은 지난 십여 년간 보여주신 달성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 가능했습니다. 교정시설 이전 현안을, 법무부-지자체-지역주민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오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설 이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달성군민을 비롯해, 애써주신 관계자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존경하는 대구시민과 내빈 여러분!

신축 대구교도소는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시설 외관을 설계하고, 지열, 중수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적용한 친환경 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교정 설비와 장비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정환경 조성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안면인식 시스템과 주요 출입 개소에 전자 잠금장치 등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였고, 전동휠, 휴대형 교정장비 등을 도입하여 기동성과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장과 작업장은 수용자들이 인근 산업현장의 전문화된 기술을 배우고, 자립기반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부족한 일손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교도소 체육시설과 휴게 마당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고, 지역의 농산물 직거래 등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구교도소가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구교도소의 모범적인 발전 모습을 거울삼아 앞으로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도 국민들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Ⅳ

사랑하는 교정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대구교도소에 보내주신 신뢰와 지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관 운영은 물론, 수형자 재사회화와 재범방지는 국민께서 부여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성실히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대구교도소의 앞날을 축복 드리며, 이곳에서 새로운 교정 100년의 역사를 쓰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교도소 이전 신축 과정에서 보여주신 달성군민 여러분의 열린 자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부와 교정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따듯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I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각국 대사님 등 주한 외교사절단과 국제기구 한국 대표, 인요한 박사님, 김포시장님, 과천시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주인공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재한외국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규정된 이래로 제17회를 맞이하는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뜻깊은 기념식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17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올해의 이민자' 상을 받으시는 라이안 제라딘 수녀님을 비롯하여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II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이미 산업계 곳곳에서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계절근로자 제도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유학생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 K팝, K드라마 등 한류로 인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투자나 창업을 통해 코리안드림에 도전하려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국제적 인구이동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며, 우리의 직장동료,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민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낯설 수도 있지만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사회통합에 힘쓴다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Ⅲ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이와 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연간 분야별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공표제"를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인재의 유입을 적극 확대하면서도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무분별한 유입은 억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부처간 벽을 허무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민간과도 협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도 충분히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언어교육과 상호이해 등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겪지 않고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Ⅳ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내·외국인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며 또한 사회통합에 공헌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국민과 외국인의 통합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행사를 준비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Ⅰ

전국의 교정공무원, 그리고 교정위원 및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교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교정대상을 주관하고 후원해 주신 서울신문 곽태헌 사장님과 KBS 박민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시작한 「교정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4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이렇게 뜻깊은 시상식을 교정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예로운 교정대상을 수상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상자 분들의 크고 뜻깊은 성과는 가족분들의 한결같은 믿음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가족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Ⅱ

사랑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교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그 성과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의 교정시스템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념을 잃지 않고 소명을 다해온 덕분에 수용자들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엄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교정행정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장관으로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Ⅲ

존경하는 교정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정교화 활동은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건전한 사회복귀의 길을 열어주는 더없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이 있었기에 수많은 수용자들이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며 새 삶을 준비할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은 수용자 개인의 삶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정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참여가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Ⅳ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교정행정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마약수용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강화하고 소년수용자들의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학과교육,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용자 직업훈련 확대 등 다양한 교정행정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력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V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수용자 교정교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정행정은 단순히 법 집행을 넘어 수용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 공정하고 따뜻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안전과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영예로운 교정대상을 수상하신 여러분과 늘 곁에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전국의 교정가족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제11회 다링안심 캠페인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입니다.

'다링안심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Ⅱ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는 '다링' 행사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링'이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범죄피해자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아픔을 공감할 때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Ⅲ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총괄 부처로서 보호·지원 제도를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왔습니다.

올 7월에는 서울에,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여 입체적으로 보호·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원스톱 전담 인력을 전국 17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배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할 것입니다.

Ⅳ

범죄피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법무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변치 않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센터 개소를 함께 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센터 참여기관 관계자 여러분 및 내빈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Ⅱ

우리나라에는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기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직접 여러 장소를 방문해 안내받거나, 다양한 지원 중 필요한 것만을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여긴 피해자가 도움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스톱 센터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Ⅲ

범죄피해자가 센터에 방문하면 14개의 참여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관이 한 곳에 모여 상시적인 대면 협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담인력이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 함께 하면서 때마다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고, 연계할 것입니다.

Ⅳ

우리는 각자 크고 작은 사회를 구성하는 유기체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때에, 충분한 지지를 보내 범죄피해자가 자존감을 회복한다면, 피해자가 속한 가장 작은 공동체부터 강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연대는 단단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지와 연대가 계속되면서, 국민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범죄피해자에게 명실상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소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제36기 공익법무관 임용식

Ⅰ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난 두달동안의 군사교육과 직무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공익법무관이 된 여러분들의 젊고, 패기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Ⅱ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저는 올해 2월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법무행정이 나아갈 방향으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은 공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과 질서의 확립,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실효적 재범 방지 정책, 범죄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공익법무관 여러분들도 국민여러분들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Ⅲ

첫째, 법과 원칙, 기준을 지키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길 바랍니다.

법조인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일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벌어졌던 어떤 사건들을 올바르게 재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률을 공정하게 적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어 공정한 외관을 갖추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체와 외관이 모두 공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확정지을 수 있고, 정확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줄 아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임할 각자의 임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배움과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실력있는 법조인이 되어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배려하고 경청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기까지는 본인의 노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가족과

같은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배려, 사회적인 혜택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집과 독선에 빠진 법조인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줄 아는 법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아직 법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익의 실현과 더불어 전문성의 함양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각자가 가진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이른바 '셀프 브랜딩'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즉,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자신이 가진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비전을 그려보고, 그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현실에 안주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법조인은 자신이 가진 법률분야의 전문성이 녹슬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잊지 말고, 늘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Ⅳ

사람들은 흔히 '법조인은 병든 사회를 고치는 직업'이라 일컫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임지에서 행하게 될 여러 일들은 모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복 짓는 일'이므로 즐겁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여러분들의 임용을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9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신임검사 임관식

I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하거나, 사회에서 법조인으로 활약하다 오늘 검사로서 새출발을 하는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조인이 되기 위한 오랜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신임검사들을 뒷받침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보니, 제가 26년간 검사로 일했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검사로 일하면서 긍지를 느끼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검사 생활을 돌아보면서 "만약 다시 한번 검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검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우선, 여러분들이 약속한 '검사 선서'를 생활에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은 국가와 국민 앞에서 검사 선서를 한 것처럼,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즉, 검사는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적법절차를 지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 제도가 탄생한 이유는 인권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력'과 '통찰력'을 갖춘 검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실력이 부족해서 맡은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신임검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 70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범죄대응 역량을 통해 권력형 비리, 민생침해범죄 등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이 노하우와 역량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여 본인의 실력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여러분 각자의 노력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가 꼭 갖춰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로서 맡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를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온 정성을 기울여 분쟁의 숨겨진 사정까지 살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사로서 충분한 '실력'과 '통찰력'을 갖추어 실체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때 국민의 신뢰는 저절로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용기'있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검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에게 요구되는 '용기'는 자신만 옳다는 독단이나 스스로 돋보이려는 영웅심이 결코 아닙니다.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당당한 자세와, 옳은 일의 대가로 불이익이 있어도 이를 감내하겠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주변을 살피며 '배려'하고 '경청'하는 데서 나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사건관계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야말로 검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따지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검사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검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분 한분이 하찮은 잘못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함부로 처신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검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겸손입니다.

검사로서 자부심이 과도하여 오만함으로 발전해서는 안됩니다.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되, 상대방을 높이고 배려하는 겸손함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신임검사 여러분!

검사로 근무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십시오.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하였을 뿐인데, 왜곡된 비난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십시오.

바르고 용기있게 일을 한다면 그 어떤 것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되, 따듯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때로는 엄정한 처벌보다 진심을 담은 배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검찰에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검찰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난제를 해결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찰의 좋은 전통을 익히고, 개인의 역량을 길러 오늘 선서 내용과 같은 검사로 성장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바지하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검사 임용을 축하하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Ⅰ

반갑습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재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기 위해 와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예로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종찬 광복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 주신 기념관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Ⅱ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숭고한 피와 땀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일제에 무장 투쟁했던 '최이붕' 선생과 '박영' 선생!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군중을 이끌던 '박진성' 선생과 '김필선' 선생!

지구 반대편 쿠바에서 민족교육과 군자금 모집에 앞장섰던 '임천택' 선생 등!

모든 분들의 이름과 공적을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로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Ⅲ

자랑스러운 독립 영웅의 후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해방 이후로는 80여 년간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는 경제와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여 어엿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후대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물려주고자 온 국민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으면,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35년간의 쓰라린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특별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자 기둥이 되어 선조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한 층 더 높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Ⅳ

법무부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포함하여 1,392(천 삼백 아흔 두)분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독립유공자는 물론 그 자랑스러운 후손들의 이름까지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새겨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후손을 계속 찾아내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Ⅰ

전국의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빈 여러분! 제79주년 교정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정의 날은 교정분야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수상자와 그 가족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순간에도 교정 현장을 지키는 모든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Ⅱ

자랑스러운 교정공무원 여러분!

저는 순직교도관 충혼탑을 참배하면서 긴 역사를 간직한 여러분의 발자취에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젊은 교도관의 눈빛에서는 단단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공직자로서 책임과 무게가 남다르고, 직업적 사명 이상의 헌신이 요구되기에 더욱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의 모습에, 장관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도관 여러분!

어려운 여건임에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의 수많은 노력은,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교도관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을 체감하는 한해였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등 정부 주요 기념행사에 교정본부가 보훈기관의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와 대회에 제복공무원으로 참가하여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정부도 그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도 현장을 지키며, 땀 흘리는 자랑스러운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Ⅲ

존경하는 교정위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 주시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따스함과 인내로 그 길을 걸어와 주셨고,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용자에게 진심을 전하여,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와 모든 교정 가족이 늘 응원하며 지지하겠습니다.

Ⅳ

사랑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교정위원 여러분!

우리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수용자 재사회화는 물론, 교정의 역량도 강화해 왔습니다. 전국 교정시설에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책임감 있는 상황 대응이 가능해졌고, 마약사범재활 전담 교정시설 확대, 교정본부빅데이터팀 신설 등으로 체계적인 수용관리는 물론, 재범 방지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업훈련과 연계한 농촌 일손 제공, 조선소 선박 부품 제작 등 외부통근작업을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수형자 재사회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직급구조 개선, 정신건강회복 지원 확대, 격오지인 경북북부 교정시설의 직원 편의시설 개선 등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등 주요 현안들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정책의 기반은 공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교정이 하나된 역량으로, 협력해 나아갈 때, 국민께서 신뢰하고 지지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Ⅴ

교정가족 여러분! 오늘 79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서로를 격려하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민이 안전한 사회,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합시다.

다시 한번 전국의 교정가족과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내빈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28.

법무부장관 박성재

• 2024년 선진법제포럼

Ⅰ

안녕하십니까,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형규 명예교수님, 안수현 교수님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투자자가 1,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국민 주주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역시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모두 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Ⅲ

법무부는 기업의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보니, 기업들이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론과 정책 뿐만 아니라 실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또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무부 역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V

바쁘신 중에도 우리나라 회사법제의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법무부 기록관 개관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입니다.

수원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비롯하여, 팔달문, 화성행궁, 경국대전(4~6권), 무예제보와 같은 국가지정 보물과 사적, 문화재 등 다수의 국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유서 깊은 곳에, '법무부 기록관'을 건립하고, 개관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이용철 원장님과 내·외빈 여러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Ⅱ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그동안 법무부는 증거적 가치가 높은 법 집행 기록을 생산하면서도 기록물을 보존, 관리, 활용하기 위한 전문적인 운영 기반은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무행정 및 법 집행 기록은 국가적, 사회적, 증거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보관되는 상황들로, 국가적인 표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으며, 열악한 보관 환경에서, 멸실이나 훼손 위험에 노출된 채 부실하게 관리 되어 왔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가나 국민 전체 이익에도 해(害)가 되는 일입니다.

Ⅲ

'법무부 기록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보존서고 형태를 뛰어넘어,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중요기록물은 전자화(스캔) 및 마이크로필름 변환으로 이중 보존하고, 원본 기록물은 소독·탈산하여 항온항습 서고에 안정적으로 보존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법무부 기록관'을 통해 법치행정의 중요한 기록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존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Ⅳ

머지않아,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빅데이터 활용의 확대로 법치행정 기록들도 전자적으로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대한민국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범죄예방, 교정교화, 출입국 및 외국인 관리 등 법무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업무에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자료 제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치행정 기록의 안전한 보존이 단순한 정보의 축적을 넘어,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발판이 되어 법치행정의 공정함을 국민에게 밝게 비춰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Ⅴ

또한, 정부의 기록물 관리 기본 원칙과 표준에 맞게 법치행정 기록이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을 위시한 관계기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법무부 기록관'의 업무가 조기에 안정되어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Ⅵ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기록관 건립 추진, 청사 신축, 업무체계 마련, 그리고 오늘 개관식 행사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기록관 직원들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법무부장관 박 성 재

•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범죄피해자분들과 가족 여러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의 공동 주최자인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신 공로로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범죄피해자를 응원하고 그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한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구 시민들은 당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뜻을 모아 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성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확산되어, 최초로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04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Ⅲ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지속적인 개선과 점진적 발전을 통해, 현재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근거 법령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잊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인·법률홈닥터 등 법률지원,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국 61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각 부처에 있는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한 번에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서울에 개소하여 범죄피해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성과는 모두 여기 계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Ⅳ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상향하고, 서울에 국한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전국 주요 거점으로 확대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힘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법무부차관 김 석 우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1. 법무부장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 인(李 仁)	1948. 8. 2. ~ 1949. 6. 5.	
2 대	권승렬(權承烈)	1949. 6. 6. ~ 1950. 5. 21.	
3 대	이우익(李愚益)	1950. 5. 22. ~ 1950. 11. 22.	
4 대	김준연(金俊淵)	1950. 11. 23. ~ 1951. 5. 6.	
5 대	조진만(趙鎭滿)	1951. 5. 7. ~ 1952. 3. 4.	
6 대	서상환(徐相懽)	1952. 3. 5. ~ 1954. 6. 29.	
7 대	조용순(趙容淳)	1954. 6. 30. ~ 1955. 9. 15.	
8 대	이 호(李 澔)	1955. 9. 16. ~ 1958. 2. 19.	
9 대	홍진기(洪璡基)	1958. 2. 20. ~ 1960. 3. 23.	
10 대	권승렬(權承烈)	1960. 4. 25. ~ 1960. 8. 19.	
11 대	조재천(曺在千)	1960. 8. 23. ~ 1961. 5. 2.	
12 대	이병하(李炳夏)	1961. 5. 3. ~ 1961. 5. 18.	
13 대	고원증(高元增)	1961. 5. 20. ~ 1962. 1. 8.	
14 대	조병일(趙炳日)	1962. 1. 9. ~ 1963. 1. 31.	
15 대	장영순(張榮淳)	1963. 2. 1. ~ 1963. 4. 21.	
16 ~ 18대	민복기(閔復基)	1963. 4. 22. ~ 1966. 9. 25.	
19 대	권오병(權五柄)	1966. 9. 26. ~ 1968. 5. 20.	
20 대	이 호(李 澔)	1968. 5. 21. ~ 1970. 12. 20.	
21 대	배영호(裵泳鎬)	1970. 12. 21. ~ 1971. 6. 3.	
22 대	신직수(申稙秀)	1971. 6. 4. ~ 1973. 12. 2.	
23 대	이봉성(李鳳成)	1973. 12. 3. ~ 1974. 9. 17.	
24 ~ 25대	황산덕(黃山德)	1974. 9. 18. ~ 1976. 12. 3.	
26 대	이선중(李善中)	1976. 12. 4. ~ 1978. 12. 21.	
27 대	김치열(金致烈)	1978. 12. 22. ~ 1979. 12. 13.	
28 대	백상기(白翔起)	1979. 12. 14. ~ 1980. 5. 21.	
29 ~ 30대	오탁근(吳鐸根)	1980. 5. 22. ~ 1981. 4. 9.	
31 대	이종원(李鐘元)	1981. 4. 10. ~ 1982. 5. 20.	
32 대	정치근(鄭致根)	1982. 5. 21. ~ 1982. 6. 23.	
33 대	배명인(裵命仁)	1982. 6. 24. ~ 1985. 2. 18.	
34 대	김석휘(金錫輝)	1985. 2. 19. ~ 1985. 7. 15.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김성기(金聖基)	1985. 7. 16. ~ 1987. 5. 25.	
36 ~ 37대	정해창(丁海昌)	1987. 5. 26. ~ 1988. 12. 4.	
38 대	허형구(許亨九)	1988. 12. 5. ~ 1990. 3. 18.	
39 대	이종남(李種南)	1990. 3. 19. ~ 1991. 5. 26.	
40 대	김기춘(金淇春)	1991. 5. 27. ~ 1992. 10. 8.	
41 대	이정우(李正雨)	1992. 10. 9. ~ 1993. 2. 25.	
42 대	박희태(朴熹太)	1993. 2. 26. ~ 1993. 3. 7.	
43 대	김두희(金斗喜)	1993. 3. 8. ~ 1994. 12. 23.	
44 대	안우만(安又萬)	1994. 12. 24. ~ 1997. 3. 5.	
45 대	최상엽(崔相曄)	1997. 3. 6. ~ 1997. 8. 4.	
46 대	김종구(金鍾求)	1997. 8. 5. ~ 1998. 3. 2.	
47 대	박상천(朴相千)	1998. 3. 3. ~ 1999. 5. 23.	
48 대	김태정(金泰政)	1999. 5. 24. ~ 1999. 6. 7.	
49 대	김정길(金正吉)	1999. 6. 8. ~ 2001. 5. 20.	
50 대	안동수(安東洙)	2001. 5. 21. ~ 2001. 5. 23.	
51 대	최경원(崔慶元)	2001. 5. 24. ~ 2002. 1. 28.	
52 대	송정호(宋正鎬)	2002. 1. 29. ~ 2002. 7. 10.	
53 대	김정길(金正吉)	2002. 7. 11. ~ 2002. 11. 5.	
54 대	심상명(沈相明)	2002. 11. 9. ~ 2003. 2. 26.	
55 대	강금실(康錦實)	2003. 2. 27. ~ 2004. 7. 28.	
56 대	김승규(金昇圭)	2004. 7. 29. ~ 2005. 6. 29.	
57 대	천정배(千正培)	2005. 6. 30. ~ 2006. 7. 26.	
58 대	김성호(金成浩)	2006. 8. 30. ~ 2007. 9. 3.	
59 대	정성진(鄭城鎭)	2007. 9. 4. ~ 2008. 2. 28.	
60 대	김경한(金慶漢)	2008. 2. 29. ~ 2009. 9. 29.	
61 대	이귀남(李貴男)	2009. 9. 30. ~ 2011. 8. 10.	
62 대	권재진(權在珍)	2011. 8. 11. ~ 2013. 3. 10.	
63 대	황교안(黃敎安)	2013. 3. 11. ~ 2015. 6. 17.	
64 대	김현웅(金賢雄)	2015. 7. 9. ~ 2016. 11. 28.	
65 대	박상기(朴相基)	2017. 7. 19. ~ 2019. 9. 8.	
66 대	조 국(曺 國)	2019. 9. 9. ~ 2019. 10. 14.	
67 대	추미애(秋美愛)	2020. 1. 2. ~ 2021. 1. 27.	
68 대	박범계(朴範界)	2021. 1. 28. ~ 2022. 5. 9.	
69 대	한동훈(韓東勳)	2022. 5. 17. ~ 2023. 12. 20.	
70 대	박성재(朴性載)	2024. 2. 20. ~	

2. 검찰총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10. 31. ~ 1949. 6. 5.	임기제
2 대	김익진(金翼鎭)	1949. 6. 6. ~ 1950. 6. 21.	(1988 ~)
3 대	서상환(徐相懽)	1950. 6. 22. ~ 1952. 3. 5.	
4 대	한격만(韓格晩)	1952. 3. 14. ~ 1955. 9.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5. 9. 30. ~ 1956. 7. 5.	
6 대	정순석(鄭順錫)	1956. 7. 6. ~ 1958. 3. 10.	
7 대	박승준(朴承俊)	1958. 3. 11. ~ 1960. 5. 4.	
8 대	이태희(李太熙)	1960. 5. 5. ~ 1961. 5. 27.	
9 대	장영순(張榮淳)	1961. 5. 28. ~ 1963. 1. 31.	
10 대	정창운(鄭暢雲)	1963. 2. 1. ~ 1963. 12. 6.	
11 대	신직수(申稙秀)	1963. 12. 7. ~ 1971. 6. 3.	
12 대	이봉성(李鳳成)	1971. 6. 5. ~ 1973. 12. 2.	
13 대	김치열(金致烈)	1973. 12. 3. ~ 1975. 12. 18.	
14 대	이선중(李善中)	1975. 12. 19. ~ 1976. 12. 4.	
15 대	오탁근(吳鐸根)	1976. 12. 7. ~ 1980. 5. 21.	
16 대	김종경(金鍾卿)	1980. 5. 28. ~ 1981. 3. 9.	
17 대	허형구(許亨九)	1981. 3. 10. ~ 1981. 12. 15.	
18 대	정치근(鄭致根)	1981. 12. 16. ~ 1982. 5. 21.	
19 대	김석휘(金錫輝)	1982. 5. 24. ~ 1985. 2. 18.	
20 대	서동권(徐東權)	1985. 2. 21. ~ 1987. 5. 26.	
21 대	이종남(李種南)	1987. 5. 27. ~ 1988. 12. 5.	
22 대	김기춘(金淇春)	1988. 12. 6. ~ 1990. 12. 5.	
23 대	정구영(鄭銶永)	1990. 12. 6. ~ 1992. 12. 5.	
24 대	김두희(金斗喜)	1992. 12. 6. ~ 1993. 3. 7.	
25 대	박종철(朴鍾喆)	1993. 3. 8. ~ 1993. 9. 13.	
26 대	김도언(金道彦)	1993. 9. 16. ~ 1995. 9. 15.	
27 대	김기수(金起秀)	1995. 9. 16. ~ 1997. 8. 6.	
28 대	김태정(金泰政)	1997. 8. 7. ~ 1999. 5. 24.	
29 대	박순용(朴舜用)	1999. 5. 26. ~ 2001. 5. 25.	
30 대	신승남(愼承男)	2001. 5. 26. ~ 2002. 1. 15.	
31 대	이명재(李明載)	2002. 1. 17. ~ 2002. 11. 5.	
32 대	김각영(金珏泳)	2002. 11. 11. ~ 2003. 3. 10.	
33 대	송광수(宋光洙)	2003. 4. 3. ~ 2005. 4. 2.	
34 대	김종빈(金鍾彬)	2005. 4. 4. ~ 2005. 10. 17.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11. 24. ~ 2007. 11. 23.	
36 대	임채진(林采珍)	2007. 11. 24. ~ 2009. 6. 4.	
37 대	김준규(金畯圭)	2009. 8. 20. ~ 2011. 7. 13.	
38 대	한상대(韓相大)	2011. 8. 11. ~ 2012. 12. 2.	
39 대	채동욱(蔡東旭)	2013. 4. 4. ~ 2013. 9. 27.	
40 대	김진태(金鎭太)	2013. 12. 2. ~ 2015. 11. 30.	
41 대	김수남(金秀南)	2015. 12. 2. ~ 2017. 5. 15.	
42 대	문무일(文武一)	2017. 7. 25. ~ 2019. 7. 24.	
43 대	윤석열(尹錫悅)	2019. 7. 25. ~ 2021. 3. 4.	
44 대	김오수(金汚洙)	2021. 6. 1. ~ 2022. 5. 6.	
45 대	이원석(李沅秳)	2022. 9. 16. ~ 2024. 9. 15.	
46 대	심우정(沈雨廷)	2024. 9. 16. ~	

3. 법무부차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8. 7. ~ 1948. 10. 30.	
2 대	백한성(白漢成)	1948. 10. 31. ~ 1949. 6. 7.	
3 대	김갑수(金甲洙)	1949. 6. 8. ~ 1950. 3. 13.	
4 대	김윤근(金潤根)	1950. 3. 14. ~ 1951. 11.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1. 11. 30. ~ 1952. 5. 26.	
6 대	정재환(鄭在煥)	1952. 5. 27. ~ 1954. 2. 9.	
7 대	홍진기(洪璡基)	1954. 2. 17. ~ 1955. 10. 5.	
8 대	임석무(林碩茂)	1955. 10. 12. ~ 1956. 6. 12.	
9 대	배영호(裵泳鎬)	1956. 6. 23. ~ 1958. 3. 10.	
10 대	신언한(申彦瀚)	1958. 3. 11. ~ 1960. 5. 3.	
11 대	김영천(金永千)	1960. 7. 1. ~ 1960. 9. 29.	
12 대	김영환(金英煥)	1960. 8. 23. ~ 1961. 5. 15.	
	김영천(金永千)	1960. 9. 29. ~ 1962. 3. 18.	
13 대	서일교(徐壹敎)	1962. 3. 19. ~ 1963. 8. 7.	
14 대	권오병(權五柄)	1963. 8. 8. ~ 1965. 8. 27.	
15 대	이경호(李坰鎬)	1965. 8. 28. ~ 1968. 5. 23.	
16 대	김병화(金炳華)	1968. 5. 24. ~ 1969. 7. 27.	
17 대	오탁근(吳鐸根)	1969. 7. 28. ~ 1971. 8. 23.	
18 대	이선중(李善中)	1971. 8. 24. ~ 1973. 3. 8.	
19 대	김 선(金 璿)	1973. 3. 9. ~ 1974. 7. 7.	
20 대	김종경(金鍾卿)	1974. 7. 8. ~ 1977. 2. 16.	
21 대	이종원(李鐘元)	1977. 2. 17. ~ 1979. 2. 18.	
22 대	이용훈(李龍薰)	1979. 2. 19. ~ 1980. 5. 22.	
23 대	정태균(鄭泰均)	1980. 5. 26. ~ 1981. 4. 17.	
24 대	서동권(徐東權)	1981. 4. 25. ~ 1981. 12. 16.	
25 대	이영욱(李永旭)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해창(丁海昌)	1982. 6. 18. ~ 1985. 2. 27.	
27 대	김종건(金鍾鍵)	1985. 2. 28. ~ 1985. 10. 18.	
28 대	이종남(李種南)	1985. 10. 19. ~ 1987. 5. 26.	
29 대	한영석(韓永錫)	1987. 5. 30. ~ 1988. 3. 4.	
30 대	서정신(徐廷信)	1988. 3. 5. ~ 1989. 3. 28.	
31 대	김두희(金斗喜)	1989. 3. 29. ~ 1991. 4. 17.	
32 대	조성욱(趙成郁)	1991. 4. 18. ~ 1993. 3. 3.	
33 대	신 건(辛 建)	1993. 3. 4. ~ 1993. 5. 27.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4 대	김기석(金基錫)	1993. 5. 31. ~ 1994. 9. 15.	
35 대	김종구(金鍾求)	1994. 9. 16. ~ 1995. 9. 19.	
36 대	김태정(金泰政)	1995. 9. 20. ~ 1997. 8. 6.	
37 대	원정일(元正一)	1997. 8. 8. ~ 1998. 3. 18.	
38 대	최경원(崔慶元)	1998. 3. 19. ~ 1999. 6. 8.	
39 대	김경한(金慶漢)	1999. 6. 9. ~ 2001. 5. 30.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1. 5. 31. ~ 2001. 9. 11.	
41 대	신광옥(辛光玉)	2001. 9. 12. ~ 2001. 12. 13.	
42 대	김승규(金昇圭)	2001. 12. 18. ~ 2002. 2. 7.	
43 대	한부환(韓富煥)	2002. 2. 8. ~ 2002. 8. 18.	
44 대	김각영(金珏泳)	2002. 8. 19. ~ 2002. 11. 10.	
45 대	명로승(明魯昇)	2002. 11. 18. ~ 2003. 3. 11.	
46 대	정상명(鄭相明)	2003. 3. 13. ~ 2004. 5. 31.	
47 대	김상희(金相喜)	2004. 6. 1. ~ 2005. 8. 26.	
48 대	김희옥(金熙玉)	2005. 9. 8. ~ 2006. 8. 25.	
49 대	정동기(鄭東基)	2006. 8. 25. ~ 2007. 3. 4.	
50 대	정진호(鄭振昊)	2007. 3. 5. ~ 2008. 3. 9.	
51 대	문성우(文晟祐)	2008. 3. 10. ~ 2009. 1. 18.	
52 대	이귀남(李貴男)	2009. 1. 19. ~ 2009. 7. 11.	
53 대	황희철(黃希哲)	2009. 8. 12. ~ 2011. 8. 12.	
54 대	길태기(吉兌基)	2011. 8. 22. ~ 2013. 12. 23.	
55 대	김학의(金學義)	2013. 3. 14. ~ 2013. 3. 22.	
56 대	국민수(鞠敏秀)	2013. 4. 10. ~ 2013. 12. 23.	
57 대	김현웅(金賢雄)	2013. 12. 24. ~ 2015. 2. 10.	
58 대	김주현(金周賢)	2015. 2. 11. ~ 2015. 12. 23.	
59 대	이창재(李昌宰)	2015. 12. 24. ~ 2017. 5. 21.	
60 대	이금로(李今魯)	2017. 5. 22. ~ 2018. 6. 21.	
61 대	김오수(金烏洙)	2018. 6. 22. ~ 2020. 4. 27.	
62 대	고기영(高基榮)	2020. 4. 28. ~ 2020. 12. 2.	
63 대	이용구(李容九)	2020. 12. 3. ~ 2021. 6. 3.	
64 대	강성국(姜聲國)	2021. 7. 14. ~ 2022. 5. 12.	
65 대	이노공(李魯公)	2022. 5. 13. ~ 2024. 1. 18.	
66 대	심우정(沈雨廷)	2024. 1. 19. ~ 2024. 9. 15.	
67 대	김석우(金錫佑)	2024. 9. 23. ~	

4.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승준(朴承俊)	1949. 11. 14. ~ 1952. 4. 6.	
2 대	정창운(鄭暢雲)	1952. 4. 7. ~ 1955. 10. 25.	
3 대	정순석(鄭順錫)	1955. 10. 26. ~ 1956. 7. 6.	
4 대	박천일(朴天一)	1956. 7. 25. ~ 1958. 2. 28.	
5 대	소진섭(蘇鎭燮)	1959. 4. 22. ~ 1960. 5. 20.	
6 대	주운화(朱雲化)	1962. 4. 11. ~ 1963. 5. 8.	
7 대	김영천(金永千)	1963. 5. 9. ~ 1963. 12. 30.	
8 대	주운화(朱雲化)	1963. 12. 31. ~ 1964. 3. 2.	
9 대	김병화(金炳華)	1964. 3. 16. ~ 1968. 5. 31.	
10 대	이봉성(李鳳成)	1968. 6. 1. ~ 1971. 6. 4.	
11 대	김영천(金永千)	1971. 8. 24. ~ 1973. 3. 19.	
12 대	이영환(李永煥)	1973. 4. 6. ~ 1977. 2. 16.	
13 대	김일두(金一斗)	1977. 2. 17. ~ 1980. 7. 9.	
14 대	허형구(許亨九)	1980. 7. 28. ~ 1981. 3. 9.	
15 대	배명인(裵命仁)	1981. 4. 27. ~ 1981. 12. 16.	
16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2. 17. ~ 1982. 5. 23.	
17 대	이명희(李明熙)	1982. 6. 18. ~ 1985. 3. 4.	
18 대	이중근(李重根)	1985. 3. 5. ~ 1985. 3. 11.	
19 대	김세권(金世權)	1985. 5. 25. ~ 1986. 5. 1.	
20 대	정해창(丁海昌)	1986. 5. 2. ~ 1987. 5. 25.	
21 대	최상엽(崔相曄)	1987. 5. 30. ~ 1990. 3. 19.	
22 대	서정신(徐廷信)	1990. 3. 27. ~ 1991. 4. 17.	
23 대	김두희(金斗喜)	1991. 4. 18. ~ 1992. 12. 5.	
24 대	박종철(朴鍾喆)	1992. 12. 12. ~ 1993. 3. 8.	
25 대	김도언(金道彦)	1993. 3. 17. ~ 1993. 9. 15.	
26 대	송종의(宋宗義)	1993. 9. 21. ~ 1995. 9. 14.	
27 대	최명선(崔明善)	1995. 9. 20. ~ 1997. 8. 9.	
28 대	이원성(李源性)	1997. 8. 11. ~ 1999. 6. 3.	
29 대	신승남(愼承男)	1999. 6. 9. ~ 2001. 5. 25.	
30 대	김각영(金珏泳)	2001. 5. 31. ~ 2002. 2. 7.	
31 대	김승규(金昇圭)	2002. 2. 8. ~ 2002. 8. 18.	
32 대	김학재(金鶴在)	2002. 8. 19. ~ 2003. 3. 13.	
33 대	김종빈(金鍾彬)	2003. 3. 13. ~ 2004. 5. 31.	
34 대	이정수(李廷洙)	2004. 6. 1. ~ 2005. 3. 31.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4. 8. ~ 2005. 11. 23.	
36 대	임승관(林承寬)	2005. 11. 28. ~ 2007. 3. 4.	
37 대	정동기(鄭東基)	2007. 3. 5. ~ 2007. 11. 23.	
38 대	권재진(權在珍)	2007. 11. 26. ~ 2009. 1. 18.	
39 대	문성우(文晟祐)	2009. 1. 19. ~ 2009. 7. 13.	
40 대	차동민(車東旻)	2009. 7. 20. ~ 2011. 8. 3.	
41 대	채동욱(蔡東旭)	2011. 8. 22. ~ 2012. 12. 5.	
42 대	김진태(金鎭太)	2012. 12. 6. ~ 2013. 4. 4.	
43 대	길태기(吉兌基)	2013. 4. 10. ~ 2013. 12. 4.	
44 대	임정혁(任正赫)	2013. 12. 5. ~ 2015. 2. 10.	
45 대	김수남(金秀南)	2015. 2. 11. ~ 2015. 12. 1.	
46 대	김주현(金周賢)	2015. 12. 24. ~ 2017. 5. 21.	
47 대	봉 욱(奉 旭)	2017. 5. 22. ~ 2019. 6. 27.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9. 7. 31. ~ 2020. 1. 12.	
50 대	구본선(具本善)	2020. 1. 13. ~ 2020. 8. 10.	
51 대	조남관(趙南寬)	2020. 8. 11. ~ 2021. 6. 10.	
52 대	박성진(朴成鎭)	2021. 6. 11. ~ 2022. 5. 22.	
53 대	이원석(李沅秳)	2022. 5. 23. ~ 2022. 9. 15.	
54 대	심우정(沈雨廷)	2023. 9. 7. ~ 2024. 1. 18.	
55 대	신자용(申子容)	2024. 1. 24. ~ 2024. 9. 22.	
56 대	이진동(李進東)	2024. 9. 23. ~	

5. 법무부 실·국·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락윤(金洛潤)	1961. 9. 25. ~ 1962. 3. 8.	
2 대	이두성(李斗成)	1962. 8. 14. ~ 1966. 11. 18.	
3 대	나길조(羅吉祚)	1966. 11. 19. ~ 1969. 1. 9.	
4 대	윤두식(尹斗植)	1969. 1. 20. ~ 1972. 11. 21.	
5 대	정익원(鄭益源)	1972. 11. 22. ~ 1974. 8. 31.	
6 대	설동훈(薛東勳)	1974. 9. 1. ~ 1976. 2. 28.	
7 대	강우영(姜友永)	1976. 3. 1. ~ 1978. 2. 10.	
8 대	안경열(安慶烈)	1978. 2. 11. ~ 1981. 4. 26.	
9 대	송병철(宋炳喆)	1981. 4. 27. ~ 1981. 12. 16.	
10 대	김세권(金世權)	1981. 12. 17. ~ 1982. 6. 17.	
11 대	김양균(金亮均)	1982. 6. 18. ~ 1983. 7. 31.	
12 대	김유후(金有厚)	1983. 8. 1. ~ 1985. 3. 4.	
13 대	신 건(辛 建)	1985. 3. 5. ~ 1987. 6. 7.	
14 대	송종의(宋宗義)	1987. 6. 8. ~ 1989. 3. 28.	
15 대	지헌범(池憲範)	1989. 3. 29. ~ 1991. 4. 17.	
16 대	정성진(鄭城鎭)	1991. 4. 18. ~ 1991. 7. 31.	
17 대	김종구(金鍾求)	1991. 8. 1. ~ 1992. 7. 28.	
18 대	김태정(金泰政)	1992. 7. 29. ~ 1993. 3. 16.	
19 대	김상수(金相洙)	1993. 3. 17. ~ 1993. 9. 20.	
20 대	최경원(崔慶元)	1993. 9. 21. ~ 1994. 9. 15.	
21 대	최병국(崔炳國)	1994. 9. 16. ~ 1995. 9. 19.	
22 대	김경한(金慶漢)	1995. 9. 20. ~ 1997. 1. 22.	
23 대	신승남(愼承男)	1997. 1. 23. ~ 1997. 8. 13.	
24 대	윤동민(尹東旻)	1997. 8. 14. ~ 1998. 3. 22.	
25 대	신광옥(辛光玉)	1998. 3. 23. ~ 1999. 2. 21.	
26 대	김각영(金珏泳)	1999. 2. 22. ~ 1999. 6. 8.	
27 대	이범관(李範觀)	1999. 6. 9. ~ 2000. 7. 14.	
28 대	장윤석(張倫碩)	2000. 7. 15. ~ 2001. 5. 30.	
29 대	채수철(蔡秀哲)	2001. 5. 31. ~ 2002. 2. 7.	
30 대	정상명(鄭相明)	2002. 2. 8. ~ 2003. 3. 12.	
31 대	박상길(朴相吉)	2003. 3. 13. ~ 2004. 5. 31.	
32 대	김회선(金會瑄)	2004. 6. 1. ~ 2005. 4. 4.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3 대	이귀남(李貴男)	2005. 4. 8. ~ 2006. 2. 5.	2005. 5. 2.
34 대	황희철(黃希哲)	2006. 2. 6. ~ 2006. 3. 15.	정책홍보
35 대	박한철(朴漢徹)	2006. 3. 16. ~ 2007. 3. 4.	관리실로
36 대	박영렬(朴永烈)	2007. 3. 5. ~ 2008. 3. 10.	개편
37 대	소병철(蘇秉哲)	2008. 3. 11. ~ 2009. 1. 18.	2008. 2. 29.
38 대	김수남(金秀南)	2009. 1. 19. ~ 2009. 8. 11.	기획조정실로 개편
39 대	최재경(崔在卿)	2009. 8. 12. ~ 2010. 7. 14.	
40 대	김희관(金熙官)	2010. 7. 15. ~ 2011. 8. 21.	
41 대	조성욱(曺成旭)	2011. 8. 22. ~ 2012. 7. 17.	
42 대	김주현(金周賢)	2012. 7. 18. ~ 2013. 4. 9.	
43 대	봉 욱(奉 旭)	2013. 4. 10. ~ 2013. 12. 23.	
44 대	안태근(安兌根)	2013. 12. 24. ~ 2015. 2. 10.	
45 대	진경준(陳炅準)	2015. 2. 11. ~ 2015. 12. 23.	
46 대	권익환(權益煥)	2015. 12. 24. ~ 2017. 7. 31.	
47 대	조상철(趙商喆)	2017. 8. 1. ~ 2018. 6. 21.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8. 6. 22. ~ 2019. 7. 30.	
49 대	김후곤(金煦坤)	2019. 7. 31. ~ 2020. 1. 12.	
50 대	심우정(沈雨廷)	2020. 1. 13. ~ 2021. 6. 10.	
51 대	주영환(朱映奐)	2021. 6. 11. ~ 2022. 5. 22.	
52 대	권순정(權純汀)	2022. 5. 23. ~ 2024. 1. 23.	
53 대	변필건(卞弼建)	2024. 5. 16. ~	

• 법무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갑수(金甲洙)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민복기(閔復基)	1949. 7. 2. ~ 1949. 12. 31.	법무국 신설
3 대	홍진기(洪璡基)	1950. 4. 1. ~ 1954. 2. 17.	
4 대	배영호(裵泳鎬)	1954. 4. 6. ~ 1956. 6. 22.	
5 대	김영천(金永千)	1956. 6. 23. ~ 1960. 6. 30.	
6 대	이경호(李坰鎬)	1960. 7. 1. ~ 1965. 8. 27.	
7 대	김 선(金 璿)	1965. 10. 1. ~ 1966. 11. 18.	
8 대	이선중(李善中)	1966. 11. 19. ~ 1971. 8. 23.	1967. 4. 10.
9 대	김종경(金鍾卿)	1971. 8. 26. ~ 1974. 7. 7.	법무실로
10 대	주문기(朱文基)	1974. 9. 1. ~ 1978. 2. 10.	개편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1 대	변무관(卞務寬)	1978. 2. 11. ~ 1979. 8. 31.	
12 대	강우영(姜友永)	1979. 9. 1. ~ 1980. 6. 8.	
13 대	이길주(李桔柱)	1980. 6. 9. ~ 1981. 4. 26.	
14 대	백광현(白光鉉)	1981. 4. 27. ~ 1981. 12. 16.	
15 대	이준승(李準昇)	1981. 12. 17. ~ 1982. 6. 17.	
16 대	한영석(韓永錫)	1982. 6. 18. ~ 1985. 3. 4.	
17 대	김유후(金有厚)	1985. 3. 5. ~ 1987. 6. 7.	
18 대	임상현(任尙鉉)	1987. 6. 8. ~ 1989. 3. 28.	
19 대	황길수(黃吉秀)	1989. 3. 29. ~ 1991. 7. 31.	
20 대	정성진(鄭城鎭)	1991. 8. 1. ~ 1992. 7. 28.	
21 대	문종수(文鍾洙)	1992. 7. 29. ~ 1993. 3. 16.	
22 대	신창언(申昌彦)	1993. 3. 17. ~ 1993. 9. 20.	
23 대	주광일(朱光逸)	1993. 9. 21. ~ 1994. 9. 15.	
24 대	김수장(金壽長)	1994. 9. 16. ~ 1995. 9. 19.	
25 대	김상수(金相洙)	1995. 9. 20. ~ 1995. 9. 26.	
26 대	신승남(愼承男)	1995. 9. 27. ~ 1997. 1. 22.	
27 대	공영규(孔永規)	1997. 1. 23. ~ 1997. 8. 13.	
28 대	강신욱(姜信旭)	1997. 8. 14. ~ 1998. 3. 22.	
29 대	김영철(金永喆)	1998. 3. 23. ~ 1999. 6. 8.	
30 대	송광수(宋光洙)	1999. 6. 9. ~ 1999. 8. 23.	
31 대	정충수(鄭忠秀)	1999. 8. 24. ~ 2000. 7. 14.	
32 대	명로승(明魯昇)	2000. 7. 15. ~ 2001. 5. 30.	
33 대	김영진(金永珍)	2001. 5. 31. ~ 2002. 2. 7.	
34 대	장윤석(張倫碩)	2002. 2. 8. ~ 2002. 8. 18.	
35 대	유창종(柳昌宗)	2002. 8. 19. ~ 2002. 11. 17.	
36 대	박종열(朴淙烈)	2002. 11. 18. ~ 2003. 3. 12.	
37 대	홍경식(洪景植)	2003. 3. 13. ~ 2003. 8. 4.	
38 대	이기배(李棋培)	2003. 8. 5. ~ 2004. 5. 31.	
39 대	안영욱(安永昱)	2004. 6. 1. ~ 2005. 4. 7.	
40 대	김준규(金畯圭)	2005. 4. 8. ~ 2007. 3. 4.	
41 대	한상대(韓相大)	2007. 3. 5. ~ 2009. 1. 18.	
42 대	채동욱(蔡東旭)	2009. 1. 19. ~ 2009. 8. 11.	
43 대	성영훈(成永薰)	2009. 8. 12. ~ 2010. 7. 14.	
44 대	한명관(韓明官)	2010. 7. 15. ~ 2011. 8. 21.	
45 대	정병두(鄭炳斗)	2011. 8. 22. ~ 2012. 7. 17.	
46 대	황윤성(黃允成)	2012. 7. 18. ~ 2013. 4. 9.	
47 대	강찬우(姜燦佑)	2013. 4. 10. ~ 2013. 12. 23.	
48 대	정인창(鄭仁昌)	2013. 12. 24. ~ 2015. 2. 10.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49 대	봉 욱(奉 旭)	2015. 2. 11. ~ 2015. 12. 23	
50 대	김호철(金浩徹)	2015. 12. 24. ~ 2017. 7. 31.	
51 대	이용구(李容九)	2017. 8. 22. ~ 2020. 5. 18.	
52 대	강성국(姜聲國)	2020. 7. 6. ~ 2021. 7. 13.	
53 대	이상갑(李尙甲)	2021. 8. 6. ~ 2022. 9. 8.	
54 대	김석우(金錫佑)	2023. 2. 6. ~ 2023. 9. 6.	
55 대	구상엽(丘尙燁)	2023. 9. 7. ~	

• 검찰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민복기(閔復基)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이태희(李太熙)	1949. 7. 2. ~ 1949. 9. 22.	신설
3 대	최병석(崔秉錫)	1949. 11. 8. ~ 1950. 4. 20.	
4 대	신언한(申彦瀚)	1950. 6. 8. ~ 1952. 7. 17.	
5 대	권오병(權五柄)	1952. 7. 18. ~ 1953. 11. 6.	
6 대	김장섭(金長涉)	1953. 11. 23. ~ 1954. 3. 23.	
7 대	박천일(朴天一)	1954. 4. 3. ~ 1956. 7. 24.	
8 대	김치열(金致烈)	1956. 9. 17. ~ 1958. 3. 13.	
9 대	김장섭(金長涉)	1958. 3. 14. ~ 1958. 8. 30.	
10 대	주운화(朱雲化)	1958. 9. 10. ~ 1960. 9. 23.	
11 대	김찬수(金纘洙)	1960. 9. 24. ~ 1961. 7. 19.	
12 대	위청용(韋靑龍)	1961. 7. 20. ~ 1961. 12. 22.	
13 대	김용제(金龍濟)	1962. 1. 26. ~ 1963. 5. 30.	
14 대	윤두식(尹斗植)	1963. 5. 31. ~ 1964. 10. 16.	
15 대	윤운영(尹雲永)	1964. 10. 17. ~ 1966. 11. 18.	
16 대	김일두(金一斗)	1966. 11. 19. ~ 1968. 5. 31.	
17 대	김성재(金聖在)	1968. 6. 1. ~ 1969. 8. 1.	
18 대	박원호(朴元鎬)	1969. 8. 2. ~ 1971. 8. 25.	
19 대	이종원(李鐘元)	1971. 8. 26. ~ 1973. 4. 5.	
20 대	서정각(徐廷覺)	1973. 4. 6. ~ 1975. 9. 30.	
21 대	허형구(許亨九)	1975. 10. 1. ~ 1979. 2. 18.	
22 대	문상익(文相翼)	1979. 2. 19. ~ 1980. 6. 8.	
23 대	배명인(裵命仁)	1980. 6. 9. ~ 1981. 4. 26.	
24 대	정해창(丁海昌)	1981. 4. 27. ~ 1981. 12. 16.	
25 대	김기춘(金淇春)	1981. 12. 17. ~ 1982. 6. 17.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26 대	정구영(鄭銶永)	1982. 6. 18. ~ 1985. 3. 4.	
27 대	김두희(金斗熙)	1985. 3. 5. ~ 1987. 6. 7.	
28 대	김유후(金有厚)	1987. 6. 8. ~ 1989. 3. 28.	
29 대	박종철(朴鍾喆)	1989. 3. 29. ~ 1990. 3. 26.	
30 대	김도언(金道彦)	1990. 3. 27. ~ 1991. 4. 17.	
31 대	최명부(崔明夫)	1991. 4. 18. ~ 1993. 3. 16.	
32 대	김종구(金鍾求)	1993. 3. 17. ~ 1993. 9. 20.	
33 대	최영광(崔永光)	1993. 9. 21. ~ 1994. 9. 15.	
34 대	최 환(崔 桓)	1994. 9. 16. ~ 1995. 9. 19.	
35 대	김진세(金鎭世)	1995. 9. 20. ~ 1997. 1. 22.	
36 대	박순용(朴舜用)	1997. 1. 23. ~ 1997. 8. 13.	
37 대	최경원(崔慶元)	1997. 8. 14. ~ 1998. 3. 18.	
38 대	신승남(愼承男)	1998. 3. 23. ~ 1999. 6. 8.	
39 대	한부환(韓富煥)	1999. 6. 9. ~ 2000. 7. 14.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0. 7. 15. ~ 2001. 5. 30.	
41 대	송광수(宋光洙)	2001. 5. 31. ~ 2002. 2. 7.	
42 대	김진환(金振煥)	2002. 2. 8. ~ 2002. 8. 18.	
43 대	장윤석(張倫碩)	2002. 8. 19. ~ 2003. 3. 12.	
44 대	홍석조(洪錫肇)	2003. 3. 13. ~ 2003. 8. 4.	
45 대	이종백(李鍾伯)	2003. 8. 5. ~ 2004. 5. 31.	
46 대	임채진(林采珍)	2004. 6. 1. ~ 2006. 2. 5.	
47 대	문성우(文晟祐)	2006. 2. 6. ~ 2008. 3. 9.	
48 대	차동민(車東珉)	2008. 3. 11. ~ 2009. 1. 18.	
49 대	한상대(韓相大)	2009. 1. 19. ~ 2009. 8. 11.	
50 대	최교일(崔敎一)	2009. 8. 12. ~ 2011. 8. 21.	
51 대	국민수(鞠敏秀)	2011. 8. 22. ~ 2013. 4. 9.	
52 대	김주현(金周賢)	2013. 4. 10. ~ 2015. 2. 10.	
53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7. 5. 21.	
54 대	박균택(朴均澤)	2017. 5. 22. ~ 2018. 6. 18	
55 대	윤대진(尹大鎭)	2018. 6. 19. ~ 2019. 7. 30.	
56 대	이성윤(李盛潤)	2019. 7. 31. ~ 2020. 1. 12.	
57 대	조남관(趙南寬)	2020. 1. 13. ~ 2020. 8. 10.	
58 대	심재철(沈載哲)	2020. 8. 11. ~ 2021. 2. 8.	
59 대	이정수(李正洙)	2021. 2. 9. ~ 2021. 6. 10.	
60 대	구자현(具滋賢)	2021. 6. 11. ~ 2022. 5. 22.	
61 대	신자용(申子容)	2022. 5. 23. ~ 2024. 1. 23.	
62 대	권순정(權純汀)	2024. 1. 24. ~ 2024. 5. 15.	
63 대	송 강(宋 岡)	2024. 5. 16. ~	

• 보호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 26. ~ 1981. 4. 26.	1981. 1. 19.
2 대	박일흠(朴一欽)	1981. 4. 27. ~ 1982. 6. 20.	신설
3 대	이병근(李秉根)	1982. 6. 21. ~ 1983. 7. 31.	
4 대	김도언(金道彦)	1983. 8. 17. ~ 1985. 3. 5.	
5 ~ 6 대	임상현(任尙鉉)	1985. 3. 12. ~ 1987. 6. 7.	
7 대	변재일(卞在日)	1987. 6. 8. ~ 1989. 3. 28.	
8 대	장응수(張應水)	1989. 3. 29. ~ 1991. 4. 17.	
9 대	지헌범(池憲範)	1991. 4. 18. ~ 1992. 7. 28.	
10 대	김기수(金起秀)	1992. 7. 29. ~ 1993. 3. 16.	
11 대	김태정(金泰政)	1993. 3. 17. ~ 1993. 4. 2.	
12 대	원정일(元正一)	1993. 4. 3. ~ 1993. 9. 20.	
13 대	김수장(金壽長)	1993. 9. 21. ~ 1994. 9. 15.	
14 대	김병학(金秉學)	1994. 9. 16. ~ 1995. 9. 19.	
15 대	이재신(李載侁)	1995. 9. 20. ~ 1997. 1. 22.	
16 대	송정호(宋正鎬)	1997. 1. 23. ~ 1997. 8. 13.	
17 대	김영철(金永喆)	1997. 8. 14. ~ 1998. 3. 22.	
18 대	윤동민(尹東旻)	1998. 3. 23. ~ 1999. 2. 3.	
19 대	신광옥(辛光玉)	1999. 2. 22. ~ 1999. 6. 8.	
20 대	정충수(鄭忠秀)	1999. 6. 9. ~ 1999. 8. 23.	
21 대	박종열(朴淙烈)	1999. 8. 24. ~ 2001. 5. 30.	
22 대	김종빈(金鍾彬)	2001. 5. 31. ~ 2002. 2. 7.	
23 대	조규정(趙圭政)	2002. 2. 8. ~ 2002. 11. 17.	
24 대	윤종남(尹鍾南)	2002. 11. 18. ~ 2003. 3. 12.	
25 대	정동기(鄭東基)	2003. 3. 13. ~ 2004. 5. 31.	
26 대	정진호(鄭振昊)	2004. 6. 1. ~ 2005. 4. 7.	
27 대	이승구(李承玖)	2005. 4. 8. ~ 2005. 9. 11.	
28 대	김수민(金秀敏)	2005. 9. 12. ~ 2007. 3. 4.	
29 대	이상도(李相燾)	2007. 3. 5. ~ 2008. 3. 10.	

• 범죄예방정책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기준(朴基俊)	2008. 3. 11. ~ 2009. 1. 18.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2 대	소병철(蘇秉哲)	2009. 1. 19. ~ 2009. 8. 11.	
3 대	주철현(朱哲鉉)	2009. 8. 12. ~ 2010. 7. 14.	
4 대	김수남(金秀南)	2010. 7. 15. ~ 2011. 8. 21.	
5 대	김희관(金熙官)	2011. 8. 22. ~ 2012. 7. 17.	
6 대	이건주(李健周)	2012. 7. 18. ~ 2013. 4. 9.	
7 대	문무일(文武一)	2013. 4. 10. ~ 2013. 12. 23.	
8 대	황철규(黃喆奎)	2013. 12. 24. ~ 2015. 2. 10.	
9 대	오광수(吳桄洙)	2015. 2. 11. ~ 2015. 12. 23.	
10 대	이상호(李相虎)	2015. 12. 24. ~ 2017. 7. 31.	
11 대	고기영(高基榮)	2017. 8. 1. ~ 2018. 2. 27.	
12 대	강호성(姜鎬成)	2018. 4. 2. ~ 2021. 6. 29.	
13 대	윤웅장(尹雄章)	2021. 8. 6. ~ 2024. 7. 31.	
14 대	이영면(李泳冕)	2024. 8. 1. ~	

• 인권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준규(金畯圭)	2006. 5. 3. ~ 2006. 8. 6.	2006. 5. 3.신설
2 대	김종훈(金鍾勳)	2006. 8. 7. ~ 2009. 2. 15.	개 방 직
3 대	조영곤(曺永昆)	2009. 2. 28. ~ 2009. 8. 11.	검 사
4 대	송찬엽(宋讚燁)	2009. 8. 31. ~ 2010. 7. 14.	검 사
5 대	박민표(朴珉豹)	2010. 8. 2. ~ 2011. 9. 4.	검 사
6 대	이명재(李明宰)	2011. 9. 5. ~ 2012. 7. 17.	검 사
7 대	봉 욱(奉 旭)	2012. 7. 26. ~ 2013. 4. 9.	검 사
8 대	안태근(安兌根)	2013. 4. 23. ~ 2013. 12. 23.	검 사
9 대	한찬식(韓璨湜)	2014. 1. 16. ~ 2015. 2. 10.	검 사
10 대	차경환(車京煥)	2015. 2. 25. ~ 2015. 12. 23.	검 사
11 대	권정훈(權政勳)	2016. 1. 13. ~ 2017. 8. 16.	검 사
12 대	황희석(黃希錫)	2017. 9. 29. ~ 2020. 1. 14.	개 방 직
13 대	이상갑(李尙甲)	2020. 8. 28. ~ 2021. 8. 5.	개 방 직
14 대	위은진(魏銀鎭)	2022. 1. 3. ~ 2023. 2. 28.	개 방 직
15 대	승재현(昇宰賢)	2023. 10. 5. ~	

• 감찰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임채진(林采珍)	2005. 2. 1. ~ 2005. 4. 7.	직무대리
2 대	선우영(鮮于泳)	2005. 4. 8. ~ 2005. 9. 11.	
3 대	이승구(李承玖)	2005. 9. 12. ~ 2006. 2. 5.	
4 대	안종택(安鍾澤)	2006. 2. 6. ~ 2007. 3. 4.	
5 대	이복태(李福泰)	2007. 3. 5. ~ 2008. 3. 10.	
6 대	곽상욱(郭相煜)	2008. 4. 15. ~ 2009. 8. 11.	
7 대	이경재(李慶在)	2009. 9. 10. ~ 2010. 7. 14.	
8 대	안장근(安章根)	2010. 9. 1. ~ 2012. 8. 31.	개 방 직
9 대	안장근(安章根)	2012. 9. 1. ~ 2014. 8. 31.	개 방 직
10 대	김주현(金周賢)	2014. 9. 1. ~ 2015. 2. 10.	직무대리
11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5. 3. 15.	직무대리
12 대	장인종(張仁鍾)	2015. 3. 16. ~ 2017. 3. 15.	개 방 직
13 대	장인종(張仁鍾)	2017. 3. 16. ~ 2018. 4. 19.	개 방 직
14 대	송규종(宋奎鍾)	2018. 4. 20. ~ 2018. 7. 18.	직무대리
15 대	이정현(李定炫)	2018. 7. 19. ~ 2019. 4. 28.	직무대리
16 대	마광열(馬光烈)	2019. 4. 29. ~ 2020. 5. 10.	개 방 직
17 대	박은정(朴恩貞)	2020. 5. 11. ~ 2020. 7. 5.	직무대리
18 대	류 혁(柳 赫)	2020. 7. 6. ~ 2024. 12. 10.	개 방 직
19 대	민경호(閔庚鎬)	2024. 12. 11. ~	직무대리

• 교정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윤용섭(尹用燮)	1948. 11. 8. ~ 1949. 11. 8.	1948. 11. 4.
2 대	원탁연(元鐸淵)	1949. 11. 8. ~ 1951. 8. 28.	형정국 신설
3 대	최세황(崔世璜)	1951. 8. 29. ~ 1952. 7. 18.	
4 대	신언한(申彦瀚)	1952. 7. 19. ~ 1958. 3. 11.	
5 대	이병호(李丙浩)	1958. 3. 12. ~ 1960. 9. 23.	
6 대	이홍규(李弘圭)	1960. 9. 24. ~ 1961. 6. 21.	
7 대	서일교(徐壹敎)	1961. 6. 22. ~ 1962. 3. 18.	1962. 5. 21.
8 대	이봉성(李鳳成)	1962. 3. 19. ~ 1964. 10. 16.	교정국으로
9 대	윤두식(尹斗植)	1964. 10. 17. ~ 1966. 11. 18.	개편
10 대	윤운영(尹雲永)	1966. 11. 19. ~ 1968. 12. 1.	
11 대	김덕문(金德文)	1968. 12. 2. ~ 1971. 8. 25.	
12 대	김일두(金一斗)	1971. 8. 26. ~ 1973. 4. 5.	
13 대	이종원(李鐘元)	1973. 4. 6. ~ 1975. 9. 30.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4 대	김윤근(金潤槿)	1975. 10. 1. ~ 1977. 2. 16.	
15 대	송종진(宋鍾辰)	1977. 2. 17. ~ 1979. 2. 18.	
16 대	김석휘(金錫輝)	1979. 2. 19. ~ 1981. 4. 26.	
17 대	안경상(安景相)	1981. 4. 27. ~ 1981. 12. 16.	
18 대	김종건(金鐘鍵)	1981. 12. 17. ~ 1983. 7. 31.	
19 대	이병근(李秉根)	1983. 8. 1. ~ 1986. 5. 2.	
20 대	허은도(許殷道)	1986. 5. 3. ~ 1987. 6. 7.	
21 대	김동철(金東哲)	1987. 6. 8. ~ 1988. 8. 24.	
22 대	신 건(辛 建)	1988. 8. 25. ~ 1991. 4. 17.	
23 대	유순석(柳淳錫)	1991. 4. 18. ~ 1993. 3. 16.	
24 대	김기수(金起秀)	1993. 3. 17. ~ 1993. 5. 31.	직무대리
25 대	원정일(元正一)	1993. 6. 1. ~ 1993. 9. 20.	
26 대	김택수(金澤秀)	1993. 9. 21. ~ 1994. 9. 15.	
27 대	원정일(元正一)	1994. 9. 16. ~ 1995. 9. 19.	검사장급
28 대	박순용(朴舜用)	1995. 9. 20. ~ 1997. 1. 22.	
29 대	유재성(柳在成)	1997. 1. 23. ~ 1997. 8. 13.	
30 대	김수장(金壽長)	1997. 8. 14. ~ 1998. 3. 22.	
31 대	김경한(金慶漢)	1998. 3. 23. ~ 1999. 6. 8.	
32 대	이순길(李淳吉)	1999. 6. 9. ~ 2001. 6. 30.	일반직
33 대	김명환(金明煥)	2001. 7. 1. ~ 2002. 12. 31.	
34 대	하근수(河根洙)	2003. 1. 1. ~ 2003. 12. 31.	
35 대	양봉태(梁奉泰)	2004. 1. 19. ~ 2005. 12. 31.	
36 대	이인순(李仁焞)	2006. 1. 1. ~ 2006. 6. 25.	
37 대	승성신(承聖信)	2006. 6. 26. ~ 2007. 11. 29.	

• 교정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승성신(承聖信)	2007. 11. 30. ~ 2008. 6. 29.	
2 대	이태희(李台熙)	2008. 6. 30. ~ 2010. 6. 29.	
3 대	안동주(安東珠)	2010. 6. 30. ~ 2012. 6. 30.	
4 대	김태훈(金兌勳)	2012. 7. 1. ~ 2014. 6. 30.	
5 대	윤경식(尹慶植)	2014. 7. 16. ~ 2016. 6. 30.	일반직
6 대	김학성(金學成)	2016. 7. 1. ~ 2018. 6. 30.	
7 대	최강주(崔康柱)	2018. 7. 1. ~ 2020. 6. 30.	
8 대	이영희(李英姬)	2020. 7. 6. ~ 2021. 6. 30.	
9 대	유병철(柳炳喆)	2021. 7. 1. ~ 2022. 9. 1.	
10 대	신용해(愼鏞海)	2022. 9. 1. ~	

• 출입국관리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영환(李永煥)	1970. 9. 1. ~ 1971. 8. 25.	1970. 8. 20.
2 대	정익원(鄭益源)	1971. 8. 26. ~ 1972. 11. 21.	신설
3 대	안경열(安慶烈)	1972. 11. 22. ~ 1976. 6. 20.	
4 대	이길주(李桔柱)	1976. 6. 21. ~ 1978. 2. 10.	검사장급
5 대	정명래(鄭明來)	1978. 2. 11. ~ 1980. 6. 8.	
6 대	김용인(金用璘)	1980. 6. 9. ~ 1981. 4. 26.	
7 대	김기춘(金淇春)	1981. 4. 27. ~ 1981. 12. 16.	
8 대	정구영(鄭銶永)	1981. 12. 17. ~ 1982. 6. 17.	
9 대	박희태(朴熹太)	1982. 6. 18. ~ 1983. 7. 31.	
10 대	안태현(安泰鉉)	1983. 8. 1. ~ 1987. 2. 28.	일반직
11 대	조기현(曺麒鉉)	1987. 3. 2. ~ 1989. 4. 14.	
12 대	김우진(金宇鎭)	1989. 4. 15. ~ 1991. 6. 30.	
13 대	김시평(金時評)	1991. 7. 1. ~ 1993. 9. 30.	
14 대	홍석종(洪錫宗)	1993. 10. 1. ~ 1995. 3. 31.	
15 대	유병랑(兪炳郎)	1995. 4. 1. ~ 1997. 5. 31.	
16 대	구창덕(具昌德)	1997. 6. 1. ~ 1999. 4. 1.	
17 대	김수영(金秀永)	1999. 4. 2. ~ 2001. 6. 30.	
18 대	최수근(崔洙根)	2001. 7. 1. ~ 2003. 11. 21.	
19 대	이민희(李珉熙)	2003. 12. 5. ~ 2005. 12. 4.	계약직
20 대	강명득(姜命得)	2005. 12. 5. ~ 2007. 4. 1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추규호(秋圭昊)	2007. 7. 10. ~ 2009. 7. 10.	계약직
2 대	석동현(石東炫)	2009. 8. 12. ~ 2011. 8. 21.	검사장
3 대	이창세(李昌世)	2011. 8. 22. ~ 2013. 4. 3.	검사장
4 대	정동민(鄭東敏)	2013. 4. 10. ~ 2013. 12. 23.	검사장
5 대	한무근(韓武根)	2013. 12. 24. ~ 2015. 2. 10.	검사장
6 대	김영준(金英晙)	2015. 2. 11. ~ 2015. 12. 23.	검사장
7 대	진경준(陳炅準)	2015. 12. 24. ~ 2016. 5. 22.	검사장
8 대	김우현(金宇鉉)	2016. 5. 23. ~ 2017. 7. 31.	검사장
9 대	차규근(車圭根)	2017. 9. 4. ~ 2021. 7. 1.	일반직
10 대	이재유(李在兪)	2021. 7. 2. ~ 2024. 8. 15.	일반직
11 대	배상업(裵祥業)	2024. 8. 16. ~	일반직

• 인사정보관리단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행열(朴幸烈)	2022. 6. 7. ~	2022. 6. 7. 인사정보 관리단 신설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1. 본 부(5급 이상)

(2024. 12. 31. 기준)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장 관	**박성재**	2024. 2. 20.
차 관	**김석우**	2024. 9. 23.
감 찰 관(직무대리)	**민경호**	2024. 12. 11.
감찰담당관	민경호	2024. 6. 3.
검 사	하준호	2024. 6. 3.
검 사	김동율	2024. 6. 3.
검찰사무관	김승남	2020. 2. 10.
〃	최병휘	2022. 7. 18.
〃	정재훈	2024. 1. 29.
교 정 관	김충원	2022. 9. 26.
보호사무관	정명훈	2023. 7. 4.
출입국관리사무관	김관영	2022. 11. 14.
감사담당관	천정훈	2022. 7. 1.
서 기 관	고영석	2024. 7. 1.
〃	권창모	2022. 1. 24.
〃	강문덕	2023. 7. 24.
행정사무관	이승항	2022. 7. 1.
〃	김용갑	2023. 2. 16.
〃	김경모	2023. 2. 16.
〃	장윤석	2023. 4. 3.
시설사무관	최대원	2023. 7. 10.
운영지원과장	김정열	2020. 7. 1.
서 기 관	조상민	2023. 12. 16.
〃	김홍준	2024. 1. 22.
행정사무관	이두형	2023. 2. 16.
〃	이병흔	2023. 7. 10.
〃	이정환	2024. 7. 10.
시설사무관	최명근	2024. 5. 7.
〃	이영규	2024. 5. 7.
교 정 관	우치동	2024. 7. 15.
기록연구관	임진수	2024. 3. 18.
대 변 인	노선균	2024. 6. 3.
부대변인	조수영	2023. 9. 25.
홍보담당관	한정진	2013. 9. 1.
홍보기획팀장	이상우	2024. 3. 4.
행정사무관	이동훈	2024. 7.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교 정 관	이성수	2023. 6. 12.
보호사무관	이진영	2024. 1. 22.
출입국관리사무관	이운선	2024. 7. 15.
전문임기제 나급	고주현	2024. 11. 11.
기획조정실장	**변필건**	2024. 5. 16.
정책기획관	최정석	2020. 7. 1.
검 사	온정훈	2023. 2. 6.
검 사	김예은	2024. 2. 5.
행정사무관	이동주	2022. 9. 19.
비상안전기획관	류길섭	2024. 3. 11.
행정사무관	하 헌	2022. 10. 18.
정책기획단장	윤원기	2024. 6. 3.
검 사	홍정연	2024. 6. 3.
〃	정대희	2024. 6. 3.
검찰사무관	김경보	2024. 1. 29.
기획재정담당관	유지중	2022. 7. 1.
서 기 관	김범영	2024. 1. 22.
〃	김승권	2024. 7. 1.
행정사무관	홍주영	2023. 2. 16.
〃	박상열	2023. 2. 16.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	2019. 7. 1.
서 기 관	김효민	2023. 2. 16.
행정사무관	이준석	2022. 2. 22.
〃	김원경	2024. 5. 7.
시설담당관	강동헌	2022. 9. 26.
과학기술서기관	엄동철	2024. 5. 7.
시설사무관	박주선	2023. 5. 20.
〃	김진국	2024. 5. 7.
〃	유영종	2022. 9. 26.
〃	박찬웅	2023. 3. 27.
공업사무관	장동선	2019. 10. 7.
〃	방승구	2017. 10. 16.
보호사무관	정 영	2024. 1. 22.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조용찬	2022. 9. 19.
과학기술서기관	정혜찬	2022. 9. 19.
〃	김시은	2024. 5.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전 산 사 무 관	이수천	2024. 1. 1.
〃	유재두	2021. 9. 6.
〃	이미애	2024. 5. 1.
〃	박상영	2022. 10. 31.
〃	김창용	2022. 10. 31.
〃	노원섭	2024. 11. 4.
정책성과관리팀장	심경보	2023. 8. 7.
행 정 사 무 관	유재륜	2021. 8. 16.
〃	유환희	2023. 7. 10.
행복민원센터장	이영일	2023. 2. 16.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인자	2024. 8. 26.
행 정 사 무 관	신한헌	2024. 7. 1.
〃	이준서	2023. 2. 16.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현아	2024. 6. 3.
검 사	김진혁	2024. 6. 3.
전 산 사 무 관	오은정	2021. 3. 2.
〃	윤정희	2021. 8. 9.
보 호 사 무 관	명선희	2023. 1. 16.
경 정	김도경	2024. 2. 13.
법 무 실 장	**구상엽**	2023. 9. 7.
법 무 심 의 관	유태석	2024. 6. 3.
검 사	이경화	2024. 6. 3.
〃	석수민	2022. 7. 4.
〃	김영민	2023. 9. 25.
〃	박준석	2023. 9. 25.
서기관(일반임기제)	김다혜	2023. 7. 3.
행 정 사 무 관	박지수	2023. 2. 16
송 무 심 의 관	신대경	2024. 6. 3.
법 무 과 장	이시전	2024. 6. 3.
검 사	석동현	2023. 2. 6.
검찰수사서기관	한일철	2024. 1. 29.
〃	김형국	2024. 7. 15.
서기관(일반임기제)	김신우	2024. 4. 1.
검 찰 사 무 관	고동재	2021. 8. 9.
국 가 소 송 과 장	임성택	2023. 6. 26.
서기관(일반임기제)	윤경식	2024. 4. 1.
검 찰 사 무 관	유영걸	2023. 2. 6.
행 정 사 무 관	강형광	2021. 4. 2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이선민	2022. 9. 5.
〃	이현진	2023. 7. 5.
〃	정유경	2024. 7. 16.
〃	최지혜	2024. 9. 23.
행 정 소 송 과 장	서효원	2024. 6. 3.
검 사	이현진	2022. 7. 4.
〃	김영준	2022. 7. 4.
검찰수사서기관	배수용	2022. 7. 18.
검 찰 사 무 관	안정진	2024. 7. 15.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민식	2023. 3. 6.
〃	최정규	2023. 10. 30.
〃	송영주	2023. 11. 20.
〃	서나현	2024. 10. 28.
통 일 법 무 과 장	장영일	2024. 6. 3.
검 사	심재신	2023. 2. 6.
서기관(일반임기제)	한경태	2019. 2. 11.
〃	김태희	2024. 10. 30.
행 정 사 무 관	장윤정	2021. 8. 16.
검 찰 사 무 관	이정열	2024. 7. 15.
〃	김도언	2024. 7. 15.
상 사 법 무 과 장	김봉진	2023. 2. 6.
검 사	정성두	2022. 7. 4.
검 사	박광호	2023. 2. 6.
행 정 사 무 관	김영수	2023. 2. 16.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효선	2023. 12. 14.
법조인력과장	이상훈	2024. 6. 3.
검 사	이재인	2023. 2. 6.
서 기 관	유경남	2019. 12. 23.
〃	차유진	2024. 7. 1.
검 찰 사 무 관	권정근	2021. 2. 22.
행 정 사 무 관	김유호	2023. 2. 16.
〃	홍진희	2022. 2. 22.
〃	김현우	2024. 7. 1.
검 찰 국 장	**송 강**	2024. 5. 16.
사법연수원부원장	(공 석)	
검 찰 과 장	임세진	2024. 6. 3.
검 사	최형규	2024. 6. 3.
〃	이승주	2022. 2. 7.
〃	안홍균	2023. 2. 6.
〃	김민수	2024. 2. 5.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검찰수사서기관	허종욱	2024. 1. 29.
〃	이재진	2024. 1. 29.
〃	김정호	2024. 7. 15.
검찰사무관	정근용	2023. 7. 19.
형사기획과장	김태형	2024. 6. 3.
검사	곽중욱	2024. 9. 2.
〃	문호섭	2024. 2. 5.
검찰수사서기관	김호진	2024. 7. 15.
검찰사무관	김항수	2023. 1. 30.
〃	홍상채	2024. 7. 15.
공공형사과장	이병주	2024. 6. 3.
검사	이웅희	2024. 9. 2.
〃	조혜민	2024. 2. 5.
검찰사무관	이정재	2022. 1. 24.
〃	김충범	2023. 7. 19.
국제형사과장	김형원	2024. 6. 3.
검사	윤기선	2023. 2. 6.
〃	전성환	2024. 2. 5.
검찰사무관	김철민	2022. 1. 24.
〃	심주용	2023. 7. 19.
형사법제과장	한상형	2023. 9. 25.
검사	이정아	2023. 2. 6.
〃	남소정	2024. 2. 5.
검찰사무관	정태규	2021. 2. 22.
〃	김봉수	2023. 7. 19.
〃	이정민	2024. 1. 29.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2024. 8. 1.
범죄예방기획과장	송중일	2024. 3. 4.
서기관	이경주	2022. 1. 23.
보호사무관	전광수	2024. 1. 22.
〃	배성준	2023. 1. 16.
〃	서용승	2023. 1. 16.
〃	허강무	2024. 7. 22.
보호정책과장	박종균	2023. 1. 16.
보호사무관	이은주	2022. 1. 24.
〃	김미경	2023. 7. 24.
〃	김경환	2024. 1 22.
행정사무관	김지환	2024. 1. 1.
〃	홍송이	2024. 7.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치료처우과장	권은아	2023. 7. 24.
서기관	권태호	2024. 7. 22.
보호사무관	반기리	2023. 1. 16.
보호사무관	김정현	2023. 1. 16.
검찰사무관	위승환	2024. 1. 29.
보호관찰과장	이정민	2024. 3. 4.
서기관	김구회	2024. 1. 22.
보호사무관	이상기	2022. 1. 24.
〃	배현정	2024. 1. 22.
〃	임익삼	2024. 7. 22.
소년보호과장	윤일중	2023. 1. 16.
서기관	배성희	2023. 1. 16.
행정사무관	황규성	2023. 2. 16.
보호사무관	최윤경	2023. 7. 24.
〃	양정훈	2024. 1. 22.
〃	남영일	2024. 7. 22.
전자감독과장	노일석	2024. 3. 4.
보호사무관	한상경	2022. 1. 24.
〃	박지훈	2023. 7. 24.
〃	김현옥	2024. 1. 22.
소년범죄예방팀장	김동하	2024. 1. 22.
보호사무관	박유원	2023. 7. 24.
〃	이경희	2024. 1. 22.
보호사무관	정경아	2024. 7. 22.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정진경	2024. 3. 4.
보호사무관	이정희	2023. 1. 16.
〃	서상목	2024. 7. 22.
〃	김병철	2024. 7. 22.
인권국장	**승재현**	2023. 10. 5.
인권정책과장	박진열	2023. 4. 24.
서기관	김진섭	2024. 1. 22.
행정사무관	전현신	2023. 1. 19.
〃	장현주	2023. 5. 30.
검찰사무관	오형석	2024. 7. 15.
행정사무관	신민철	2024. 7. 1.
인권구조과장	정가진	2024. 6. 3.
검사	박지영	2023. 2. 6.
서기관	임성훈	2024. 1. 1.
검찰수사서기관	이진선	2024. 1. 29.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검찰사무관	이진환	2024. 1. 29.
행정사무관	손장혁	2022. 7. 4.
〃	김영남	2024. 7. 1.
인권조사과장	이호석	2024. 6. 3.
검사	김보미	2024. 2. 5.
검찰수사서기관	권주헌	2024. 7. 15.
검찰사무관	박정순	2022. 7. 18.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2024. 6. 3.
검찰사무관	김도연	2023. 1. 30.
검찰사무관	강성우	2023. 7. 19.
행정사무관	이우람	2024. 1. 1.
검찰수사서기관	안용석	2024. 7. 15.
검찰사무관	서상봉	2024. 7. 15.
검찰수사서기관	이경운	2024. 7. 15.
검찰사무관	김원진	2024. 7. 15.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2024. 2. 26.
국제법무정책과장	최태은	2024. 6. 3.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박진아	2024. 10. 16.
행정사무관	권호연	2023. 8. 8.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	2023. 9. 25.
검사	이성직	2023. 8. 8.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심인혜	2023. 8. 8.
검찰사무관(일반임기제)	박다혜	2023. 9. 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황현준	2023. 11. 17.
〃	김의석	2024. 6. 14.
국제투자분쟁과장	김지언	2023. 11. 1.
검사	민경원	2024. 2. 5.
검사	양준열	2023. 2. 6.
서기관(일반임기제)	엄영신	2020. 8. 5.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영옥	2023. 4. 17.
〃	김정훈	2024. 4. 8.
교정본부장	**신용해**	2022. 9. 1.
교정정책단장	이홍연	2024. 1. 1.
보안정책단장	오세홍	2024. 1. 1.
교정기획과장	이희정	2024. 1. 22.
서기관	위종진	2024. 1. 29.
교정관	박지영	2021. 8. 30.
〃	유동윤	2024. 1. 22.
〃	박천성	2022. 1. 24.
〃	최정필	2024. 1. 22.
〃	황율민	2024. 7. 15.
〃	이호성	2024. 7. 15.
직업훈련과장	서호성	2024. 1. 22.
교정관	정세락	2024. 7. 15.
〃	서호성	2024. 7. 15.
행정사무관	홍찬주	2023. 2. 16.
사회복귀과장	허만혁	2024. 6. 3.
교정관	최소연	2023. 6. 12.
〃	서기동	2024. 1. 22.
〃	문우식	2024. 7. 15.
복지과장	박대철	2024. 1. 22.
교정관	이동근	2024. 1. 22.
행정사무관	김희종	2024. 7. 1.
시설사무관	정민수	2024. 5. 7.
특별점검팀장	이성호	2024. 1. 22.
교정관	오원종	2024. 1. 22.
〃	장규순	2024. 7. 15.
〃	최정우	2024. 7. 15.
보안과장	양원동	2024. 1. 22.
서기관	정희동	2024. 1. 22.
교정관	김세정	2022. 9. 26.
〃	문준영	2023. 1. 30.
〃	이승룡	2024. 6. 3.
분류심사과장	이민열	2024. 1. 22.
서기관	박경식	2024. 1. 22.
교정관	양성필	2023. 1. 30.
의료과장	주소연	2024. 1. 22.
교정관	박병인	2024. 7. 15.
〃	김재형	2024. 7. 15.
심리치료과장	정혜리	2024. 1. 22.
교정관	한성률	2024. 7. 15.
〃	백학훈	2024. 7. 15.
행정사무관	김지연	2024. 4. 1.
마약사범재활팀장	김진아	2023. 6. 12.
서기관	승영근	2024. 7. 15.
교정관	김도균	2023. 6. 12.
〃	강등원	2024. 7. 15.
교정정보빅데이터팀장	정 진	2024. 6. 3.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 기 관	박성현	2024. 6. 3.
교 정 관	김동욱	2024. 6. 3.
〃	김지훈	2024. 7. 1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2024. 8. 6.
출 입 국 정 책 단 장	김정도	2022. 9. 19.
국적·통합정책단장	공 석	
출 입 국 기 획 과 장	하용국	2024. 1. 22.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이주호	2024. 1. 15.
〃	임연주	2023. 2. 8.
〃	옥효재	2022. 1. 24.
〃	최준호	2023. 2. 8.
〃	신하균	2024. 10. 21.
출 입 국 심 사 과 장	이기흠	2023. 8. 17.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김영오	2022. 1. 24.
〃	이상배	2024. 1. 15.
〃	이동진	2024. 1. 15.
체 류 관 리 과 장	이재형	2024. 1. 22.
서 기 관	이향숙	2024. 7. 15.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황민하	2023. 7. 3.
〃	김종승	2024. 7. 15.
〃	김은호	2024. 1. 15.
〃	유수열	2024. 1. 15.
이 민 조 사 과 장	유성오	2024. 1. 8.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김준철	2024. 1. 15.
〃	홍창기	2024. 10. 21.
〃	김택균	2024. 1. 15.
〃	최연준	2024. 11. 18.
〃	곽은상	2024. 7. 22.
이 민 정 보 과 장	윤철민	2023. 8. 25.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서제선	2022. 1. 24.
〃	엄기복	2024. 7. 15.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박주현	2024. 2. 29.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김창규	2024. 1. 15.
〃	송병희	2023. 6. 8.
외 국 인 정 책 과 장	이종철	2024. 1. 22.
서 기 관	이한식	2024. 7. 1.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전강섭	2024. 1. 15.
〃	박지원	2023. 7. 3.
〃	최웅석	2024. 1. 22.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국 적 과 장	장희정	2023. 8. 17.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배창준	2023. 2. 25.
〃	김용국	2024. 7. 15.
〃	강성진	2024. 1. 15.
이 민 통 합 과 장	김기락	2024. 7. 15.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최민수	2022. 7. 20.
〃	주도현	2024. 7. 15.
〃	박창현	2024. 10. 21.
난 민 정 책 과 장	김태형	2024. 1. 22.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김정욱	2022. 1. 24.
〃	박정원	2024. 1. 15.
난 민 심 의 과 장	김재원	2024. 10. 21.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안재필	2021. 1. 1.
〃	박병건	2023. 2. 28.
서 기 관	최문정	2024. 7. 15.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김명훈	2024. 1. 15.
〃	이재인	2024. 7. 15.

2. 법무연수원(4급 이상)

직 위	직 급	성 명	발 령 일
원장	고등검사장	신자용	2024. 09. 23.
기획부장	검사장	김창진	2024. 05. 16.
용인분원장	검사	서정민	2024. 06. 03.
교정연수부장	고위공무원	류기현	2022. 07. 01.
연구위원	검사장	이정현	2022. 05. 23.
	검사장	고경순	2022. 06. 27.
	검사장	구자현	2024. 05. 16.
	검사	류장만	2014. 04. 28.
	고위공무원	이재유	2023. 04. 17.
	고위공무원	양미향	2024. 01. 08.
	이사관	이은정	2024. 01. 15.
검사교수	검사	이만흠	2024. 06. 03.
		이주영	2024. 06. 03.
		오종렬	2024. 06. 03.
		김영미	2024. 06. 03.
		김정화	2023. 09. 25.
		손명지	2023. 09. 25.
		김지은	2023. 02. 06.
		우만우	2024. 09. 02.
		손수진	2024. 09. 02.
		송명진	2024. 09. 02.
로스쿨 검사교수	검사	임하나	2024. 09. 02.
		고유진	2024. 09. 02.
		이수진	2024. 09. 02.
		김현우	2023. 02. 06.
		홍지예	2023. 08. 21.
		허수진	2024. 02. 05.
		최진혁	2024. 02. 05.
기획과장	검사	손지혜	2023. 11. 01.
법무교육과장	검사	김은미	2024. 06. 03.
총무과장	서기관	이천재	2022. 02. 07.
일반연수과장	검찰수사서기관	주도경	2024. 07. 15.
교정연수과장	서기관	윤양호	2024. 01. 22.
교정훈련과장	서기관	최상혁	2023. 02. 16.
운영지원과장	검찰수사서기관	박원석	2024. 01. 29.
시설팀장	과학기술서기관	손영조	2023. 05. 22.

3. 검 찰 청

직 위	성명	발령일
(대 검 찰 청)		
검찰총장	심우정	2024. 9.16.
차장검사	이진동	2024. 9.23.
기획조정부장	전무곤	2024. 5.16.
반부패부장	구승모	2024. 9.23.
형사부장	이진수	2024. 5.16.
마약조직범죄부장	노만석	2024. 5.16.
공공수사부장	김태은	2024. 5.16.
공판송무부장	정희도	2024. 5.16.
과학수사부장	허 정	2024. 5.16.
감찰부장	(공석)	
대변인	이응철	2024. 6. 3.
범죄정보기획관	하동우	2024. 6. 3.
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	2024. 6. 3.
범죄정보2담당관	최재순	2024. 6. 3.
형사정책담당관	박규형	2024. 6. 3.
인권정책관	문현철	2024. 6. 3.
인권기획담당관	권내건	2024. 6. 3.
인권감독담당관	안창주	2024. 6. 3.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유현	2024. 6. 3.
국제협력담당관	김진호	2024. 6. 3.
정책기획과장	장준호	2024. 6. 3.
정보통신과장	이성범	2023. 9.25.
반부패기획관	용성진	2024. 6. 3.
반부패1과장	이승형	2024. 6. 3.
반부패2과장	채희만	2024. 6. 3.
반부패3과장	소정수	2024. 6. 3.
선임연구관	이준범	2024. 6. 3.
형사1과장	이희찬	2024. 6. 3.
형사2과장	김주현	2024. 6. 3.
형사3과장	윤원일	2024. 6. 3.
형사4과장	박지나	2024. 6. 3.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신준호	2024. 6. 3.

직 위	성명	발령일
마약과장	이태순	2024. 6. 3.
조직범죄과장	최재만	2024. 6. 3.
범죄수익환수과장	김정환	2024. 6. 3.
공공수사기획관	김종현	2024. 6. 3.
공안수사지원과장	홍승표	2024. 6. 3.
선거수사지원과장	송봉준	2024. 6. 3.
노동수사지원과장	이재만	2024. 6. 3.
공판1과장	박종선	2024. 6. 3.
공판2과장	국 진	2024. 6. 3.
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	2024. 6. 3.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방지형	2024. 6. 3.
디지털수사과장	호승진	2024. 6. 3.
사이버수사과장	이지연	2024. 6. 3.
감찰1과장	손상욱	2024. 6. 3.
감찰2과장	이유선	2024. 6. 3.
감찰3과장	김윤용	2024. 6. 3.
양형정책관	장유강	2024. 6. 3.
사무국장	윤득영	2023. 7. 1.
운영지원과장	오은택	2024. 7. 15.
집행과장	장정호	2024. 7. 15.
검찰총장실	(공석)	
범죄정보기획관실	(공석)	
반부패기획관실	이재수	2022. 7.18.
디지털수사과	이인수	2020. 2.10.
법과학분석과	최제웅	2023. 7.19.
운영지원과	변영욱	2024. 7. 15.
운영지원과	최대진	2023. 7.19.
운영지원과	곽재문	2024. 1.29.
공공수사기획관실	이창균	2024. 7. 15.
복지후생과장	고영호	2023. 7.19.
감찰제1과	유정호	2023. 7.19.
감찰제2과	정석현	2024. 1.29.
비상안전담당관	이영제	2024. 3.28.

직 위	성명	발령일
과학기술서기관	원민정	2020. 8.21.
과학기술서기관	정영민	2024. 7. 1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세현	2024. 9.23.
차장검사	박현철	2024. 5.16.
부장검사	차순길	2024. 6. 3.
부장검사	강성용	2024. 6. 3.
부장검사	이덕진	2024. 6. 3.
부장검사	최지석	2024. 6. 3.
인권보호관	유상민	2024. 6. 3.
사무국장	곽명규	2024. 7.15.
총무과장	조순남	2024. 1.29.
사건과장	허철안	2024. 1.29.
관리과장	정해영	2023. 7.19.
소송사무과장	임상업	2023. 7.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창수	2024. 5.16.
차장검사	박승환	2024. 6. 3.
차장검사	공봉숙	2024. 6. 3.
차장검사	이성식	2024. 6. 3.
차장검사	조상원	2024. 6. 3.
인권보호관	민영현	2024. 6. 3.
공보담당관	이준호	2024. 6. 3.
기획담당관	나하나	2024. 6. 3.
인권보호부장검사	김남훈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김승호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조아라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최순호	2024. 6. 3.
형사제4부장검사	정 현	2024. 6. 3.
형사제5부장검사	김태헌	2024. 6. 3.
형사제6부장검사	조영희	2024. 6. 3.
형사제7부장검사	권성희	2024. 6. 3.
형사제8부장검사	장재완	2024. 6. 3.
형사제9부장검사	박성민	2024. 2. 5.

직 위	성명	발령일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	이진용	2024. 6. 3.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장검사	김지혜	2024. 6. 3.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장검사	박윤희	2024. 6. 3.
약식부장검사	황현아	2024. 6. 3.
공판제1부장검사	박은혜	2024. 6. 3.
공판제2부장검사	강선주	2024. 6. 3.
공판제3부장검사	주혜진	2024. 6. 3.
공판제4부장검사	김은미	2024. 6. 3.
공판제5부장검사	정일권	2024. 6. 3.
공공수사제1부장검사	이찬규	2024. 6. 3.
공공수사제2부장검사	조민우	2024. 6. 3.
공공수사제3부장검사	김태훈	2024. 6. 3.
국제범죄수사부장검사	홍용화	2024. 6. 3.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검사	안동건	2024. 6. 3.
중요범죄조사부장검사	어인성	2024. 6. 3.
반부패수사제1부장검사	이준동	2024. 6. 3.
반부패수사제2부장검사	최재훈	2023. 9.25.
반부패수사제3부장검사	이승학	2024. 6. 3.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김보성	2024. 6. 3.
공정거래조사부장검사	김용식	2024. 6. 3.
범죄수익환수부장검사	유민종	2024. 6. 3.
사무국장	(공석)	
총무과장	이승희	2024. 7.15.
사건과장	조경익	2023. 7.19.
집행제1과장	박영범	2024. 1.29.
집행제2과장	김원석	2024. 7.15.
기록관리과장	강순석	2024. 1.29.
형사증거과장	우원구	2024. 7.15.
피해자지원과장	(공석)	
공공수사지원과장	(공석)	
수사제1과장	정관영	2024. 7.15.
수사정보과장	이철희	2023. 7.19.
수사제2과장	박남규	2024. 7.15.

직 위	성명	발령일
수사지원과장	차현수	2024. 7.15.
조사과장	장영표	2023. 7.19.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김대성	2024. 1.29.
마약수사과장	김태현	2024. 7.15.
공판과장	강영일	2024. 1.29.
검사직무대리	문상수	2024. 7.15.
검사직무대리	심재빈	2024. 1.29.
검사직무대리	남호현	2024. 7.15.
검사직무대리	(공석)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양석조	2024. 9.23.
차장검사	이동균	2024. 6. 3.
인권보호관	손진욱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이정배	2024. 3. 4.
형사제2부장검사	송영인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김지용	2024. 6. 3.
형사제4부장검사	조윤철	2024. 6. 3.
형사제5부장검사	한문혁	2024. 6. 3.
형사제6부장검사	이상혁	2024. 6. 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최나영	2024. 6. 3.
사이버범죄수사부장검사	심형석	2024. 6. 3.
공판부장검사	정현주	2024. 6. 3.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장	홍완희	2024. 6. 3.
사무국장	정영운	2024. 7.15.
총무과장	(공석)	
사건과장	양기용	2023. 7.19.
집행과장	이창영	2024. 7.15.
공판과장	박상호	2024. 1.29.
조사과장	(공석)	
수사과장	조광훈	2023. 7.19.
검사직무대리	김진형	2024. 7.15.
검사직무대리	이동진	2024. 1.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직 위	성명	발령일
검사장	신응석	2024. 5.16.
제1차장검사	이희동	2024. 6. 3.
제2차장검사	김종우	2024. 6. 3.
인권보호관	최현철	2024. 6. 3.
인권보호부장검사	백수진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이승훈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박성민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손상희	2024. 6. 3.
형사제4부장검사	남수연	2024. 6. 3.
형사제5부장검사	조재철	2024. 6. 3.
형사제6부장검사	추창현	2024. 6. 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강정영	2024. 6. 3.
공판부장검사	최선경	2024. 6. 3.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공준혁	2024. 6. 3.
금융조사1부장검사	김수홍	2024. 6. 3.
금융조사2부장검사	장대규	2024. 6. 3.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박건욱	2024. 6. 3.
사무국장	박치활	2024. 1.29.
총무과장	최성규	2024. 1.29.
사건과장	박광수	2024. 7.15.
집행과장	임주형	2024. 7.15.
조사과장	윤희창	2024. 1.29.
수사과장	이정용	2024. 7.15.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윤재남	2023. 7.19.
공판과장	김용덕	2024. 1.29.
검사직무대리	박상우	2024. 1.29.
검사직무대리	송 희	2023. 1.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진우	2024. 5.16.
차장검사	김영철	2024. 6. 3.
형사1부장검사	임유경	2024. 6. 3.
형사2부장검사	최준호	2024. 6. 3.
형사3부장검사	박종민	2024. 6. 3.
형사4부장검사	윤수정	2024. 6. 3.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5부장검사	박지훈	2024. 6. 3.
조세범죄수사부장검사	안광현	2024. 6. 3.
공판부장검사	황정임	2024. 6. 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김재남	2024. 6. 3.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이일규	2024. 6. 3.
사무국장	이상남	2024. 7.15.
총무과장	박민자	2024. 1.29.
사건과장	(공석)	
집행과장	설우용	2024. 1.29.
조사과장	(공석)	
수사과장	박종길	2023. 7.19.
공판과장	길용철	2024. 1.29.
검사직무대리	신현태	2023. 7.19.
검사직무대리	(공석)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선화	2024. 5.16.
차장검사	신동원	2024. 6. 3.
인권보호관	조남철	2024. 6.10.
형사1부장검사	조만래	2024. 6. 3.
형사2부장검사	추혜윤	2024. 6.10.
형사3부장검사	김은하	2024. 6. 3.
형사4부장검사	여경진	2024. 6. 3.
형사5부장검사	김종욱	2024. 6. 3.
공판부장검사	김지영	2024. 6. 3.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검사	박향철	2024. 6. 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이정민	2024. 6. 3.
사무국장	유정민	2024. 7.15.
총무과장	이 헌	2024. 1.29.
사건과장	(공석)	
집행과장	강윤정	2024. 7.15.
조사과장	이동영	2024. 7.15.
수사과장	조성길	2024. 1.29.
공판과장	박희권	2024. 7.15.
검사직무대리	(공석)	

직 위	성명	발령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성훈	2024. 5.16.
차장검사	하담미	2024. 6. 3.
인권보호관	이종민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조희영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장윤영	2024. 6.10.
형사제3부장검사	오미경	2024. 6. 3.
형사제4부장검사	장욱환	2024. 6. 3.
환경범죄조사부장검사	조 철	2024. 6. 3.
사무국장	김권태	2024. 1.29.
총무과장	조수희	2024. 1.29.
사건과장	조 호	2023. 7.19.
집행과장	유인진	2024. 7.15.
수사과장	윤성훈	2023. 7.19.
공판송무과장	임정복	2024. 1.29.
검사직무대리	(공석)	
(고양지청)		
지청장	단성한	2024. 6. 3.
차장검사	임삼빈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김해중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정영주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이승희	2024. 6. 3.
공판부장검사	이주현	2024. 6. 3.
사무국장	서진학	2024. 1.29.
총무과장	소진호	2024. 1.29.
사건과장	고건창	2023. 1.30.
집행과장	김우성	2024. 1.29.
수사과장	김명희	2024. 1.29.
(남양주지청)		
지청장	최영아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정혁준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이재연	2024. 6. 3.
사무과장	임종철	2023. 7.19.
집행과장	박창현	2024. 1.29.

직 위	성명	발령일
수 사 과 장	황윤성	2024. 7.15.
(인천지방검찰청)		
검 사 장	박재억	2024. 5.16.
제 1 차 장 검 사	박혁수	2024. 6. 3.
제 2 차 장 검 사	차범준	2024. 6. 3.
인 권 보 호 관	정지영	2024. 6. 3.
인권보호부장검사	이곤호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유정호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김희영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유효제	2024. 6. 3.
형사제4부장검사	용태호	2024. 6. 3.
형사제5부장검사	조은수	2024. 6. 3.
형사제6부장검사	최종필	2024. 6. 3.
국제범죄수사부장검사	정유선	2023.11. 1.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정희선	2024. 6. 3.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박성민	2024. 6. 3.
공판송무1부장검사	노정옥	2024. 6. 3.
공판송무2부장검사	장진성	2024. 6. 3.
사 무 국 장	백종동	2024. 7.15.
총 무 과 장	고익찬	2024. 1.29.
사 건 과 장	조기호	2024. 7.15.
집 행 과 장	신광섭	2024. 1.29.
조 사 과 장	이형근	2024. 7.15.
수 사 과 장	윤대규	2024. 7.15.
마약수사과장	김영상	2024. 7.15.
공판송무과장	이기용	2024. 1.29.
검사직무대리	구형석	2024. 1.29.
검사직무대리	백충영	2022. 7.18.
검사직무대리	(공석)	
(부천지청)		
지 청 장	엄희준	2024. 6. 3.
차 장 검 사	김동희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박혜란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황성민	2024. 6. 3.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3부장검사	문지석	2024. 6. 3.
공판부장검사	최혜경	2024. 6. 3.
사 무 국 장	김승호	2024. 7.15.
총 무 과 장	홍지항	2024. 7.15.
사 건 과 장	이인용	2023. 7.19.
집 행 과 장	박찬근	2024. 1.29.
수 사 과 장	김효철	2024. 7.15.
(수원고등검찰청)		
검 사 장	권순정	2024. 5.16.
차 장 검 사	고형곤	2024. 5.16.
사 무 국 장	권영준	2024. 1.29.
총 무 과 장	조동규	2024. 1.29.
사 건 과 장	윤치기	2024. 7.15.
(수원지방검찰청)		
검 사 장	김유철	2024. 5.16.
제 1 차 장 검 사	배문기	2024. 6. 3.
제 2 차 장 검 시	안병수	2024. 6. 3.
인 권 보 호 관	황우진	2024. 6.10.
인권보호부장검사	한진희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손정현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정현승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이동현	2024. 6. 3.
형사제4부장검사	김정국	2024. 6. 3.
형사제5부장검사	천대원	2024. 6. 3.
형사제6부장검사	서현욱	2023. 9.25.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장진영	2024. 6. 3.
공공수사부장검사	허 훈	2024. 6. 3.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검사	박경택	2024. 6. 3.
공판부장검사	김은경	2024. 6. 3.
사 무 국 장	조병민	2024. 7.15.
총 무 과 장	유대식	2024. 1.29.
사 건 과 장	이종철	2024. 7.15.
집 행 과 장	임상현	2023. 7.19.
조 사 과 장	안태성	2023. 7.19.

직 위	성명	발령일
수 사 과 장	설용원	2024. 1.29.
공 판 과 장	(공석)	
검 사 직 무 대 리	정구환	2024. 1.29.
검 사 직 무 대 리	장성자	2023. 7.19.
검 사 직 무 대 리	반준성	2024. 9. 2.
(성 남 지 청)		
지 청 장	서정식	2024. 6. 3.
차 장 검 사	강백신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송준구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박순애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강성기	2024. 6. 3.
공 판 부 장 검 사	박인우	2024. 6. 3.
사 무 국 장	(공석)	
총 무 과 장	소재열	2024. 7.15.
사 건 과 장	최기영	2023. 7.19.
집 행 과 장	박민규	2024. 1.29.
수 사 과 장	황성철	2024. 7.15.
검 사 직 무 대 리	(공석)	
(여 주 지 청)		
지 청 장	김용자	2024. 6. 3.
부 장 검 사	정우석	2024. 6. 3.
사 무 과 장	오홍석	2023. 7.19.
수 사 과 장	이상철	2024. 1.29.
(평 택 지 청)		
지 청 장	김훈영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황수연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최용락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신희영	2024. 6. 3.
사 무 과 장	함찬신	2024. 1.29.
수 사 과 장	정재권	2024. 1.29.
(안 산 지 청)		
지 청 장	김도완	2024. 6. 3.
차 장 검 사	이영창	2024. 6. 3.
형사1부장검사	김형원	2024. 6. 3.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2부장검사	이세희	2024. 6. 3.
형사3부장검사	임두환	2024.10.21.
형사4부장검사	이동근	2024. 2. 5.
공판부장검사	박상범	2024. 6. 3.
사 무 국 장	이택근	2024. 7.15.
총 무 과 장	(공석)	
사 건 과 장	이치길	2024. 7.15.
집 행 과 장	변태한	2024. 7.15.
수 사 과 장	이형택	2024. 7.15.
검 사 직 무 대 리	(공석)	
(안 양 지 청)		
지 청 장	김 우	2024. 6. 3.
차 장 검 사	임선화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손정숙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기노성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김희영	2024. 6. 3.
사 무 국 장	최수종	2024. 7.15.
총 무 과 장	박 준	2024. 7.15.
사 건 과 장	(공석)	
집 행 과 장	이인국	2024. 1.29.
수 사 과 장	박찬길	2023. 1.30.
(춘 천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이영림	2024. 5.16.
차 장 검 사	장준호	2024. 6. 3.
인 권 보 호 관	최 혁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오세문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홍승현	2024. 6. 3.
사 무 국 장	이운연	2024. 7.15.
총 무 과 장	왕선중	2024. 7.15.
사 건 과 장	안해룡	2024. 7.15.
수 사 과 장	김재주	2023. 7.19.
집 행 과 장	김중호	2023. 7.19.
(강 릉 지 청)		
지 청 장	이정렬	2024. 6. 3.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부장검사	문하경	2024. 6. 3.
사무과장	정한석	2024. 1.29.
수사과장	이백영	2024. 7.15.
(원주지청)		
지청장	정지은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공석)	
형사제2부장검사	류주태	2024. 6. 3.
사무과장	이보균	2024. 1.29.
수사과장	조창묵	2024. 7.15.
(속초지청)		
지청장	원신혜	2024. 6. 3.
사무과장	임재홍	2024. 7.15.
(영월지청)		
지청장	김현우	2024. 6. 3.
사무과장	윤병훈	2024. 7.15.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황병주	2024. 5.16.
차장검사	박성민	2024. 5.16.
사무국장	(공석)	
총무과장	강재성	2024. 1.29.
사건과장	(공석)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성상헌	2024. 5.16.
차장검사	유광렬	2024. 6. 3.
인권보호관	김선문	2024. 6.10.
인권보호부장검사	김재혁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안성희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이정화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허성규	2024. 6. 3.
형사제4부장검사	김가람	2024. 6. 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이주희	2024. 6. 3.
특허범죄조사부장검사	박대환	2024. 6. 3.
공판부장검사	최정민	2024. 6. 3.
사무국장	정연익	2024. 7.15.

직 위	성명	발령일
총무과장	김태경	2024. 7.15.
사건과장	주영수	2024. 7.15.
집행과장	이은승	2024. 7.15.
조사과장	송성철	2024. 1.29.
수사과장	강용묵	2024. 7.15.
검사직무대리	(공석)	
(홍성지청)		
지청장	김해경	2024. 6. 3.
형사부장검사	정원석	2024. 6. 3.
사무과장	이승열	2024. 1.29.
수사과장	김갑수	2024. 7.15.
(공주지청)		
지청장	김민구	2024. 6. 3.
사무과장	차상목	2024. 1.29.
(논산지청)		
지청장	전수진	2024. 6. 3.
사무과장	김중호	2024. 7.15.
(서산지청)		
지청장	김승언	2024. 6. 3.
형사부장검사	정수정	2024. 6. 3.
사무과장	김병준	2024. 7.15.
수사과장	정용규	2024. 7.15.
(천안지청)		
지청장	성상욱	2024. 6. 3.
차장검사	김민아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최형원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김종필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최성수	2024. 6. 3.
사무국장	홍흥표	2024. 7.15.
총무과장	진성창	2024. 1.29.
사건과장	맹광호	2024. 1.29.
집행과장	안국영	2023. 7.19.
수사과장	류재능	2024. 7.15.
(청주지방검찰청)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장	박영빈	2024. 5.16.
차 장 검 사	정수진	2024. 6. 3.
인 권 보 호 관	황정현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유옥근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신도욱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남철우	2023. 9.25.
사 무 국 장	김봉석	2024. 1.29.
총 무 과 장	(공석)	
사 건 과 장	변의복	2024. 7.15.
집 행 과 장	이해형	2024. 1.29.
수 사 과 장	이한형	2024. 1.29.
검사직무대리	(공석)	
(충주지청)		
지 청 장	강민정	2024. 6. 3.
형사부장검사	김상문	2024. 6. 3.
사 무 과 장	윤상현	2024. 1.29.
(제천지청)		
지 청 장	김준선	2024. 6. 3.
사 무 과 장	장재호	2023. 7.19.
(영동지청)		
지 청 장	송규영	2024. 6. 3.
사 무 과 장	김형빈	2023. 7.19.
(대구고등검찰청)		
검 사 장	신봉수	2024. 9.23.
차 장 검 사	손준성	2023. 9. 7.
인 권 보 호 관	최인상	2024. 6. 3.
사 무 국 장	(공석)	
총 무 과 장	김용권	2024. 1.29.
사 건 과 장	김정연	2024. 1.29.
(대구지방검찰청)		
검 사 장	박기동	2024. 5.16.
제1차장검사	유도윤	2024. 6. 3.
제2차장검사	김수민	2024. 6. 3.
인 권 보 호 관	박광현	2024. 6.10.

직 위	성명	발령일
인권보호부장검사	이상록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원형문	2024. 6.10.
형사제2부장검사	김성원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남계식	2024. 6. 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최희정	2024. 6. 3.
공공수사부장검사	김정옥	2024. 6. 3.
반부패수사부장검사	박 철	2024. 6. 3.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소창범	2024. 6. 3.
공판제1부장검사	유정현	2024. 6. 3.
공판제2부장검사	곽계령	2024. 6. 3.
사 무 국 장	(공석)	
총 무 과 장	전정규	2023. 7.19.
사 건 과 장	황재화	2024. 7.15.
집 행 과 장	김재영	2023. 7.19.
수 사 과 장	김종철	2023. 7.19.
조 사 과 장	(공석)	
공 판 과 장	김영채	2023. 7.19.
검사직무대리	이동희	2024. 7.15.
검사직무대리	이광호	2024. 1.29.
(대구서부지청)		
지 청 장	김형석	2024. 6. 3.
차 장 검 사	이 춘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한상훈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김금이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서성목	2024. 6. 3.
사 무 국 장	홍석표	2024. 7.15.
총 무 과 장	이길우	2023. 7.19.
사 건 과 장	류성욱	2024. 7.15.
집 행 과 장	이호종	2024. 1.29.
수 사 과 장	김용길	2023. 1.30.
(안동지청)		
지 청 장	엄재상	2024. 6. 3.
사 무 과 장	박순영	2024. 7.15.
수 사 과 장	김종웅	2023. 7.19.

직 위	성명	발령일
(경 주 지 청)		
지 청 장	최명규	2024. 2. 5.
형사부장검사	최소연	2024. 6. 3.
사 무 과 장	이상범	2024. 7.15.
수 사 과 장	황성문	2024. 1.29.
(포 항 지 청)		
지 청 장	이완희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고은별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김영주	2024. 6. 3.
사 무 과 장	(공석)	
집 행 과 장	김종열	2023. 7.19.
수 사 과 장	(공석)	
(김 천 지 청)		
지 청 장	최재아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박상수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정미란	2024. 6. 3.
사 무 과 장	송재동	2024. 7.15.
수 사 과 장	정광화	2024. 1.29.
(상 주 지 청)		
지 청 장	박수민	2024. 6. 3.
사 무 과 장	김진섭	2024. 7.15.
(의 성 지 청)		
지 청 장	나영욱	2024. 6. 3.
사 무 과 장	박광열	2024. 1.29.
(영 덕 지 청)		
지 청 장	김창섭	2024. 6. 3.
사 무 과 장	최석렬	2023. 7.19.
(부산고등검찰청)		
검 사 장	송경호	2024. 5.16
차 장 검 사	(공석)	
사 무 국 장	김용관	2024. 7.15.
총 무 과 장	정연철	2024. 7.15.
사 건 과 장	(공석)	
(부산지방검찰청)		
검 사 장	정영학	2023. 9. 7.
제1차장검사	김향연	2024. 6. 3.
제2차장검사	이지형	2024. 6. 3.
인 권 보 호 관	김준섭	2024. 6. 3.
인권보호부장검사	신종곤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김상균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구미옥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허지훈	2024. 6. 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손은영	2024. 6. 3.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검사	최근영	2024.10.21.
반부패수사부장검사	국 원	2024. 6. 3.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윤국권	2024. 6. 3.
공 판 부 장 검 사	정명원	2024. 6. 3.
사 무 국 장	강갑진	2024. 1.29.
총 무 과 장	강석한	2024. 7.15.
사 건 과 장	김해곤	2024. 1.29.
집 행 과 장	김기영	2024. 1.29.
조 사 과 장	추영종	2024. 7.15.
수 사 과 장	(공석)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박기영	2024. 1.29.
마약수사과장	안경석	2024. 7.15.
공 판 과 장	이필재	2024. 7.15.
검사직무대리	이경두	2024. 7.15.
〃	(공석)	
(부 산 동 부 지 청)		
지 청 장	박주성	2024. 6. 3.
차 장 검 사	김연실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송정은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천헌주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김용제	2024. 6. 3.
사 무 국 장	조현철	2024. 1.29.
총 무 과 장	최정인	2024. 7.15.
사 건 과 장	(공석)	

직 위	성명	발령일
집 행 과 장	조희래	2024. 7.15.
수 사 과 장	신상성	2024. 1.29.
(부산서부지청)		
지 청 장	윤병준	2024. 6. 3.
차 장 검 사	장혜영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신건호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김상준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정선제	2024. 6. 3.
사 무 과 장	이응현	2024. 7.15.
수 사 과 장	이상만	2024. 7.15.
집 행 과 장	장원일	2024. 7.15.
(울산지방검찰청)		
검 사 장	박현준	2024. 5.16.
차 장 검 사	구태연	2024. 6. 3.
인 권 보 호 관	김원지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이영화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김일권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하재무	2024. 6.10
형사제4부장검사	정화준	2024. 6. 3.
형사제5부장검사	인 훈	2024. 6. 3.
공판송무부장검사	이대성	2024. 6. 3.
사 무 국 장	손주근	2024. 7.15.
총 무 과 장	정유진	2023. 7.19.
사 건 과 장	배정도	2024. 1.29.
집 행 과 장	이정국	2024. 1.29.
공공수사지원과장	유경백	2024. 1.29.
수 사 과 장	(공석)	
검사직무대리	김종표	2024. 1.29.
(창원지방검찰청)		
검 사 장	정유미	2024. 5.16.
차 장 검 사	권유식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황보현희	2024. 2.13.
형사제2부장검사	강호준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이치현	2024. 6. 3.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4부장검사	김호경	2024. 6. 3.
공판송무부장검사	신미량	2024. 6. 3.
사 무 국 장	김중근	2024. 1.29.
총 무 과 장	강정봉	2024. 1.29.
사 건 과 장	김재철	2024. 7.15.
집 행 과 장	정영호	2024. 1.29.
조 사 과 장	여문숙	2024. 1.29.
수 사 과 장	하도겸	2024. 7.15.
검사직무대리	최순례	2024. 1.29.
(마산지청)		
지 청 장	김지완	2024. 2. 5.
형사제1부장검사	이용균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정지영	2024. 6. 3.
사 무 과 장	박준형	2024. 1.29.
수 사 과 장	정남영	2024. 1.29.
(진주지청)		
지 청 장	김상현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박석용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김미수	2024. 6. 3.
사 무 과 장	이승환	2024. 7.15.
집 행 과 장	안상보	2024. 7.15.
수 사 과 장	최희주	2024. 1.29.
(통영지청)		
지 청 장	정원두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임연진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송인호	2024. 6. 3.
사 무 과 장	김형오	2024. 7.15.
수 사 과 장	김일수	2024. 1.29.
(밀양지청)		
지 청 장	정영서	2024. 6. 3.
사 무 과 장	손종운	2023. 7.19.
(거창지청)		
지 청 장	임길섭	2024. 2.13.
사 무 과 장	남복현	2024. 7.22.

직 위	성명	발령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임승철	2024. 9.23.
차장검사	(공석)	
인권보호관	정경진	2024. 6. 3.
사무국장	(공석)	
총무과장	배은호	2024. 7.15.
사건과장	안호현	2024. 1.29.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종혁	2024. 5.16.
차장검사	임일수	2024. 6. 3.
인권보호관	이장우	2024. 6. 3.
인권보호부장검사	백승주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허성환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김희주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신금재	2024. 6. 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창희	2024. 6. 3.
공공수사부장검사	서영배	2024. 6. 3.
반부패강력수사부장검사	조정호	2024. 6. 3.
공판부장검사	윤나라	2024. 6. 3.
사무국장	장병인	2024. 7.15.
총무과장	이상조	2024. 7.15.
사건과장	명관호	2024. 7.15.
집행과장	박기랑	2023. 7.19.
조사과장	김선철	2024. 7.15.
수사과장	박춘광	2023. 7.19.
공판과장	한경호	2024. 1.29.
검사직무대리	(공석)	
(목포지청)		
지청장	곽영환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이윤희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이경석	2024. 6. 3.
사무과장	고영록	2023. 7.19.
수사과장	허기중	2024. 7.15.
(장흥지청)		
지청장	이태협	2024. 6. 3.
사무과장	이상인	2024. 1.29.
(순천지청)		
지청장	김성동	2024. 6. 3.
차장검사	강석철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신승희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김병철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김형걸	2024. 6. 3.
사무국장	김철곤	2024. 7.15.
총무과장	윤한평	2024. 7.15.
사건과장	김유곤	2024. 1.29.
집행과장	양유철	2024. 1.29.
수사과장	김용주	2024. 1.29.
(해남지청)		
지청장	강용묵	2024. 6. 3.
사무과장	배윤오	2024. 7.15.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영진	2024. 5.16.
차장검사	한기식	2024. 6. 3.
인권보호관	이영규	2024. 6.10.
형사제1부장검사	정보영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윤동환	2024. 6.10.
형사제3부장검사	한연규	2024. 6. 3.
사무국장	김영헌	2024. 7.15.
총무과장	김수일	2024. 1.29.
사건과장	채진수	2023. 7.19.
집행과장	김왕태	2024. 1.29.
수사과장	(공석)	
검사직무대리	강병철	2023. 7.19.
(군산지청)		
지청장	박진성	2024. 6. 3.
형사제1부장검사	김재성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김지숙	2024. 6. 3.
사무과장	최호준	2024. 7.15.

직 위	성명	발령일
집 행 과 장	성백우	2023. 7.19.
수 사 과 장	(공석)	
(정 읍 지 청)		
지 청 장	김윤정	2024. 6. 3.
사 무 과 장	이종석	2024. 7.15.
(남 원 지 청)		
지 청 장	반 지	2024. 6. 3.
사 무 과 장	이병준	2024. 1.29.
(제주지방검찰청)		
검 사 장	장동철	2024. 5.16.
차 장 검 사	김윤선	2024. 6. 3.
인 권 보 호 관	양성필	2024. 6.10.
형사제1부장검사	최미화	2024. 6. 3.
형사제2부장검사	최용보	2024. 6. 3.
형사제3부장검사	남대주	2024. 6. 3.
사 무 국 장	정민수	2024. 7.15.
총 무 과 장	김병호	2023. 7.19.
사 건 과 장	장정훈	2024. 7.15.
집 행 과 장	최병주	2024. 7.15.
수 사 과 장	서동희	2024. 1.29.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공석)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심선옥	2024. 3. 4.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임재홍	2024. 1. 22.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안종우	2024. 1. 29.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이승욱	2023. 7. 24.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강영욱	2024. 1. 22.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	2024. 1. 22.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고영종	2021. 8. 30.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문희갑	2023. 7. 24.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배점호	2024. 1. 22.	수원보호관찰소 소장	양현규	2024. 3. 4.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신달수	2024. 1. 22.	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	2023. 7. 24.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관찰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형섭 민덕희 배종상	2024. 11. 4. 2024. 12. 13. 2024. 7. 22.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정성수 홍정원 정주호	2024. 3. 4. 2023. 7. 24. 2024. 1. 22.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국	2024. 1. 22.	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	2023. 1. 16.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조연호	2024. 3. 4.	대구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공석) 이경민 이재화	 2024. 7. 22. 2024. 1. 22.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부산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안병경 김양곤 정영식	2024. 3. 4. 2023. 11. 30. 2024. 1. 22.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정기조	2023. 1. 24.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황철주	2024. 1. 22.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지소장	윤현봉	2024. 1. 22.
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	2023. 7. 24.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지소장	김영배	2023. 7. 24.
광주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이법호 이래강 김정렬	2024. 3. 4. 2024. 7. 22. 2024. 7. 22.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지소장	박현배	2024. 1. 22.
전주보호관찰소 소장	김충섭	2024. 1. 22.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지소장	김남중	2022. 9. 19.
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고정대	2024. 11. 18.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양병곤	2024. 1. 22.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센터장	김근한	2023. 7. 24.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지소장	김원진	2022. 9. 19.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센터장	정경진	2024. 3. 4.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최배근	2024. 7. 22.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지소장	김택준	2023. 7. 24.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지소장	홍재성	2024. 7. 22.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국립법무병원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소년원		
원장	윤태영	2024. 10. 28.
행정지원과장	강의곤	2023. 2. 16.
교무과장	성봉호	2024 7. 22
분류보호과장	이지영	2023. 7 . 1.
호송과장	김진우	2024. 7. 22.
의무과장	(공 석)	
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	2023. 1. 16.
행정지원과장	송종찬	2024. 7. 22.
교무과장	이용재	2023. 7. 24.
분류보호과장	곽칠선	2023. 7. 24.
의무과장	시현욱	2019. 2. 18.
대구소년원		
원장	전상호	2023. 7. 24.
행정지원과장	최웅식	2024. 7. 22.
교무과장	석철우	2024. 3. 4.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2024. 3. 4.
의무과장	(공 석)	
광주소년원		
원장	신원식	2023. 1. 16.
행정지원과장	김경모	2023. 7. 24.
교무과장	김인수	2024. 7. 22.
분류보호과장	정상현	2024. 7. 22.
의무과장	김재휴	2022. 10. 31.
전주소년원		
원장	염정훈	2023. 7. 24.
행정지원과장	이전구	2024. 1. 22.
교무과장	임춘덕	2024. 7. 22.
분류보호과장	허용석	2024. 7. 22.
의무과장	김학성	2019. 7. 1.
대전소년원		
원장	이승원	2024. 3. 4.
행정지원과장	정태권	2024. 1. 22.
의료재활과장	김형석	2024. 7. 22.
분류보호과장	박우근	2024. 7. 22.
의무과장	장재호	2012. 11. 1.
청주소년원		
원장	황남례	2024. 3. 4.
행정지원과장	김지호	2024. 7. 22.
교무과장	장윤정	2024. 1. 22.
의무과장	(공 석)	
안양소년원		
원장	김대요	2023. 7. 24.
행정지원과장	윤진철	2024. 7. 22.
교무과장	이춘희	2023. 7. 24.
의무과장	최원석	2015. 7. 30.
춘천소년원		
원장	오상섭	2023. 1. 16.
행정지원과장	서보원	2024. 7. 22.
교무과장	변형섭	2023. 1. 16.
분류보호과장	노근성	2024. 1. 22.
의무과장	변우식	2024. 12. 2.
제주소년원		
원장	정 윤	2023. 7. 24.
행정지원과장	전영선	2024. 1. 22.
교무과장	양호원	2024. 1. 22.
의무과장	최병선	2018. 10. 19.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장	권기한	2022. 9 19.
행정지원과장	윤한철	2024. 1. 22.
교무과장	송용환	2024. 3. 4.
분류심사과장	이맹숙	2024. 7. 22.
호송과장	고기원	2023. 7. 24.
의무과장	박정환	2024. 9. 6.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종철	2024. 3. 4.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태호	2023. 7. 24.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준성	2024. 3. 4.
국립법무병원		
원장	이영렬	2024. 5. 7.
의료부장	(공 석)	
행정지원과장	김시종	2024. 3. 4.
감호과장	김충원	2023. 7. 24.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4급 이상)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보 존 소 장	(공 석)	-
검 사	곽 금 희	2024. 06. 03.
검 찰 수 사 서 기 관	유 혜 원	2024. 07. 15.

6.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지방교정청		
청장	최제영	2024. 1. 1.
총무과장	정인식	2024. 1. 22.
보안과장	허영열	2024. 1. 22.
사회복귀과장	조진호	2024. 1. 22.
분류센터장	최종일	2024. 1. 22.
대구지방교정청		
청장	김동현	2024. 1. 1.
총무과장	이현주	2024. 1. 22.
보안과장	안경수	2024. 6. 3.
사회복귀과장	조형근	2024. 7. 15.
분류센터장	손은경	2024. 8. 19.
대전지방교정청		
청장	김승만	2023. 7. 1.
총무과장	박기주	2023. 12. 11.
보안과장	김용국	2023. 7. 1.
사회복귀과장	박상용	2024. 1. 22.
분류센터장	김지명	2024. 6. 3.
광주지방교정청		
청장	하영훈	2024. 1. 1.
총무과장	조항덕	2024. 7. 15.
보안과장	박승률	2024. 7. 15.
사회복귀과장	이병훈	2024. 7. 15.
분류센터장	김종곤	2024. 7. 15.
서울구치소		
소장	김문태	2023. 11. 27.
부소장	김선희	2024. 7. 15.
총무과장	권익광	2024. 7. 15.
보안과장	권혁규	2024. 7. 15.
의료과장	이병연	2024. 3. 29.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구교도소		
소장	한태환	2024. 1. 22.
부소장	최창호	2023. 11. 27.
총무과장	김영춘	2024. 7. 15.
보안과장	최근동	2024. 7. 15.
의료과장	노형균	2024. 8. 1.
대전교도소		
소장	윤창식	2024. 12. 8.
부소장	조영혁	2024. 7. 15.
총무과장	구민규	2024. 7. 15.
보안과장	강성안	2024. 11. 6.
의료과장	전병구	2024. 8. 19.
논산지소장	김만헌	2024. 7. 15.
광주교도소		
소장	김도현	2024. 1. 1.
부소장	황인균	2024. 7. 15.
총무과장	김우석	2024. 1. 22.
보안과장	여주원	2024. 1. 22.
의료과장	김주오	2017. 4. 7.
안양교도소		
소장	신동윤	2024. 1. 1.
부소장	류일열	2024. 7. 15.
총무과장	김에오	2024. 7. 1.
보안과장	이성보	2024. 1. 22.
의료과장	남병길	2024. 3. 11.
부산구치소		
소장	박수연	2024. 1. 1.
부소장	임유정	2024. 7. 15.
총무과장	(공석)	
보안과장	정식영	2024. 7. 15.
의료과장	양용석	2024. 12. 2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수원구치소		
소장	김현우	2024. 1. 22.
부소장	백성현	2024. 1. 22.
총무과장	이민희	2024. 7. 15.
보안과장	김용인	2024. 1. 22.
의료과장	조재관	2020. 2. 24.
평택지소장	김성열	2024. 1. 22.
서울동부구치소		
소장	박경선	2024. 1. 22.
부소장	이권상	2024. 1. 29.
총무과장	최장문	2024. 1. 22.
보안과장	최장훈	2024. 1. 22.
의료과장	강승원	2021. 9. 13.
인천구치소		
소장	민낙기	2024. 7. 15.
부소장	박병근	2024. 1. 22.
총무과장	오희순	2024. 7. 15.
보안과장	임용희	2024. 7. 15.
의료과장	김찬성	2022. 1. 24.
서울남부구치소		
소장	최규철	2024. 1. 1.
부소장	정상필	2024. 7. 15.
총무과장	노해수	2024. 1. 22.
보안과장	정영승	2024. 1. 22.
의료과장	박종민	2016. 9. 26.
천안개방교도소		
소장	이정용	2024. 6. 3.
의료과장	정승기	2024. 4.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소장	김재술	2024. 1. 22.
총무과장	박형규	2024. 1. 22.
의료과장	최선경	2024.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최진규	2024. 1. 29.
부소장	이희동	2024. 7. 15.
총무과장	유시록	2024. 7. 15.
보안과장	권영복	2024. 7. 15.
의료과장	한주섭	2002. 1. 21.
시설과장	최해규	2024. 5. 7.
전주교도소		
소장	안영삼	2024. 1. 22.
총무과장	오병각	2024. 7. 15.
보안과장	김현철	2024. 7. 15.
의료과장	(공석)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여주교도소		
소장	배경석	2024. 7. 15.
의료과장	곽연우	2024. 3. 11.
부산교도소		
소장	주정민	2024. 1. 29.
총무과장	이현국	2024. 7. 15.
의료과장	윤종철	2015. 7. 14.
의정부교도소		
소장	김학봉	2024. 1. 22.
총무과장	박평규	2024. 6. 3.
의료과장	주재호	2021. 9. 13.
창원교도소		
소장	윤순풍	2024. 1. 22.
의료과장	(공석)	
순천교도소		
소장	조병주	2024. 1. 22.
의료과장	박경철	2014. 11. 7.
서울남부교도소		
소장	장원재	2023. 7. 1.
의료과장	양정원	2024. 4. 29.
포항교도소		
소장	이규성	2024. 1. 29.
의료과장	우재택	2017. 8. 7.
진주교도소		
소장	장귀남	2024. 7. 15.
의료과장	이진철	2007. 12. 13.
목포교도소		
소장	김남진	2024. 7. 15.
의료과장	강 철	2016. 1. 1.
대구구치소		
소장	김영광	2023. 7. 1.
의료과장	이재광	2005. 11. 7.
군산교도소		
소장	정진우	2024. 7. 15.
의료과장	(공석)	
청주교도소		
소장	박원규	2024. 1. 22.
의료과장	박준석	2024. 3. 04.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천 안 교 도 소		
소 장	서 민	2024. 1. 22.
의 료 과 장	신준식	2016. 9.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소 장	김정학	2024. 1. 22.
의 료 과 장	최창학	2011. 1. 1.
춘 천 교 도 소		
소 장	김성호	2024. 1. 22.
의 료 과 장	민형식	2024. 4. 1.
원 주 교 도 소		
소 장	조관성	2024. 7. 15.
의 료 과 장	신재전	2024. 12. 23.
안 동 교 도 소		
소 장	윤영주	2024. 1. 22.
의 료 과 장	(공석)	
경북북부제2교도소		
소 장	이영성	2024. 1. 22.
의 료 과 장		
청 주 여 자 교 도 소		
소 장	박정민	2024. 1. 29.
의 료 과 장	박병철	2018. 3. 13.
김 천 소 년 교 도 소		
소 장	이일환	2024. 7. 15.
의 료 과 장	최인환	2008. 1. 24.
공 주 교 도 소		
소 장	김봉영	2024. 1. 22.
의 료 과 장	이준호	2024. 4. 1.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 장	오선호	2024. 7. 15.
의 료 과 장	(공석)	
울 산 구 치 소		
소 장	김홍대	2024. 8. 19.
의 료 과 장	서보균	2020. 3. 9.
정 읍 교 도 소		
소 장	지경선	2024. 7. 15.
의 료 과 장	장성용	2024. 6. 3.
거 창 구 치 소		
소 장	이도곤	2024. 1. 22.
의 료 과 장	김득종	2024. 9. 23.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제 주 교 도 소		
소 장	허덕환	2024. 7. 15.
의 료 과 장	박재홍	2018. 8. 20.
홍 성 교 도 소		
소 장	제환국	2024. 1. 22.
의 료 과 장	윤성로	1994. 11.12.
서 산 지 소 장	송재열	2024. 1. 22.
경 주 교 도 소		
소 장	박은옥	2024. 7. 15.
의 료 과 장	조윤철	2022. 1. 10.
통 영 구 치 소		
소 장	이성하	2024. 1. 22.
의 료 과 장	(공석)	
밀 양 구 치 소		
소 장	김태훈	2024. 1. 22.
의 료 과 장	전윤식	2014. 5. 12.
상 주 교 도 소		
소 장	정영모	2024. 1. 22.
의 료 과 장	박현우	2022. 10. 4.
강 릉 교 도 소		
소 장	주기남	2024. 7. 15.
의 료 과 장	한명식	2023. 7. 5.
영 월 교 도 소		
소 장	한희도	2024. 1. 22.
의 료 과 장	김건도	2015. 6. 23.
장 흥 교 도 소		
소 장	최국진	2024. 1. 22.
의 료 과 장	김규정	2020. 2. 17.
해 남 교 도 소		
소 장	윤대하	2024. 7. 15.
의 료 과 장	최영기	2017. 4. 10.
충 주 구 치 소		
소 장	김 승	2024. 7. 15
의 료 과 장	(공석)	
강 원 북 부 교 도 소		
소 장	김희곤	2024. 7. 15.
의 료 과 장	손승재	2021. 12. 20.

7.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외국인보호소/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공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종국	2023. 9. 1.
지원국장	유현송	2024. 7. 15.			
심사1국장	길강묵	2023. 8. 17.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태완	2024. 1. 8.
심사2국장	(지원근무)				
총무과장	이은경	2024. 7. 15.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반재열	2024. 9. 14.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호원	2024. 7. 15.
총무과장	은기범	2024. 12. 4.			
관리과장	배덕환	2024. 10. 21.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박진수	2024. 1. 8.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용성	2024. 1. 15.			
출입국정보화센터장	(공석)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이동휘	2022. 3. 8.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구병모	2024. 7. 15.
관리과장	이상한	2024. 7. 15.			
이민특수조사대장	정영부	2024. 1. 15.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용규	2023. 8. 17.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2024. 1. 8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재남	2024. 1. 8.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김현채	2023. 2. 8.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박찬순	2024. 1. 8.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차용호	2024. 1. 24.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종복	2024. 1. 8.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승현	2024. 7. 15.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임은진	2024. 1. 8.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공석)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강성록	2024. 1. 8.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류인성	2024. 8. 23.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서영군	2024. 7. 15.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홍규	2024. 1. 8.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류재석	2023. 8. 17.

제6절 인사

• 총 괄

(2024. 1 ~ 12월)

구 분		계	승 진	전 보	신규임용	면 직
계		15,014	3,305	8,761	1,747	1,201
검 사		1,472	0	1,194	145	133
일반직	소 계	13,542	3,305	7,567	1,602	1,068
	본부 (연수원)	411 (69)	109 (1)	222 (60)	27 (1)	53 (7)
	검찰청	4,924	1,269	2,889	393	373
	보호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1,720	328	1,008	211	173
	지방교정청 (구치소, 교도소)	5,114	1,329	2,584	804	397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1,304	269	804	166	65

제 7 절 국외훈련·출장

• 검 사

(2024. 1 ~ 12월)

직급 \ 기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208	52	14	142
검 찰 총 장	-	-	-	-
검 사	208	52	14	142

• 일반직

(2024. 1 ~ 12월)

기관 \ 기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220	9	7	204
본 부	97	1	-	96
검 찰 청	54	3	3	48
교 정 기 관	22	1	1	20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9	1	2	6
출입국·외국인기관	35	1	1	33
법 무 연 수 원	1	-	-	1

제8절 국제교류 현황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2024. 1. 1. ~ 12. 31.)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1. 19.	몽골	몽골 이민청장	우간바야르 네르구이	• 양국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출입국 이민당국 간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20.	미국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줄리 터너 (Julie Turner)	• 북한인권 관련 책임규명 방안 논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 21.	태국	태국 영사국장	루즈 탐몽콜	• 출입국 및 이주 노동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29.	국제이주기구 (IOM)	IOM 사무총장	에이미 포프	• 법무부-IOM 간 국제이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역할 등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 27.	말레이시아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공사)	나자루딘 빈 자파르	•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 4.	스페인	스페인 중앙정부 카나리아 대표	안셀모 페스타나 파드론	• 양국 간 불법 이민 대응 및 난민관련 정책 상호 공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 5.	유엔난민기구 (UNHCR)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보	라우프 마조우	• 한-UNHCR 교류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5. 2.	우간다	주한우간다 대사 (일본 상주)	토파스 카화	• 보호 외국인 관련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5. 8.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 장관	무사예프 베흐조드	• 출입국 및 이주 노동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5. 10.	우즈베키스탄	법무차관	Meliev Khudayor Khurramovich	• 법제정비 지원 및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이행 등 양국 법무부 간 법무협력 강화 논의	국제법무국
5. 21.	베트남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장	팜 당 코아	•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7. 12.	태국	주한태국 대사	타니 쌩랏	•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7. 16.	미국	외교위원회 실무국장	Mary Vigil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국내 이행상황 공유	국제법무국
7. 22.	베트남	감옥관리경찰국장	Le Minh Hung	• 2025년 제43차 APCCA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하우 공유 등	교정본부
8. 7.	싱가포르	주한싱가포르대사	에릭 테오	•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 기념 양국 법무협력방안 논의	국제법무국
9. 19.	UNCITRAL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 사무소장	아티타 코민드르	• 법무부-UNCITRAL 공동 주최 국제상거래 분야 세미나 관련 협의	국제법무국
9. 24.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응웬 티 마이 프엉	• 우리나라 및 베트남 공증인법, 공증제도 관련 현안 논의	법무실
9. 25.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	친 말린	• 캄보디아 조정법제 정비 지원 5개년 계획 최종 성과 등 논의	국제법무국
10. 2.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내무부 이민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아슬란 아탈리코브	•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 10.	일본	법무성 민사국 총무과장	후지타 마사토	• 우리나라 공증제도 관련 현안 논의	법무실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10. 15.	유럽연합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	올로프 스쿠그	• 역내 인권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인 권 국
10. 15.	캄보디아	내무부 감옥국장	Chhron Sanath	• 양국의 우호 증진 방안 및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논의	교정본부
10. 21.	일본	주한 일본 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 28.	UNCITRAL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총장	안나 주빈브렛	• 법무부-UNCITRAL 간 협력관계 강화	국제법무국
10. 28.	일본	법무성 국제법무국 과장	고이케 타다히로	• 양국 국제거래법분야 주요현안 공유 및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국제법무국
11. 1.	베트남	법무부 차관	Nguyen Khanh Ngoc	• 양국 법무부 간 법무협력 강화 방안 논의	국제법무국
11. 1.	UNIDROIT (국제사법위원회)	사무총장	Ignacio Tirado	• 법무부-UNIDROIT 간 업무교류 활성화 및 상호지원 방안 검토	국제법무국
11. 21.	태국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	사랏사눈 우노폰	•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1. 28.	필리핀	필리핀 이주노동자부 차관	펠리시타스 큐 베이	•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2024. 1. 1. ~ 12. 31)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 15. ~ 1. 19.	태국	• OECD 뇌물방지작업반 2분기 정례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1. 22. ~ 1. 26.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ISDS 제도 개선) 제47차 회의	검사 양준열 외 3명	국 제 법 무 국
1. 23.	한국	•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참석(서비스분과)	사무관 최승은	국 제 법 무 국
1. 23. ~ 1. 25.	스위스	• 제14차 국제이주개발포럼(GFMD) 총회	외국인정책과 박지원 사무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28. ~ 2. 11.	미국	• UN 사이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AHC) 7차 회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1. 29. ~ 2. 2.	네덜란드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관할권 작업반 회의	사무관 최승은	국 제 법 무 국
2. 12. ~ 2. 16.	미국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제79차 회의	검사 박재성 외 1명	국 제 법 무 국
2. 18. ~ 2. 25.	프랑스	• FATF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2. 20. ~ 2. 22.	한국	•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제2차 협상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2. 23. ~ 2. 25.	한국	•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2. 29. ~ 3. 1.	페루	•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BMG) 회의	출입국심사과 오유미 주무관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3. 2. ~ 3. 7.	페루	•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산하경제위원회(EconomicCommittee) 회의	검사 정성두	법 무 실
3. 7.	벨기에 (화상참석)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ISDS 제도개선) 제7차 회기 간 회의	사무관 박소영	국 제 법 무 국
3. 3. ~ 3. 9.	프랑스	•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1분기 정례회의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3. 13. ~ 3. 18.	이탈리아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38차 정기총회	이노공 차관 외 2명	법 무 실
3. 19. ~ 3. 23.	싱가포르	• 싱가포르와 범죄인 인도 조약체결을 위한 협상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3. 25.	(화상참석)	•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제3차 협상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4. 1. ~ 4. 7.	미국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ISDS 제도개선) 제48차 회의	검사 이성직 외 3명	국 제 법 무 국
4. 2. ~ 4. 4.	(화상참석)	• 대한민국-칠레 FTA 개선 9차 협상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4. 2. ~ 4. 9.	미국	• 美 법무부, FTC 주재 국제 경쟁당국 반독점 정상회의(Enforcer's Summit)	국제법무지원과장 외 1명	국 제 법 무 국
4.3. ~ 4.10.	미국	• 2024년 美연방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 주최 국제회의	검사 정성두	법 무 실
4.7. ~ 4.11.	프랑스(파리)	• 제47차 OECD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검사 박광호	법 무 실
4. 15.	미국	• 한미 북한인권 협의	검사 최용보 외 1명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
4. 15. ~ 4. 17.	한국	• 대한민국-조지아 EPA 제1차 협상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4. 17. ~ 4. 20.	중국	• 제57회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회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4. 18. ~ 4. 19.	한국	• 대한민국-조지아 BIT 제정 협상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4. 22. ~ 4. 26.	영국	• 국제해사기구(IMO) 제111차 법률위원회 회의	전문위원 길시온	국 제 법 무 국
4. 24. ~ 5. 2.	미국	•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	국제형사과장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4. 29.	서울	•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활동 원탁회의	사무관 강인표 외 1명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
5. 4. ~ 5. 8.	홍콩	• 제26차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국제법무국장 외 3명	국 제 법 무 국
5. 5. ~ 5. 12.	미국	• 국제연합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유통가능한 화물증권 실무작업반(WorkingGroup VI) 제44차 회의	서기관 박세준	법 무 실
5. 11. ~ 5. 19.	미국	•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도산법 제5실무작업반(WorkingGroupV) 제64차 회의	사무관 김효선	법 무 실
5. 12. ~ 5. 17.	스위스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사무관 장현주 외 1명	인 권 국
5. 13. ~ 5. 17.	브라질	• ICN(국제경쟁네트워크) 연례 총회 한국 대표단 참석	국제법무지원과장	국 제 법 무 국
5. 13. ~ 5. 18.	프랑스	• 유럽평의회 공조담당자 회의 (PC-OC)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5. 19. ~ 5. 31.	(화상참석)	• 대한민국-조지아 EPA 제2차 협상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5. 23.	(화상참석)	• 대한민국-모잠비크 BIT 제정 협상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6. 2. ~ 6. 8.	오스트리아	• UNTOC 제15차 기술지원 정부전문가 작업반 회의	검사 황익진	검 찰 국
6. 9. ~ 6. 15.	프랑스	• 2024년 6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검사 정성두	법 무 실
6. 9. ~ 6. 15.	프랑스	•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2분기 정례회의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6. 19. ~ 6. 21.	프랑스	• OECD 이주작업반(WPM) 정례회의	외국인정책과 박지원 사무관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6. 20.	(화상참석)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가정폭력 및 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제포럼	법무관 양동준 외 1명	국 제 법 무 국
6. 23. ~ 6. 26.	일본	• UN Crime congress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6. 23. ~ 6. 29.	싱가포르	• FATF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6. 24. ~ 6. 28.	미국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7차 본회의	국제법무국장 외 2명	국 제 법 무 국
6. 26. ~ 6. 29.	라오스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SOMTC(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지역 협의체)」 회의	국제형사과장 검사 황익진	검 찰 국
7. 2. ~ 7. 4.	(화상참석)	• 대한민국-EU DTA 제4차 협상	사무관 김의석	국 제 법 무 국
7. 3. ~ 7. 5.	일본	• 한·일 실무협의	국제형사과장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7. 7. ~ 7. 15.	스위스	•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여	승재현 인권국장 외 10명	인 권 국
7. 17. ~ 7. 20.	캄보디아	• 한국-캄보디아 수행자이송조약 문안협상 회의	검사 황익진	검 찰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7. 23. ~ 7. 27.	싱가포르	• 한국-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식 및 PCA 125주년 기념행사	국제형사과장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7. 25.	싱가포르	•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	법무부 장관 외 2명	국 제 법 무 국
7. 26.	싱가포르	•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법무부 장관 외 2명	국 제 법 무 국
7. 28. ~ 8. 4.	미국	• UN 사이버협약 임시위원회 (AHC) 제8차 회의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8. 13. ~ 8. 15.	페루	•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BMG) 회의	이미선 주무관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 14. ~ 8. 17.	베트남	• 제3차 APT(ASEAN+한·일·중) 이민청장·영사국장 회의(DGICM+3)	반재열 국적·통합정책단장 등 3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 26. ~ 8. 30.	라오스	• ASEAN 초국가범죄에 관한 장관급 회의(AMMTC) 참석	검사 황익진	검 찰 국
9. 1. ~ 9. 6.	싱가포르	• 2024 ICPA 연례회의	고위 류기현 등 5명	교정본부
9. 5. ~ 9. 10.	벨기에	• '호라이즌 유럽' 협정 문안 협상 회의	검사 황익진	검 찰 국
9. 9. ~ 9. 11.	중국	• 이민 관리 협력 포럼	출입국심사과 김영오 사무관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9. 10. ~ 9. 12.	(화상참석)	• 대한민국-EU DTA 제5차 협상	사무관 김의석	국 제 법 무 국
9. 10. ~ 9. 13.	한국	• 대한민국-몽골 EPA 제3차 협상	사무관 김의석	국 제 법 무 국
9. 22. ~ 9. 28.	미국	•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국제훈련	서기관 한경태 외 1명	법 무 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9. 23. ~ 9. 27.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ISDS 제도개선) 제49차 회의	검사 양준열 외 2명	국제법무국
9. 24. ~ 9. 27.	몰타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국경 간 아동보호 및 가족법에 관한 회의	법무관 양동준	국제법무국
9. 25. ~ 9. 27.	한국	• 대한민국-태국 EPA 제2차 협상	사무관 김의석	국제법무국
9. 29. ~ 10. 5.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제80차 회의	검사 박재성	국제법무국
10. 1. ~ 10. 7.	멕시코	• ICN(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작업반 총회 한국 대표단 참석	국제법무지원과장 외 1명	국제법무국
10. 6. ~ 10. 13.	프랑스	•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3분기 정례회의	검사 전성환	검찰국
10. 9. ~ 10. 11.	프랑스	• OECD 이주전문가그룹(SOPEMI) 연례회의	이민조사과 곽준석 주무관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 13. ~ 10. 19.	오스트리아	• 제12차 유엔 초국가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당사국회의	검사 황익진	검찰국
10. 14. ~ 10. 18.	스위스	• 제75차 UNHCR 집행이사회(EXCOM)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미라 사무관 등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 15. ~ 10. 17.	(화상참석)	• 대한민국-EU 디지털 DTA 제6차 협상 참석	사무관 김의석	국제법무국
10. 20. ~ 10. 27.	프랑스	• FATF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검사 윤기선	검찰국
10. 22. ~ 10. 25.	(화상참석)	• 대한민국-말레이시아 FTA 제5차 협상 참석	사무관 김의석	국제법무국
10. 24. ~ 10. 25.	중국 (화상참석)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ISDS 제도개선) 제8차 회기 간 회의	검사 양준열 외 1명	국제법무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0. 30.	서울	•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국제법무국장 외 4명	국제법무국
11. 2. ~ 11. 6.	프랑스	• 제48차 OECD 기업 지배구조위원회 회의	검사 정성두	법무실
11. 2. ~ 11. 9.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 국제세미나 참석	검사 박광호	법무실
11. 4. ~ 11. 9.	스위스	• 제4차 UPR 북한 국가보고서 심의	검사 곽금희 외 1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1. 6.	서울	• 한-영 FTA 제3차 협상(서비스 분과)	검사 박재성 외 1명	국제법무국
11. 10. ~ 11. 16.	프랑스	• 유럽평의회 공조담당자 회의(PC-OC)	검사 윤기선	검찰국
11. 11. ~ 11. 14.	한국	• 한-영 FTA 제3차 협상	사무관 김의석	국제법무국
11. 13. ~ 11. 15.	캐나다	• 제19차 ICAO TRIP 심포지엄	이민정보과 엄기복 사무관 등 5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1. 16. ~ 11. 22.	중국(홍콩)	• 제42회 APCCA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교정본부장 등 13명	교정본부
11. 18. ~ 11. 22.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회의	법무관 양동준	국제법무국
11. 24. ~ 11. 29.	스위스	• 제13차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	사무관 전현신 외 1명	인권국
11. 26. ~ 11. 29.	(화상참석)	• 대한민국-몽골 EPA 제4차 협상 참석	사무관 김의석	국제법무국
11. 27. ~ 11. 28.	(화상참석)	• 대한민국-투르크메니스탄 양자간투자보장협정(BIT) 제7차 협상 참석	사무관 심인혜	국제법무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1. 27. ~ 11. 30.	싱가포르	• 공익신탁 관련 해외 자료 수집	상사법무과장	법 무 실
12. 1. ~ 12. 4.	프랑스	• OECD 경쟁위원회 및 제2·3작업반 공식회의 한국 대표단 참석	국제법무지원과장 외 1명	국 제 법 무 국
12. 2. ~ 12. 4.	태국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ISDS 제도개선) 국제투자분쟁해결 자문센터 운영회의	사무관 박다혜	국 제 법 무 국
12. 3. ~ 12. 7.	네덜란드	• 국제형사재판소(ICC) 제23차 당사국총회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12. 7. ~ 12. 14.	프랑스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4분기 정례회의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12. 9. ~ 12. 11.	일본	• 제4차 도쿄 출입국 포럼(TIF)	유성오 이민조사과장 등 4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2. 9. ~ 12. 13.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회의	사무관 박진아	국 제 법 무 국
12. 10. ~ 12. 12.	필리핀	• 2024년 OECD-Asia Round table on Corporate Governance	검사 정성두	법 무 실
12. 15. ~ 12. 21.	오스트리아	•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도산법 제5실무작업반(WorkingGroupV) 제64차 회의	사무관 김효선	법 무 실
12. 15. ~ 12. 22.	스위스	• 초국적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실무그룹 제10차 회의	김진섭 서기관 외 1명	인 권 국
12. 16. ~ 12. 20.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회의	실무관 김승리	국 제 법 무 국
12. 17. ~ 12. 19.	태국	• 대한민국-태국 EPA 제3차 협상 참석	사무관 김의석	국 제 법 무 국

제9절 상훈

1. 총 괄

• 검사 및 일반직

(2024. 1. 1.~12. 31)

직급 / 상훈	계	정무직(등)	검사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299	-	105	16	29	112	397	632	770	215	23
청조근정훈장	0	-	-	-	-	-	-	-	-	-	-
황조근정훈장	2	-	2	-	-	-	-	-	-	-	-
홍조근정훈장	35	-	5	15	15	-	-	-	-	-	-
녹조근정훈장	326	-	-	-	-	70	256	-	-	-	-
옥조근정훈장	234	-	-	-	-	-	-	212	22	-	-
근 정 포 장	138	-	5	-	10	12	53	49	9	-	-
대통령표창	56	-	6	1	2	17	16	10	4	-	-
국무총리표창	53	-	14	-	-	6	19	11	3	-	-
모범공무원	195	-	-	-	-	-	-	179	16	-	-
법무부장관표창	1,260	-	73	-	2	7	53	171	716	215	23
유관기관표창	-	-	-	-	-	-	-	-	-	-	-

• 기 관

(2024. 1. 1.~12. 31)

기관 / 상훈	계	법무부	검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교정기관	출입국·외국인기관
법무부장관표창	72	5	19	14	9	17	8

2. 훈장·포장·표창자 명단

• 법무부소속 공무원(훈장 이상)

(2024. 1. 1. ~ 12. 31.)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황조근정훈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홍승욱	2024.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법무연수원	검사	김석우	2024.02.28.	검찰업무 수행 유공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임승철	2024.02.28.	검찰업무 수행 유공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강종헌	2024.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박성민	2024.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서정식	2024.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동현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광주보호관찰소	부이사관	김경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기성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태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일반직고위공무원	서호영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이사관	안숙열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양보승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양우덕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갑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정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찰부이사관	장병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장석경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찰부이사관	장종효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하종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강형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금광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문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상락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부산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박형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성찬오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우희경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윤진웅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승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소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영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창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장지섭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정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찰부이사관	조형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찰부이사관	최병선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일반직고위공무원	황세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녹조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이승열	2024.12.31.	우수공무원포상
	수원보호관찰소	서기관	양현규	2024.12.31.	우수공무원포상
	서울남부교도소	서기관	강군오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찰사무관	강복만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강봉원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강성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강신흥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정관	강윤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강정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강태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서기관	고상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찰사무관	공병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구자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사무관	권기원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권영범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권영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권오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권정옥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권택성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여주교도소	교정관	금영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사무관	김건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서기관	김경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교정청	서기관	김경화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김기범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김기영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정관	김대욱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정관	김동섭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김동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김명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서기관	김병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보호관찰소	서기관	김봉숙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과학기술서기관	김봉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정관	김상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영월교도소	교정관	김석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김성대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소년원	서기관	김송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소년원	보호사무관	김수영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승면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정관	김승원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영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김영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김영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용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김용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보호사무관	김원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윤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윤원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을룡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김종욱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서기관	김종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경주교도소	교정관	김준열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식품위생사무관	김중섭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김진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정관	김차훈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창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양소년원	서기관	김태섭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김해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여자교도소	교정관	김혜정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남정화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사무관	문선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문순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방송통신사무관	문승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보호관찰소	서기관	문승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정관	문종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찰사무관	문준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민경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박갑영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정관	박두승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박명용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박문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사무관	박보성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박승준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박정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사무관	박정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정관	박종경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박춘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박희웅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배근직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고등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배의봉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백천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정관	서동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춘천교도소	교정관	성태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보호관찰소	서기관	손세국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손용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손호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간호사무관	송예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보호사무관	송용권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보호관찰소	서기관	송인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정관	송화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신기준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신동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찰사무관	신만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신승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정관	신윤영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신장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신종원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정읍교도소	교정관	안세준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안승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안용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양석준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사무관	엄홍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정관	여환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정관	오명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오병용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관	오인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보건연구관	우광만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서기관	우종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유성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유증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유태권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윤석훈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윤판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윤해정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광경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보호관찰소	서기관	이길복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이동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정관	이동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범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병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이상돈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기관	이상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이상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정관	이승훈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정관	이영훈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이용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이유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이유원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이은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재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이재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전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이정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이종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정관	이종형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영월교도소	교정관	이진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소년원	서기관	이헌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현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임선봉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임용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장문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장민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소년원	보호사무관	장세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포항교도소	교정관	장양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장종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장창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장택용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찰사무관	전덕중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전병양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전상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정관	전석봉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전인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전태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사무관	정동준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사무관	정명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정복영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찰사무관	정부영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정성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서기관	정원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정지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정진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정희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조광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사무관	조달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조병웅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조상운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조원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조형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정관	차태영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최봉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정관	최성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최은숙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정관	최종범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정관	최택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한강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한석종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한승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한태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허태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서기관	홍성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황미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정관	황원경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강경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사무관	강곤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서기관	강기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수사서기관	강동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기관	강성헌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정관	강은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강중원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고동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연수원	전산사무관	고장원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고재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연수원	서기관	구하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보호사무관	권덕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여자교도소	교정관	권태선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정관	권혁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소년원	보호사무관	권혁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김경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금숙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김남중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김대광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교정관	김대광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김동영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정읍교도소	교정관	김동원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정관	김동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김명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정관	김민철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	보호사무관	김성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정관	김성은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찰사무관	김안중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김용선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소년원	보호사무관	김용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정관	김용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기관	김용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김윤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서기관	김응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김인성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김재만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김재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소년원	보호사무관	김종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종화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김주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김진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김충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사무관	김홍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김희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기관	김희숙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나상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남진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서기관	류동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류중선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방송통신사무관	명호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문명룡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보호관찰소	서기관	문주남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문희철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박광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정관	박순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박승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박용덕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박의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박정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정관	박태욱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정관	배왕열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백대성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수사서기관	백종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봉명종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사길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서동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서용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사무관	서용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공업사무관	서정혁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관	성기승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성덕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소상은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송미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교정청	서기관	송진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송태만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신현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신현승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심상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정읍교도소	서기관	심성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안덕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양근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양미경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양순권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사무관	오정훈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오후균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위희강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법무부	과학기술서기관	유상동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방호사무관	유연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관	유재항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유종성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유환봉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고등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유효상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교정청	서기관	육근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윤담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윤주성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관	윤주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이금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이남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이남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이동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정관	이동열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소년원	보호사무관	이득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이병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사무관	이상윤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이상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소년원	보호사무관	이양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용건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이윤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정관	이은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이재만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이종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이종욱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이창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식품위생사무관	이충섭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이태영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공업사무관	이한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형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청주교도소	교정관	임섭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임용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장광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장세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장진팔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장흥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소년원	보호사무관	전영선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전은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서기관	정기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사무관	정일훈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교정관	정해윤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정관	조광훈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조규만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소년원	보호사무관	조완성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사무관	조현섭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주성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주창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정관	진기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채후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사무관	최순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최승용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서기관	최영만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정관	하호성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한상욱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한종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허선만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홍의송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교정청	서기관	황진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옥조근정훈장	전주교도소	교감	강성운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감	곽창익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곽향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립법무병원	간호주사	권미숙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권영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권윤자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감	권창덕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감	김관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동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보호주사	김동훈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김두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감	김명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봉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방호주사보	김상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김석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찰주사	김선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성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김성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김성자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김영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무운영주사	김영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김완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김은정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감	김인숙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감	김정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운전주사보	김종만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찰주사	김주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김찬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김현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감	김형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해남교도소	교감	김홍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나병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위	노병국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류성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위	류충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감	모정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민광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민일기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박규남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박문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박미경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운전주사보	박병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박상관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감	박석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박숙영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포항교도소	교감	박영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박원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감	박원정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감	박종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박창숙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박해숙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배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사무운영주사	서영덕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감	석장억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설평화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무운영주사보	손윤숙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고등검찰청	운전주사보	송진용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신언오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소년원	전문경력관 나군	심재룡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주사	안병묵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안정옥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양욱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여혜자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감	오금열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용서은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청주교도소	교감	유선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윤병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윤승만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영월교도소	교감	윤영빈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사무운영주사	이경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이기영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이덕윤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이도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조무주사보	이동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이동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감	이수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감	이승영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이승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이영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출입국관리주사	이영숙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감	이용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식품위생주사	이정화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이충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이충희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	이호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지방교정청	전산주사	임상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임영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연수원	간호주사	임윤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장택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감	정경자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출입국관리주사	정남훈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정상길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감	정은선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정주동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정창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정태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장흥교도소	교감	조규웅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조병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조영삼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지원준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영월교도소	교위	최명종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소년원	보호주사	최병진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감	최상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최은숙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최종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최태윤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방호주사	한경준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주사	한산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감	홍덕식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홍을표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황지하	2024.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감	강두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강봉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교감	강희준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권형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지방검찰청	전화상담운영주사보	김경란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소년원	보호주사	김경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김계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김광신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김대성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주사	김미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민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김백욱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조리주사	김삼섭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김선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김승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전화상담운영주사	김애련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용덕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김용섭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거창구치소	교감	김용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용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	김용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김유섭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김은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김재열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김정훈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방호주사보	김종헌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김지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김창덕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감	김태헌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운전주사보	김하용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김학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감	김현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사무운영주사	명종륭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박경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박규원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박미화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박병오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방호주사	박상권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행정주사	박순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박우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감	박재양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찰주사	박진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박한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박혜영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소년원	보호주사	배순철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거창구치소	교감	배인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서민철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립법무병원	간호조무주사보	서재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손종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찰주사	송인보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감	송준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신승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찰주사	신원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감	심철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운전주사	안창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안희복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양민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양성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감	오대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오문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오상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오종화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오차균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오창원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영월교도소	교감	원채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유영범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유점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유철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육동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윤병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찰주사	윤석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행정주사	윤선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소년원	보호주사	윤종봉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감	이동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주사	이문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이병직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이상원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이상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울산구치소	교감	이선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감	이성중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교감	이성훈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이순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위	이신탁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이우용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이유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감	이익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이인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감	이재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사무운영주사	이재영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이재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감	이정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감	이종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찰주사	이중화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임기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감	임만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장득용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감	장중억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장필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감	전점숙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전호철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소년원	보호주사	정용기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감	정윤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전산주사	정종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정지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공업주사	정해경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조병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조웅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조평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운전주사보	진재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광주교도소	교감	채재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최관호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최규현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주사	최덕윤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감	최동곤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주사	최영안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최용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찰주사	최원근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최정환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최진희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교감	최희규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운전주사보	한기원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한옥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감	현우식	2024.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 외부인사 및 단체

(2024. 1. 1. ~ 12. 31)

훈 격	소 속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임성	2024.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무궁화장	서울대학교	김철수	2024.12.04.	대한민국 헌법 발전 유공
국민훈장 무궁화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영	2024.12.04.	대한민국 헌법 발전 유공
국민훈장 모란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포항지역협의회	나주영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부산구치소	박준희	2024.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청주지역협의회	이종환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경북북부제2교도소	이기학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운영위원회	고상후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협의회	이종필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민훈장 목련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재건	2024.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김성태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민포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춘천지역협의회	전명준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훈 격	소 속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민포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안희원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광주교도소	정애선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강릉교도소	최종태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전 (사)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종찬	2024.11.2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민포장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	김남연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민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협의회	이정화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목포교도소	안경한	2024.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2024.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사회복지법인 성골롬반복지재단	라이안 제라딘	2024.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2024.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나니	2024.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구제길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구서부지역협의회	김영만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남상환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박기태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원주지역협의회	안재홍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천안지역협의회	이진혁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진주교도소	박만식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서울동부구치소	성낙권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장흥교도소	이상순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임설빈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서원대학교	김태경	2024.11.2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사)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윤보선	2024.11.2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경기도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사)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신용원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 협의회	안경숙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	이상훈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춘천소년원 협의회	임훈재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정효진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상래	2024.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태건	2024.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훈 격	소 속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무총리표창	광주국제교류센터		2024.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24.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신길샛별작은도서관	임정자	2024.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4.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단양여성취업지원센터	조연화	2024.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지역협의회	홍임숙	2024.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주)와이비엠 교육	화찬권	2024.05.20.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동원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송동섭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광주국제교류센터	우인술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이항복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신길샛별작은도서관	정동배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선호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단양여성취업지원센터	최종진	2024.07.05.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지역협의회	김송자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주)와이비엠 교육	박인서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중앙지역협의회	배종빈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이종갑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	전상현	2024.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홍성지역협의회	김해동	2024.11.2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천지역협의회	이운형	2024.11.2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장재진	2024.11.2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성남시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김영준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김희수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숭실대학교	이성규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보호관찰소 협의회	이옥란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재단법인 케이에스디나눔재단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최부원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4.12.04.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제10절 위원회 현황

1. 총 괄

(2024. 12. 31. 현재)

소 관 별	계	총리 소속	기획 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 예방 정책국	감찰 관실	인권국	국제 법무국	교정 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운 영 지원과
위원회 수	73	1	24	11	12	3	1	6	1	4	6	4

2. 위원회 개요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	법무부정책위원회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훈령 제1361호)	법무행정운영에 관한 장관 자문	장관 위촉	15명	정책 기획단	기획조정실
2	법무부 직장방위 협의회	예비군법 1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비정규전 작전활동 및 예비군 법무부 직장분대 운영의 유기적 협조 조정	법무부 장관	13명	비상 안전	
3	법무부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제1450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획 조정 실장	12명	기획 재정	
4	법무부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훈령 1357호)	법무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기획 조정 실장	17명		
5	법무부 공적심사 위원회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 심사	법무부 차관	6~11명	혁신 행정	
6	법무부 보통징계 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5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4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7	법무부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 법무부소속공무원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정	장관이 임명	5명 이상	혁신행정	
8	법무부 보통고충 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3조	공무원의 고충 심사	혁신행정 담당관	9명		
9	법무부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공무원의 승진 심사	장관이 임명	3명 이상		
10	법무부 보수성과 심의위원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	성과급 심사	장관이 임명	3~7명		
11	법무부 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조의3	위탁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심의 등	법무부 차관	5명 이상		
12	법무부 적극행정 위원회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490호)	법무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7명		
13	법무부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492호)	법무부 공무원제안 재심사 및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등 심의·의결	기획조정 실장	9명		
14	법무부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296호)	규제신설(강화)되는 경우 규제범위·대상·존속기한 등에 대한 심사 및 입안부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 심사	차관, 이명로(민간위원)	8~15명	행복민원	
15	법무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훈령 1077호)	법무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심의	정현미(민간위원)	12명		
16	법무부 청원심의회	청원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훈령 1503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정책기획관	5명		
17	법무부 민원조정 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269호)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심의	기획조정 실장	8~11명		
18	법무부 자체평가 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윤종설(연구위원)	25명	정책성과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9	법무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기획조정실장	5명		
20	법무정보화 추진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 (훈령 1416호)	법무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주요사항을 심의	기획조정실장	6명	정보화 데이터	
21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7조 (훈령 1416호)	정보화 의견수렴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전방향 등 자문	신용태(교수)	8명 이상		
22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훈령 1539호) 제16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기획조정실장	5명	양성평등	
23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위원회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규칙(훈령 1390호)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자문	법무부 차관, 문유경	16명		
2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9조 (법무부 훈령 제1484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	이성환(교수)	14명	형통단	
25	법무자문위원회 (특별분과위 : 가족법특별위, 젠더폭력처벌법개정, 남북법령연구, 국제법무자문,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조, 제2조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장관이 임명	구성중	법무심의관실	법무실
26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실무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심의	법무부 차관	15명 이하		
27	민법개정위원회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법무부훈령 제1476호)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	양창수(前대법관)	23명		
28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심의	법무부 장관	9명	법무과	
29	공증인징계위원회	공증인법 제85조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7명		
30	본부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결정	법무부 차관	7명	국가소송과	
31	국가송무자문위원회	국가송무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법무부훈령 제1398호)	국가송무의 수행·지휘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	-	송무심의관실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32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법무부 훈령 제1258호)	공익신탁에 관한 업무와 제도의 개선 자문	이중기 (교수)	7명	상사법무과	
33	상법 특별위원회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법무부 훈령 제816호)	상사법의 연구 및 제·개정등의 수행	외부위원 중 위촉	35명 이하		
34	회계자문위원회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호(법무부 훈령 제858호)	회계원칙의 지정 및 회계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	외부위원 중 위촉	10명 이하		
35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시험시행 관련 주요사항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법조인력과	
36	검사 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 제4조, 제5조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 및 의결	법무부 장관	8명	검찰과	검찰국
37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2조	검찰인사 등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변호사	10명		
38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9조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제2조, 제3조, 제4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변호사	8명		
39	검사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지급인원·지급액 심의	법무부 차관	4명		
40	마약류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6조	마약류보상금지급 신청인의 자격, 지급액,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검찰 국장	4명	형사기획과	
41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제10조의 2	법무부 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 심사·자문	법무부 장관	8명		
42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법무부 훈령 제1514호)	특정경제사범의 관리 업무에 관한 심의·자문	법무부 차관	12명		
43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조	상금·보로금지급 및 보상대상자 심의·결정	검찰 국장	6명	공공형사과	
44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	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45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71호) 제3조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검찰국장	10명		
46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부령 제1004호) 제8조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신고·제보 활성화 유도	검찰국장	4명		
47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 규정(훈령 제947호)	범죄수익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	검찰국장	4명	국제형사과	
48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고검차장검사	각 9명	보호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
49	법교육위원회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차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	보호정책과	
50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취소 등 심사·결정	법무부차관	8명	치료처우과	
51	법무부감찰위원회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	이우영(교수)	8명	감찰관실	감찰관실
52	인권정책자문단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훈령 제1152호)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	인권국장(주재)	28명	인권정책과	인권국
53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법무부장관	17명	인권구조과	
54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법무부차관	15명		
55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사건 심의·의결	법무부차관	7명		
56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법무부차관	9명	여성아동인권과	
57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훈령 제1076호)	법무행정분야의 여성, 아동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조정	강동욱 교수	10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58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 제40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	법무부 장관	9명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국
59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집행법 제119조	모범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여부 심사 등	법무부 차관	9명	분류심사과	교정본부
60	교화방송 자문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8조 1호(예규 1288호)	교화방송 전문성강화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황제연 (방송인)	12명	사회복귀과	
61	교정정책자문위원회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479호)	교정행정 정책에 관한 자문	임대기 (경제인)	15명	교정기획과	
62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심리치료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1366호) 제8조	심리치료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조성남 (의사)	15명	심리치료과	
63	법무부 투자이민협의회	투자이민협의회규정 (훈령 제1239호) 제1조	투자이민제도 운영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법무부 차관	10명	체류관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64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 위원회 규정 제1조 (훈령 제1406호)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정인섭 (교수)	18명	외국인정책과	
65	외국인정책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국무총리	29명		
66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 제22조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및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법무부 차관	30명	국적과	
67	법무부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14명	이민통합과	
68	난민위원회	난민법 제25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	난민불인정결정 및 취소·철회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법무부 차관	15명	난민심의과	
69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훈령 제1447호)	출국금지·정지 및 그 기간 연장과 이의신청의 적정성 등을 심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5명	출입국심사과	
70	법무부 보안심사위원회	법무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 (훈령 제1348호)	제반 보안대책의 수립 및 제규정 제정	법무부 차관	9명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71	법무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관한규정 (산자부 고시 제2024-110호)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운영지원과장	4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72	법무부 정보공개 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예규 제1345호)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획조정실장	5명		
73	법무부 기록물평가 심의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훈령 제1540호)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 여부 평가, 기타 보존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등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심의	기획조정실장	4명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소속기관

(2024.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271개 기관(본부 1, 소속 270)	34,291
법무부	2실 4국 2본부	789
검찰청	대검찰청 1, 고등검찰청 6, 지방검찰청 18, 지청 42	10,650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1, 용인분원 1	134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6	42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18, 지소 40, 위치추적관제센터 2	2,030
국립법무병원	국립법무병원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461
소년원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	964
교정기관	지방교정청 4, 구치소 12, 교도소 39, 지소 3	16,579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외국인청 6,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 출장소 22, 외국인보호소 2,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	2,630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12

• 소속단체

(2024.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3개 단체	1,331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1, 지부 18, 출장소 42, 지소 74, 법문화교육센터 1,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	82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1, 지부 20, 지소 6, 교육원 1	388
정부법무공단	본부 1	123

法務年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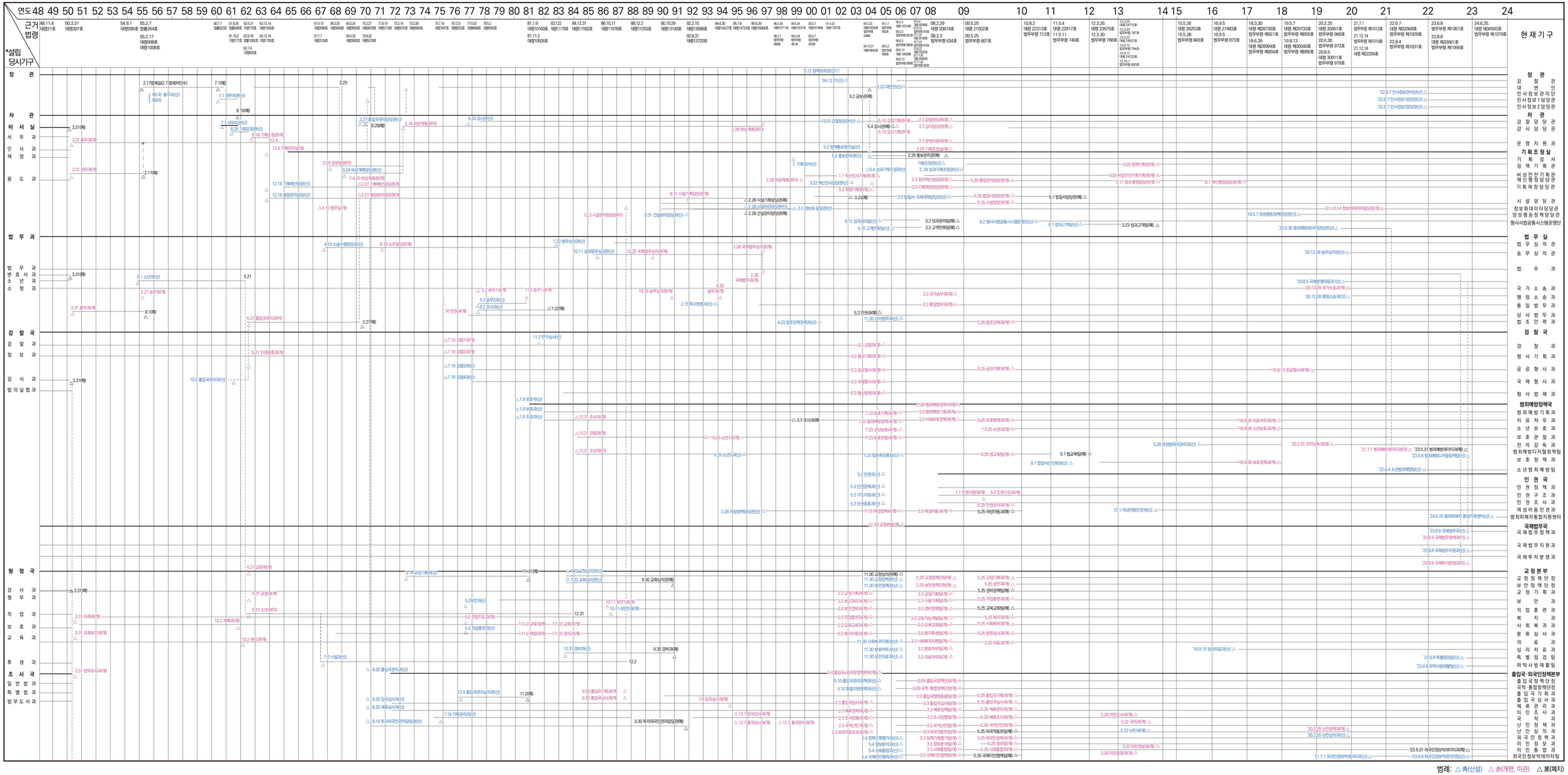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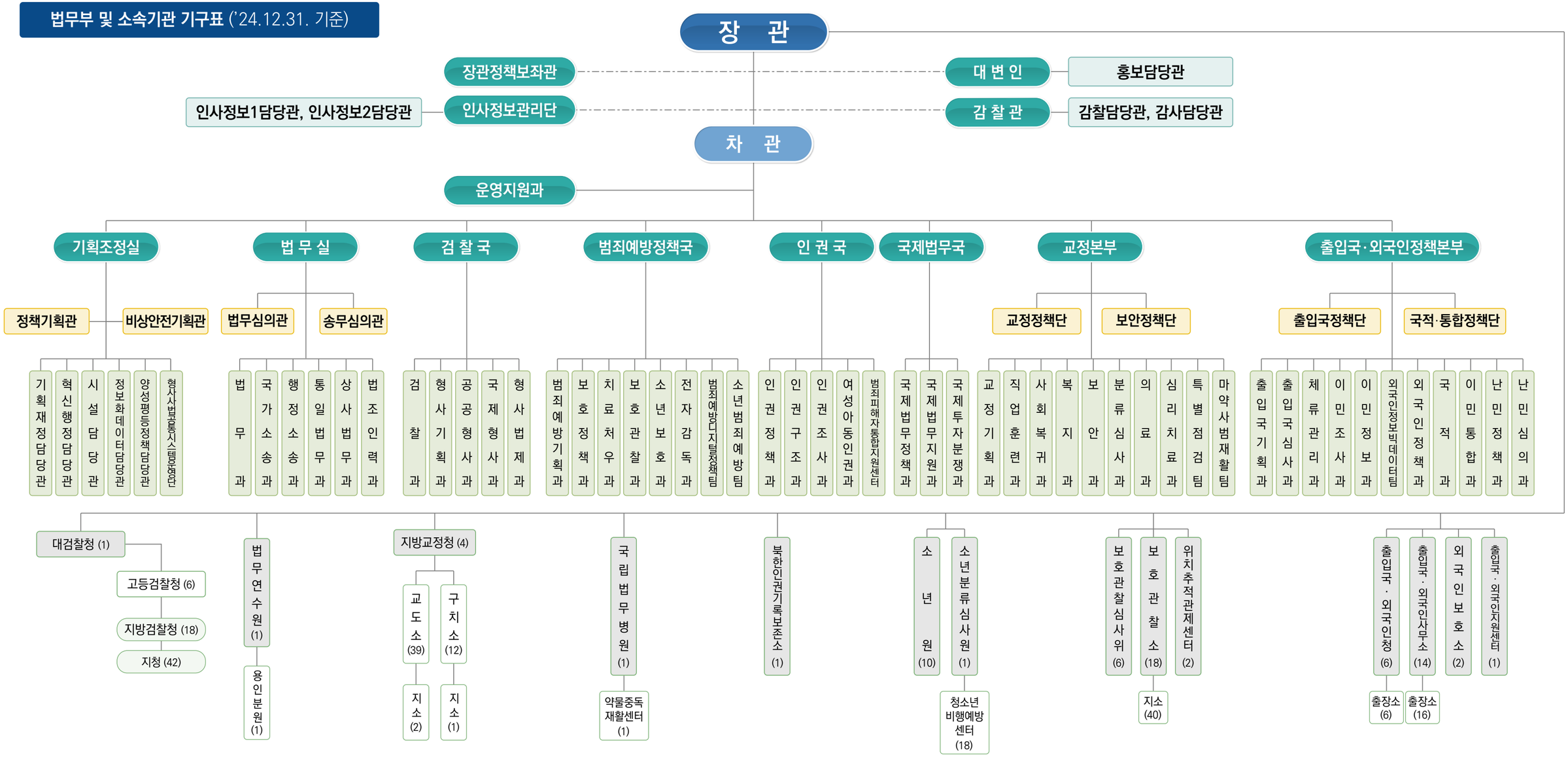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범례: △ 靑(신설) △ 赤(개편, 이관) △ 黑(폐지)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24.12.31. 기준)



법무연감 편집위원

편 집 위 원 장

기획조정실장	검사장	변필건

편 집 위 원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유지중
법무실	법무과장	이시전
검찰국	검사	김민수
감찰관실	검사	정정욱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장	송중일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노일석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정책과장	최태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	양원동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장	박상욱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김정열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손지혜

편 집 실 무 위 원

기획조정실	사무관	홍주영
법무실	사무관	이승민
검찰국	사무관	정근용
감찰관실	사무관	조성우
범죄예방정책국	사무관	배성준
인권국	서기관	김진섭
국제법무국	사무관	박진아
교정본부	교정관	김상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	이주호
대변인실	서기관	이상우
운영지원과	사무관	이두형
법무연수원	사무관	박창현

法 務 年 鑑

발 행 일 2025년 5월

발행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 (02) 2110-3765
FAX : (02) 2110-0314

인 쇄 ㈜케이에스센세이션
TEL : (02) 761-0031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11-1270000-100024-10

2024

법무연감

법무부